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334-10

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Factbook 202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Factbook 202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이용자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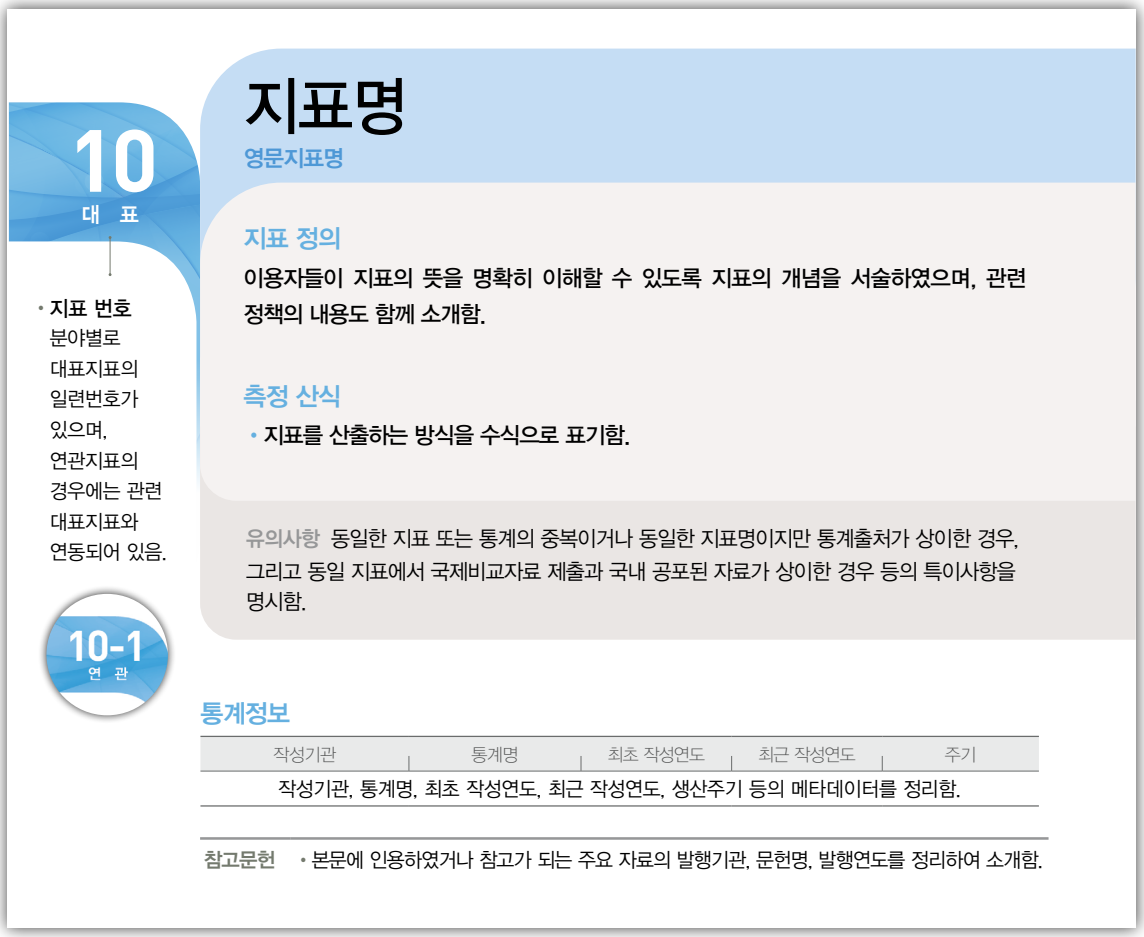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 수준과 시대적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통계 연보임.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문화 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과 삶의 질에 관련된 통계를 종합 제시함.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는 14개 분야, 51개 세부 영역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함.

[그림] 사회보장통계 분야와 각 세부 영역명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음.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는 다음 기준으로 작성함.

- 통계정보 중에서 전년도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업데이트, 오류 정정 등의 이유로 변경된 것임.
- 반올림 처리로 세부 항목의 합계와 총계(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수록된 통계는 사회보장통계운영지침에 따라 제출기관이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의 작성연도는 주로 2024년임. 다만, 2024년 자료가 없는 경우, 최신 자료를 수록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산출된 미공표 자료는 작성 시점의 차이로 인해 부처가 발간하는 각종 통계 연보의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보고서에 사용된 부처명은 2024년 시점의 부처명을 기준으로 작성함.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기반으로 전자책(e-book)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됨.

- 사회보장통계는 분야 및 영역,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음.

※ 발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평가과**로 문의 바랍니다. **(044-287-3748)**

인포그래픽 015

사회배경 026

1 가족 040

2 아동 070

3 청년 100

4 노인 114

5 장애인 136

6 근로 174

7 소득보장과 빈곤 204

8 건강 234

9 보육 및 교육 296

10 문화 324

11 주거 348

12 에너지 372

13 환경 386

14 사회재정 406

지표별 목차

사회 배경

01. 인구성장률 028
02. 총인구 029
03. 인구피라미드 030
04. 부양비 031
05. 합계출산율 032
06. 국내총생산 034
07. 1인당 국민총소득 035
08. 경제성장률 036
09. 소비자물가지수 037
10.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038

1 가족

01. 1인가구 042
02. 노인가구 043
03. 한부모가구 045
04. 국내외 입양아동 수 046
    04-1. 입양아동 관련 급여 수급자 047
    04-2.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048
05. 다문화가구 050
    05-1. 북한이탈주민 052
06.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053
07.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054
08.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봄 055
09.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056
10. 조이혼율 057
    10-1. 조혼인율 058
    10-2.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059
11. 가족부문 공공사회복지 지출 060
12.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61
13.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63
1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65
1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67

2 아동

01. 아동 수면시간 072
02.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074
03. 아동 자살률 076
0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078
    04-1. 아동 손상 경험률 080
05.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081
06.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률 083
07. 아동 빈곤율 085
    07-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 087
    07-2. 아동급식 지원자 수 088
08. 나홀로 아동 089
    08-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091
09. 보호대상아동 아동 수 094
    09-1. 아동복지시설 아동 수 096

09-2.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097
09-3.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수 099

3 청년

01. 청년고용률 102
01-1. 대학 졸업 청년고용률 103
02. 청년 비정규직 비율 104
03.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 105
04. 청년 니트(NEET) 비율 106
05. 청년 상대적 빈곤율 108
06.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 109
07.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110
08. 청년 우울감 경험률 111
09.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112
10. 청년 사회단체 참여율 113

4 노인

01. 65세 기대여명 116
02. 노인의 ADL 제한율 118
03. 노인의 운동 실천율 119
03-1. 노인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120
04. 노인의 학대경험률 121
05. 노인 진료비 123
05-1. 의료기관 종별 노인 외래환자 수 124
06.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125
06-1.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127
07.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128
07-1.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130
08. 장기요양기관 수 131
08-1. 장기요양기관의 전문 인력 133

5 장애인

01. 등록장애인 수 138
01-1. 장애출현율 141
02.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142
02-1.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143
03. 장애인 복지시설 수 144
03-1.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거주인 수 145
03-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146
03-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147
0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48
05.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50
0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52
06-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154
07.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156
08. 특수교육 대상자 수 158
08-1.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비율 159
09. 장애인 교육 수준 160
10.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161
10-1. 장애인 고용률 162
10-2. 장애인 실업률 163

1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64
12.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165
13.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166
13-1. 장애수당 수급자 수 167
13-2.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168
14.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169
15.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171

6 근로

01. 경제활동참가율 176
02. 고용률 177
03. 실업률 178
04. 실업급여 수급자 수 180
05.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181
06. 총 근로시간 182
0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184
08.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185
09. 사회보험 가입률 187
10. 산업재해율 188
11. 저임금근로자 비율 189
12. 시간급 최저임금 190
12-1. 최저임금 영향률 192
13. 시간당 임금총액 193
14.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 194
15. 자활사업 대상자 수 196
15-1. 자활사업 참여자 수 198
16.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00
16-1.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202
17.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203

7 소득보장과 빈곤

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6
01-1.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208
01-2.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210
01-3. 주거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211
01-4. 의료급여 수급자 수 213
01-5. 교육급여 수급자 수 215
02.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216
03. 상대적 빈곤율 218
04. 상대적 노인 빈곤율 220
05. 소득5분위배율 222
06. 지니계수 223
07.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25
08.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227
09.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229
09-1.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231
10.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232

8
건강

01. 기대수명 236
01-1. 건강수명 238
01-2. 주관적 건강인지율 239
02. 조사망률 240
02-1. 연령표준화사망률 242
02-2. 영아사망률 243
02-3.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244
03. 저체중아 발생률 245
03-1. 조산율 246
04. 자살률 247
04-1. 정신장애 유병률 249
04-2. 우울장애 유병률 250
05. 10대 다빈도 상병 251
05-1. 암 발생률 252
05-2. 뇌졸중 의사진단 경험률 253
05-3. 고혈압 유병률 254
05-4. 당뇨병 유병률 255
06. 현재 흡연율 256
06-1.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258
06-2.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259
06-3. 청소년 현재 흡연율 260
07. 고위험 음주율 261
07-1. 연간 음주율 262
07-2. 청소년 현재 음주율 263
07-3. 1인당 알코올소비량 264
08. 비만율 265
08-1. 청소년 비만율 267
08-2. 걷기실천율 268
09.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269
09-1.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270
10. 평균 재원일수 271
11. 1인당 의사 진료 건수 272
11-1. 1인당 외래진료 수진율 273
11-2. 산전수진율 274
1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75
12-1.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1세 대상 277
12-2. 소아 ·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만 1~18세 278
13.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79
13-1.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280
14. 의료보장 적용 인구 281
14-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282
15. 의사 수 284
15-1. 면허의료인 수 286
16. 병상 수 287
16-1. 의료기관 수 289
17. GDP 대비 경상의료비 290
17-1.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291
17-2.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비중 292
17-3. 건강보험 급여비 293
17-4. 건강보험 보장률 294

9 보육 및 교육

0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298
0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300
03.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301
03-1.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302
04.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304
05. 학교급별 취학률 305
06. 학급당 학생 수 306
07.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307
08. 교원 1인당 학생 수 308
09. 학생 1인당 사교육비 310
09-1.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311
10.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312
10-1.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314
11.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316
12.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318
13. 고등교육 이수율 320
14.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322

10 문화

01.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326
01-1.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327
02. 연간 독서량 328
02-1. 연간 독서율 329
03.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331
04.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332
05.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333
06.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발표)활동 참여율 335
07. 생활체육 참여율 337
07-1.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338
08.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339
09.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341
10.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342
11.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343
1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344
13.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345
14. GDP 대비 문화예산 346
15.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347

11 주거

0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350
02.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352
03.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353
04.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355
05.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356
05-1.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358
06.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359
07. 노숙인 수 361
08.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362
09.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364
10.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366

10-1.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367
11.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368
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370

12 에너지

01. 가전기기 보급률 374
02.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375
03. 도시가스 보급률 377
04.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378
05. 소득(소비지출) 대비 연료비 비율 379
06.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380
07. 에너지효율 개선 382
08.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383
09. 연료비 지원 384

13 환경

01.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388
01-1. 주요 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389
01-2. 주요 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390
02. 주요 도시 소음도 391
03.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392
03-1.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393
03-2. 도시지역 인구당 녹지조성 면적 394
04.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395
04-1. 환경예산 비율 396
05. 상수도 보급률 397
06. 하수도 보급률 398
06-1.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400
06-2. 하수도 설치율 401
07.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402
07-1.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403
08. 환경성질환자 수 405

14 사회 재정

01.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408
0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410
0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412
04.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413
05. 공적연금수지 414
06. 고용 · 산재보험수지 415
07.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416
08.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417

INFOGRAPHICS 2024



▶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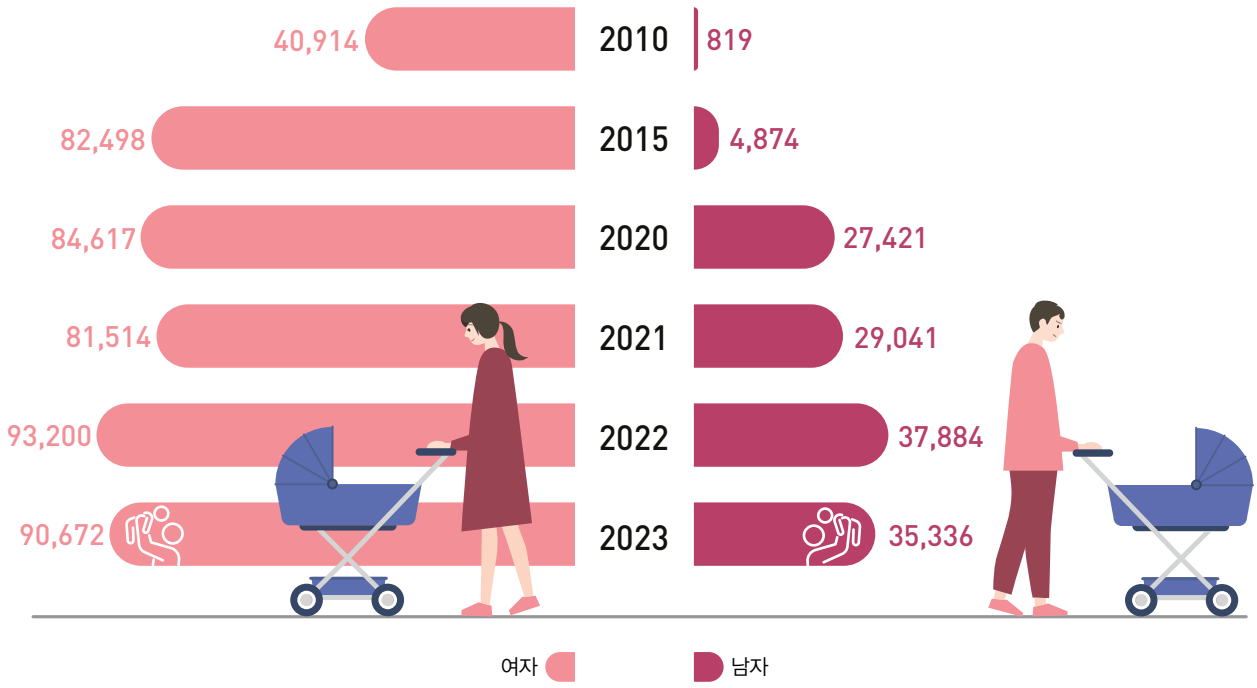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연도별 1인가구 비율	20.0%	23.9%	27.2%	31.7%	35.5%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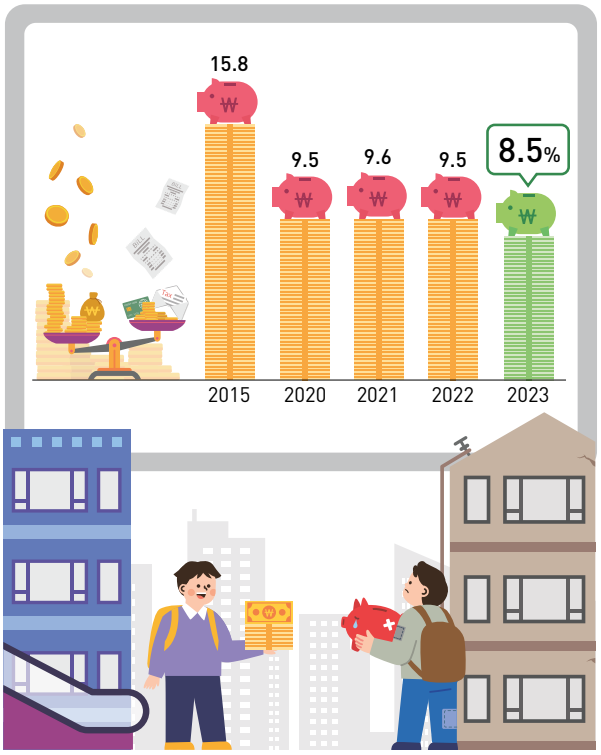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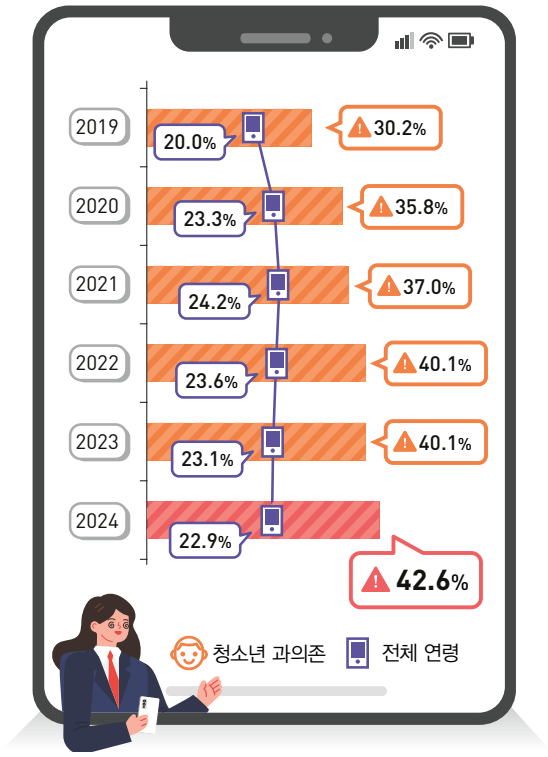
▶ 상대적 아동빈곤율

(단위: %)



▶ 스마트폰 과의존(청소년)

(단위: %)



▶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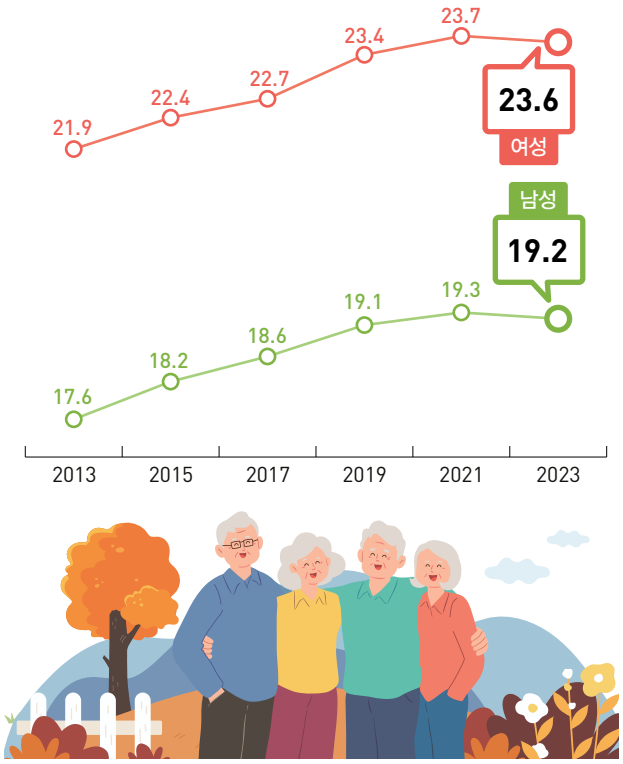
(단위: 점)

19~29세 청년		19세 이상 전체	
2020	6.2	2020	6.0
2024	6.5점	2024	6.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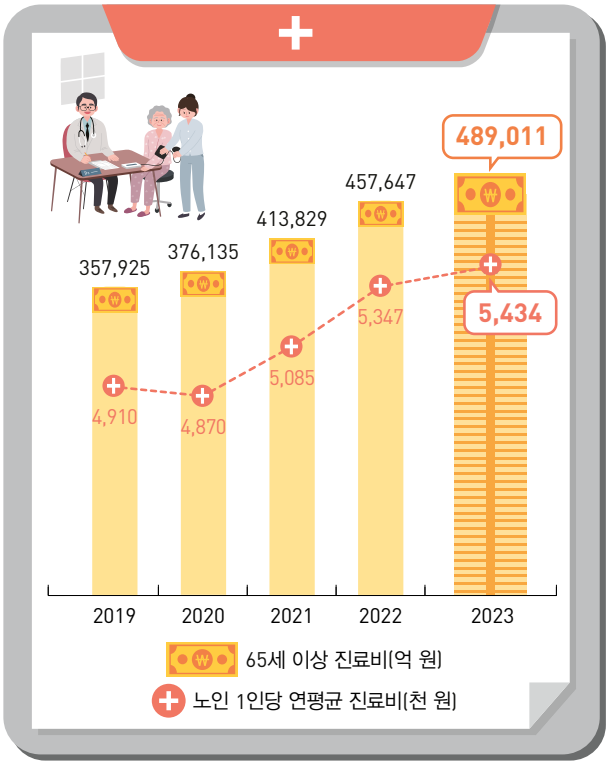
▶ 65세 기대여명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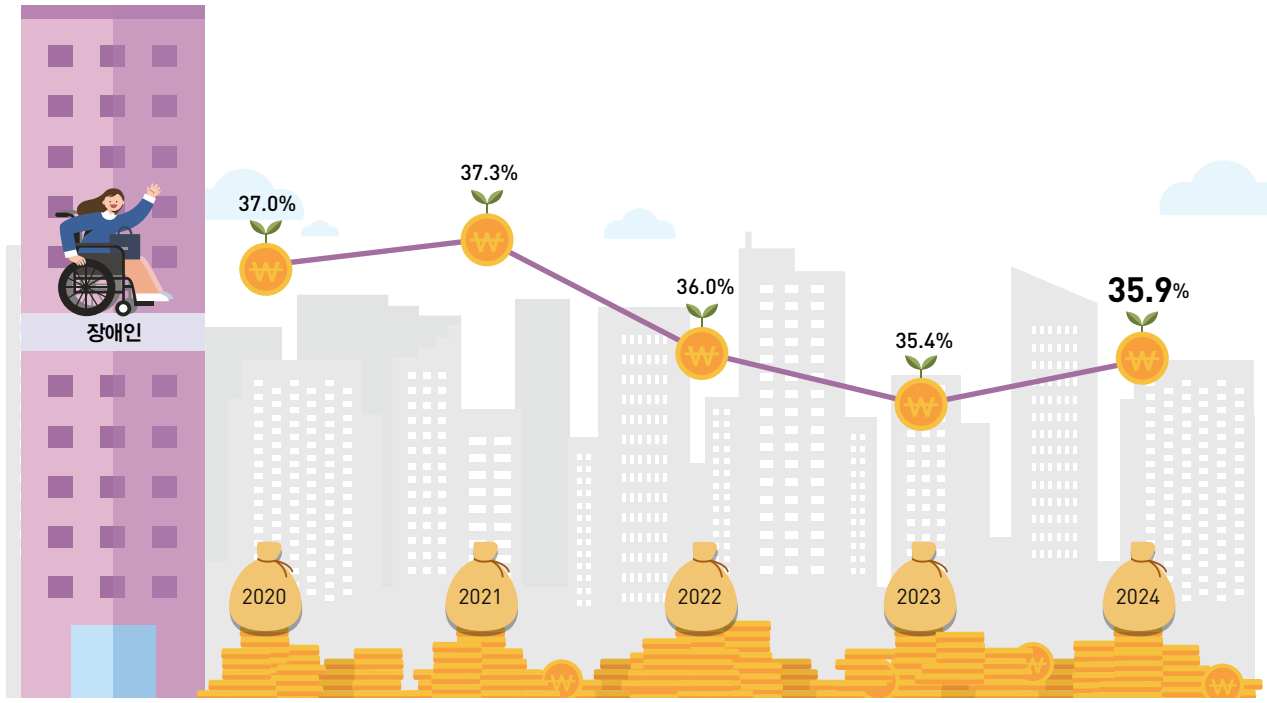
▶ 노인 진료비

(단위: 억 원,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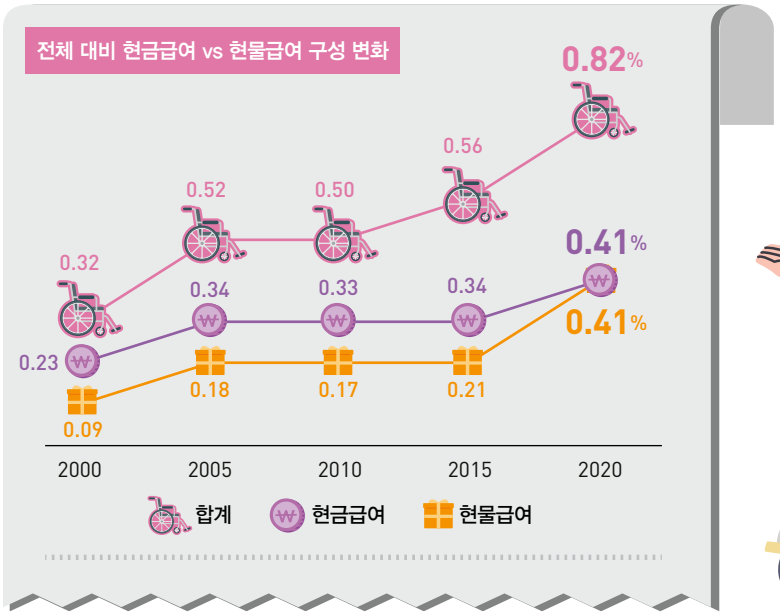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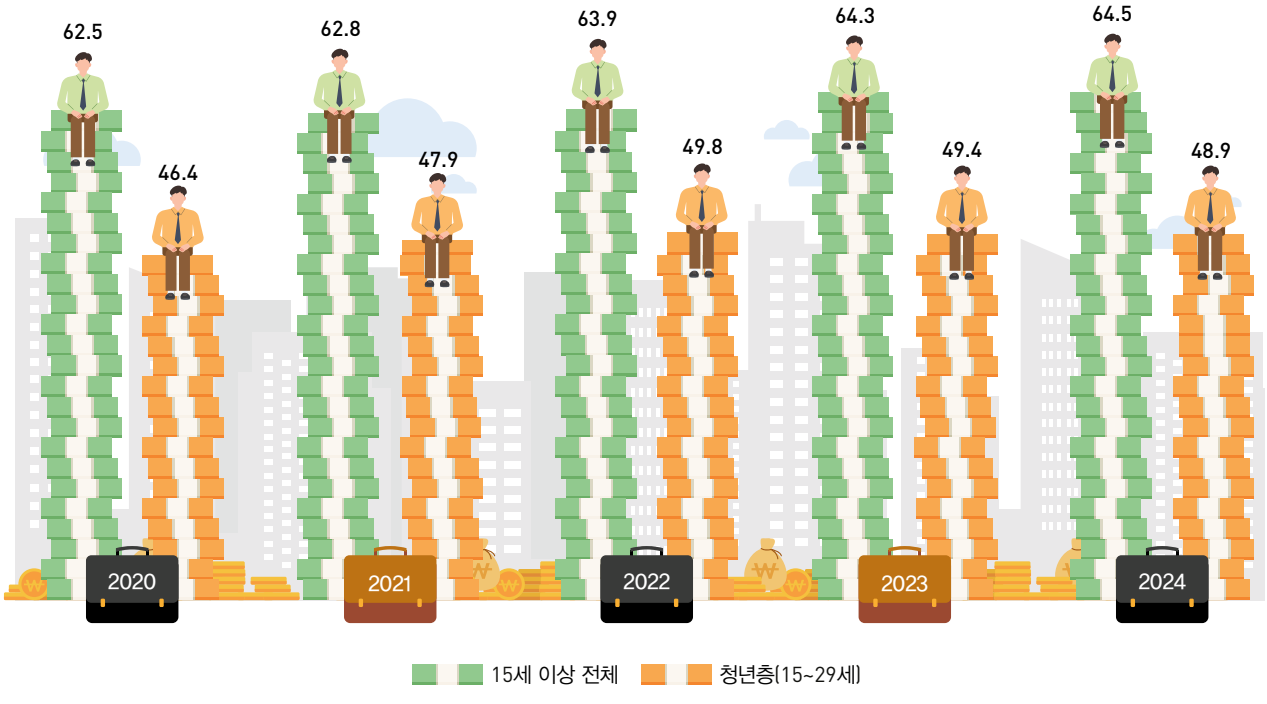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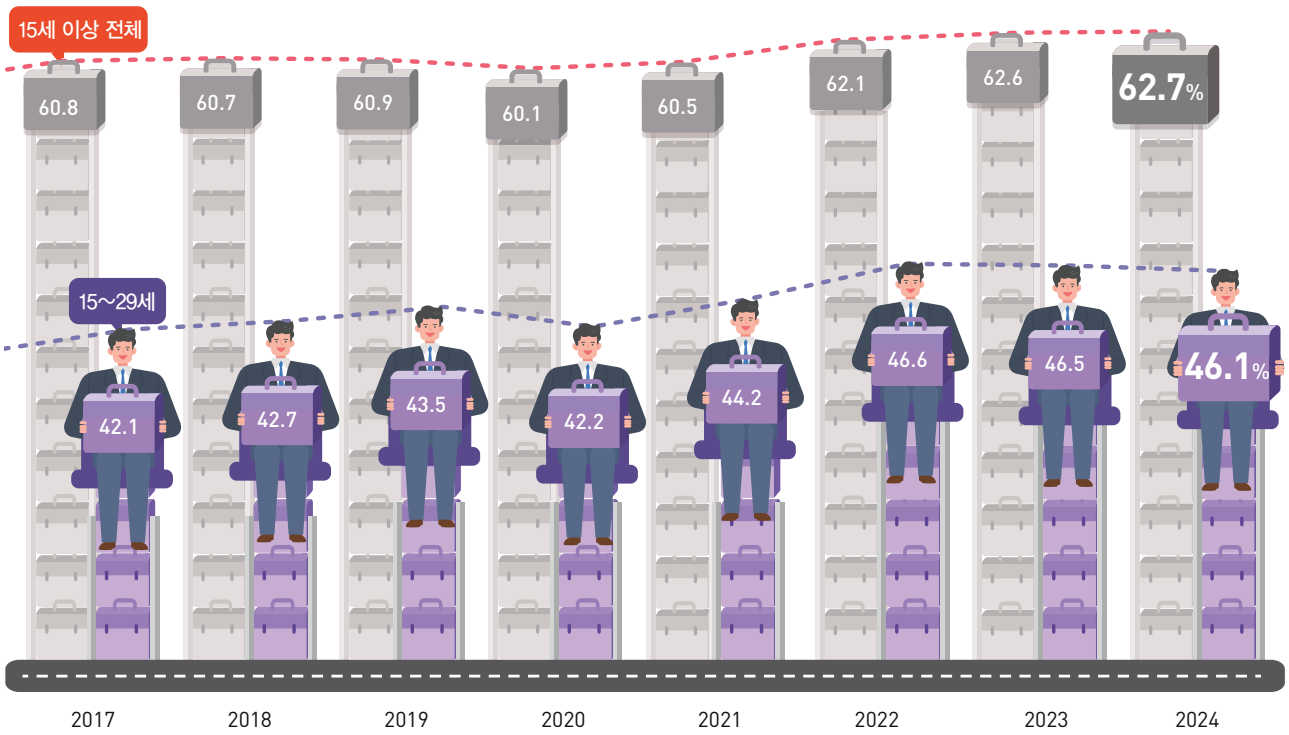
(단위: %)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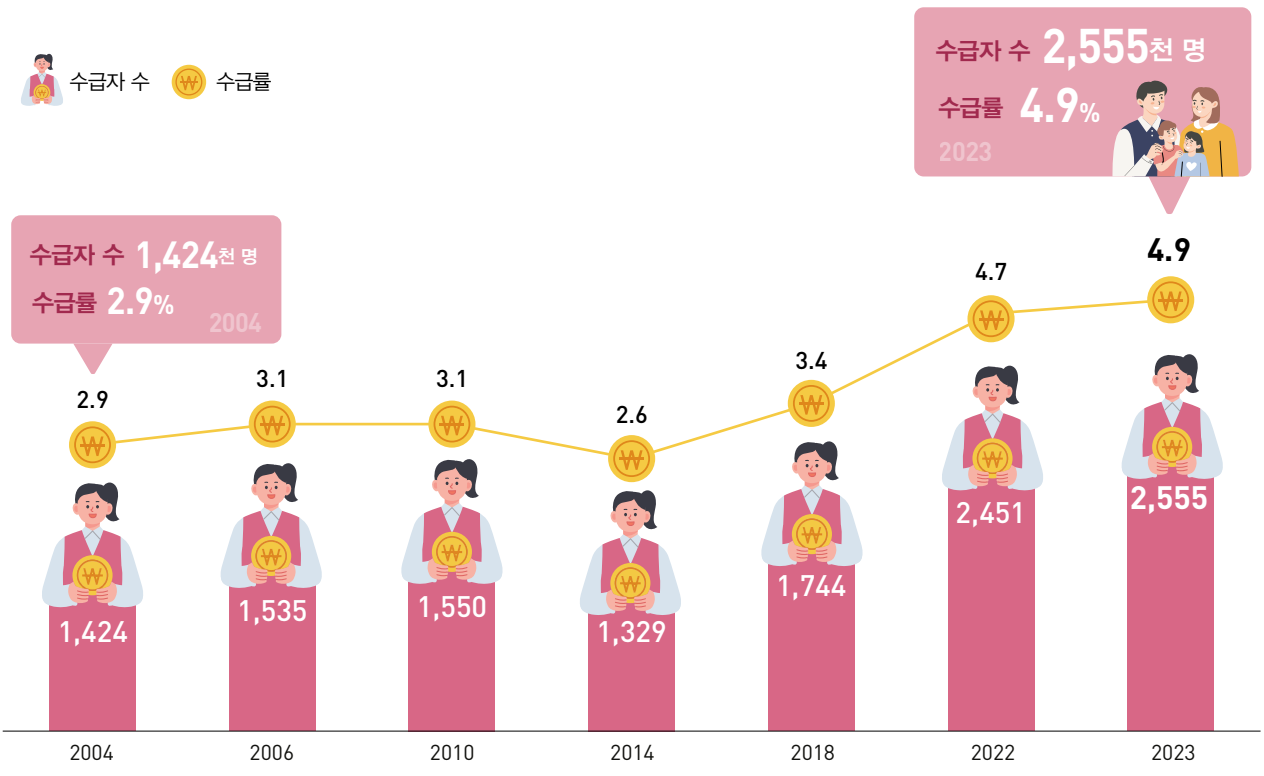
▶ 고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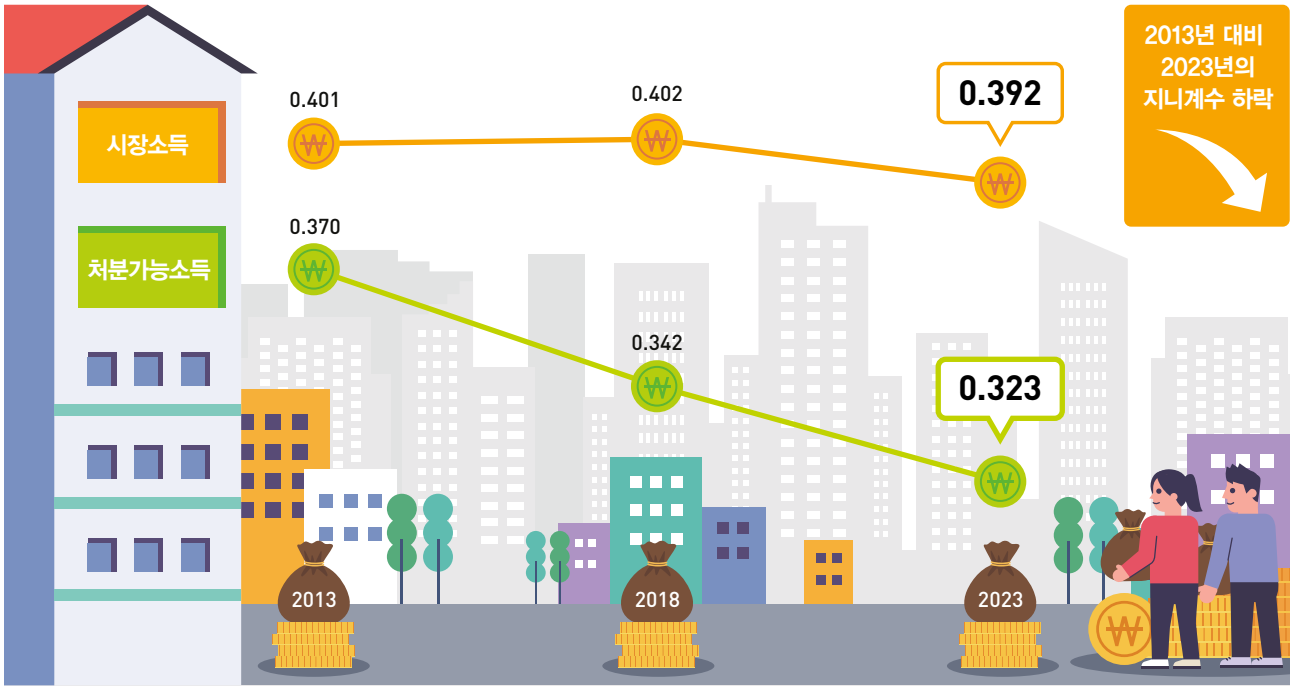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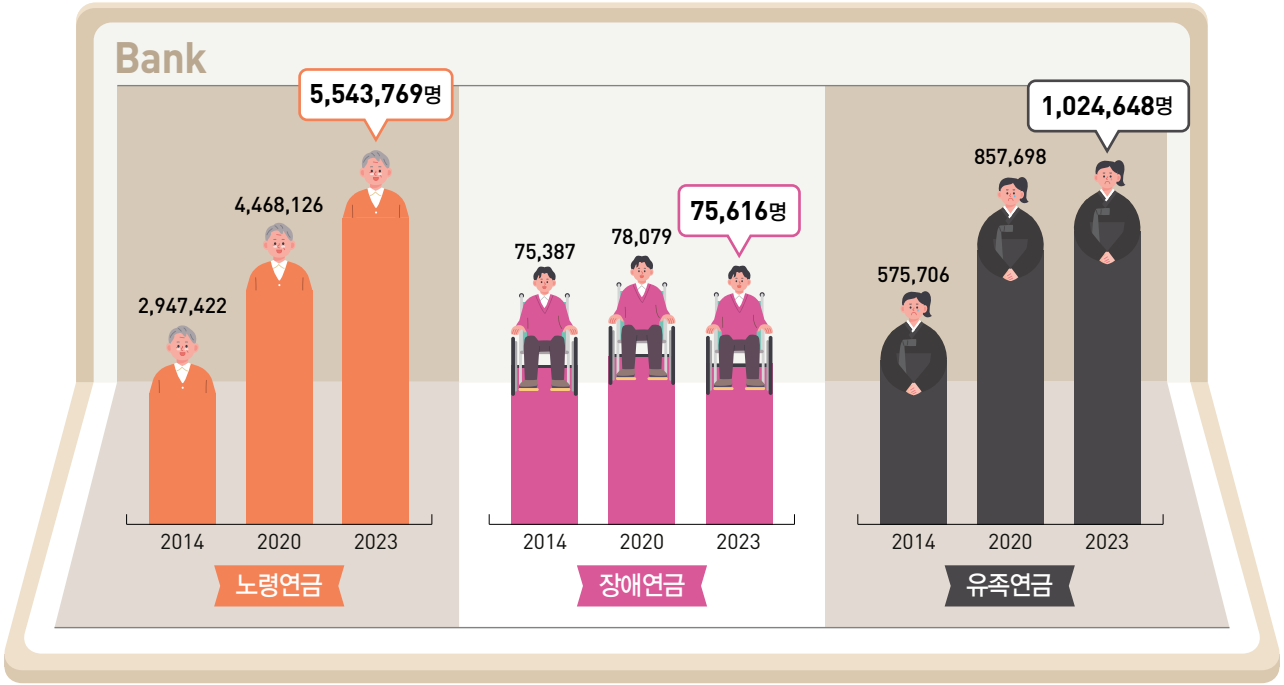


▶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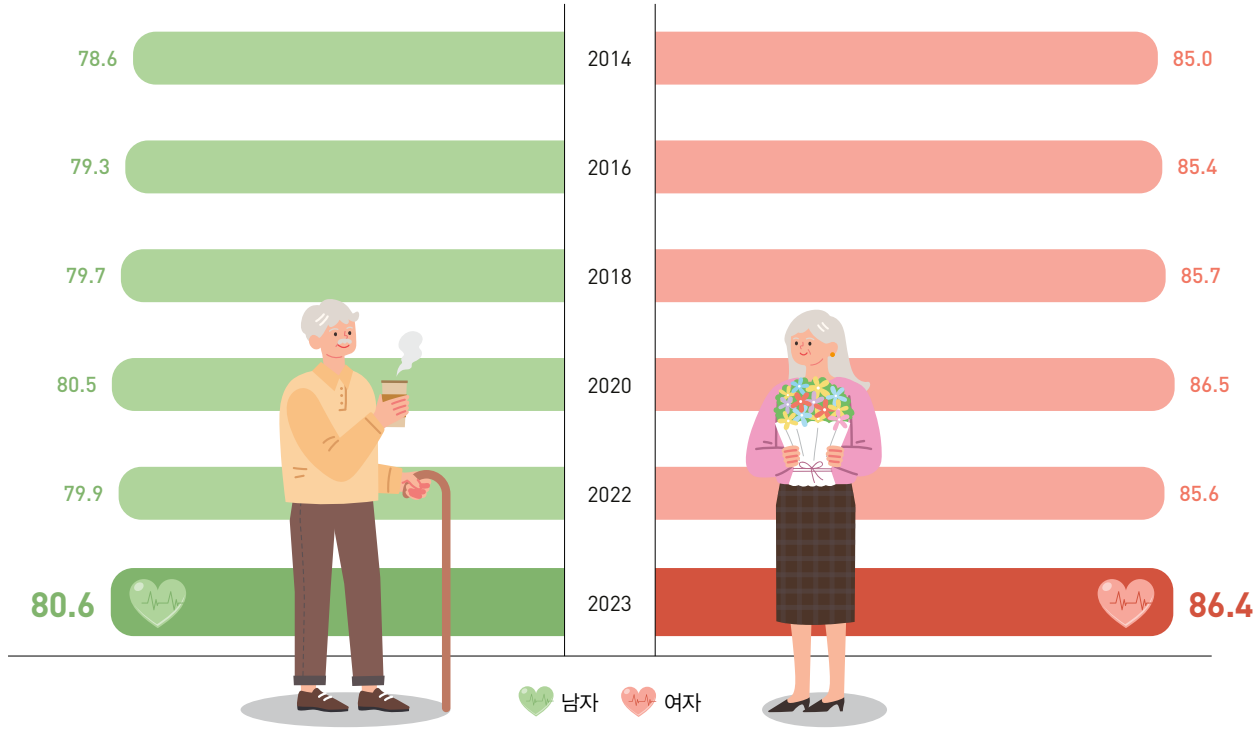
▶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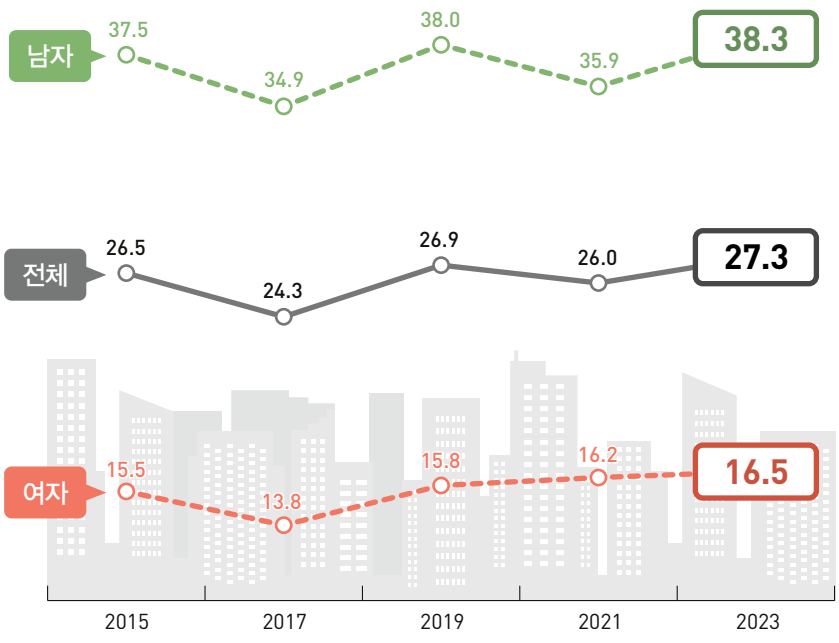
▶ 기대수명

(단위: 년)



▶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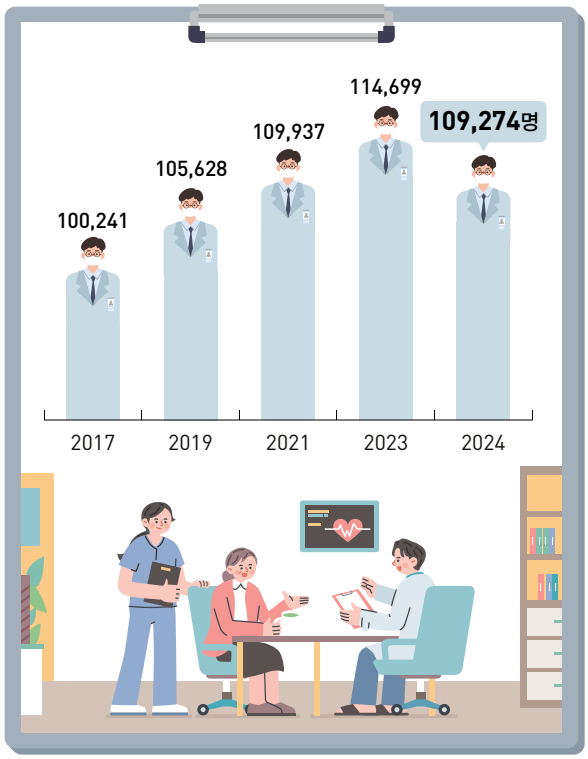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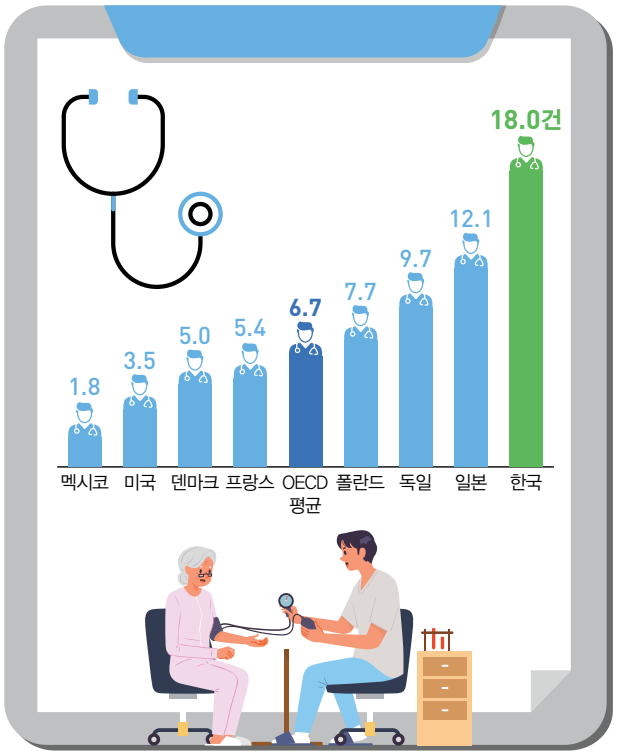
▶ 의사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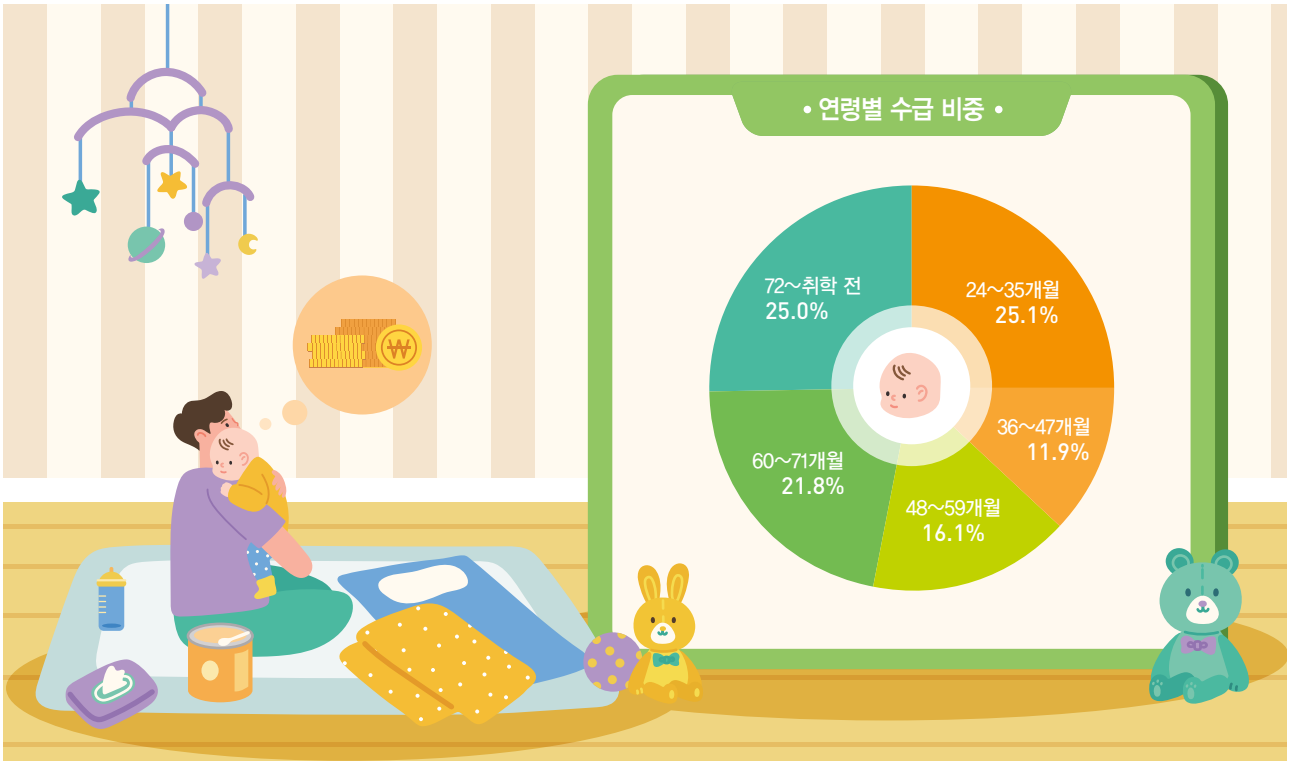
▶ 1인당 의사 진료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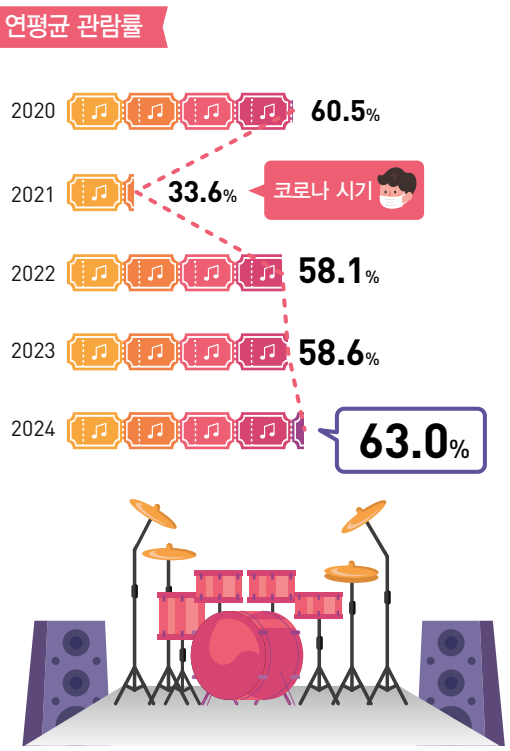
▶ 양육수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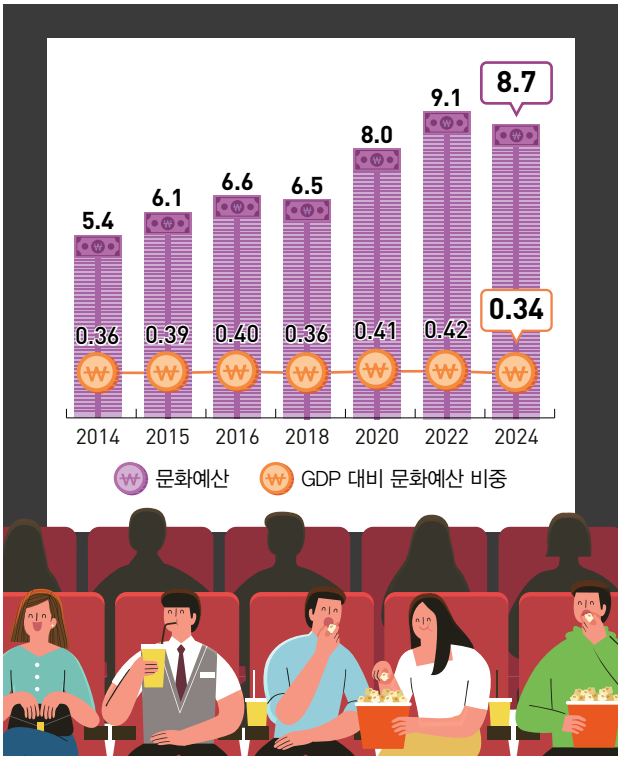
▶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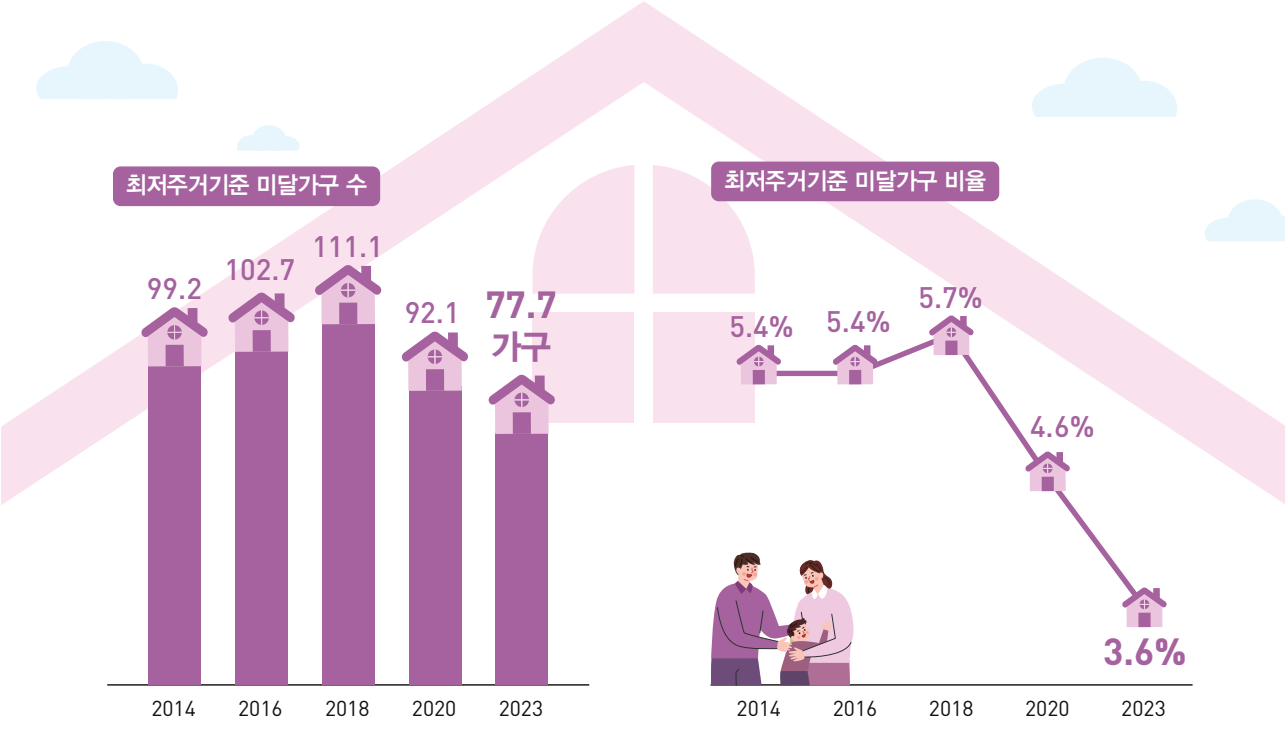
▶ GDP 대비 문화예산 비중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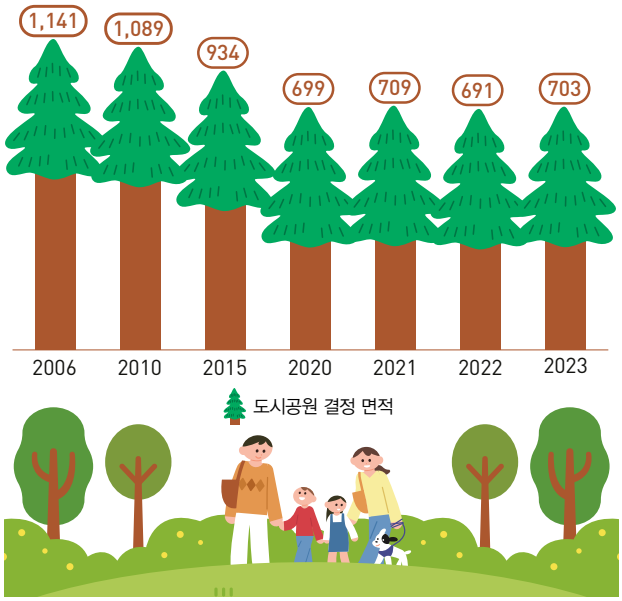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단위: 만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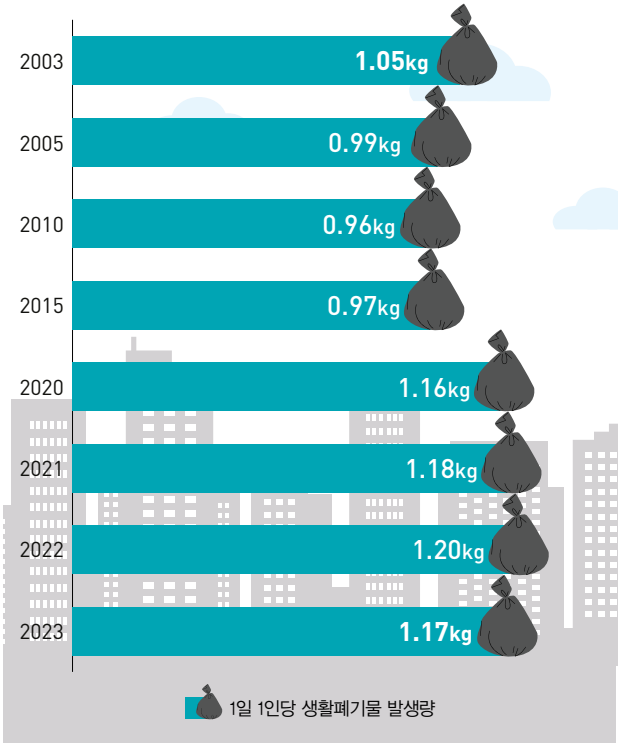
▶ 도시공원 결정 면적

(단위: km^2, m^2/인)



▶ 주민 1인당 생활계 폐기물발생량

(단위: kg/일/인)



사회배경

01 인구성장률
02 총인구
03 인구피라미드
04 부양비
05 합계출산율
06 국내총생산
07 1인당 국민총소득
08 경제성장률
09 소비자물가지수
10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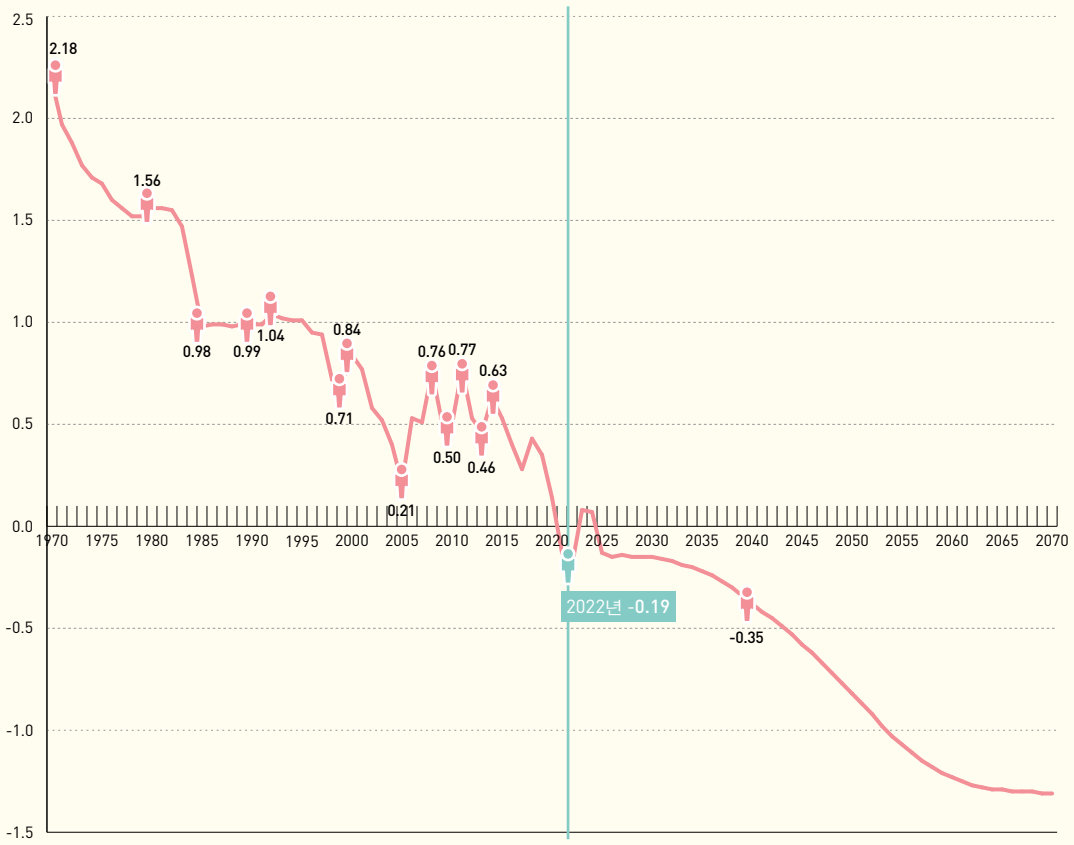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세부영역	지표	
인구	인구성장률	
	총인구	
	인구피라미드	
	부양비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평균 초산연령
거시경제적 여건	국내총생산	
	1인당 국민총소득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국가재정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01 인구성장률
Population growth rate

그림 1 인구성장률 (1970~2070)

(단위: %)



주: 2022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3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 에서 2025.6.17. 인출)

표 1 연도별 인구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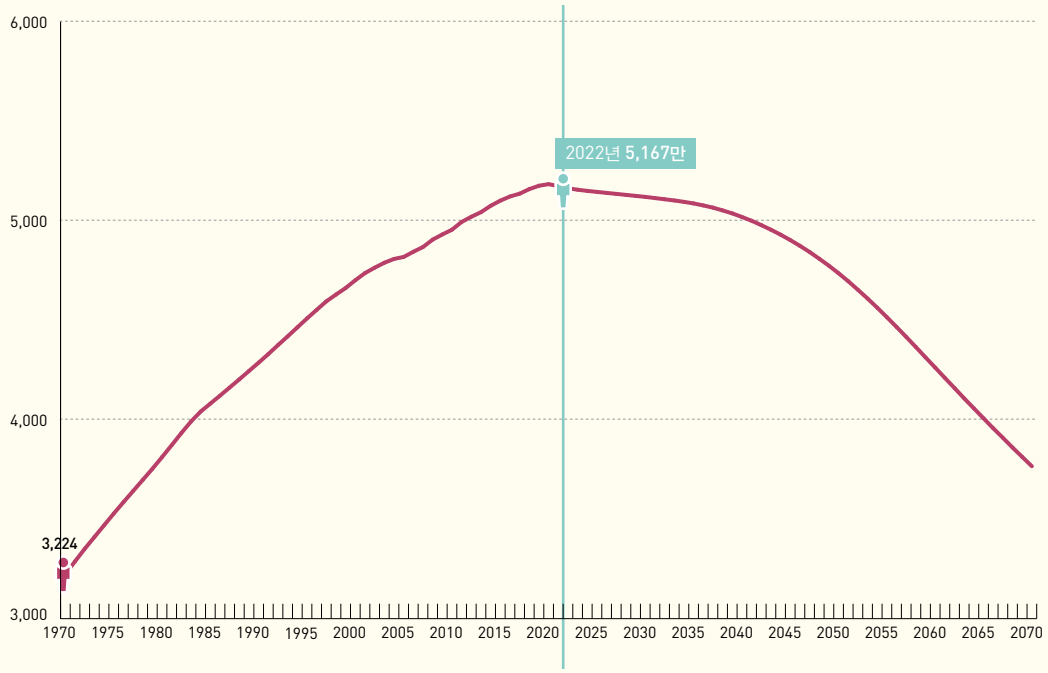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인구성장률	2.18	1.56	0.99	0.84	0.50	0.14	-0.15	-0.38	-0.82	-1.23	-1.31

주: 2022년까지는 확정 인구이며, 2023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 에서 2025.6.17. 인출)

02 총인구
The total population

그림 2 총인구 (1970~2070)

(단위: 만 명)



주: 2022년까지는 확정 인구이며, 2023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 에서 2025.6.17. 인출)

표 2 연도별 총인구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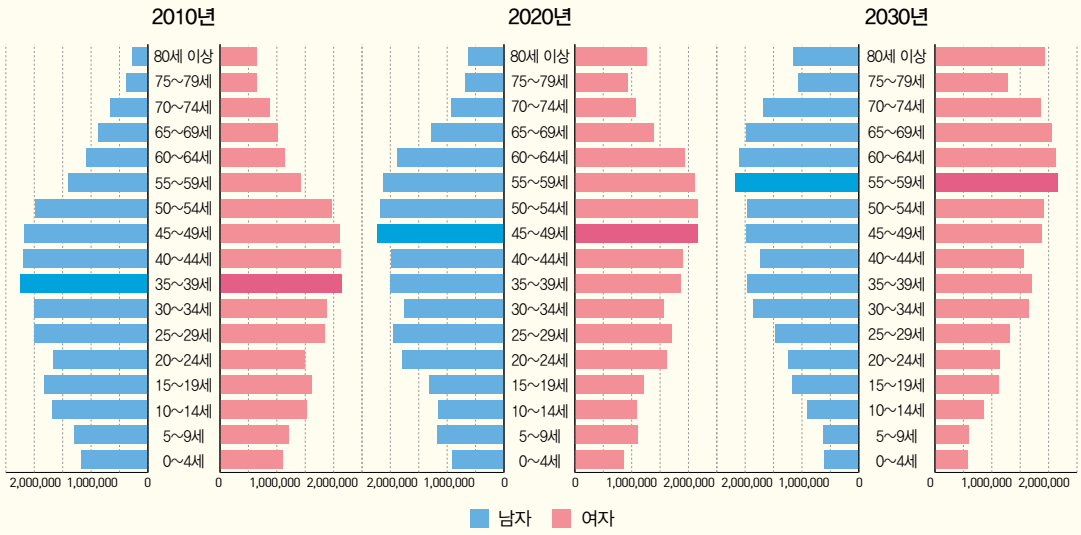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총인구	3,224	3,812	4,287	4,701	4,955	5,184	5,131	5,006	4,711	4,230	3,718

주: 2022년까지는 확정 인구이며, 2023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 에서 2025.6.17. 인출)

03 인구피라미드
Population pyramid

그림 3 연도별 인구피라미드 변화

(단위: 명)



주: 2022년까지는 확정 인구이며, 2023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 에서 2025.6.17. 인출)

표 3 연도별 성별 · 연령별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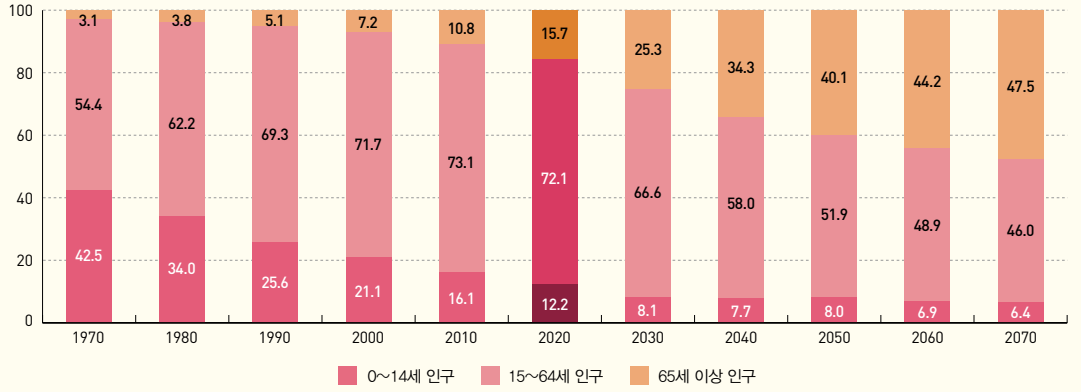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0			2020			2030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계	49,554,112	24,881,114	24,672,998	**51,836,239**	**25,925,697**	**25,910,542**	51,305,713	25,627,273	25,678,440
0~9세	4,769,730	2,473,396	2,296,334	**4,054,901**	**2,079,932**	**1,974,969**	2,396,575	1,225,146	1,171,429
10~19세	6,638,502	3,504,126	3,134,376	**4,769,187**	**2,468,387**	**2,300,800**	4,046,514	2,073,062	1,973,452
20~29세	6,973,154	3,644,461	3,328,693	**7,037,893**	**3,729,483**	**3,308,410**	5,157,518	2,703,130	2,454,388
30~39세	8,264,820	4,253,237	4,011,583	**7,174,782**	**3,745,452**	**3,429,330**	7,156,565	3,817,998	3,338,567
40~49세	8,578,079	4,359,204	4,218,875	**8,257,903**	**4,205,641**	**4,052,262**	7,147,423	3,709,085	3,438,338
50~59세	6,751,678	3,369,738	3,381,940	**8,575,336**	**4,299,097**	**4,276,239**	8,195,954	4,140,945	4,055,009
60~69세	4,090,354	1,954,121	2,136,233	**6,476,602**	**3,156,921**	**3,319,681**	8,262,115	4,074,428	4,187,687
70~79세	2,565,169	1,051,061	1,514,108	**3,598,811**	**1,614,737**	**1,984,074**	5,869,554	2,738,990	3,130,564
80세 이상	922,626	271,770	650,856	**1,890,824**	**626,047**	**1,264,777**	3,073,495	1,144,489	1,929,006

주: 2022년까지는 확정 인구이며, 2023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 에서 2025.6.17. 인출)

그림 4 연도별 연령별 인구피라미드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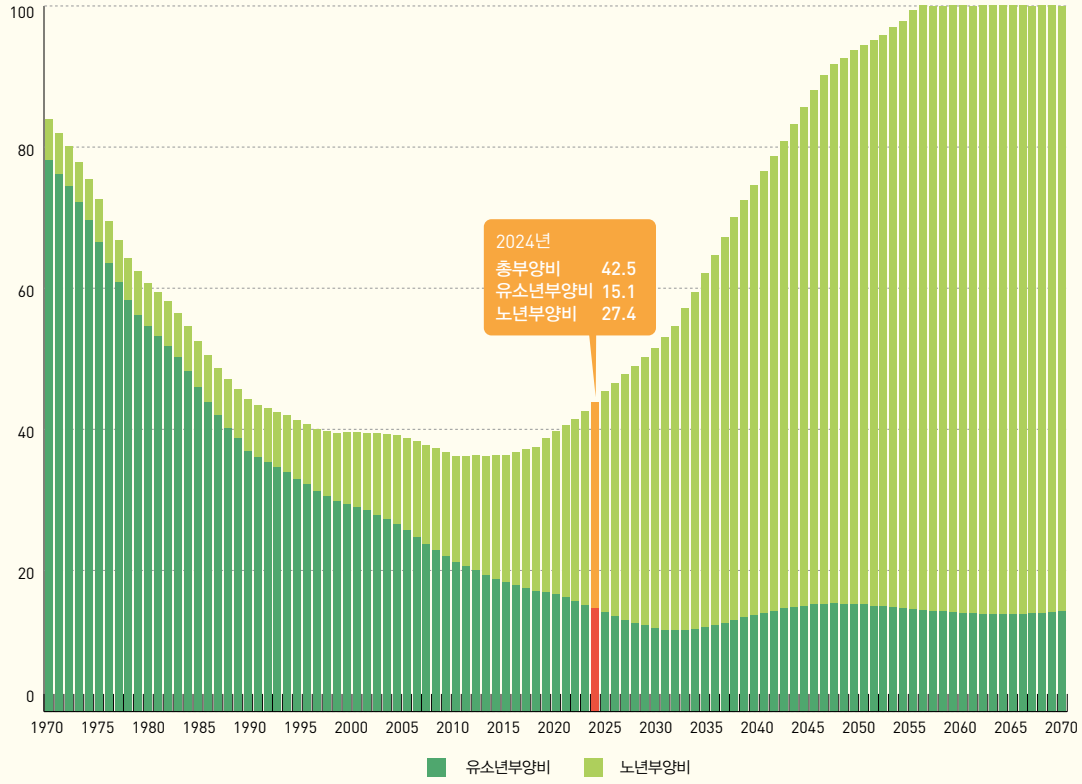


주: 2022년까지는 확정 인구이며, 2023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 에서 2025.6.17. 인출)

04 부양비
Dependency ratio

그림 5 총부양비 (1970~2070)

(단위: %)



주: 1) 중위가정
2) 유소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3)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4) 2022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3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 에서 2025.6.17. 인출)

표 4 연도별 부양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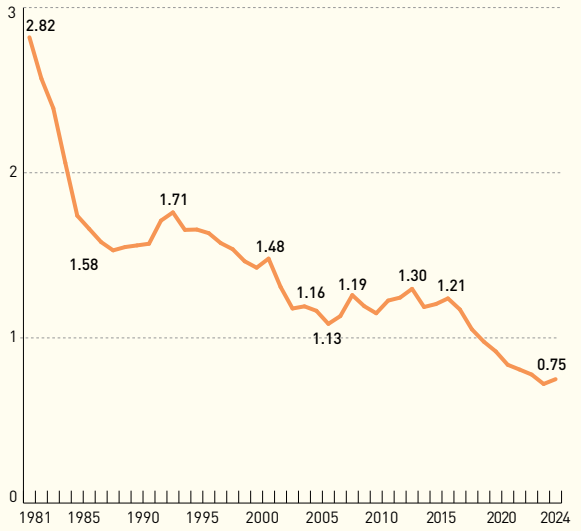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총 부양비	83.8	60.7	44.3	39.5	36.9	38.7	50.2	72.4	92.7	104.5	117.3
유소년 부양비	78.2	54.6	36.9	29.4	22.0	16.9	12.2	13.4	15.3	14.2	14.0
노년 부양비	5.7	6.1	7.4	10.1	14.8	21.8	38.0	59.1	77.3	90.3	103.3

주: 2022년까지는 확정 인구이며, 2023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 에서 2025.6.17. 인출)

05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그림 6 합계출산율 (198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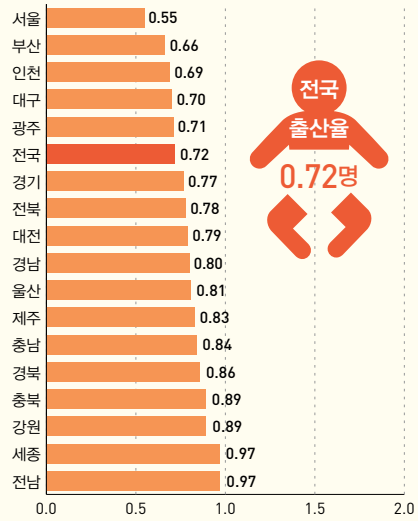
(단위: 가임기 여자 1명당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 에서 2025.6.17. 인출)

그림 7 시도별 합계출산율 (2023)

(단위: 가임기 여자 1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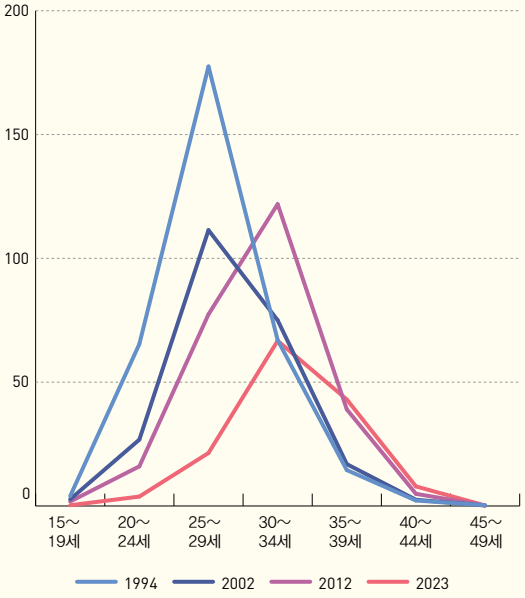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 에서 2025.6.17.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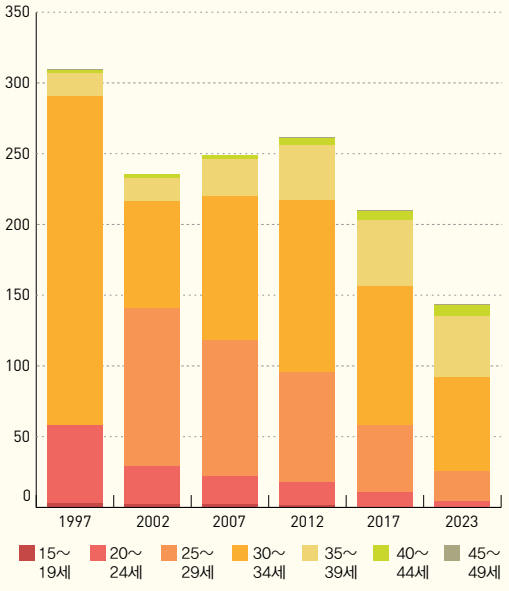
5-1. 연령별 출산율

그림 8 연도별 모의 연령별 출산율

(단위: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 에서 2025.6.17.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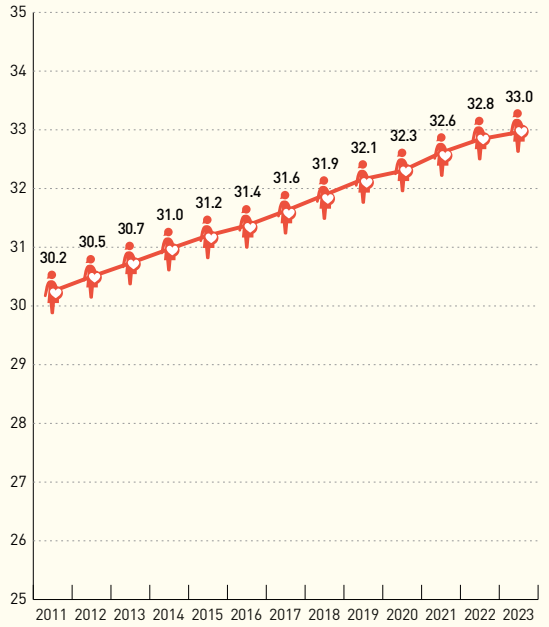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 에서 2025.6.17. 인출)

5-2. 평균 초산연령

그림 9 모의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 (201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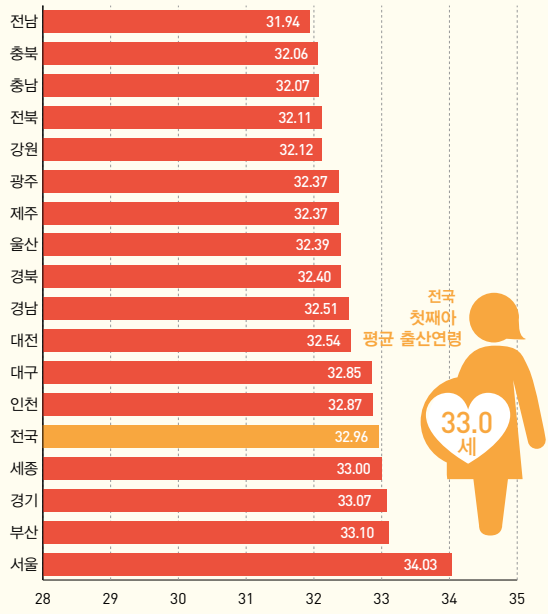
(단위: 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 에서 2025.6.17. 인출)

그림 10 시도별 모의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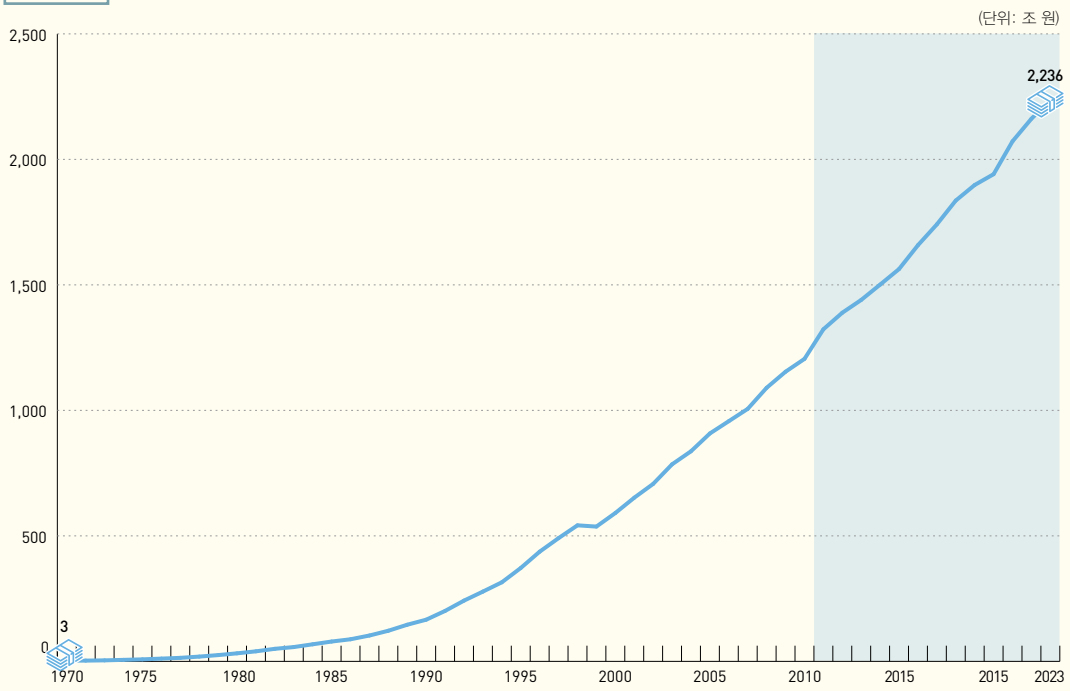
(단위: 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 에서 2025.6.17. 인출)

06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그림 11 국내총생산 (1970~2023)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표 5 연도별 국내총생산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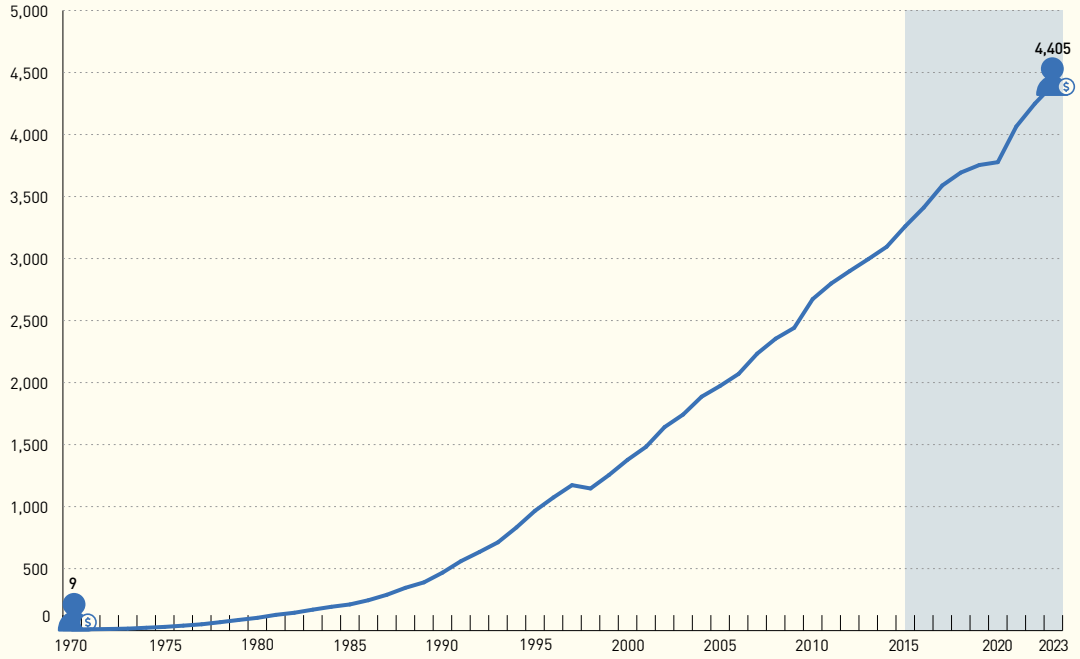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국내총생산	3	11	40	88	201	437	652	957	1,323	1,658	1,941	2,236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07 1인당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그림 12 1인당 국민총소득 (1970~2023)

(단위: 만 원)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표 6 연도별 1인당 국민총소득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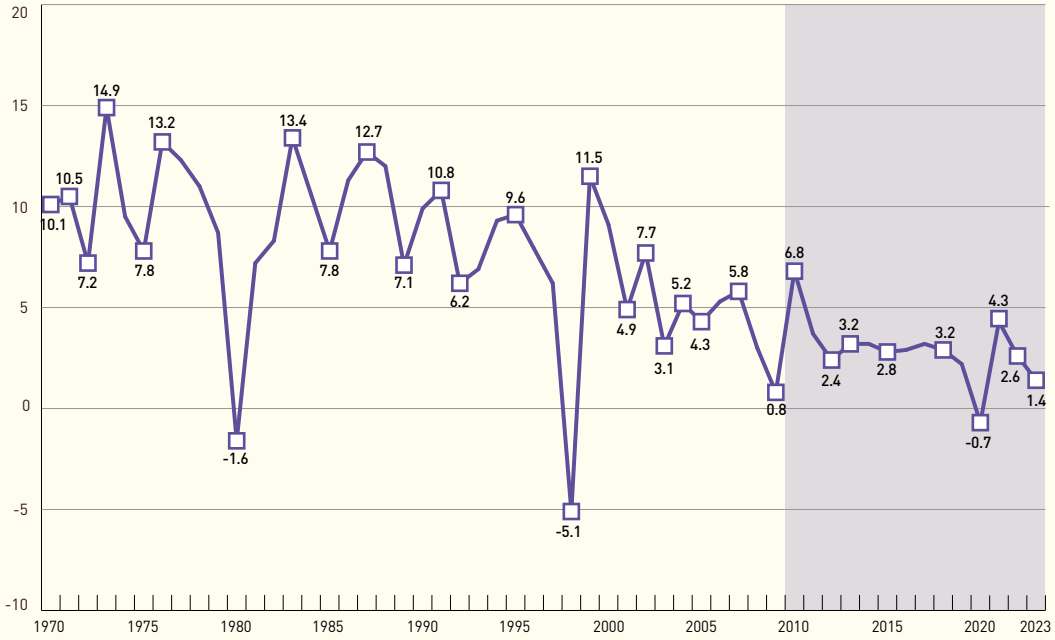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1인당 국민총소득	9	30	104	216	468	969	1,386	1,987	2,669	3,250	3,744	4,405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08 경제성장률
Rate of economic growth

그림 13 경제성장률 (1970~2023)

(단위: %)



주: 표시된 수치는 주요 반등 · 반락 지점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표 7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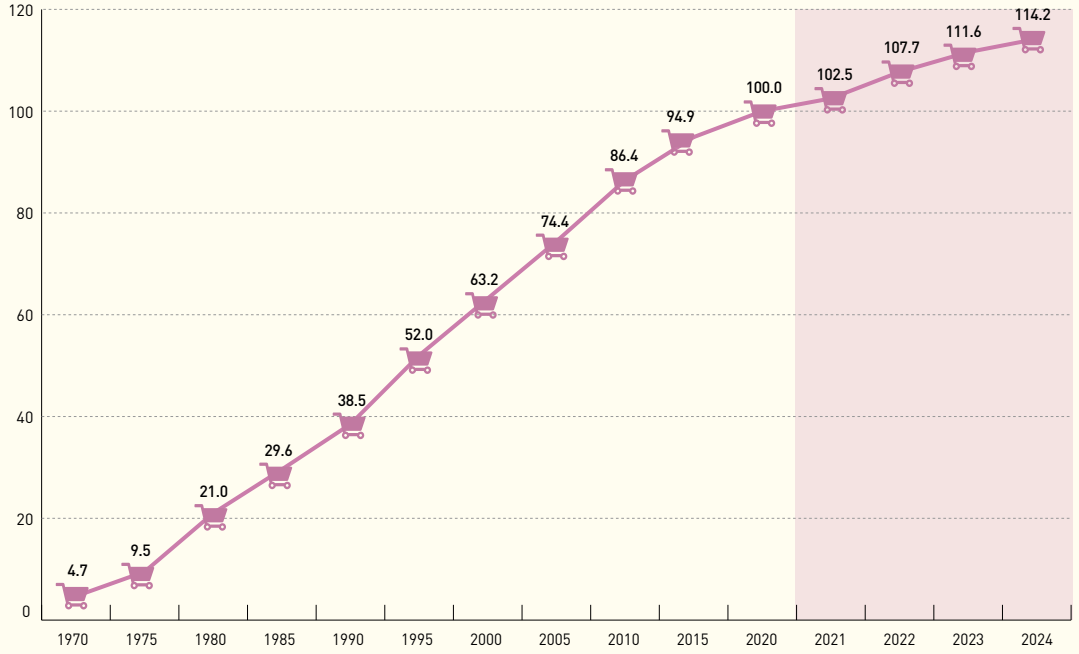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경제 성장률	10.1	7.8	-1.6	7.8	9.9	9.6	9.1	4.3	6.8	2.8	-0.7	1.4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09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그림 14 소비자물가지수 (1970~2024)

(단위: 2020=100)



주: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2020=100)의 총지수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표 8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단위: 2020=100)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2024
소비자물가지수	4.7	9.5	21.0	29.6	38.5	52.0	63.2	74.4	86.4	94.9	100.0	111.6	1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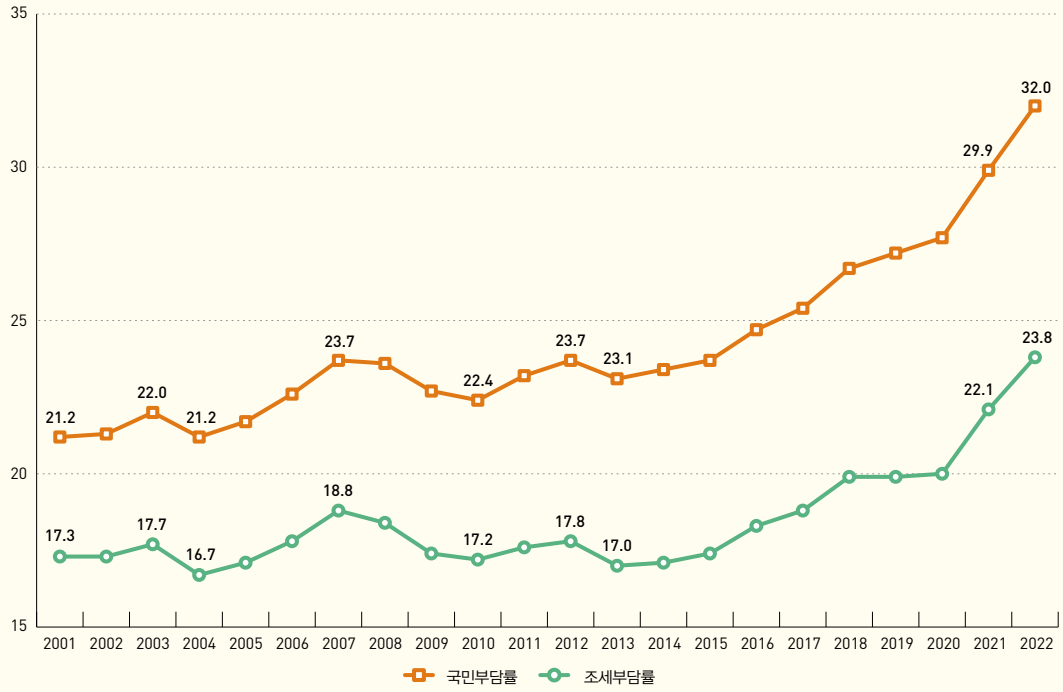
주: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2020=100)의 총지수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10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Total tax revenue as % of GDP & total tax revenue(excluding social security) as % of GDP

그림 15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2001~2022)

(단위: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data-explorer.oecd.org 2025.6.17. 인출)

표 9 연도별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단위: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민부담률	21.3	22.0	21.2	21.7	22.6	23.7	23.6	22.7	22.4	23.2	23.7	23.1	23.4	23.7	24.7	25.4	26.7	27.2	27.7	29.9	32.0
조세부담률	17.3	17.7	16.7	17.1	17.8	18.8	18.4	17.4	17.2	17.6	17.8	17.0	17.1	17.4	18.3	18.8	19.9	19.9	20.0	22.1	23.8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data-explorer.oecd.org 2025.6.17. 인출)

1

가족

01 1인가구
02 노인가구
03 한부모가구
04 국내외 입양아동 수
05 다문화가구
06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07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08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봄
09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10 조이혼율
11 가족부문 공공사회복지 지출
12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3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다양한 가족	1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국내외 입양아동 수	입양아동 관련 급여 수급자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다문화가구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일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봄	
가족 갈등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조이혼율	조혼인율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가족지원서비스	가족부문 공공사회복지 지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1
대 표

1인가구

Single-person household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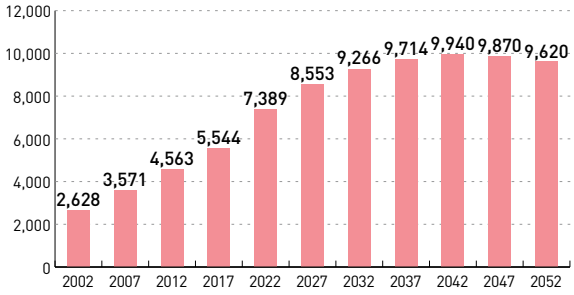
1인가구란 일반가구 중 1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집계된 1인으로 구성된 가구 수

그림 1-1 연도별 1인가구 수 및 추계 (2002~2052)

(단위: 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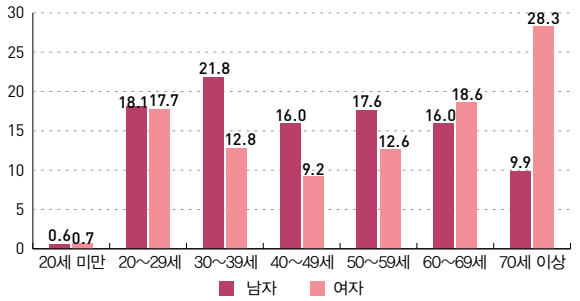


주: 1) 장래가구추계는 최근의 가구변동 추이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이 실현되었을 때 예상되는 가구에 대한 전망치이므로 향후 사회 경제 정책적인 환경변화 및 사회적 행동 양식 변화에 따라 전망치와 실적치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장래가구추계 기준가구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차이가 있음(자료의 기준시점이 가구추계는 7.1일, 인구총조사는 11.1일임).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2~2052년, 2024.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1-2 가구주의 성별 · 연령별 1인가구 비율 (2024)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4. (https://kosis.kr 에서 2025.9.2. 인출)

표 1-1 연도별 · 가구주의 성별 가구유형 및 1인가구 비율

(단위: 천 가구, %)

연도	성별	일반가구	1인가구	1인가구 비율 (%)
2000	전체	14,312	2,224	15.5
	남자	11,659	945	8.1
	여자	2,653	1,279	48.2
2005	전체	15,887	3,171	20.0
	남자	12,402	1,418	11.4
	여자	3,485	1,753	50.3
2010	전체	17,339	4,142	23.9
	남자	12,842	1,924	15.0
	여자	4,497	2,218	49.3
2015	전체	19,111	5,203	27.2
	남자	13,461	2,593	19.3
	여자	5,650	2,610	46.2
2020	전체	20,927	6,643	31.7
	남자	14,081	3,304	23.5
	여자	6,845	3,339	48.8
2021	전체	21,448	7,166	33.4
	남자	14,249	3,584	25.2
	여자	7,200	3,582	49.8
2022	전체	21,774	7,502	34.5
	남자	14,346	3,751	26.1
	여자	7,427	3,751	50.5
2023	전체	22,073	7,829	35.5
	남자	14,449	3,922	27.1
	여자	7,624	3,907	51.3
2024	전체	22,294	8,045	36.1
	남자	14,505	4,026	27.8
	여자	7,789	4,019	51.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9.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 방식)	1925	2015	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20	2024	1년
	장래가구추계	2002	2024	2~3년

02 대 표

노인가구

Elderly household

지표 정의

- 노인인구 비율(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인구 고령화의 정도와 변화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노인가구는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를 의미한다.
  - 노인가구는 노인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독거가구(노인단독가구), 부부 중 1인 이상이 노인인 노인부부가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 동거가구, 그 외의 기타 다양한 가구형태로 구분하여 파악되며, 노인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대비 가구형태별 응답 노인 수의 비율로 측정된다.

측정 산식

- 노인인구 비율(고령인구 비율) = $\frac{\text{65세 이상 인구}}{\text{전체 인구수}} \times 100$
- 가구형태별 노인가구 비율 = $\frac{\text{노인의 가구형태별 노인 수}}{\text{65세 이상 전체 노인 수}} \times 100$
- 조손가구 수 =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및 조부 또는 조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수

표 1-2 연도별 · 성별 노인인구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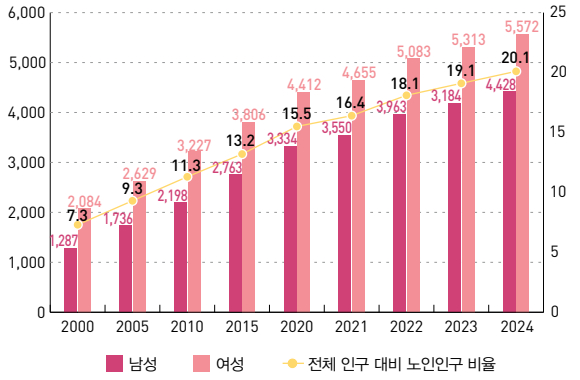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연도	노인인구	전체인구 대비 비중	성별			
			남성	노인인구 대비 비중	여성	노인인구 대비 비중
2000	3,372	7.3	1,287	38.2	2,084	61.8
2005	4,365	9.3	1,736	39.8	2,629	60.2
2010	5,425	11.3	2,198	40.5	3,227	59.5
2015	6,569	13.2	2,763	42.1	3,806	57.9
2020	7,746	15.5	3,334	43.0	4,412	57.0
2021	8,206	16.4	3,550	43.3	4,655	56.7
2022	9,046	18.1	3,963	43.8	5,083	56.2
2023	9,497	19.1	4,184	44.1	5,313	55.9
2024	10,000	20.1	4,428	44.3	5,572	55.7

주: 내국인 기준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 에서 2025.9.2. 인출)

그림 1-3 연도별 · 성별 노인인구 수 및 비율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 에서 2025.9.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 방식)	1925	2015	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20	2024	1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23	3년

표 1-3 일반특성별 · 가구형태별 노인가구 비중 (2023)

(단위: %)

구분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 가구	계
합계		32.8	55.2	10.3	1.7	100.0
성	남자	19.6	71.1	7.2	2.2	100.0
	여자	43.2	42.8	12.7	1.4	100.0
연령	65~69세	25.9	62.6	8.6	2.9	100.0
	70~74세	28.4	63.3	7.1	1.2	100.0
	75~79세	35.4	54.8	8.7	1.0	100.0
	80~84세	38.7	46.9	13.5	1.0	100.0
	85세 이상	52.4	27.5	18.9	1.2	100.0
지역	동부	31.9	55.3	11.3	1.5	100.0
	읍 · 면부	35.3	55.0	7.3	2.4	100.0

주 : 노인가구는 노인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독거가구(노인단독가구), 부부 중 1인 이상이 노인인 노인부부가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 동거가구, 그 외의 기타 다양한 가구 형태로 구분하여 파악되며, 노인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대비 가구형태별 응답 노인 수의 비율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2023.

표 1-4 연도별 · 가구형태별 노인가구 비중 (2004~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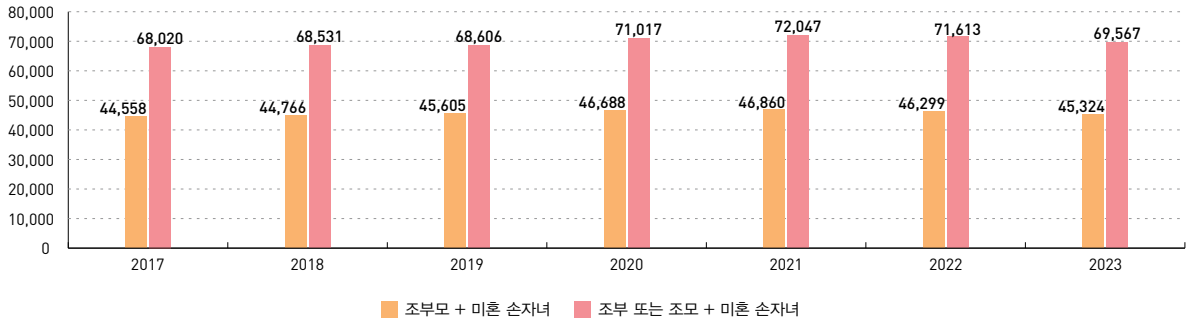
연도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 가구	계
2004	20.6	34.4	38.6	4.4	100.0
2008	25.7	39.4	30.2	4.7	100.0
2011	18.6	47.7	28.6	5.0	100.0
2014	23.0	44.5	28.4	4.0	100.0
2017	23.6	48.4	23.7	4.4	100.0
2020	19.8	58.4	20.1	1.7	100.0
2023	32.8	55.2	10.3	1.7	100.0

주: 노인가구는 노인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독거가구(노인단독가구), 부부 중 1인 이상이 노인인 노인부부가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 동거가구, 그 외의 기타 다양한 가구 형태로 구분하여 파악되며, 노인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대비 가구형태별 응답 노인 수의 비율로 측정됨.

자료: 1994, 2004년, 보건복지부,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각 연도; 2008년 이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4 연도별 · 가구형태별 조손가구 수 (2017~2023)

(단위: 가구)



주: 조부모와 손자녀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으며, 손자녀는 미혼자녀만 해당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03 대 표

한부모가구

Single-parent household

지표 정의

한부모가구는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주말부부 등 제외)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집계된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수

유의사항

1.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부모가족'을 의미한다.
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한부모가구는 한부모의 법적인 혼인상태가 미혼, 이혼 및 사별이며 미혼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표 1-5 일반가구, 한부모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수 (2017~2023)

(단위: 천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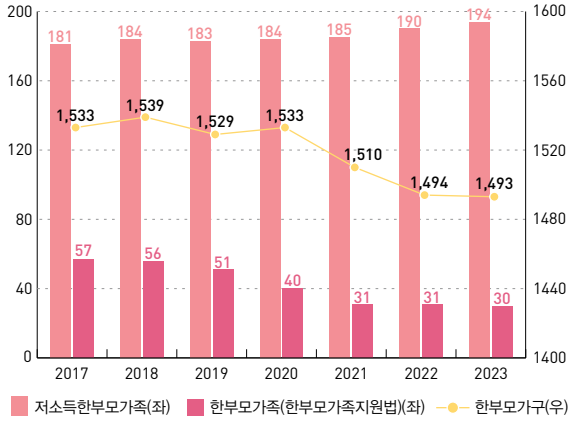
연도	일반가구	한부모가구[1]		한부모가족지원 가구	
		계	전체가구 대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2]	한부모가족[3]
2017	19,674	1,533	7.8	181	57
2018	19,979	1,539	7.7	184	56
2019	20,343	1,529	7.5	183	51
2020	20,927	1,533	7.3	184	40
2021	21,448	1,510	7.0	185	31
2022	21,774	1,494	6.9	190	31
2023	22,073	1,493	6.8	194	30

주: 1) 한부모 가구는 인구총조사 상 '한부모의 혼인상태가 미혼, 이혼 및 사별이며 미혼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일반가구'를 의미하므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과는 상이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3)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시 보장받는 가구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4)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과 한부모가족 현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 말 기준 자료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내부자료), 2023.

그림 1-5 한부모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수 (2017~2023)

(단위: 천 가구)



주: 1) 한부모 가구는 인구총조사 상 '미혼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 이혼 및 사별인 모 또는 부(원거리 거주 부부 제외)의 가구'를 의미하므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과는 상이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3)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시 보장받는 가구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4)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과 한부모가족 현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 말 기준 자료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내부자료), 2023.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20	2023	1년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023	1년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2023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23.

04
대 표

국내외 입양아동 수

Number of adopted children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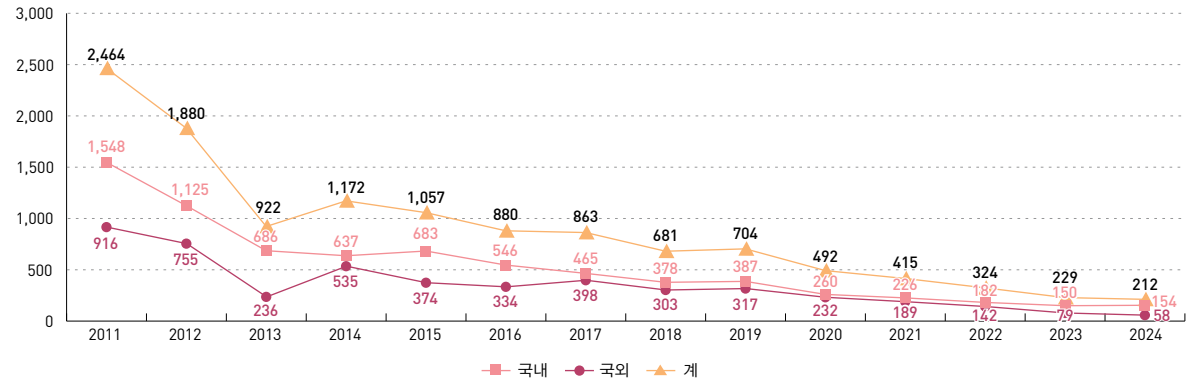
국내 및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국내 및 국외로 입양된 아동의 총합

그림 1-6 국내외 입양아동 수 (201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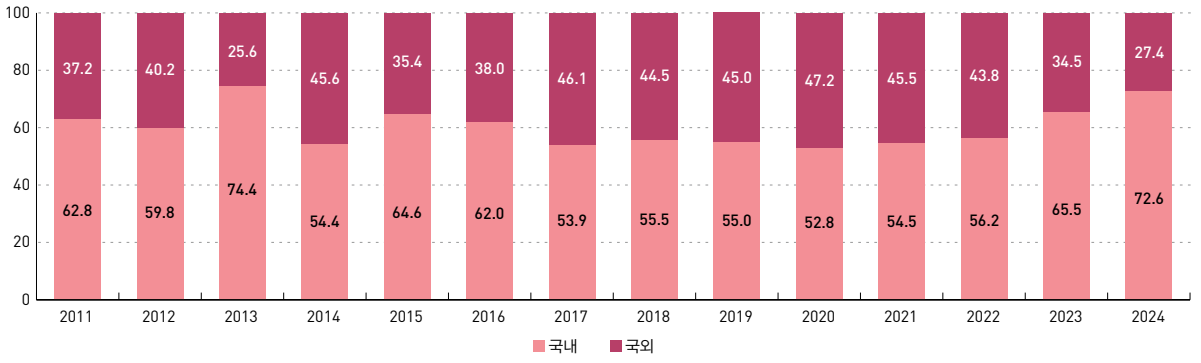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1-7 국내외 입양아 수 및 입양 비율 (2011~2024)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1994	2024	1년

04-1
연 관

입양아동 관련 급여 수급자

Number of recipients of benefits related to adopted children

지표 정의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 16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여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국내 입양 가정(장애아동은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을 집계한다.

측정 산식

- 입양 관련 급여 수급자의 총합

표 1-6 입양아동 급여 수급자 수 (2017~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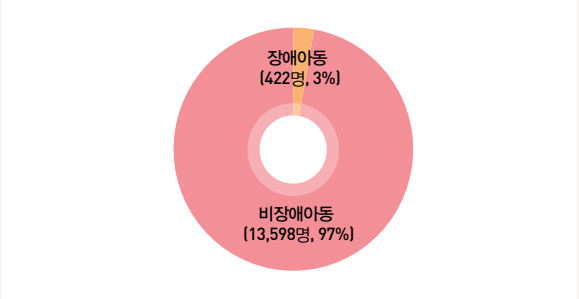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입양아동 급여 수급자 수	13,741	13,926	14,045	14,239	14,304	14,207	14,087	14,020

주: 시설 수급자 포함, 각 연도, 12월 기준

그림 1-8 장애 유무별 입양 관련 급여 수급자 수 (2024)

(단위: 명, %)



주: 시설 수급자 포함

표 1-7 시도별 · 월별 입양아동 급여 수급자 수 (2024)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4,061	14,054	14,045	14,048	14,034	14,017	14,021	14,034	14,036	14,030	14,010	14,016
서울	1,749	1,738	1,743	1,742	1,742	1,736	1,743	1,745	1,742	1,744	1,758	1,759
부산	733	733	731	728	731	725	723	722	720	720	719	719
대구	460	461	462	464	468	472	473	477	479	476	475	475
인천	896	891	888	890	886	886	888	891	892	894	882	881
광주	411	414	413	411	412	413	414	415	415	415	419	418
대전	344	348	345	347	347	347	348	347	347	340	338	338
울산	242	240	241	242	242	242	241	241	240	242	241	238
세종	162	164	166	164	165	165	166	167	167	167	164	167
경기	4,225	4,231	4,231	4,231	4,225	4,218	4,207	4,215	4,214	4,226	4,215	4,221
강원	504	506	507	511	512	512	514	513	516	517	514	516
충북	421	422	419	418	418	415	413	414	415	418	420	416
충남	745	742	742	740	741	738	739	736	736	741	742	743
전북	702	700	703	706	701	701	701	701	702	704	703	700
전남	567	564	564	566	566	565	566	566	568	566	564	566
경북	656	660	658	657	652	654	660	662	661	641	638	640
경남	984	984	975	976	971	973	969	965	965	963	965	965
제주	260	256	257	255	255	255	256	257	257	256	253	254

주: 시설 수급자 포함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입양아동 관련 급여 수급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4	월

04-2
연 관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childcare service related to adopted children

지표 정의

만 5세 이하 입양아동 중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수급자(입양특례법에 의거)를 집계한다.

측정 산식

• 입양아동 관련 급여 수급자 중 만 5세 이하 아동의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 수급자 수

표 1-8 만 5세 이하 입양아동 관련 수급자 중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수급자 수 (2021~2024)

(단위: 명)

시도	2021				2022				2023				2024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국	1,752	382	1,005	365	1,402	243	837	322	1,127	123	660	344	919	86	539	294
서울	239	63	146	30	202	41	121	40	178	21	109	48	144	15	89	40
부산	103	26	58	19	76	22	33	21	57	10	27	20	41	5	24	12
대구	62	11	34	17	46	8	23	15	40	3	25	12	36	2	26	8
인천	91	23	52	16	80	15	51	14	69	8	43	18	61	6	30	25
광주	54	15	20	19	42	6	24	12	32	2	21	9	30	2	15	13
대전	38	7	19	12	26	4	12	10	20	1	13	6	16	2	9	5
울산	33	5	22	6	25	3	15	7	19	4	7	8	18	5	6	7
세종	22	2	15	5	18	-	13	5	15	1	8	6	12	1	6	5
경기	557	142	303	112	469	90	287	92	379	50	237	92	314	29	198	87
강원	59	6	37	16	38	2	25	11	26	1	12	13	22	-	15	7
충북	42	5	30	7	37	4	24	9	26	2	16	8	25	2	11	12
충남	90	17	51	22	65	11	34	20	47	2	29	16	34	2	23	9
전북	73	8	44	21	57	4	43	10	44	1	21	22	30	1	16	13
전남	56	7	37	12	43	3	27	13	38	1	26	11	28	2	17	9
경북	97	15	58	24	84	15	44	25	64	6	29	29	47	4	24	19
경남	110	27	58	25	74	12	47	15	60	7	27	26	49	6	23	20
제주	26	3	21	2	20	3	14	3	13	3	10	-	12	2	7	20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3	2024	월

표 1–9 시도별 · 월별 만 5세 이하 입양아동 관련 수급자 수 (2024)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전국	1,102	1,112	1,099	1,074	1,054	1,036	1,015	999	970	957	939	919	1,023
서울	171	176	174	171	171	170	166	161	158	151	150	144	164
부산	54	56	53	52	51	49	48	45	44	44	42	41	48
대구	38	39	38	37	38	37	38	38	36	36	36	36	37
인천	67	67	67	69	65	65	63	63	61	61	62	61	64
광주	31	31	33	32	33	35	34	34	32	31	30	30	32
대전	21	21	21	20	20	20	21	20	19	19	19	16	20
울산	19	20	21	21	20	19	19	19	18	18	18	18	19
세종	14	15	16	15	14	14	14	14	14	13	11	12	14
경기	371	367	365	359	351	348	338	337	327	328	319	314	344
강원	23	25	25	24	24	22	21	21	21	21	21	22	23
충북	25	25	25	24	23	23	23	24	24	24	26	25	24
충남	48	45	44	41	40	38	38	36	36	35	34	34	39
전북	42	42	41	40	38	36	34	33	32	31	30	30	36
전남	39	39	39	39	39	34	33	32	29	29	27	28	34
경북	63	65	59	55	54	53	54	54	53	50	48	47	55
경남	62	65	64	63	62	61	58	55	53	54	54	49	58
제주	14	14	14	12	11	12	13	13	13	12	12	12	13

05
대 표

다문화가구

Multicultural household

지표 정의

다문화가구는 귀화 · 인지의 방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결혼이민자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의미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인지 ·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내국인(귀화 · 인지) 또는 외국인(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자녀가 포함된 가구의 수**

유의사항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구성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이며, 외국인주민 자녀 수와 지역별 통계는 외국인 주민 현황 기준(행정안전부, 각 연도)임에 유의한다. 외국인 주민 현황의 경우 2015년 11월 1일 이후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에서 외국인 주민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작성방식 및 통계기준일을 변경하였음에 유의한다.

표 1-10 가구 구성별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2022~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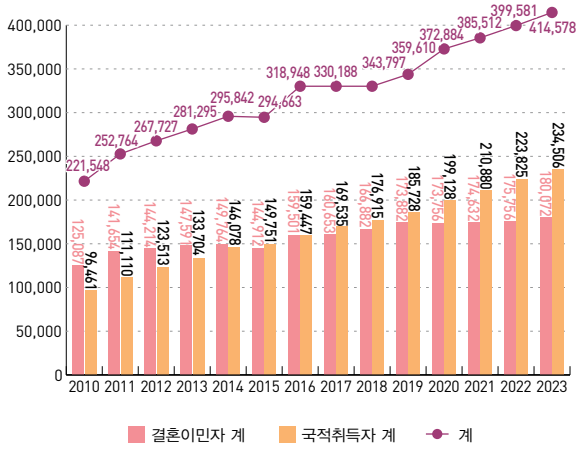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천 명, %)

구분	2022 가구(A) (천 가구)	2022 가구원 (천 명)	2023 가구(B) (천 가구)	2023 가구원 (천 명)	증감 (B-A) (천 가구)	증감율 (%)
내국인(귀화 · 인지)	77	155	82	164	5	1.1
내국인(출생) + 내국인(귀화 · 인지)	94	337	97	349	3	1.0
내국인(출생) + 외국인(결혼이민자)	125	400	129	401	4	1.0
내국인(출생) + 다문화자녀	44	138	47	146	2	1.1
내국인(귀화) + 외국인(결혼이민자)	23	72	24	75	1	1.0
기타	35	57	36	57	0	1.0
합계	399	1,158	416	1,205	16	1.0

주: 1) 내국인(귀화 · 인지) : 국적법상 귀화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외국인(결혼이민자): 내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외국인
3) 내국인(출생)+다문화자녀: 내국인(출생) 가구주와 다문화자녀가 같이 생활하는 가구
4) 기타가구: 결혼이민자+기타외국인, 결혼이민자+다문화자녀 등 그 외 다문화 가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1-9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2010~2023)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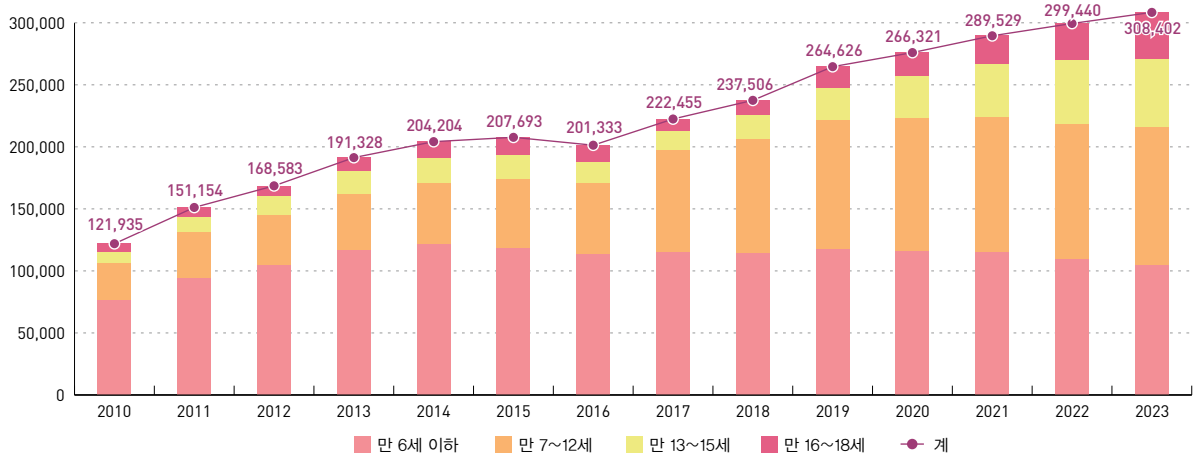
주: 1) '16년 통계 기준 변경: 종전 혼인귀화자와 기타귀화자로 나뉘어있던 한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세부구분 삭제됨(기타귀화자 중에도 한국인과 결혼한 귀화자가 많이 포함되므로 구별할 실익이 적음).
2)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11.4.4.개정, '11.10.05 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 귀화)도 다문화 가족에 포함됨.
3) 2015년부터 조사방식이 전통적 현장조사방식에서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변경 (통계기준은 11.1일 0시), 조사시점 기준 전후 3개월 중 91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제외
4) 국적취득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2006	2023	1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20	2023	1년

그림 1-10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2010~2023)

(단위: 명)



주: 1) 외국인주민 자녀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를 지칭함.
2) 2016년 외국인주민 자녀는 201,333명으로 귀화하였거나 아직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가 9,874명(4.9%),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내출생 자녀가 191,459명(95.1%)임.
3)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2016년부터 추가됨.
4) 2015년 11월부터 조사방식이 전통적 현장조사방식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되어 2014년도까지 매년 1월 1일자 기준이었던 통계 시점이 2015년부터 11월 1일자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나,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통계 자료는 2015년까지 1월 기준의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2016년도부터 11월 1일 기준의 수치를 사용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표 1-11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2011~2023)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11월)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252,764	267,727	281,295	295,842	294,663	318,948	330,188	343,797	359,610	372,884	385,512	399,581	414,578
서울	69,694	70,381	71,364	73,801	68,093	73,914	73,753	74,717	75,489	75,430	75,866	77,569	78,324
부산	9,705	10,305	10,915	11,529	11,380	11,853	12,337	12,620	13,255	13,787	14,040	14,265	14,640
대구	6,261	6,664	7,131	7,580	7,743	8,403	8,815	9,176	9,712	10,143	10,323	10,660	11,145
인천	14,939	16,029	17,026	18,222	18,552	20,988	22,626	24,435	26,211	27,871	29,579	31,552	33,630
광주	4,283	4,590	4,960	5,336	5,603	6,001	6,284	6,455	6,932	7,206	7,384	7,645	7,818
대전	4,758	5,123	5,337	5,575	5,610	5,899	6,106	6,232	6,516	6,766	6,892	6,989	7,300
울산	4,225	4,561	5,049	5,497	5,759	6,217	6,296	6,411	6,648	6,843	6,888	7,007	7,194
세종	-	-	653	650	894	1,053	1,225	1,351	1,490	1,607	1,683	1,766	1,850
경기	71,174	77,128	81,731	86,337	86,327	95,848	100,529	107,141	113,100	118,883	125,235	131,136	136,968
강원	5,793	6,103	6,381	6,590	6,571	6,768	6,989	7,212	7,659	7,991	8,235	8,577	9,008
충북	6,982	7,417	7,941	8,370	9,126	9,433	9,882	10,391	10,983	11,486	11,884	12,390	13,045
충남	11,294	12,348	12,649	13,460	14,035	14,863	15,636	16,396	17,323	17,978	18,930	19,800	20,965
전북	8,523	9,068	9,626	9,951	10,237	10,568	10,900	11,165	11,595	12,004	12,175	12,499	12,990
전남	9,489	10,115	10,657	11,129	11,502	11,749	11,906	12,040	12,722	13,148	13,454	13,759	14,229
경북	10,461	11,067	11,856	12,620	12,986	13,640	13,990	14,444	15,125	15,756	16,301	16,753	17,304
경남	13,062	14,443	15,352	16,217	16,799	17,929	18,725	19,106	19,996	20,778	21,246	21,649	22,373
제주	2,121	2,385	2,667	2,978	3,446	3,822	4,189	4,505	4,854	5,207	5,397	5,565	5,795

주: 1) '16년 통계 기준 변경: 종전 혼인귀화자와 기타귀화자로 나뉘어있던 한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세부구분 삭제됨(기타귀화자 중에도 한국인과 결혼한 귀화자가 많이 포함되므로 구별할 실익이 적음).
2) 2015년 11월부터 조사방식이 전통적 현장조사방식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되어 2014년도까지 매년 1월 1일자 기준이었던 통계시점이 2015년부터 11월 1일자 기준으로 변경됨.
3) 조사시점 기준 전후 3개월 중 91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05-1
연 관

북한이탈주민

North korean defectors

지표 정의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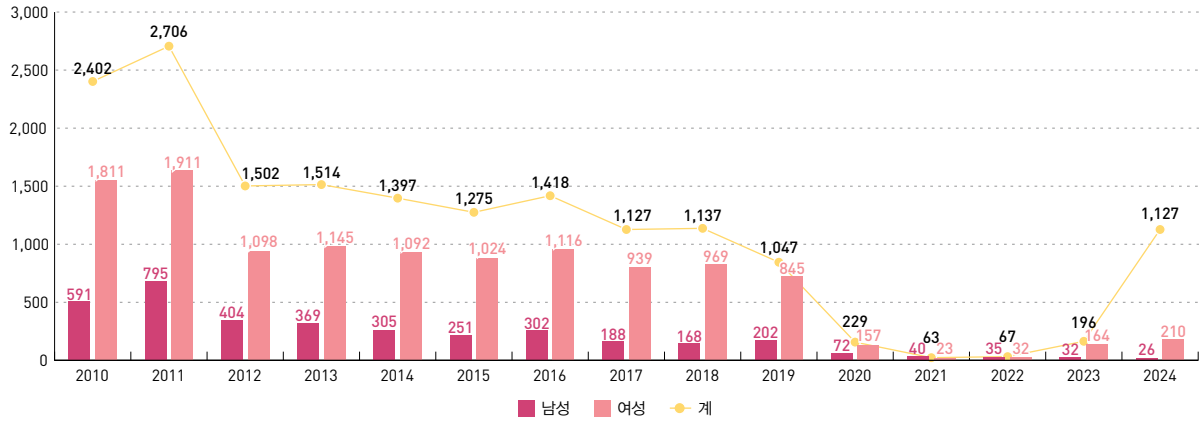
측정 산식

-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이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 수

유의사항 현재 북한이탈주민가구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구 수를 파악하는 대신 가구원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를 제시한다. 해당 연도의 통계는 국내에 입국한 시점을 기준으로 익년도 6월 말에 작성된다(입국조사 과정을 거쳐 북한이탈주민임이 확인되는데 약 4~5개월 소요).

그림 1-11 성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01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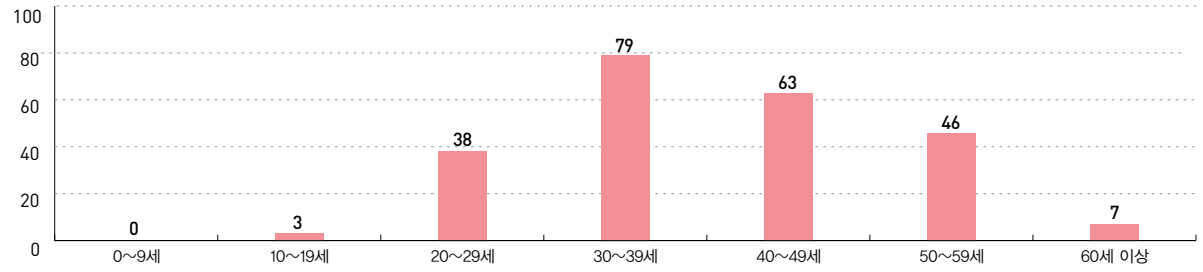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12 연령대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024)

(단위: 명)



주: 연령대별 입국 최종 인원임.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내부자료),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내부자료)	1998	2024	1년

06
대 표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maternity leave benefits

지표 정의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처음으로 지급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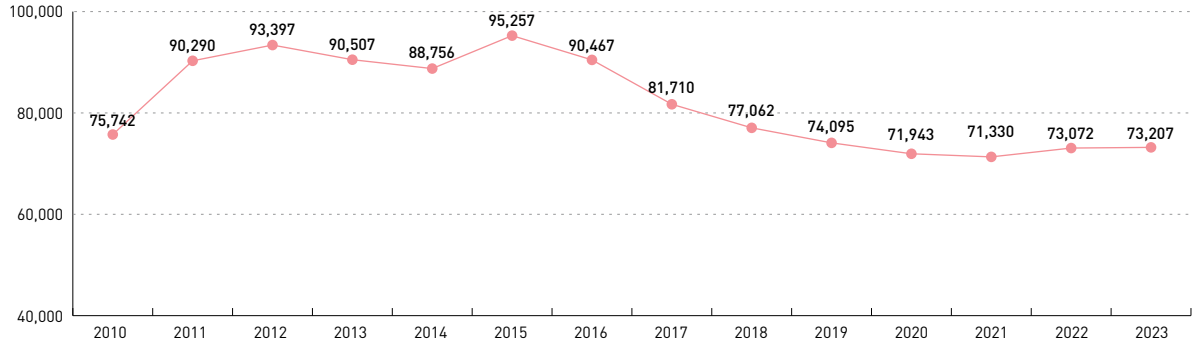
- '산전후휴가'라는 명칭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도입된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임신 ·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보장된 제도이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 90일(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480만 원 한도, 다태아 120일분 640만 원 한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측정 산식

- **출산전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

그림 1-13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201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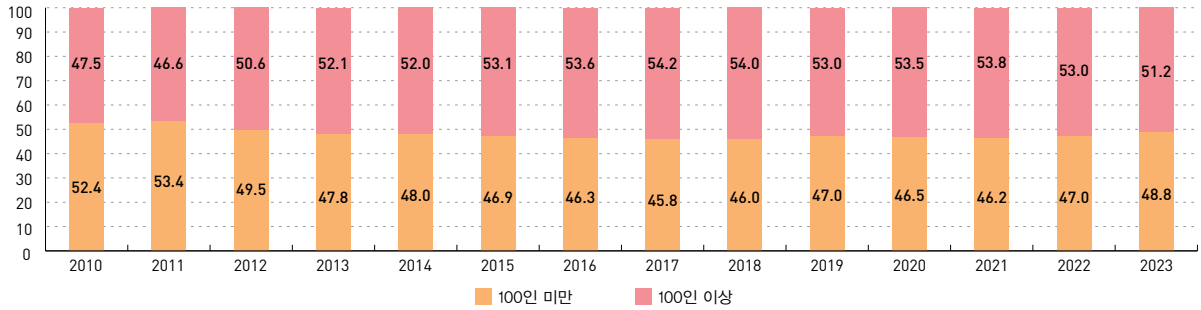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연보, 각 연도.

그림 1-14 사업장 규모별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비중 (2010~2023)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997	2023	1년

07
대 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parental leave benefits

지표 정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급여를 처음으로 지급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1항에 의해 규정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한다. 육아휴직급여는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4개월째부터 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에 해당되는 급여이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게 된다.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2019.01.01.부터 상한액 월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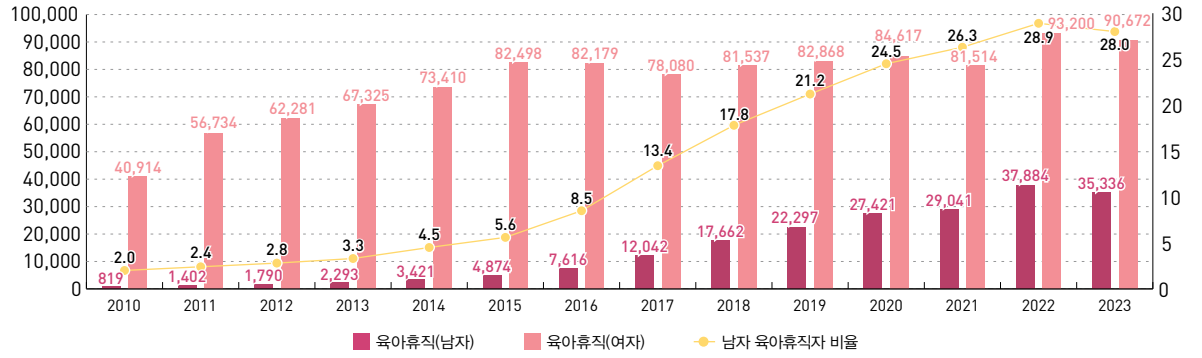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

유의사항 육아휴직자 수의 중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전년도부터 당해 연도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년도 휴직자로 정의하고 당해 연도 휴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림 1-15 성별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수 (201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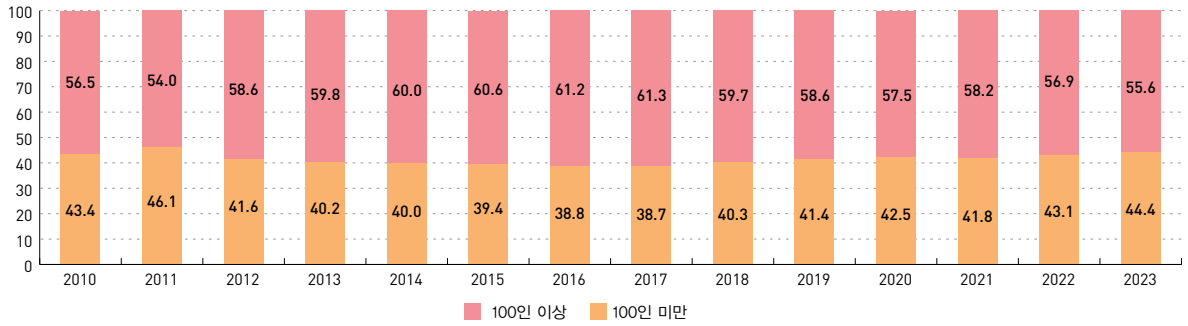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연보, 각 연도.

그림 1-16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비중 (2010~2023)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997	2023	1년

08 대 표

가정관리 및 가족·가구원 돌봄

Housework and family and household member care

지표 정의

가정관리(자신의 가족 또는 가구의 가정생활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행동) 및 가족 · 가구원 돌봄(가족 또는 가구원을 보수를 받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살피는 일체의 행동)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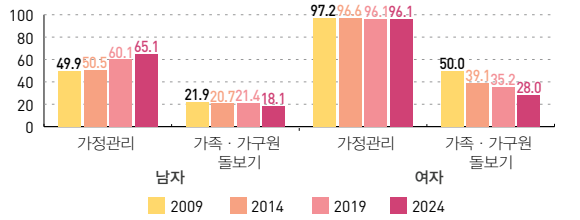
구분	1999~2009	2014	2019
가정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 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관리, 애완동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음식준비,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 관리 및 유지, 반려동물 및 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가족·가구원 돌보기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 함께 사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사는 그 외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그 외 가족 돌보기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장기 돌봄 필요 성인 돌보기, 독립적인 성인 돌보기

측정 산식

- **전체 평균 시간 : 전체 집계대상자(특정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 포함)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특정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행위자)의 비율**
- **행위자 평균 시간 : 특정 행동을 한 사람(행위자)들의 평균 시간**

그림 1-17 기혼자의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보기' 행위자 비율 (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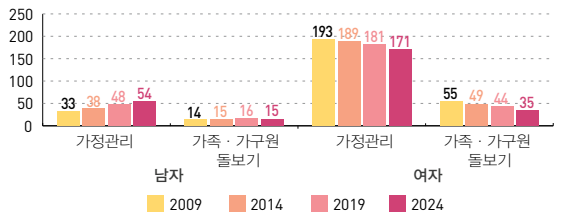
(단위: %)



주: 2014년까지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은 19세 이상을 대상 (동거 포함)으로 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9.2. 인출)

그림 1-18 기혼자의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보기' 평균 시간 (요일 평균)

(단위: 분)



주: 2014년까지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은 19세 이상을 대상 (동거 포함)으로 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9.2. 인출)

표 1-12 가구 유형별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보기' 행위자 비율과 평균 시간 (2024)

(단위: 시간:분, %)

가구 유형별	행동분류별	요일 평균 행위자 비율 (%)			요일 평균 시간 (시간:분)		
		계	남편	아내	계	남편	아내
맞벌이가구	가정관리	79.1	62.6	96.3	92	44	142
	가족·가구원 돌보기	25.4	19.2	31.9	22	15	29
외벌이(남편)가구	가정관리	75.1	52.6	98.9	134	36	238
	가족·가구원 돌보기	36.3	25.6	47.8	49	21	79
외벌이(아내)가구	가정관리	89.7	82.9	95.8	120	155	143
	가족·가구원 돌보기	17.0	13.7	19.8	14	11	17

주: 평균 시간과 비율은 초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상위 분류의 값이 하위 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2014년도 생활시간 조사보고서, 2025. 9. 2. (https://kosis.kr에서 2025.9.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1999	2024	5년

09
대 표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Rate of domestic violence and reporting rate

지표 정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지난 1년간 전체 가구 중 가정폭력(부부폭력)이 발생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가정폭력 신고율은 가정폭력 발생 건수 중에서 경찰에 신고한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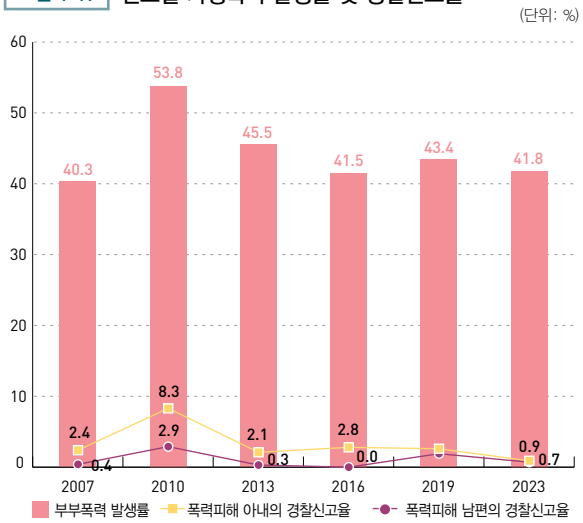
• 가정폭력은 가족 해체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본 지표를 통해 여성,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가정폭력 발생률 = $\frac{\text{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 가구}}{\text{조사 대상 가구}}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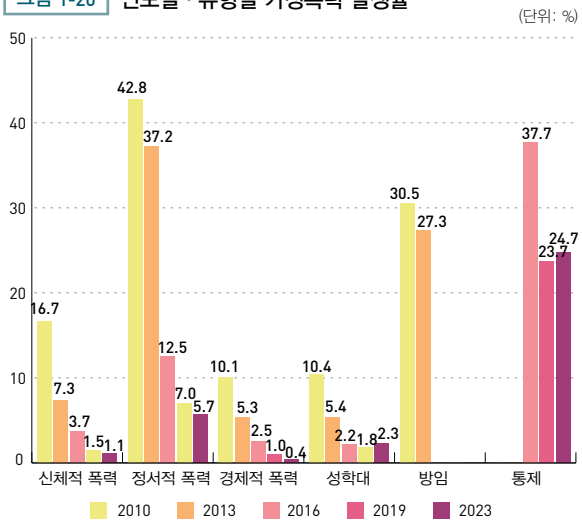
• 가정폭력 신고율 = $\frac{\text{경찰에 신고한 건수}}{\text{가정폭력 발생 건수}} \times 100$

그림 1-19 연도별 가정폭력 발생률 및 경찰신고율



주: 1) 2007년, 2010년, 2013년에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개념이며, 2016년도 조사부터 방임을 제외하고 통제를 포함함.
2) 2010년 조사에서 '상대방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의심하는 등의 폭력 유형'인 통제 발생률은 제외함.
3) 2016년 이후 부부 폭력발생률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통제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임.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20 연도별 · 유형별 가정폭력 발생률



주: 1) 중복응답이 반영된 값임.
2) 신체적 폭력은 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을 모두 포함함.
3) 2007년, 2010년, 2013년에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개념이며, 2016년도 조사부터 방임을 제외하고 통제를 포함함.
4) 2010년 조사에서 '상대방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의심하는 등의 폭력 유형'인 통제 발생률은 제외함.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4	2023	3년

10 대 표

조이혼율

Crude divorce rate

지표 정의

1년 동안 신고된 총 이혼 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 당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연간 총 이혼 건수}}{\text{당해 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0$$

유의사항 조이혼율은 특정 연도의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의 비율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이혼율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은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이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인구(2010년 이후는 거주 불명 등록자 제외)를 사용한다. 이혼 통계자료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동안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한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결과이다.

표 1-13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 (201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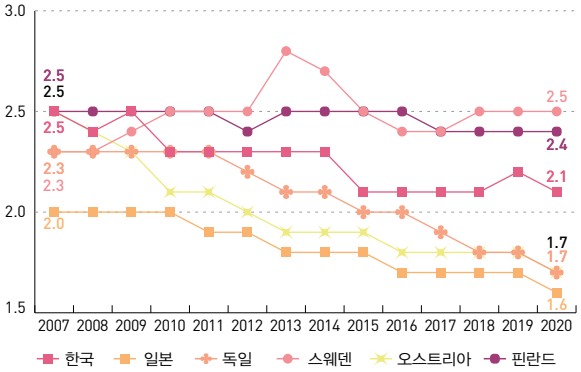
(단위: 천 건, 인구 천 명당 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혼 건수 (천 건)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106.0	108.7	110.8	106.5	101.7	93.2	92.4	91.2
조이혼율	2.3	2.3	2.3	2.3	2.3	2.1	2.1	2.1	2.1	2.2	2.1	2.0	1.8	1.8	1.8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1-21 주요 국가별 조이혼율 (200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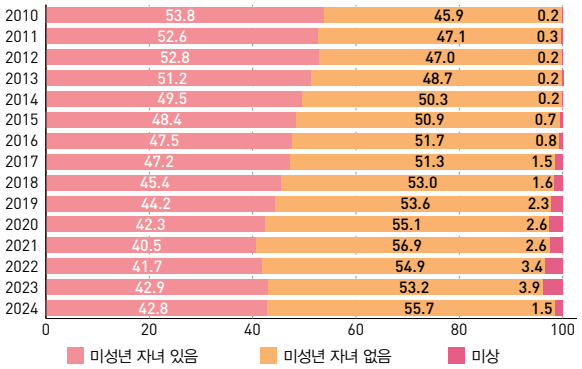
(단위: 인구 천 명당 건)



자료: 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data.oecd.org에서 2025.6.17. 인출)

그림 1-22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구성비 (2010~2024)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4.6.17. 인출)

표 1-14 평균 이혼연령 (2010~2024)

(단위: 세)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남자	45.0	45.4	45.9	46.2	46.5	46.9	47.2	47.6	48.3	48.7	49.4	50.1	49.9	49.9	50.4
여자	41.1	41.5	42.0	42.4	42.8	43.3	43.6	44.0	44.8	45.3	46.0	46.8	46.6	46.6	47.1

주: 평균 이혼연령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24	1년

10-1
연 관

조혼인율

Crude marriage rate

지표 정의

1년 동안 신고된 총 혼인 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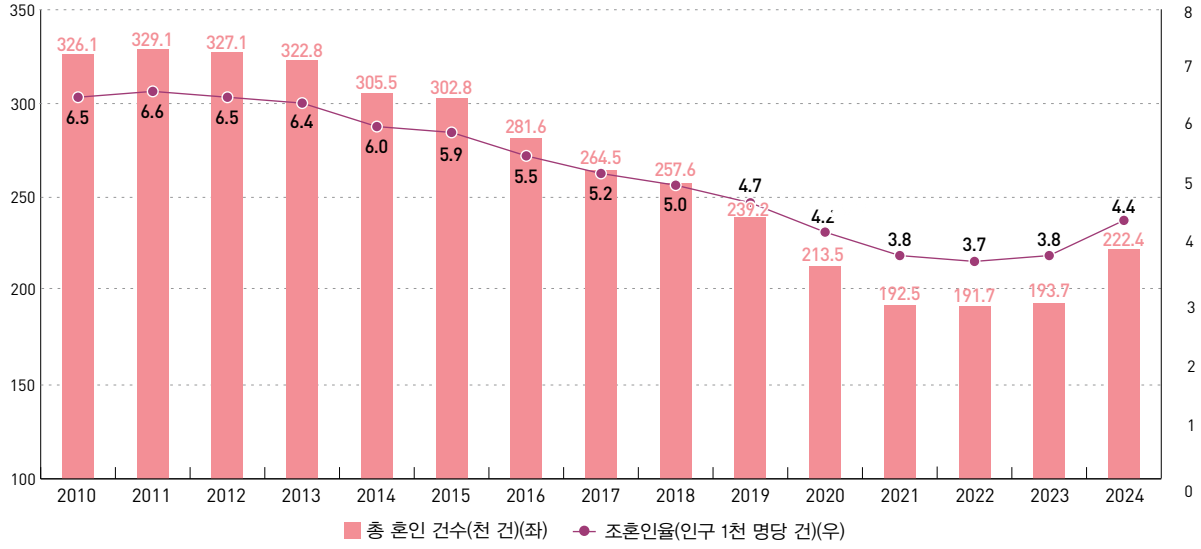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연간 총 혼인 건수}}{\text{당해 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0$$

유의사항 혼인 통계자료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동안 전국 시 · 구청 및 읍 · 면 · 동 사무소에 신고한 혼인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이므로,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1-23 총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2010~2024)

(단위: 천 건, 인구 1천 명당 건)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24	1년

10-2
연 관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Number of divorces with a foreign spouse

지표 정의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유의사항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즉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이혼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표 1-15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2010~2024)

(단위: 천 건,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11.1	11.5	10.9	10.5	9.8	8.2	7.7	7.1	7.1	6.9	6.2	6.2	5.8	6.1	6.0
한국남성 + 외국여성	(70.8)	(72.6)	(72.4)	(72.4)	(71.7)	(69.7)	(73.2)	(73.0)	(72.5)	(71.3)	(70.9)	(69.9)	(68.2)	(68.4)	(70.0)
한국여성 + 외국남성	(29.2)	(27.4)	(27.6)	(27.6)	(28.3)	(30.3)	(26.8)	(27.0)	(27.5)	(28.7)	(29.1)	(30.1)	(31.8)	(31.6)	(30.0)
총 이혼건수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106.0	108.7	110.8	106.5	101.7	93.2	92.4	91.2
총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비중	(9.5)	(10.1)	(9.5)	(9.1)	(8.4)	(7.5)	(7.1)	(6.7)	(6.6)	(6.2)	(5.8)	(6.1)	(6.2)	(6.6)	(6.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24	1년

11
대 표

가족부문 공공사회복지 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family

지표 정의

OECD 기준 가족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출산전후 휴가(maternity and parental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 유아교육보육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가사지원/시설지원(home help/accommodation), 기타 현물지원(other benefits in kind)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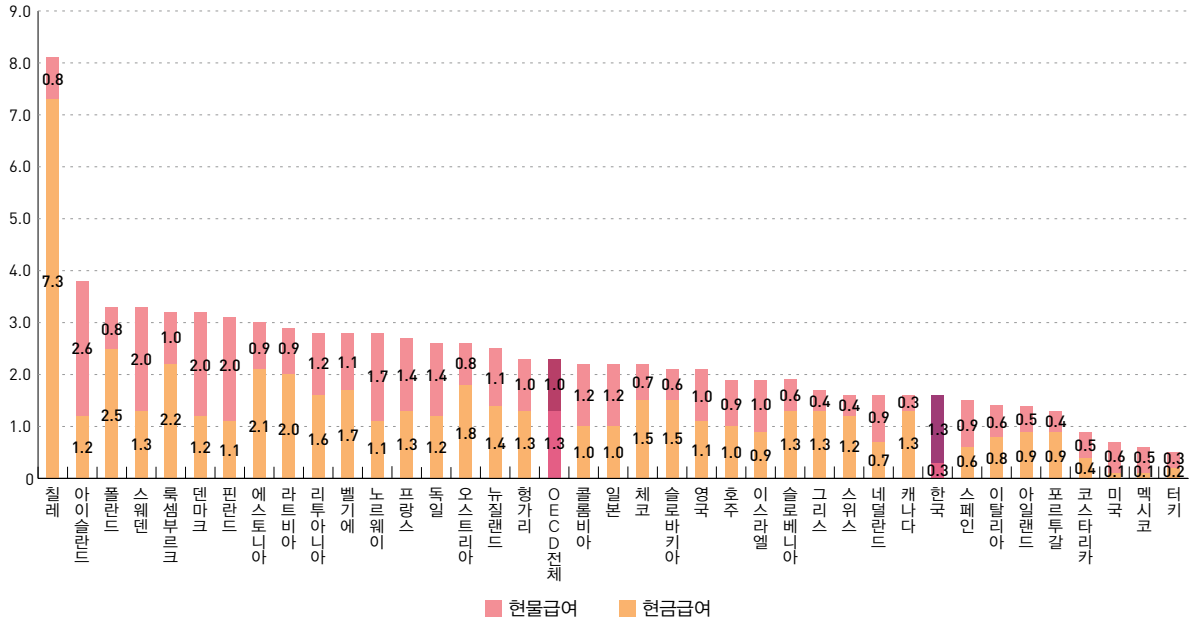
- OECD 기준 사회복지 지출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상별(노인, 장애인 및 아동가족 등) 및 영역별(보건,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등) 현금급여와 서비스로 인한 지출 등이 포함된다.

측정 산식

-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출산전후 휴가(maternity and parental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 유아교육보육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가사지원/시설지원(home help/ accommodation), 기타 현물지원(other benefits in kind)에 대한 지출의 총합을 GDP로 나눈 값**

그림 1-24 OECD 국가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2021)

(단위: % of GDP)



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미국, 영국은 2020년도, 나머지는 2019년도 자료임.
자료: OECD.Stat,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25.6.17.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1990	2021	2년

12 대 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nursing and home care visiting service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 · 가사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 간병 방문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이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 · 군 · 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자
- 지원 금액 :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2024년 기준)

구분	월 24시간(A형)		월 27시간(B형)		월 40시간(C형)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정부지원금	월 427,200원	월 401,570원	월 466,180원	월 451,760원	월 712,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월 25,630원	월 14,420원	월 28,840원	면제

표 1-16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5~2024)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용자 수	10,898	10,193	9,307	8,775	8,799	8,516	8,520	8,395	8,366	7,587
이용액	22,213,589	23,627,437	22,490,026	24,310,808	28,447,646	27,818,475	27,823,711	28,960,745	30,264,946	29,034,520

주: 각 연도별 연간 이용자 수 및 이용액

표 1-17 시도별 · 월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수 (2024)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6,073	6,022	6,007	6,004	5,947	5,837	5,764	5,669	5,593	5,523	5,424	5,335
서울	378	373	378	379	365	363	353	357	352	346	348	337
부산	707	703	700	704	689	675	670	664	666	655	656	648
대구	430	429	437	441	445	438	438	425	419	401	379	373
인천	407	406	403	396	393	384	374	360	355	363	352	349
광주	172	170	170	173	176	177	169	168	164	162	158	152
대전	350	351	346	342	333	326	323	326	328	331	325	333
울산	229	235	233	225	219	222	218	218	219	224	209	202
세종	671	680	675	672	677	676	679	670	667	673	660	649
경기	251	243	245	252	240	238	232	216	204	200	200	200
강원	185	185	179	182	186	182	184	186	184	185	179	188
충북	186	181	185	185	173	177	170	159	158	155	153	140
충남	403	395	399	400	396	377	383	374	362	357	348	342
전북	528	529	531	522	516	503	490	476	465	450	448	433
전남	390	383	381	385	388	374	373	373	366	367	365	358
경북	728	704	691	690	694	668	654	646	635	606	598	586
경남	47	44	43	46	47	46	44	41	39	39	37	36
제주	11	11	11	10	10	11	10	10	10	9	9	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24	월

표 1-18 시도별 · 월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액 (2024)

(단위: 원)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2,452,832	2,443,423	2,518,140	2,536,063	2,501,310	2,413,315	2,468,148	2,372,860	2,288,503	2,359,978	2,312,222	2,367,726
서울	150,552	149,631	154,834	155,789	151,076	150,036	149,571	146,355	139,475	147,757	147,318	148,780
부산	286,122	287,962	296,244	299,856	295,100	279,233	286,784	277,608	274,856	283,834	283,181	288,926
대구	171,948	174,821	184,427	186,207	185,837	181,959	185,665	176,584	172,413	166,969	157,724	159,083
인천	162,884	160,433	166,272	165,283	163,090	155,479	160,149	150,397	140,481	149,838	148,660	152,994
광주	70,606	68,387	72,008	72,309	75,740	73,066	73,263	68,138	66,779	69,290	67,501	67,114
대전	145,667	145,882	150,414	147,172	140,498	138,830	142,502	139,621	140,077	146,940	141,074	151,197
울산	92,459	93,774	95,580	94,695	89,853	90,111	91,796	87,453	87,471	92,674	86,619	85,484
세종	271,829	279,233	283,576	287,937	287,137	279,380	292,280	281,968	273,557	293,234	282,252	297,827
경기	99,450	96,974	98,169	101,428	99,321	95,976	97,997	87,393	78,423	82,164	84,228	87,539
강원	73,134	74,631	73,951	75,448	77,916	74,923	75,388	76,480	73,573	75,216	75,792	81,365
충북	78,802	77,176	81,390	79,696	72,825	75,181	75,173	69,815	68,336	67,751	65,773	63,012
충남	160,992	161,405	169,059	170,065	167,425	156,959	161,396	156,632	150,792	153,587	149,004	151,781
전북	214,613	210,107	224,778	224,709	217,520	213,504	217,382	204,818	190,524	195,186	196,175	198,841
전남	157,698	157,475	158,704	161,783	164,828	154,628	159,083	158,472	152,573	156,382	154,628	159,384
경북	294,593	284,110	286,724	291,015	289,115	273,007	276,258	270,169	259,049	257,665	252,057	255,042
경남	17,037	16,959	17,449	18,318	19,763	16,994	19,522	16,804	16,263	17,647	16,650	15,841
제주	4,446	4,463	4,558	4,352	4,266	4,051	3,939	4,154	3,861	3,844	3,586	3,517

13
대 표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language development supporting service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감각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등 간접적인 서비스와 더불어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놀이, 수화 등 각종 지도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대상 중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이며,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생계 ·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지원 금액: 소득별로 상이

(2024년 기준)

구분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차상위계층(가형)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정부지원금	월 22만 원	월 20만 원	월 18만 원	월 16만 원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 원	월 4만 원	월 6만 원

표 1-19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6~2024)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용자 수	421	387	343	327	323	345	295	299	257
이용액	78,562	73,966	65,250	61,304	69,350	73,857	62,642	63,914	47,862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표 1-20 시도별 · 월별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2024)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273	275	283	293	291	291	282	272	270	264	264	257
서울	55	55	55	54	51	54	52	51	51	51	51	51
부산	3	4	6	6	7	7	7	6	6	6	6	6
대구	5	5	5	5	5	5	5	5	5	5	5	5
인천	12	12	13	13	12	11	12	11	11	11	11	10
광주	31	31	29	29	31	31	33	32	31	28	27	27
대전	13	13	13	15	15	13	13	13	13	13	13	14
울산	7	7	9	9	9	8	8	7	7	7	7	6
세종	0	0	0	0	0	0	0	0	0	1	1	1
경기	46	50	52	55	53	53	53	53	55	55	56	57
강원	1	1	1	2	2	2	2	0	0	0	0	0
충북	12	12	13	13	13	14	13	12	12	12	12	11
충남	14	14	17	19	19	18	19	20	20	19	20	19
전북	24	25	23	24	25	26	28	27	23	23	23	23
전남	12	10	10	10	10	10	10	9	8	5	5	5
경북	22	22	22	22	22	22	10	9	10	10	9	6
경남	10	10	10	13	13	13	13	13	13	13	13	11
제주	6	4	5	4	4	4	4	4	5	5	5	5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언어발달지원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24	월

표 1-21 시도별 · 월별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액 (2024)

(단위: 천 원)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51,614	51,152	53,352	55,853	55,363	53,208	53,671	50,941	50,668	49,578	49,375	47,862
서울	10,536	9,945	10,297	10,315	9,815	9,921	10,073	9,611	9,603	9,593	9,514	9,597
부산	560	780	1,180	1,141	1,201	1,276	1,231	1,141	1,220	1,220	1,220	1,220
대구	980	980	980	980	980	980	980	890	890	890	858	890
인천	2,430	2,436	2,616	2,526	2,215	2,165	2,388	1,963	2,108	2,080	1,976	1,828
광주	5,952	5,983	5,607	5,680	5,932	6,040	6,460	6,061	5,731	5,254	5,054	5,144
대전	2,640	2,670	2,720	3,090	3,090	2,670	2,720	2,680	2,620	2,620	2,720	2,785
울산	1,313	1,322	1,591	1,666	1,695	1,446	1,446	1,282	1,282	1,282	1,238	1,082
세종	0	0	0	0	0	0	0	0	0	160	160	160
경기	8,066	8,449	9,043	9,565	9,430	9,149	9,355	9,344	9,793	9,853	10,064	10,051
강원	180	180	180	332	478	326	326	0	0	0	0	0
충북	2,192	2,362	2,500	2,582	2,427	2,625	2,602	2,420	2,420	2,420	2,400	2,180
충남	2,464	2,394	3,030	3,438	3,292	3,172	3,316	3,456	3,496	3,256	3,406	3,266
전북	4,798	4,798	4,708	4,908	5,043	5,118	5,780	5,528	4,688	4,648	4,582	4,537
전남	2,260	1,790	1,920	1,920	1,920	1,920	1,920	1,590	1,500	940	940	940
경북	4,328	4,363	4,266	4,380	4,565	3,127	1,848	1,740	1,861	1,861	1,721	1,061
경남	1,860	1,860	1,860	2,530	2,480	2,480	2,480	2,480	2,480	2,480	2,503	2,100
제주	1,055	840	855	800	800	793	746	755	975	1,020	1,020	1,020

주: 단위 미만인 수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 수치가 시도별 수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으로 시도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영유아 발달지원, 아동 · 청소년 정서발달, 심리지원, 노인맞춤형 운동, 장애인 ·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시각장애인 안마, 정신건강 토탈케어, 자살위험군 예방,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건강취약계층 운동, (비만)아동 건강관리, 성인 심리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사업분류 기준에 따라 사업유형과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 신규 사업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선정된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 (1)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서비스별로 상이하다.**
  (2) 욕구기준은 해당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선정 우선순위는 지역 수요 및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정한다.
- **지원 금액 : 각 사업별로 본인부담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본인부담금을 설정하도록 권장**

표 1-2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5~2024)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용자 수	233,347	275,785	250,169	256,111	273,569	267,455	264,365	255,921	253,515	269,494
이용액	185,713,192	242,992,664	224,440,262	223,344,470	244,315,904	229,995,788	252,423,012	238,475,940	244,054,101	275,148,261

주: 각 연도별 연간 이용자 수 및 이용액

표 1-23 시도별 · 월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2024)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31,588	133,105	144,834	151,692	149,940	145,929	146,308	147,189	146,575	143,836	143,247	142,612
서울	6,582	6,773	7,193	7,347	7,144	6,768	6,719	6,506	6,413	6,335	6,252	6,184
부산	11,769	11,690	14,950	15,596	15,360	14,999	15,375	15,524	13,686	13,277	13,181	12,791
대구	7,463	7,378	8,390	8,352	7,997	7,979	8,797	8,982	8,847	8,816	8,815	8,722
인천	6,475	6,466	6,292	10,537	10,319	9,611	9,376	9,733	10,189	10,351	11,839	12,414
광주	7,421	7,698	7,837	8,606	8,424	8,331	8,613	8,612	8,836	8,799	8,727	8,639
대전	7,687	7,866	9,149	9,277	9,217	9,021	8,958	9,070	9,058	9,125	7,198	7,127
울산	4,659	4,660	5,025	5,016	4,979	4,893	4,836	4,610	4,354	2,647	2,690	2,707
세종	996	1,136	1,161	1,175	1,133	1,145	1,141	780	787	803	738	736
경기	21,673	21,780	23,076	23,024	23,059	22,394	21,771	21,636	22,726	22,301	22,045	21,599
강원	5,689	5,955	6,514	6,434	6,458	6,292	6,462	6,625	6,723	6,570	6,686	6,716
충북	5,074	5,459	6,215	6,209	6,067	5,914	5,882	5,881	6,058	6,082	5,951	5,881
충남	5,960	6,240	6,777	6,795	6,746	6,606	6,495	6,719	6,514	6,327	6,227	6,152
전북	10,722	10,579	11,085	11,536	11,514	11,078	11,223	11,237	10,966	11,315	11,216	11,153
전남	10,024	10,176	10,351	10,783	10,770	10,829	10,898	11,010	11,126	10,747	11,142	11,167
경북	7,034	6,905	7,505	7,768	7,786	7,743	7,584	7,512	7,384	7,506	7,596	7,523
경남	5,968	6,095	6,746	6,848	6,833	6,836	6,740	7,480	7,660	7,798	8,110	8,066
제주	6,392	6,249	6,568	6,389	6,134	5,490	5,438	5,272	5,248	5,037	4,834	5,035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24	월

표 1-24 시도별 · 월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금액 (2024)

(단위: 천 원)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9,481,485	20,167,431	22,291,978	23,974,043	23,506,199	22,661,262	23,402,183	23,499,220	23,177,536	24,182,227	23,883,724	24,920,975
서울	1,026,843	1,080,546	1,181,444	1,255,424	1,169,753	1,069,918	1,091,984	1,058,325	1,018,219	1,070,074	1,052,516	1,121,873
부산	1,603,287	1,661,542	2,023,572	2,287,305	2,210,215	2,112,063	2,247,181	2,295,425	2,008,119	2,103,176	2,069,894	2,063,399
대구	1,042,075	984,794	1,279,461	1,228,771	1,143,655	1,139,194	1,268,603	1,365,595	1,301,629	1,403,996	1,426,685	1,462,593
인천	944,797	963,369	973,385	1,564,658	1,626,535	1,496,587	1,522,910	1,553,623	1,564,115	1,729,230	1,910,006	2,163,072
광주	1,127,109	1,249,866	1,195,779	1,507,306	1,392,374	1,347,423	1,418,956	1,442,174	1,461,985	1,515,445	1,500,097	1,510,373
대전	1,219,216	1,272,455	1,472,001	1,543,786	1,517,166	1,477,395	1,502,623	1,478,170	1,495,921	1,569,173	1,229,719	1,256,811
울산	684,524	743,577	791,701	876,311	832,609	829,950	837,848	800,736	764,808	516,323	555,023	584,563
세종	155,417	161,058	181,588	174,798	164,066	169,992	176,572	120,610	127,142	130,794	124,821	124,446
경기	3,262,096	3,364,441	3,582,317	3,590,593	3,626,471	3,434,500	3,444,394	3,401,031	3,517,250	3,657,324	3,568,247	3,808,037
강원	785,405	829,804	930,525	920,174	922,581	904,764	929,655	947,981	928,892	992,830	989,600	1,028,599
충북	787,994	825,494	1,014,839	1,037,244	968,526	948,808	965,432	943,717	974,179	1,050,763	997,141	1,039,806
충남	960,811	982,916	1,167,141	1,153,705	1,156,322	1,115,920	1,150,387	1,181,143	1,125,718	1,173,253	1,148,071	1,217,343
전북	1,658,475	1,714,372	1,812,907	1,981,471	1,928,262	1,859,034	1,948,171	1,913,791	1,877,008	1,996,181	1,932,551	1,972,409
전남	1,299,965	1,366,371	1,367,632	1,432,251	1,450,185	1,443,454	1,494,068	1,507,499	1,495,325	1,525,836	1,572,864	1,627,313
경북	1,107,227	1,124,311	1,261,109	1,338,943	1,341,002	1,355,143	1,398,559	1,404,115	1,374,382	1,495,607	1,500,169	1,528,624
경남	892,449	921,495	1,067,904	1,105,203	1,117,251	1,122,260	1,165,875	1,275,327	1,355,738	1,460,743	1,540,404	1,592,263
제주	923,795	921,020	988,673	976,100	939,226	834,857	838,965	809,958	787,106	791,479	765,916	819,451

주: 단위 미만인 수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 수치가 시도별 수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15
대 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postpartum women and infants health care service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경과 후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금액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2024년 기준)

구분	단태아	쌍태아(인력 1명)	쌍태아(인력 2명)	삼태아 이상(인력 2명)
1일 기준 서비스 표준 가격	142,400원	267,000원	412,800원	892,000원

표 1-25 연도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5~2024)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용자 수	71,120	82,313	79,515	97,905	136,364	114,192	125,675	132,917	140,753	157,292
이용액	38,903,756	45,018,903	53,210,976	74,765,812	123,529,851	110,975,918	132,536,607	147,238,203	162,113,903	189,772,463

주: 각 연도별 연간 이용자 수 및 이용액

표 1-26 시도별 · 월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2024)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8,390	18,773	20,318	20,404	20,471	18,988	20,420	20,209	21,068	23,505	21,949	20,747
서울	3,723	3,859	4,233	4,337	4,347	4,030	4,374	4,158	4,300	4,731	4,434	4,049
부산	1,047	964	1,037	1,148	1,145	1,053	1,097	1,082	1,159	1,329	1,225	1,166
대구	877	877	891	933	943	868	932	960	1,008	1,155	1,088	1,035
인천	1,002	994	1,030	1,002	1,092	1,033	1,078	1,102	1,144	1,331	1,247	1,158
광주	384	404	430	393	384	343	417	415	429	459	439	397
대전	575	561	633	574	590	560	592	613	628	697	655	626
울산	463	470	495	468	458	425	478	463	491	541	513	488
세종	226	233	255	282	260	216	255	249	272	313	291	270
경기	5,098	5,275	5,707	5,701	5,753	5,312	5,721	5,671	5,909	6,710	6,245	5,872
강원	401	423	443	465	469	420	410	422	421	488	473	439
충북	464	494	516	521	517	488	524	543	567	636	621	584
충남	721	723	766	770	758	751	786	771	819	863	805	792
전북	493	490	551	498	516	499	542	531	541	612	546	553
전남	589	585	667	645	646	597	663	658	680	720	694	677
경북	979	1,063	1,111	1,113	1,091	974	1,028	1,076	1,147	1,224	1,101	1,117
경남	1,159	1,169	1,332	1,340	1,291	1,200	1,285	1,295	1,346	1,440	1,344	1,313
제주	189	189	221	214	211	219	238	200	207	256	228	21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24	월

표 1-27 월별 · 시도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이용액 (2024)

(단위: 천 원)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4,419,280	14,117,363	15,943,415	5,998,347	16,206,627	14,443,047	16,476,796	15,852,216	14,489,923	18,534,849	17,032,958	16,257,650
서울	2,759,360	2,844,152	3,181,821	3,257,991	3,283,281	2,911,805	3,365,451	3,111,150	2,843,962	3,576,754	3,317,842	3,054,039
부산	766,707	705,018	782,824	893,312	893,333	796,048	880,060	846,341	774,923	1,024,135	940,908	891,990
대구	685,603	664,242	728,550	756,031	760,619	664,872	756,525	755,497	702,571	943,331	844,385	804,369
인천	854,742	735,988	885,227	815,559	917,496	824,932	915,765	897,032	848,154	1,120,560	969,380	939,680
광주	461,223	430,580	484,920	466,875	475,354	431,210	472,935	492,240	450,011	555,770	544,374	504,750
대전	307,513	309,632	370,957	319,646	319,515	257,139	365,633	337,519	300,662	369,977	338,203	324,269
울산	378,749	356,935	391,695	365,063	362,534	308,496	394,527	358,954	346,612	413,565	388,344	362,610
세종	3,977,201	3,944,710	4,391,813	4,421,180	4,537,300	4,027,121	4,566,657	4,370,033	4,000,527	5,238,523	4,802,426	4,543,957
경기	331,688	336,222	369,475	369,226	388,844	340,353	342,839	343,644	306,934	401,788	385,054	348,734
강원	369,726	375,236	418,967	410,321	405,114	369,054	433,715	446,591	400,281	492,388	482,140	453,675
충북	593,787	560,088	621,918	625,022	620,802	602,461	635,822	619,895	588,689	714,172	649,560	645,570
충남	825,249	824,153	885,621	889,250	887,018	767,529	854,375	875,935	814,283	983,779	859,181	923,554
전북	929,461	904,178	1,065,061	1,088,026	1,041,535	941,195	1,069,373	1,048,160	915,775	1,174,154	1,097,700	1,081,544
전남	453,122	426,492	542,009	529,937	516,217	470,208	554,318	554,365	474,885	576,264	562,173	541,810
경북	409,849	366,131	441,967	403,994	419,683	401,818	451,045	438,777	380,971	500,716	450,733	453,839
경남	134,363	158,955	182,109	169,336	173,185	169,336	196,963	150,466	152,880	209,635	185,665	164,021
제주	180,937	174,651	198,481	217,578	204,797	159,470	220,793	205,617	187,803	239,338	214,890	219,239

2

아동

01 아동 수면시간
02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03 아동 자살률
0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05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06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률
07 아동 빈곤율
08 나홀로 아동
09 보호대상아동 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아동 건강 발달	아동 수면시간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아동 자살률	
아동 안전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아동 손상 경험률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 빈곤	아동 빈곤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
		아동급식 지원자 수
아동의 사회적 보호	나홀로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보호대상아동 수	아동복지시설 아동 수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수

01
대 표

아동 수면시간

Child sleeping hours

지표 정의

아동 수면시간은 아동 · 청소년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으로 측정되며, 학교 등교 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기초로 초 · 중 ·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을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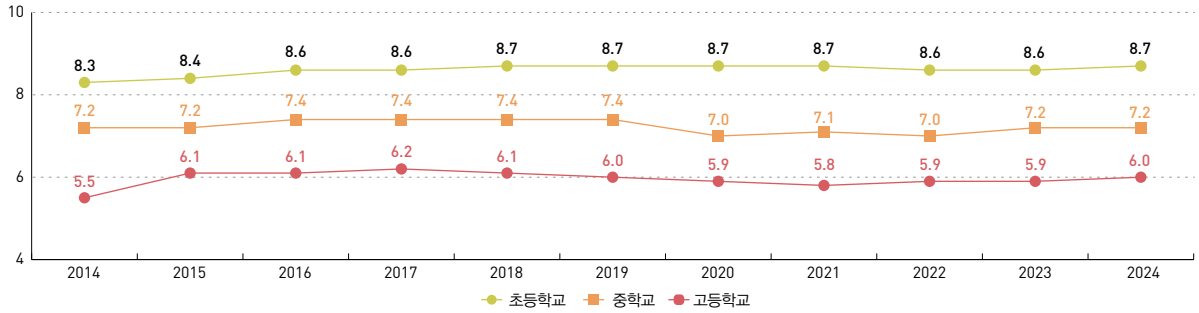
• 아동의 적정 수면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아동 1일(평일) 수면시간의 합}}{\text{전체 아동의 수}}$ (평일 평균)

그림 2-1 연도별 · 학령별 평균 수면시간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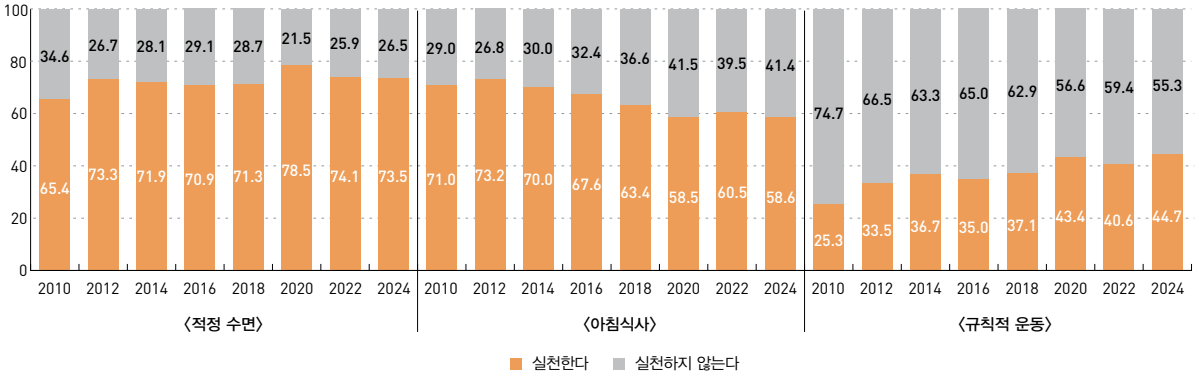
(단위: 시간)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 · 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2-2 연도별 건강관리 실천 여부 (2010~2024)

(단위: %)



주 : 1) 2010년까지는 15~19세, 2012년부터 13~19세
2) 사회조사는 매년 실시하나, 짝수년에 건강(건강관리) 관련 조사를 수행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 · 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09	2024	1년
통계청	사회조사 (건강(건강관리))	1977 (1986)	2024	1년 (2년)

* 통계청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5개 부문씩 조사. (짝수년)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홀수년)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으로 조사됨

표 2-1 학령별 수면시간당 비율 (2017~2024)

(단위: %)

연도	구분		5시간 미만	5~6시간	6~7시간	7~8시간	8시간 이상
2017	전체		4.5	14.6	20.4	23.7	36.8
	초등학교		0.2	0.8	3.4	14.8	80.8
	중학교		1.5	7.6	20.0	36.6	34.3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1.5	34.5	32.9	16.7	4.3
		특성화	4.4	14.9	34.5	32.2	14.0
2018	전체		5.0	14.7	19.8	21.9	38.7
	초등학교		0.2	0.6	3.4	12.4	83.4
	중학교		1.3	7.9	17.8	36.6	36.4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2.6	34.5	34.3	14.4	4.3
		특성화	8.8	19.4	35.2	28.8	7.8
2019	전체		6.4	14.0	18.2	20.9	40.5
	초등학교		0.3	1.0	3.5	13.0	82.2
	중학교		2.6	8.1	19.4	33.2	36.7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6.8	32.6	30.5	15.2	5.0
		특성화	8.4	23.2	29.8	25.9	12.6
2020	전체		5.5	11.0	17.1	18.8	47.6
	초등학교		0.5	0.7	2.5	7.4	88.9
	중학교		4.3	8.3	16.4	27.1	43.8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1.8	25.5	33.1	20.3	9.4
		특성화	9.5	14.5	24.7	28.6	22.7
2021	전체		9.6	15.1	17.9	19.0	38.3
	초등학교		0.7	1.8	4.3	14.0	79.2
	중학교		6.2	12.2	22.1	30.0	29.4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23.4	34.6	26.7	11.1	4.2
		특성화	16.6	19.1	30.1	21.5	12.7
2022	전체		8.9	14.5	18.4	20.5	37.7
	초등학교		0.5	1.5	3.9	15.5	78.6
	중학교		5.6	12.6	24.8	30.8	26.3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22.7	31.3	26.6	13.7	5.7
		특성화	15.8	26.3	28.5	20.2	9.2
2023	전체		7.7	14.0	18.1	20.6	39.5
	초등학교		0.8	1.3	4.3	14.0	79.6
	중학교		4.9	10.8	21.3	32.1	30.9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9.7	32.8	29.4	14.7	3.4
		특성화	11.5	25.3	31.9	19.5	11.8
2024	전체		6.5	13.0	18.8	21.7	40.0
	초등학교		0.6	0.7	3.3	14.2	81.1
	중학교		3.4	10.9	22.8	32.0	30.9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7.0	29.7	30.8	17.0	5.5
		특성화	10.4	21.6	31.8	27.8	8.5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 · 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 에서 2025.6.17. 인출)

02
대 표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Rate of internet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children

지표 정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 특성을 모두 나타내는 집단)과 잠재적 위험사용자군(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 중 1~2가지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구성된다.

- 스마트폰 과의존의 개념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salience)이 증가하고 이용조절력(self-control failure)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2016년부터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는 기존의 인터넷(K-척도) 및 스마트폰(S-척도) 개별척도를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로 통합하여 통합척도를 사용, 유아동(만 3~9세), 청소년(만 10세~19세), 성인(만 20세~59세), 고령층(만 60세~69세) 4종의 척도를 도입하였다.

측정 산식

- $\frac{\text{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상담개입 또는 집중치료가 필요한 집단 수)}}{\text{조사대상(10~19세) 청소년 수}} \times 100$

유의사항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스마트폰 중독척도(각 15문항)를 활용하여 산출함.

표 2-2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및 수 (2017~2024)

(단위: %, 천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율 (%)	수 (천 명)	비율 (%)	수 (천 명)	비율 (%)	수 (천 명)	비율 (%)	수 (천 명)	비율 (%)	수 (천 명)	비율 (%)	수 (천 명)	비율 (%)	수 (천 명)	비율 (%)	수 (천 명)
과의존 위험	18.6	7,860	19.1	8,278	20	8,871	23.3	10,212	24.2	10,728	23.6	10,426	23.1	9,918	22.9	9,840
고위험	2.7	1,133	2.7	1,180	2.9	1,274	4	1,753	4.5	1,983	4.2	1,869	4.2	1,803	4.2	1,790
잠재적 위험	15.9	6,727	16.4	7,098	17.1	7,597	19.3	8,459	19.7	8,735	19.4	8,557	18.9	8,115	18.7	8,049

주: 1) 조사연령 : 만 3~69세 (유아동 : 만 3~9세, 청소년 : 만 10~19세, 성인 : 만 20~59세, 60대 : 만 60~69세)
2)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수 = 만 3~69세 인터넷(스마트폰)이용자 수×과의존 위험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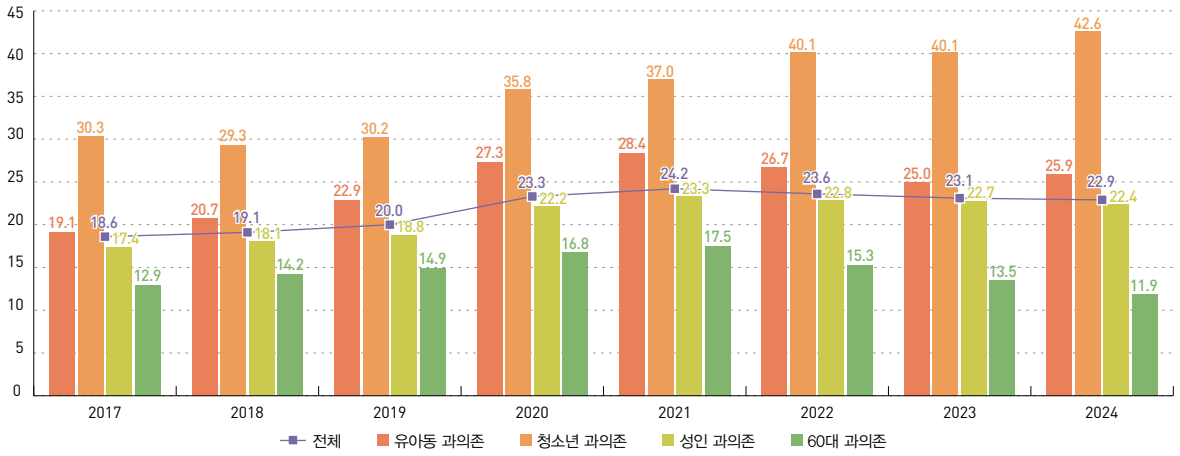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04	2024	1년

그림 2-3 연령대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2017~2024)

(단위: %)



주: 1) 조사연령 : 만 3~69세 (유아동 : 만 3~9세, 청소년 : 만 10~19세, 성인 : 만 20~59세, 60대 : 만 60~69세)
2)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수 = 만 3~69세 인터넷(스마트폰)이용자 수×과의존 위험군 비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표 2-3 연령대별 · 연도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2017~2024)

(단위: %)

구분	연령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유아동	19.1	20.7	22.9	27.3	28.4	26.7	25.0	25.9
	청소년	30.3	29.3	30.2	35.8	37	40.1	40.1	42.6
	성인	17.4	18.1	18.8	22.2	23.3	22.8	22.7	22.4
	60대	12.9	14.2	14.9	16.8	17.5	15.3	13.5	11.9
고위험	유아동	1.2	2.0	2.3	3.7	4.3	3.5	3.6	3.6
	청소년	3.6	3.6	3.8	5.0	5.7	5.2	5.2	5.2
	성인	2.8	2.7	2.8	4.0	4.5	4.4	4.3	4.2
	60대	2.1	2.4	2.5	3.2	3.7	3.0	3.1	3.7
잠재적 위험	유아동	17.9	18.7	20.6	23.6	24.1	23.2	21.4	22.3
	청소년	26.7	25.7	26.4	30.8	31.3	34.9	34.9	37.4
	성인	14.6	15.4	16.0	18.2	18.8	18.3	18.3	18.2
	60대	10.8	11.8	12.4	13.6	13.8	12.3	10.4	8.2

주: 유아동: 만 3~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60대: 만 60~69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03
대 표

아동 자살률

Child suicide rate

지표 정의

아동 · 청소년 자살률(자살사망률)은 연간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는 아동 · 청소년 사망자의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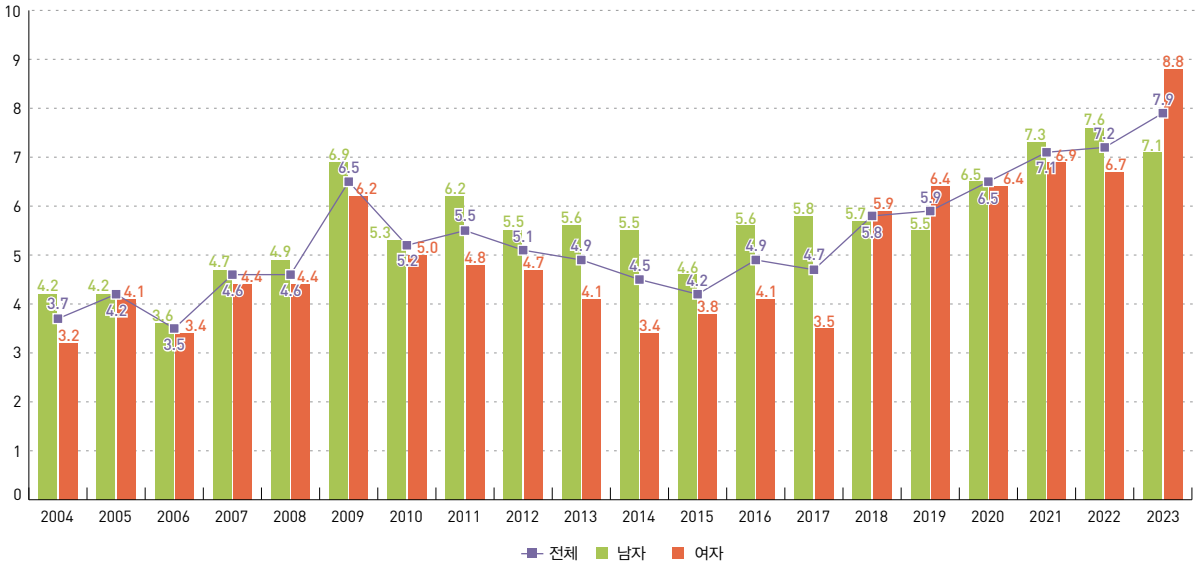
• 연앙인구는 당해 연도의 중간인 7월 1일 기준의 주민등록 인구를 의미하며,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할 때 사용한다.

측정 산식

$$\frac{\text{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아동 · 청소년 사망자의 수}}{\text{당해 연도 아동 · 청소년 연앙인구}} \times 100{,}000$$

그림 2-4 성별 10대의 자살률 (2004~2023)

(단위: %)



주 :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는 10대 사망자 수 및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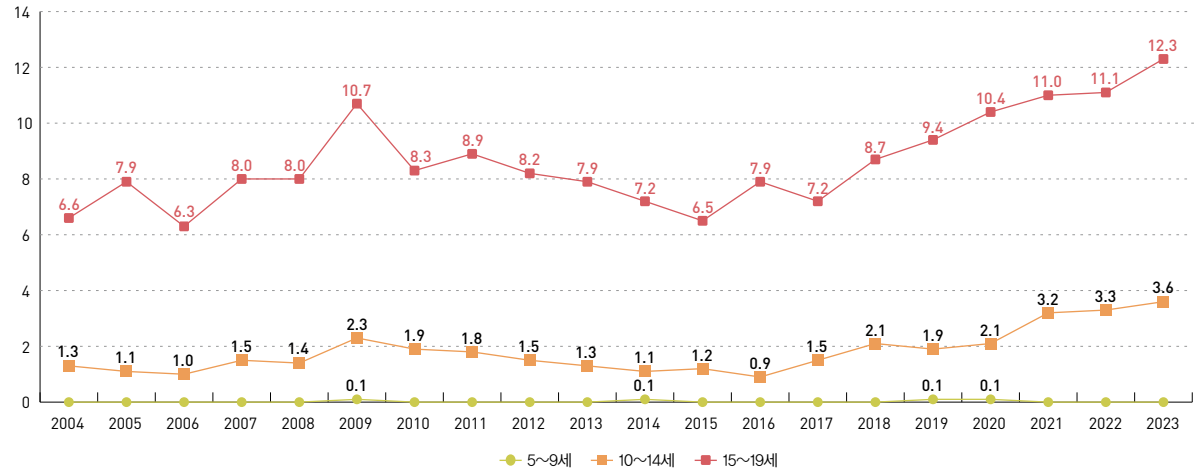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23	1년
통계청	사회조사 (건강(자살충동))	1977 (2006)	2024	1년 (2년)

그림 2-5 연령별 아동 · 청소년 자살률 (200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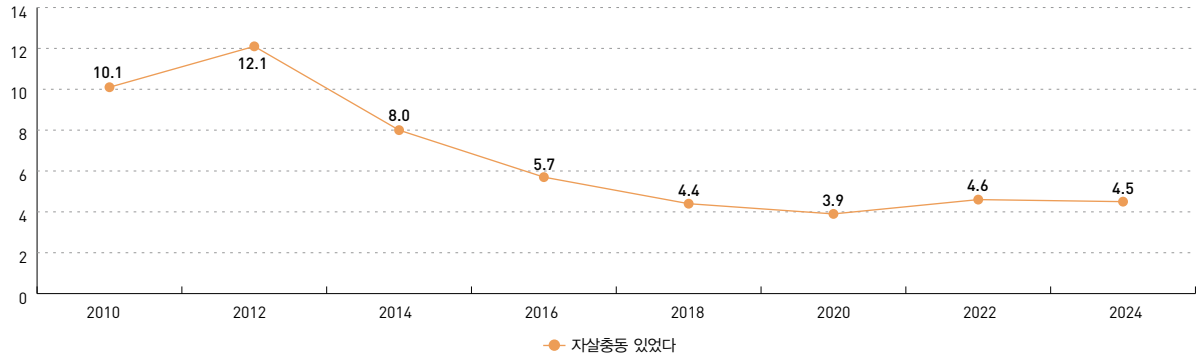
(단위: %)



주: 1)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는 사망자 수 및 사망률
2) 0~4세 자살자 수는 집계되지 않거나 0명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2-6 연도별 자살충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 (2010~2024)

(단위: %)



주: 사회조사는 매년 실시하나, 짝수 년에 건강(자살충동) 관련 조사를 수행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표 2-4 연도별 청소년 자살충동 여부 및 이유 (2010~2024)

(단위: %)

연도	자살충동 여부		자살충동 이유							
	자살충동 있었다	자살충동 없었다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질환, 장애	직장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불화	성적 및 진학문제	이성문제, 친구 및 동료와의 불화	기타
2012	12.1	87.9	16.7	2.0	0.4	12.5	16.9	39.2	8.5	3.7
2014	8.0	92.0	19.5	2.1	0.8	9.8	10.5	39.3	12.9	5.2
2016	5.7	94.3	10.6	3.0	1.0	11.1	11.9	48.1	10.0	4.3
2018	4.4	95.6	14.5	4.6	0.9	13.1	14.0	35.7	16.5	0.6
2020	3.9	96.1	9.3	12.4	3.0	14.4	11.2	29.7	19.2	0.8
2022	4.6	95.4	3.3	34.2	1.2	11.2	8.7	30.8	7.0	3.5
2024	4.5	95.5	3.5	23.4	3.5	12.1	10.3	32.9	14.4	-

주 : 사회조사는 매년 실시하나, 짝수 년에 건강(자살충동) 관련 조사를 수행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04
대 표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Number of safety accident death in children

지표 정의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년 동안 외부요인에 의한 안전사고(운수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등)로 사망한 14세 이하의 아동의 수 및 10만 명당 비율을 말하며 자살, 타살, 질병에 의한 사망은 제외한다.

•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사고 중 경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사고를 근거로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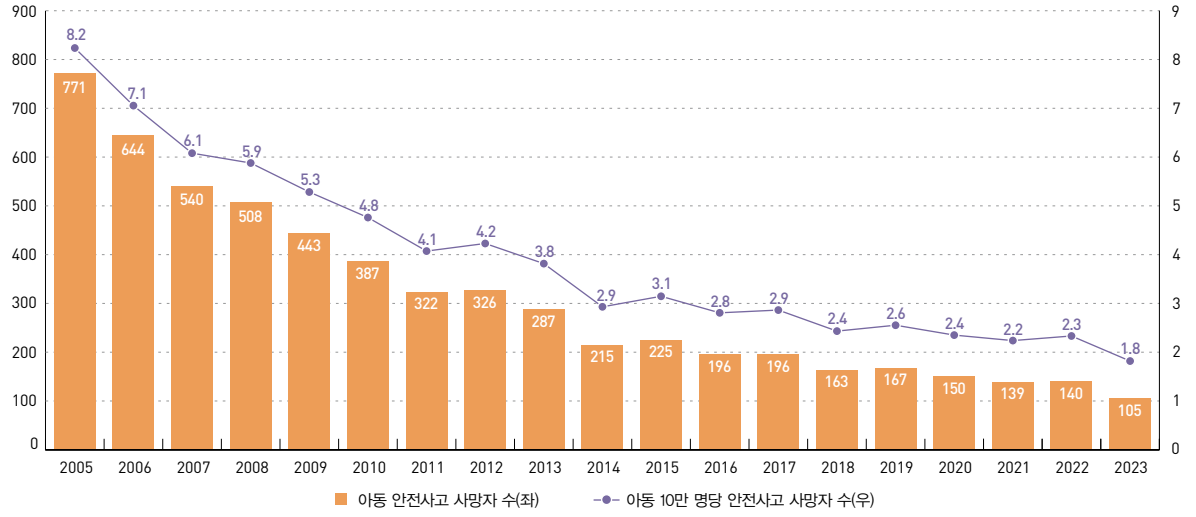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 = $\frac{\text{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 수}}{\text{14세 이하 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000$

유의사항 본 지표에서 교통사고는 사망원인통계(통계청)와 교통사고통계(경찰청)에서 각각 공표하는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 사망원인통계의 '교통사고'는 육상 · 해상 · 항공 등 모든 교통기관 사고 및 트랙터 사고 등 비도로상의 사고를 포함한다. 교통사고통계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상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의 통계를 의미하며 경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교통사고를 근거로 작성된다.

그림 2-7 14세 이하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및 10만 명당 사망자 수 (2005~2023)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주: 사망원인통계에서 사망원인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와 "가해(타살)"를 제외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통계청, 주민등록 연앙인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23	1년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976	2024	1년

표 2-5 14세 이하 아동 안전사고 유형별 사망자 수 (2006~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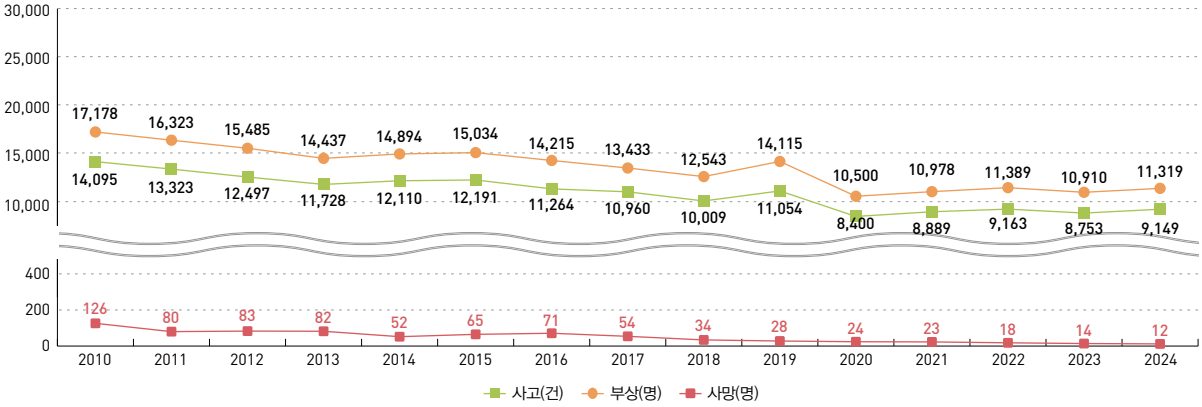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644	540	508	443	387	322	326	287	215	225	196	196	163	167	150	139	140	134
교통사고	317	260	214	201	194	137	131	121	80	103	87	75	54	54	31	36	26	23
추락	79	79	78	62	44	50	53	41	36	28	28	24	18	25	32	25	19	17
익사	58	58	50	40	42	37	36	37	31	28	19	26	28	27	18	19	20	23
화재	42	7	19	10	15	15	14	15	5	10	5	7	8	2	15	8	4	1
중독	5	4	2	5	3	1	1	2	2	0	1	2	4	1	3	1	1	1
기타	143	132	145	125	89	82	91	71	61	56	56	62	51	58	51	50	70	69

주: 사망원인통계에서 사망원인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와 "가해(타살)"를 제외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2-8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건수, 부상자 수, 사망자 수 (201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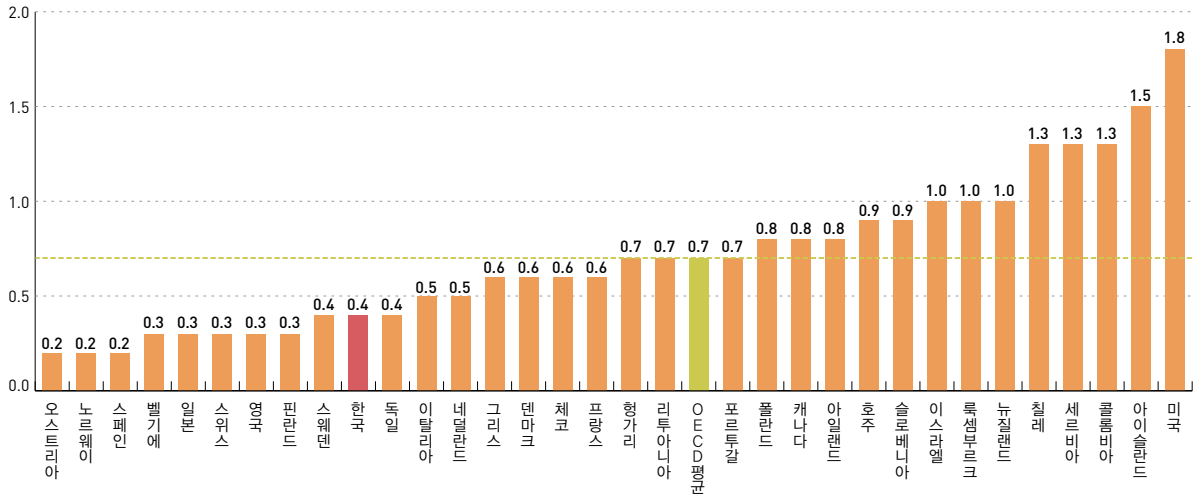
(단위: 건, 명)



주: 12세 이하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2-9 아동(14세 이하)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국제 비교 (2022)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주: 룩셈부르크는 2017년, 캐나다, 그리스, 아이슬란드, 영국, 미국은 2021년, 나머지는 2022년 자료
자료 : OECD 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Database, 2024.6.9. 인출 (https://stats.oecd.org)

04-1
연 관

아동 손상 경험률

Child injury rat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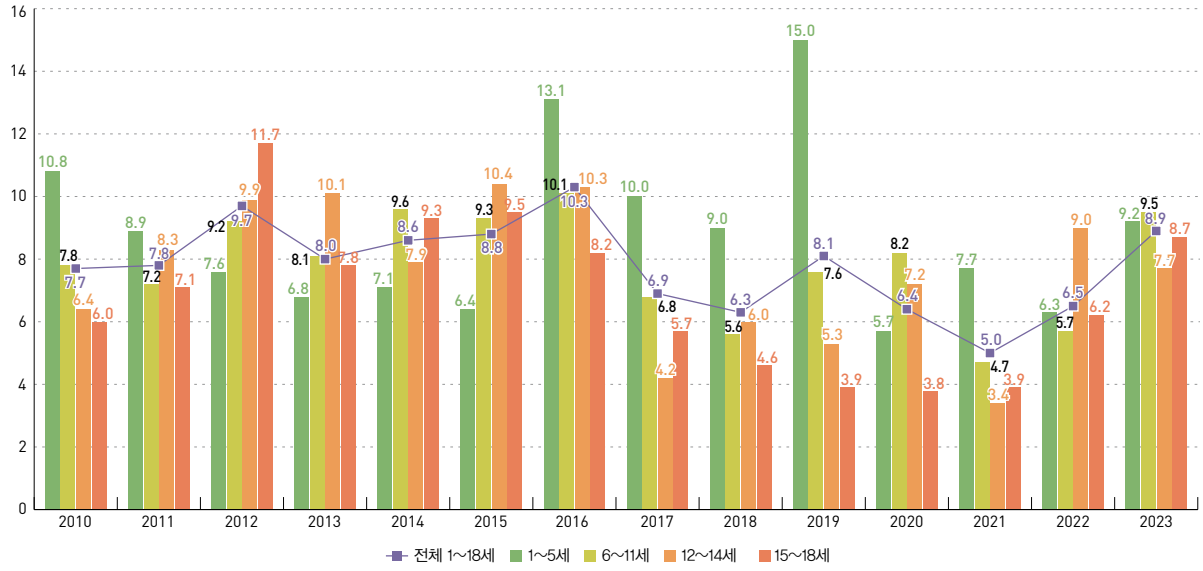
아동의 손상 경험률은 만 18세 이하의 아동 중 최근 1년간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의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을 경험한 아동 분율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만 18세 이하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의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을 경험한 사람}}{\text{만 18세 이하 인구}} \times 100$

그림 2-10 아동 연간 손상 경험률 (2010~2023)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4.6.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3	1년

05 대 표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Substantiation rate of child abuse

지표 정의

아동학대란 신체, 정신, 성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 및 유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수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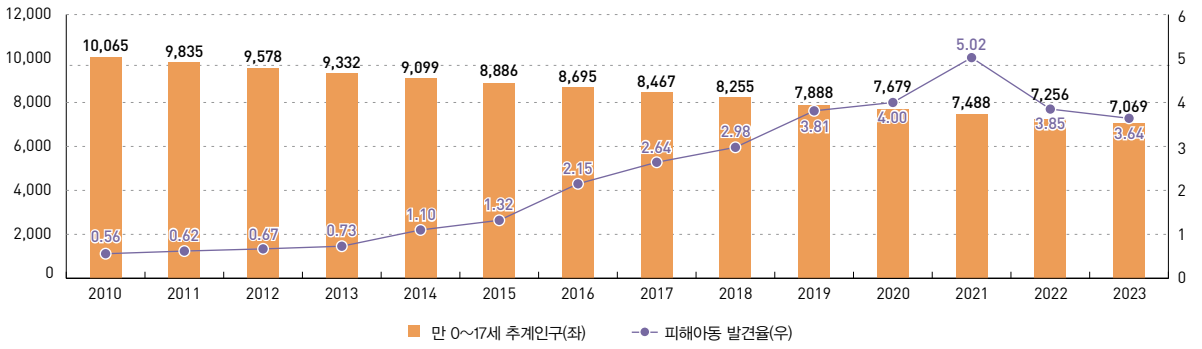
- 아동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견율은 추계아동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로 판정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한다.
- 학대피해아동 서비스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에게 취한 최종 조치와 제공된 서비스의 횟수를 포함하는데, 최종 조치 결과는 전년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취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 결과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만 0~17세 아동학대 판정 피해아동 수}}{\text{만 0~17세 아동 수}} \times 1{,}000$

그림 2-11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발견율 (201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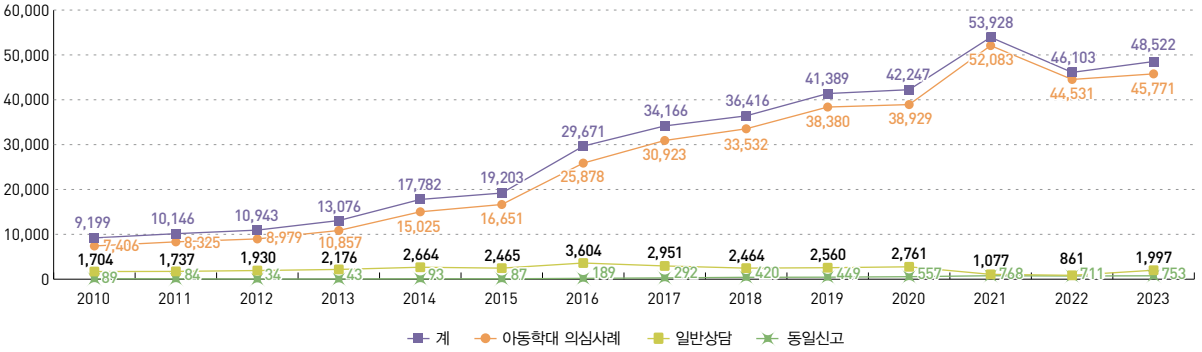
(단위: 명, ‰)



주: 1)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함.
2) 2016년까지 통계청 「연령별(시도) 추계아동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2017년 이후 통계청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함.
자료: 1) 2017년 이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2018년 이후: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2-12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2010~2023)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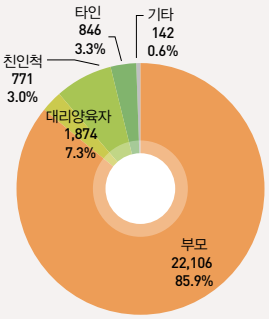
주: 1) 동일신고는 2009년부터 집계됨. 동일신고란 최초 신고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 피해 의심 내용으로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를 의미함.
2) 해외발생사례 건수는 제외됨.
자료: 1) 2017년 이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2018년 이후: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2006	2023	1년

그림 2-13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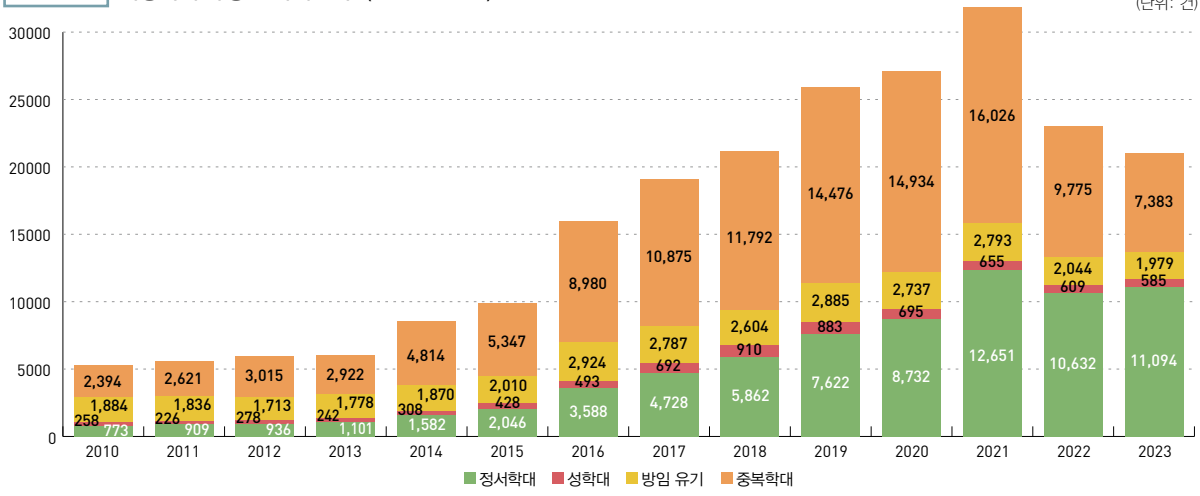
(단위: 명, %)



주: 대리양육자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을 의미함.
자료: 1) 2017년 이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2018년 이후: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2-14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건수 (201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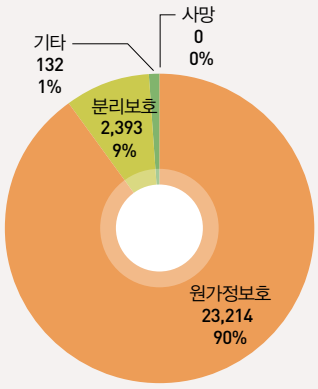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1) 2017년 이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2018년 이후: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2-15 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 유형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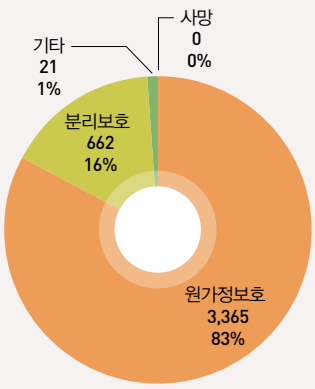
(단위: 건, %)



주: 1) 원가정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경우
2) 분리보호: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 모두 해당
3) 사망: 아동학대 사망, 아동학대 사망 외 일반사망을 포함하고 있음
4) 기타: 소년원 입소, 행방불명(예: 가출 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자료: 1) 2017년 이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2018년 이후: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2-16 재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 유형 (2023)

(단위: 건, %)



주: 원가정보호: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경우
분리보호: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 모두 해당
사망: 아동학대 사망, 아동학대 사망 외 일반사망을 포함하고 있음.
기타: 소년원 입소, 행방불명(예: 가출 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자료: 1) 2017년 이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2018년 이후: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06 대 표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률

Rate of Youth violence

지표 정의

청소년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청소년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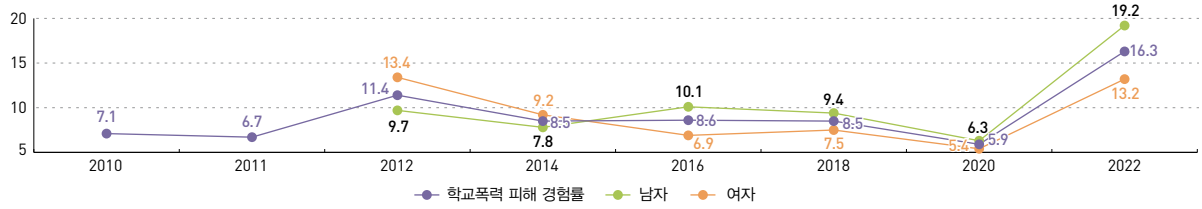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전국 학생 청소년(초등학교 4~6학년 및 중 · 고등학교) 중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

유의사항 2014년까지 격년으로 각기 실시되던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와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는 조사 내용의 중복과 정책 활용도 측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해 2015년 통합이 결정되어, 2016년부터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로 통합적으로 조사한다. 이에 각 통계표에서 제시하는 내용 중 일부가 연도별로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특히 2022년도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을 세분화하여 측정하므로 시계열적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2-17 연도별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률 (2010~2022)

(단위: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이며 제시된 학교폭력 유형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임
2: '22년도부터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폭력 피해경험을 세분화하여 측정함. 따라서 2020년 전 피해 경험률과 단순 비교 불가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2010-2014);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2016-2022)

표 2-6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대상 (2018~2022)

(단위: %)

구분			청소년 폭력 피해 경험률	피해사실을 알린 경험		피해사실을 알린 대상(중복응답)					
				알린 적 있음	알린 적 없음	가족에게 알렸다	선생님에게 알렸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	지원기관[2]에 알렸다	경찰(112)에 알렸다	기타
전체		2018	8.5	48.3	51.7	54.1	52.0	47.0	4.5	1.3	1.3
		2020	5.9	62.4	37.6	71.4	36.4	35.6	4.0	1.5	3.7
		2022	16.3	44.0	56.0	68.0	42.2	42.5	4.0	2.8	2.5
성별	남자	2018	9.4	41.0	59.0	50.0	54.5	35.7	3.7	1.1	2.4
		2020	6.3	55.2	44.8	69.2	34.5	24.0	4.0	2.1	4.0
		2022	19.2	38.5	61.5	64.4	39.8	35.4	3.6	4.1	4.0
	여자	2018	7.5	57.9	42.1	58.0	49.7	57.6	5.2	1.6	0.3
		2020	5.4	71.4	28.6	73.6	38.5	46.9	4.0	1.0	3.4
		2022	13.2	52.6	47.4	72.3	45.0	50.6	4.5	1.4	0.7
학교급	초	2018	9.9	63.9	36.1	63.1	46.6	36.0	2.2	0.3	1.9
		2020	9.8	70.9	29.1	80.5	31.3	25.0	0.7	0.8	4.8
		2022	22.1	54.5	45.5	78.4	38.7	35.2	3.1	2.4	1.9
	중	2018	9.7	46.8	53.2	50.3	62.2	52.3	6.1	1.7	1.0
		2020	5.3	57.0	43.0	63.8	45.5	46.4	7.2	3.8	3.0
		2022	18.1	37.1	62.9	55.8	45.9	49.8	4.8	3.0	3.5
	고	2018	6.4	31.4	68.6	39.5	46.3	63.9	6.8	3.2	0.4
		2020	2.8	44.6	55.4	42.5	41.5	65.5	13.9	0.0	0.0
		2022	8.5	30.6	69.4	50.0	49.2	58.5	6.5	4.2	2.9

주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해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
주2: 지원기관의 정의는 '20년도 '상담기관, Wee센터, 학교폭력신고센터(117) 등'에서 '청소년상담 1388, Wee센터, 학교폭력신고센터(117) 등으로 변경함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1999	2022	2년

표 2-7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유형 비율 (2016~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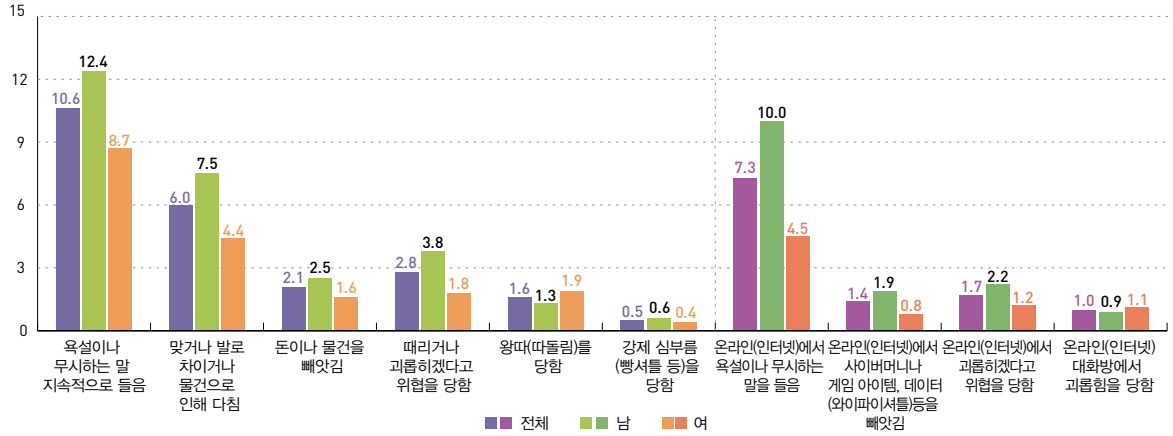
구분		2016	2018	2020	2022
사례 수(건)		15,633	15,629	13,796	16,627
청소년폭력 피해률		8.6	8.5	5.9	16.3
학교안과 밖에서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지속적으로 들음	6.9	6.9	4.1	10.6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물건으로 인해 다침	2.9	2.4	1.6	6.0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1.0	1.0	0.7	2.1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	1.8	1.6	1.1	2.8
	왕따(따돌림)를 당함	1.6	1.6	1.3	1.6
	강제 심부름(빵셔틀, 와이파이셔틀, 게임셔틀 등)을 당함	0.5	0.2	0.3	0.5
사이버 공간에서	온라인(인터넷)에서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들음	-	-	-	7.3
	온라인(인터넷)에서 사이버머니나 게임 아이템, 데이터(와이파이셔틀)등을 빼앗김	-	-	-	1.4
	온라인(인터넷)에서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	-	-	-	1.7
	온라인(인터넷)대화방에서 괴롭힘을 당함	-	-	-	1.0
	온라인(인터넷)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	0.8	0.9	1.1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이며 제시된 학교폭력 유형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임
2) '22년도부터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폭력 피해경험을 세분화하여 측정함. '온라인(인터넷)에서 따돌림에서 괴롭힘을 당함'을 온라인(인터넷)에서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음 '강제 심부름(빵셔틀, 와이파이셔틀, 게임셔틀 등)을 당함','온라인(인터넷)에서 사이버머니나 게임아이템, 데이터(와이파이셔틀) 등을 빼앗김', '온라인(인터넷)에서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 '온라인(인터넷)에서 강제로 대화방에 초대되거나 초대받아 들어간 후 나만 대화방에 남고 모두 나가는 등의 괴롭힘을 당함'으로 구분하여 측정함. 따라서 2020년 전 피해경험률과 단순 비교 불가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2-18 성별 학교폭력 피해유형 비율 (2022)

(단위: %)



주: 기타는 모름 혹은 무응답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2022)

표 2-8 연도별 · 피해 장소별 학교폭력 비율 (2010~2020)

(단위: %)

연도	학교교실 안	학교교실 외 교내공간	학교주변/ 공터/골목	동네 주변/ 골목/놀이터/ 주차장	상가, 지하도 안/ 학원 안/ 학원 건물 주변	시내유흥가/ 번화가	공원/야산 등	사이버 (인터넷 공간)	기타
2010	42.3	21.5	8.6	8.8	3.7	1.5	4.3	-	8.0
2011	38.3	12.3	8.3	10.5	2.1	1.9	4.1	-	22.3
2012	51.5	12.7	9.9	10.6	2.8	3.0	2.3	-	7.2
2014	46.4	13.3	10.6	9.0	3.8	2.5	2.5	-	11.7
2016	56.8	18.9	2.5	5.3	4.3	0.8	0.4	7.7	3.1
2018	51.6	19.7	2.2	4.7	5.3	0.6	0.5	10.7	4.6
2020	31.4	14.5	1.5	10.0	6.0	1.0	1.7	26.7	4.6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2010~2014),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2016~2020)

07
대 표

아동 빈곤율

Child poverty rates

지표 정의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전체 아동 중 상대적 빈곤선(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인 아동의 비율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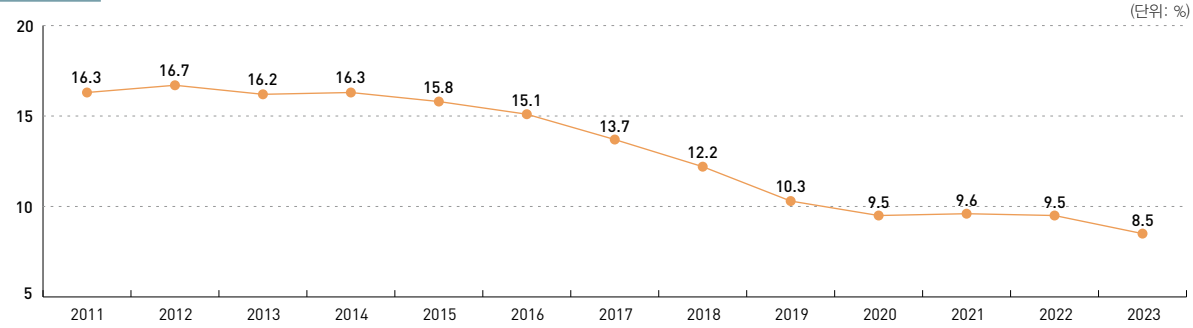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아동 수}}{\text{전체 아동 수}} \times 100$

유의사항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OECD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2017년 개편되어 가계수지(소득 및 지출) 통계에서 소득통계와 지출통계가 분리되어 지출통계는 연간 주기로 작성 및 공표된다.

그림 2-19 연도별 상대적 아동(0~17세) 빈곤율 (2011~2023)

(단위: %)



주: 상대적 빈곤율: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표 2-9 연도별 · 소득지출별 상대적 아동 빈곤율 (전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지출 50%, 2016~2022)

(단위: %)

연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17	14.5	13.9	14.2	4.1	5.5
2018	13.1	12.3	12.3	3.4	4.6
2019	12.1	10.8	10.6	2.9	4.4
2020	12.9	10.5	9.8	2.8	4.6
2021	12.7	10.2	9.9	3.1	5.2
2022	11.6	9.9	9.5	2.9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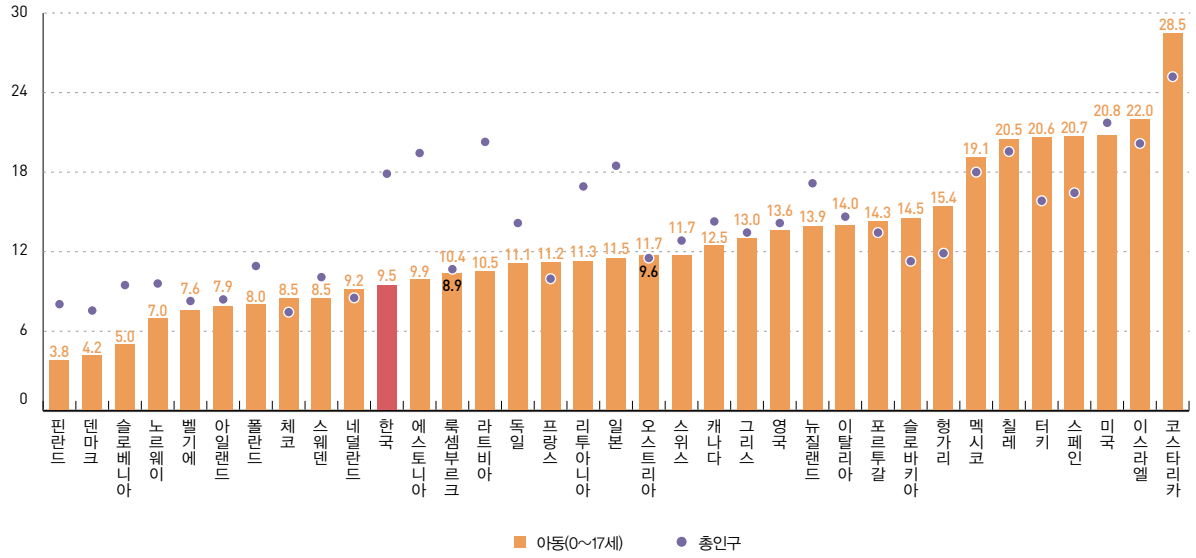
주: 전체 아동 중 기준빈곤선(중위소득 및 지출의 50%) 아래에 있는 아동의 비율(개인 기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	2023	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2005	2022	1년

그림 2-20 OECD 국가의 상대적 아동 빈곤율(중위가처분소득 50% 기준)

(단위: %)



주: 독일, 일본은 2021년, 나머지는 2022년 수치임

자료: OECD Poverty rate(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에서 2025.6.17. 추출)

07-1
연 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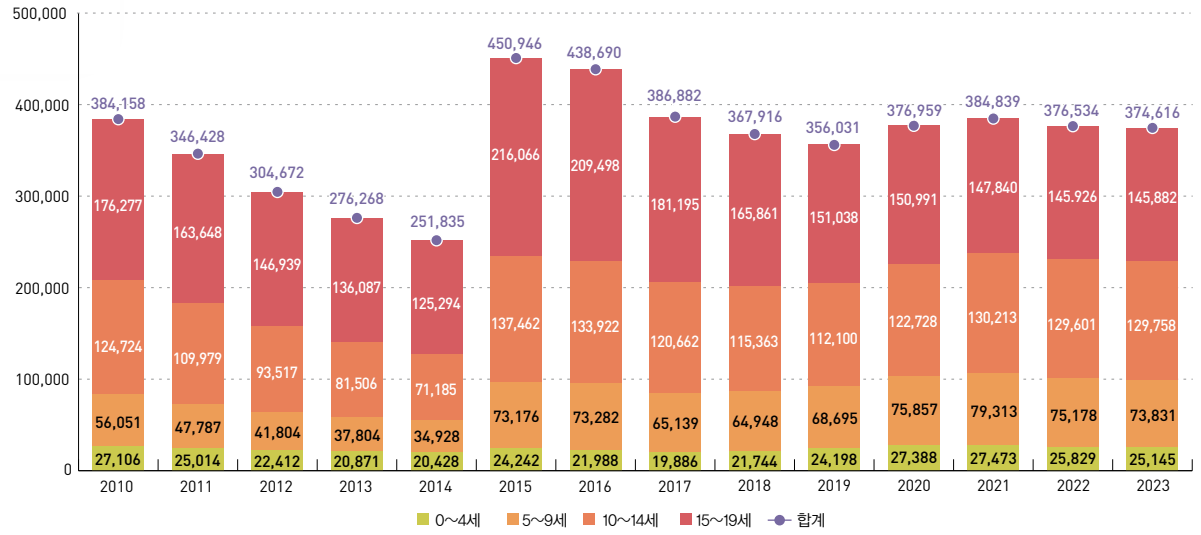
지표 정의

아동 ·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아동 · 청소년을 지칭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계층으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수급한다.

그림 2-21 연령별 국민기초생활 수급 아동 수 (201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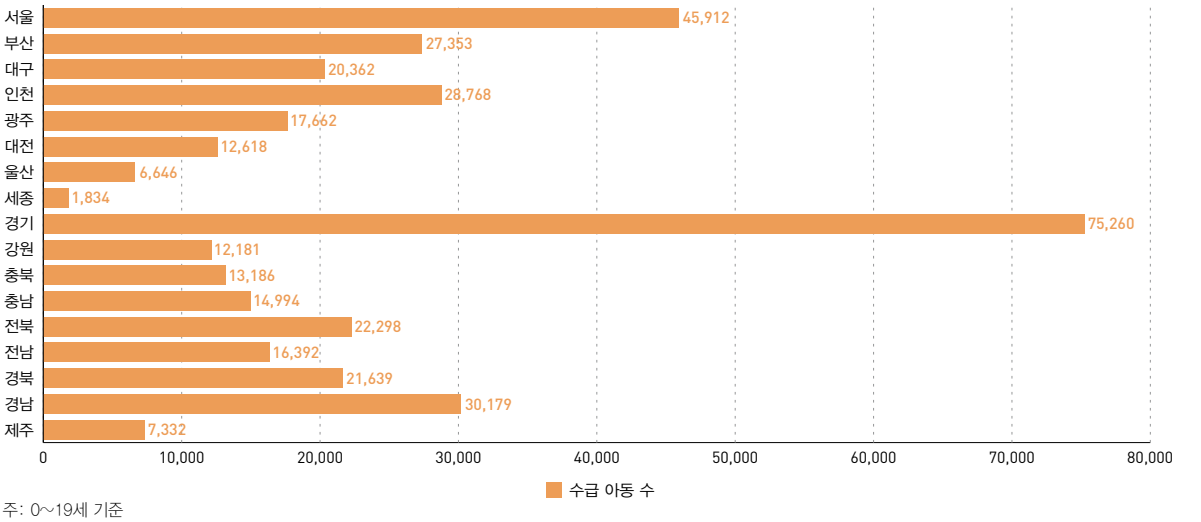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2-22 시도별 국민기초생활 수급 아동 수 (2023)

(단위: 명)



주: 0~19세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23.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1977	2023	1년

07-2
연 관

아동급식 지원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school me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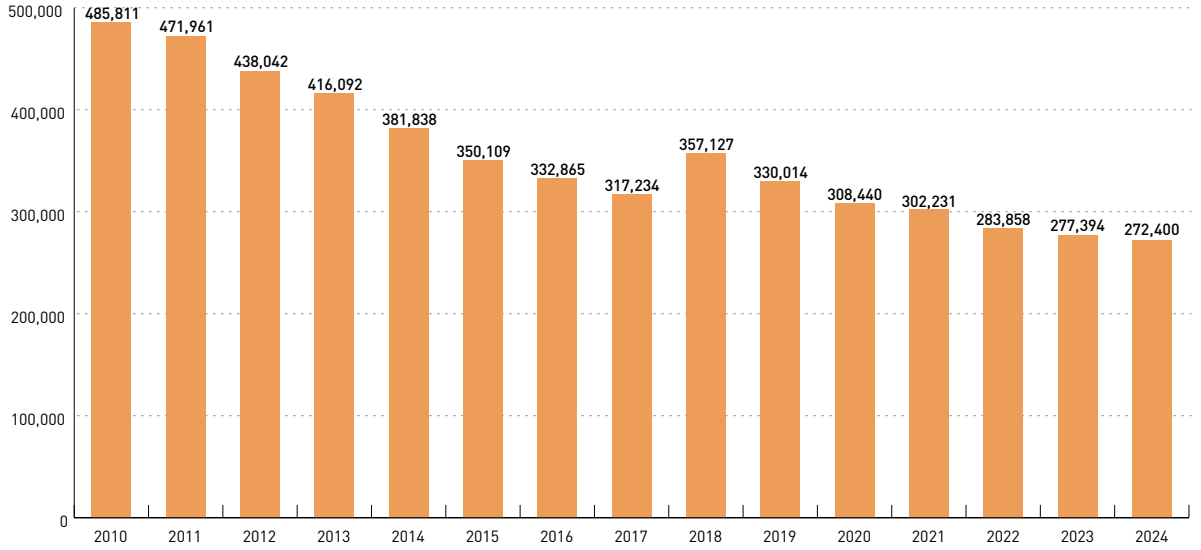
지표 정의

아동급식은 빈곤, 가족해체 등 여러 가지 가정 사유로 발생하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 식사를 제공받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의미한다.

-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총괄하는 사업임.
- 지자체(시도/시군구) 제출자료를 취합한 자료임.

그림 2-23 아동급식 지원자 수 (2010~2024)

(단위: 명)



주: 매년 12월말 기준 시점의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지원 현황(지자체 제출자료), 각 연도.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7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지원 현황	2000	2024	1년

08 대 표

나홀로 아동

Children staying home alone

지표 정의

나홀로 아동이란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한다.

- 방과 후 기관 이용 초등학생 중 나홀로 아동은 방과 후 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자녀 중 기관 이용 이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방과 후 기관 이용 이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방치된 아동(초등학생 자녀)이 혼자 있는 시간**

표 2-10 보육 상태별 아동인구 (2015, 2020)

(단위: 천 명, %)

구분	아동인구	부모	조부모	가족·친인척	가사 도우미	혼자 또는 다른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보육시설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학원	기타
2015년	5,764 (100.0)	(50.3)	(10.4)	(0.9)	(1.1)	(3.0)	(20.7)	(10.2)	(1.3)	(11.7)	(25.7)	(0.1)
0~6세	3,119 (100.0)	(54.7)	(11.7)	(0.8)	(1.4)	(0.2)	(38.2)	(18.8)	(1.3)	(0.7)	(3.9)	(0.1)
7~12세	2,645 (100.0)	(45.1)	(9.0)	(1.0)	(0.7)	(6.2)	(0.1)	(0.1)	(1.4)	(24.7)	(51.3)	(0.1)

구분	아동인구	부모	조부모	가족·친인척	가사 도우미	혼자 또는 다른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보육시설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학원	기타
2020년	5,198 (100.0)	(60.2)	(12.0)	(1.4)	(1.2)	(4.6)	(17.8)	(8.7)	(1.1)	(5.9)	(15.7)	(0.1)
0~6세	2,550 (100.0)	(60.3)	(11.7)	(0.8)	(1.6)	(0.1)	(36.4)	(17.8)	(0.0)	(0.5)	(0.6)	(0.1)
7~12세	2,647 (100.0)	(60.1)	(12.2)	(2.1)	(0.8)	(8.9)	(0.0)	(0.0)	(2.2)	(11.1)	(30.3)	(0.1)

주 1) 아동보육상태는 평일 낮(오전 9시~오후 6시) 동안 주된 돌봄 형태이며, 초등학생은 정규 수업 후 주된 돌봄 형태임.
2) 응답자가 2개의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다중응답 형태로 조사되어 각 항목의 합의 100을 초과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표 2-11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2020~2021)

(단위: %)

구분	없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2020(13차)	18.8	21.4	21.2	13.4	9.7	15.5
2021(14차)	21.81	19.44	22.55	15.36	7.79	1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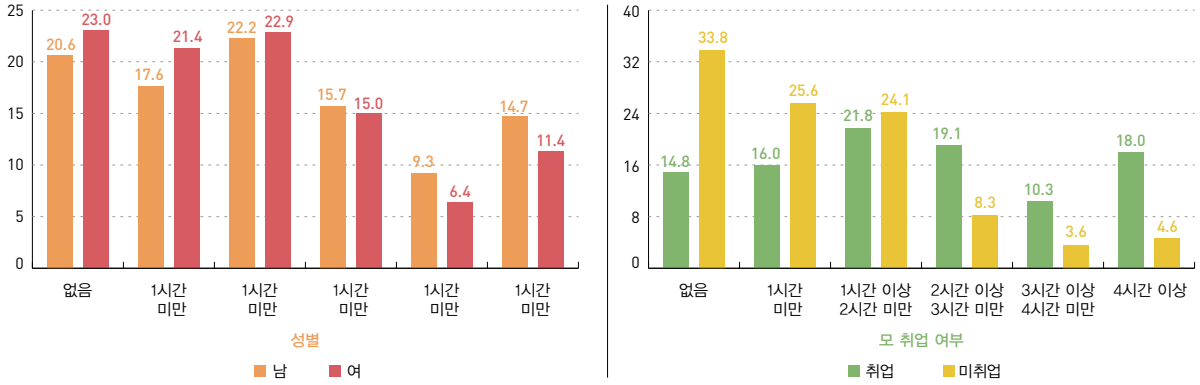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은 절대 시간이 아닌, ① 없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⑥ 4시간 이상으로 측정한 구간척도의 점수임.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 II)	2008	2021	1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2020	5년

그림 2-24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2021)

(단위: 시간)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은 절대 시간이 아닌, ① 없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⑥ 4시간 이상으로 측정한 구간척도의 점수임.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

08-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연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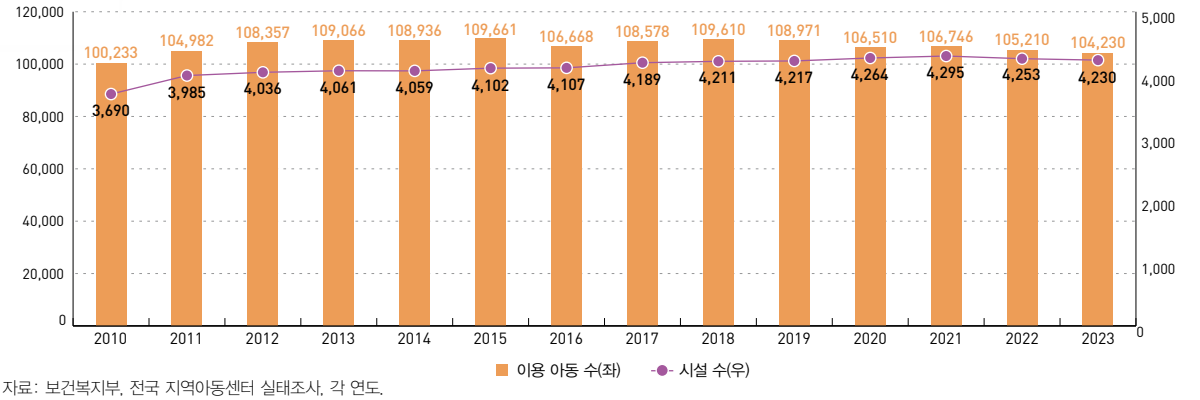
Number of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s

지표 정의

18세 미만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 등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수를 의미한다.

그림 2-25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및 시설 수 (2010~2023)

(단위: 명,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표 2-12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2010~2023)

(단위: 개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3,690	3,985	4,036	4,061	4,059	4,102	4,107	4,189	4,211	4,217	4,264	4,295	4,253	4,230
서울	367	395	404	405	409	414	414	450	454	454	468	477	462	456
부산	185	194	196	200	200	205	204	208	212	210	210	209	206	209
대구	147	171	177	188	191	200	199	198	200	199	199	201	202	210
인천	174	182	187	186	181	179	183	182	178	176	181	185	183	179
광주	218	272	278	285	292	300	301	306	308	310	310	311	307	304
대전	144	149	146	147	147	146	145	145	144	143	142	140	140	138
울산	52	56	57	58	56	56	55	54	56	56	57	58	55	57
세종	-	-	11	9	10	11	12	12	13	13	13	13	13	13
경기	679	722	735	728	751	757	763	783	789	793	800	803	799	804
강원	159	164	164	162	163	166	168	168	172	174	173	174	174	171
충북	185	201	202	199	190	188	184	185	184	183	181	185	180	183
충남	200	216	214	221	224	232	226	240	238	238	238	238	240	228
전북	267	286	288	287	281	281	286	285	285	285	288	294	302	290
전남	368	399	392	392	383	387	384	379	378	377	390	395	387	377
경북	232	252	256	261	257	259	258	267	271	247	274	275	267	270
경남	244	254	257	260	255	253	259	261	263	266	274	271	271	278
제주	69	72	72	73	69	68	66	66	66	66	66	66	65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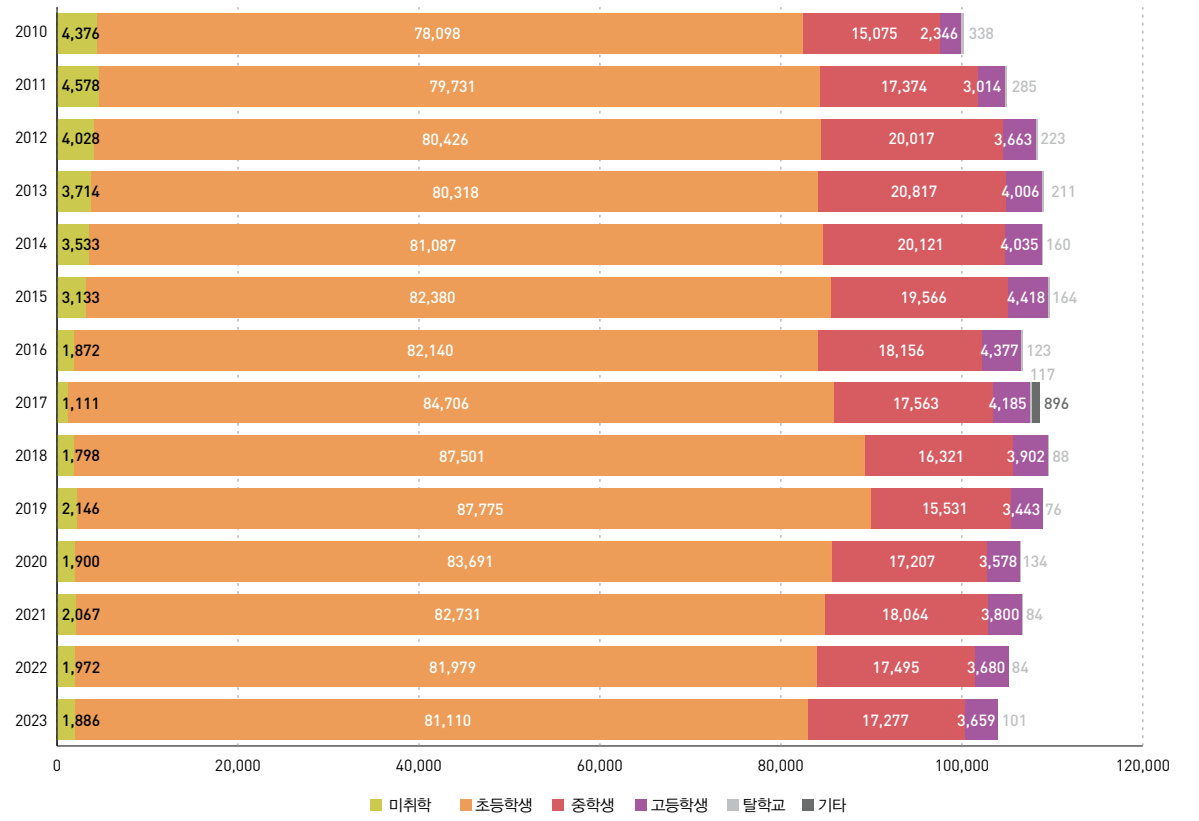
주: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함.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2008	2023	1년

그림 2-26 학령별 ·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2010~2023)

(단위: 명)



주: 분석 불가능 시설 299개소를 이용하는 아동 수가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표 2-13 학령별 ·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2010~2023)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100,233	104,982	108,357	109,066	108,936	109,661	106,668	108,578	109,610	108,971	106,510	106,746	105,210	104,033
미취학	4,376	4,578	4,028	3,714	3,533	3,133	1,872	1,111	1,798	2,146	1,900	2,067	1,972	1,886
초등학생	78,098	79,731	80,426	80,318	81,087	82,380	82,140	84,706	87,501	87,775	83,691	82,731	81,979	81,110
중학생	15,075	17,374	20,017	20,817	20,121	19,566	18,156	17,563	16,321	15,531	17,207	18,064	17,495	17,277
고등학생	2,346	3,014	3,663	4,006	4,035	4,418	4,377	4,185	3,902	3,443	3,578	3,800	3,680	3,659
학교밖 청소년	338	285	223	211	160	164	123	117	88	76	134	84	84	101
기타	-	-	-	-	-	-	-	896	-	-	-	-	-	-

주: 분석 불가능 시설 299개소를 이용하는 아동 수가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표 2-14 가정형태별 · 양육자 경제활동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2023)

(단위: 명, %)

구분		이용 아동 수	비율	센터당 평균 아동 수
전체		104,033	100	26.5
양부모가정	소계	73,223	70.4	18.6
	맞벌이 가정	56,618	54.4	14.4
	아버지만 경제활동	12,838	12.3	3.3
	어머니만 경제활동	2,475	2.4	0.6
	경제활동 안함	1,292	1.2	0.3
모자가정	소계	17,291	16.6	4.4
	경제활동 함	14,895	14.3	3.8
	경제활동 안 함	2,396	2.3	0.6
부자가정	소계	10,355	10.0	2.6
	경제활동 함	9,370	9.0	2.4
	경제활동 안 함	985	0.9	0.3
조손가정	소계	2,458	2.4	0.6
	경제활동 함	1,414	1.4	0.4
	경제활동 안 함	1,044	1.0	0.3
소년소녀가정		80	0.1	0.0
기타(친척 및 시설)		626	0.6	0.2

주: 분석 불가능 시설 299개소를 이용하는 아동 수가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2023.

09
대 표

보호대상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needing protection

지표 정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을 말한다.

측정 산식

• 시 · 군 · 구청에서 보고받아 사회적 보호를 하게 된 아동의 총합

표 2-15 발생 원인별 보호대상아동 수 및 비중 (2000~2023)

(단위:명, %)

연도	총 계	기아, 미아	미혼부모	비행, 가출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등
2000	9,085	1,422(15.7)	4,190 (46.1)	1,757 (19.3)	1,716 (18.9)	
2001	10,586	815 (7.7)	4,897 (46.3)	728 (6.9)	4,146 (39.2)	
2002	10,057	708 (7.0)	4,337 (43.1)	749 (7.4)	4,263 (42.4)	
2003	10,222	707 (6.9)	4,457 (43.6)	595 (5.8)	4,463 (43.7)	
2004	9,393	543 (5.8)	4,004 (42.6)	581 (6.2)	4,265 (45.4)	
2005	9,420	492 (5.2)	2,638 (28.0)	1,413 (15.0)	4,877 (51.8)	
2006	9,034	285 (3.2)	3,022 (33.5)	802 (8.9)	4,925 (54.5)	
2007	8,861	342 (3.9)	2,417 (27.3)	748 (8.4)	5,354 (60.4)	
2008	9,284	353 (3.8)	2,349 (25.3)	706 (7.6)	891 (9.6)	4,985 (53.7)
2009	9,028	257 (2.8)	3,070 (34.0)	707 (7.8)	1,051 (11.6)	3,943 (43.7)
2010	8,590	401 (4.7)	2,804 (32.6)	772 (9.0)	1,037 (12.1)	3,576 (41.6)
2011	7,483	299 (4.0)	2,515 (33.6)	741 (9.9)	1,125 (15.0)	2,803 (37.5)
2012	6,926	285 (4.1)	1,989 (28.7)	708 (10.2)	1,122 (16.2)	2,822 (40.7)
2013	6,020	306 (5.1)	1,534 (25.5)	512 (8.5)	1,117 (18.6)	2,551 (42.4)
2014	4,994	295 (5.9)	1,226 (24.5)	508 (10.2)	1,105 (22.1)	1,860 (37.2)
2015	4,503	347 (7.7)	930 (20.7)	360 (8.0)	1,094 (24.3)	1,772 (39.4)
2016	4,592	274 (6.0)	856 (18.6)	314 (6.8)	1,540 (33.5)	1,608 (35.0)
2017	4,121	273 (6.6)	850 (20.6)	229 (5.6)	1,437 (34.9)	1,332 (32.3)
2018	3,918	338 (8.6)	623 (15.9)	231 (5.9)	1,415 (36.1)	1,311 (31.8)
2019	4,047	245 (6.1)	464 (11.5)	473 (11.7)	1,484 (36.7)	1,381 (33.5)
2020	4,120	183 (4.4)	463 (11.2)	468 (11.4)	1,767 (42.9)	1,239 (30.1)
2021	3,437	117 (3.4)	366 (10.6)	293 (8.5)	1,660 (48.3)	1,001 (24.3)
2022	2,289	73 (3.2)	252 (11.0)	11 (0.5)	1,103 (48.2)	850 (20.6)
2023	2,054	89 (4.3)	259 (12.6)	14 (0.7)	785 (38.2)	907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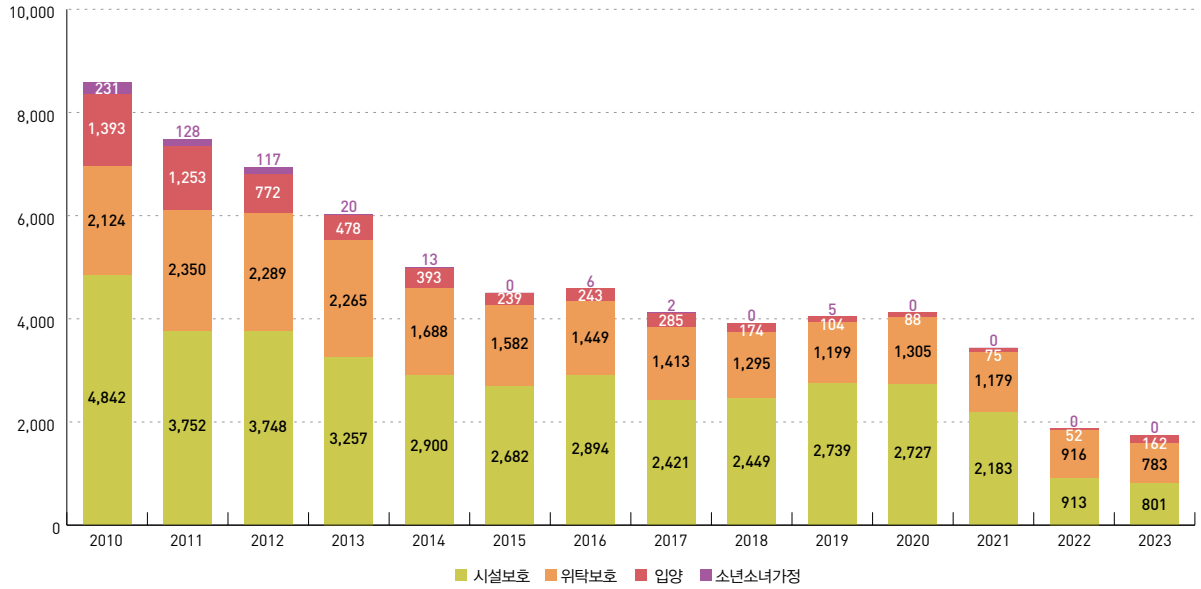
주: 부모 빈곤, 실직 등에는 빈곤, 실직, 부모이혼, 부모사망, 부모질병을 포함함(2020년부터는 부모교정시설입소도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호 아동 현황보고 (내부자료)	1994	2023	1년

그림 2-27 보호대상아동 조치 현황 (2010~2023)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표 2-16 보호대상아동 조치 현황 (2023)

(단위: 명, %)

전체	조치내용											
	시설입소					가정보호				일시보호		
	소계	양육시설 등	공동생활 가정	보호치료 시설	기타	소계	입양	가정위탁	입양 전 위탁	소계	시설보호	가정형 보호
2,054 (100.0)	801 (39.0)	524 (25.5)	222 (10.8)	13 (0.6)	42 (2.0)	945 (46.0)	162 (7.9)	783 (38.1)	- -	308 (15.0)	266 (13.0)	42 (2.0)

자료: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2023.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09-1
연 관

아동복지시설 아동 수

Number of uses of children welfare institutions

지표 정의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동 수는 생활,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과 아동종합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총합

표 2-17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수 (1990~2023) (단위: 개소)

연도	총계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
1990	278	223	10	-	-	-
1995	269	215	13	-	-	-
2000	269	235	12	6	8	-
2005	282	242	13	8	15	-
2006	282	243	13	8	15	-
2007	282	243	13	8	13	-
2008	285	242	12	10	14	5
2009	280	239	12	11	13	3
2010	280	238	12	11	14	3
2011	280	242	12	10	12	3
2012	281	243	12	11	12	3
2013	281	243	13	11	11	3
2014	278	242	12	10	11	3
2015	281	243	12	11	12	3
2016	281	243	12	11	12	3
2017	280	242	12	11	12	3
2018	279	241	12	11	12	3
2019	281	240	13	12	13	3
2020	274	237	15	12	10	-
2021	275	236	15	12	11	-
2022	289	245	15	12	17	-
2023	288	243	16	12	17	-

주: 1)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포함
2) 2020년부터 아동종합시설은 아동일시보호시설에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표 2-18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수 (1990~2023) (단위: 명)

연도	총계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
1990	23,450	20,147	471	-	-	-
1995	18,074	15,105	620	-	-	-
2000	17,720	16,293	222	460	387	-
2005	19,151	17,729	229	457	626	-
2006	18,817	17,517	235	436	554	-
2007	18,426	17,161	269	404	365	-
2008	17,992	16,706	257	477	341	142
2009	17,586	16,239	262	514	368	138
2010	17,119	15,787	235	495	402	131
2011	16,523	15,313	249	455	361	113
2012	15,916	14,700	256	497	335	128
2013	15,239	14,038	250	486	359	106
2014	14,630	13,437	252	481	336	124
2015	14,001	12,821	243	447	350	140
2016	13,689	12,448	230	485	356	170
2017	12,789	11,665	221	497	279	127
2018	12,193	11,100	227	447	272	147
2019	11,665	10,585	218	469	275	118
2020	11,356	10,352	253	436	315	-
2021	11,107	10,121	233	404	247	-
2022	10,312	9,439	215	435	223	-
2023	9,893	8,991	230	442	230	-

주: 1)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포함
2) 2020년부터 아동종합시설은 아동일시보호시설에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6	2023	1년

09-2
연 관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under foster care

지표 정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는 보호대상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수를 의미한다.

-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이다(아동복지법 제3조).

측정 산식

-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총합**

표 2-19 위탁가정 유형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2012~2023)

(단위: 세대, 명, %)

연도	구분	계	위탁가정 유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 위탁가정
2013	세대 수	11,169 (100.0)	7,294 (65.3)	3,086 (27.6)	789 (7.1)
	아동 수	14,596 (100.0)	9,776 (67.0)	3,843 (26.3)	977 (6.7)
2014	세대 수	11,077 (100.0)	7,162 (64.7)	3,089 (27.9)	826 (7.5)
	아동 수	14,385 (100.0)	9,550 (66.4)	3,816 (26.5)	1,019 (7.1)
2015	세대 수	10,706 (100.0)	6,944 (64.9)	2,927 (27.3)	835 (7.8)
	아동 수	13,728 (100.0)	9,127 (66.5)	3,556 (25.9)	1,045 (7.6)
2016	세대 수	10,197 (100.0)	6,642 (65.1)	2,773 (27.2)	782 (7.7)
	아동 수	12,896 (100.0)	8,578 (66.5)	3,348 (26.0)	970 (7.5)
2017	세대 수	9,575 (100.0)	6,207 (64.8)	2,605 (27.2)	763 (8.0)
	아동 수	11,983 (100.0)	7,950 (66.3)	3,100 (25.9)	933 (7.8)
2018	세대 수	8,955 (100.0)	5,831 (65.1)	2,357 (26.3)	767 (8.6)
	아동 수	11,141 (100.0)	7,426 (66.7)	2,801 (25.1)	914 (8.2)
2019	세대 수	8,359 (100.0)	5,442 (65.1)	2,167 (25.9)	750 (9.0)
	아동 수	10,384 (100.0)	6,905 (66.5)	2,572 (24.8)	907 (8.7)
2020	세대 수	8,001 (100.0)	5,155 (64.4)	2,069 (25.9)	777 (9.7)
	아동 수	9,923 (100.0)	6,542 (65.9)	2,447 (24.7)	934 (9.4)
2021	세대 수	7,733 (100.0)	4,817 (62.3)	1,999 (25.9)	917 (11.9)
	아동 수	9,535 (100.0)	6,107 (64.0)	2,344 (24.6)	1,084 (11.4)

연도	구분	계	위탁가정 유형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2022	세대 수	7,591 (100.0)	7,365 (97.0)	209 (2.8)	17 (0.2)
	아동 수	9,330 (100.0)	9,075 (97.3)	237 (2.5)	18 (0.2)
2023	세대 수	7,714 (100.0)	7,433 (96.4)	270 (3.5)	11 (0.1)
	아동 수	9,526 (100.0)	9,201 (96.6)	312 (3.3)	1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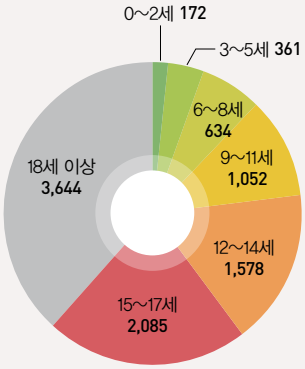
주: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정위탁 유형 분류가 변경되어 2022년 통계부터 일반 · 전문 · 일시가정위탁으로 구분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6	2023	1년

그림 2-28 연령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2023)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23.

표 2-20 연도별 · 연령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2010~2023)

(단위: 명)

구분	계	보호 아동 연령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2010	16,359	110	645	1,726	3,369	5,124	5,317	68
2011	15,486	121	610	1,451	3,340	4,940	4,944	80
2012	14,502	128	559	1,280	2,976	4,814	4,709	36
2013	14,596	134	463	943	2,210	4,413	5,502	931
2014	14,385	137	555	951	1,971	4,151	5,272	1,348
2015	13,728	125	566	891	1,622	3,469	5,186	1,869
2016	12,896	121	585	855	1,451	2,860	4,825	2,189
2017	11,983	117	593	826	1,389	2,423	4,450	2,185
2018	11,141	108	585	895	1,402	2,234	3,787	2,130
2019	10,384	98	573	893	1,378	1,955	3,236	2,251
2020	9,923	153	674	1,044	1,381	2,041	2,722	1,908
2021	9,535	228	595	979	1,345	1,882	2,418	2,088
구분	계	보호 아동 연령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2022	9,330	181	339	676	1,173	1,564	2,086	3,311
2023	9,526	172	361	634	1,052	1,578	2,085	3,644

주: 2022년부터 연령 구분 변경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09-3
연 관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in grouphomes

지표 정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52조).

측정 산식

-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총 수

표 2-21 아동공동생활가정 수 및 연령별 보호 아동 현황 (2009~2023)

(단위: 명)

연도	시설 수 (개소)	보호 아동 재학 유형						
		계	0~7세 (미취학)	8~13세 (초등)	14~16세 (중등)	17~19세 (고등)	20세 이상 (대재)	기타
2010	416	2,127	195	894	543	388	42	65
2011	460	2,241	254	843	619	402	51	72
2012	489	2,438	291	848	682	481	50	86
2013	480	2,481	280	884	670	546	59	42
2014	476	2,588	300	878	661	640	79	30
2015	480	2,636	352	850	652	653	87	42
2016	510	2,758	428	878	701	613	101	37
2017	533	2,811	385	947	661	642	127	49
2018	558	2,872	355	998	678	665	129	47
2019	578	2,949	378	1,024	678	666	157	46
2020	591	3,126	393	1,132	698	681	182	40
2021	518	2,667	287	981	649	632	176	41
2022	520	2,669	236	913	652	600	189	79
2023	520	2,578	225	840	592	615	211	95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6	2023	1년

3

청년

01 청년고용률
02 청년 비정규직 비율
03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
04 청년 니트(NEET) 비율
05 청년 상대적 빈곤율
06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
07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08 청년 우울감 경험률
09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10 청년 사회단체 참여율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청년의 고용과 경제활동	청년고용률	대학 졸업 청년고용률
	청년 비정규직 비율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	
	청년 니트(NEET) 비율	
청년의 삶의 질	청년 상대적 빈곤율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청년 우울감 경험률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청년 사회단체 참여율	

01
대 표

청년고용률

Youth employment rate

지표 정의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청년고용률은 15~29세 청년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정의한다.

- 취업자는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 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포함한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명자료 발췌).

  청년의 경제활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는 실업률, 고용률, 고용보조지표 등이 있는데, 이 중 고용률은 청년의 고용성과를 직접 보여주는 지표로 청년일자리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다.

측정 산식

- $\dfrac{\text{취업 중인 15~29세 인구수}}{\text{전체 15~29세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국제노동기구(ILO)가 고용통계기준을 개정(2013년 10월)함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 범위가 '1시간 무급가족종사자'로 확장되었으나, 공식 취업자 · 고용률 등은 현행(18시간 무급가족종사자 취업자 기준)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모수추정의 근간이 되는 추계인구 작성 방법이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변화하고, 과거 시계열도 소급 보정된다. 인구통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 7월~2018년 12월(18년 6개월간)간의 소급 보정된 모수추정용 인구를 적용하여 새로운 표본가중치를 산출하고, 공표자료(KOSIS,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재작성하여 서비스하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명자료 발췌).

표 3-1 청년 연령대별 고용률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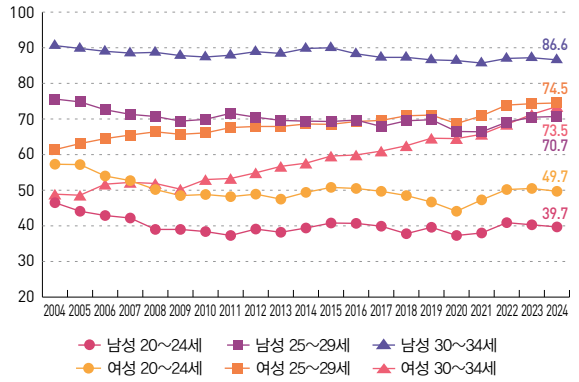
(단위: %)

연령계층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5세 이상 전체	60.5	60.5	60.6	60.8	60.7	60.9	60.1	60.5	62.1	62.6	62.7
15~29세	40.5	41.2	41.7	42.1	42.7	43.5	42.2	44.2	46.6	46.5	46.1
20~24세	44.8	46.1	46.1	45.3	43.7	43.5	41.1	43.1	46.0	45.7	45.1
25~29세	69.0	68.9	69.5	68.7	70.2	70.4	67.6	68.5	71.4	72.3	72.5
30~34세	74.2	75.3	74.7	74.7	75.4	76.1	76.1	76.3	78.3	79.7	8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http://kosis.kr//에서 2025.5.26. 인출)

그림 3-1 성별 청년 연령대별 고용률 (2004~2024)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http://kosis.kr//에서 2025.5.2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24	1개월

01-1
연 관

대학 졸업 청년고용률

Employment rates of 25~34 year-olds with tertiary education

지표 정의

25~34세 고등교육(대학)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을 의미한다.

- 2023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고등교육단계의 학력 소지자 수/연령별 인구수)은 54.5%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7%로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대학졸업 청년의 고용률은 높은 인적자본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거나, 못하는 청년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정규 교육과정이 마무리된 시점으로 예상되는 25~34세 청년 중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을 보여준다. 고등교육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이 포함되고, 사이버 · 원격 · 방송통신대학은 제외된다.**

- $\frac{\text{25~34세 고등교육 이수자 중 취업자 수}}{\text{25~34세 고등교육 이수자}} \times 100$

표 3-2 OECD 국가 25~34세 대학 졸업자 평균 고용률 (2012,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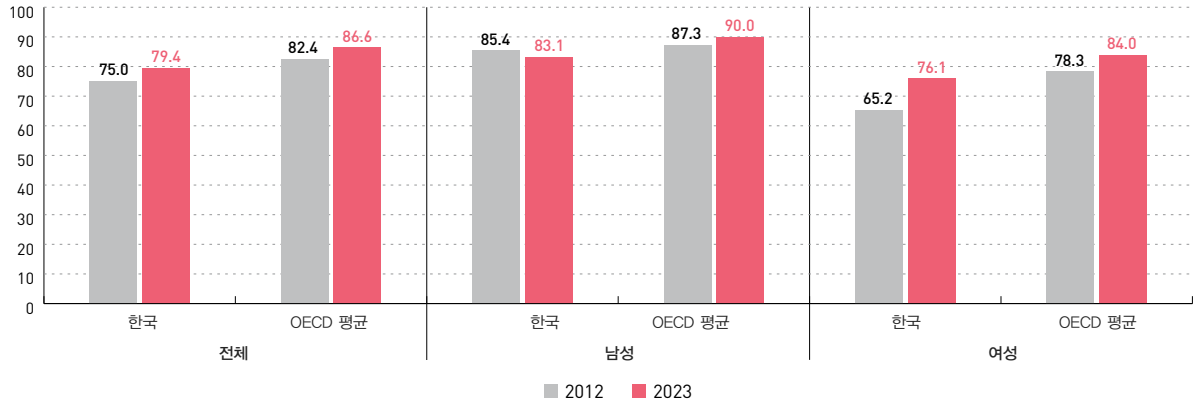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2012	75.0	82.4	85.4	87.3	65.2	78.3
2023	79.4	86.6	83.1	90.0	76.1	84.0

자료: OECD Education and Skills, 2025.6.12. 인출 (https://data-explorer.oecd.org)

그림 3-2 OECD 국가 25~34세 대학졸업자 평균 고용률 (2012, 2023)

(단위: %)



자료: OECD Education and Skills, 2025.6.12. 인출 (https://data-explorer.oecd.org)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대학 졸업 청년고용률	-	2023	비정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9	2024	월

02
대 표

청년 비정규직 비율

Rate of irregular workers among ages 15~29 workers

지표 정의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15세~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 비정규직은 1차적으로 고용 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①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②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③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 근로자가 포함된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설명자료 발췌).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 중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청년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높은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15~29세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수}}{\text{15~29세 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2019년 추가로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은 '18년 이전까지와 '19년 이후로 구분하여 전년 대비 증감 비교가 가능하다. 임금근로자에 관한 기본항목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한 것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결과이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설명자료 발췌).

표 3-3 청년 및 전체 연령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2017~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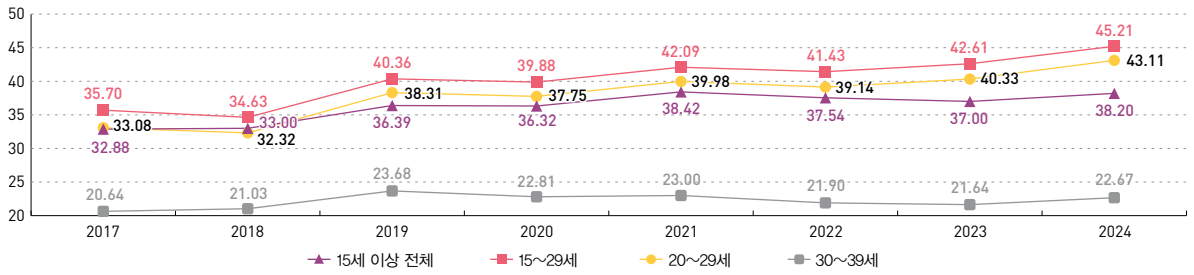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연령대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15세 이상 전체	6,578	32.88	6,614	33.00	7,481	36.39	7,426	36.32	8,066	38.42	8,156	37.54	8,122	37.00	8,459	38.20
15~29세	1,336	35.70	1,275	34.63	1,513	40.36	1,421	39.88	1,562	42.09	1,573	41.43	1,577	42.61	1,604	45.21
15~19세	179	73.36	151	74.02	151	77.84	138	84.15	148	85.06	159	86.41	154	89.02	143	89.94
20~29세	1,157	33.08	1,124	32.32	1,362	38.31	1,283	37.75	1,414	39.98	1,414	39.14	1,423	40.33	1,461	43.11
30~39세	981	20.64	992	21.03	1,111	23.68	1,022	22.81	1,016	23.00	983	21.90	989	21.64	1,072	22.67

주: 1) 각 연도 8월말 기준
2) 2019년 추가로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은 '18년 이전까지와 '19년 이후로 구분하여 전년대비 증감 비교가 가능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5.27. 인출)

그림 3-3 청년 및 전체 연령 비정규직 비율 (2017~2024)

(단위: %)



주: 각 연도 8월 말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5.2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2004	2024	연 1회(8월)

03
대 표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rate among ages 15~29 workers

지표 정의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은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 고용보험은 1993년 제정,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제공한다. 노동시장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으므로 장기실직,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은 생애주기상 실직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청년 중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청년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frac{\text{15~29세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수}}{\text{15~29세 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지역고용조사는 반기별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사회보험 가입률은 2014년부터 상반기(4월)에 조사한 값이다(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설명자료 발췌).

표 3-4 연령대별 사회보험 가입률 (2014~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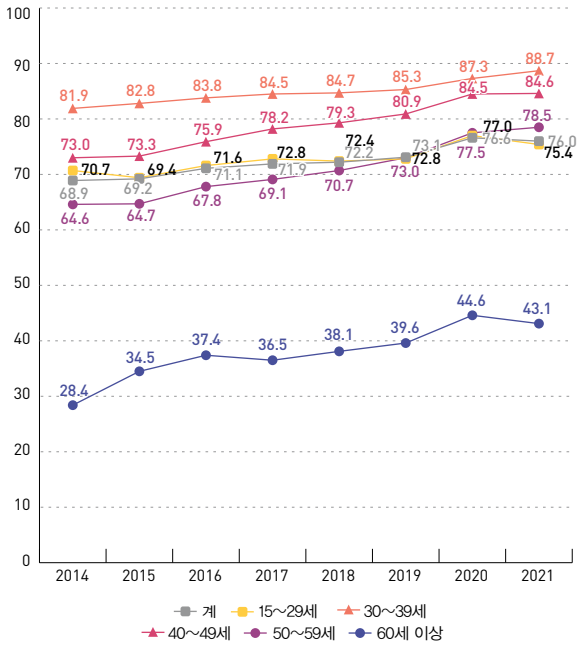
구분	연령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민연금	계	69.1	68.9	70.3	69.6	71.2	71.6	74.3	73.3
	15~29세	70.5	69.1	71.3	72.5	72.1	72.7	76.5	74.8
	30~39세	82.8	83.3	84.2	85.1	85.3	85.9	87.8	88.9
	40~49세	74.3	74.6	76.9	79.4	80.2	82.1	85.5	85.5
	50~59세	66.3	66.3	69.1	70.4	71.7	74.4	78.6	79.5
	60세 이상	18.4	21.1	21.6	7.6	22.7	20.2	22.1	20.7
건강보험	계	72.1	72.0	73.6	74.8	74.9	76.0	79.6	78.9
	15~29세	71.3	70.8	72.2	73.6	72.9	73.3	77.3	75.5
	30~39세	83.2	83.8	84.8	85.8	85.6	86.3	88.4	89.3
	40~49세	74.7	74.8	77.2	79.9	80.4	82.3	85.8	85.8
	50~59세	67.3	67.5	69.8	71.2	72.3	74.7	79.2	80.0
	60세 이상	45.1	46.1	48.2	48.3	49.9	51.4	57.2	55.1
고용보험	계	68.9	69.2	71.1	71.9	72.2	73.1	76.6	76.0
	15~29세	70.7	69.4	71.6	72.8	72.4	72.8	77.0	75.4
	30~39세	81.9	82.8	83.8	84.5	84.7	85.3	87.3	88.7
	40~49세	73.0	73.3	75.9	78.2	79.3	80.9	84.5	84.6
	50~59세	64.6	64.7	67.8	69.1	70.7	73.0	77.5	78.5
	60세 이상	28.4	34.5	37.4	36.5	38.1	39.6	44.6	43.1

주: 1) 임금근로자 대상
2)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는 제외
3) 국민연금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직연금 포함
4)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는 제외
5) 고용보험은 '해당 없음' 응답자 제외

자료: 1) 2014~2017년은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2.11. 인출)
2) 2018~2021년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추출 및 분석 ((http://mdis.kostat.go.kr에서 2022.2.23. 인출)

그림 3-4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률 (2014~2021)

(단위: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2.11. 인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추출 및 분석 ((http://mdis.kostat.go.kr에서 2022.2.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	2021	반기

* 사회보험 가입률은 2014년~2017년까지 1년 주기로 공개됨. 2018년부터 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확인

04
대 표

청년 니트(NEET) 비율

Share of 15~29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s)

지표 정의

청년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율은 15~29세 청년 중 교육, 훈련을 받지도 않고, 일하지 않는 상태에 놓인 청년의 비중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OECD 기준을 따라 형식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상태가 아닌 경우 니트로 정의하였다.

• 생애주기에 있어서 청년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School-to-Work Transition) 과정을 경험하는데, 청년 니트 비율은 성인기 주요 과업(교육, 취업, 원가구로부터 독립(주거), 가족의 형성(결혼), 자녀양육) 중 성인으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결정하는 핵심 과업인 교육과 취업에서 벗어난 유휴청년의 규모를 보여준다. 청년 니트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새로운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니트 비율은 기존 사회안전망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text{•}\ \frac{\text{교육, 직업훈련, 취업 상태가 아닌 15~29세 인구수}}{\text{15~29세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청년 니트는 합의된 정의가 없는데, OECD는 고등학교(중등교육, secondary education)를 졸업한 후 대학이 아닌 기관에서 자격 등을 획득하는 형식교육*(formal education,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중인 청년과 취업상태인 청년을 니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면 공공기관 채용시험(행정고시, 공무원, 공기업 등), 기타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에 통학하는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중인 청년이 니트에 포함된다. 김기헌(2017)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형식교육 중인 청년을 제외하였을 때,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 니트 비율은 16.6%로 OECD 정의를 적용한 청년 니트 비율(19.2%)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니트의 정의를 마련하여, 정책지원이 필요한 청년 니트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김기헌, 2017).

* 형식교육 : 초 · 중 · 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교육통계서비스 용어사전 발췌).

** 비형식교육 : 비형식교육이란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말한다.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의 '학력 · 학위'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이다.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 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스터디 클럽, 개인과외 형태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 있는 학습을 말하며, 직장에서 받은 교육, 학원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강좌, 인터넷 강좌, 학습동아리, 개인교습 등을 포함한다(교육통계서비스 용어사전 발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Society at a glance (국가별 교육통계, 노동력통계)	-	2017	비정기적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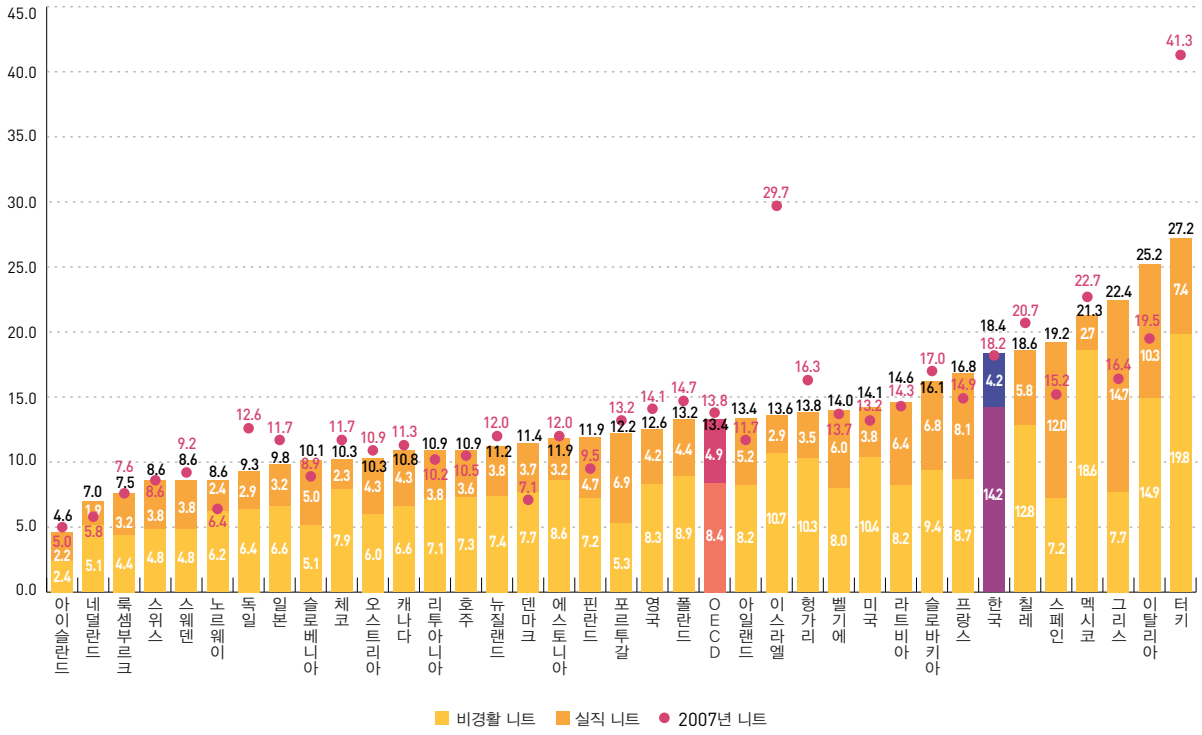
• 김기헌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KLI 패널 워킹페이퍼. 2017년 제8호.

•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그림 3-5 OECD 국가별 청년 니트 비율 (2007, 2017)

(단위: %)



주: 1) 일본의 비경활 니트, 실직니트는 2014년 자료
2) 미국의 비경활 니트, 실직니트는 2016년 자료
3) 스페인의 2007년 니트는 2006년 자료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19, 〈Figure 5.5.〉 More than one in seven young people are not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발췌
(원자료: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the OECD Education database, www.oecd.org/education/database.htm)

05
대 표

청년 상대적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of the youth

지표 정의

청년 빈곤율은 18세~25세 청년 중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청년 비율을 의미한다.**

-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있는데, 여기서는 OECD의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였다.
  전통적으로 청년은 근로연령대에 속해 기초생활보장의 주된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나, 최근 청년이 경험하는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위험을 고려할 때 청년들의 빈곤 위험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청년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시장소득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 – 조세 – 사회보장분담금

**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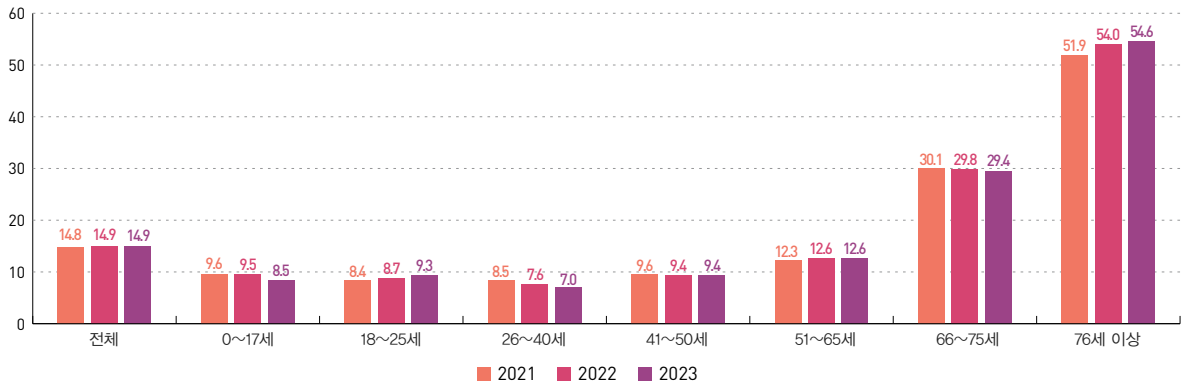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18~25세 인구수}}{\text{18~25세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행정자료 입수가 불완전한 일부 소득지출항목(재산소득, 소득세)에 대해 통계적 방법을 통해 추정하여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고, 2020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 ·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있다.
OECD는 고용률 산정 시 청년 연령을 15~29세로,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산정 시 청년 연령은 18~25세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OECD의 상대적 빈곤율 산정 방식에 따른 청년 연령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제시하였다.

그림 3-6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2021~2023)

(단위: %)



주: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개인 빈곤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내부자료)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	2023	1년

참고문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06 대 표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

Youth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지표 정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은 20~34세 청년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방수, 면적, 시설)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가구의 비율로 정의한다.

• 최저주거기준이란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의미하며, 주택법 제5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 및 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최저주거기준은 크게 방수기준, 면적기준, 시설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분류한다(이태진 외, 2016, p.149).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은 주거불안정성이 높은 청년의 주거실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저주거기준

〈가구 구성 유형별 최소 주거 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 구성[1)]	실(방) 구성[2)]	총 주거 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 분리 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 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표 3-5 가구 유형별 · 수도권 여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02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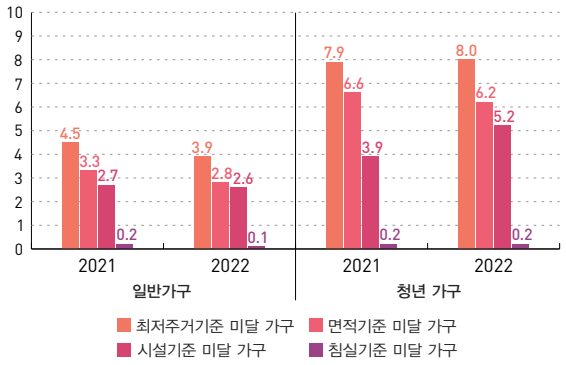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면적 기준 미달 가구	시설기준 미달 가구	침실 기준 미달 가구
일반가구	전체	2021	4.5	3.3	2.7	0.2
		2022	3.9	2.8	2.6	0.1
	수도권	2021	5.5	4.7	2.7	0.3
		2022	4.5	3.6	2.6	0.1
	수도권 외	2021	3.5	1.9	2.7	0.2
		2022	3.4	2.0	2.7	0.1
청년가구	전체	2021	7.9	6.6	3.9	0.2
		2022	8.0	6.2	5.2	0.2
	수도권	2021	10.8	9.0	4.9	0.2
		2022	9.4	7.5	5.8	0.2
	수도권 외	2021	4.7	3.9	2.8	0.2
		2022	6.3	4.6	4.4	0.2

주: 청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경우임.
자료: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2023.

그림 3-7 가구유형별 · 일반/청년 가구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021~2022)

(단위: %)



주: 청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경우임.
자료: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2023.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22	1년

참고문헌

•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우선희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7
대 표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The general health-checkup rate among 20~30s

지표 정의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검진 대상인 20~39세 청년 중 건강검진을 받은 청년의 비율을 의미한다.

-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만 19~3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만 대상이었는데, 2019년부터 20~30대 세대원과 피부양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었다.

측정 산식

- $\frac{\text{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 수검대상자 수}}{\text{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 20~39세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청년 건강검진은 암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는 청년의 불건강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검진 대상 청년의 수검률이므로 전체 청년 중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과 다른 지표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3-6 연령대별 건강검진 수검률 (2022)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수	수검자 수	수검률(%)
전체	22,861,632	17,233,263	75.4
20~29세	2,799,791	1,873,233	66.9
30~39세	3,674,871	2,833,980	77.1
40~49세	4,646,287	3,728,773	80.3
50~59세	4,930,284	3,871,726	78.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2008	2022	1년

08
대 표

청년 우울감 경험률

Rate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ages 19~29

지표 정의

청년 우울감 경험률은 19~29세 청년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 최근 청년의 어려움이 고용을 넘어서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변금선, 김기헌, 2019), 가장 대표적인 근거로 지목되는 것이 우울감, 우울증, 불안감, 불안장애 등을 경험하는 청년의 증가이다(김지경, 이윤주, 2018). 청년 우울감 경험률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연령집단으로 여겨져 온 청년이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다른 연령대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청년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우울감을 경험한 19~29세 청년의 수}}{\text{19~29세 청년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전체 자료는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이다(국민건강영양조사 설명자료).

표 3-7 연령대별 우울감 경험률 (200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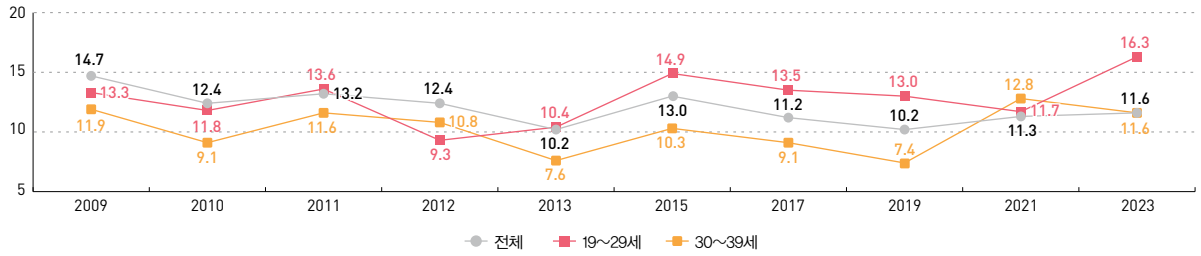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전체		14.7	12.4	13.2	12.4	10.2	13.0	11.2	10.2	11.3	11.6
연령집단	19~29세(청년)	13.3	11.8	13.6	9.3	10.4	14.9	13.5	13.0	11.7	8.7
	30~39세	11.9	9.1	11.6	10.8	7.6	10.3	9.1	7.4	12.8	14.7
	40~49세	13.4	11.0	11.4	12.9	8.3	10.8	7.8	8.9	10.2	16.3
	50~59세	17.8	16.9	15.2	15.0	13.1	13.1	11.0	10.6	8.3	11.6
	60~69세	17.9	15.5	15.0	15.1	12.4	18.2	14.7	11.0	11.9	8.9
	70세 이상	21.5	16.9	15.9	17.9	16.1	15.2	17.3	13.0	13.6	10.2

주: 2013년도부터 2년 주기로 공시
자료: 질병관리청, 2023 국민건강통계, 2023. (http://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60에서 2025.6.02. 인출)

그림 3-8 전체 연령집단과 청년의 우울감 경험률 변화 (2009~2023)

(단위: %)



주: 1)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전체 및 성별 자료는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자료: 질병관리청. 2023 국민건강통계. 2023. (http://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60에서 2025.6.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3	2년

참고문헌 • 김지경, 이윤주 (2018). 20대 청년 심리 · 정서 문제 및 대응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9
대 표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of the youth

지표 정의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9~29세 청년이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0~10점 척도 평균값이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 수준을 보여준다.

• 삶의 질 지표는 주관적, 객관적 지표로 구별되는데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지표와 달리 개인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 수준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 지표가 갖는 질적 측면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삶의 질 향상이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핵심 목표로 설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유의사항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동일한 조건에서도 개인 간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설명자료 발췌).

표 3-8 연령대별 주관적 삶의 만족도 (2015~2024)

(단위: 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5.8	5.9	6.0	6.1	6.0	6.0	6.3	6.5	6.4	6.4
연령대	19~29세 (청년)	5.8	6.1	6.1	6.1	6.0	6.2	6.4	6.5	6.5	6.5
	30~39세	5.8	5.9	6.2	6.2	6.1	6.1	6.5	6.6	6.5	6.6
	40~49세	5.8	5.8	6.0	6.2	5.9	6.1	6.4	6.6	6.6	6.4
	50~59세	5.8	5.8	5.9	6.1	6.1	6.1	6.3	6.5	6.4	6.4
	60~69세	5.9	5.9	5.9	5.9	5.8	-	-	-	-	-
	70세 이상	-	-	-	-	-	5.7	6.1	6.4	6.2	6.3

주 1) 삶의 만족도는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값임.
2) 2020년도부터 조사대상이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60세~69세' 항목에서 '60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변경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4에서 2025.6.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24	1년

참고문헌

• 변금선, 김기헌 (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46(2), 257-258.

10 대 표

청년 사회단체 참여율

Social participation rate of the youth

지표 정의

청년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20~29세 청년 중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시민사회 단체, 취미 · 레저 · 스포츠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로 정의한다.

- 우리나라는 청년 의원 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이다.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만 30세 미만 청년 의원 비율은 0%로 유럽 47개국 평균 3.9%에 한참 못 미친다(IPU, 2018). 청년 사회단체 참여율은 청년의 정치 참여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정치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의 비율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며, 청년정책에 관한 당사자의 권한 부여와 사회적 자본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지난 1년간 단체참여 경험자 중 20~29세 인구수}}{\text{조사대상 인구 중 20~29세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사회조사의 조사 대상 인구는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인구이며, 2011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로 하향 조정되었다.

표 3-9 연령대별 사회단체 참여율 (2019, 2021, 2023)

(단위: %)

구분		연도	전체	친목 · 사교단체	취미 · 스포츠 · 레저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 모임	기타
전체		2019	66.1	77.4	47.3	28.7	12.6	7.6	4.3	1.7	11.5	0.0
		2021	35.8	61.0	49.4	26.6	8.2	5.6	3.2	1.8	6.8	0.0
		2023	64.2	77.1	54.9	25.0	8.9	7.2	4.4	2.1	10.0	0.3
연령 집단	13~19세	2019	48.9	45.3	63.1	23.5	35.1	12.3	0.6	0.2	0.7	0.0
		2021	34.7	47.4	60.4	26.2	14.1	11.1	1.1	0.4	0.7	0.0
		2023	48.0	52.9	70.0	24.1	12.7	10.3	0.7	0.6	1.1	0.3
	20~29세(청년)	2019	60.8	73.1	55.7	21.2	10.6	14.3	3.0	0.7	1.7	0.0
		2021	39.1	65.2	58.3	16.7	7.1	9.6	2.1	1.3	1.2	0.0
		2023	61.8	73.3	67.0	18.1	7.8	12.7	2.9	0.9	1.5	0.4
	30~39세	2019	67.0	80.2	52.7	21.6	7.5	9.4	5.3	1.4	6.4	0.0
		2021	34.0	64.7	51.2	17.3	4.5	5.5	3.7	1.3	5.0	0.0
		2023	61.3	77.4	60.5	17.2	5.5	9.7	5.4	1.4	4.8	0.2
	40~49세	2019	71.0	79.5	52.2	25.5	13.5	7.5	7.1	2.3	11.2	0.0
		2021	37.1	58.7	52.4	24.9	8.1	5.9	5.4	2.6	7.0	0.0
		2023	68.9	77.5	55.7	22.1	8.8	7.1	7.0	2.8	9.2	0.4
	50~59세	2019	74.8	84.6	45.5	30.1	13.7	6.1	5.4	2.9	16.1	0.0
		2021	40.5	65.6	48.9	26.6	9.6	5.3	4.7	2.8	8.9	0.0
		2023	73.2	82.6	55.3	24.4	10.4	6.2	6.4	3.0	11.7	0.3
	60세 이상	2019	63.7	77.2	32.8	40.4	9.9	3.0	1.7	1.2	19.3	0.0
		2021	31.1	57.5	37.2	40.5	8.4	1.5	1.3	1.4	11.2	0.0
		2023	61.9	78.7	42.7	34.8	9.4	3.6	2.0	2.1	17.7	0.3

주: 1) 2019년 이후 기존 참여단체 3개 선택형 문항에서 참여단체 전체 선택형 문항으로 조사표 변경
2) 참여자 – 지난 1년간, 13세 이상 인구로 단체 참여 조사항목의 세부 단체참여 항목에 1개 이상 '참여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3. (https://kosis.kr,에서 2025.6.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회조사*	1999	2023	2년**

* 사회참여 부문 ** 사회참여 부문은 홀수년 공표

참고문헌 • IPU (2018). 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 2018.

4

노인

01 65세 기대여명
02 노인의 ADL 제한율
03 노인의 운동 실천율
04 노인의 학대경험률
05 노인 진료비
06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07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08 장기요양기관 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노인 건강수준	65세 기대여명	
	노인의 ADL 제한율	
	노인의 운동 실천율	노인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노인의 학대경험률	
노인 의료이용	노인 진료비	의료기관 종별 노인 외래환자 수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노인 장기요양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장기요양기관 수	장기요양기관의 전문 인력

01
대 표

65세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at 65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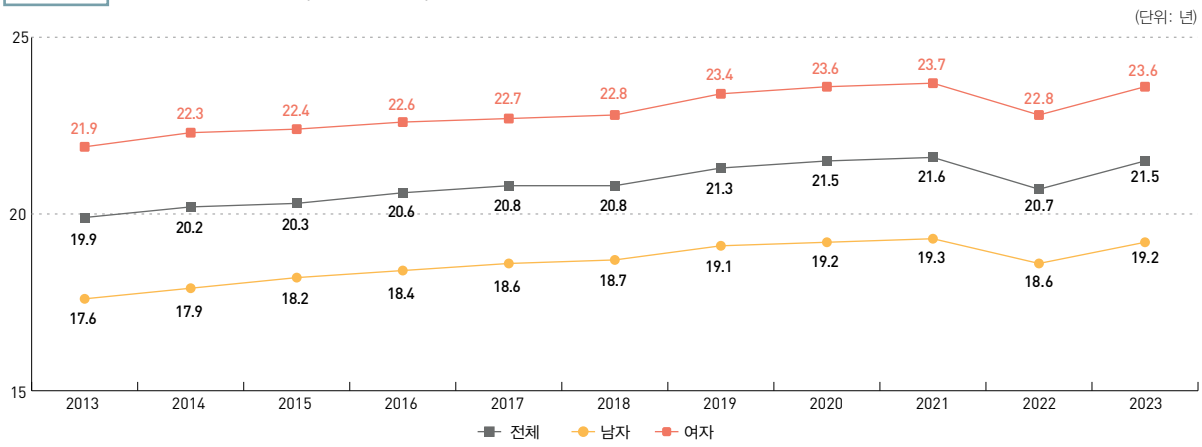
지표 정의

65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65세 이후의 총 생존연수 (정지인구)}}{\text{65세의 생존 인구수}}$

그림 4-1 성별 65세 기대여명 (2013~2023)



주: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1970~2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5.6.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생명표*	1970	2023	1년

*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1970~2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 시도별 통계는 3년 주기로 공표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1

표 4-1 연도별 · 시도별 65세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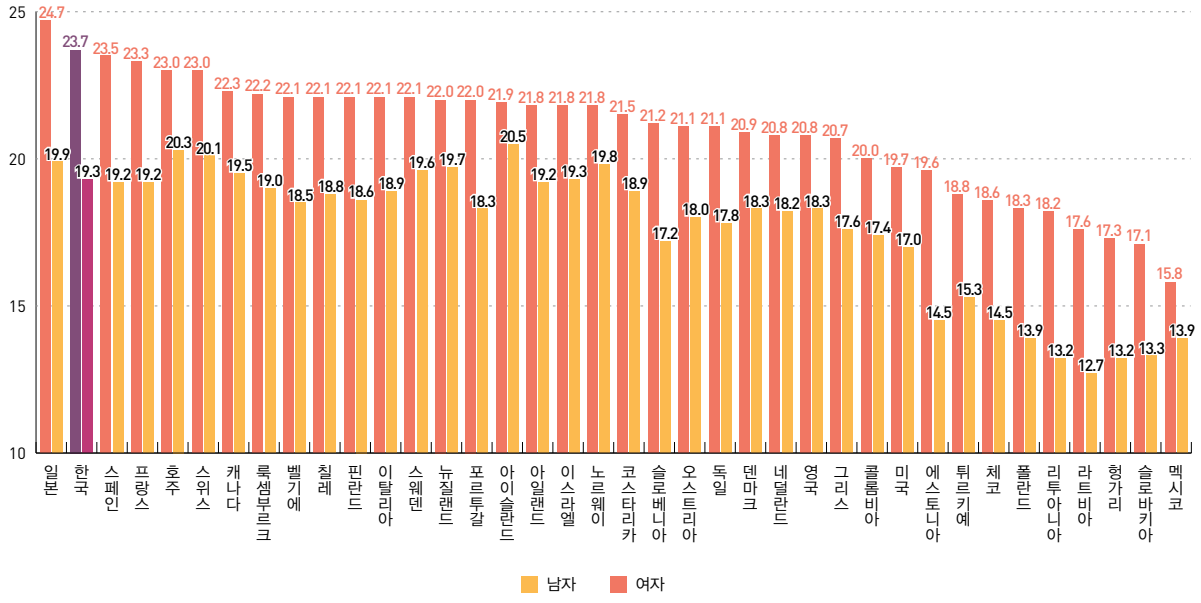
(단위: 년)

시도	전체				남자				여자			
	2014	2017	2020	2023	2014	2017	2020	2023	2014	2017	2020	2023
전국	20.2	20.8	21.5	21.3	17.9	18.6	19.2	19.0	22.3	22.7	23.6	23.4
서울	21.0	21.8	22.5	22.6	19.0	19.8	20.3	20.3	22.8	23.7	24.5	24.9
부산	19.7	20.1	20.9	20.8	17.7	18.1	18.6	18.7	21.5	22.0	23.1	22.8
대구	19.9	20.4	21.1	21.3	17.8	18.4	19.0	19.1	21.7	22.1	23.1	23.3
인천	19.9	20.6	21.1	21.2	17.8	18.2	18.8	18.9	21.8	22.7	23.2	23.4
광주	19.6	20.3	21.0	21.3	17.6	18.5	18.9	19.1	21.5	21.9	23.0	23.2
대전	20.3	20.8	21.5	21.5	18.3	19.2	19.3	19.5	22.1	22.3	23.6	23.4
울산	18.8	19.9	20.5	20.9	17.0	17.8	18.7	19.1	20.5	21.8	22.2	22.7
세종	20.5	20.5	21.5	20.9	18.0	18.1	19.6	18.7	22.7	22.7	23.3	23.1
경기	20.4	20.9	21.7	21.6	18.3	19.0	19.6	19.6	22.4	22.7	23.7	23.6
강원	20.1	20.7	21.4	21.3	17.6	18.2	19.1	18.9	22.4	23.0	23.5	23.5
충북	19.9	20.3	21.0	20.8	17.5	18.2	18.8	18.7	22.1	22.2	23.1	22.8
충남	20.3	20.8	21.6	21.3	17.8	18.5	19.4	19.0	22.6	22.9	23.7	23.5
전북	20.2	20.6	21.4	21.2	17.7	18.4	19.2	18.9	22.5	22.7	23.5	23.4
전남	20.2	20.5	21.2	21.0	17.1	17.9	18.5	18.6	22.9	22.9	23.6	23.3
경북	20.0	20.5	21.0	21.1	17.3	18.2	18.6	18.7	22.3	22.7	23.3	23.2
경남	19.7	20.1	21.0	20.8	17.1	17.7	18.5	18.4	22.0	22.3	23.2	23.1
제주	21.1	21.5	22.6	22.2	18.5	18.8	19.9	19.1	23.4	23.8	25.1	25.2

주: 1)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1970~2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5.6.18. 인출)

그림 4-2 OECD 국가의 성별 65세 기대여명 (2021)

(단위: 년)



주: 콜롬비아는 2020년 수치임. 칠레는 잠정치임.
자료: OECD Health Data, 2021. (stats.oecd.org에서 2025.6.18. 인출)

02
대 표

노인의 ADL 제한율

Rate of ADL limitations among adult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은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노년기에 있어서 신체적 독립성의 유지능력과 자립적 노후생활의 영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지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옷 입기, 세수 · 양치질 · 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의 7개 항목으로 조사된다. 한편,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은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 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구매하기, 금전 관리하기, 전화 사용하기, 약 챙겨먹기의 10개 항목으로 조사된다.

측정 산식

$$\frac{\text{ADL 항목 중 1개 이상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text{65세 이상 조사자 수}} \times 100$$

표 4-2 연도별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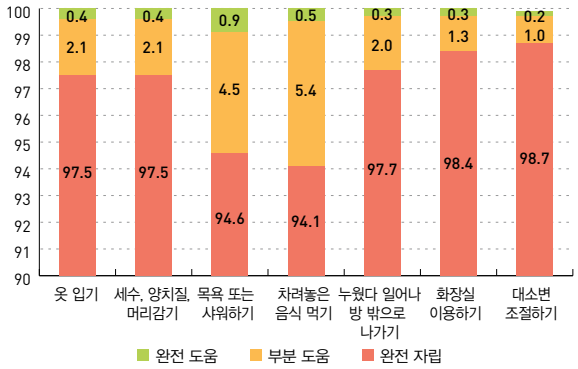
(단위: %)

연도	기능제한 없음	IADL만 제한 경험	ADL도 제한 경험	계
1998	52.7	15.6	31.7	100.0
2004	80.7	12.4	6.9	100.0
2008	81.6	10.4	8.0	100.0
2011	85.1	7.7	7.2	100.0
2014	81.8	11.3	6.9	100.0
2017	74.7	16.6	8.7	100.0
2020	87.8	6.6	5.6	100.0
2023	81.4	9.8	8.7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6496&page=1에서 2025.6.18. 인출.)

그림 4-3 ADL 항목별 기능상태 (2023)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23.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6496&page=1에서 2025.6.18. 인출.)

표 4-3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 현황 (2023)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별						지역별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90세	90세 이상	동	읍면	남자	여자
기능제한 없음		81.4	92.5	87.5	81.6	69.6	53.3	28.5	81.3	81.6	82.8	80.3
IADL만 제한 경험		9.8	5.1	8.1	10.0	15.0	20.4	27.2	9.7	10.2	9.7	9.9
ADL도 제한 경험		8.7	2.4	4.4	8.4	15.4	26.3	44.3	9.0	8.2	7.5	9.7
IADL	완전 자립	81.4	92.5	87.5	81.6	69.6	53.3	28.5	81.3	81.6	82.8	80.3
	1~2개 도움	8.4	4.8	6.8	10.1	12.9	15.6	12.3	8.5	8.1	8.8	8.1
	3~4개 도움	4.5	1.7	3.0	3.9	7.5	12.1	18.2	4.5	4.4	4.1	4.8
	5~6개 도움	2.1	0.5	1.1	2.0	4.6	5.0	12.0	2.2	2.0	1.8	2.4
	7~8개 도움	1.5	0.2	0.5	1.2	2.3	5.5	12.5	1.5	1.5	0.9	2.0
	9~10개 도움	2.1	0.3	1.1	1.2	3.1	8.5	16.4	2.0	2.4	1.7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23.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6496&page=1에서 2025.6.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23	3년

03
대 표

노인의 운동 실천율

Rate of physical activity in adult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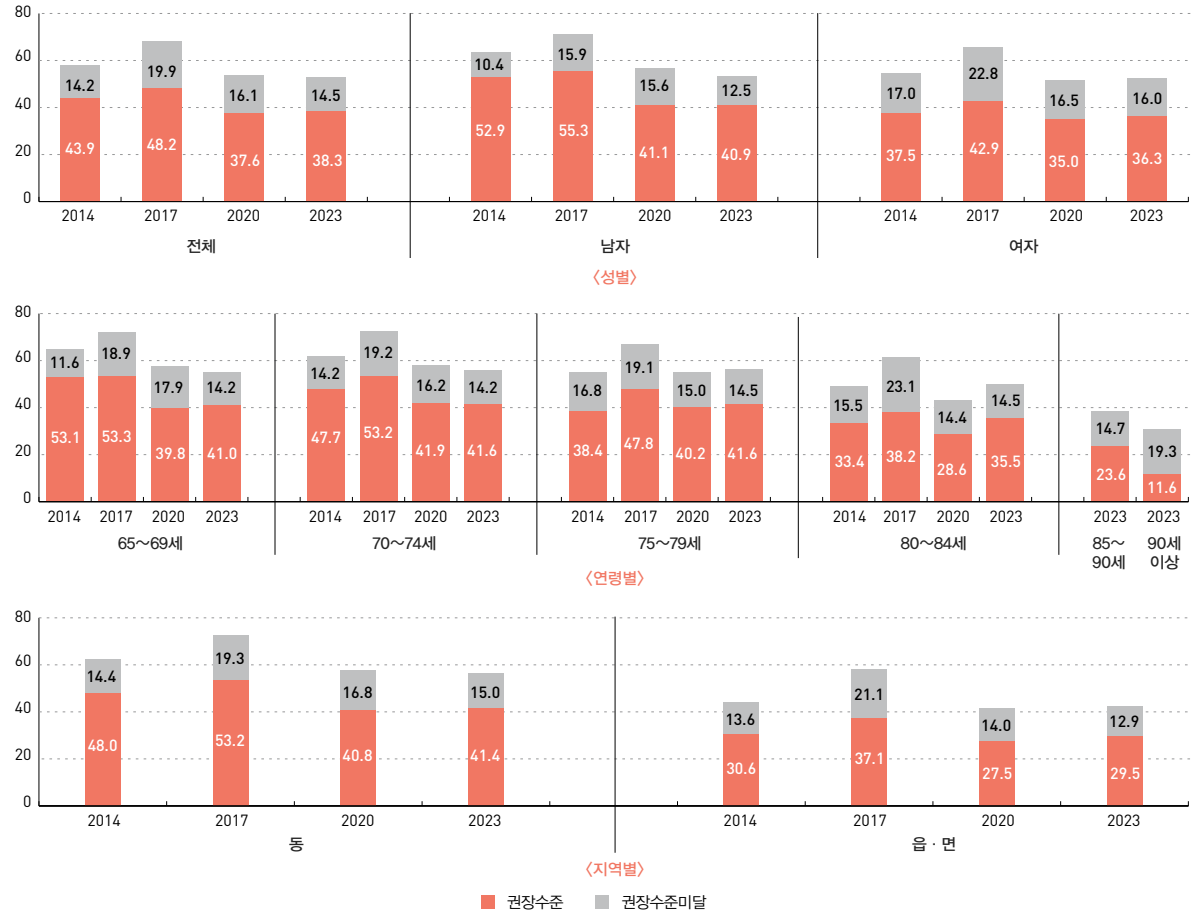
조사 대상 노인인구 중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운동 실천 응답 노인 수}}{\text{65세 이상 조사자 수}} \times 100$

그림 4-4 연도별 · 특성별 노인의 권장수준 운동 실천율

(단위: %)



주: 권장수준이란 1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한 것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o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6496&page=1에서 2025.6.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23	3년

03-1
연 관

노인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Current smoking rate and high risk alcohol consumption,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현재 흡연율은 조사 대상 노인인구 중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이다. (액상 담배는 제외) 고위험 음주율은 조사 대상 노인인구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현재 흡연율(%) = $\frac{\text{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자이면서, 현재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만 65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 고위험 음주율(%) = $\frac{\text{최근 1년간 음주빈도 문항 주 2회 이상 응답자이면서, 1회 음주량 문항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 응답자}}{\text{만 65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표 4-4 성별 노인의 현재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2016~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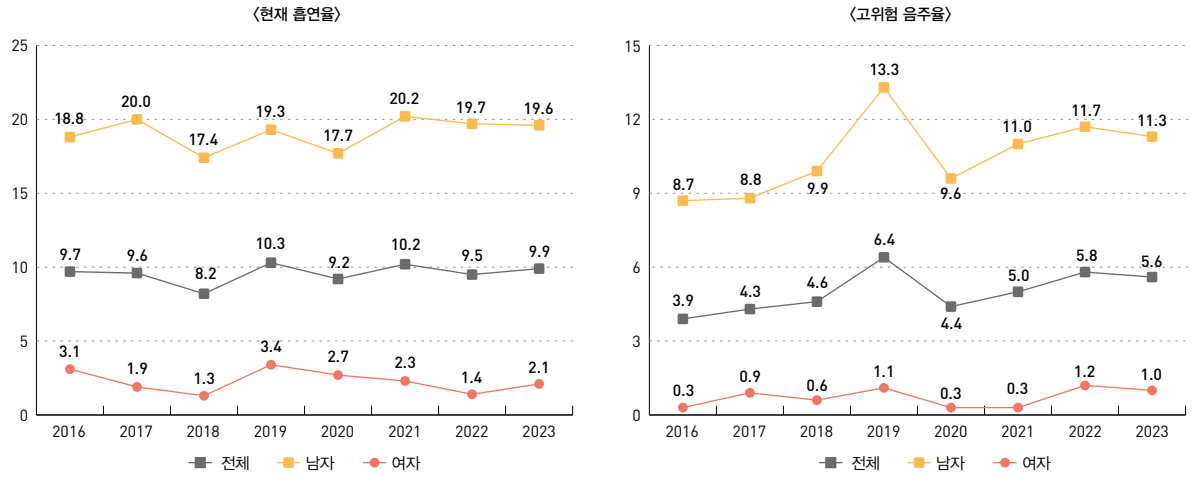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현재 흡연율	9.7	9.6	8.2	10.3	9.2	10.2	9.5	9.9	18.8	20.0	17.4	19.3	17.7	20.2	19.7	19.6	3.1	1.9	1.3	3.4	2.7	2.3	1.4	2.1
고위험 음주율	3.9	4.3	4.6	6.4	4.4	5.0	5.8	5.6	8.7	8.8	9.9	13.3	9.6	11.0	11.7	11.3	0.3	0.9	0.6	1.1	0.3	0.3	1.2	1.0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3. 국민건강통계, 2024.

그림 4-5 성별 노인의 현재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2016~2023)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3. 국민건강통계,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2009	2023	1년

04
대 표

노인의 학대경험률

Rate of self-reported the elderly abuse

지표 정의

노인의 학대경험률은 조사에 참여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및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에 의하여 규정된다. 노인학대를 유형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언어학대), 경제학대, 방임학대로 나누어 경험률을 파악하였다. 이는 노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의의가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학대경험 응답 노인 수}}{\text{65세 이상 조사자 수}} \times 100$

표 4-5 연도별 · 일반특성별 노인의 학대경험률

(단위: %)

구분		학대 유형별 경험률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고통	성폭력 또는 성추행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일생생활,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경험 시 도와주지 않음	어렵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돌봄을 거부함
전체	2020	1.3	1.1	6.6	0.4	0.5	-
	2023	0.4	0.5	4.4	0.4	0.9	0.7
성	남자	0.4	0.6	4.1	0.4	0.6	0.6
	여자	0.3	0.5	4.6	0.5	1.0	0.8
연령	65~69세	0.4	0.4	4.5	0.6	0.9	0.6
	70~74세	0.2	0.2	3.4	0.3	0.4	0.4
	75~79세	0.3	0.1	4.1	0.4	0.9	0.8
	80~84세	0.2	0.7	5.4	0.4	0.7	1.3
	85~90세	0.9	2.3	5.6	0.6	2.3	0.9
	90세 이상	0.0	1.2	3.9	0.0	1.2	0.0
지역	동부	0.4	0.7	4.6	0.5	0.9	0.9
	읍 · 면부	0.2	0.0	3.8	0.3	0.6	0.2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6496&page=1에서 2025.6.1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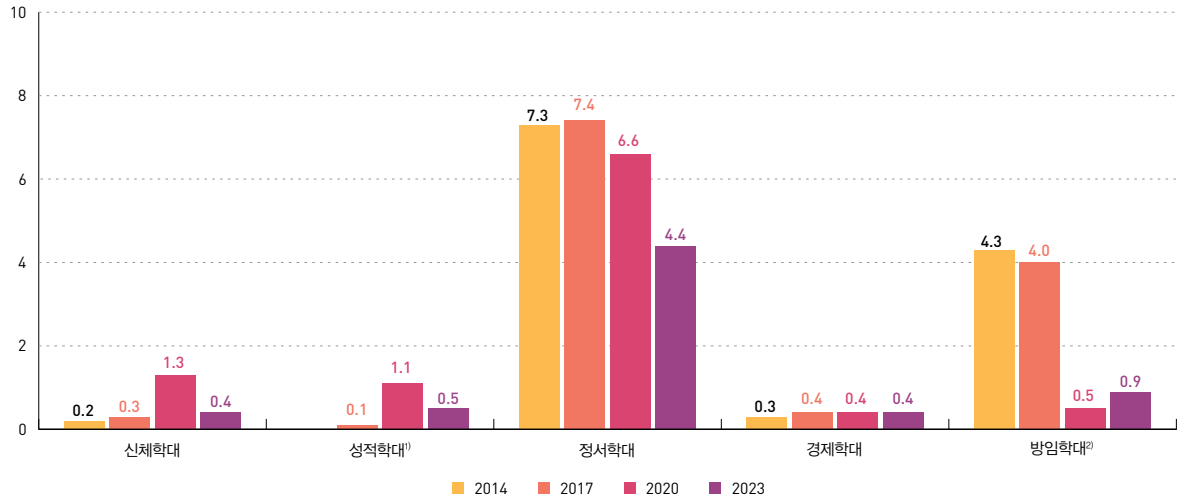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23	3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4

그림 4-6 연도별 노인의 학대경험률 및 학대유형별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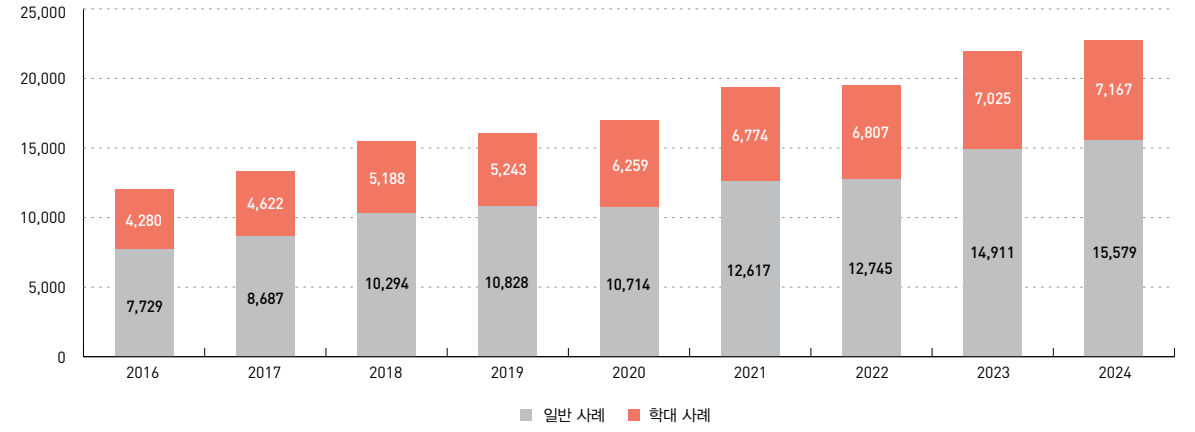
(단위: %)



주: 1) 성적학대는 2017년 조사에서만 실시
2) 방임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을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6496&page=1에서 2025.6.18. 인출.)

그림 4-7 노인학대 신고 건수 (2016~2024)

(단위: 건)



주: 1) 일반 사례: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 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
2) 학대 사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로 판정된 사례
자료: 보건복지부, 2024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2025.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3554에서 2025.6.18. 인출)

05
대 표

노인 진료비

Medical expenditures on adult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진료비이다.

- '노인 진료비의 비율'과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를 통해 노인이 지출한 진료비 수준을 확인하고, 노인 1인의 부담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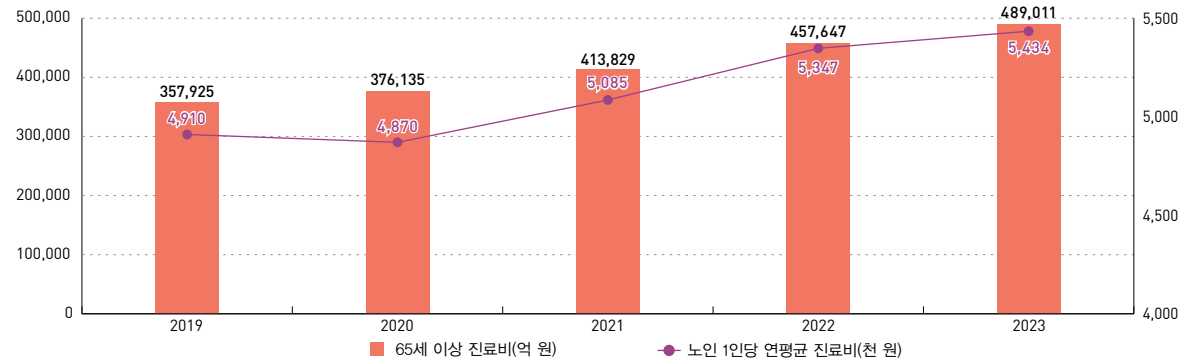
-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

유의사항

- '노인 진료비 비율'은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5세 이상 인구의 연간 진료비를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한 달 분으로 환산한 값이다.
- 진료비는 급여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의 합으로 구성된다.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 진료비에는 노인의 희귀난치성질병, 각종 암, 산정특례환자 등의 급여비도 포함된다.

그림 4-8 노인 진료비 및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019~2023)

(단위: 억 원, 천 원)



주: 1) 수진 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 기준)
2) 전체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는 연도 말 기준
3)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65세 이상 진료비/65세 이상 연평균 적용인구(2023년: 8,999,146명)
4)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전체 진료비/연평균 적용인구(2023년: 51,411,696명)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24.

표 4-6 노인 진료비 비율 및 노인(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019~2023)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인구(천 명)	51,391	51,345	51,412	51,410	51,453
65세 이상 인구(천 명) (구성비)	7,463 (14.5)	7,904 (15.4)	8,320 (16.2)	8,751 (17.0)	9,216 (17.9)
65세 이상 진료비(억 원) (전년 대비 증감률 (%))	357,925 (12.5)	376,135 (5.1)	413,829 (10.0)	457,647 (10.6)	489,011 (69.0)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천 원)	4,910	4,870	5,085	5,347	5,434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천 원)	1,681	1,688	1,857	2,060	2,155

주: 1) 수진 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 기준)
2) 전체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는 연도 말 기준
3)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65세 이상 진료비/65세 이상 연평균 적용인구(2023년: 8,999,146명)
4)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전체 진료비/연평균 적용인구(2023년: 51,411,696명)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23	1년

05-1
연 관

의료기관 종별 노인 외래환자 수

Number of outpatient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외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경우이며, 외래환자 수는 외래환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한 횟수(외래방문일수)에 대한 값이다.

측정 산식

• 외래환자 중 노인 비율 = $\frac{\text{65세 이상 외래환자 수}}{\text{전체 외래환자 수}}$

표 4-7 의료기관 종별 노인 외래환자 수 (2020)

(단위: 명, %)

구분		전연령	65세 이상 외래환자 수			외래환자 중 노인 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678,201	224,237	92,925	131,312	33.8	14.0	19.8
상급종합		41,847	15,325	7,747	7,578	37.0	18.7	18.3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29,406	11,468	5,881	5,587	40.7	20.9	19.8
	300~499병상	18,362	7,067	3,739	3,328	41.9	22.2	19.7
	100~299병상	23,902	8,671	3,987	4,684	37.2	17.1	20.1
병원	100병상 이상	23,049	6,989	2,953	4,036	32.8	13.9	18.9
	30~99병상	37,361	6,845	2,707	4,138	19.2	7.6	11.6
요양병원	300병상 이상	558	217	83	134	40.3	15.3	25.0
	100~299병상	3,103	1,073	380	693	47.5	16.8	30.7
	30~99병상	407	164	63	101	41.1	15.8	25.3
의원	병상 있음	99,315	28,575	11,251	17,324	29.8	11.7	18.1
	병상 없음	392,447	135,186	53,077	82,109	34.7	13.6	21.1

주: '정보없음' 값은 전체에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로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01	2020	5년

06
대 표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Inspection rate of general health check-up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 습관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반건강검진으로 이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거나, 인지기능 장애 위험이 높다고 판정된 사람은 2차 검진을 받게 된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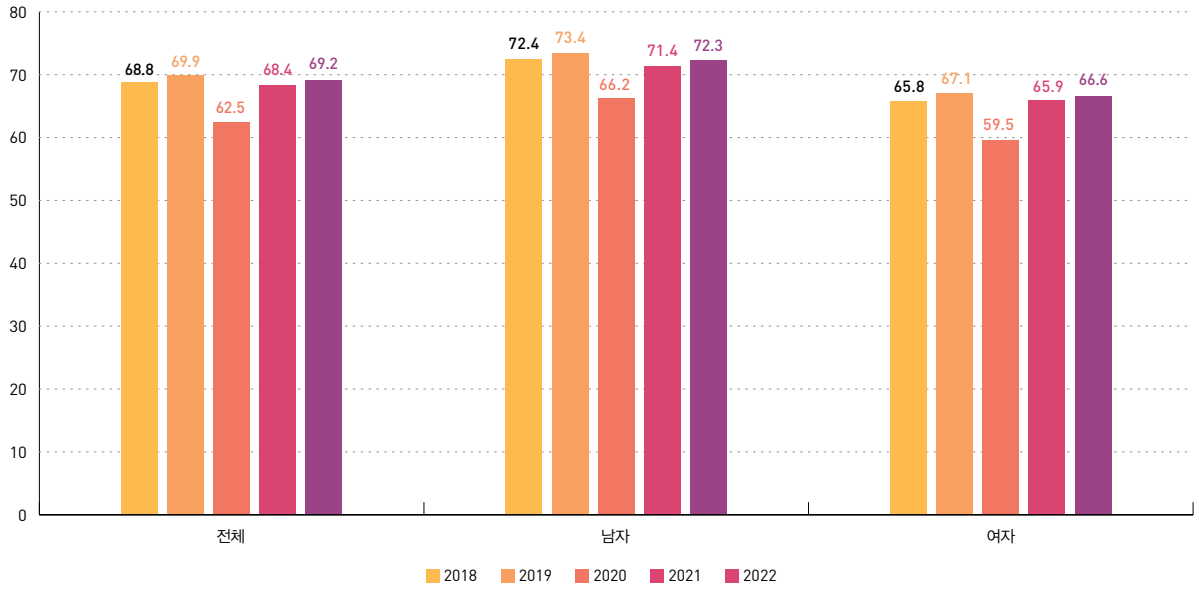
• $\frac{\text{65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수검 인원}}{\text{65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times 100$

유의사항 여기에서는 건강보험 대상자의 검진 실적만 검토한다.

4 노인

그림 4-9 성별 노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18~2022)

(단위: %)



주: 2018년부터 일반건강검진 중 2차 검진이 삭제됨.
자료: 통계청 KOSIS, 건강검진통계,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kosis.kr에서 2025. 6. 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2008	2022	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2008	2023	1년

표 4-8 시도별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 (만 40~70세 대상, 2023)

(단위: 명)

구분	전체				
	계	우울 증상이 없음	가벼운 우울 증상	중간 정도	심한 우울증 의심
전체	5,795,289	4,844,398	721,623	211,216	18,052
서울	1,019,944	831,703	143,525	41,191	3,525
부산	372,097	317,649	41,374	12,002	1,072
대구	269,749	229,703	31,147	8,222	677
인천	348,428	286,061	46,935	14,226	1,206
광주	157,479	135,577	16,805	4,694	403
대전	159,629	131,245	21,528	6,288	568
울산	129,923	111,759	13,981	3,905	278
세종	43,297	35,116	6,261	1,785	135
경기	1,565,192	1,280,049	215,371	64,343	5,429
강원	171,736	146,314	19,162	5,756	504
충북	184,047	155,929	21,106	6,472	540
충남	235,470	198,344	27,716	8,693	717
전북	195,810	169,357	20,219	5,725	509
전남	208,742	185,012	17,982	5,265	483
경북	292,176	253,521	29,601	8,311	743
경남	371,384	319,283	39,578	11,499	1,024
제주	70,186	57,776	9,332	2,839	239

주: 2018년부터 해당 검진 결과표가 변경되었으며, 대상 연령이 만 70, 74세에서 만 40, 50, 60, 70세로 변경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2024. (https://www.nhis.or.kr에서 2025. 6. 18. 인출)

06-1
연 관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Inspection rate of general health check-ups by core item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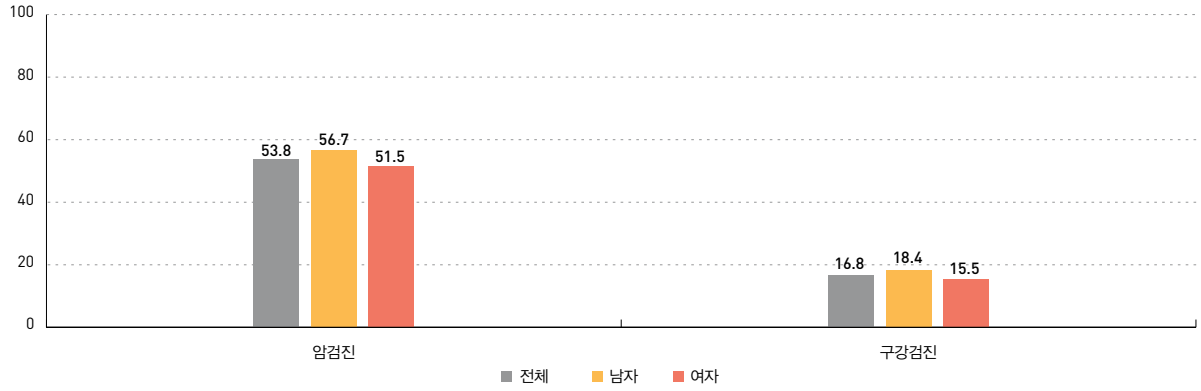
건강검진 대상 인원 중 특정 항목의 검진을 받은 인원의 비율이다. 특정 검진항목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 이외의 암검진, 구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해당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특정항목 건강검진 수검자}}{\text{특정항목 건강검진 대상자}} \times 100$

그림 4-10 성별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성별 수검률 (2023)

(단위: %)



주: 1) 암검진 대상 부위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임.
2) 2018년부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삭제됨.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만 40세 및 만 66세만 해당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2024. (https://www.nhis.or.kr에서 2025. 6. 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건강검진통계	2008	2023	1년

07
대 표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Coverage of public long-term care,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공적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공적장기요양보호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해당된다.

- 인구구조와 가족구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기능상 제약이 있는 노인이 일상생활 중에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의 삶을 돌보고, 이들에 대한 주변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측정 산식

- $\frac{\text{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text{65세 이상 인구수}} \times 100$

표 4-9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2011~2021)

(단위: 명, %)

연도	공적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65세 이상 노인 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소계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011	325,970	288,242	37,728	5,700,972	5.7
2012	338,140	300,869	37,271	5,980,060	5.7
2013	373,807	331,525	42,282	6,250,986	6.0
2014	411,355	364,596	46,759	6,520,607	6.3
2015	443,189	399,761	43,428	6,775,101	6.5
2016	487,112	442,819	44,293	6,995,652	7.0
2017	545,080	497,394	47,686	7,356,106	7.4
2018	609,903	560,391	49,512	7,650,408	8.0
2019	688,780	641,173	47,607	8,026,915	8.6
2020	-	712,502	-	8,496,077	-
2021	-	794,809	-	8,851,033	-

주: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 기준으로, 인정자 중 각 연도 1월~12월까지 누적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자(중복자, 사망자 제외)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2019년 이후 종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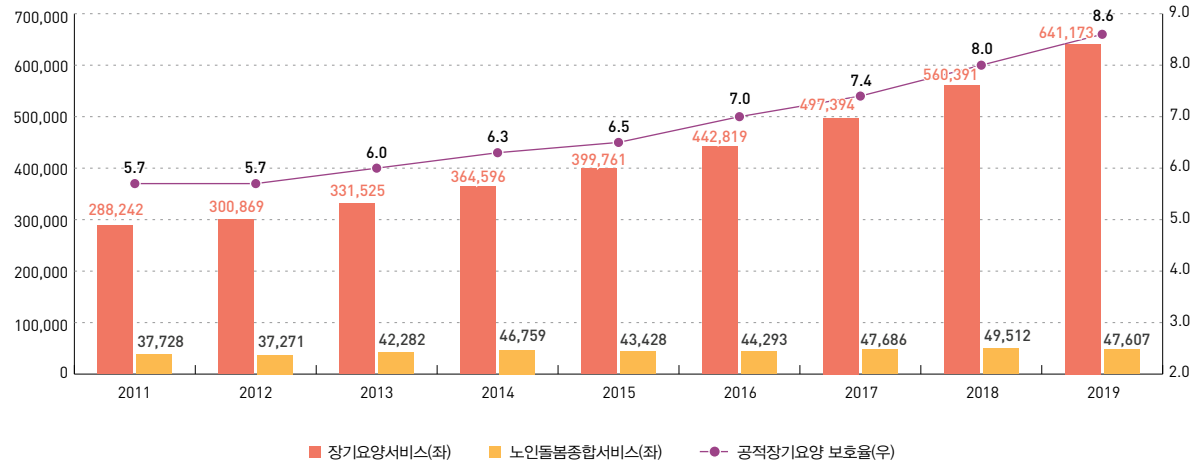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내부자료), 2022; KOSIS, 고령인구 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에서 2023. 04. 2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 (내부자료)	-	2021	부정기

그림 4-11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2011~2019)

(단위: 명, %)



주: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 기준으로, 인정자 중 각 연도 1월~12월까지 누적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자(중복자, 사망자 제외)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2019년 이후 종료됨.

자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내부자료), 2020; KOSIS, 고령인구 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에서 2021.3.12 인출)

07-1
연 관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Rate of people in receipt of long-term care,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65세 인구 중 유급 장기요양서비스(시설 또는 재가)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 시설 장기요양 수급자(병원 외)는 재원(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상관없이 공식적인 시설에서 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이며,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는 움직임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집에서 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인구}}{\text{65세 이상 인구수}} \times 100$

표 4-10 성별 ·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수급자 및 장기요양 수급률 (2015~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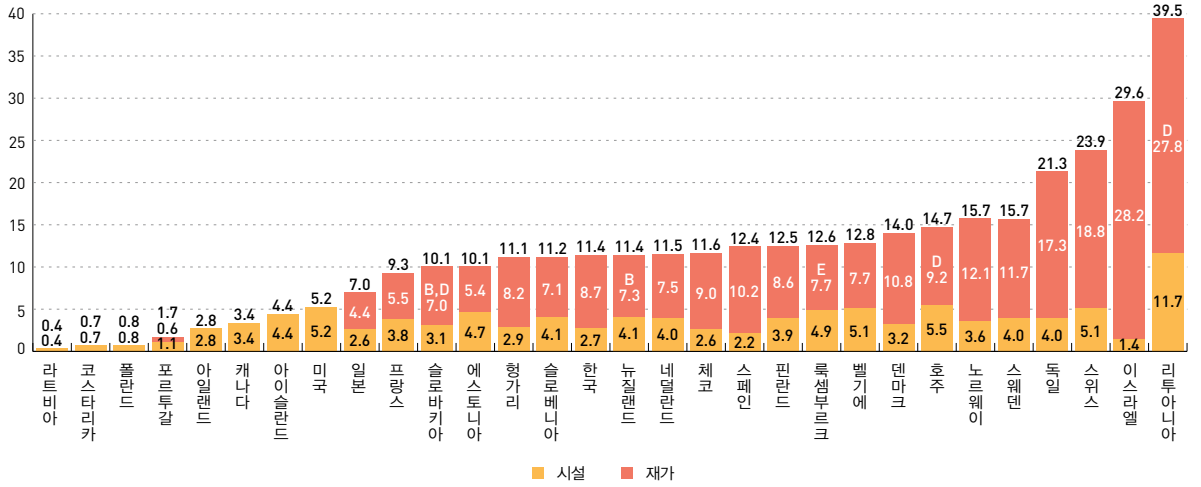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전체			남자			여자		
	계	시설	재가	계	시설	재가	계	시설	재가
2015	481,383 (7.4)	168,717 (2.6)	312,666 (4.8)	127,157 (4.7)	37,133 (1.4)	90,024 (3.3)	354,226 (9.4)	131,584 (3.5)	222,642 (5.9)
2016	526,032 (7.8)	177,597 (2.6)	348,435 (5.2)	137,876 (4.8)	39,140 (1.4)	98,736 (3.5)	388,156 (9.9)	138,457 (3.5)	249,699 (6.4)
2017	587,429 (8.3)	189,144 (2.7)	398,285 (5.6)	154,062 (5.1)	41,924 (1.4)	112,138 (3.7)	433,367 (10.7)	147,220 (3.6)	286,147 (7.0)
2018	660,121 (8.9)	202,193 (2.7)	457,928 (6.2)	174,856 (5.6)	44,941 (1.4)	129,915 (4.1)	485,265 (11.5)	157,252 (3.7)	328,013 (7.8)
2019	742,558 (9.6)	210,284 (2.7)	532,274 (6.9)	198,518 (6.0)	46,905 (1.4)	151,613 (4.6)	544,040 (12.4)	163,379 (3.7)	380,661 (8.7)
2020	816,291 (10.0)	213,922 (2.6)	602,369 (7.4)	218,928 (5.9)	47,382 (1.3)	171,546 (4.6)	597,363 (12.4)	166,540 (3.5)	430,823 (8.9)
2021	913,775 (10.7)	222,670 (2.6)	691,105 (8.1)	249,034 (6.7)	50,245 (1.4)	198,789 (5.4)	664,741 (13.8)	172,425 (3.6)	492,316 (10.2)
2022	1,024,735 (12.0)	244,002 (2.8)	780,733 (9.1)	283,475 (7.6)	56,580 (1.5)	226,895 (6.1)	741,260 (15.4)	187,422 (3.9)	553,838 (11.5)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http://stat.oecd.org에서 2025. 6. 18. 인출)

그림 4-12 OECD 국가의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수급률 (2022년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단위: %)



주: 뉴질랜드는 2020년,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슬로베니아는 2021년도임

자료: OECD, Health Data. (http://stats.oecd.org에서 2025.6.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	2022	1년

08
대 표

장기요양기관 수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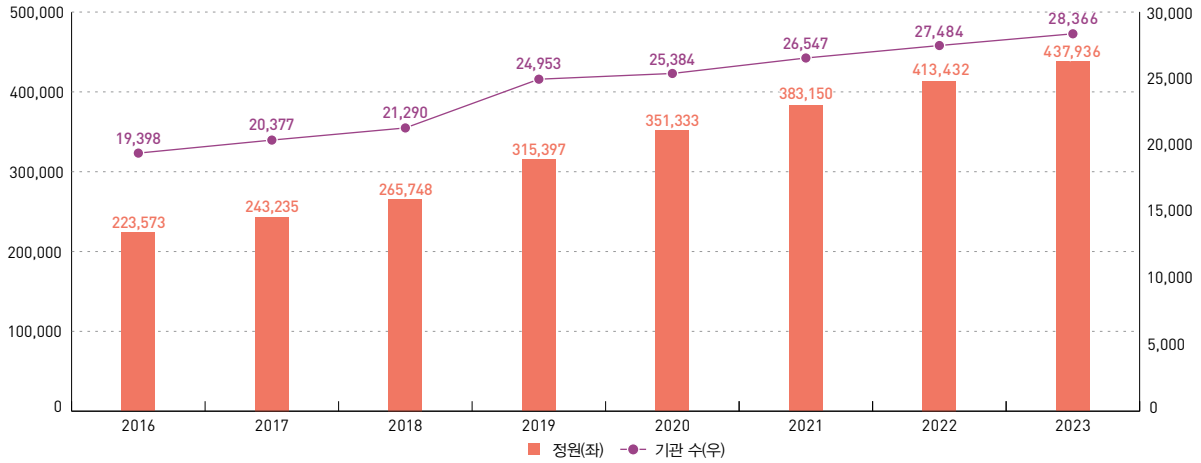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이다. 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재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와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모두 해당한다.

측정 산식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

그림 4-13 장기요양기관 수 (2016~2023)

(단위: 명, 개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06.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008	2023	1년

표 4-11 시도별 ·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수 (2023)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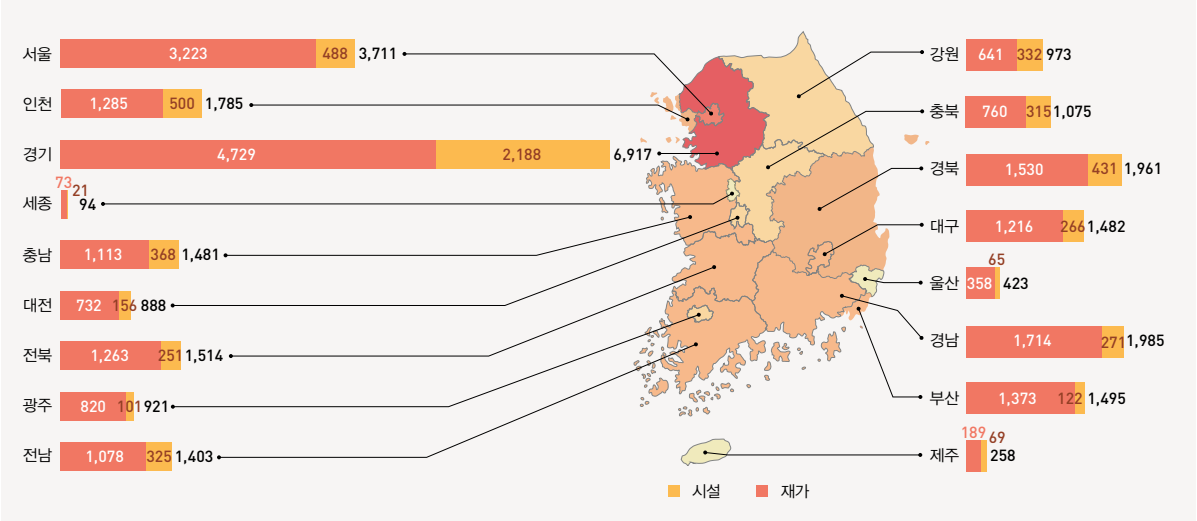
구분	전체	재가							시설		
		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전국	28,366	22,097	17,475	11,799	830	5,235	108	2,071	6,269	4,568	1,701
서울	3,711	3,223	2,526	1,991	128	505	36	321	488	233	255
부산	1,495	1,373	1,198	723	54	267	4	136	122	98	24
대구	1,482	1,216	994	457	30	337	8	106	266	148	118
인천	1,785	1,285	1,064	855	62	236	4	120	500	412	88
광주	921	820	683	367	33	163	1	78	101	88	13
대전	888	732	585	445	38	164	1	74	156	111	45
울산	423	358	297	150	14	122	0	25	65	45	20
세종	94	73	53	26	5	21	0	10	21	18	3
경기	6,917	4,729	3,627	2,709	189	1,093	25	455	2,188	1,644	544
강원	973	641	494	279	39	161	2	57	332	234	98
충북	1,075	760	534	265	21	252	1	70	315	231	84
충남	1,481	1,113	885	588	43	333	8	95	368	267	101
전북	1,514	1,263	922	687	59	354	1	152	251	194	57
전남	1,403	1,078	876	553	25	286	4	80	325	246	79
경북	1,961	1,530	1,200	698	38	463	8	124	431	319	112
경남	1,985	1,714	1,416	916	46	402	5	140	271	221	50
제주	258	189	121	90	6	76	0	28	69	59	10

주: 1) 연도 말 기준임.
2) 재가의 소계는 급여종류에 따른 중복을 제외한 것임.
3)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구법),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은 2013년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4 (http://kosis.kr에서 2025.6.18. 인출)

그림 4-14 시도별 ·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수 (2023)

(단위: 개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4. (http://kosis.kr에서 2025.6.18. 인출)

장기요양기관의 전문 인력

Number of long-term care workers

지표 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사(촉탁의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수이다.

측정 산식

-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의 수

표 4-12 급여종류별 전문 인력 현황 (2020~2023)

(단위: 명)

구분	전체				재가				시설			
	2020	2021	2022	2023	2020	2021	2022	2023	2020	2021	2022	2023
계	503,983	565,281	626,765	676,820	411,718	467,857	523,620	562,567	99,879	104,995	111,720	122,696
요양보호사	450,970	507,473	564,243	610,069	381,359	434,041	486,523	522,996	76,011	79,799	85,053	94,379
사회복지사	30,268	33,736	37,027	39,499	22,642	25,509	28,121	30,002	7,685	8,294	9,000	9,589
간호사	3,504	3,645	3,881	4,385	1,940	2,100	2,275	2,620	1,623	1,594	1,660	1,824
간호조무사	13,221	14,196	15,118	15,967	5,185	5,589	6,035	6,209	8,932	9,495	9,987	10,569
물리(작업)치료사	2,558	2,723	2,974	-	407	441	487	-	2,276	2,416	2,616	-
물리치료사	-	-	-	2,029	-	-	-	382	-	-	-	1,730
작업치료사	-	-	-	1,235	-	-	-	170	-	-	-	1,103
의사(촉탁포함)	2,312	2,349	2,368	2,400	99	88	81	71	2,283	2,322	2,340	2,373
치과위생사	14	12	16	7	14	12	16	6	0	0	0	1
영양사	1,136	1,147	1,138	1,229	72	77	82	111	1,069	1,075	1,064	1,128

주: 1) 연도 말 기준임.
2) 전체 계는 급여종류에 따른 중복을 제거한 것임.
3)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 포함임.
4) 각 전문 인력은 재가와 시설에서 중복 집계되므로 재가와 시설의 합은 전체 수치보다 큼.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008	2023	1년

표 4-13 시도별 · 급여종류별 주요 전문인력 현황 (2023)

(단위: 명)

구분	전체			재가			시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전국	39,499	15,967	610,069	30,002	6,209	522,996	9,589	10,569	94,379
서울	4,927	1,577	105,764	4,310	851	99,168	621	783	7,025
부산	2,386	549	41,788	2,146	296	39,414	241	271	2,476
대구	1,933	712	29,547	1,540	352	25,795	396	432	3,915
인천	2,409	1,156	38,885	1,602	272	31,515	810	920	7,821
광주	1,201	325	22,647	1,025	198	21,333	180	144	1,411
대전	1,117	501	19,233	861	199	16,663	259	325	2,731
울산	562	220	9,974	468	121	9,025	94	110	998
세종	140	53	2,226	104	23	1,924	36	32	312
경기	9,539	5,112	149,340	6,142	1,412	118,269	3,428	3,883	33,430
강원	1,431	597	18,956	970	157	14,514	464	463	4,617
충북	1,509	764	20,543	1,042	275	16,296	468	513	4,585
충남	2,104	934	31,530	1,577	390	26,988	540	610	5,135
전북	2,094	767	28,741	1,721	403	25,544	374	411	3,486
전남	2,092	750	28,771	1,629	328	24,997	467	464	4,026
경북	2,889	1,040	40,422	2,275	520	34,806	625	635	5,985
경남	2,784	850	47,023	2,335	452	42,506	455	452	4,912
제주	411	183	5,006	278	69	3,501	133	128	1,548

주: 1) 연도 말 기준임.
2) 전체 계는 급여종류에 따른 중복을 제거한 것임.
3)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 포함임.
4) 각 전문 인력은 재가와 시설에서 중복 집계되므로 재가와 시설의 합은 전체 수치보다 큼.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4. (http://kosis.kr에서 2025.6.18. 인출)

5

장애인

01 등록장애인 수
02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03 장애인 복지시설 수
0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05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7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08 특수교육 대상자 수
09 장애인 교육 수준
10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1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2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13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14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15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장애인 인구 및 생활	등록장애인 수	장애출현율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시설 수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거주인 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장애인 보육 · 교육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비율
	장애인 교육 수준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실업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장애수당 수급자 수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01
대 표

등록장애인 수

Number of the registered disabled

지표 정의

등록장애인 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유형 및 기준에 부합하여 시 · 군 · 구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를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 요루, 뇌전증 장애 등 15가지 유형의 법정 장애를 명시하고 있다*.

- 장애인 등록 현황은 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등록장애인 수는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장애인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측정 산식

- **우리나라 법정 장애 및 범주에 해당되어 등록한 장애인의 수**

표 5-1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수 (2005~2024)

(단위: 천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789	1,967	2,105	2,247	2,430	2,517	2,519	2,511	2,501	2,494	2,490	2,511	2,546	2,586	2,619	2,633	2,645	2,648	2,642	2,631
지체장애	965	1,049	1,114	1,191	1,293	1,338	1,333	1,322	1,309	1,296	1,281	1,267	1,254	1,239	1,223	1,207	1,191	1,175	1,154	1,133
시각장애	190	197	217	228	241	249	251	253	253	253	253	252	253	253	253	252	252	250	248	246
청각장애	161	182	203	223	246	260	261	259	255	253	250	272	302	343	377	396	412	424	433	442
언어장애	15	23	15	15	16	17	17	18	18	18	19	19	20	21	21	22	23	23	23	22
지적장애	128	138	143	147	155	161	167	173	179	184	190	195	201	207	212	217	222	226	230	233
뇌병변장애	169	195	215	232	252	262	261	258	253	252	251	250	253	253	252	250	248	245	241	235
자폐성장애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3	25	27	29	31	34	38	43	47
정신장애	64	75	82	87	95	96	95	95	96	97	99	100	101	102	103	104	104	104	104	103
신장장애	42	45	48	50	54	57	60	63	67	70	74	78	84	88	92	98	102	106	109	111
심장장애	13	14	14	15	15	13	10	8	7	6	6	6	5	5	5	5	5	5	5	5
호흡기장애	12	13	14	15	16	16	15	14	13	12	12	12	12	12	12	12	12	11	11	11
간장애	5	6	6	7	8	8	8	9	9	10	10	11	12	13	13	14	14	15	16	16
안면장애	1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장루 · 요루장애	10	10	11	12	12	13	13	13	14	14	14	14	15	15	15	15	16	17	17	17
뇌전증장애	7	8	9	9	10	10	9	8	7	7	7	7	7	7	7	7	7	7	7	7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6.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현황	2006	2024	1년

* 장애범주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2003년에는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 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포함되었다. 한편, 2007년에는 기존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2014년에는 기존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표 5-2 시도별 · 성별 등록장애인 수 (2024)

(단위: 명, %)

시도	등록장애인 수			인구대비 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국	2,631,356	1,525,056	1,106,300	5.14	5.98	4.30
서울	386,316	223,587	162,729	4.14	4.96	3.37
부산	174,256	102,370	71,886	5.33	6.44	4.29
대구	130,674	75,419	55,255	5.53	6.50	4.59
인천	152,707	90,486	62,221	5.05	6.00	4.12
광주	69,175	39,391	29,784	4.91	5.67	4.18
대전	71,344	41,791	29,553	4.96	5.83	4.09
울산	51,055	31,007	20,048	4.65	5.49	3.76
세종	12,993	7,885	5,108	3.33	4.06	2.60
경기	587,910	350,232	237,678	4.29	5.09	3.49
강원	99,542	57,639	41,903	6.56	7.55	5.55
충북	96,694	55,831	40,863	6.08	6.89	5.23
충남	133,136	76,496	56,640	6.23	6.98	5.44
전북	128,993	70,954	58,039	7.42	8.19	6.65
전남	134,551	72,614	61,937	7.52	8.05	6.99
경북	177,436	99,709	77,727	7.01	7.79	6.21
경남	187,756	109,063	78,693	5.82	6.70	4.91
제주	36,818	20,582	16,236	5.49	6.14	4.84

자료: 1)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24.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4.
(http://kosis.kr에서 2025.6.09.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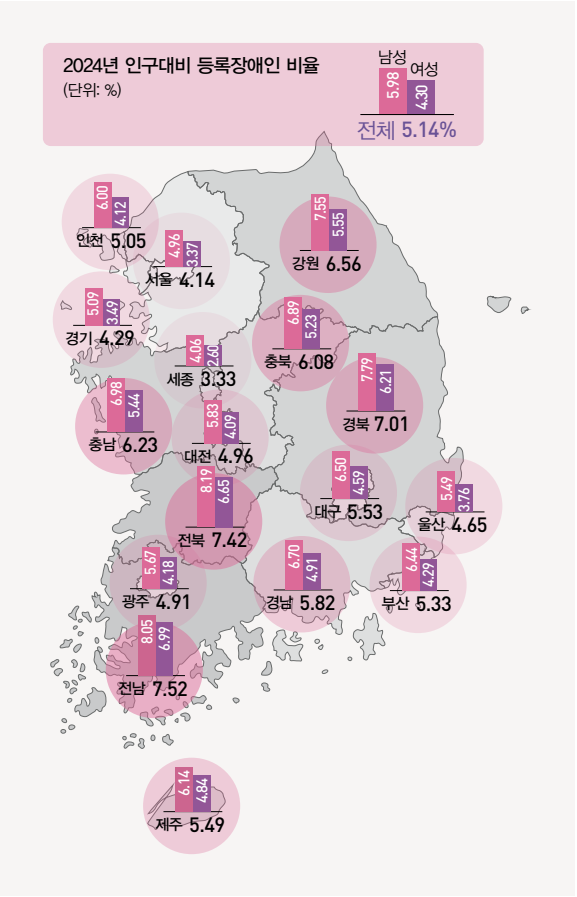


표 5-3 연령별 · 장애정도별 등록장애인 수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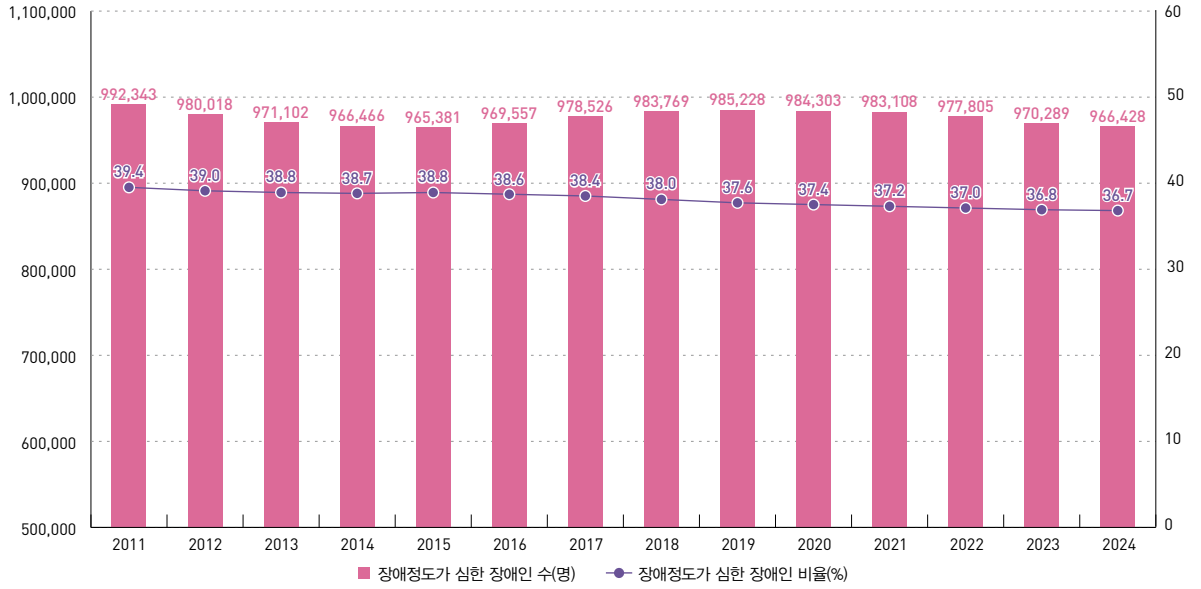
(단위: 명)

연령 구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계
계	578,033	388,395	966,428	947,023	717,905	1,664,928	1,525,056	1,106,300	2,631,356
0~9세	21,104	9,285	30,389	3,572	2,071	5,643	24,676	11,356	36,032
10~19세	40,151	18,886	59,037	4,143	3,554	7,697	44,294	22,440	66,734
20~29세	48,436	26,472	74,908	9,926	6,543	16,469	58,362	33,015	91,377
30~39세	48,319	27,704	76,023	23,207	10,355	33,562	71,526	38,059	109,585
40~49세	58,249	37,894	96,143	76,743	24,730	101,473	134,992	62,624	197,616
50~59세	98,755	59,883	158,638	164,101	59,646	223,747	262,856	119,529	382,385
60~69세	128,973	77,227	206,200	271,858	143,392	415,250	400,831	220,619	621,450
70~79세	87,036	64,956	151,992	229,614	197,049	426,663	316,650	262,005	578,655
80~89세	42,223	54,700	96,923	144,865	219,579	364,444	187,088	274,279	461,367
90~99세	4,695	11,094	15,789	18,669	49,864	68,533	23,364	60,958	84,322
100세 이상	92	294	386	325	1,122	1,447	417	1,416	1,833

주: 2019년도 이전 자료는 1~6급의 등급으로 구분되었으나, 2019년도 이후 자료는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현황, 2024. (http://kosis.kr에서 2025.6.09. 인출)

그림 5-1 장애인구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비율 (2011~2024)

(단위: 명, %)



주: 2007~2018년 자료는 기존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함.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각 연도. (https://kosis.kr 에서 2025.6.09. 인출.)

장애출현율

Prevalence of disability

지표 정의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 및 범주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 우리나라의 장애출현율은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근거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해 추정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우리나라 법정 장애 범주에 해당되는 추정장애인 수}}{\text{전체 인구}} \times 100$

표 5-4 연도별 장애출현율

(단위: 명, %)

구분	2000	2005	2011	2014	2017
등록장애인 수	907,571	1,669,329	2,517,312	2,501,112	2,511,051
추정장애인 수	1,449,496	2,148,686	2,683,477	2,726,910	2,668,411
장애인 등록률	62.6	77.7	93.8	91.7	94.1
장애출현율	3.09	4.59	5.61	5.59	5.39

주 1) 등록장애인 수는 각 조사 당시 보고된 자료를 활용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기존 가구표본조사방식이 아닌 등록장애인 2,622,950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미등록장애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장애인 수(해당년도의 장애판정기준에 해당되는 미등록 장애인(추정)과 등록된 장애인)와 장애인 등록률(등록장애인 수÷장애인실태조사 추정 장애인 수), 장애출현율을 추산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4.6.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1990	2020	3년

02
대 표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Prevalence of ADL(IADL) limitations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신체활동으로, 자신의 육체를 돌보는데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주로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되는 옷 입기나 세수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이 이에 속한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몸단장하기, 식사 준비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등 단순한 신체적 기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도 포함하고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ADL(IADL) 제한 응답 장애인 수}}{\text{조사대상 장애인 수}} \times 100$

표 5-5 장애 정도별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제한율 (2023)

(단위: %)

구분	전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옷 벗고 입기	81.2	16.7	2.0	61.6	33.6	4.8	91.7	7.8	0.6
목욕하기	75.5	20.9	3.6	55.7	36.1	8.1	85.9	12.8	1.3
양치질하기	89.3	9.2	1.6	75.9	20.5	3.6	96.4	3.1	0.5
음식물 넘기기	97.9	1.6	0.5	95.2	3.4	1.4	99.3	0.6	0.1
식사하기	91.2	7.8	1.0	81.4	16.0	2.6	96.4	3.4	0.2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95.6	3.4	1.0	90.9	6.6	2.5	98.1	1.7	0.2
옮겨 앉기	92.7	5.8	1.5	86.2	10.4	3.4	96.2	3.3	0.4
앉은 자세 유지	95.0	3.9	1.1	90.3	7.3	2.5	97.6	2.2	0.3
보행	77.0	19.2	3.7	67.6	23.7	8.7	82.1	16.9	1.1
이동	69.9	25.5	4.7	54.0	35.5	10.4	78.3	20.1	1.6
배변	89.8	7.3	2.8	78.8	15.7	5.5	95.7	2.9	1.4
배뇨	91.5	5.9	2.6	82.6	12.0	5.5	96.3	2.6	1.1

주: 장애인실태조사 기준을 재분류하였음(완전자립: 지원 불필요, 부분 도움: 일부 지원필요 및 상당 지원필요, 완전 도움: 전적 지원필요)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2024.

표 5-6 장애 정도별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제한율 (2023)

(단위: %)

구분	전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전화 사용하기	73.6	22.1	4.3	56.2	33.8	9.9	82.9	15.9	1.3
물건 사기	69.4	24.7	5.9	45.1	42.1	12.8	82.3	15.5	2.3
식사 준비(만 13세 이상)	62.2	30.2	7.6	38.0	45.5	16.4	74.1	22.7	3.2
청소(만 13세 이상)	63.1	29.9	7.0	40.8	44.4	14.8	74.1	22.8	3.1
빨래하기(만 13세 이상)	62.8	30.0	7.1	40.8	43.9	15.3	73.7	23.2	3.1
약 챙겨먹기(만 13세 이상)	84.7	13.2	2.1	66.8	28.2	5.0	93.5	5.8	0.7
금전 관리	70.0	21.6	8.3	45.0	36.2	18.8	83.3	13.9	2.7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60.2	28.9	10.8	37.6	40.2	22.2	72.3	23.0	4.7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1990	2023	3년

02-1
연 관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Need for help with daily activities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는 장애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느 정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혹은 남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값의 분율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를 '1. 혼자서 스스로, 2. 대부분 혼자서, 3. 일부 지원 필요, 4. 대부분 지원 필요, 5. 거의 지원 필요'와 같이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frac{\text{도움 필요 정도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장애인 수}}{\text{조사대상 장애인 수}} \times 100$

표 5-7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2023)

(단위: %)

구분	계	혼자서 스스로	대부분 혼자서	일부 지원 필요	대부분 지원 필요	거의 지원 필요
전체	100.0	45.4	19.4	23.0	9.0	3.3
지체장애	100.0	60.4	17.6	16.6	4.0	1.5
뇌병변장애	100.0	12.6	15.6	34.5	22.2	15.1
시각장애	100.0	63.0	12.1	15.6	8.3	1.1
청각장애	100.0	37.3	30.9	25.7	5.2	0.9
언어장애	100.0	18.7	29.1	31.4	12.2	8.6
지적장애	100.0	6.0	18.5	42.9	26.1	6.4
자폐성장애	100.0	2.0	15.0	21.4	39.0	18.0
정신장애	100.0	36.0	24.2	26.0	9.2	4.6
신장장애	100.0	54.5	18.4	16.6	6.8	3.7
심장장애	100.0	64.2	17.7	12.0	5.1	1.0
호흡기장애	100.0	33.6	30.0	19.4	12.0	5.0
간장애	100.0	77.2	12.9	5.4	3.4	1.1
안면장애	100.0	70.0	17.8	10.6	0.7	0.9
장루 · 요루장애	100.0	53.0	24.7	13.7	6.5	2.1
뇌전증장애	100.0	51.7	14.3	20.0	10.2	3.8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1990	2023	3년

03
대 표

장애인 복지시설 수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 치료 ·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지표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도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장애인 복지시설 수 = 거주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의료재활시설**

표 5-8 장애인 복지시설 수 (2009~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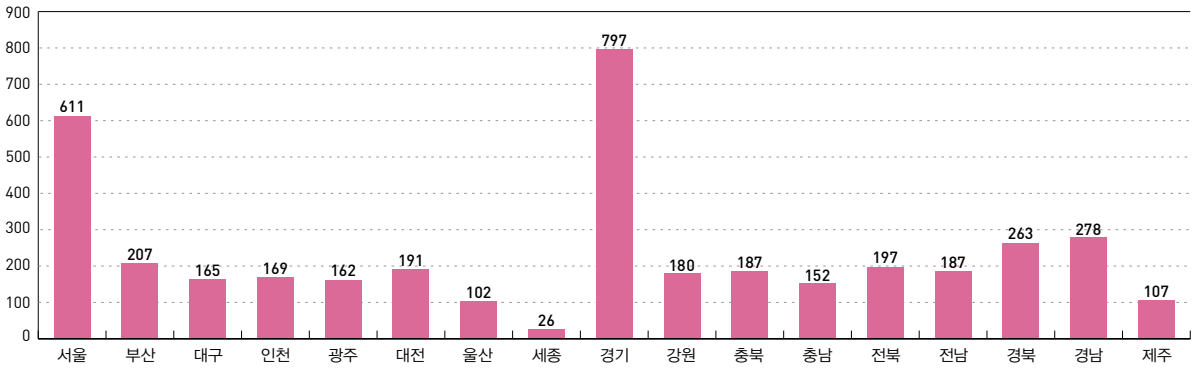
(단위: 개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거주시설	397	452	490	1,348	1,397	1,457	1,484	1,505	1,517	1,527	1,557	1,539	1,535	1,532	1,529	1,524
지역사회재활시설	1,563	1,701	1,820	1,140	1,184	1,213	1,248	1,303	1,333	1,373	1,468	1,519	1,568	1,601	1,602	1,628
직업재활시설	386	417	456	478	511	539	560	582	625	651	683	720	773	792	811	815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	16	16	16	17	17	17	17	17	17	17	17	18	18	17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	17	17	18	18	18	19	19	19	19	18	18	18	19	19
계	2,346	2,570	2,799	2,999	3,126	3,244	3,327	3,426	3,511	3,587	3,744	3,813	3,911	3,961	3,979	4,003

자료: 1) 보건복지부, 2025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2024.12월 말 기준), 각 연도.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23.

그림 5-2 시도별 장애인 복지시설 수 (2024)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024.12월 말 기준), 2025.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5440&tag=&nPage=1에서 2025.8.2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24	1년

03-1
연 관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거주인 수

Number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sidents

지표 정의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본 지표를 통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 및 현황 등 시설 장애인 복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지체 ·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 · 언어장애인, 지적 · 자폐성장애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한다.**

• 본 지표는 각각의 시설 수와 연도 말 기준 거주하는 실인원 수를 측정한다.

표 5-9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2013~2024)

(단위: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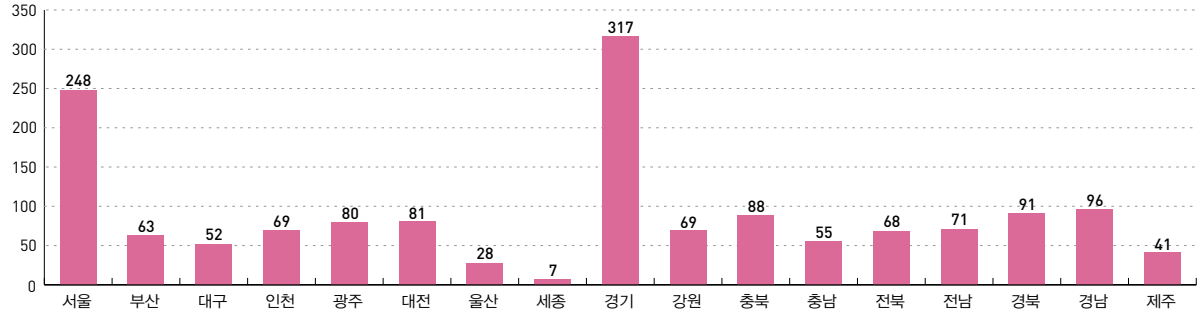
구분	총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 시설		공동생활 가정	
			소계		지체 ·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 · 언어 장애인		지적 · 자폐성 장애인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2013	1,397	31,152	356	15,069	39	1,978	16	770	8	320	293	12,001	216	11,412	9	473	131	1,432	685	2,766
2014	1,457	31,406	375	15,246	44	2,208	15	632	7	270	309	12,136	223	11,344	9	466	137	1,495	713	2,855
2015	1,484	31,222	383	14,920	39	1,668	16	628	7	255	321	12,369	233	11,314	10	541	141	1,548	717	2,899
2016	1,505	30,980	381	14,817	40	1,766	17	711	7	228	317	12,112	233	11,192	9	452	146	1,616	736	2,903
2017	1,517	30,693	376	14,630	39	1,690	17	700	7	232	313	12,008	233	10,996	9	429	147	1,699	752	2,939
2018	1,527	30,152	376	14,168	33	1,418	16	662	7	223	320	11,865	239	10,995	9	398	150	1,671	753	2,920
2019	1,557	29,662	368	13,620	33	1,304	15	615	7	216	313	11,485	251	10,978	9	382	159	1,733	770	2,949
2020	1,539	29,086	368	13,254	28	1,121	16	579	7	205	317	11,349	251	10,866	9	361	157	1,733	754	2,872
2021	1,535	28,565	360	13,073	28	1,055	15	569	7	196	310	11,253	249	10,520	9	357	164	1,783	753	2,832
2022	1,532	27,946	355	12,480	26	882	15	562	7	177	307	10,859	252	10,450	9	332	165	1,871	751	2,813
2023	1,529	27,352	355	12,267	25	849	15	557	7	172	308	10,689	252	10,220	9	324	167	1,735	746	2,806
2024	1,524	26,987	354	12,143	25	843	15	550	7	164	307	10,586	251	10,057	9	310	168	1,719	742	2,758

주: 1)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었던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거주시설로 재편됨.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거주시설 수와 이용 인원이 크게 증가함.
2) 현원 기준 작성.

자료: 보건복지부, 2025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2024.12월 말 기준). 각 연도.

그림 5-3 시도별 장애인 거주시설 수 (2024)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024.12월 말 기준). 2025.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5440&tag=&nPage=1에서 2025.8.2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24	1년

03-2
연 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Number of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 치료 ·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본 지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전국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수를 말한다.**

표 5-10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2013~2024)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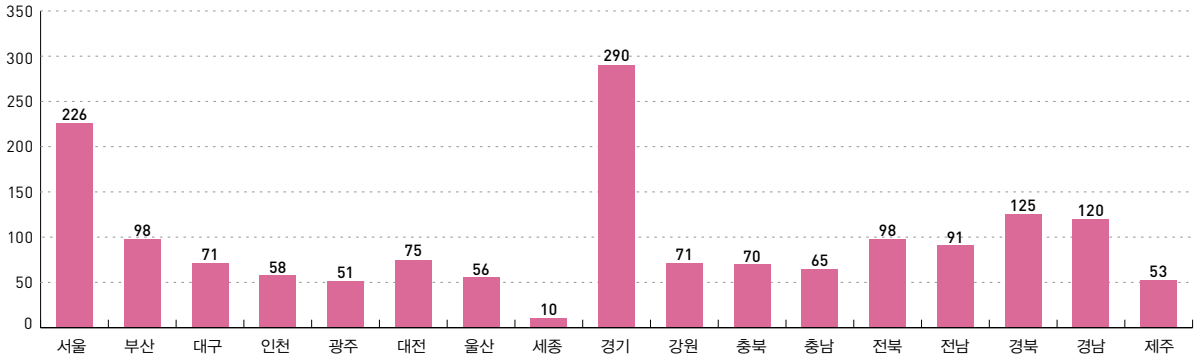
구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단기 보호 시설	공동생활 가정	의료재활 시설
	계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수어통역 센터	기타			
2013	1,184	219	558	29	155	199	-	-	-	18
2014	1,213	223	592	29	156	193	20	-	-	18
2015	1,248	224	625	30	156	193	20	-	-	18
2016	1,303	231	663	34	159	194	22	-	-	20
2017	1,333	237	690	33	157	194	22	-	-	19
2018	1,373	241	724	33	159	195	21	-	-	19
2019	1,468	254	769	28	164	197	24	-	-	18
2020	1,466	258	797	28	164	199	20	-	-	18
2021	1,568	261	818	31	165	202	24	-	-	18
2022	1,601	263	840	31	165	204	24	-	-	18
2023	1,621	266	849	30	165	206	20	-	-	19
2024	1,628	262	855	30	167	206	20	-	-	19

주: 1) 의료재활시설은 201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위 자료에서는 함께 표기함.
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2012년부터 거주시설로 포함되었음.
3) 2014년부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이 기타 시설로 통계 산입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그림 5-4 시도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2024)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024.12월 말 기준). 2025.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5440&tag=&nPage=1에서 2025.8.2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24	1년

03-3
연 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Number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본 지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지원정책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표는 각각의 시설 수를 측정한다.**

표 5-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및 이용 인원 (201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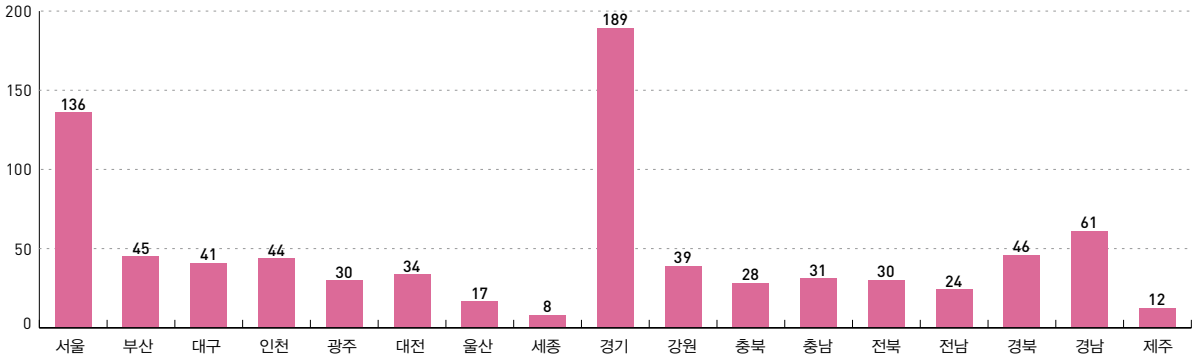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호작업장	시설 수	447	477	496	516	553	573	593	619	667	682	704	701
	이용 인원	12,086	12,930	13,616	14,335	14,960	15,262	15,796	16,147	16,791	17,017	17,437	17,747
근로사업장	시설 수	64	64	64	63	62	63	65	67	68	70	69	76
	이용 인원	2,653	2,721	2,798	2,762	2,724	2,690	2,823	2,875	2,923	2,951	2,910	3,131
직업적응훈련시설	시설 수	-	-	-	-	10	15	25	34	38	40	38	38
	이용 인원	-	-	-	-	157	253	437	712	790	851	878	883
총계	시설 수	511	541	560	579	625	651	683	720	773	792	811	815
	이용 인원	14,739	15,651	16,414	17,097	17,841	18,205	19,056	19,734	20,504	20,819	21,225	21,761

주: 이용 인원은 12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2024.12월 말 기준), 각 연도.

그림 5-5 시도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2024)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024.12월 말 기준). 2025.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5440&tag=&nPage=1에서 2025.8.2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24	1년

04
대 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Installation rate of convenienc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 중 정해진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비율이다.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편의증진법)은 편의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대상 시설은 전국적으로 14만 2천여 개이며, 설치 대상 편의시설은 모두 630여만 개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전반적인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편의시설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text{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times 100$

표 5-12 연도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2018, 2023)

(단위: 개소, %)

편의시설 종류	2018					2023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3,873,162	3,167,681	81.8	2,998,098	77.4	2,153,933	2,011,613	93.4	1,812,782	84.2
내부시설	3,299,282	2,762,138	83.7	2,560,854	77.6	2,858,498	2,549,814	89.2	2,273,371	79.5
위생시설	1,482,821	1,049,239	70.8	953,768	64.3	1,109,576	942,438	84.9	817,632	73.7
안내시설	214,343	146,173	68.2	133,581	62.3	212,829	156,938	73.7	121,658	57.2
기타시설	124,179	93,540	75.3	84,392	68.0	80,304	69,730	86.8	60,444	75.3
비치용품	34,626	18,685	54.0	-	-	25,273	13,363	52.9	13,363	52.9
계	9,028,413	7,237,456	80.2	6,749,378	74.8	6,440,413	5,743,896	89.2	5,099,250	72.9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2023.

표 5-13 핵심항목 기준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2018)

(단위: 개소, %)

편의시설 종류	핵심 세부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1,354,654	1,183,889	87.4	1,112,339	82.1
내부시설	1,115,619	1,061,126	95.1	1,015,005	91.0
위생시설	625,863	466,585	74.6	429,608	68.6
안내시설	68,931	53,308	77.3	48,786	70.8
기타시설	40,767	29,442	72.2	27,618	67.7
계	3,205,834	2,794,350	87.2	2,633,406	82.1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8.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1995	2023	5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2018

표 5-14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 (2023)

(단위: 개소, %)

시도	대상건물 수	설치기준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전국	190,991	6,440,413	5,743,896	0.892	5,099,250	79.2%
서울	29,957	812,487	747,930	0.921	682,738	84.0%
부산	14,545	440,244	396,768	0.901	349,422	79.4%
대구	6,923	263,653	237,186	0.900	214,106	81.2%
인천	11,302	358,048	323,222	0.903	282,107	78.8%
광주	6,471	227,541	203,779	0.896	178,692	78.5%
대전	3,513	134,611	121,277	0.900	109,774	81.6%
울산	2,396	92,885	84,107	0.906	76,757	82.6%
세종	1,386	57,530	53,897	0.937	49,854	86.7%
경기	40,575	1,286,189	1,172,564	0.912	1,063,908	82.7%
강원	7,556	288,648	245,749	0.851	213,159	73.9%
충북	6,637	231,005	203,961	0.883	179,874	77.9%
충남	9,511	343,658	303,847	0.884	269,117	78.3%
전북	10,129	391,752	341,557	0.872	294,994	75.3%
전남	9,348	361,499	305,110	0.844	258,609	71.5%
경북	12,646	468,721	406,321	0.867	359,225	76.6%
경남	13,335	523,647	456,515	0.872	393,964	75.2%
제주	4,761	158,295	140,106	0.885	122,950	77.7%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23.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05
대 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발달재활서비스는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급여를 지급한다.

측정 산식

- 급여액 : 서비스 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30,000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제한 금액
- 본인부담금 : 소득별로 차등 지원

(2024년 기준)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차상위계층 (가형)	차상위계층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정부지원금	월 25만 원	월 23만 원	월 21만 원	월 19만 원	월 17만 원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 원	월 4만 원	월 6만 원	월 8만 원

표 5-15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7~2024)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용자 수	52,830	55,802	62,360	60,334	68,604	73,977	79,632	84,499
이용액	8,691,978	9,070,412	10,071,097	11,057,717	12,509,706	13,695,230	17,225,137	15,786,730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표 5-16 월별 · 시도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2024)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78,051	78,262	79,042	80,171	80,806	81,593	82,095	82,271	82,669	83,568	84,190	84,499
서울	10,702	10,795	10,801	10,796	10,789	10,845	10,855	10,832	10,854	10,912	11,003	10,973
부산	5,463	5,452	5,430	5,530	5,569	5,579	5,710	5,674	5,660	5,651	5,649	5,751
대구	4,205	4,182	4,229	4,276	4,342	4,556	4,582	4,571	4,567	4,617	4,616	4,642
인천	4,327	4,330	4,379	4,471	4,505	4,573	4,584	4,540	4,593	4,677	4,736	4,782
광주	3,417	3,379	3,333	3,345	3,337	3,424	3,462	3,443	3,486	3,502	3,520	3,540
대전	2,668	2,681	2,699	2,719	2,782	2,786	2,763	2,775	2,783	2,770	2,794	2,783
울산	1,901	1,916	1,920	1,962	2,117	2,112	2,111	2,086	2,070	2,106	2,161	2,162
세종	528	513	497	488	486	480	484	465	451	447	508	523
경기	19,328	19,318	19,818	20,098	20,369	20,555	20,598	20,603	20,662	20,887	21,044	21,045
강원	2,743	2,735	2,802	2,867	2,879	2,919	2,964	2,955	2,944	2,962	2,967	2,984
충북	2,178	2,154	2,138	2,142	2,110	2,153	2,147	2,126	2,138	2,282	2,307	2,329
충남	2,738	2,786	2,857	2,900	2,914	2,917	2,918	2,888	2,889	2,929	2,953	2,908
전북	3,363	3,342	3,318	3,463	3,474	3,472	3,476	3,684	3,745	3,787	3,830	3,871
전남	3,252	3,404	3,482	3,577	3,609	3,704	3,826	3,914	3,970	4,003	4,005	4,050
경북	4,530	4,664	4,694	4,738	4,742	4,752	4,794	4,996	5,054	5,123	5,224	5,250
경남	4,598	4,545	4,609	4,653	4,650	4,657	4,731	4,684	4,799	4,766	4,728	4,700
제주	2,110	2,066	2,036	2,146	2,132	2,109	2,090	2,035	2,004	2,147	2,145	2,206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생산연도	최근 생산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24	월

표 5-17 월별 · 등급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24)

(단위: 명, 천 원)

구분	이용자 수						이용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합계	
1월	6,742	26,032	9,886	39,714	20,028	102,402	14,663,367
2월	7,562	5,266	20,351	30,648	14,437	78,264	14,534,330
3월	6,743	26,560	9,736	40,353	19,431	102,823	14,822,744
4월	9,762	6,767	26,994	40,776	19,362	103,661	15,040,844
5월	6,798	27,486	9,815	41,017	19,189	104,305	15,131,021
6월	6,789	27,705	9,862	41,063	19,233	104,652	15,217,593
7월	6,846	28,058	9,936	41,176	19,265	105,281	15,432,848
8월	6,889	28,172	10,029	40,840	19,392	105,322	15,336,188
9월	6,930	28,312	10,062	40,765	19,494	105,563	15,276,595
10월	6,999	28,527	10,146	41,053	19,654	106,379	15,661,175
11월	7,030	28,749	10,243	41,204	19,840	107,066	15,777,772
12월	7,074	28,964	10,297	41,424	20,037	107,796	15,786,73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신체기능과 자립생활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의거 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일 때 선정되며, 각 활동지원등급,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바우처를 지원한다.

측정 산식

-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 등급을 설정하여(15등급) 각 등급별 최저 88.9만 원(15구간)에서 최대 710만 원(1구간)까지 산정
- 특별지원급여 : 출산(118만 원), 자립준비(29만 원), 보호자일시부재(29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한시적 지원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금 차등 부과**(특별지원급여는 별도 본인부담금 없음)

표 5-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7~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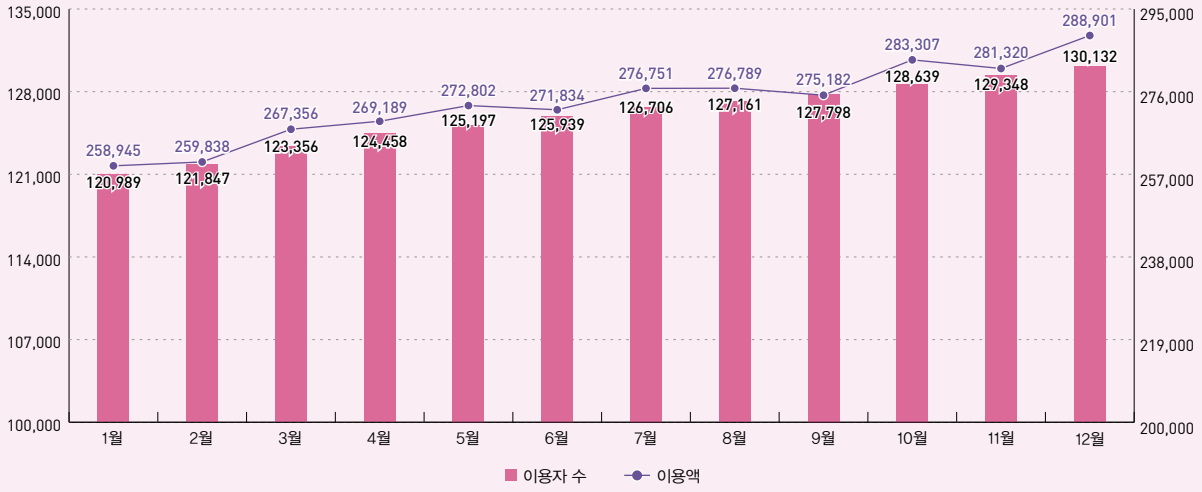
(단위: 명,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용자 수	72,193	78,202	86,730	93,115	102,575	110,658	120,877	129,998
이용액	81,734,439	102,590,834	139,313,650	163,584,489	192,109,666	221,276,575	256,720,945	288,901,072

주: 각 연도 12월 기준

그림 5-6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24)

(단위: 명, 백만 원)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생산연도	최근 생산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24	월

* 만 65세가 도래한 대상자 중 장기요양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과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 원 정액 부과, 차상위 초과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180% 초과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함.

표 5-19 시도별 ·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2024)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20,989	121,847	123,356	124,458	125,197	125,939	126,706	127,161	127,798	128,639	129,348	130,132
서울	21,551	21,680	21,907	22,050	22,159	22,240	22,307	22,360	22,454	22,572	22,688	22,744
부산	8,754	8,800	8,878	8,945	8,983	9,038	9,042	9,037	9,065	9,102	9,137	9,203
대구	5,657	5,714	5,794	5,871	5,909	5,965	6,034	6,106	6,126	6,175	6,212	6,288
인천	6,640	6,699	6,776	6,858	6,899	6,951	6,987	7,016	7,043	7,087	7,123	7,151
광주	5,370	5,396	5,431	5,484	5,499	5,526	5,563	5,584	5,616	5,652	5,664	5,706
대전	4,383	4,399	4,428	4,447	4,457	4,465	4,481	4,502	4,508	4,530	4,564	4,574
울산	1,882	1,896	1,926	1,946	1,975	1,983	2,001	2,026	2,050	2,075	2,102	2,116
세종	667	689	687	687	690	695	703	713	715	718	731	734
경기	26,843	27,047	27,498	27,790	27,964	28,166	28,375	28,465	28,628	28,789	28,942	29,145
강원	2,878	2,882	2,920	2,968	2,974	2,980	3,002	3,005	3,008	3,035	3,054	3,072
충북	3,648	3,648	3,699	3,725	3,767	3,763	3,767	3,748	3,747	3,764	3,751	3,769
충남	5,578	5,629	5,715	5,766	5,815	5,819	5,863	5,883	5,918	5,964	6,008	6,045
전북	4,985	5,045	5,115	5,153	5,207	5,270	5,296	5,341	5,385	5,456	5,491	5,530
전남	6,021	6,077	6,154	6,208	6,261	6,316	6,396	6,437	6,482	6,522	6,528	6,562
경북	5,560	5,597	5,676	5,729	5,777	5,832	5,900	5,927	5,977	6,050	6,087	6,152
경남	8,794	8,857	8,929	8,988	9,003	9,057	9,096	9,125	9,187	9,239	9,310	9,356
제주	1,778	1,792	1,823	1,843	1,858	1,873	1,893	1,886	1,889	1,909	1,956	1,985

주: 〈표 5-18〉의 이용자 수와 동일한 지표이긴 하나, 집계 기준(사업 및 시군구 기준 중복제거)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

표 5-20 시도별 ·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액 (2024)

(단위: 천 원)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258,945,239	259,837,681	267,355,751	269,188,815	272,802,367	271,834,467	276,751,214	276,789,342	275,181,680	283,307,324	281,320,286	288,901,072
서울	51,392,172	47,371,237	47,078,659	44,699,021	45,579,216	47,583,769	51,704,891	52,273,692	51,501,671	53,276,527	48,906,902	45,691,981
부산	15,810,162	16,368,165	16,594,805	16,863,070	17,093,838	17,518,208	17,718,966	17,715,167	17,386,881	19,018,308	18,871,861	19,434,871
대구	11,773,852	11,743,135	13,356,404	13,420,033	13,682,116	13,672,482	13,985,376	13,054,662	12,973,870	13,333,275	12,932,819	13,719,600
인천	11,294,037	11,531,027	11,760,978	12,029,844	11,831,100	12,623,264	11,710,066	12,050,241	12,276,668	12,239,620	12,078,392	11,805,930
광주	11,469,187	11,548,192	11,877,037	11,898,286	12,047,526	12,308,860	12,466,989	12,195,185	12,118,376	12,420,896	12,286,679	12,644,229
대전	7,670,134	7,413,647	7,634,905	7,983,293	8,042,047	7,765,432	7,819,394	8,225,864	8,212,529	8,343,910	8,778,254	8,948,735
울산	3,764,860	3,818,372	4,566,920	3,852,955	3,958,353	3,945,962	4,023,035	4,032,005	4,038,391	4,190,033	4,206,944	4,311,893
세종	2,260,765	1,607,668	1,517,253	1,798,229	1,629,280	2,087,240	1,925,236	1,940,795	1,944,020	2,275,997	1,895,318	2,439,896
경기	59,970,831	64,972,160	71,126,974	73,371,995	74,704,766	70,267,187	71,147,287	69,465,080	70,346,683	72,365,800	76,100,733	82,894,244
강원	6,537,920	6,541,422	5,867,543	6,529,059	6,351,272	6,615,573	5,775,951	5,874,075	5,748,543	6,053,558	5,914,501	6,428,603
충북	8,536,116	8,564,859	7,692,770	7,214,413	7,332,598	7,523,846	7,294,160	7,233,635	7,236,023	7,223,001	7,520,633	7,351,701
충남	11,058,018	11,301,072	11,155,263	11,206,571	11,198,697	11,456,376	11,414,731	11,396,760	10,226,932	10,515,972	10,460,691	10,632,252
전북	9,847,693	9,887,792	10,212,024	10,471,810	11,005,272	10,964,571	11,244,549	11,269,169	11,291,914	11,779,916	11,058,687	11,197,278
전남	11,228,737	11,266,597	11,631,326	11,782,617	11,922,793	11,648,042	11,933,388	12,297,834	12,201,736	12,548,513	12,467,430	12,734,247
경북	13,037,919	13,103,001	11,903,581	12,039,120	11,833,788	12,016,979	12,386,566	13,517,169	13,380,145	13,945,016	14,094,491	14,324,881
경남	19,770,422	19,224,226	19,691,509	20,319,814	20,461,881	19,827,908	20,121,063	20,125,491	20,145,403	19,522,001	19,433,527	19,845,108
제주	3,522,416	3,575,108	3,687,801	3,708,684	4,127,823	4,008,769	4,079,566	4,122,518	4,151,897	4,254,981	4,312,426	4,495,625

06-1
연 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An overview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providing organization and provider

지표 정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공기관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공모에 의거 심사를 통해 지정되며, 활동보조기관,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기관으로 구분된다. 활동지원인력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되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로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등 자격기준은 활동내역에 따라 상이하다. 본 지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별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군구청에 지정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결제이력이 있는 제공기관 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제공이력이 있는 활동지원인력 수

표 5-2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2017~2024)

(단위: 개소, 명)

구분	제공기관								제공인력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904	908	919	952	1,002	1,027	1,076	1,125	62,629	68,673	78,044	87,908	98,469	106,872	117,156	127,344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표 5-22 월별 · 시도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수 (2024)

(단위: 개소)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087	1,089	1,091	1,092	1,103	1,109	1,113	1,113	1,123	1,123	1,126	1,125
서울	150	148	147	142	146	153	166	161	158	161	150	142
부산	65	66	65	65	64	67	66	66	67	69	70	70
대구	44	45	46	46	47	47	47	46	48	48	49	50
인천	46	46	46	47	47	49	46	47	51	50	50	47
광주	34	34	34	34	34	35	35	34	35	35	35	34
대전	25	24	24	26	26	25	25	26	26	26	27	27
울산	15	16	20	20	22	24	25	24	24	24	24	24
세종	6	6	6	7	6	8	7	7	7	8	7	8
경기	225	223	229	229	230	221	219	221	225	223	234	246
강원	46	47	45	47	45	45	43	44	44	44	44	45
충북	40	40	39	37	37	38	37	37	39	39	40	39
충남	59	60	58	58	58	58	58	59	55	54	54	53
전북	65	66	67	68	75	75	75	75	75	75	73	72
전남	72	72	72	72	72	72	72	73	73	73	73	73
경북	77	76	75	75	73	74	74	75	75	75	77	76
경남	108	110	108	109	109	107	107	107	107	105	105	105
제주	10	10	10	10	12	11	11	11	14	14	14	14

주: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수는 1건 이상 결제이력이 있는 기관 수이며, 합계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중복을 제외한 전체 제공기관 수의 합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생산연도	최근 생산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24	월

* ①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표 5-23 시도별 ·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수 (2024)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17,267	118,260	119,734	121,017	121,661	122,416	123,629	124,385	125,144	125,774	126,653	127,344
서울	22,117	20,720	20,416	19,589	19,689	20,444	22,134	22,460	22,555	22,699	21,225	19,661
부산	6,938	7,183	7,168	7,389	7,406	7,682	7,734	7,733	7,677	8,184	8,236	8,302
대구	5,152	5,137	5,559	5,603	5,642	5,695	5,782	5,537	5,549	5,568	5,498	5,638
인천	5,214	5,345	5,373	5,521	5,416	5,811	5,333	5,500	5,694	5,539	5,572	5,294
광주	5,184	5,191	5,262	5,294	5,304	5,454	5,478	5,422	5,439	5,462	5,472	5,517
대전	3,735	3,634	3,706	3,891	3,903	3,794	3,815	4,017	4,018	4,046	4,263	4,279
울산	1,861	1,893	2,241	1,929	2,008	2,007	2,029	2,047	2,054	2,087	2,131	2,142
세종	1,095	854	804	950	873	1,107	1,026	1,031	1,046	1,176	981	1,206
경기	27,214	29,353	31,545	32,555	33,052	31,493	31,867	31,465	32,077	32,336	34,227	36,346
강원	2,900	2,958	2,575	2,891	2,744	3,008	2,504	2,572	2,573	2,582	2,580	2,743
충북	3,940	3,965	3,531	3,293	3,300	3,476	3,317	3,315	3,381	3,256	3,503	3,346
충남	5,016	5,120	5,035	5,064	4,996	5,182	5,096	5,086	4,599	4,630	4,677	4,661
전북	4,470	4,512	4,569	4,709	4,870	4,948	5,026	5,044	5,107	5,201	4,960	4,859
전남	5,233	5,271	5,346	5,391	5,433	5,351	5,416	5,593	5,628	5,667	5,691	5,699
경북	6,150	6,225	5,584	5,648	5,498	5,652	5,712	6,161	6,211	6,277	6,461	6,409
경남	9,572	9,408	9,503	9,767	9,807	9,628	9,664	9,690	9,808	9,304	9,372	9,411
제주	1,476	1,491	1,517	1,533	1,720	1,684	1,696	1,712	1,728	1,760	1,804	1,831

07
대 표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Number of the child care facilit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users

지표 정의

장애아 어린이집은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보다 장애아가 많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구분한다. 이용 아동은 각각 시설의 연도 말 이용 현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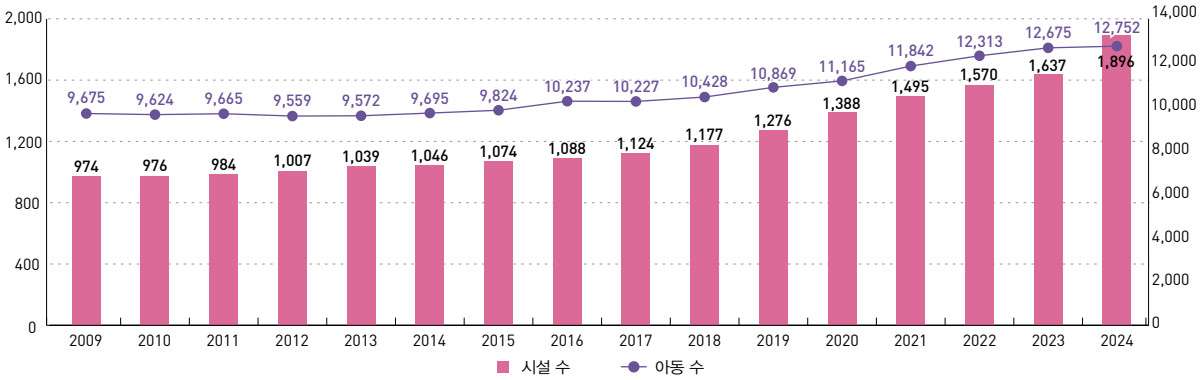
• 본 지표를 통해 장애아 보육정책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및 이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현 인원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통합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및 이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현 인원

그림 5-7 장애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인원 (2009~2024)

(단위: 개소, 명)



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수와 장애아동 현원 합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표 5-24 유형별 장애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인원 (2009~2024)

(단위: 개소, 명)

유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설 수	장애아 전문	168	166	169	171	172	174	175	177	178	177	176	177	178	177	173	178
	장애아 통합	806	810	815	836	867	872	899	911	946	1,000	1,100	1,211	1,317	1,393	1,464	1,718
이용 아동 수	장애아 전문	6,206	6,137	6,152	5,994	5,883	5,860	5,895	6,158	6,161	6,239	6,301	6,206	6,264	6,170	5,997	5,895
	장애아 통합	3,469	3,487	3,513	3,565	3,689	3,835	3,929	4,079	4,066	4,189	4,568	4,959	5,578	6,143	6,678	6,857
시설 소계		974	976	984	1,007	1,039	1,046	1,074	1,088	1,124	1,177	1,276	1,388	1,495	1,570	1,637	1,896
이용 아동 소계		9,675	9,624	9,665	9,559	9,572	9,695	9,824	10,237	10,227	10,428	10,869	11,165	11,842	12,313	12,675	12,752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04	2024	1년

표 5-25 시도별 · 유형별 장애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인원 (2023)

(단위: 개소, 명)

시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합계	
	시설 수	이용 아동	시설 수	이용 아동	시설 수	이용 아동
전국	173	8,219	1,464	122,252	1,637	130,471
서울	8	281	423	36,431	431	36,712
부산	15	566	66	4,559	81	5,125
대구	17	1,013	10	767	27	1,780
인천	7	148	109	8,761	116	8,909
광주	11	608	11	645	22	1,253
대전	4	98	36	2,314	40	2,412
울산	9	463	18	1,548	27	2,011
세종	1	39	8	1,601	9	1,640
경기	20	845	546	46,648	566	47,493
충북	6	294	11	918	17	1,212
충남	11	471	35	2,420	46	2,891
전남	13	799	25	2,367	38	3,166
경북	14	940	20	1,827	34	2,767
경남	19	791	44	3,414	63	4,205
제주	4	201	68	5,031	72	5,232
강원	4	199	24	2,049	28	2,248
전북	10	463	10	952	20	1,415

자료: 보건복지부. (2024). 2023년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현황

08
대 표

특수교육 대상자 수

Number of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지표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 평가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한 장애영유아 및 학생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영아 및 학생 수

표 5-26 학교급별 특수교육 대상자 수 (2010~2024)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98,154	103,695	109,703	115,610
장애영아	290	356	403	578	680	742	656	5,986	6,212	6,521	6,975	369	359	407	470
유치원	3,225	3,367	3,675	4,190	4,219	4,744	5,186					7,197	8,248	8,781	8,746
초등학교	35,294	35,124	34,458	33,518	33,184	33,591	33,770	35,505	38,031	41,091	43,205	44,814	48,448	51,585	54,283
중학교	19,375	20,508	21,535	22,241	22,159	21,108	19,793	19,218	18,788	18,462	19,140	20,212	21,462	23,005	25,013
고등학교	19,111	20,439	21,649	22,466	22,973	23,422	23,943	28,644	27,749	26,884	26,100	20,169	19,867	20,725	22,040
전공과	2,416	2,871	3,292	3,640	4,063	4,460	4,602					5,393	5,311	5,200	5,058

주: 장애영아는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 등임.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표 5-27 장애유형별 특수교육 대상자 수 (2010~2024)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98,154	103,695	109,703	115,610
시각장애	2,398	2,315	2,303	2,220	2,130	2,088	2,035	2,026	1,981	1,937	1,908	1,826	1,753	1,745	1,698
청각장애	3,726	3,676	3,744	3,666	3,581	3,491	3,401	3,358	3,268	3,225	3,132	3,026	2,961	2,907	2,842
지적장애	42,690	45,132	46,265	47,120	47,667	47,716	47,258	48,084	48,747	49,624	50,693	51,788	53,718	55,867	57,883
지체장애	10,367	10,727	11,279	11,233	11,209	11,134	11,019	10,777	10,439	10,200	9,928	9,695	9,639	9,522	9,263
정서행동장애	3,588	2,817	2,713	2,754	2,605	2,530	2,221	2,269	2,221	2,182	1,993	1,874	1,865	1,831	1,785
자폐성장애	5,463	6,809	7,922	8,722	9,334	10,045	10,985	11,422	12,156	13,105	13,917	15,215	17,024	19,275	22,194
의사소통장애	1,591	1,631	1,819	1,953	1,966	2,045	2,089	2,038	2,081	2,204	2,404	2,450	2,622	2,645	2,600
학습장애	6,320	5,606	4,724	4,060	3,362	2,770	2,327	2,040	1,627	1,409	1,226	1,114	1,078	1,037	1,065
건강장애	2,174	2,229	2,195	2,157	2,029	1,935	1,675	1,626	1,758	1,763	1,785	1,799	1,948	1,956	1,979
발달지체	1,394	1,723	2,048	2,748	3,395	4,313	4,940	5,713	6,502	7,309	8,434	9,367	11,087	12,918	14,301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표 5-28 교육환경별 특수교육 대상자 수 (2010~2024)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98,109	103,695	109,703	115,610
일반학교 일반학급	13,746	14,741	15,647	15,930	15,648	15,622	15,344	15,590	15,595	15,687	16,061	16,600	17,514	18,474	19,254
일반학교 특수학급	42,021	43,183	44,433	45,181	45,803	46,351	46,645	47,564	48,848	50,812	52,744	54,266	57,948	61,993	65,966
특수학교	23,776	24,580	24,720	25,138	25,288	25,531	25,467	25,798	25,919	26,084	26,299	27,027	27,979	28,942	30,027
특수교육지원센터	168	161	212	384	539	563	494	401	418	375	316	216	254	294	363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08	2024	1년

* 20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에서 최초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부터 통계청 승인을 받아 특수교육실태조사가 실시됨.

08-1
연 관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비율

Inclusion rates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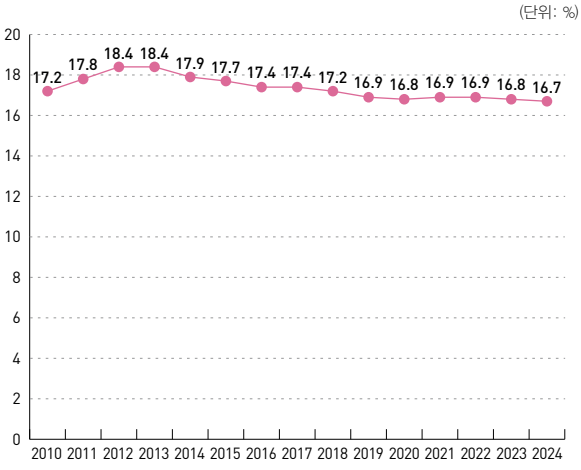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전일제 통합학급에서 완전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지표는 장애학생 개인이 성공적으로 질 높은 통합교육을 제공받는지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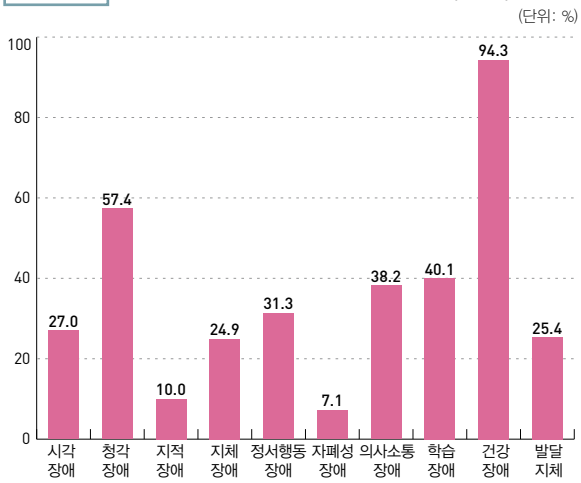
- $\frac{\text{일반학교 일반 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text{전체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times 100$

그림 5-8 전일제 통합학급 참여 학생 비율 (201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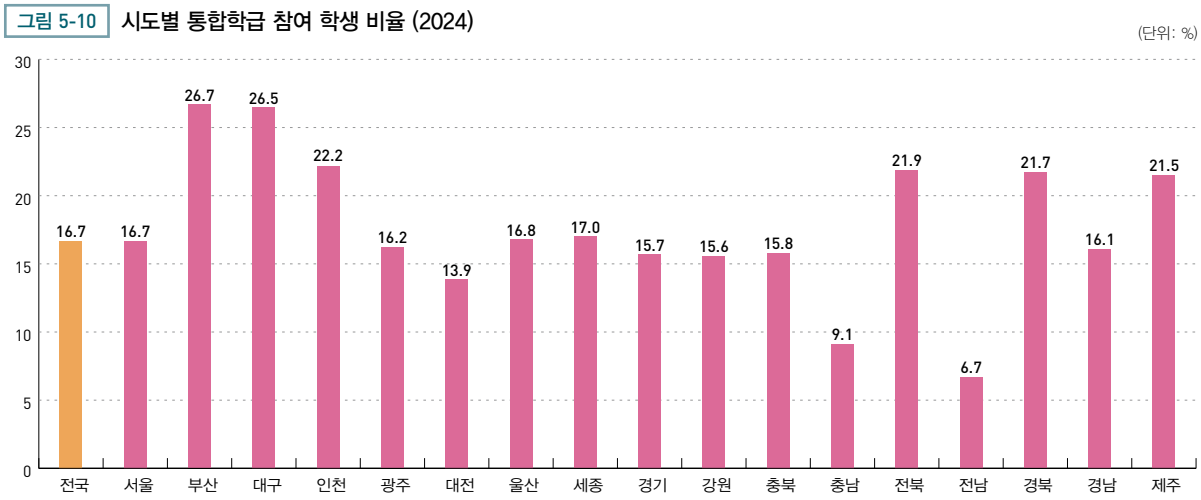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그림 5-9 장애유형별 통합학급 참여 학생 비율 (2024)



자료: 교육부, 2024 특수교육통계, 2024.

그림 5-10 시도별 통합학급 참여 학생 비율 (2024)



자료: 교육부, 2024 특수교육통계,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08	2024	1년

* 20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에서 최초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부터 통계청 승인을 받아 특수교육실태조사가 실시됨.

09
대 표

장애인 교육 수준

Education status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조사대상 장애인의 최종학력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따라 측정한 값의 분율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교육 수준을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3년제 이하), 대학(4년제 이상), 대학원 이상'과 같이 8점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frac{\text{교육 수준(최종학력)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장애인 수}}{\text{조사대상 장애인 수}} \times 100$$

표 5-29 장애유형별 장애인 교육 수준 (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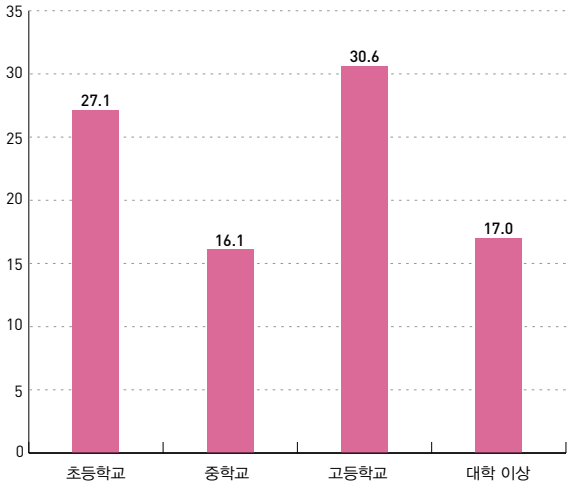
구분	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전체	100.0	8.3	27.1	16.1	30.6	17.0
지체장애	100.0	8.3	27.0	16.9	30.7	17.2
뇌병변 장애	100.0	8.2	26.0	15.7	28.2	21.5
시각장애	100.0	6.3	25.1	16.0	29.7	22.4
청각장애	100.0	15.6	37.9	17.8	18.4	10.3
언어장애	100.0	6.0	34.8	13.1	31.6	14.4
지적장애	100.0	3.8	22.7	12.7	46.9	6.6
자폐성 장애	100.0	5.4	32.8	12.8	29.4	7.2
정신장애	100.0	2.1	9.2	12.5	47.1	28.8
신장장애	100.0	1.6	18.4	14.6	36.4	29.0
심장장애	100.0	5.1	17.1	12.5	30.3	34.9
호흡기 장애	100.0	4.5	27.4	19.2	33.1	15.8
간장애	100.0	0.4	8.4	14.4	48.0	28.9
안면장애	100.0	2.7	23.5	9.5	34.7	29.4
장루·요루장애	100.0	10.7	31.3	17.4	27.9	12.7
뇌전증 장애	100.0	2.4	20.1	14.6	45.0	17.9

주 : 만 7세 이상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2024.

그림 5-11 학령별 장애인 교육 수준 (2023)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1990	2023	3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2024

10
대 표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장애인 취업자와 취업률,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장애인 실업자와 실업률,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 장애인의 경제활동 전반을 진단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 $\frac{\text{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수}}{\text{장애인 인구수}} \times 100$

• 비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 장애인 인구수 –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수

표 5-30 일반특성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2024)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전체	2019	2,526,201	941,136	881,890	59,247	1,585,065	37.3	6.3	34.9
	2020	2,562,873	949,047	893,392	55,654	1,613,826	37.0	5.9	34.9
	2021	2,574,907	959,950	891,804	68,146	1,614,957	37.3	7.1	34.6
	2022 하반기	2,583,530	928,891	886,669	42,222	1,654,639	36.0	4.5	34.3
	2023 하반기	2,589,047	916,582	880,929	35,653	1,672,465	35.4	3.9	34.0
	2024 하반기	2,574,398	925,090	888,214	36,876	1,649,308	35.9	4.0	34.5
성별	남성	1,483,788	661,117	632,289	28,827	822,671	44.6	4.4	42.6
	여성	1,090,610	263,974	255,925	8,049	826,636	24.2	3.0	23.5
연령대별	15~29세	125,643	49,580	44,889	4,690	76,063	39.5	9.5	35.7
	30~39세	109,676	59,995	58,678	1,317	49,681	54.7	2.2	53.5
	40~49세	209,775	109,603	106,892	2,712	100,172	52.2	2.5	51.0
	50~59세	397,716	227,772	223,336	4,436	169,944	57.3	1.9	56.2
	60세 이상	1,731,588	478,140	454,419	23,721	1,253,448	27.6	5.0	26.2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87,938	333,187	322,821	10,366	1,054,751	24.0	3.1	23.3
	고졸	810,546	360,863	345,376	15,488	449,683	44.5	4.3	42.6
	대졸 이상	375,913	231,040	220,017	11,023	144,874	61.5	4.8	58.5
장애정도별	중증	784,168	192,129	181,548	10,581	592,039	24.5	5.5	23.2
	경증	1,790,230	732,961	706,666	26,295	1,057,268	40.9	3.6	39.5
장애유형별	지체장애	2,574,398	925,090	888,214	36,876	1,649,308	35.9	4.0	34.5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	1,151,818	515,464	497,295	18,169	636,354	44.8	3.5	43.2
	시각장애	235,729	39,398	37,132	2,266	196,331	16.7	5.8	15.8
	시각 외 감각장애	247,110	100,777	98,307	2,470	146,333	40.8	2.5	39.8
	정신적 장애	448,336	138,393	133,057	5,335	309,943	30.9	3.9	29.7
	발달장애*	327,969	83,613	77,279	6,335	244,356	25.5	7.6	23.6
	신체내부장애	223,772	69,416	64,775	4,642	154,356	31.0	6.7	28.9
지역별	서울	163,436	47,445	45,143	2,301	115,991	29.0	4.9	27.6
	경기도	568,264	208,904	196,696	12,208	359,360	36.8	5.8	34.6
	광역시도	632,938	215,283	204,100	11,183	417,655	34.0	5.2	32.2
	기타 시도	992,981	371,589	364,288	7,301	621,392	37.4	2.0	36.7

주: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발달장애는 정신적 장애에 포함됨.

3) 기존에는 1년에 1번 조사 수행하였으나 2022년부터 반기 조사로 주기 단축, 하반기 값을 제시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24	1년/반기(2022년 이후)

10-1
연 관

장애인 고용률

Employment rate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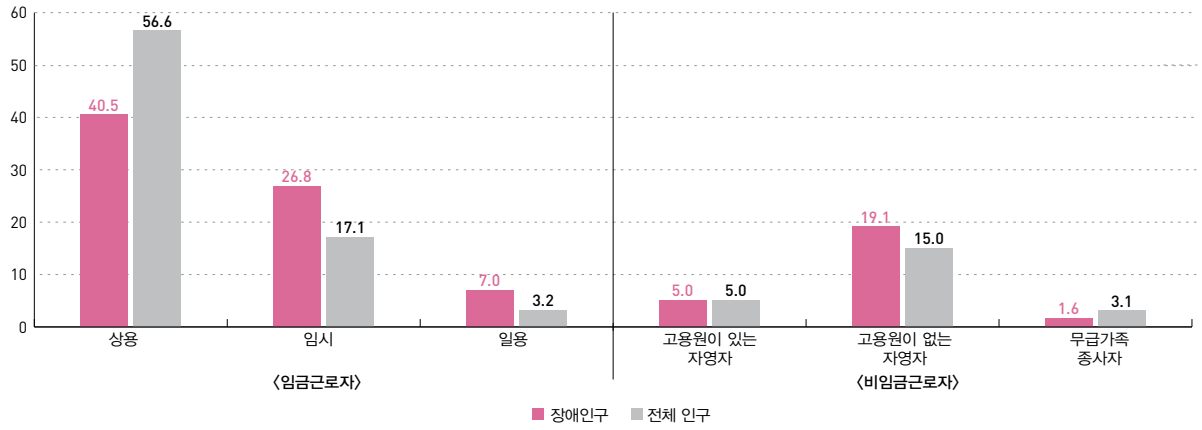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구 중 취업인구 비율을 의미하며, 생산가능 장애인구 중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로 정의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장애인 취업자 수}}{\text{생산가능 장애인 인구수}} \times 100$

그림 5-12 장애인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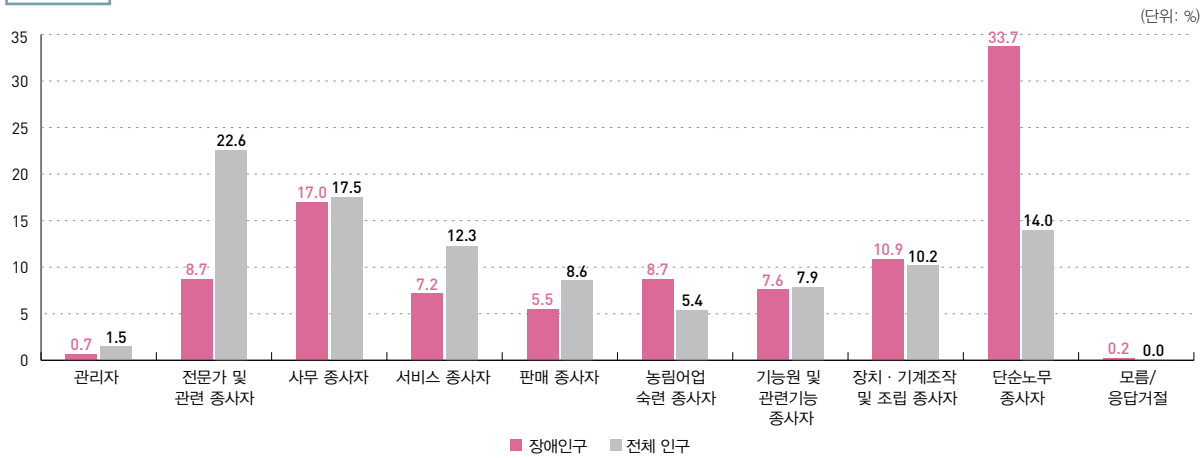
(단위: %)



주: 1) 전체 인구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가 10월에 시행됨을 감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10월 참조.
2)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2022년부터 반기별로 조사수행, 하반기 자료로 제시하였음.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4.

그림 5-13 장애인 취업자 직업별 구성비 (2024)

(단위: %)



주: 1) 전체 인구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가 10월에 시행됨을 감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10월 참조.
2)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2022년부터 반기별로 조사수행, 하반기 자료로 제시하였음.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24	1년/반기(2022년 이후)

10-2
연 관

장애인 실업률

Unemployment rate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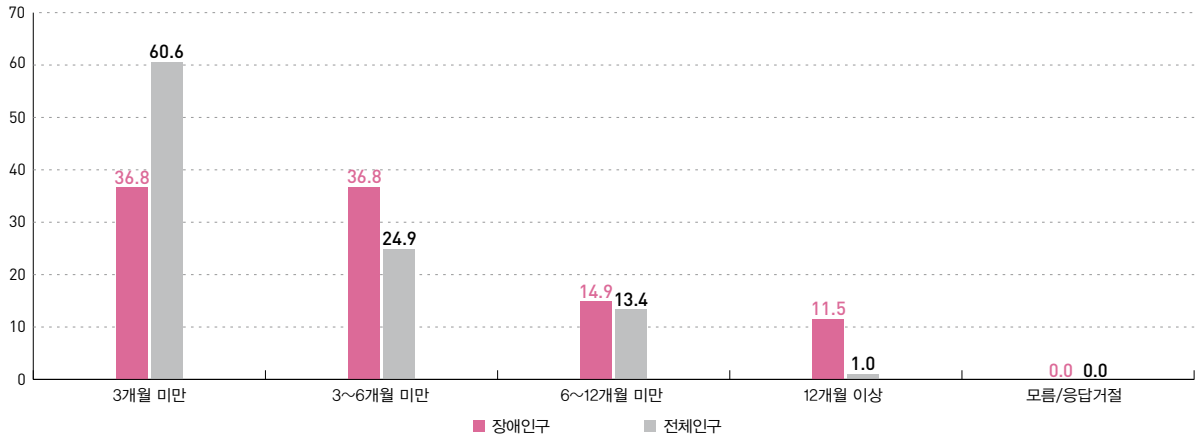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측정 산식

$$\text{장애인 실업자 수} \div \text{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수} \times 100$$

그림 5-14 장애인 실업자 구직기간별 구성비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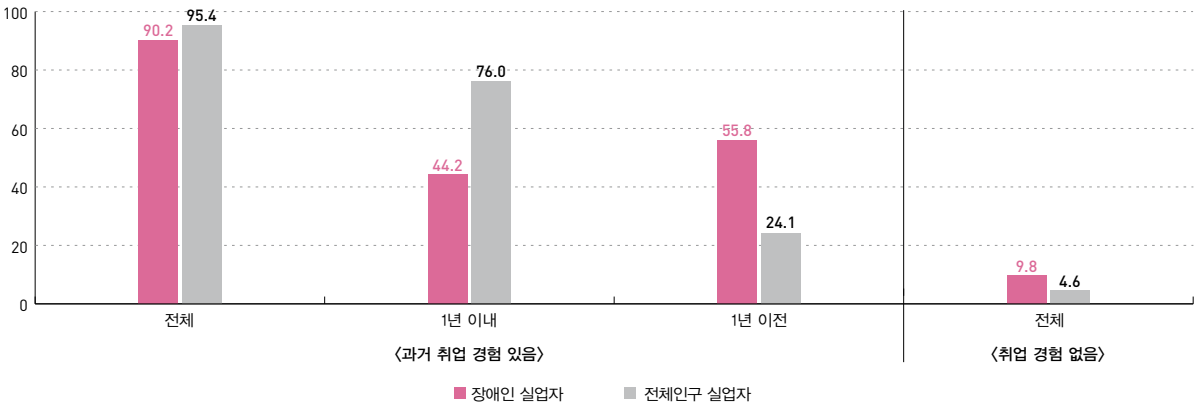
(단위: %)



주: 1) 전체 인구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가 10월에 시행됨을 감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10월 참조.
2)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2022년부터 반기별로 조사수행, 하반기 자료로 제시하였음.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4.

그림 5-15 장애인 실업자의 과거 취업 경험 구성비 (2024)

(단위: %)



주: 1) 전체 인구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가 10월에 시행됨을 감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10월 참조.
2)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2022년부터 반기별로 조사수행, 하반기 자료로 제시하였음.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24	1년/반기(2022년 이후)

11
대 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Current status of mandatory employ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본 지표를 통해서 의무고용제도 이행 현황을 파악한다.

• 본 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및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frac{\text{장애인 근로자 수}}{\text{상시 근로자 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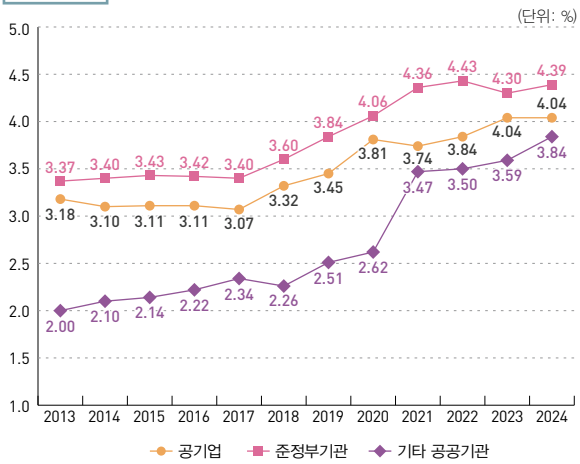
표 5-3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13~2024)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48	2.54	2.62	2.66	2.76	2.78	2.92	3.08	3.10	3.12	3.17	3.21
정부부문	2.85	2.91	3.11	3.50	3.30	3.20	3.40	3.75	3.83	3.89	3.84	3.84
공무원	2.63	2.65	2.80	2.81	2.88	2.78	2.86	3.00	2.97	2.93	2.86	2.85
공무원 아닌 근로자	3.51	3.75	4.05	4.19	4.61	4.32	5.06	5.54	5.83	6.16	6.14	6.12
공공기관	2.81	2.91	2.93	2.96	3.02	3.16	3.33	3.52	3.78	3.84	3.90	4.05
민간기업	2.39	2.45	2.51	2.56	2.64	2.67	2.79	2.91	2.89	2.91	2.99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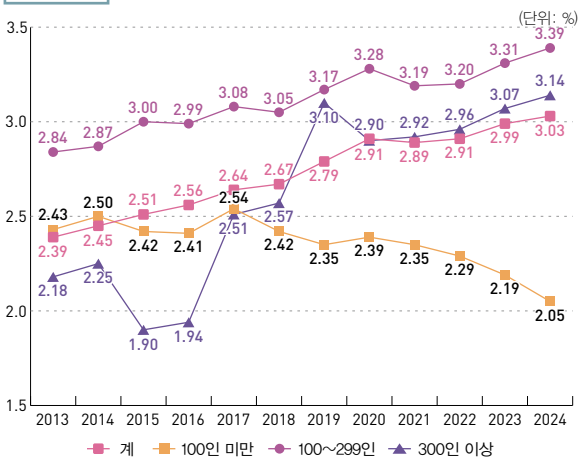
주: 2010년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각 연도.

그림 5-16 공공기관 유형별 장애인 고용률 (2013~2024)



주: 1) 2010년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2) 2014년에 지방공기업, 2019년 출연기관이 별도로 산정되었음.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각 연도.

그림 5-17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현황 (2013~2024)



주: 1) 2008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1.70이며 50~299인 기업은 1.93임.
2009년부터 사업장 규모가 세분화됨.
2) 2010년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06	2024	1년

12
대 표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Average wage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recent 3 months

지표 정의

취업장애인은 조사대상 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의미하며,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이들의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말한다.

- 취업한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취업장애인의 월소득 및 취업 분야를 파악하여 장 · 단기 장애인 소득보장정책과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취업장애인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표 5-32 연도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2017~2024)

(단위: 명, 만 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하반기		2023 하반기		2024 하반기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14,515	239.2	319,752	236.6	338,258	267.6	330,662	263.0	309,932	261.6	306,593	272.3	318,022	275.8	346,272	290.0
	임시근로자	156,642	90.9	156,779	102.0	180,047	92.7	191,096	92.8	197,976	98.5	211,408	104.6	209,321	105.8	234,707	94.3
	일용근로자	107,997	126.3	88,516	133.2	83,321	136.5	70,283	129.3	89,486	140.3	73,246	160.0	86,201	169.3	60,109	191.1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344,808	119.3	337,390	124.6	359,234	129.8	360,284	127.6	409,322	139.0	387,795	138.2	240,682	180.0	420,301	143.5
	정규직	233,982	264.5	232,232	269.6	242,391	296.9	231,756	292.7	188,071	298.9	203,452	313.3	174,370	333.8	220,787	333.9
종사자 규모	1~4인	113,973	129.8	118,041	135.7	119,933	139.2	98,580	147.8	104,292	134.8	142,032	135.9	74,877	181.8	123,325	164.4
	5~49인	279,790	163.1	272,942	176.5	304,428	190.8	305,346	168.9	130,328	178.9	298,678	182.4	243,442	231.0	366,431	194.3
	50~299인	118,275	200.1	107,289	205.0	112,626	225.9	132,574	216.3	310,723	226.4	85,286	254.9	53,387	316.9	92,085	242.1
	300인 이상	52,918	324.9	61,275	270.4	52,661	325.9	54,112	346.5	48,777	326.4	54,004	375.3	35,934	384.2	49,117	384.9
합계		578,790	178.0	565,047	183.1	601,625	197.1	592,041	192.2	597,394	189.4	591,247	198.4	613,544	202.8	641,089	209.1
전체인구			242.3		255.8		264.3		268.1		273.4		288.0		300.7		209.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24	1년/반기(2022년 이후)

13
대 표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ility pension recipients

지표 정의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본 지표는 장애인연금의 수급자 수를 이용한다.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표 5-33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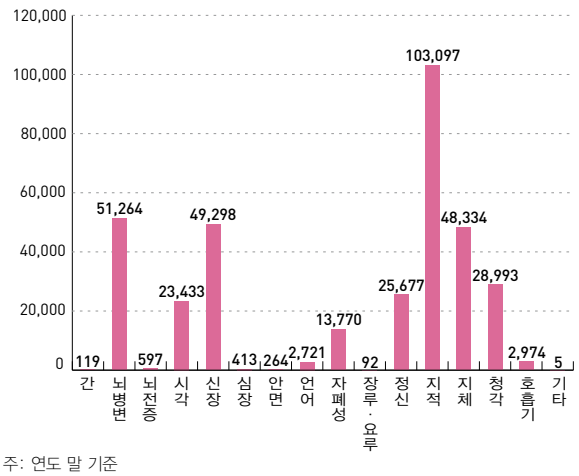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수급률	총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시설)
2014	64.5	328,414	130,428	51,512	118,157	28,317
2015	67.3	342,444	134,489	46,306	133,431	28,218
2016	68.4	350,161	134,432	45,085	142,769	27,875
2017	69.4	359,986	136,213	42,464	153,681	27,628
2018	70.0	364,712	146,606	34,539	155,812	27,755
2019	70.7	368,716	154,029	29,780	157,345	27,562
2020	72.2	375,759	161,806	26,413	159,355	27,974
2021	71.6	360,685	169,896	17,690	145,537	27,562
2022	70.3	362,127	169,705	18,099	146,715	27,608
2023	69.8	355,094	173,423	15,833	138,530	27,308
2024	70.3	351,051	177,241	14,015	132,768	27,027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www.bokjiro.go.kr 에서 2025.6.23. 인출)

그림 5-18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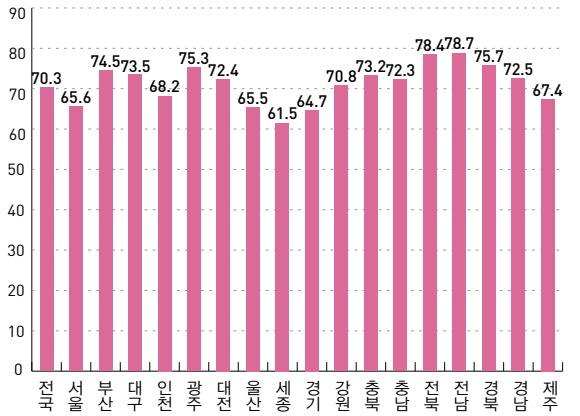
(단위: 명)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www.bokjiro.go.kr 에서 2025.6.23. 인출)

그림 5-19 시도별 장애인연금 수급률 (2024)

(단위: %)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www.bokjiro.go.kr 에서 2025.6.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2010	2024	1년

13-1
연 관

장애수당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ility allowance recipients

지표 정의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일반 재가 및 보장시설)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은 3급(중복제외)과 4급~6급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측정 산식

- 장애수당 수급자 수

표 5-34 유형별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201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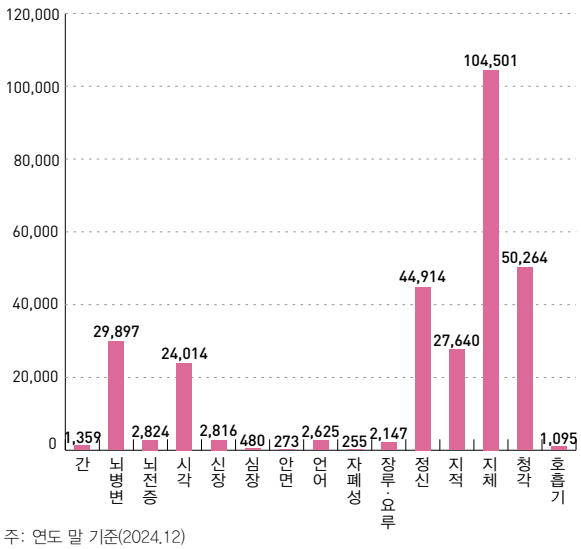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총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시설)	차상위
2013	320,029	204,710	11,989	103,330
2014	320,318	207,819	11,766	100,733
2015	327,881	219,845	12,130	95,906
2016	336,224	223,744	12,528	99,952
2017	343,662	226,342	12,579	104,741
2018	365,706	234,141	13,112	118,453
2019	365,804	234,439	12,988	118,377
2020	378,946	241,211	13,022	124,713
2021	389,210	266,655	13,362	109,193
2022	396,633	277,458	13,875	105,300
2023	413,627	290,491	14,848	108,288
2024	421,042	295,332	16,271	109,439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www.bokjiro.go.kr 에서 2025.6.23. 인출)

그림 5-20 장애유형별 장애수당 수급자 수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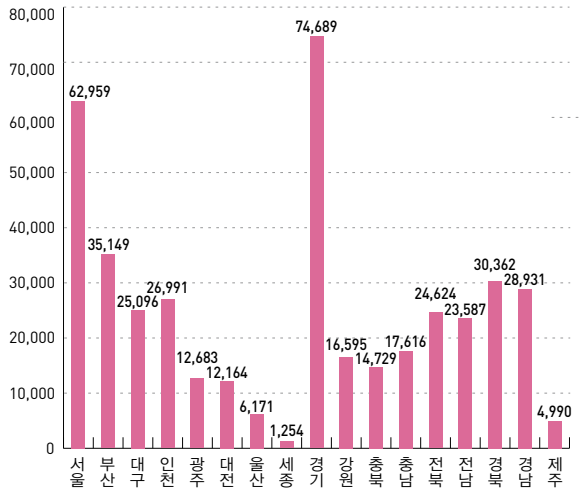
(단위: 명)



주: 연도 말 기준(2024.12)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www.bokjiro.go.kr 에서 2025.6.23. 인출)

그림 5-21 시도별 장애수당 수급자 수 (2024)

(단위: 명)



주: 연도 말 기준(2024.12)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www.bokjiro.go.kr 에서 2025.6.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지급 현황	2010	2024	1년

13-2
연 관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led children allowance recipients

지표 정의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아동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측정 산식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표 5-35 유형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201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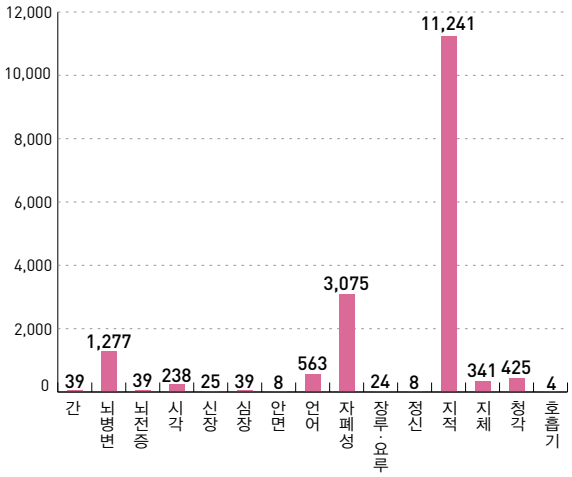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총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차상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시설)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2013	21,777	11,172	6,782	4,390	7,127	6,235	4,677	3,478	2,598	880
2014	21,121	10,818	6,511	4,307	6,388	4,518	2,230	3,915	2,916	999
2015	20,464	10,993	6,466	4,527	5,681	3,675	2,006	3,790	2,742	1,048
2016	19,934	10,652	6,197	4,455	5,771	3,668	2,103	3,511	2,500	1,011
2017	19,323	10,203	5,844	4,359	5,860	3,636	2,224	3,260	2,233	1,027
2018	18,568	9,758	5,483	4,275	5,727	3,527	2,200	3,083	2,040	1,043
2019	17,990	9,454	5,159	4,295	5,725	3,374	2,351	2,811	1,761	1,050
2020	16,565	8,262	3,900	4,362	5,926	3,141	2,785	2,377	1,303	1,074
2021	16,585	8,245	3,744	4,501	5,979	3,052	2,927	2,361	1,259	1,102
2022	16,759	8,396	3,728	4,668	6,126	3,066	3,060	2,237	1,172	1,065
2023	18,316	8,863	3,886	4,977	6,296	3,157	3,139	3,157	1,106	1,068
2024	17,346	9,207	4,006	5,201	6,082	3,046	3,036	2,057	1,017	1,040

주: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 장애수당 지급, 2010년부터 장애아동수당 지급,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구분별 연령구간별 수급자 수 (http://www.kosis.kr 에서 2025.6.23. 인출)

그림 5-22 장애유형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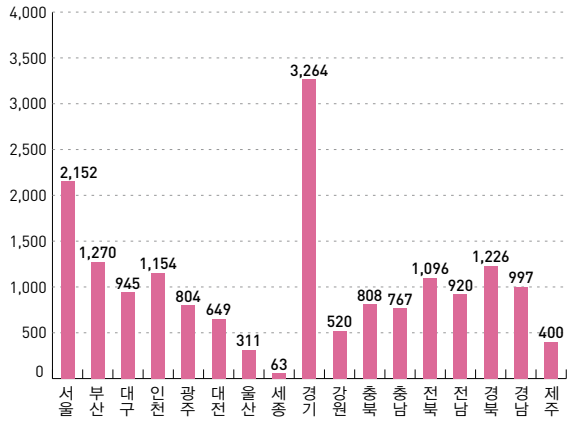
(단위: 명)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2024.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장애아동수당 장애유형별 성별 수급자 수.
(http://www.bokjiro.go.kr 에서 2025.6.23. 인출)

그림 5-23 시도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2024)

(단위: 명)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2024.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장애아동수당 시도별 수급자 수.
(http://www.bokjiro.go.kr 에서 2025.6.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지급 현황	2010	2024	1년

14
대 표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led persons in near poverty group

지표 정의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장애수당(만 18세 이상의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등록장애인)과 장애아동수당(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지급)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지원 금액: 차상위 장애수당은 월 6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아동수당은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차상위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월 17만 원, 차상위 경증장애아동은 월 11만 원 지급

(2023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표 5-36 연도별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201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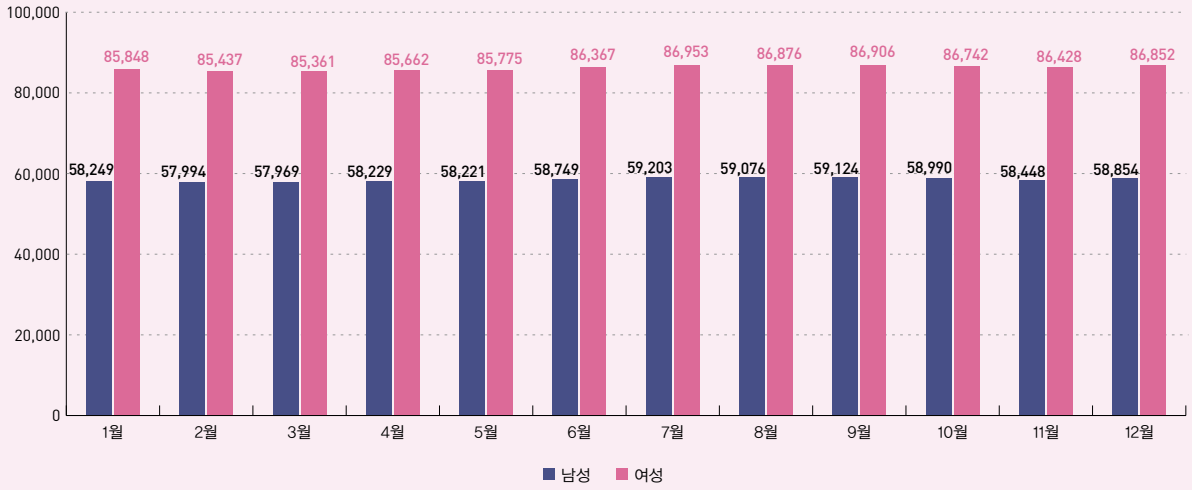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166,711	171,676	151,498	144,583	145,706

주: 각 연도 12월 기준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및한부모가족수급자현황, 2023.

그림 5-24 월별 · 성별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2023)

(단위: 명)



주: 각 연도 12월 기준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및한부모가족수급자현황, 2023.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생산연도	최근 생산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3	월

표 5-37 시도별 · 월별 · 성별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2023)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44,097	143,431	143,330	143,891	143,996	145,116	146,156	145,952	146,030	145,732	144,876	145,706
서울	19,658	19,597	19,562	19,586	19,593	19,740	19,948	19,926	19,951	19,941	19,827	19,978
부산	9,766	9,711	9,714	9,776	9,734	9,811	9,880	9,855	9,856	9,829	9,759	9,954
대구	6,934	6,927	6,932	6,985	7,059	7,131	7,366	7,317	7,298	7,275	7,280	7,305
인천	8,075	8,022	8,031	8,079	8,053	8,137	8,200	8,199	8,208	8,199	8,162	8,244
광주	4,396	4,376	4,391	4,382	4,375	4,401	4,439	4,409	4,404	4,388	4,329	4,368
대전	3,844	3,810	3,779	3,772	3,740	3,742	3,775	3,757	3,765	3,777	3,736	3,769
울산	2,613	2,604	2,589	2,600	2,598	2,622	2,640	2,602	2,613	2,595	2,606	2,636
세종	525	524	529	525	522	539	541	534	537	537	525	533
경기	27,505	27,381	27,361	27,563	27,704	27,944	28,165	28,219	28,318	28,288	28,245	28,496
강원	6,403	6,367	6,368	6,408	6,386	6,424	6,451	6,464	6,460	6,452	6,379	6,393
충북	5,383	5,345	5,330	5,349	5,373	5,358	5,387	5,350	5,345	5,301	5,235	5,260
충남	6,273	6,236	6,216	6,194	6,191	6,225	6,293	6,277	6,272	6,250	6,213	6,243
전북	9,193	9,164	9,155	9,200	9,154	9,257	9,324	9,303	9,263	9,230	9,184	9,279
전남	10,141	10,109	10,147	10,226	10,254	10,318	10,342	10,347	10,336	10,278	10,194	10,075
경북	10,973	10,934	10,910	10,936	10,952	11,084	10,970	10,992	10,989	10,958	10,828	10,963
경남	10,552	10,482	10,475	10,481	10,507	10,579	10,624	10,588	10,599	10,614	10,570	10,383
제주	1,863	1,842	1,841	1,829	1,801	1,804	1,811	1,813	1,816	1,820	1,804	1,827

주: 각 연도 12월 기준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및한부모가족수급자현황, 2023.

15
대 표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disability as % of GDP

지표 정의

OECD SOCX 기준 장애인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근로무능력 관련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로 발표되고 있으며,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되어 있다.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지출되는 장애 관련 복지예산의 규모를 의미한다.

- 현금급여(Cash benefits)는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s), 산재보험(Pensions on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상병급여(Paid sick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로 구성되고, 현물급여(Benefits in kind)는 돌봄 및 가사보조서비스(Residential care/Home-help service),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s), 기타 현물급여(Other benefits in kind)로 구성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장애인복지 지출 (현금 + 현물급여)}}{\text{국가별 GDP}}$

유의사항 현금급여(Cash benefits) 중 상병급여(Paid sick leave)는 2010년부터 산재급여(Pensions on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로부터 분리되어 산출되고 있지만 본 글에서는 포함된 수치를 이용하였다.

표 5-38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규모 (2000~2020)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0.32	0.36	0.38	0.43	0.49	0.52	0.55	0.55	0.58	0.59	0.50	0.52	0.55	0.54	0.53	0.56	0.56	0.60	0.61	0.71	0.82
현금급여	0.23	0.25	0.26	0.30	0.32	0.34	0.34	0.36	0.36	0.35	0.33	0.33	0.34	0.34	0.34	0.34	0.33	0.33	0.34	0.39	0.41
현물급여	0.09	0.10	0.12	0.13	0.17	0.18	0.21	0.19	0.22	0.24	0.17	0.19	0.21	0.20	0.19	0.21	0.23	0.27	0.27	0.32	0.41

주: 2002~2019는 확정치, 2020은 예측치

자료: OECD SOCX Database,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24.6.0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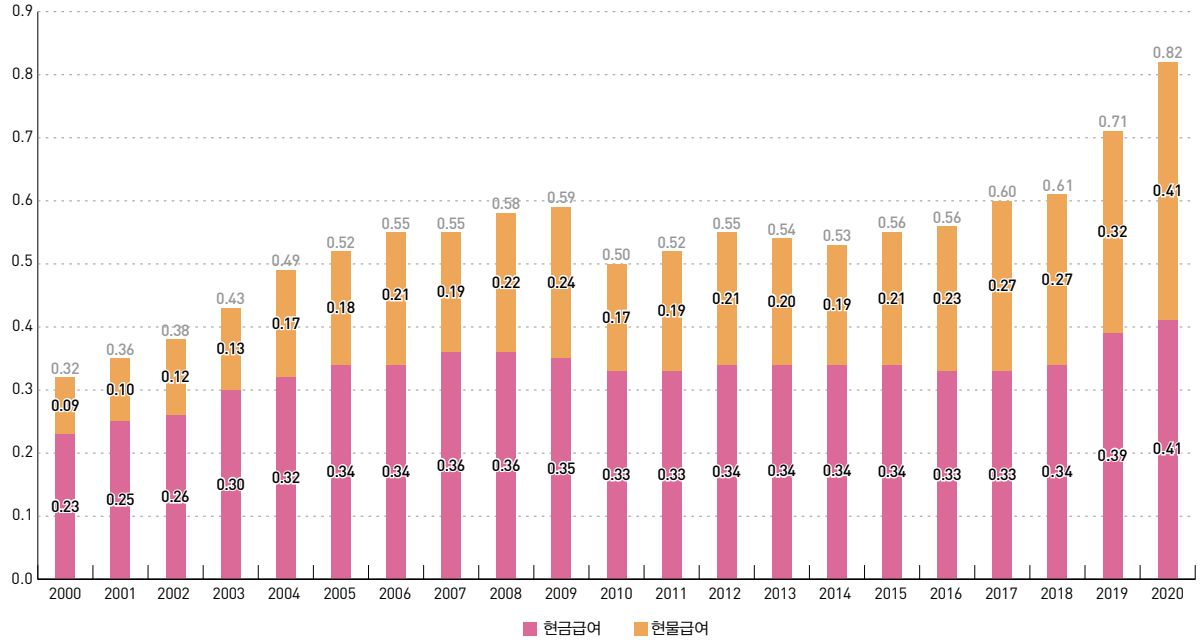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발표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한국의사회복지지출	1990	2020 [확정치 '08~'19]	2년

참고문헌 • OECD SOCX Database (2023.04.13.)

그림 5-25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중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비중 (200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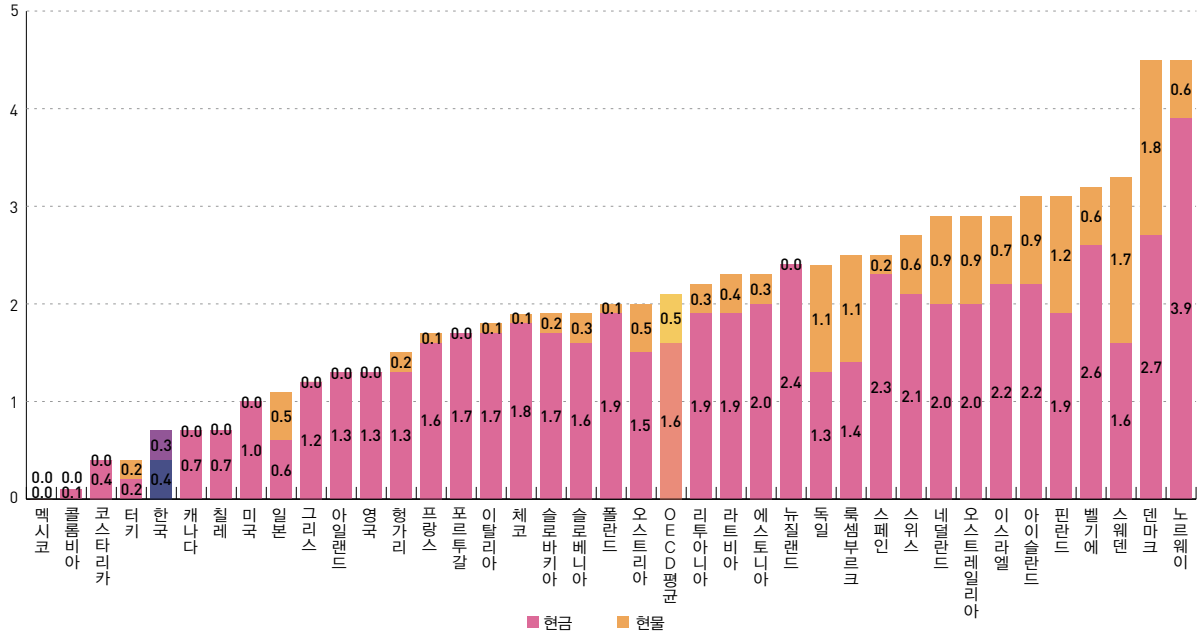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OCX Database,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24.6.01. 인출)

그림 5-26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2019)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OCX Database,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24.6.01. 인출)

6

근로

01 경제활동참가율
02 고용률
03 실업률
04 실업급여 수급자 수
05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06 총 근로시간
0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08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09 사회보험 가입률
10 산업재해율
11 저임금근로자 비율
12 시간급 최저임금
13 시간당 임금총액
14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
15 자활사업 대상자 수
16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17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고용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안정성	실업급여 수급자 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일자리의 질	총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사회보험 가입률	
	산업재해율	
근로빈곤	저임금근로자 비율	
	시간급 최저임금	최저임금 영향률
	시간당 임금총액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활	자활사업 대상자 수	자활사업 참여자 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01
대 표

경제활동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지표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만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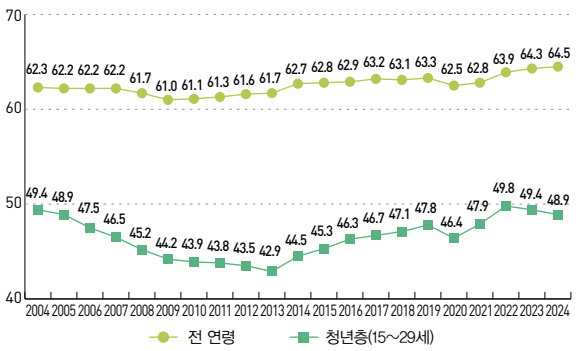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위해 활용 가능한 노동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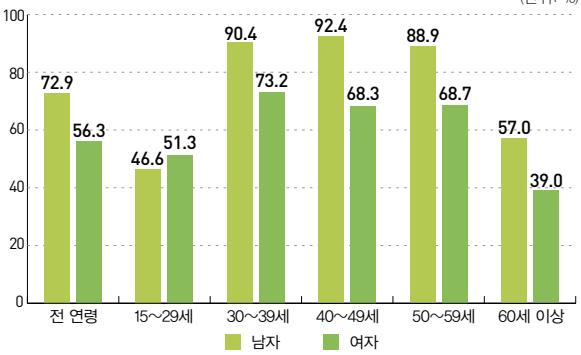
유의사항 OECD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연령 기준을 15~64세로 적용했음에 유의해야 함.

그림 6-1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200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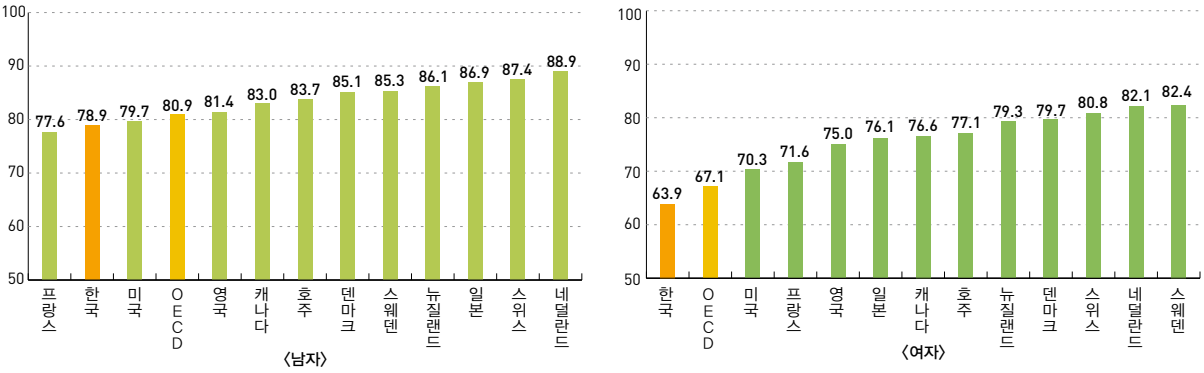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6. 인출)

그림 6-2 성별 · 연령계층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20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6. 인출)

그림 6-3 성별 OECD 주요 국가 경제활동참가율 (2024)



주: 15세~64세 기준임.

자료: OECD, Data Explorer.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1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24	1개월

02
대 표

고용률
Employment rate

지표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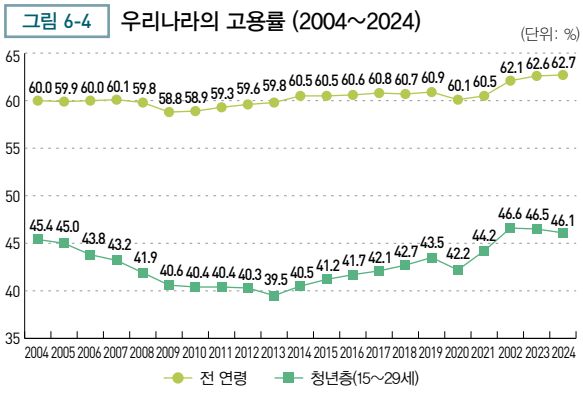
- 취업자는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및 일시휴직자"이며, 고용률은 조사 대상 기간에 인구 대비 노동을 공급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고용률은 노동력의 활용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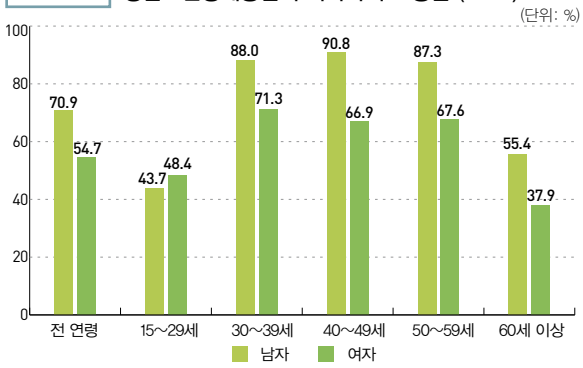
유의사항 OECD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연령 기준을 15~64세로 적용했음에 유의해야 함.

그림 6-4 우리나라의 고용률 (200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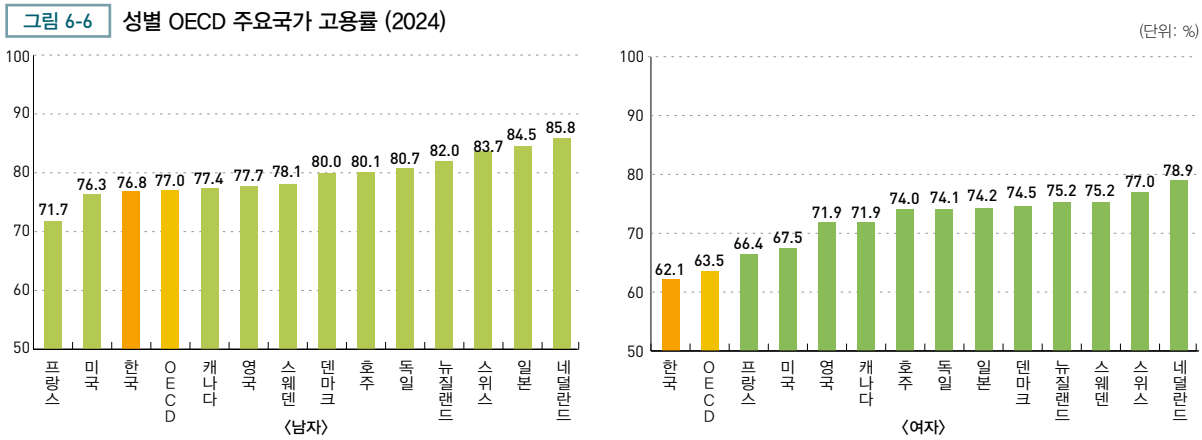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6. 인출)

그림 6-5 성별 · 연령계층별 우리나라의 고용률 (20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6. 인출)

그림 6-6 성별 OECD 주요국가 고용률 (2024)



주: 15세~64세 기준임.
자료: OECD, Data Explorer.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1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24	1개월

03
대 표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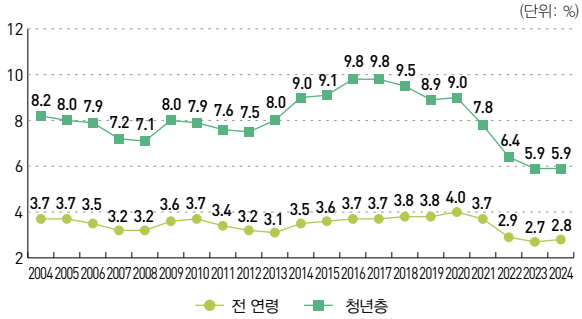
실업자는 조사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의미하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별도로 파악하는 "고용보조지표"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고용시장 상황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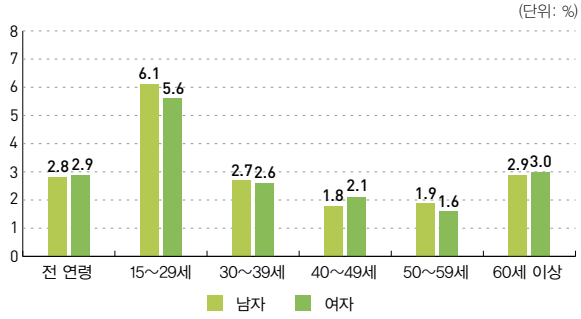
-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그림 6-7 우리나라의 실업률 (200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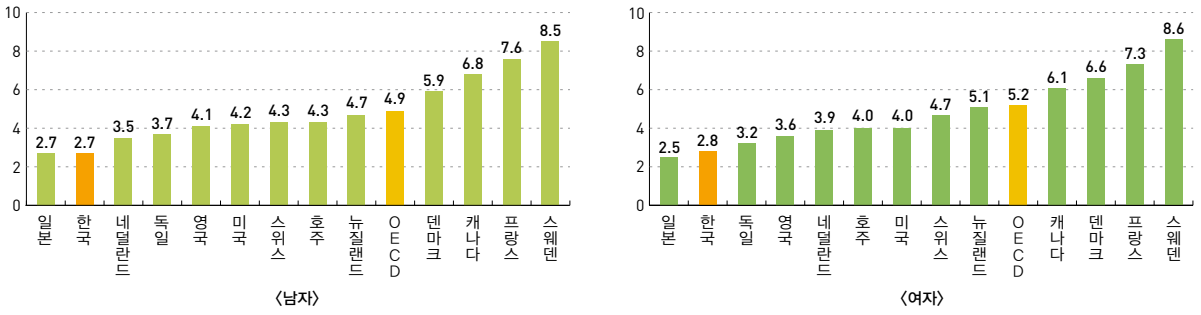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6. 인출)

그림 6-8 성별 · 연령계층별 우리나라의 실업률 (20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6. 인출)

그림 6-9 성별 OECD 주요국가 실업률 (2024)



주: 15세~64세 기준임.
자료: OECD, Data Explorer.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1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24	1개월

표 6-1 시도별 실업률 (2010~2024)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3.7	3.4	3.2	3.1	3.5	3.6	3.7	3.7	3.8	3.8	4.0	3.7	2.9	2.7	2.8
서울	4.7	4.5	4.2	3.9	4.4	4.2	4.2	4.5	4.8	4.4	4.6	4.8	3.4	2.7	3.0
부산	3.6	3.6	3.9	3.8	3.8	4.1	3.9	4.6	4.1	3.7	4.2	3.4	3.0	3.1	3.0
대구	4.0	3.7	3.3	3.3	3.8	3.5	4.1	4.0	4.4	3.7	3.9	3.7	2.9	3.1	3.4
인천	5.0	4.7	4.5	4.1	4.7	5.0	4.9	4.6	4.3	4.4	4.6	4.0	3.3	3.2	3.3
광주	3.5	3.1	2.7	2.8	2.8	2.9	3.1	2.9	3.8	3.7	3.9	3.6	2.9	2.5	3.0
대전	3.7	3.6	3.7	3.0	3.4	3.4	3.2	3.4	4.2	4.2	4.4	3.3	2.4	2.8	3.0
울산	3.5	2.7	2.6	2.1	2.7	2.9	3.8	3.5	4.6	4.2	4.2	3.6	3.2	3.4	3.7
세종	-	-	-	-	-	-	-	2.3	2.3	2.7	2.8	2.1	2.0	2.0	1.9
경기	4.0	3.4	3.3	3.0	3.3	3.9	3.9	3.9	3.8	3.8	4.0	3.7	2.7	2.6	2.6
강원	2.6	2.2	2.5	2.3	3.1	3.2	2.8	2.6	2.9	3.6	3.9	3.6	3.2	2.8	2.8
충북	2.2	2.4	2.0	2.0	3.0	2.6	2.6	2.2	2.4	3.1	3.2	2.5	2.5	2.3	2.2
충남	3.0	2.4	2.3	2.8	3.3	3.5	3.2	2.8	3.1	2.9	3.5	2.3	2.3	2.6	2.9
전북	2.2	2.3	2.0	2.0	2.5	1.7	2.1	2.5	2.7	2.7	2.5	2.2	2.4	2.5	2.5
전남	2.1	2.0	1.6	2.1	2.9	2.5	3.0	3.2	2.8	2.6	2.4	2.3	2.2	2.2	2.7
경북	2.8	2.6	2.5	3.1	2.9	3.0	3.2	2.8	4.1	3.9	4.0	3.2	2.5	2.6	2.5
경남	2.8	2.2	1.8	2.1	2.5	2.6	3.3	2.9	3.0	3.8	4.0	4.1	3.3	2.5	2.3
제주	1.8	1.7	1.5	1.8	2.0	1.9	2.2	1.9	2.0	2.1	2.5	3.1	2.1	1.9	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6. 인출)

04
대 표

실업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지표 정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대표적인 제도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로, 수급자 수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급여를 수급한 인원을 말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일용인 경우 90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해야만 수급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지급수준, 요건, 기간 등이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이전과 그 이후는 시계열 비교에 있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측정 산식

- 수급자 수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급여를 수급한 인원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 수

*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80% × 1일 근로시간(8시간),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표 6-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수급인원, 수급금액 (2000~2023)

(단위: 명, 십억 원)

구분	수급자격 인정자	전년 대비 증가율	수급인원	전년 대비 증가율	수급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2000	258,727	△20.4%	332,692	△31.4%	471	△49.7%
2001	346,671	34.0%	428,156	28.7%	845	79.5%
2002	297,109	△14.3%	416,041	△2.8%	839	△0.7%
2003	375,561	26.4%	502,211	20.7%	1,030	22.8%
2004	467,730	24.5%	707,432	40.9%	1,448	40.6%
2005	562,524	20.3%	812,768	14.9%	1,752	21.0%
2006	609,691	8.4%	943,542	16.1%	2,074	18.4%
2007	685,024	12.4%	1,009,180	7.0%	2,434	17.4%
2008	835,140	21.9%	1,162,534	15.2%	2,865	17.7%
2009	1,068,389	27.9%	1,301,132	11.9%	4,116	43.7%
2010	973,026	△8.9%	1,238,665	△4.8%	3,687	△10.4%
2011	902,362	△7.3%	1,202,066	△3.0%	3,561	△3.4%
2012	898,054	△0.5%	1,187,247	△1.2%	3,677	3.2%
2013	919,118	2.3%	1,210,263	1.9%	3,884	5.6%
2014	971,068	5.7%	1,252,677	3.5%	4,156	7.0%
2015	950,754	△2.1%	1,272,470	1.6%	4,547	9.4%
2016	953,901	0.3%	1,278,833	0.5%	4,895	7.7%
2017	940,183	△1.4%	1,295,789	1.3%	5,243	7.1%
2018	1,062,933	13.1%	1,417,296	9.4%	6,688	27.6%
2019	1,144,090	7.6%	1,546,993	9.2%	8,386	25.4%
2020	1,365,547	19.4%	1,804,372	16.6%	12,184	45.3%
2021	1,283,366	△6.0%	1,903,190	5.5%	12,515	2.7%
2022	1,198,612	△6.6%	1,761,467	△7.4%	11,391	△9.0%
2023	1,249,317	4.2%	1,806,256	2.5%	11,792	3.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 연도. (https://www.keis.or.kr/에서 2025.6.16. 인출)

표 6-3 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수 (2023)

(단위: 명)

구분	계	남	여
계	1,249,317	590,291	659,026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35,439	8,016	27,423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16,313	8,358	7,955
폐업, 도산	44,837	14,126	30,711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478,596	225,930	252,66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35,684	17,937	17,747
정년	49,080	28,690	20,390
계약 만료, 공사 종료	469,383	194,921	274,462
고용보험 비적용, 기타, 분류 불능	119,985	92,313	27,672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 연도. (https://www.keis.or.kr/에서 2025.6.1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997	2023	1년

05
대 표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Public expenditure on labor market policies

지표 정의

노동시장정책(Labour Market Policies; LMP)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 재진입, 이탈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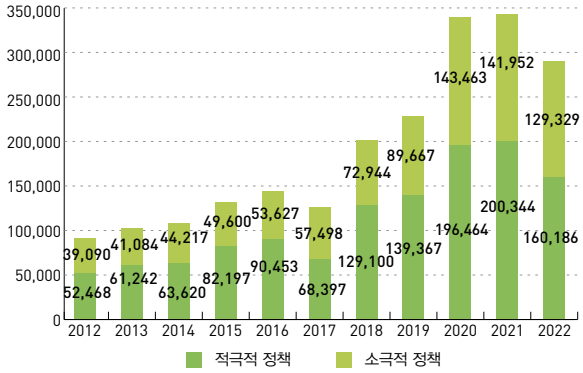
• OECD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적극적 정책과 소극적 정책으로 나누고 있다.

측정 산식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1) 직접일자리 창출 + 2) 직업능력개발 + 3) 고용서비스 + 4) 창업지원 + 5) 고용장려금**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 실업자에 대한 소득 유지 및 지원사업**

그림 6-10 노동시장정책 투입비용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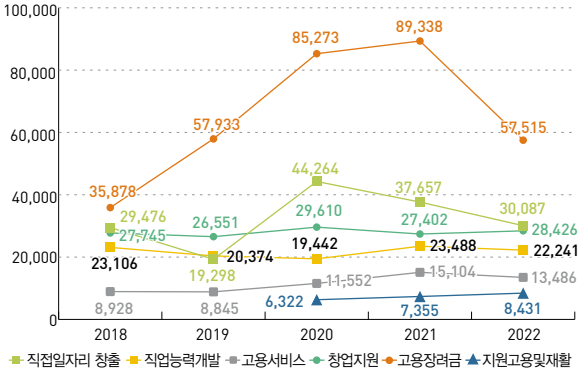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주: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기준과 OECD Labor market programs의 기준이 달라, 두 값 간에는 차이가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6-1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투입비용 (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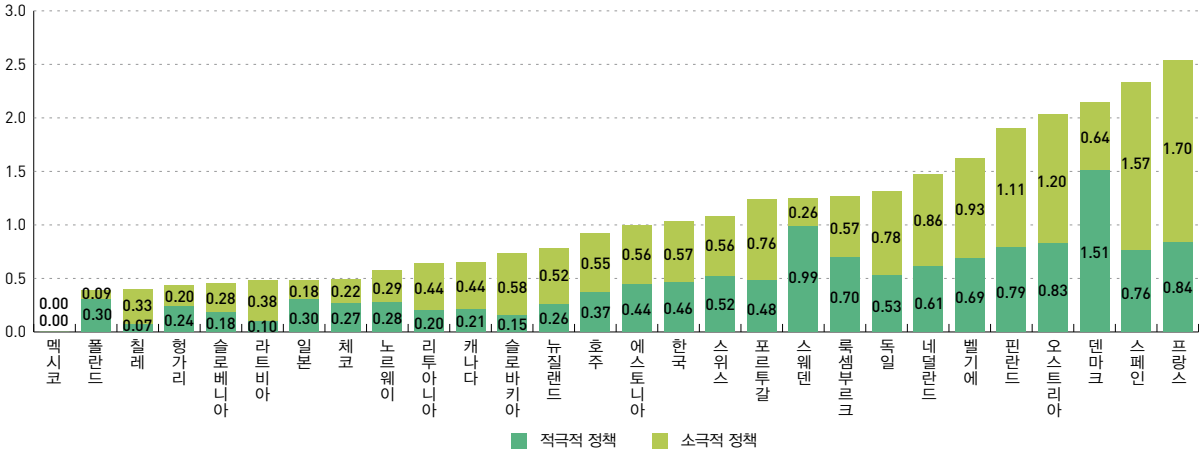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주: 1)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기준과 OECD Labor market programs의 기준이 달라, 두 값 간에는 차이가 있음.
2) 2020년부터 지원고용및재활 추가
자료: 고용노동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6-12 OECD 노동시장 지출 수준 (GDP 대비 비중) (2022)

(단위: %)



주: 1)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기준과 OECD Labor market programs의 기준이 달라, 두 값 간에는 차이가 있음.
2) 2022년 값이 없는 경우 제외
자료: OECD, Data Explorer,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1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내부자료)	2010	2022	1년

06
대 표

총 근로시간
Total hours worked

지표 정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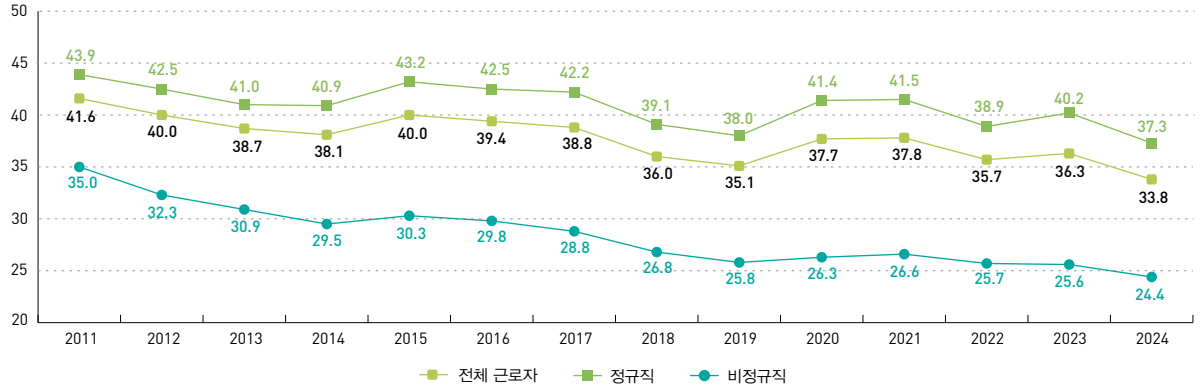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관행이 근로자의 삶과 일자리 만들기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근로시간은 중요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그림 6-13 전체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1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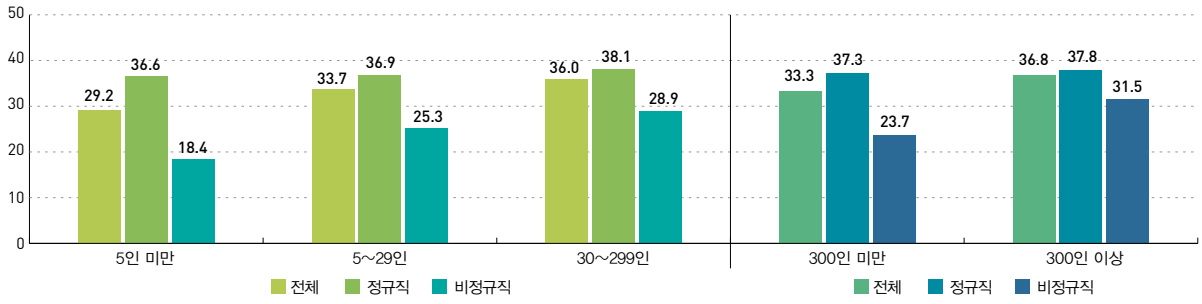
(단위: 시간)



주: 1) 주당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2) 특수형태근로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6-14 사업체 규모별 · 근로형태별 주당 근로시간 (2024)

(단위: 시간)



주: 1) 주당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2) 특수형태근로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4.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	2024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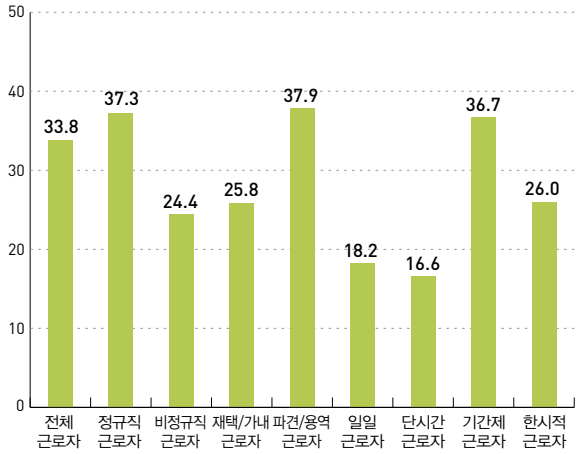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기준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의 일반근로자 8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유해위험작업근로자 6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의 연소근로자 7시간) 이내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주휴일, 취업규칙상의 휴일은 제외)에 정규적인 업무개시와 종료시각 사이의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말한다. 이때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 초과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 2008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통합하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그림 6-15 근로형태별 주당 근로시간 (2024)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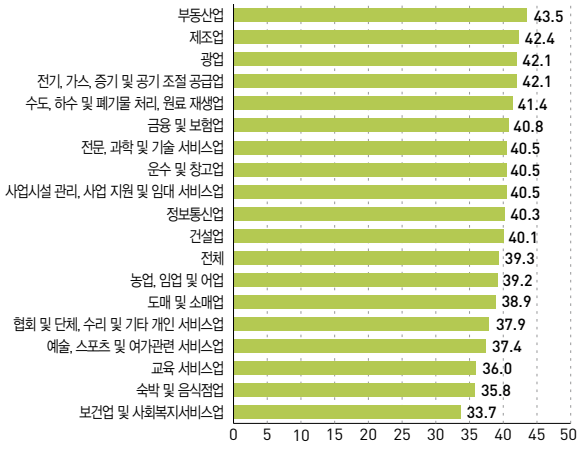


주: 1) 주당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2) 특수형태근로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4.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6-16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2024)

(단위: 시간)



주: 주당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4.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6-17 OECD 주요 국가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2024)

(단위: 시간)



주: 2024년 값이 없는 국가 제외

자료: OECD, Data Explorer.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8. 인출)

07
대 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Employment by status of workers

지표 정의

종사상 지위란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 상태를 말하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한다.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와 한 사람 이상의 유급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고용주)로 구분되며, 무급가족종사자는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한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고용계약을 미설정한 경우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자이며,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다.

• 종사상 지위는 고용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측정 산식

• **종사상 지위별 정의에 따른 취업자 수**

표 6-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와 비율 (2009~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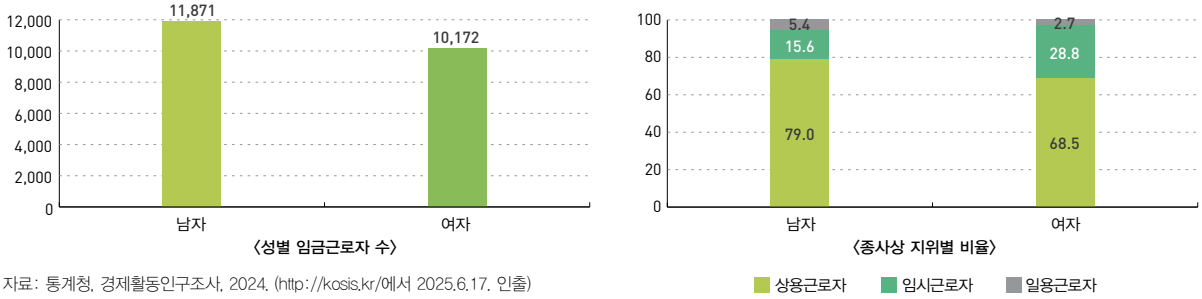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3,688 (100.0)	24,033 (100.0)	24,527 (100.0)	24,955 (100.0)	25,299 (100.0)	25,897 (100.0)	26,178 (100.0)	26,409 (100.0)	26,725 (100.0)	26,822 (100.0)	27,123 (100.0)	26,904 (100.0)	27,273 (100.0)	28,089 (100.0)	28,416 (100.0)	28,576 (100.6)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9,479 (40.0)	10,178 (42.4)	10,786 (44.0)	11,250 (45.1)	11,847 (46.8)	12,319 (47.6)	12,716 (48.6)	13,062 (49.5)	13,428 (50.2)	13,772 (51.3)	14,216 (52.4)	14,521 (54.0)	14,887 (54.6)	15,692 (55.9)	16,170 (56.9)	16,353 (57.5)
	임시근로자	5,134 (21.7)	5,107 (21.2)	5,045 (20.6)	5,032 (20.2)	4,919 (19.4)	5,069 (19.6)	5,114 (19.5)	5,124 (19.4)	4,992 (18.7)	4,851 (18.1)	4,795 (17.7)	4,483 (16.7)	4,634 (17.0)	4,678 (16.7)	4,617 (16.2)	4,770 (16.8)
	일용근로자	1,973 (8.3)	1,826 (7.6)	1,765 (7.2)	1,639 (6.6)	1,600 (6.3)	1,570 (6.1)	1,572 (6.0)	1,483 (5.6)	1,514 (5.7)	1,460 (5.4)	1,429 (5.3)	1,328 (4.9)	1,231 (4.5)	1,132 (4.0)	1,042 (3.7)	920 (3.2)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5,749 (24.3)	5,643 (23.5)	5,657 (23.1)	5,768 (23.1)	5,703 (22.5)	5,720 (22.1)	5,622 (21.5)	5,614 (21.3)	5,682 (21.3)	5,638 (21.0)	5,606 (20.7)	5,531 (20.6)	5,513 (20.2)	5,632 (20.1)	5,689 (20.0)	5,657 (19.9)
	무급가족종사자	1,352 (5.7)	1,279 (5.3)	1,273 (5.2)	1,266 (5.1)	1,232 (4.9)	1,219 (4.7)	1,153 (4.4)	1,126 (4.3)	1,110 (4.2)	1,101 (4.1)	1,077 (4.0)	1,042 (3.9)	1,007 (3.7)	955 (3.4)	899 (3.2)	876 (3.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6-18 성별 임금근로자 수와 종사상 지위별 비율 (2024)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24	1개월

08
대 표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Employment by employment type

지표 정의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포괄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정의된다. 한시적 근로자는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눠진다.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비전형 근로자는 근로제공방식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으로 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 내(재택, 가내), 일일(호출) 근로자로 분류된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형태는 일자리의 안정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측정 산식

• **근로형태별 정의에 따른 취업자 수**

유의사항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통상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한 「temporary workers」를 파악 · 수록하고 있음.

• 통계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 단기기대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일근로자」 제공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반복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는 제외

표 6-5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와 임금근로자 대비 비율 (2009~2024)

(단위: 천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근로자 수	임금근로자	16,609	17,189	17,715	17,941	18,403	18,992	19,474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20,992	21,724	21,954	22,143
	정규직	10,826	11,475	11,662	11,987	12,426	12,869	13,166	13,262	13,428	13,431	13,078	13,020	12,927	13,568	13,832	13,685
	비정규직	5,783	5,715	6,053	5,954	5,977	6,123	6,308	6,481	6,578	6,614	7,481	7,426	8,066	8,156	8,122	8,459
	– 한시적 근로자	3,528	3,298	3,474	3,427	3,446	3,529	3,655	3,671	3,725	3,823	4,785	4,608	5,171	5,348	5,259	5,628
	* 기간제	2,828	2,500	2,687	2,729	2,770	2,763	2,872	2,939	2,930	3,005	3,799	3,933	4,537	4,689	4,809	4,999
	– 시간제 근로	1,428	1,623	1,708	1,828	1,883	2,035	2,236	2,488	2,663	2,709	3,156	3,252	3,512	3,687	3,873	4,256
	– 비전형 근로	2,288	2,300	2,452	2,304	2,234	2,137	2,229	2,245	2,112	2,071	2,045	2,073	2,278	2,131	1,957	1,903
비율	임금근로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5.1	66.6	65.8	66.7	67.4	67.8	67.6	67.2	67.1	67.0	63.6	63.7	61.6	62.5	63.0	61.8
	비정규직	34.9	33.3	34.2	33.3	32.6	32.2	32.4	32.8	32.9	33.0	36.4	36.3	38.4	37.5	37.0	38.2
	– 한시적 근로자	21.3	19.2	19.7	19.2	18.8	18.7	18.8	18.6	18.6	19.1	23.3	22.5	24.6	24.6	24.0	25.4
	* 기간제	17.0	14.5	15.2	15.2	15.1	14.5	14.7	14.9	14.6	15.0	18.5	19.2	21.6	21.6	21.9	22.6
	– 시간제 근로	8.7	9.5	9.7	10.3	10.3	10.8	11.6	11.6	13.3	13.5	15.3	15.9	16.7	17.0	17.6	19.2
	– 비전형 근로	13.9	13.4	13.9	12.9	12.1	11.2	11.4	11.1	10.6	10.3	9.9	10.1	10.8	9.8	8.9	8.6

주: 1) 매년 8월 기준임.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비중은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한시적, 시간제, 비전형)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 합계와 불일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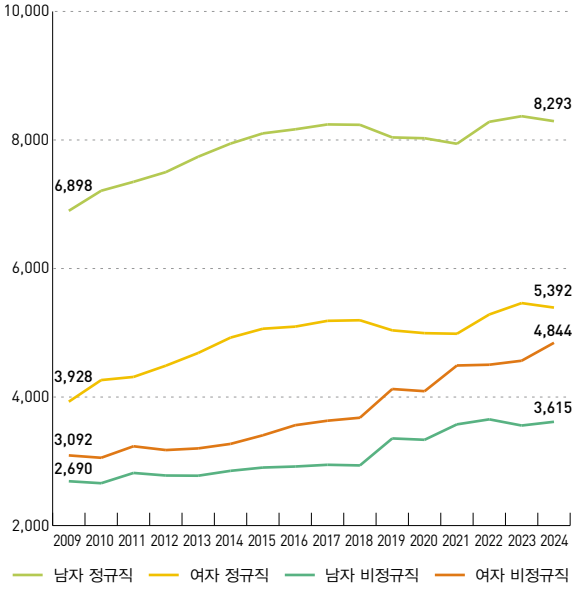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3	2024	1년

그림 6-19 성별 · 근로형태별 취업자의 수 (2009~2024)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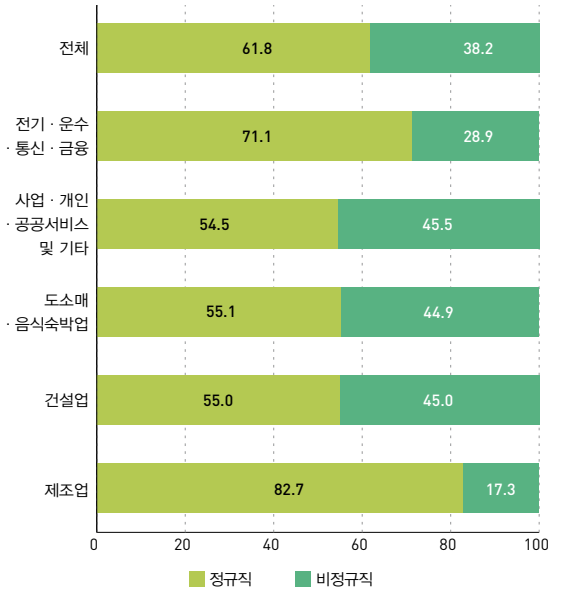


주: 매년 8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6-20 산업별 · 근로형태별 취업자의 비율 (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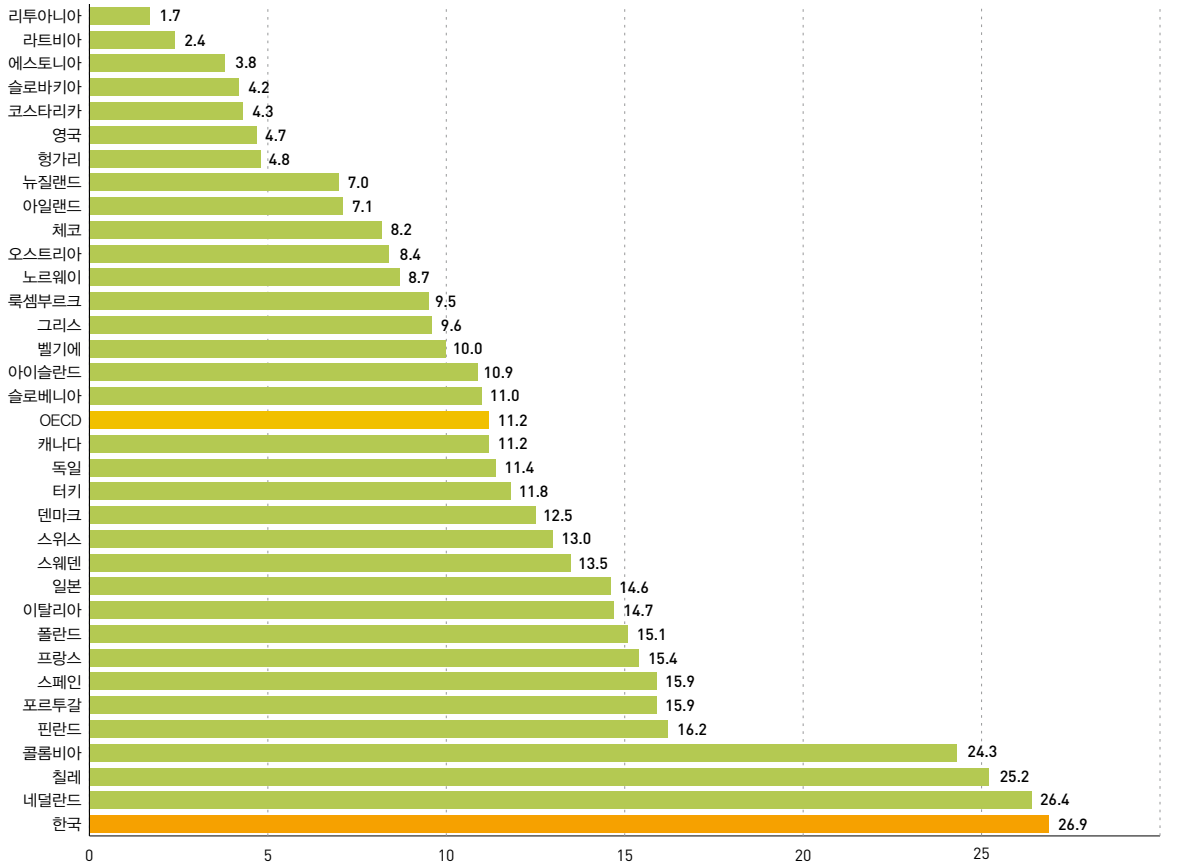


주: 매년 8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4.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6-21 OECD 주요 국가 임시직의 비율 (2024)

(단위: %)



자료: OECD, Data Exploerer, 2024.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17. 인출)

09
대 표

사회보험 가입률

Social insurance coverage

지표 정의

각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다. 사회보험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노령에 대비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건강보험은 질병발생 시, 고용보험은 실업,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발생 시를 대비해 각각 1977년, 1995년, 1964년 시행되었다.

-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은퇴, 실업,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므로 사회보험 가입률은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이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는지 보여준다.

측정 산식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frac{\text{직장가입자 수}}{\text{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 단, 고용보험의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frac{\text{각 보험가입 근로자 수}}{\text{각 보험가입 대상 근로자 수}} \times 100$$

표 6-6 사업체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2024)

(단위: %)

고용형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체	91.8	92.4	92.6	98.1
5인 미만	73.6	78.7	79.0	91.0
5~29인	95.5	93.2	93.6	99.7
30~299인	98.5	97.6	97.1	100.0
300인 미만	91.2	91.1	91.4	97.7
300인 이상	94.6	99.7	98.8	10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4.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표 6-7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증감률[1] (2024)

(단위: %, %p)

구분	국민연금[2), 3)]		건강보험[2)]		고용보험[4)]	
	국민연금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건강보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고용보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계	68.8	△0.8	78.6	△0.3	77.0	0.0
정규직	88.1	0.1	95.0	0.7	92.3	0.4
비정규직	37.5	△0.9	52.2	△0.4	54.7	0.5
한시적	44.6	△2.6	62.1	△2.7	58.5	△1.2
기간제	46.7	△2.3	65.0	△2.2	60.0	△1.1
비기간제	27.8	0.3	38.9	△0.5	46.6	2.0
시간제	21.0	0.4	33.1	0.7	34.7	1.1
비전형	18.3	△1.4	35.9	0.7	52.8	2.0

주: 1)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가입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 내 거주하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보다 낮음.
2)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3)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4)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응답 대상에서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4.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4	2024	1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	2024	1년

10
대 표

산업재해율

Industrial accident rate

지표 정의

재해자 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재해자를 말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재해자 수}}{\text{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times 100$

표 6-8 산업별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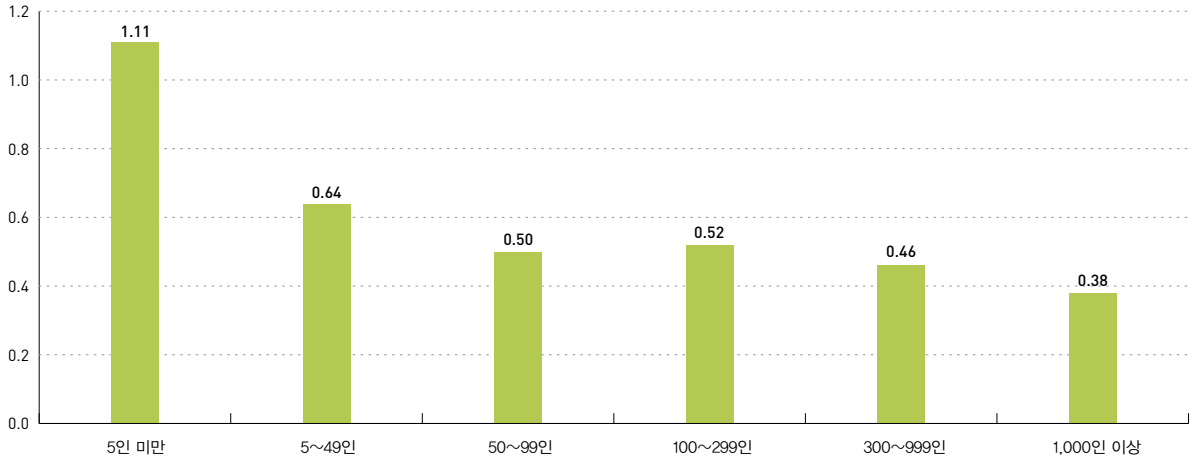
(단위: 명, %, ‰)

구분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사망자 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전체	20,637,107	136,796	2,016	0.66	0.98
광업	9,713	2,988	427	30.76	439.62
제조업	4,006,893	32,967	476	0.82	1.19
건설업	79,956	134	3	0.17	0.38
전기 · 가스 · 수도업	2,233,184	32,353	486	1.45	2.18
운수창고 · 통신업	1,120,705	14,937	189	1.33	1.69
기타 산업	13,186,656	53,417	435	2.62	9.98

주: 1) 산재사망만인율은 (산재 사망자 수/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10,000, 재해율은 (재해자 수/근로자 수)×100
2)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및 보험업은 기타산업에 포함함.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2023.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6-22 사업체 규모별 재해율 (2023)

(단위: %)



주: 재해율은 (재해자 수/근로자 수)×100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2023.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1977	2023	1년

11
대 표

저임금근로자 비율

Low pay incidence

지표 정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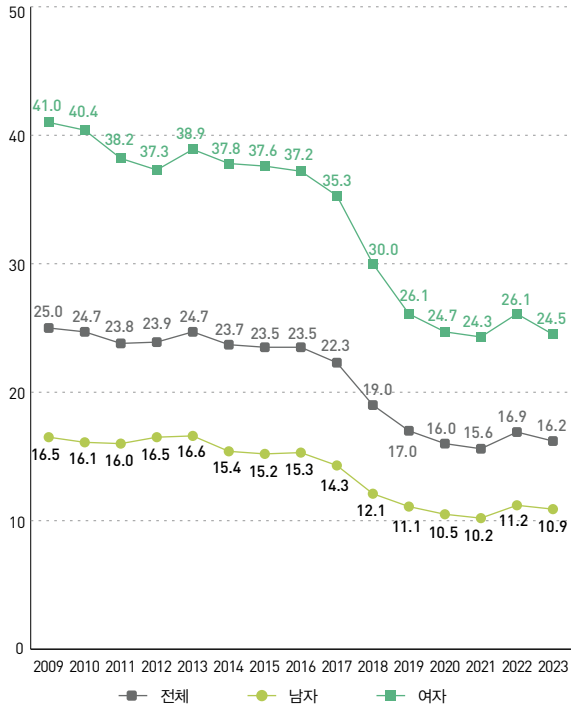
•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임금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 아니라 근로빈곤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뜻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임금이 임금 중위값의 2/3보다 적은 임금근로자의 수}}{\text{전체 임금근로자의 수}} \times 100$$

그림 6-23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200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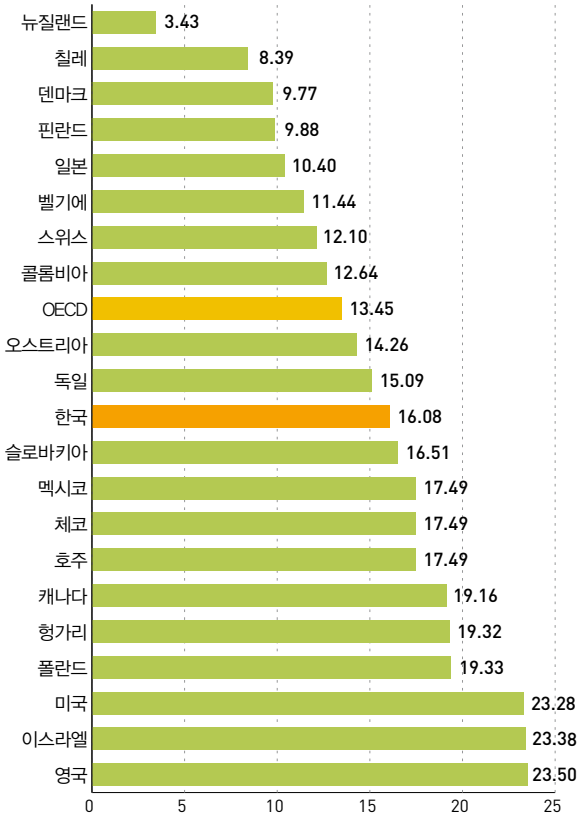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가지표체계, 저임금근로자비율, 각 연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65 에서 2025.6.17. 인출)

그림 6-24 OECD 주요 국가 저임금근로자 비율 (2023)

(단위: %)



주: 1) 2022년: 이스라엘, 스위스
2) 2024년: 한국

자료: OECD, Data Explorer. (data-explorer.oecd.org 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Employment Outlook	-	2023	1년

12
대 표

시간급 최저임금

Hourly minimum w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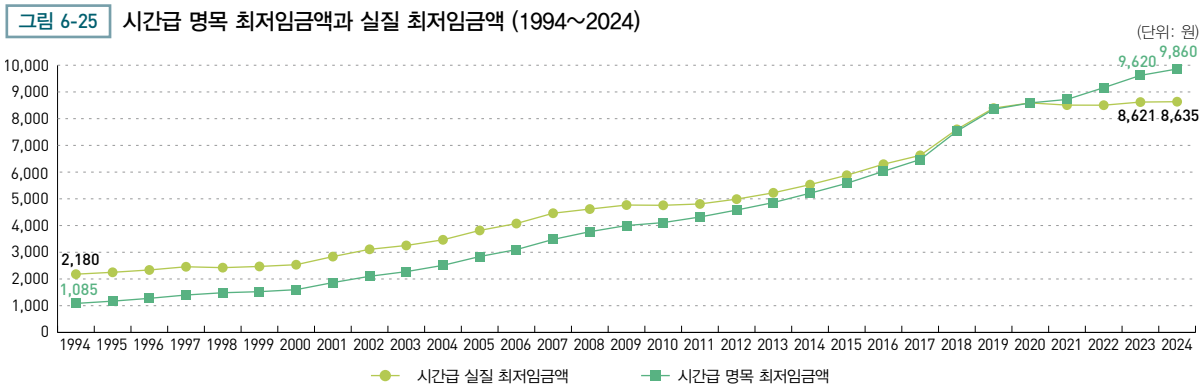
지표 정의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보면 시행 초년도인 1988년도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1990년 전 산업으로 확대되었고 1999년에는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1년 이후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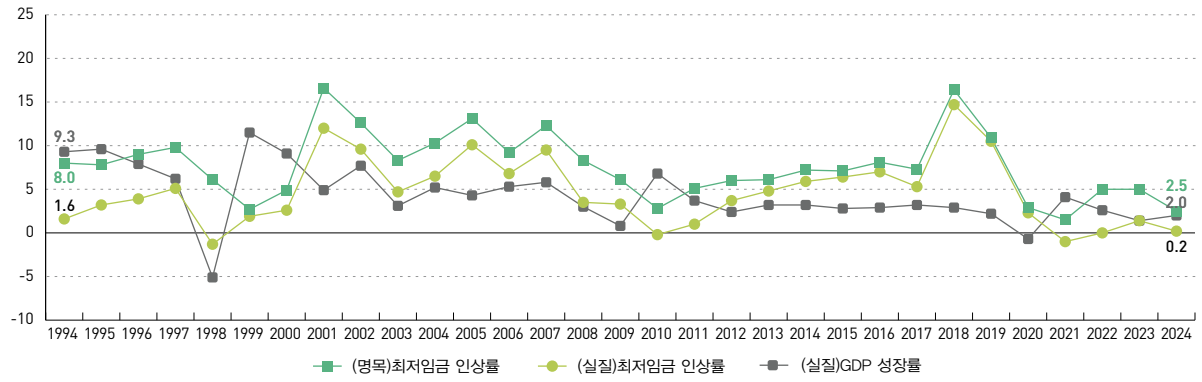
-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산출

그림 6-25 시간급 명목 최저임금액과 실질 최저임금액 (1994~2024)



주: 실질 최저임금액은 2020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실질화한 것으로 연구진에서 자체적으로 산출
자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각 연도. (minimumwage.go.kr/에서 2025.6.17. 인출)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6-26 실질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199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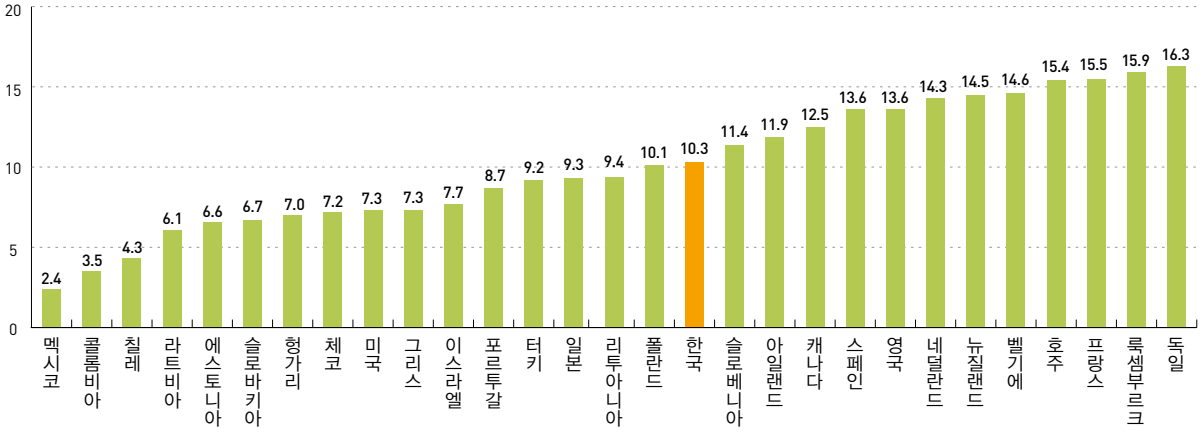
주: 1) 실질 최저인상률은 2020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실질화한 것으로 연구진에서 자체적으로 산출.
2)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100.
3) 실질 GDP는 2020년 기준임.
4) 2024년은 잠정치임.
자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각 연도. (minimumwage.go.kr/에서 2025.6.17. 인출)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실질GDP성장률: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s://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내부자료)	1989	2024	1년

그림 6-27 OECD 주요 국가 시간당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최저임금액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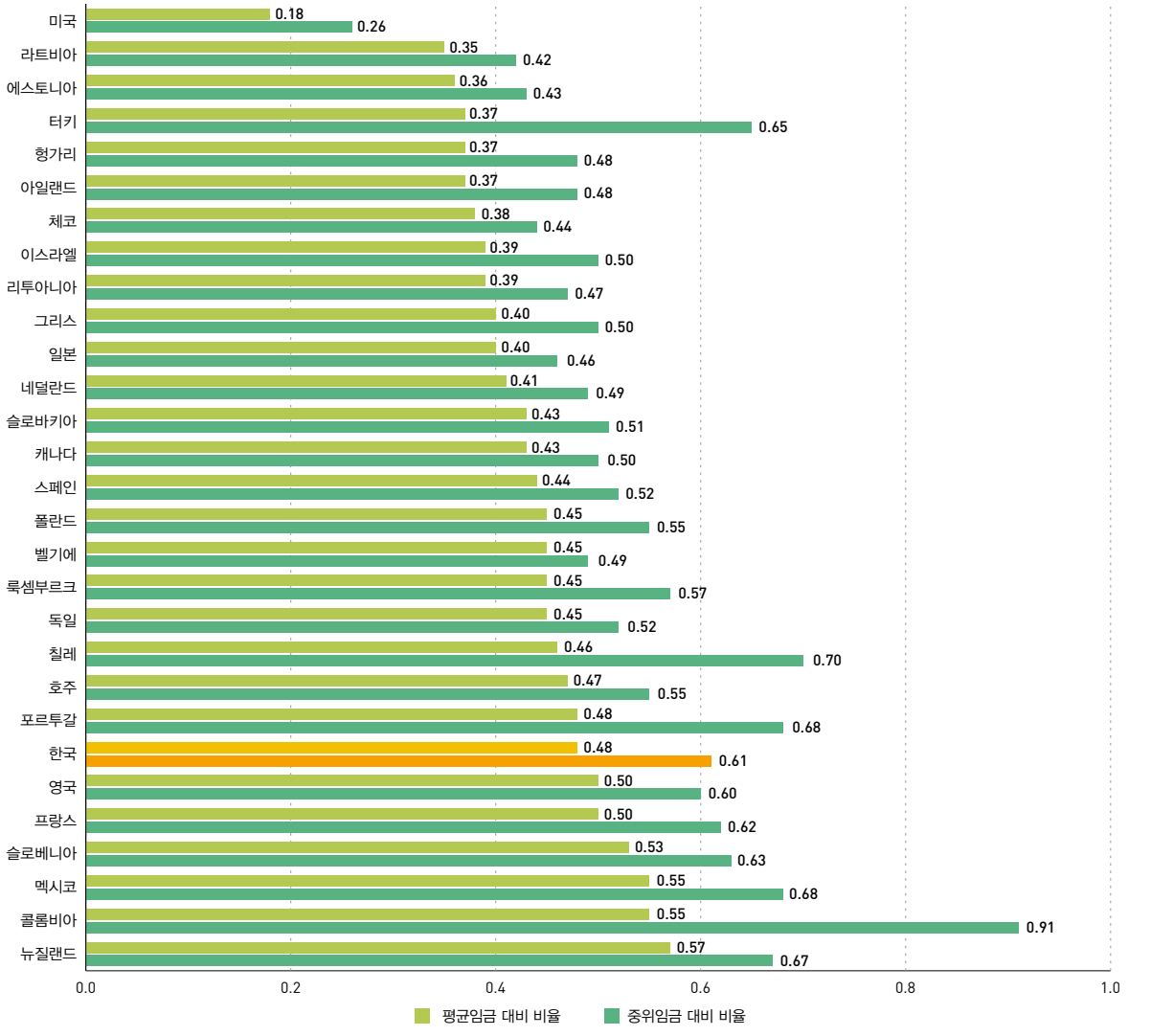
(단위: US$ PPP)



자료: OECD, Data Exploerer.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17. 인출)

그림 6-28 OECD 국가 평균임금 및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액 비율 (2023)

(단위: %)



자료: OECD, Data Exploerer.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17. 인출)

12-1
연 관

최저임금 영향률

Proportion of employees expected directly by new minimum wage

지표 정의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최저임금 변경(인상)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수 비율의 추정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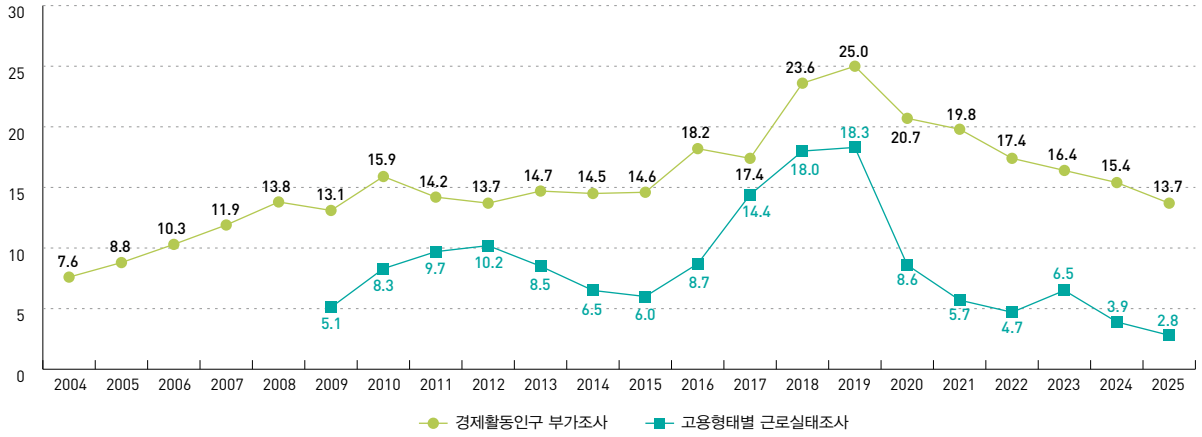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전년도 시간당 임금액에 금년도 임금상승률 전망치를 결합하여 금년도 시간당 임금액과 근로자 수의 분포를 추정한 후,

$$\frac{\text{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text{전체 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그림 6-29 최저임금 영향률 (2004~2025)

(단위: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각 연도.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influenceMain.do?division=S0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내부자료)	-	2024	-

13
대 표

시간당 임금총액

Hourly wag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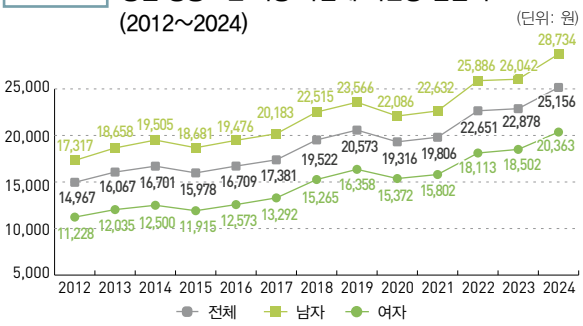
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를 의미한다.

- 근로자와 그 가족은 임금총액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곧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월 임금총액}}{\text{월 근로시간}}$ (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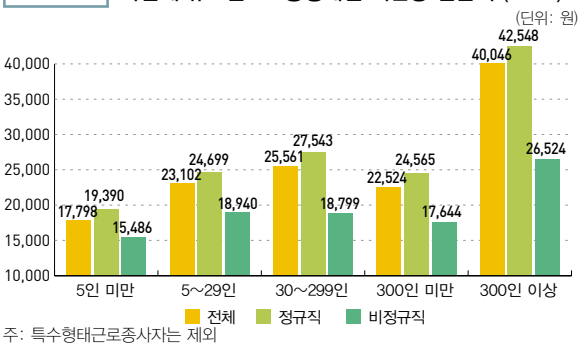
그림 6-30 성별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시간당 임금액 (2012~2024)



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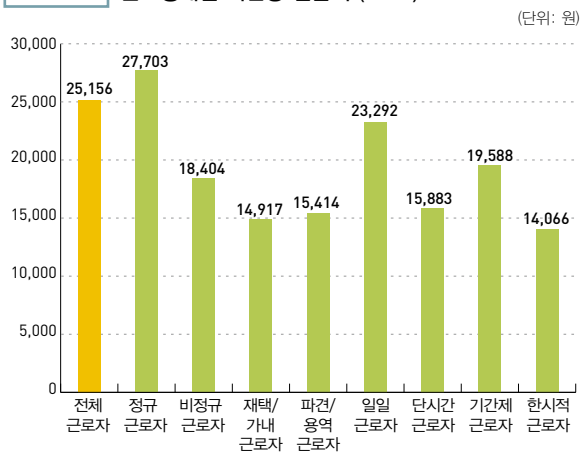
그림 6-31 사업체 규모별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액 (2024)



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4.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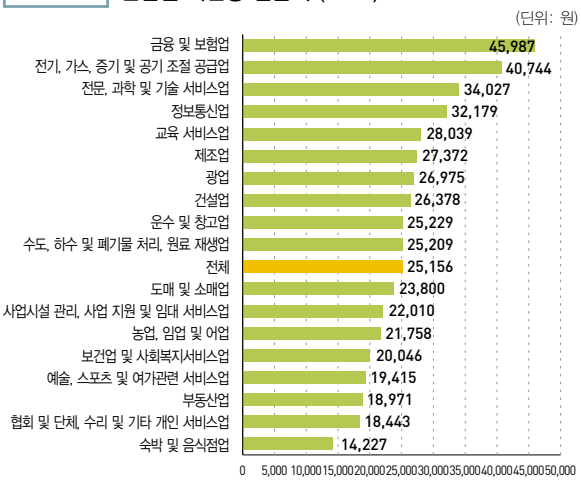
그림 6-32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액 (2024)



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4.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6-33 산업별 시간당 임금액 (2024)



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4.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	2024	1년

* 임금총액은 정액, 초과, 특별 등의 세 가지 급여를 합한 것이며, 정액급여란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연차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하고, 초과급여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하며, 특별급여란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대출금 제외) 등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한다.

14
대 표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

Payment of earned income tax credit/child tax credit

지표 정의

근로장려금은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근로 또는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요건 검토 후 지급된다.

측정 산식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1]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2]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165/400
	400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900 ~ 2,000만 원 미만	165만 원–(총 급여액 등–900만 원)×165/1,100
• 홑벌이 가족가구[3]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285/700
	700 ~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1,400 ~ 3,0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 285 / 1,600
• 맞벌이 가족가구[4]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330 / 800
	800 ~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1,700 ~ 3,6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 330 / 2,700

주: 1)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의 총수입금액
2)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3)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4)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 50 / 4,900]
•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 50 / 4,50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세청	국세통계	1967	2023	1년

표 6-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가구 수와 지급액 (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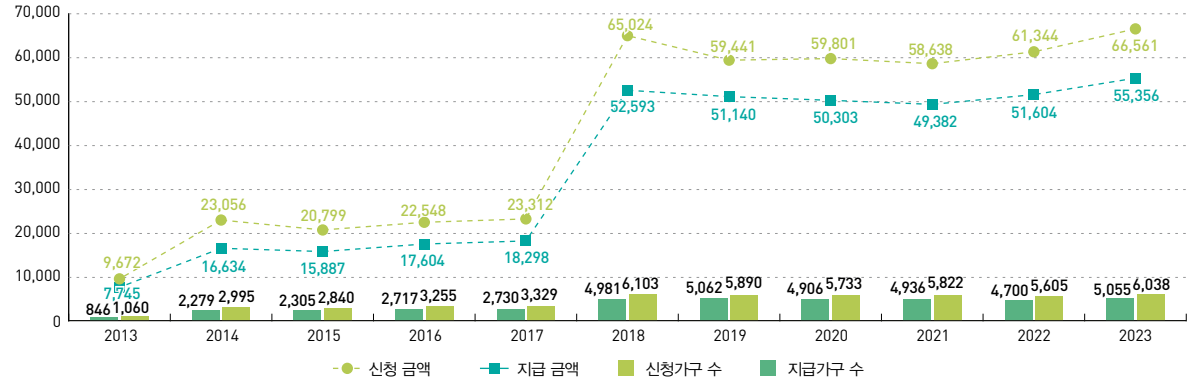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억 원)

구분	신청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 · 자녀장려금		
연도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근로)	금액(자녀)
2013	1,060	9,672	1,060	9,672	-	-	-	-	-
2014	2,995	23,056	1,584	13,610	1,411	9,446	716	6,873	5,254
2015	2,840	20,799	1,695	13,048	1,145	7,751	608	5,737	4,511
2016	3,104	21,666	1,883	14,176	1,221	7,490	537	5,357	3,886
2017	3,159	22,362	2,056	15,865	1,103	6,497	469	4,873	3,279
2018	5,787	62,314	4,743	53,156	1,044	9,158	763	11,193	7,248
2019	5,653	57,584	4,808	49,979	846	7,605	639	8,978	6,109
2020	5,733	59,801	4,915	52,568	818	7,233	589	8,372	5,600
2021	5,822	58,638	5,102	52,274	720	6,364	559	7,751	5,235
2022	5,605	61,344	4,991	55,248	614	6,096	483	7,239	5,116
2023	6,038	66,561	4,849	54,089	1,189	12,472	456	6,662	6,136
2013	846	7,745	846	7,745	-	-	-	-	-
2014	2,279	16,634	1,233	10,217	1,047	6,417	555	5,200	4,015
2015	2,305	15,887	1,379	10,280	926	5,607	496	4,595	3,519
2016	2,597	16,844	1,570	11,416	1,027	5,428	447	4,354	3,078
2017	2,599	17,537	1,694	12,808	905	4,729	386	4,046	2,629
2018	4,733	50,277	3,885	43,003	848	7,273	628	9,220	5,865
2019	4,946	50,299	4,214	43,915	732	6,383	557	7,955	5,190
2020	4,906	50,303	4,207	44,286	699	6,017	516	7,282	4,786
2021	4,936	49,382	4,362	44,447	574	4,935	451	6,291	4,135
2022	4,700	51,604	4,185	46,606	515	4,998	405	6,158	4,227
2023	5,055	55,356	4,101	45,636	954	9,719	373	5,608	4,96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3.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6-3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가구 수와 지급액 (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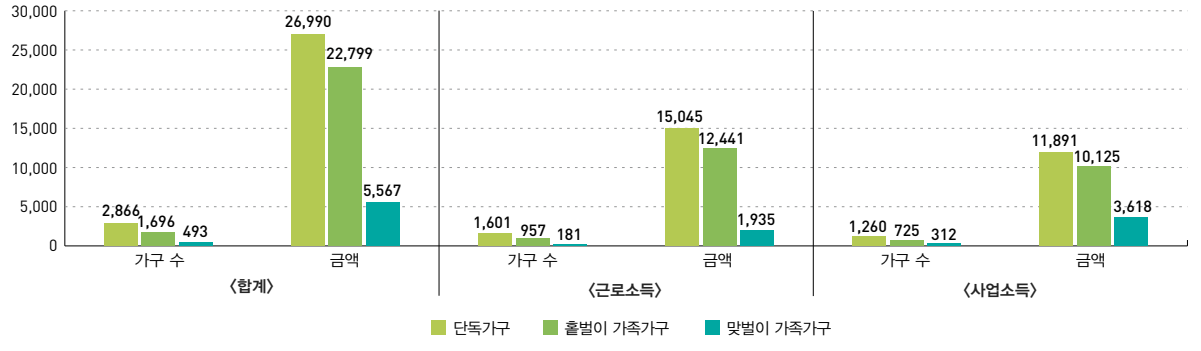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억 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3.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그림 6-35 가구유형별 · 소득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수와 지급액 (2023)

(단위: 천 가구, 억 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4. (http://kosis.kr/에서 2025.6.17. 인출)

15
대 표

자활사업 대상자 수

Number of people targeted by self-sufficiency program

지표 정의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시행 중이다. 자활사업 대상자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받는 수급자 수를 집계한 값이다.

측정 산식

- 자활사업 대상자: (1)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2)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특례자 (3) 일반수급자* 중 참여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가능) (4)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 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5)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인 차상위자(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만 65세 이상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6) 시설수급자 중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 (7) 일반시설생활자(주거 · 교육급여수급자)는 차상위자 참여 결정 준용
  *일반수급자: (1)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2)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권)자
- 자활사업 범위: 2017년을 기준으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생업자금 지원 등을 포함

표 6-10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15~2024)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활사업 대상자 수	1,569,566	1,551,707	1,502,461	1,663,098	1,801,635	2,055,672	2,276,667	2,366,346	2,465,316	2,580,151

주: 연도 말 기준

표 6-11 월별 · 수급지위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2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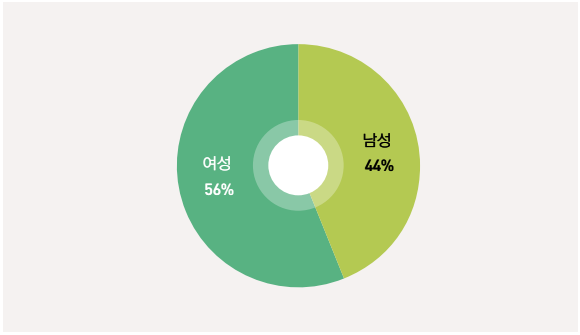
구분	자활사업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계 (시설 수급자 제외)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								
			소계	자활사업 미참여자	자활사업 희망 참여자	소계	조건부과 제외자	조건제시 유예자	조건부수급자			자활 특례자	기타	
									소계	취업 대상자	비취업 대상자			
1월	2,470,185	2,463,430	2,164,002	2,147,246	16,756	28,556	7,953	20,603	73,293	31,345	41,948	1,664	193,005	9,665
2월	2,482,426	2,475,695	2,173,329	2,167,954	5,375	35,071	13,120	21,951	73,605	31,583	42,022	1,632	189,118	9,671
3월	2,490,089	2,483,382	2,173,236	2,168,307	4,929	58,405	35,624	22,781	74,618	32,209	42,409	1,545	172,647	9,638
4월	2,508,007	2,501,275	2,188,626	2,183,218	5,408	34,541	10,910	23,631	75,382	32,658	42,724	1,631	198,221	9,606
5월	2,527,918	2,521,247	2,206,021	2,200,683	5,338	41,190	17,355	23,835	76,011	33,041	42,970	1,624	193,552	9,520
6월	2,539,987	2,533,523	2,217,306	2,212,023	5,283	46,430	21,732	24,698	76,566	33,428	43,138	1,589	188,827	9,269
7월	2,543,570	2,537,150	2,222,020	2,216,612	5,408	49,097	24,966	24,131	76,774	33,555	43,219	1,588	184,954	9,137
8월	2,552,594	2,546,139	2,229,961	2,224,489	5,472	53,448	29,664	23,784	77,377	33,885	43,492	1,585	181,100	9,123
9월	2,560,030	2,553,603	2,236,144	2,231,203	4,941	65,089	42,214	22,875	77,864	34,143	43,721	1,525	170,313	9,095
10월	2,564,548	2,558,118	2,239,952	2,234,537	5,415	34,504	11,603	22,901	78,433	34,451	43,982	1,663	200,909	9,087
11월	2,572,933	2,566,518	2,246,838	2,241,740	5,098	40,488	17,530	22,958	79,179	34,963	44,216	1,635	195,744	9,049
12월	2,580,151	2,573,778	2,252,561	2,247,934	4,627	45,504	22,529	22,975	79,728	36,329	43,399	1,594	191,790	8,97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4	월

그림 6-36 성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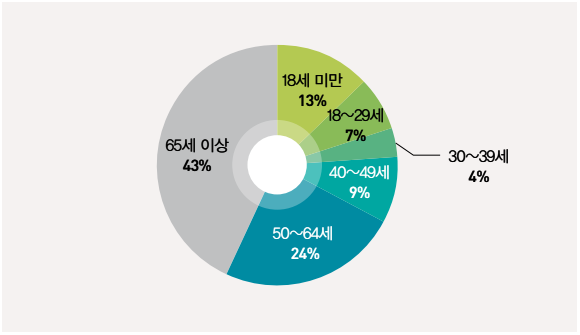
(단위: %)



주: 연도 말 기준

그림 6-37 연령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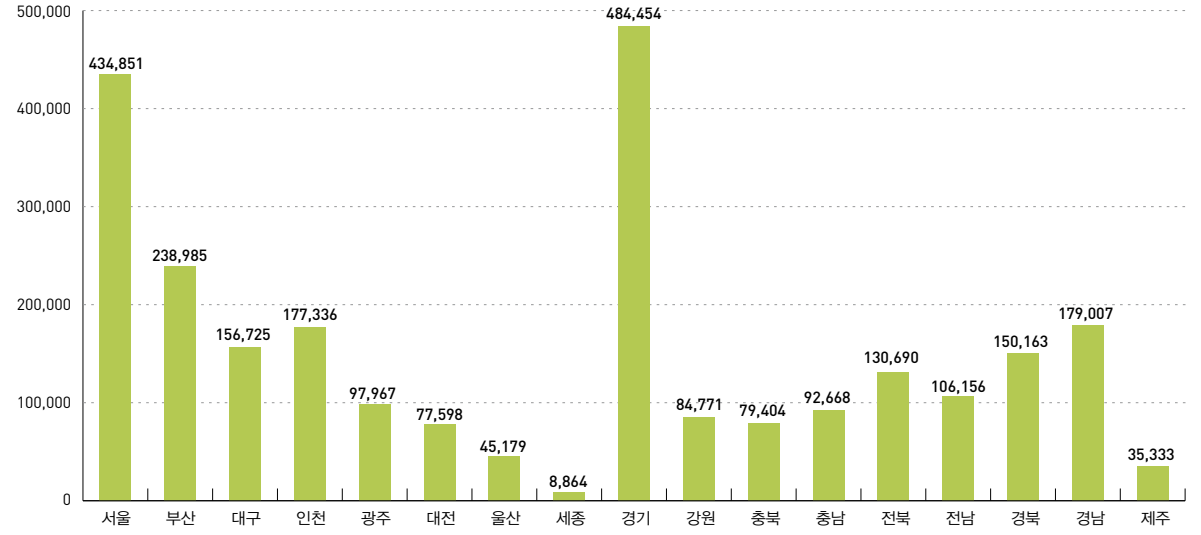
(단위: %)



주: 연도 말 기준

그림 6-38 시도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24)

(단위: 명)



주: 연도 말 기준

15-1
연 관

자활사업 참여자 수

Number of people participations in self-sufficiency program

지표 정의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자활사업* 대상자 중 실제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수를 집계한 값이다.

* 자활근로, GateWay 과정, 취업성공패키지 등

측정 산식

- 자활사업 참여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표 6-12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15~2024)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활사업 참여자 수	50,131	48,208	50,224	52,064	60,342	62,233	64,035	62,441	69,617	73,861

주: 연도 말 기준

표 6-13 월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24)

(단위: 명)

구분	자활근로	Gateway 과정	희망리본사업	기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계
1월	29,707	4,303	23,643	0	4,375	62,028
2월	33,726	5,157	25,306	0	4,541	68,730
3월	34,073	5,033	25,451	0	4,690	69,247
4월	35,364	4,819	26,008	0	4,521	70,712
5월	34,636	4,695	25,759	0	4,552	69,642
6월	34,834	4,620	26,647	0	4,642	70,743
7월	35,773	4,838	27,763	0	4,388	72,762
8월	34,839	4,996	28,585	0	4,537	72,957
9월	35,146	5,002	29,008	0	4,624	73,780
10월	36,091	4,783	29,887	0	4,665	75,426
11월	35,426	5,225	30,329	0	4,789	75,769
12월	35,666	5,482	28,057	0	4,656	73,86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참여자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4	월

표 6-14 수급유형별 · 업종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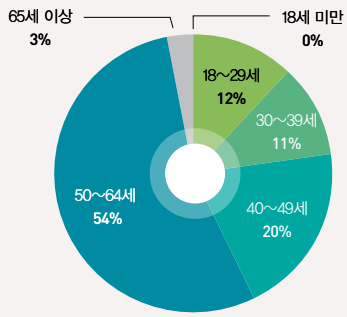
(단위: 명)

수급자 구분	값없음	집수리	간병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도시락	세차	영농	세탁	음식점 (외식)	장애 통합	산모 도우미	환경 정비	택배	기타	전체
일반 수급자가구	6,886	9	8	107	21	0	17	9	90	16	96	2	0	10	34	2,816	10,121
조건부 수급자가구	28,459	12	21	178	51	0	9	12	115	43	215	2	0	27	68	27,197	56,409
시설수급자	140	0	0	0	0	0	0	0	1	0	1	0	0	0	0	39	181
차상위 자활가구	2,701	6	2	47	12	0	6	7	64	14	54	2	0	14	16	211	3,156
특례수급자 가구	4,854	7	3	65	4	0	4	4	43	26	73	2	0	16	51	383	5,535
기타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값 없음	306	0	1	8	1	0	0	1	4	3	8	1	0	0	11	315	659
합계	43,347	34	35	405	89	0	36	33	317	102	447	9	0	67	180	30,962	76,062

주: 연도 말 기준

그림 6-39 연령별 자활사업 참여자 비율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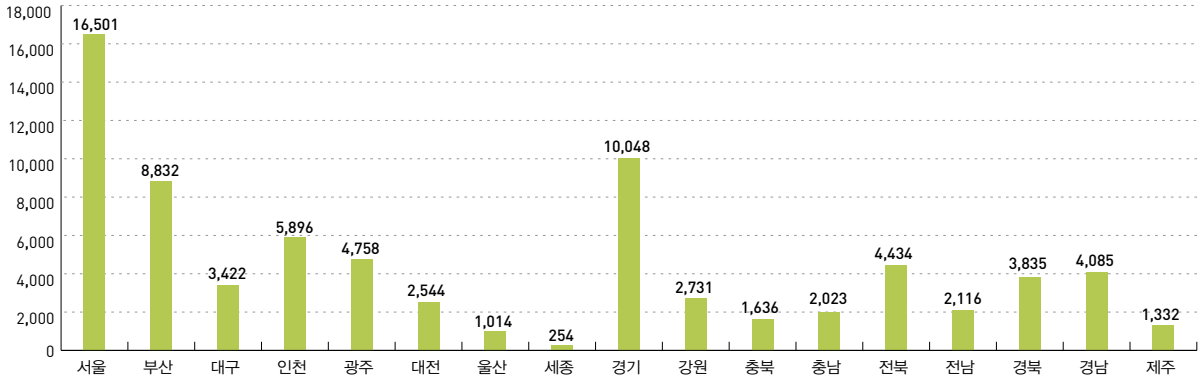
(단위: %)



주: 연도 말 기준

그림 6-40 시도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24)

(단위: 명)



주: 연도 말 기준

16
대 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Number of people participations in self-sufficiency work program

지표 정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자활사업 대상자 중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집계한 값이다.

측정 산식

- 자활근로사업 범위: 2017년을 기준으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이 해당되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합계는 중복을 제외한 인원수로 산정

표 6-15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015~2024)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8,955	25,387	24,666	24,505	29,977	33,488	35,849	34,532	34,456	35,666

주: 1) 연도 말 기준
2) 시간제 자활근로자를 포함함.

표 6-16 월별 · 수급자격별 · 자활근로 유형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024)

(단위: 명)

수급자격	자활근로 유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맞춤형) 기초생계급여	시장진입형	1,743	2,086	2,152	2,375	2,339	2,402	2,573	2,532	2,643	2,701	2,595	2,585
	인턴도우미형	885	983	1,020	1,039	1,043	1,014	1,032	1,030	1,024	1,035	1,013	1,012
	사회서비스형	4,094	4,858	5,106	5,622	5,521	5,643	5,955	5,791	5,891	6,273	6,133	6,192
	근로유지형	4,639	4,842	4,840	4,878	4,914	4,908	4,892	4,898	4,933	4,901	4,899	4,879
	시간제형	788	904	924	993	983	994	1,024	1,001	1,010	1,062	1,058	1,077
(맞춤형) 기초의료급여	시장진입형	3,491	4,013	4,010	4,132	3,986	4,004	4,105	3,951	3,929	4,043	4,042	4,036
	인턴도우미형	830	871	851	856	859	865	869	851	850	867	889	895
	사회서비스형	7,115	7,936	7,921	8,000	7,790	7,768	7,826	7,608	7,638	7,833	7,622	7,672
	근로유지형	817	832	808	792	778	759	758	741	741	737	736	730
	시간제형	83	92	99	86	85	84	80	74	70	74	67	68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시장진입형	696	813	843	880	868	897	940	915	937	951	944	961
	인턴도우미형	318	345	343	354	346	353	355	352	360	357	366	363
	사회서비스형	1,515	1,785	1,803	1,879	1,830	1,860	1,924	1,868	1,878	1,924	1,890	1,958
	근로유지형	86	90	93	96	93	101	100	98	93	101	100	103
	시간제형	45	50	50	51	54	52	56	51	49	52	48	50
(맞춤형) 기초교육급여	시장진입형	0	0	0	0	1	1	0	0	0	1	1	1
	사회서비스형	1	1	1	3	2	2	2	2	2	1	1	1
차상위 자활	시장진입형	866	1,118	1,091	1,116	1,063	1,042	1,099	1,062	1,062	1,066	1,069	1,066
	인턴도우미형	226	268	263	257	256	255	255	253	251	243	237	231
	사회서비스형	1,379	1,739	1,740	1,759	1,683	1,632	1,657	1,576	1,594	1,598	1,515	1,547
	근로유지형	23	24	24	24	25	28	31	30	32	31	32	33
	시간제형	21	23	23	27	27	25	26	24	26	26	24	21
기타	시장진입형	17	20	20	47	42	65	84	54	56	84	59	75
	인턴도우미형	3	3	4	3	3	6	4	4	3	4	5	6
	사회서비스형	23	26	36	87	36	65	116	66	67	114	74	95
	근로유지형	3	4	7	5	7	7	6	6	5	9	5	7
	시간제형	0	0	1	3	2	2	4	1	2	3	2	2
전체		29,707	33,726	34,073	35,364	34,636	34,834	35,773	34,839	35,146	36,091	35,426	35,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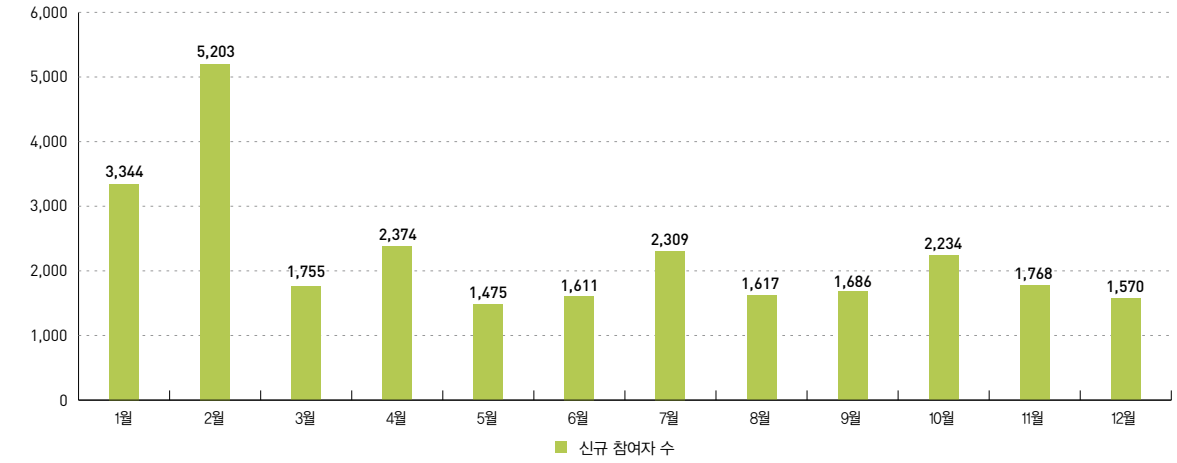
주: 1) 기타는 수급자격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2) 시간제 자활근로자를 포함함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및 자활급여지급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4	월

그림 6-41 월별 자활근로 신규 참여자 수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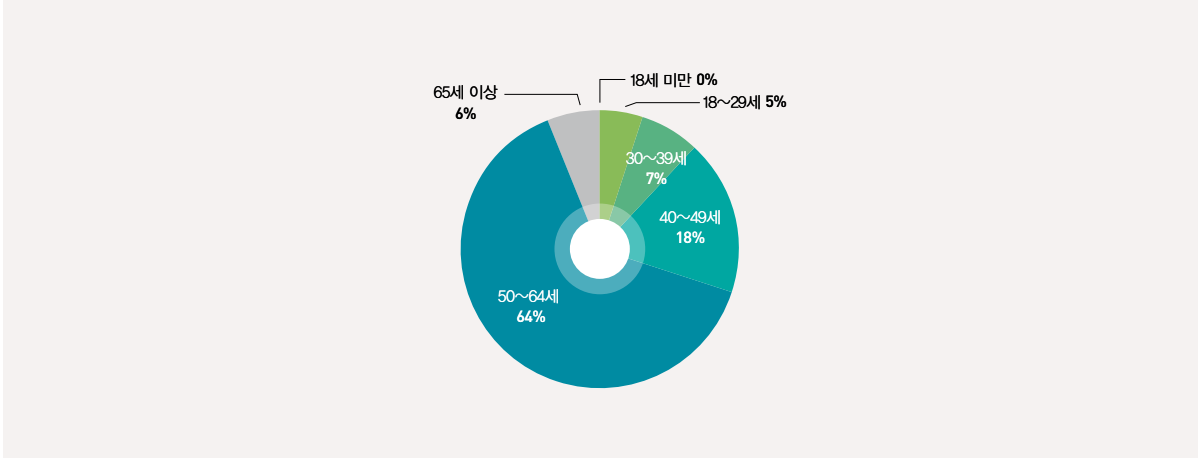
(단위: 명)



주: 시간제 자활근로자를 포함함.

그림 6-42 연령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비율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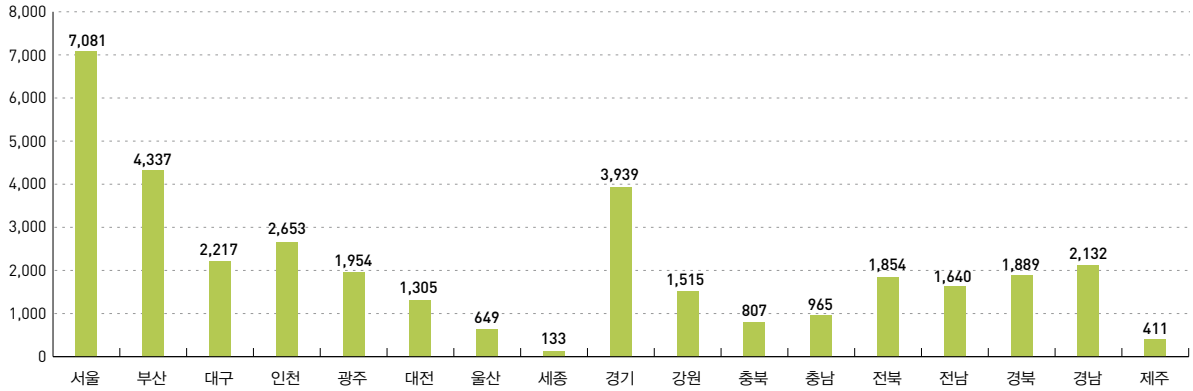
(단위: %)



주: 1) 연도 말 기준
2) 시간제 자활근로자를 포함함.

그림 6-43 시도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024)

(단위: 명)



주: 1) 연도 말 기준
2) 시간제 자활근로자를 포함함.

16-1
연 관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Expenditure on self-sufficiency work program benefits

지표 정의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자활근로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편성 · 구분된다. 본 지표에서는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지급 현황을 제시한다.

측정 산식

- 자활기관별로 자활급여 지급액(자활인건비) 계산
  - 시군구 직접 사업시행 = 전체 지급금액 – {(국민연금+건강보험액+고용보험액+산재보험액)}
  - 타 기관 = 자활소득금액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자활 참여정보(고용지원센터(취업성공패키지사업) 제외)를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며, 해당 월을 기준으로 성별, 자활지원 유형별 중복을 제외

표 6-17 연도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급여지급) 수 및 급여지급액 (2015~2024)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참여자 수	25,301	24,666	24,505	29,977	33,665	34,848	8,994	34,040	35,179
급여지급액	22,935,268	22,141,027	23,185,123	35,432,076	43,543,437	47,429,108	9,515,487	46,904,628	50,953,309

주: 1) 연도 말 기준
2) 시간제 자활근로자를 포함함.

표 6-18 시도별 · 성별 · 월별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 참여자 수 (2024)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13,792	15,756	15,616	17,866	15,767	17,957	16,033	18,019	16,143	18,048	16,194	18,033	16,237	18,015	16,247	18,039	16,416	18,135	16,565	18,183	16,668	18,186	16,747	18,293
서울	3,308	2,636	3,791	2,944	3,788	2,954	3,851	2,940	3,892	2,959	3,928	2,944	3,933	2,942	3,932	2,916	3,929	2,945	3,987	2,965	4,020	2,946	4,012	2,948
부산	1,646	2,012	1,849	2,277	1,865	1,303	1,882	2,291	1,892	2,284	1,904	2,289	1,910	2,297	1,901	2,302	1,908	2,302	1,945	2,316	1,951	2,302	1,946	2,318
대구	931	1,174	965	1,232	984	1,239	1,001	1,237	996	1,233	990	1,209	1,009	1,202	1,003	1,195	1,019	1,199	1,032	1,225	1,022	1,213	1,017	1,181
인천	1,084	1,401	1,096	1,421	1,110	1,424	1,128	1,417	1,140	1,432	1,160	1,440	1,172	1,429	1,165	1,445	1,163	1,432	1,177	1,465	1,127	1,408	1,178	1,473
광주	704	1,113	715	1,141	722	1,136	719	1,132	737	1,142	745	1,124	744	1,137	751	1,145	751	1,143	760	1,162	775	1,172	766	1,182
대전	432	644	441	658	460	666	471	678	476	668	475	676	476	662	479	678	491	669	526	686	565	696	584	713
울산	288	316	290	321	292	326	300	318	310	328	311	329	310	331	300	326	307	330	305	335	298	333	301	335
세종	57	70	63	74	64	74	63	78	65	80	66	78	70	81	72	77	70	76	66	72	66	73	64	69
경기	1,570	1,505	1,807	1,759	1,788	1,725	1,849	1,751	1,879	1,792	1,872	1,802	1,889	1,800	1,897	1,811	1,947	1,831	1,994	1,856	2,037	1,893	2,000	1,864
강원	518	696	655	847	651	848	654	849	651	845	658	854	645	853	621	825	669	846	656	844	661	851	663	843
충북	245	322	337	450	341	446	348	451	338	449	330	443	333	448	336	444	344	441	348	444	354	430	355	439
충남	362	445	344	440	408	494	416	502	411	502	414	511	400	510	393	507	393	502	373	458	423	516	428	518
전북	444	682	697	1,078	689	1,086	705	1,109	723	1,125	726	1,120	731	1,114	711	1,091	734	1,124	734	1,128	708	1,097	724	1,108
전남	427	642	668	968	643	923	656	958	629	922	598	900	634	955	633	948	624	941	601	904	596	903	648	960
경북	732	886	813	958	844	982	852	985	862	977	877	990	834	927	914	1,003	907	1,002	904	1,003	885	1,002	869	993
경남	836	1,028	878	1,099	903	1,141	919	1,133	922	1,121	919	1,133	927	1,141	924	1,135	946	1,161	929	1,126	953	1,159	946	1,159
제주	208	184	207	199	215	190	219	190	220	189	221	191	220	186	215	191	214	191	228	194	227	192	216	190

주: 시간제 자활근로자를 포함함.

표 6-19 월별 지원유형별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2024)

(단위: 백만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시장진입형	11,066	12,171	12,683	12,836	13,412	12,507	13,588	13,181	13,323	13,913	13,038	15,559	157,277
인턴도우미형	3,450	3,519	3,629	3,690	3,845	3,523	3,820	3,660	3,610	3,803	3,591	4,034	44,174
사회서비스형	19,094	20,595	21,681	21,880	22,941	21,136	22,732	21,964	22,060	23,227	21,555	25,535	264,400
근로유지형	4,249	4,170	4,290	4,331	4,523	4,155	4,488	4,343	4,288	4,452	4,195	4,790	52,274
계	37,859	40,455	42,283	42,737	44,721	41,321	44,628	43,148	43,281	45,395	42,379	49,918	518,125

주: 시간제 자활근로자를 제외함.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4	월

17
대 표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Number of near-poor people participation in self-sufficiency program

지표 정의

차상위 자활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비수급권자에게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 기회와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원대상자는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다. 또한, 근로 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 군, 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하다.

측정 산식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수급 인정을 받은 근로 능력이 없는 차상위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2024, 단위: 원)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표 6-20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2015~2023)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15,611	12,085	10,647	10,324	11,525	13,136	11,741	10,333	9,613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자활 수급자 현황 (http://kosis.kr/에서 2025.6.18. 인출)

표 6-21 시도별 월별 차상위자활 수급자 수 (2023)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남성	4,125	4,099	4,094	4,076	4,052	3,978	3,982	3,995	3,984	3,995	3,997	3,939
	여성	6,236	6,206	6,139	6,096	6,010	5,853	5,805	5,806	5,810	5,799	5,769	5,674
서울		956	941	925	903	904	889	887	882	871	879	874	841
부산		620	618	609	608	594	563	571	579	590	584	571	552
대구		400	406	407	418	422	415	441	442	443	440	447	447
인천		431	415	408	399	392	374	366	362	357	361	364	362
광주		348	353	357	358	358	346	345	348	356	357	367	368
대전		522	512	498	489	477	467	460	452	443	448	446	446
울산		339	340	339	331	330	329	326	317	320	319	315	316
세종		52	50	51	48	45	47	47	49	47	48	48	31
경기		1,269	1,259	1,255	1,249	1,251	1,221	1,225	1,229	1,222	1,221	1,225	1,208
강원		729	739	726	727	725	717	705	705	705	715	701	685
충북		353	352	342	349	352	350	344	346	339	333	332	318
충남		503	494	483	482	484	459	440	444	431	428	419	417
전북		685	681	687	686	668	659	654	651	652	654	665	661
전남		1,164	1,173	1,172	1,171	1,153	1,137	1,151	1,163	1,171	1,166	1,164	1,175
경북		747	730	724	722	726	707	683	684	696	680	682	672
경남		1,206	1,206	1,212	1,194	1,142	1,106	1,095	1,105	1,110	1,121	1,107	1,080
제주		37	36	38	38	39	45	47	43	41	40	39	34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자활 수급자 현황 (http://kosis.kr/에서 2025.6.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3	월

7

소득보장과 빈곤

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02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03 상대적 빈곤율
04 상대적 노인 빈곤율
05 소득5분위배율
06 지니계수
07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08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09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10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최저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주거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의료급여 수급자 수
		교육급여 수급자 수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노인 빈곤율	
불평등	소득5분위배율	
	지니계수	
노후소득보장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01
대 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Total recipients and take-up rat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지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에게 각 가구의 처한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 수급률은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빈곤율과의 비교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 추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참고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text{총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수급자 수는 일반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를 합친 숫자이며, 수급률 역시 일반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를 합친 전체 수급자 수를 인구로 나누어 구하였다. 여기서 일반 수급자는 시설(에이즈쉼터, 노숙인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말한다.

표 7-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급가구) 현황 (2004~2023)

(단위: 천 명, %, 천 가구)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급자 수	1,424	1,513	1,535	1,550	1,530	1,569	1,550	1,469	1,394	1,351	1,329	1,646	1,631	1,582	1,744	1,881	2,134	2,360	2,451	2,555
수급률	2.9	3.1	3.1	3.1	3.1	3.2	3.1	2.9	2.7	2.6	2.6	3.2	3.2	3.1	3.4	3.6	4.1	4.6	4.7	4.9
일반 수급가구 수	754	810	832	852	854	883	879	851	822	811	814	1,014	1,035	1,032	1,165	1,282	1,459	1,638	1,699	1,788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5.6.18. 인출)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5.6.18. 인출)

표 7-2 성별 ·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비중 (2023)

(단위: 천 명, %)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계	375	133	108	228	367	488	759	2,459
남자(%)	50.8	45.7	43.2	42.2	53.1	52.5	31.9	44.2
여자(%)	49.2	54.3	56.8	57.8	46.9	47.5	68.1	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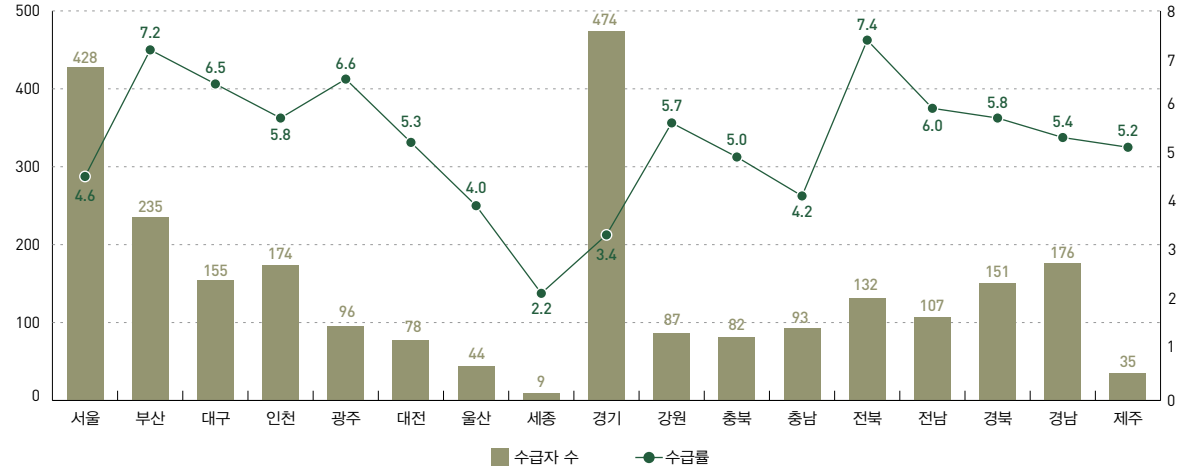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4. (http://kosis.or.kr에서 2025.6.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1977	2023	1년

그림 7-1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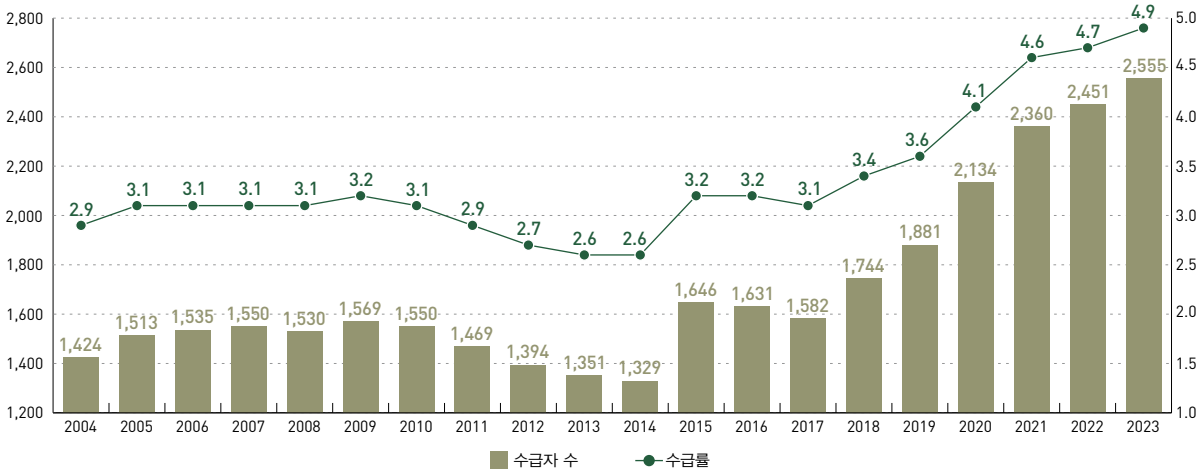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4. (http://kosis.or.kr에서 2025.6.18. 인출)
통계청, 2023 인구총조사, 2024. (http://kosis.or.kr에서 2025.6.18. 인출)

그림 7-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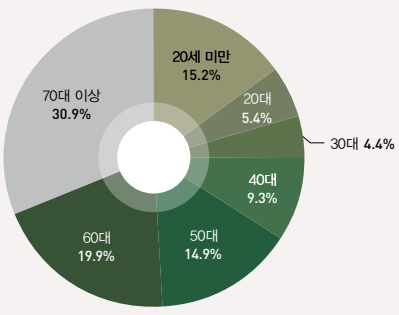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5.6.18. 인출)

그림 7-3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분포 (2023)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4. (http://kosis.or.kr에서 2025.6.18. 인출)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Overview of customize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 individuals and households

지표 정의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동안 통합급여로 지원하였던 것을 중위소득 50% 이하인 지원대상의 가구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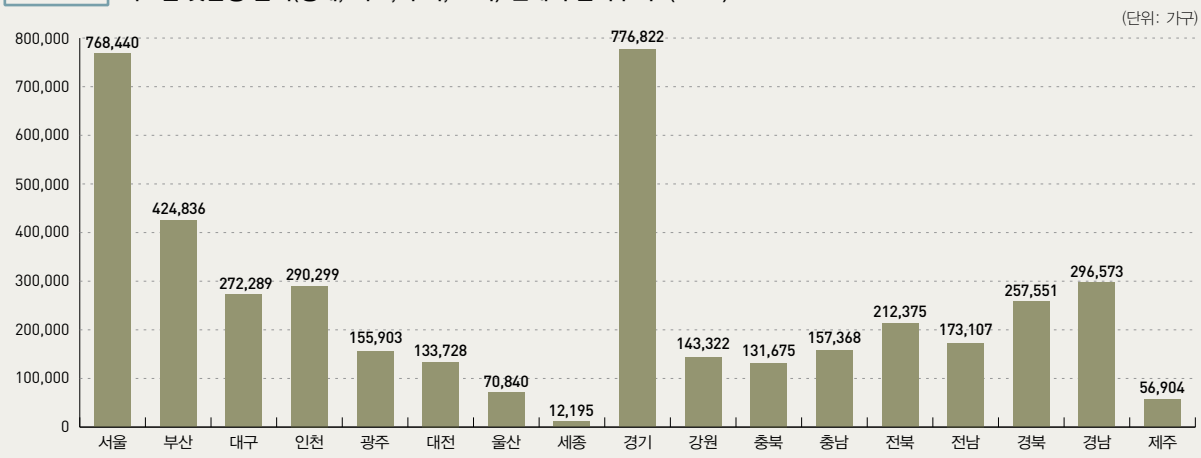
- 맞춤형 급여는 법률용어가 아니며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는 현 운영 방식을 말한다.

측정 산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급여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비교하여 선정된 급여종류별 수급자 및 수급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급여별 선정기준(2024)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그림 7-4 시도별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전체 수급가구 수 (2024)



주: 맞춤형 급여 자격 있는 가구 기준 (가구 중복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연도 말 기준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생산년도	최근 생산년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24	월

표 7-3 시도별 맞춤형 급여별 수급가구 및 수급자 수 (2024)

(단위: 가구, 명)

구분	수급가구 수		수급자 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전국	1,268,179	1,769,424	1,396,590	295,845
서울	228,082	319,195	245,524	34,713
부산	126,900	172,492	139,221	21,751
대구	79,732	109,980	91,795	16,431
인천	82,965	119,059	96,811	22,550
광주	43,648	63,991	53,873	13,552
대전	39,058	53,136	45,547	9,757
울산	19,668	31,480	21,934	3,029
세종	3,223	5,300	3,471	1,546
경기	216,268	331,827	236,401	59,789
강원	42,630	57,135	46,390	9,524
충북	38,719	53,623	40,933	10,534
충남	47,590	61,442	50,643	12,500
전북	63,067	83,637	72,142	17,865
전남	54,388	66,356	55,845	13,739
경북	79,210	99,184	84,686	17,639
경남	86,704	118,999	92,674	24,938
제주	16,327	22,588	18,700	5,988

주: 각각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교육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가구 및 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Number of livelihood benefit recipients : households

지표 정의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받는 가구로서 대상자 선정기준인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급받는다.

측정 산식

- 생계급여 수급 신청가구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가구로 인정받은 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선정기준(2024)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단위: 원/월)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표 7-4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2015~2024)

(단위: 가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803,385	808,575	822,417	837,310	861,409	923,873	1,081,655	1,157,750	1,200,418	1,268,179

주: 연도 말 기준

표 7-5 월별 · 시도별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2024)

(단위: 가구)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206,061	1,214,134	1,222,539	1,230,434	1,237,099	1,242,942	1,248,476	1,254,799	1,260,024	1,262,281	1,264,226	1,268,179
서울	216,475	218,108	219,322	220,787	222,149	223,197	223,959	224,962	225,940	226,598	227,317	228,082
부산	122,001	122,764	123,681	124,402	124,960	125,450	125,941	126,352	126,707	126,584	126,616	126,900
대구	76,029	76,527	77,089	77,592	77,917	78,299	78,615	78,993	79,245	79,361	79,490	79,732
인천	77,501	77,990	78,586	79,240	79,715	80,250	80,786	81,318	81,805	82,324	82,540	82,965
광주	41,252	41,513	41,785	42,141	42,391	42,562	42,753	42,975	43,179	43,435	43,479	43,648
대전	37,128	37,322	37,488	37,751	37,987	38,199	38,368	38,603	38,777	38,926	38,989	39,058
울산	18,525	18,695	18,860	18,980	19,112	19,199	19,330	19,450	19,569	19,492	19,545	19,668
세종	3,040	3,066	3,098	3,101	3,140	3,143	3,158	3,172	3,182	3,187	3,182	3,223
경기	201,057	202,561	204,242	205,959	207,510	208,844	210,393	212,013	213,225	214,229	215,269	216,268
강원	41,584	41,786	41,978	42,129	42,231	42,364	42,380	42,505	42,667	42,572	42,594	42,630
충북	37,288	37,531	37,822	38,099	38,276	38,383	38,511	38,673	38,782	38,790	38,761	38,719
충남	45,661	45,952	46,227	46,457	46,722	46,879	47,018	47,281	47,466	47,466	47,468	47,590
전북	61,426	61,737	62,034	62,330	62,507	62,722	62,856	62,963	63,110	63,094	62,940	63,067
전남	53,168	53,424	53,803	53,867	53,983	54,155	54,298	54,492	54,642	54,426	54,241	54,388
경북	75,975	76,469	77,025	77,561	77,998	78,281	78,559	78,926	79,157	79,076	79,023	79,210
경남	82,803	83,404	84,135	84,547	84,898	85,272	85,697	86,125	86,503	86,551	86,523	86,704
제주	15,148	15,285	15,364	15,491	15,603	15,743	15,854	15,996	16,068	16,170	16,249	16,327

주: 맞춤형급여 기초생계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가구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생산년도	최근 생산년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24	월

01-3 연 관

주거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Number of housing benefit recipients : individuals and households

지표 정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임차료, 수선유지금 등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받는 가구로서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지원받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금을 차등 지원받는다.

측정 산식

- 주거급여 수급 신청가구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인정받은 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급여 선정기준(2024)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단위: 원)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표 7-6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15~2023)

(단위: 가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879,597	880,356	885,964	1,027,572	1,150,930	1,331,334	1,492,799	1,582,884	1,672,688	1,769,424

주: 연도 말 기준

표 7-7 월별 · 시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24)

(단위: 가구)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678,233	1,688,038	1,698,672	1,709,588	1,720,996	1,730,034	1,735,318	1,743,124	1,749,449	1,754,547	1,762,388	1,769,424
서울	304,834	306,664	308,142	309,852	311,843	313,218	313,972	314,943	315,868	316,610	317,966	319,195
부산	165,123	165,924	167,032	168,014	168,973	169,563	170,000	170,581	171,054	171,308	171,972	172,492
대구	104,791	105,391	106,070	106,760	107,409	107,877	108,204	108,647	108,984	109,143	109,620	109,980
인천	111,771	112,300	112,987	113,845	114,661	115,509	116,017	116,763	117,246	117,836	118,534	119,059
광주	60,728	61,054	61,383	61,839	62,221	62,475	62,591	62,869	63,118	63,412	63,746	63,991
대전	50,526	50,758	50,994	51,302	51,594	51,904	52,060	52,351	52,554	52,725	52,906	53,136
울산	29,750	29,960	30,185	30,405	30,614	30,754	30,820	30,979	31,068	31,151	31,311	31,480
세종	4,866	4,878	4,921	4,964	5,044	5,102	5,100	5,135	5,157	5,187	5,208	5,300
경기	308,516	310,708	313,054	315,633	318,369	320,833	322,478	324,696	326,365	327,919	330,014	331,827
강원	55,306	55,598	55,878	56,039	56,328	56,545	56,569	56,667	56,796	56,778	56,968	57,135
충북	51,170	51,480	51,893	52,274	52,677	52,837	52,937	53,142	53,318	53,439	53,628	53,623
충남	58,004	58,396	58,776	59,136	59,586	59,878	60,018	60,370	60,597	60,854	61,142	61,442
전북	80,548	80,940	81,349	81,688	82,022	82,427	82,575	82,724	82,920	83,211	83,365	83,637
전남	63,933	64,147	64,546	64,870	65,174	65,458	65,527	65,768	66,020	66,043	66,117	66,356
경북	94,728	95,259	95,858	96,470	97,147	97,537	97,732	98,128	98,358	98,506	98,822	99,184
경남	112,596	113,375	114,250	114,961	115,621	116,279	116,761	117,257	117,813	118,085	118,598	118,999
제주	21,043	21,206	21,354	21,536	21,713	21,838	21,957	22,104	22,213	22,340	22,471	22,588

주: 맞춤형급여 기초주거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가구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생산년도	최근 생산년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24	월

표 7-8 시도별 · 주거유형별 맞춤형 급여(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24)

(단위: 가구)

구분	자가	임차											개인운영시설	시설입소(급여미지급)	기타
		공공임대	민간임대	사용대차											
				전체사용대차				부분사용대차							
				기타대가유	기타대가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별도가구특례	기타대가유	기타대가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별도가구특례	급여미지급			
전국	103,705	504,305	535,950	16,296	649	125	1,825	14,164	642	280	90,064	97,064	7,083	1,584	395,688
서울	4,010	114,705	111,098	987	49	4	239	1,832	69	10	14,980	10,011	937	216	60,048
부산	11,954	41,508	64,219	1,167	97	1	250	1,120	132	3	6,919	9,666	224	42	35,190
대구	3,935	33,087	39,339	775	38	4	182	696	56	4	5,290	5,097	162	96	21,219
인천	7,818	35,092	34,217	837	22	6	93	801	22	3	6,302	5,967	367	150	27,362
광주	2,957	24,189	16,050	362	11	1	48	378	5	1	2,596	3,836	369	33	13,155
대전	2,325	18,934	15,099	281	13	2	83	244	22	3	2,240	2,249	380	47	11,214
울산	906	7,009	12,386	167	19	1	13	246	12	1	1,378	1,396	51	18	7,877
세종	262	1,644	1,328	78	2	0	12	94	2	1	338	293	25	3	1,218
경기	7,829	112,176	88,272	1,736	87	8	154	2,256	103	9	20,911	14,715	1,926	599	81,046
강원	5,980	12,112	17,355	900	47	11	149	645	34	14	3,324	3,641	173	27	12,723
충북	5,344	13,178	13,039	857	15	5	61	669	6	2	3,028	3,892	454	55	13,018
충남	6,590	12,504	15,473	1,431	32	1	67	1,092	55	3	3,803	4,214	308	38	15,831
전북	10,460	21,926	18,991	647	29	50	114	391	13	210	3,716	7,983	471	27	18,609
전남	11,308	10,438	13,923	2,149	62	24	58	1,347	36	6	3,708	6,633	582	63	16,019
경북	12,426	16,438	29,910	2,161	73	5	123	1,310	34	4	4,178	7,455	224	66	24,777
경남	8,972	24,962	36,812	1,476	48	1	129	860	37	6	6,146	8,431	354	88	30,677
제주	629	4,403	8,439	285	5	1	50	183	4	0	1,207	1,585	76	16	5,705

주: 1) 시설 수급자 포함
2) 맞춤형 급여 도입 후 주거유형이 5개에서 15개로 확대됨에 따라 1:1 매칭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그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 따라서 '기타'에는 입력값 오류와 주거유형 비매칭 수급자로 구성됨.
3) 연도 말 기준

표 7-9 시도별 · 급여종류별 주거약자가 포함된 맞춤형 급여(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24)

(단위: 가구)

시도	합계 (A+C)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65세 이상 장애인 (A=aUb, 중복제거)	65세 이상 (a)	장애인 (b)	65세 이상 장애인 (C=cUd, 중복제거)	65세 이상 (c)	장애인 (d)
전국	966,020	874,734	684,786	392,883	91,286	81,695	38,740
서울	180,687	177,284	145,080	73,863	3,403	3,116	1,191
부산	98,313	88,051	72,116	35,559	10,262	9,519	3,648
대구	59,409	56,163	44,108	25,662	3,246	2,908	1,379
인천	61,289	54,754	43,074	25,369	6,535	5,949	2,685
광주	31,603	29,302	21,650	13,830	2,301	1,995	947
대전	28,262	26,272	19,759	12,528	1,990	1,762	828
울산	16,100	15,342	12,260	6,418	758	677	294
세종	2,699	2,470	1,913	1,084	229	206	91
경기	176,982	170,217	134,478	75,565	6,765	6,014	2,808
강원	33,172	27,731	21,411	12,716	5,441	4,966	2,321
충북	29,837	24,990	18,571	11,993	4,847	4,285	2,121
충남	34,406	28,355	20,756	14,085	6,051	5,406	2,633
전북	46,325	36,996	27,379	18,926	9,329	8,338	4,175
전남	39,004	28,556	20,131	14,969	10,448	9,237	4,781
경북	54,295	43,110	32,352	20,628	11,185	9,874	5,047
경남	62,452	54,465	41,695	24,679	7,987	7,055	3,500
제주	11,185	10,676	8,053	5,009	509	388	291

주: 시설 수급자 제외, 연도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medical aid benefit recipients : individuals

지표 정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분류되어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및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측정 산식

- 의료급여 수급 신청자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의료급여 선정기준(2024)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단위: 원)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표 7-10 의료급여 수급자 수 (2015~2024)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의료급여 수급자 수	1,343,775	1,319,780	1,302,248	1,306,568	1,309,695	1,353,764	1,347,289	1,354,357	1,351,874	1,396,590

주: 연도 말 기준

표 7-11 월별 · 시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2024)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354,400	1,360,705	1,367,162	1,373,892	1,380,173	1,381,422	1,383,996	1,388,635	1,392,115	1,394,930	1,398,444	1,396,590
서울	238,868	239,938	240,765	241,958	243,119	243,264	243,324	243,877	244,477	244,998	245,675	245,524
부산	136,002	136,539	137,440	138,066	138,596	138,640	138,884	139,137	139,298	139,348	139,569	139,221
대구	89,132	89,572	89,975	90,342	90,670	90,821	90,979	91,324	91,517	91,608	91,832	91,795
인천	92,667	93,010	93,543	94,102	94,436	94,712	95,064	95,555	95,974	96,340	96,712	96,811
광주	52,519	52,761	52,889	53,138	53,321	53,303	53,301	53,428	53,583	53,803	53,987	53,873
대전	44,347	44,500	44,593	44,766	44,963	45,065	45,115	45,322	45,467	45,586	45,671	45,547
울산	20,975	21,129	21,282	21,395	21,561	21,560	21,665	21,761	21,851	21,884	22,021	21,934
세종	3,429	3,445	3,453	3,467	3,499	3,450	3,468	3,506	3,495	3,493	3,496	3,471
경기	224,977	226,090	227,342	228,973	230,404	231,132	232,120	233,516	234,290	235,151	236,208	236,401
강원	46,051	46,167	46,390	46,463	46,702	46,549	46,487	46,523	46,596	46,582	46,590	46,390
충북	40,166	40,344	40,543	40,740	40,886	40,819	40,876	40,986	41,049	41,076	41,151	40,933
충남	49,029	49,323	49,530	49,758	50,051	50,007	50,086	50,238	50,371	50,548	50,729	50,643
전북	71,138	71,388	71,664	71,917	72,183	72,173	72,166	72,196	72,273	72,360	72,306	72,142
전남	55,018	55,341	55,584	55,753	55,867	55,855	55,857	55,972	56,052	56,108	56,095	55,845
경북	82,118	82,588	83,013	83,477	83,925	83,973	84,193	84,458	84,632	84,759	84,828	84,686
경남	89,937	90,411	90,938	91,296	91,633	91,743	91,999	92,298	92,595	92,637	92,866	92,674
제주	18,027	18,159	18,218	18,281	18,357	18,356	18,412	18,538	18,595	18,649	18,708	18,700

주: 맞춤형 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생산년도	최근 생산년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24	월

표 7-12 시도별 · 종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2024)

(단위: 명)

구분	1종	2종	값 없음	계
전국	1,054,164	339,202	3,224	1,396,590
서울	179,895	65,053	576	245,524
부산	103,220	35,709	292	139,221
대구	68,418	23,297	80	91,795
인천	69,464	27,097	250	96,811
광주	35,106	18,679	88	53,873
대전	31,808	13,636	103	45,547
울산	16,962	4,840	132	21,934
세종	2,562	901	8	3,471
경기	186,640	48,922	839	236,401
강원	36,721	9,605	64	46,390
충북	32,265	8,566	102	40,933
충남	40,924	9,556	163	50,643
전북	52,253	19,784	105	72,142
전남	44,689	11,010	146	55,845
경북	67,108	17,445	133	84,686
경남	73,531	19,017	126	92,674
제주	12,598	6,085	17	18,700

주: 실수급자 기준임. 연도 말 기준

01-5
연 관

교육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education benefit recipients : individuals

지표 정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받는다.

측정 산식

- 교육급여 수급 신청자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교육급여 선정기준(2024)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원)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표 7-13 교육급여 수급자 수 (2015~2024)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급여 수급자 수	377,638	370,062	324,735	299,829	283,258	294,362	301,545	294,500	293,717	295,845

주: 연도 말 기준

표 7-14 월별 · 시도별 교육급여 수급자 수 (2024)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293,424	293,483	269,869	278,304	288,539	292,348	293,289	294,117	294,984	295,558	295,958	295,845
서울	35,934	35,928	32,344	32,962	33,871	34,367	34,483	34,594	34,652	34,667	34,767	34,713
부산	21,669	21,685	19,752	20,483	21,340	21,581	21,708	21,760	21,780	21,800	21,788	21,751
대구	16,079	16,093	14,854	15,477	16,038	16,200	16,273	16,345	16,385	16,410	16,484	16,431
인천	22,394	22,420	21,133	21,804	22,444	22,743	22,742	22,431	22,484	22,565	22,550	22,550
광주	13,620	13,636	12,438	13,133	13,378	13,490	13,466	13,503	13,526	13,561	13,571	13,552
대전	9,767	9,740	9,033	9,188	9,451	9,602	9,618	9,651	9,721	9,747	9,758	9,757
울산	2,886	2,880	2,641	2,691	2,848	2,923	2,937	2,960	2,975	2,985	3,019	3,029
세종	1,411	1,418	1,301	1,339	1,436	1,461	1,457	1,490	1,494	1,498	1,528	1,546
경기	58,524	58,496	53,829	55,193	57,441	58,440	58,774	59,062	59,362	59,562	59,696	59,789
강원	9,612	9,611	8,825	8,966	9,368	9,462	9,477	9,540	9,533	9,519	9,555	9,524
충북	10,385	10,369	9,585	9,859	10,305	10,364	10,421	10,441	10,481	10,539	10,577	10,534
충남	12,034	12,033	10,991	11,298	11,835	12,004	12,076	12,228	12,332	12,399	12,475	12,500
전북	17,910	17,955	16,574	17,018	17,566	17,831	17,852	17,884	17,906	17,945	17,906	17,865
전남	13,475	13,459	12,374	12,917	13,407	13,554	13,598	13,664	13,724	13,709	13,712	13,739
경북	17,323	17,394	16,107	16,968	17,451	17,560	17,555	17,594	17,602	17,592	17,595	17,639
경남	24,625	24,600	22,712	23,451	24,543	24,837	24,920	25,020	25,047	25,048	24,967	24,938
제주	5,776	5,766	5,376	5,557	5,817	5,929	5,932	5,950	5,980	6,012	6,010	5,988

주: 맞춤형 급여 기초교육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생산년도	최근 생산년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24	월

02
대 표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Number of near-poor people in receipt of priority care

지표 정의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는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 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중앙부처 10개 기관 20여 개 사업과 지자체 특수시책, 민간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연계되는 대상자들을 말한다.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달리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출(실제소득-부양비,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측정 산식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에서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사업, 민간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연계된 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2024)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단위: 원)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표 7-15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2015~2023)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상위 확인서발급 수급자 수	127,217	128,997	149,647	149,312	142,886	173,278	213,228	206,656	187,838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및한부모가족수급자현황,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5.6.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생산년도	최근 생산년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3	월

표 7-16 월별 · 시도별 · 성별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2023)

(단위: 명)

시도	성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남	75,363	74,787	74,468	75,709	75,664	73,521	71,817	70,965	70,471	70,234	69,579	68,131
	여	129,672	129,003	128,420	129,800	129,772	127,085	124,776	123,670	123,020	122,602	121,665	119,707
시도	서울	36,664	36,431	36,166	38,287	38,587	37,520	36,599	36,120	35,844	35,740	35,533	34,478
	부산	14,325	14,171	14,094	14,040	13,880	13,359	12,960	12,761	12,639	12,549	12,295	11,990
	대구	10,058	9,974	9,914	9,930	9,871	9,589	9,633	9,568	9,474	9,419	9,375	9,245
	인천	10,418	10,336	10,208	10,255	10,155	9,857	9,603	9,489	9,393	9,312	9,253	9,012
	광주	4,710	4,643	4,608	4,564	4,492	4,367	4,236	4,150	4,107	4,119	4,092	3,969
	대전	6,458	6,394	6,307	6,320	6,302	6,180	6,072	6,055	6,016	6,028	5,968	5,848
	울산	2,927	2,916	2,892	2,952	2,939	2,848	2,753	2,735	2,714	2,693	2,646	2,602
	세종	489	495	492	500	499	500	478	473	477	487	479	487
	경기	38,388	38,238	38,014	38,212	38,202	37,434	36,682	36,432	36,310	36,269	36,041	35,607
	강원	7,809	7,744	7,783	7,777	7,732	7,543	7,462	7,279	7,237	7,195	7,121	7,064
	충북	5,955	5,921	5,899	5,896	5,827	5,644	5,501	5,460	5,428	5,406	5,331	5,247
	충남	9,412	9,381	9,353	9,354	9,354	9,125	8,978	8,905	8,870	8,834	8,793	8,619
	전북	10,878	10,813	10,774	10,828	10,799	10,663	10,531	10,397	10,324	10,259	10,153	10,022
	전남	13,202	13,139	13,186	13,293	13,324	13,217	12,999	12,915	12,853	12,792	12,673	12,510
	경북	15,544	15,477	15,540	15,615	15,696	15,364	15,001	14,865	14,802	14,793	14,696	14,561
	경남	15,214	15,154	15,142	15,151	15,225	14,933	14,694	14,662	14,640	14,612	14,507	14,342
	제주	2,584	2,563	2,516	2,535	2,552	2,463	2,411	2,369	2,363	2,329	2,288	2,235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및한부모가족수급자현황,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5.6.18. 인출)

03
대 표

상대적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지표 정의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된 소득의 중위값 일정 비율(보통 40%, 50%, 60%)을 빈곤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선으로 설정한 후 이 기준선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과 전체 인구와의 비율로 정의한다.

- 과거에는 최저생계비와 같은 절대적 빈곤선을 가지고 빈곤율을 계측해왔으나,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급여제도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이 적용되고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인구수}}{\text{전체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OECD 국제기준(Wave6)대로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소득 기준을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Wave7 변경사항: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

상대적 빈곤율의 기준선(기준중위소득의 40%, 50%, 60%)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50%의 상대적 빈곤율을 제시하였다.

표 7-17 소득별 · 자료원별 중위소득 50% 상대적 빈곤율 (2008~2023)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17.5	18.1	18.0	18.3	17.6	17.8	17.9	18.6	19.5	-	-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19.7	19.2	19.3	19.9	19.7	20.0	19.9	20.2	21.0	21.7	21.1	20.2	19.9
처분가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15.2	15.3	14.9	15.2	14.6	14.6	14.4	13.8	14.7	-	-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18.5	18.1	18.2	18.1	17.4	17.4	17.0	16.5	16.1	15.1	14.8	14.9	14.9

주: 1)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는 2016년까지 공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를 공표함.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부터 횡단면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그룹별 5년 주기로 순환되는 연동패널이 도입됨.
2011~2014년 과거계열은 소득분배지표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일부 행정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과거계열을 통계적 추정방법을 통해 보완 작성하여 공표함.
2) 중위소득 50%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전을 받은 뒤, 국민 상위 50% 소득(중앙값)의 절반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 상대적 빈곤율(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5.6.18. 인출)
통계청, 상대적 빈곤율(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5.6.18. 인출)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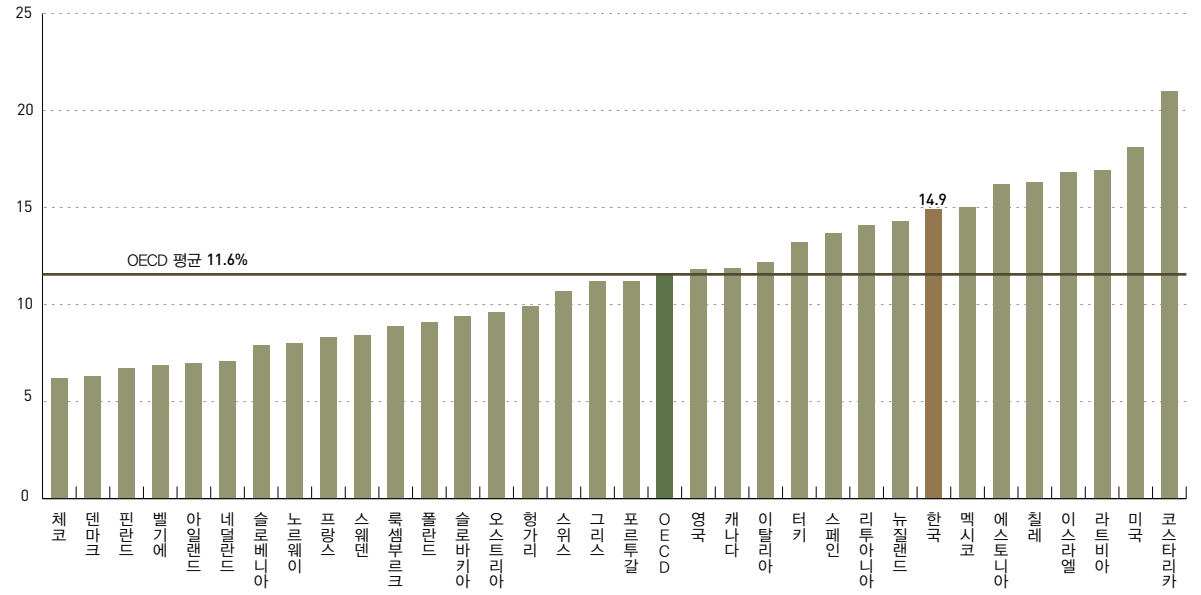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6	분기, 1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953	2023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	2023	1년

참고문헌

- OECD. Data Explorer,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그림 7-5 OECD 국가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비교 (2022)

(단위: %)



주: 2022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만 포함

자료: OECD. Data Explorer, Income distribution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18. 인출).

04
대 표

상대적 노인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지표 정의

상대적 노인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균등화된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40 · 50 · 60%) 미만인 노인(65세 이상 또는 66세 이상)의 비율로 정의한다.

- 노인은 통상 근로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은 빈곤정책, 노후소득보장정책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정립하는데 참고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노인 수}}{\text{전체 노인 수}} \times 100$

유의사항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OECD 국제기준(Wave6)대로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소득 기준을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Wave7 변경사항: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노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계산된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표 7-18 소득별 · 자료원별 중위 50% 기준 상대적 노인 빈곤율 (2008~2023)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소득	66세 이상	가계동향조사	54.9	58.3	60.0	61.1	61.6	62.8	63.8	64.0	66.5	-	-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57.9	57.0	57.0	57.6	58.1	59.0	58.7	60.4	61.3	60.6	59.9	59.1	57.0
	65세 이상	가계동향조사	53.9	57.3	59.1	60.2	60.3	61.3	62.5	63.2	65.5	-	-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57.0	55.6	55.8	56.2	56.9	57.7	57.0	58.9	59.2	59.0	57.9	57.1	55.5
처분가능소득	66세 이상	가계동향조사	45.5	47.0	47.2	48.6	48.5	49.6	48.8	45.7	47.7	-	-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47.9	46.8	47.5	45.9	44.2	44.8	43.8	43.3	43.2	40.5	39.3	39.7	39.8
	65세 이상	가계동향조사	44.1	45.9	46.3	47.6	47.2	48.1	47.4	44.8	46.5	-	-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46.5	45.2	46.2	44.4	43.1	43.5	42.1	42.0	41.4	39.1	37.6	38.1	38.2

주: 1) 노인빈곤에서 노인인구는 OECD 기준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과 노인복지법 기준(65세 이상)을 구분하여 제시
2)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는 2016년까지 공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를 공표함.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부터 횡단면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그룹별 5년 주기로 순환되는 연동패널이 도입됨.
2011~2014년 과거계열은 소득분배지표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일부 행정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과거계열을 통계적 추정방법을 통해 보완 작성하여 공표함.
3) 중위소득 50%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전을 받은 뒤, 국민 상위 50% 소득(중앙값)의 절반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 상대적 노인 빈곤율(가계금융복지조사), (http://kosis.or.kr에서 2025.6.18. 인출)
통계청, 상대적 노인 빈곤율(가계동향조사), (http://kosis.or.kr에서 2025.6.18. 인출)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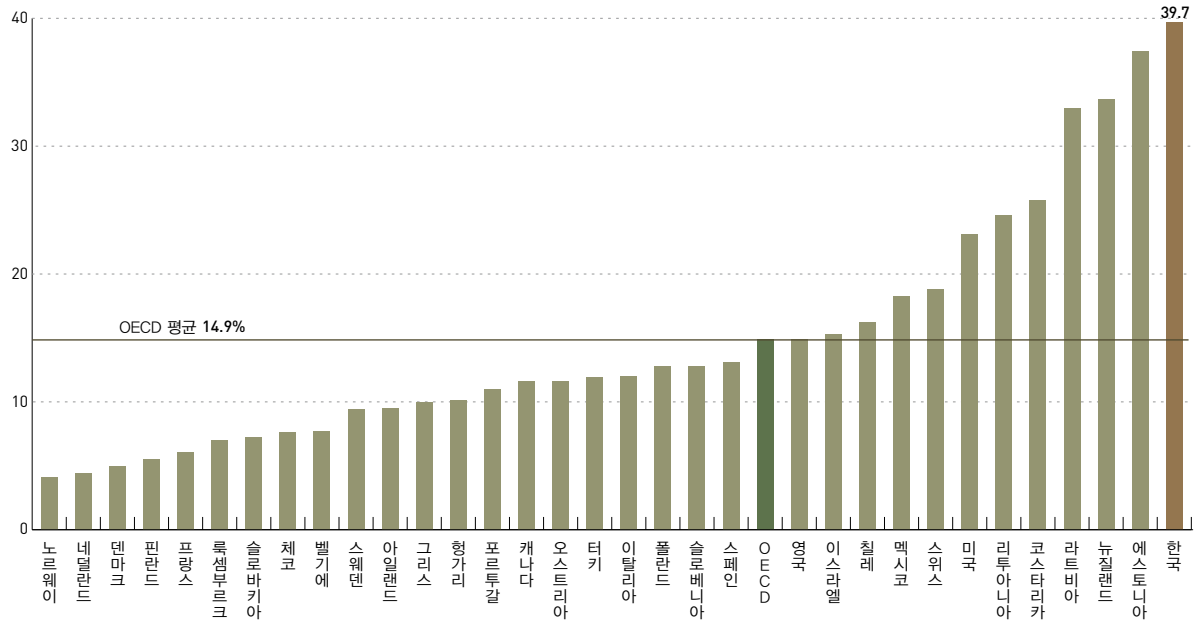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6	분기, 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2005	2023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	2023	1년

참고문헌

- OECD. Data Explorer,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그림 7-6 OECD 국가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 빈곤율 비교 (2022) : 66세 이상 노인 대상

(단위: %)



주: 2022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만 포함

자료: OECD. Data Explorer, Income distribution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18. 인출)

05 대 표

소득5분위배율

Income quintile share ratio (s80/s20)

지표 정의

소득5분위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 소득10분위배율과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데 자주 활용되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text{상위 20\% 평균 소득} \div \text{하위 20\% 평균 소득}$$

유의사항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OECD 국제기준(Wave6)대로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소득 기준을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Wave7 변경사항: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

표 7-19 소득별 · 자료원별 소득5분위배율 (2008~2023)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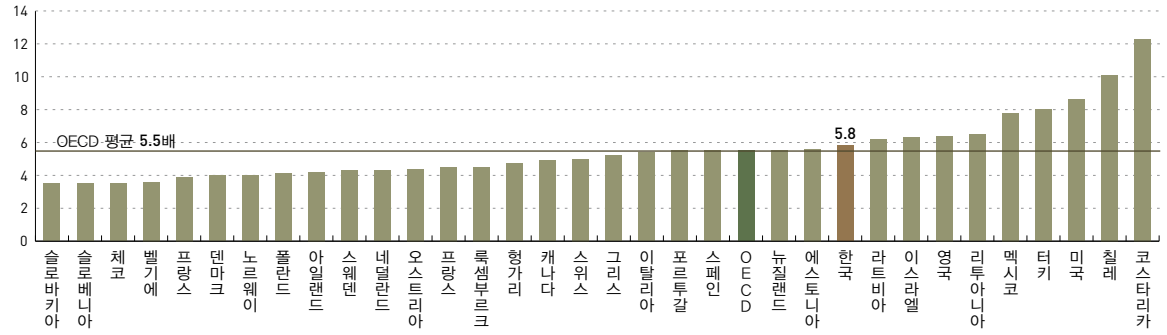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7.38	7.70	7.74	7.86	7.51	7.59	8.08	8.24	9.32	-	-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11.21	10.65	10.29	10.32	10.41	10.88	11.27	11.15	11.56	11.37	11.52	10.99	10.70
처분가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5.71	5.75	5.66	5.73	5.54	5.43	5.41	5.11	5.45	-	-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8.25	8.01	7.58	7.27	6.81	6.87	6.84	6.43	6.17	5.75	5.83	5.76	5.72

주: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는 2016년까지 공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를 공표함.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부터 횡단면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그룹별 5년 주기로 순환되는 연동패널이 도입됨.
2011~2014년 과거계열은 소득분배지표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일부 행정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과거계열을 통계적 추정방법을 통해 보완 작성하여 공표함.

자료: 통계청, 소득5분위배율(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8. 인출)
통계청, 소득5분위배율(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8. 인출)

그림 7-7 OECD 국가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 비교 (2022)

(단위: 배)



주: 2022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만 포함

자료: OECD, Data Explorer, Income distribution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6	분기, 1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953	2023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	2023	1년

참고문헌

• OECD. Data Explorer,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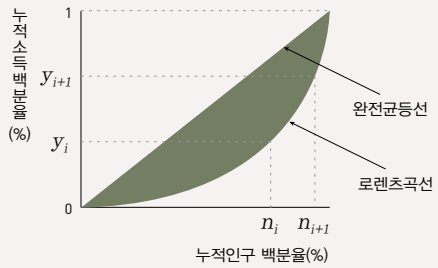
06
대 표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지표 정의

지니계수는 전체 인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 면적의 비율로 작성된다. 로렌츠 곡선은 가로축에 소득 순위에 따른 인구의 누적 백분율, 세로축에는 각 가구의 소득을 균등화하여 개인화한 균등화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한 그래프이다.

- 지니계수는 0(완전균등)에서 1(완전불균등)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분배상태를,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며 소득불평등의 국제 비교에 많이 활용된다.
- 지니계수 그래프



측정 산식

- $\frac{1}{n}\left(n + 1 - 2\left(\frac{\sum_{i=1}^{n}(n + 1 - i)y_i}{\sum_{i=1}^{n} y_i}\right)\right)^*$

* n: 전체 인구수, y_i: i번째 인구의 소득, i: 1, ···, n

유의사항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OECD 국제기준(Wave6)대로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소득 기준을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Wave7 변경사항: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

표 7-20 소득별 · 자료원별 지니계수 (2008~2023)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0.344	0.345	0.341	0.342	0.338	0.336	0.341	0.341	0.353	-	-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0.418	0.411	0.401	0.397	0.396	0.402	0.406	0.402	0.404	0.405	0.405	0.396	0.392
처분가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0.314	0.314	0.310	0.311	0.307	0.302	0.302	0.295	0.304	-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0.387	0.383	0.370	0.361	0.350	0.353	0.352	0.342	0.336	0.328	0.329	0.324	0.323

주: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는 2016년까지 공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를 공표함.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부터 횡단면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그룹별 5년 주기로 순환되는 연동패널이 도입됨.
2011~2014년 과거계열은 소득분배지표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일부 행정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과거계열을 통계적 추정방법을 통해 보완 작성하여 공표함.
자료: 통계청, 지니계수(가계금융복지조사). (http://kosis.kr에서 2025.6.18. 인출)
통계청, 지니계수(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5.6.1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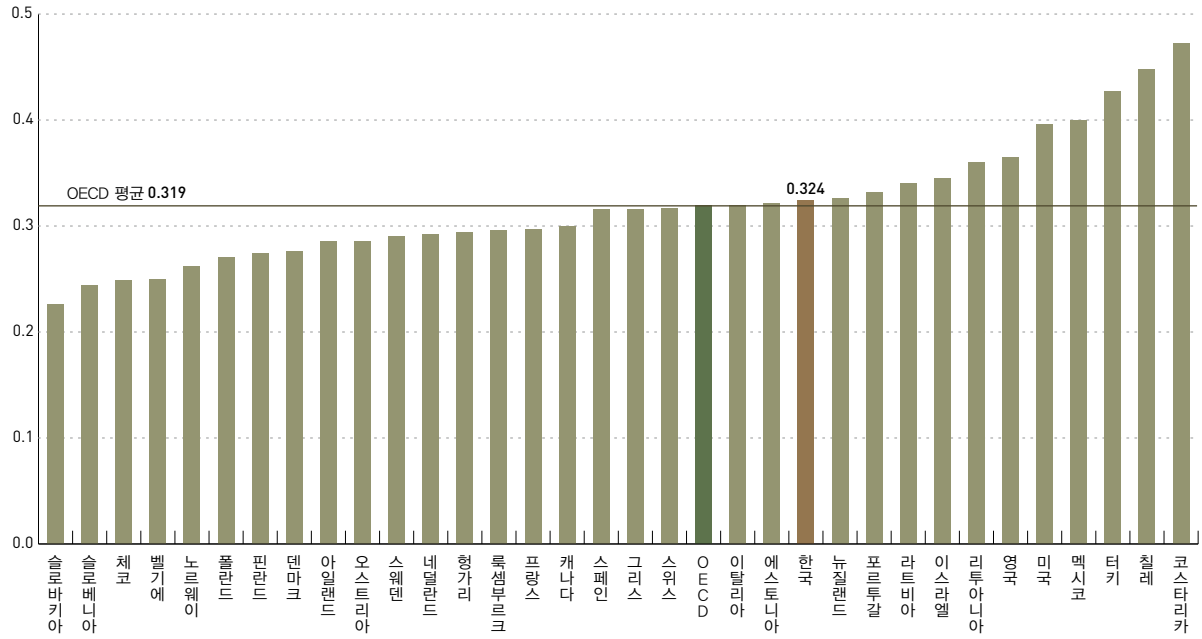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6	분기, 1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953	2023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	2023	1년

참고문헌

- OECD. Data Explorer,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그림 7-8 OECD 국가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비교 (2022)



주: 2022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만 포함
자료: OECD, Data Explorer, Income distribution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18. 인출)

07
대 표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Total recipients and take-up rates of basic (old-age) pension allowance

지표 정의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에 대해 매월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이다.

•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인들의 소득 일정부문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text{기초연금 수급자 수} \div \text{65세 이상 노인 수} \times 100$$

표 7-21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9~2023)

(단위: 천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5,268	5,506	5,701	5,980	6,251	6,521	6,771	6,987	7,346	7,639	8,014	8,482	8,835	9,250	9,712
수급자 수	3,630	3,728	3,818	3,933	4,066	4,353	4,495	4,581	4,869	5,126	5,346	5,660	5,973	6,239	6,509
수급률	68.9	67.7	67.0	65.8	65.0	66.8	66.4	65.6	66.3	67.1	66.7	66.7	67.6	67.4	67.0

주: 1)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인구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한 수치임.
2) 2009~2013년은 기초노령연금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2024.

표 7-22 성별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9~2023)

(단위: 천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
남성	1,259 (59.1)	1,302 (58.1)	1,341 (57.5)	1,386 (56.2)	1,442 (55.5)	1,580 (57.9)	1,644 (57.7)	1,684 (56.9)	1,822 (58.2)	1,952 (59.7)	2,057 (59.5)	2,205 (59.9)	2,358 (61.1)	2,484 (61.1)	2,610 (60.7)
여성	2,371 (75.6)	2,426 (74.3)	2,478 (73.6)	2,547 (72.5)	2,624 (71.8)	2,774 (73.1)	2,851 (72.7)	2,898 (71.7)	3,046 (72.1)	3,173 (72.5)	3,289 (72.0)	3,454 (71.7)	3,615 (72.4)	3,755 (72.2)	3,898 (71.7)

주: 1) 각 연도 12월 기준임.
2) 2009~2013년은 기초노령연금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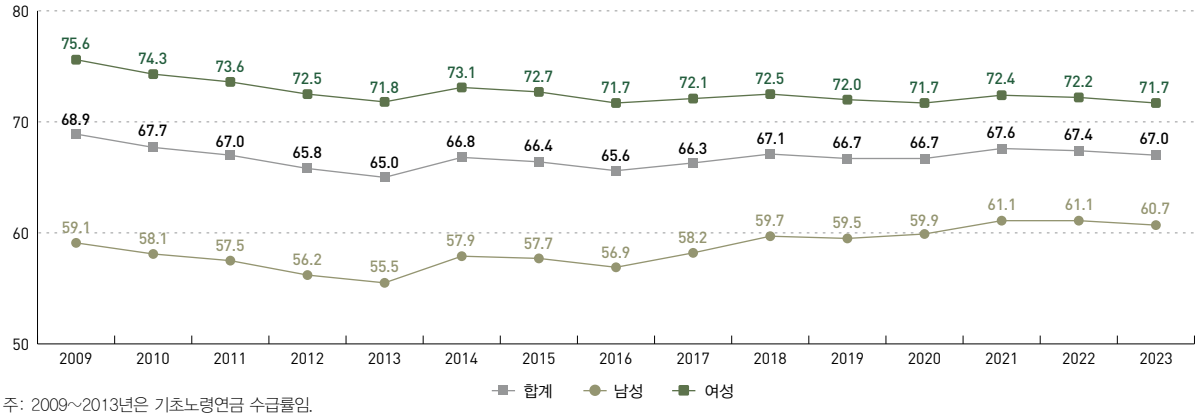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2008	2014	1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2015	2023	1년

그림 7-9 성별 기초연금 수급률 (200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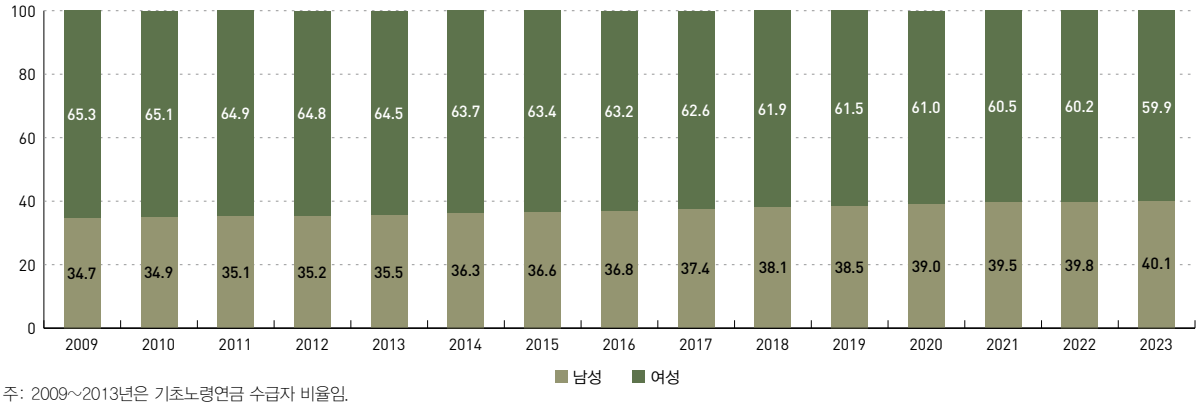
(단위: %)



주: 2009~2013년은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2024.

그림 7-10 성별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200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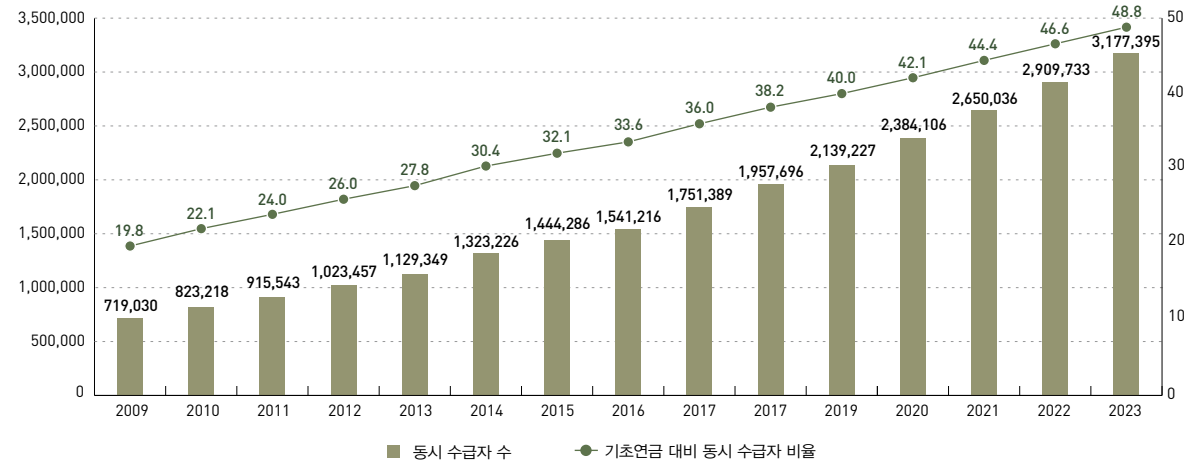
(단위: %)



주: 2009~2013년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2024.

그림 7-1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2009~2023)

(단위: 명, %)



주: 2008~2013년은 기초노령연금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2024.

08
대 표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National pension participants by insurance type

지표 정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노령 및 장애 발생 그리고 사망 등으로 소득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국민연금 가입자 지표를 통해 최근 100세 시대를 바라보며 노후준비가 점점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가입종별 가입자 수}}{\text{전체 가입자 수}} \times 100$

표 7-23 연도별 · 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1999	16,261,889 (100.0)	5,238,149 (32.2)	5,309,735 (32.7)	5,512,567 (33.9)	32,868 (0.2)	168,570 (1.0)
2010	19,228,875 (100.0)	10,414,780 (54.2)	3,574,709 (18.6)	5,099,783 (26.5)	90,222 (0.5)	49,381 (0.3)
2011	19,885,911 (100.0)	10,976,501 (55.2)	3,775,873 (19.0)	4,899,557 (24.6)	171,134 (0.9)	62,846 (0.3)
2012	20,329,060 (100.0)	11,464,198 (56.4)	3,903,217 (19.2)	4,665,179 (22.9)	207,890 (1.0)	88,576 (0.4)
2013	20,744,780 (100.0)	11,935,759 (57.5)	3,938,993 (19.0)	4,575,441 (22.1)	177,569 (0.9)	117,018 (0.6)
2014	21,125,135 (100.0)	12,309,856 (58.3)	3,873,696 (18.3)	4,571,014 (21.6)	202,536 (1.0)	168,033 (0.8)
2015	21,568,354 (100.0)	12,805,852 (59.4)	3,791,244 (17.6)	4,511,565 (20.9)	240,582 (1.1)	219,111 (1.0)
2016	21,832,524 (100.0)	13,192,436 (60.4)	3,886,930 (17.8)	4,173,269 (19.1)	296,757 (1.4)	283,132 (1.3)
2017	21,824,172 (100.0)	13,459,240 (61.7)	3,865,800 (17.7)	3,826,117 (17.5)	327,723 (1.5)	345,292 (1.6)
2018	22,313,869 (100.0)	13,817,963 (61.9)	3,993,598 (17.9)	3,701,287 (16.6)	330,422 (1.5)	470,599 (2.1)
2019	22,216,229 (100.0)	14,157,574 (63.7)	3,955,403 (17.8)	3,276,660 (14.7)	328,727 (1.5)	497,865 (2.2)
2020	22,107,028 (100.0)	14,320,025 (64.8)	3,800,104 (17.2)	3,098,014 (14.0)	362,328 (1.6)	526,557 (2.4)
2021	22,347,586 (100.0)	14,580,825 (65.2)	3,742,040 (16.7)	3,084,969 (13.8)	396,632 (1.8)	543,120 (2.4)
2022	22,497,819 (100.0)	14,785,761 (65.7)	3,781,550 (16.8)	3,064,194 (13.6)	365,487 (1.6)	500,827 (2.2)
2023	22,384,787 (100.0)	14,812,062 (66.2)	3,769,862 (16.8)	2,944,252 (13.2)	324,601 (1.5)	534,010 (2.4)

주1: 납부예외자 포함
주2: 1)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2)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3)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를 의미
4)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65세에 달할 때까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를 의미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88	2023	1년

표 7-24 시도별 · 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23)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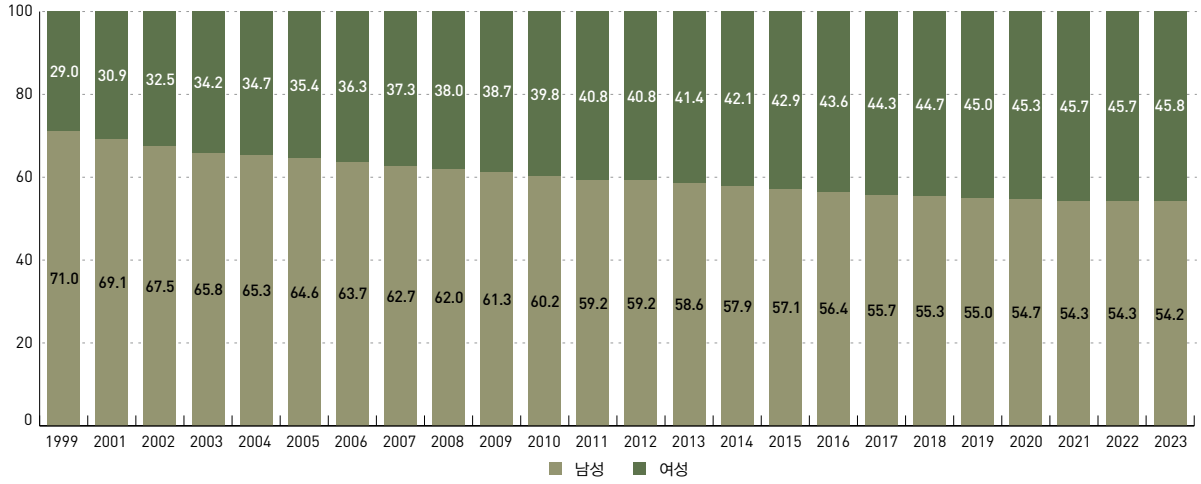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가입자	6,061	1,203	841	1,106	513	599	435	121	5,652	535	635	879	603	691	996	1,241	274
사업장	4,553	724	493	653	305	389	287	79	3,632	326	417	584	358	433	635	783	163
지역	1,335	427	309	409	186	185	133	36	1,793	184	192	260	216	222	318	409	102
임의	72	19	15	16	9	11	7	4	99	7	7	10	9	8	13	16	2
임의(계속)	100	32	24	28	14	14	8	2	128	18	19	24	21	27	31	34	8

주: 납부예외자 포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3년 국민연금통계연보(제35호), 2024. (http://kosis.or.kr에서 2025.6.18. 인출)

그림 7-12 연도별 ·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 (1999~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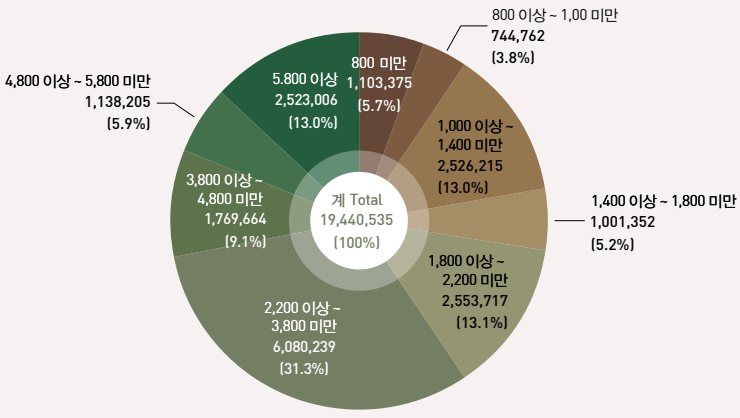


주: 납부예외자 포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5.3.18. 인출)

그림 7-13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 (2023)

(단위: 천 원, 명)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3년 국민연금통계, 2024. (http://kosis.or.kr에서 2025.6.18. 인출)

09
대 표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Number of all beneficiaries in national pension by type of benefit

지표 정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급여유형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각 급여종별 수급자 수}}{\text{전체 수급자 수}} \times 100$

표 7-25 연도별 · 종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1998	2004	2008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금	노령연금	112,946 (56.3)	1,156,098 (80.8)	1,949,867 (82.1)	2,748,455 (82.8)	2,840,660 (82.3)	2,947,422 (81.9)	3,151,349 (82.0)	3,412,350 (82.3)	3,706,516 (82.6)	3,778,824 (82.0)	4,090,497 (82.2)	4,468,126 (82.7)	4,894,452 (83.2)	5,396,729 (83.8)	5,543,769 (83.4)
	장애연금	13,245 (6.6)	47,260 (3.3)	72,166 (3.0)	75,934 (2.3)	75,041 (2.2)	75,387 (2.1)	75,688 (2.0)	75,497 (1.8)	75,486 (1.7)	75,734 (1.6)	77,872 (1.6)	78,079 (1.4)	77,726 (1.3)	76,718 (1.2)	75,616 (1.1)
	유족연금	74,334 (37.1)	226,806 (15.9)	353,594 (14.9)	496,073 (14.9)	536,161 (15.5)	575,706 (16.0)	617,084 (16.1)	659,124 (15.9)	705,619 (15.7)	756,425 (16.4)	808,253 (16.2)	857,698 (15.9)	908,731 (15.5)	968,703 (15.0)	1,024,648 (15.4)
	소계	200,525	1,430,164	2,375,627	3,320,462	3,451,862	3,598,515	3,844,121	4,146,971	4,487,621	4,610,983	4,976,622	5,403,903	5,880,909	6,442,150	6,644,033
일시금	반환일시금	1,061,643 (99.4)	100,296 (90.0)	138,456 (87.4)	176,531 (89.3)	180,233 (89.6)	147,035 (86.0)	180,705 (87.2)	208,620 (87.7)	203,449 (89.0)	159,967 (87.2)	188,851 (88.5)	186,422 (87.8)	191,240 (87.6)	201,608 (86.9)	177,759 (84.4)
	장애일시보상금	1,625 (0.2)	3,609 (3.2)	4,902 (3.1)	2,862 (1.4)	2,993 (1.5)	2,651 (1.6)	2,597 (1.3)	2,577 (1.1)	2,916 (1.3)	3,072 (1.7)	3,028 (1.4)	2,904 (1.4)	2,897 (1.3)	2,722 (1.2)	2,911 (1.4)
	사망일시금	4,529 (0.4)	7,561 (6.8)	15,129 (9.5)	18,235 (9.2)	18,025 (9.0)	21,219 (12.4)	23,949 (11.6)	26,578 (11.2)	22,240 (9.7)	20,354 (11.1)	21,509 (10.1)	22,976 (10.8)	24,159 (11.1)	27,663 (11.9)	29,917 (14.2)
	소계	1,067,797	111,466	158,487	197,628	201,251	170,905	207,251	237,775	228,605	183,393	213,388	212,302	218,296	231,993	210,587
총계		1,268,984	1,541,630	2,534,114	3,518,090	3,653,113	3,769,420	4,051,372	4,384,746	4,716,226	4,794,376	5,190,010	5,616,205	6,099,205	6,674,143	6,854,620

주: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외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말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8. 인출)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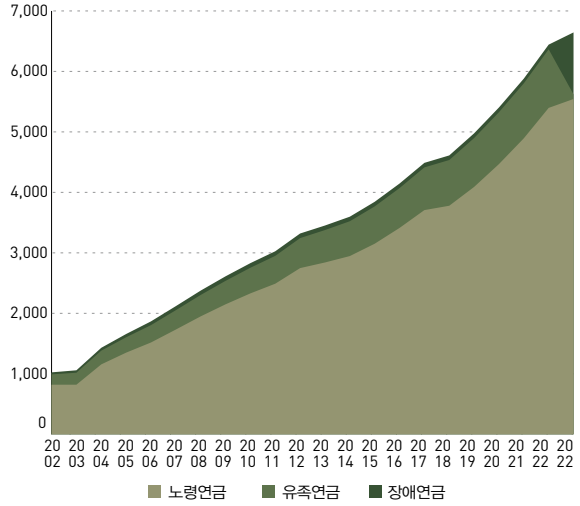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88	2023	1년

참고문헌

-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7-14 종별 국민연금 수급자 수 (2002~2023)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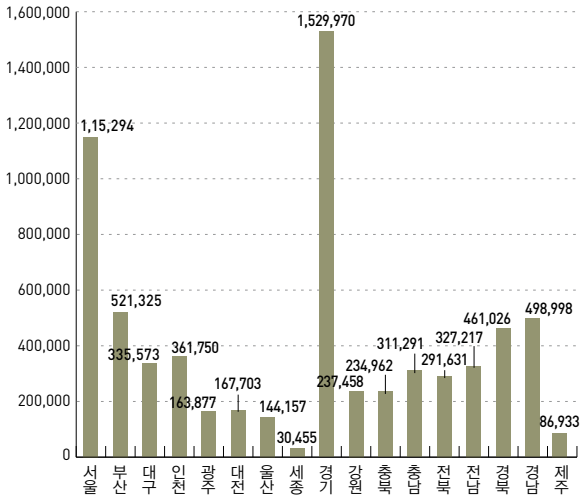


주: 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제외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8. 인출)

그림 7-15 시도별 국민연금 수급자 수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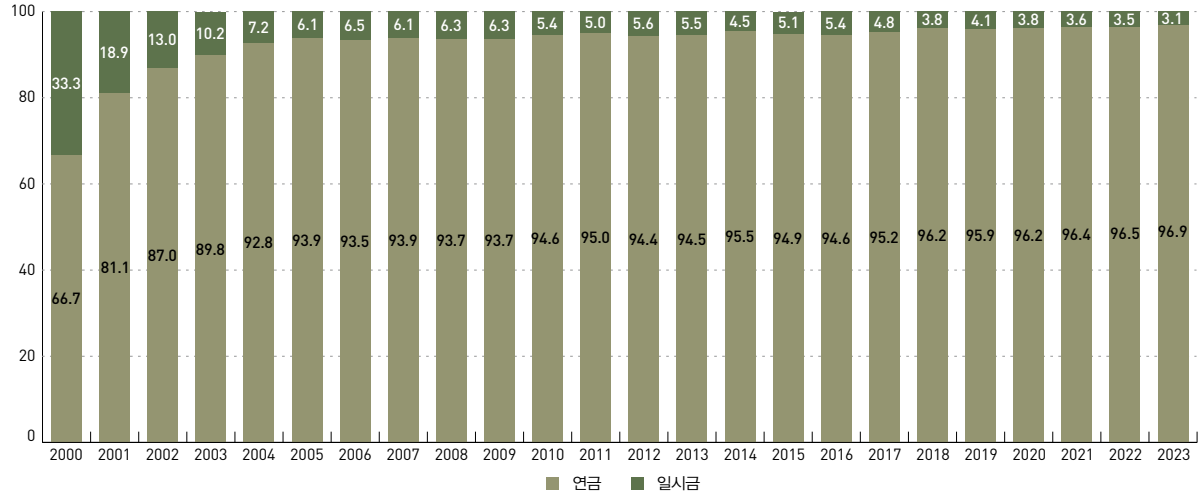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3년 국민연금통계, 2024. (http://kosis.or.kr에서 2025.6.18. 인출)

그림 7-16 지급유형별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 (200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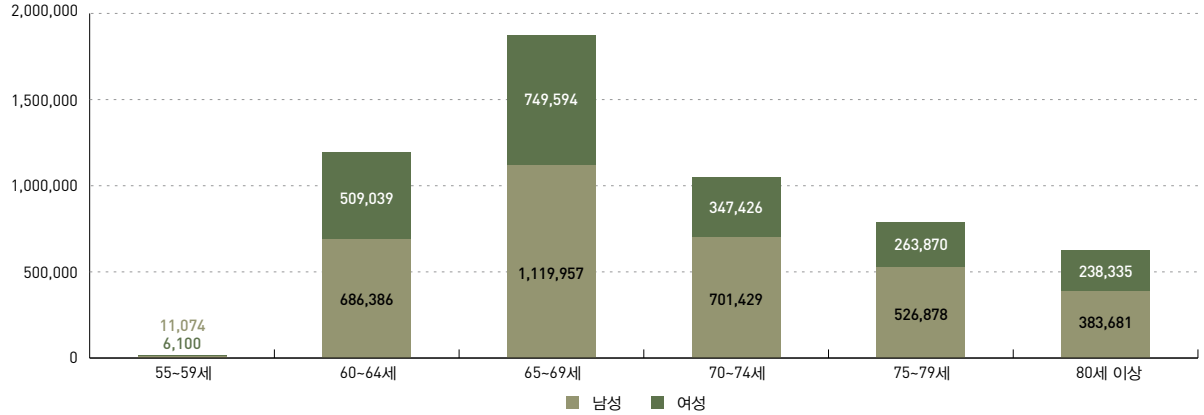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8. 인출)

그림 7-17 연령별 · 성별 노령연금 수급자 분포 (2023)

(단위: 명)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3년 국민연금통계, 2024. (http://kosis.or.kr에서 2025.6.18. 인출)

09-1
연 관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Public pension take-up rates for people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의 합계를 65세 이상 추계인구로 나눈 비율임.

측정 산식

- $\frac{\text{각 연금 65세 이상 수급자의 합}}{\text{65세 이상 추계 인구}} \times 100$

표 7-26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10~2023)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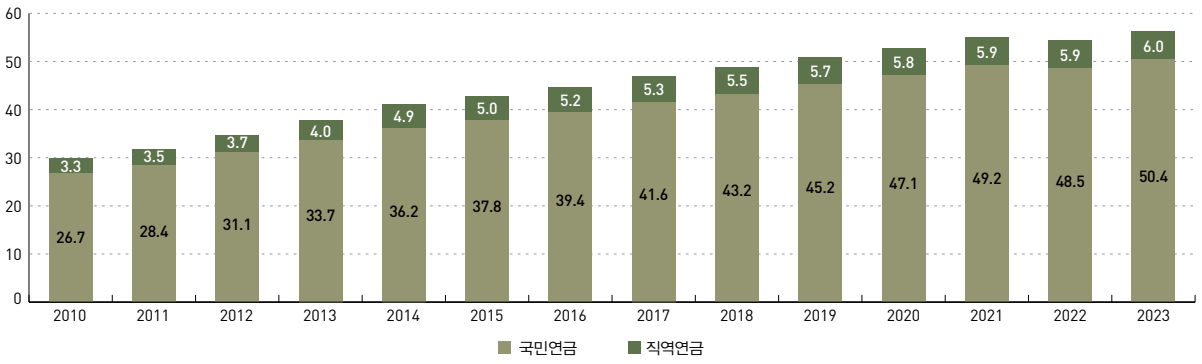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606	1,800	2,051	2,305	2,580	2,802	3,016	3,314	3,585	3,914	4,315	4,723	4,883	5,326
	(30.0)	(31.8)	(34.8)	(37.6)	(41.1)	(42.8)	(44.6)	(46.9)	(48.7)	(50.9)	(52.9)	(55.1)	(54.4)	(56.4)
국민연금	1,428	1,606	1,836	2,067	2,274	2,474	2,664	2,937	3,180	3,479	3,842	4,215	4,353	4,760
	(26.7)	(28.4)	(31.1)	(33.7)	(36.2)	(37.8)	(39.4)	(41.6)	(43.2)	(45.2)	(47.1)	(49.2)	(48.5)	(50.4)
직역연금	178	194	215	238	306	328	351	377	405	436	473	508	530	566
	(3.3)	(3.5)	(3.7)	(4.0)	(4.9)	(5.0)	(5.2)	(5.3)	(5.5)	(5.7)	(5.8)	(5.9)	(5.9)	(6.0)
공무원연금	156	170	188	206	222	240	257	280	300	323	352	379	-	-
	(2.9)	(3.0)	(3.2)	(3.4)	(3.5)	(3.7)	(3.8)	(4.0)	(4.1)	(4.2)	(4.3)	(4.4)	-	-
사학연금	22	24	27	32	35	38	42	43	47	52	59	65	-	-
	(0.4)	(0.4)	(0.5)	(0.5)	(0.6)	(0.6)	(0.6)	(0.6)	(0.6)	(0.7)	(0.7)	(0.8)	-	-
군인연금	-	-	-	-	49	51	53	55	58	60	62	64	-	-
	-	-	-	-	(0.8)	(0.8)	(0.8)	(0.8)	(0.8)	(0.8)	(0.8)	(0.8)	-	-

주: 1) 공적연금 수급률 = 공적연금 수급자 수(65세 이상) ÷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
2) 각 연금별 노령(퇴직, 퇴역)연금 및 장애(장해, 상이)연금, 유족(퇴직 유족)연금 수급자 수의 합계임.
3) 군인연금은 2014년부터 포함됨.
4) 직역연금: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포함

자료: 1) 2008-2021: 통계청, 고령자통계, 각 연도. (https://kostat.go.kr에서 2025.6.18. 인출)
2) 2022 이후: 통계청, 고령자통계연보, 각 연도. (https://kostat.go.kr에서 2025.8.27. 인출)

그림 7-18 연금종류별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2010~2023)

(단위: %)



주: 1) 공적연금 수급률 = 공적연금 수급자 수(65세 이상) ÷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
2) 각 연금별 노령(퇴직, 퇴역)연금 및 장애(장해, 상이)연금, 유족(퇴직 유족)연금 수급자 수의 합계임.
3) 군인연금은 2014년부터 포함됨.
4) 직역연금: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포함

자료: 1) 2008-2021: 통계청, 고령자통계, 각 연도. (https://kostat.go.kr에서 2025.6.18. 인출).
2) 2022 이후: 통계청, 고령자통계연보, 각 연도. (https://kostat.go.kr에서 2025.8.27. 인출).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1988	2023	1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	2022	1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	1998	2022	1년
국방부	군인연금통계	-	2022	1년

10 대 표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Average benefit amount in national pension by type of benefit

지표 정의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상실과 주소득자의 사망, 그리고 본인이 경험하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각각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지표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금수급액 수준을 알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총 연금지급액}}{\text{전체 수급자 수}}$

표 7-27 연도별 · 종별 국민연금 연평균 급여액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금	소계	총 급여액	10,837,243,194	12,361,972,797	13,087,467,966	14,342,682,741	16,107,102,923	18,155,323,381	19,800,819,509	21,711,563,871	21,711,563,871	28,080,663,753	32,817,225,890	37,744,089,387
		평균 급여액	3,264	3,581	3,637	3,731	3,884	4,046	4,294	4,363	4,018	4,775	5,094	5,681
	노령	총 급여액	9,327,086,191	10,705,594,320	11,295,917,329	12,415,110,788	14,047,956,805	15,931,616,455	17,384,044,152	19,069,257,910	19,069,257,910	25,083,265,801	29,544,090,373	34,070,894,833
		평균 급여액	3,394	3,769	3,832	3,940	4,117	4,298	4,600	4,662	4,268	5,125	5,474	6,146
	장애	총 급여액	314,462,857	326,167,915	331,603,350	336,567,621	337,332,457	349,016,676	359,198,132	378,719,802	378,719,802	384,943,732	391,376,853	416,840,526
		평균 급여액	4,141	4,347	4,399	4,447	4,468	4,624	4,743	4,863	4,850	4,953	5,101	5,513
	유족	총 급여액	1,195,694,146	1,330,210,562	1,459,947,287	1,591,004,332	1,721,813,661	1,874,690,250	2,057,577,225	2,263,586,159	2,263,586,159	2,612,454,220	2,881,758,664	3,256,354,028
		평균 급여액	2,410	2,481	2,536	2,578	2,612	2,657	2,720	2,801	2,639	2,875	2,975	3,178
일시금	소계	총 급여액	713,511,379	750,778,622	692,474,556	841,327,088	961,056,130	928,562,845	951,864,390	1,052,779,601	1,052,779,601	1,056,127,419	1,202,850,174	1,296,138,017
		평균 급여액	3,610	3,731	4,052	4,059	4,042	4,062	5,190	4,934	4,959	4,838	5,185	6,155
	장애	총 급여액	34,653,608	38,736,640	34,471,226	35,522,321	36,048,008	42,130,805	46,669,363	48,846,663	48,846,663	49,745,990	49,853,238	58,053,073
		평균 급여액	12,108	12,942	13,003	13,678	13,988	14,448	15,192	16,132	2,126	17,172	18,315	19,943
	반환	총 급여액	648,045,442	679,144,836	618,468,248	759,703,922	874,649,129	842,325,211	859,081,687	953,068,325	953,068,325	940,751,259	1,074,442,329	1,146,956,544
		평균 급여액	3,671	3,768	4,206	4,204	4,193	4,140	5,370	5,047	328,192	4,919	5,329	6,452
	사망	총 급여액	30,812,329	32,897,146	39,535,082	46,100,845	50,358,993	44,106,829	46,113,340	50,864,613	50,864,613	65,630,170	78,554,607	91,128,400
		평균 급여액	1,690	1,825	1,863	1,925	1,895	1,983	2,266	2,365	273	2,717	2,840	3,046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9.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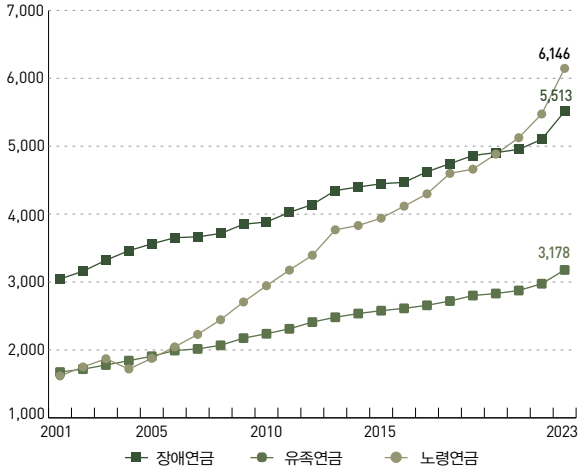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1988	2023	1년

참고문헌 •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7-19 급여종류별 연평균 급여액 (200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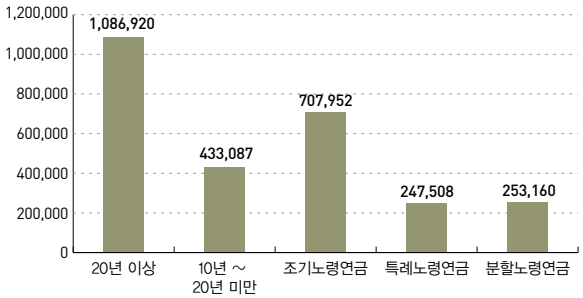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주: 통계연보 자료 기반으로 가공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9. 인출)

그림 7-20 가입 기간별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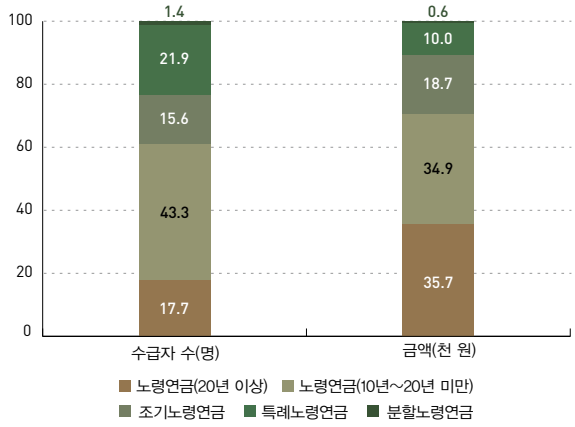
(단위: 원)



주1: 1) 소득활동 :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세후 월평균 국민연금 A값에 준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2) 조기노령연금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거나 세후 월평균 국민연금 A값에 준하는 소득에 미달할 경우, 정상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
3) 분할연금 :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경우, 상대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1세가 되면, 상대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
주2: 2024.12.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4년 국민연금 공표통계, 2025. (https://www.nps.or.kr에서 2025.6.18. 인출)

그림 7-21 가입기간별 노령연금 수급자 및 월평균 지급액 비중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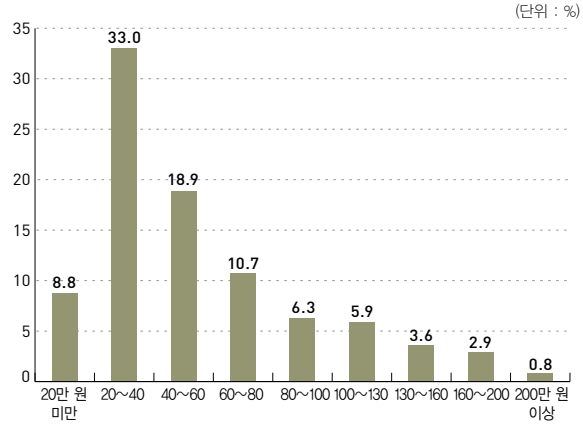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4년 국민연금 공표통계, 2025. (https://www.nps.or.kr에서 2025.6.18. 인출)

그림 7-22 월평균 급여액 수준별 연금 수급자 분포 (2024)

(단위 : %)



주: 1) 월평균 급여액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 연금액이 반영되며, 특례, 분할연금은 제외됨.
2) 2024.12.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4년 국민연금 공표통계, 2025. (https://www.nps.or.kr에서 2025.6.18. 인출)

8

건강

01 기대수명
02 조사망률
03 저체중아 발생률
04 자살률
05 10대 다빈도 상병
06 현재 흡연율
07 고위험 음주율
08 비만율
09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10 평균 재원일수
11 1인당 의사 진료 건수
1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13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14 의료보장 적용 인구
15 의사 수
16 병상 수
17 GDP 대비 경상의료비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건강수준	기대수명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인지율
	조사망률	연령표준화사망률
		영아사망률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저체중아 발생률	조산율
	자살률	정신장애 유병률
		우울장애 유병률
	10대 다빈도 상병	암 발생률
		뇌졸중 의사진단 경험률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건강관리	현재 흡연율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청소년 현재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연간 음주율
		청소년 현재 음주율
		1인당 알코올소비량
	비만율	청소년 비만율
		걷기실천율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의료이용	평균 재원일수	
	1인당 의사 진료 건수	1인당 외래진료 수진율
		산전수진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1세 대상
		소아 ·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만 1~18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의료자원	의료보장 적용 인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의사 수	면허의료인 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GDP 대비 경상의료비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비중
		건강보험 급여비
		건강보험 보장률

01
대 표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지표 정의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몇 년을 더 생존할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기대치로, 0세에 대한 기대여명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기대여명(Life expectancy at age x)은 어느 연령(x)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로 몇 년을 더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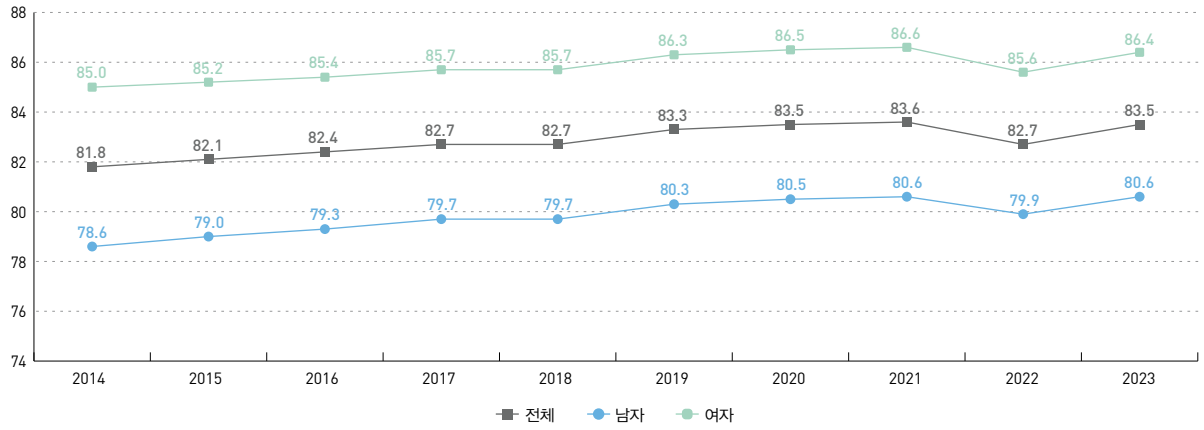
- 기대수명은 보건, 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장래인구추계 작성, 국가 간 경제, 사회, 보건 수준의 비교에 널리 이용된다.

측정 산식

$$\frac{\text{0세 이후의 총 생존연수 (정지인구)}}{\text{0세 생존자 수}}$$

그림 8-1 성별 기대수명 (2014~2023)

(단위: 년)



주: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1970~2015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5.3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생명표*	1970	2023	1년

*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1970~2015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 시도별 통계의 주기는 3년임.

참고문헌

-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표 8-1 시도별 · 성별 · 연도별 기대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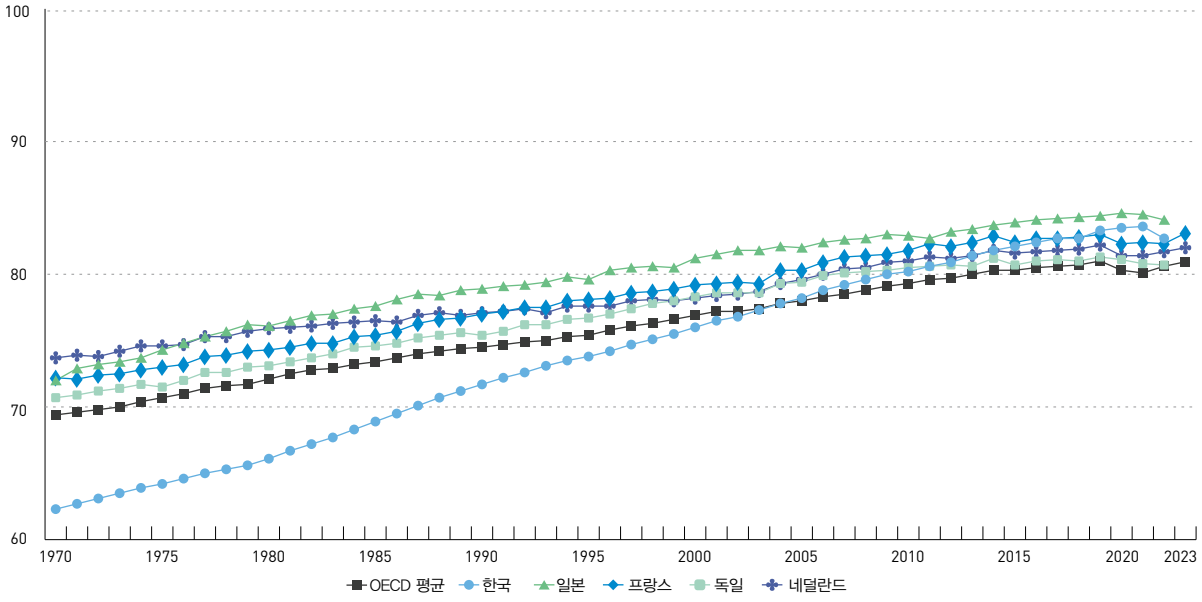
(단위: 년)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4	2017	2020	2023	2014	2017	2020	2023	2014	2017	2020	2023
전국	81.8	82.7	83.5	83.5	78.6	79.7	80.5	80.6	85.0	85.7	86.5	86.4
서울	83.0	84.1	84.8	85.0	80.1	81.2	82.0	82.0	85.8	87.0	87.6	88.0
부산	81.0	81.9	82.7	82.6	77.9	78.9	79.6	79.7	84.1	84.9	85.9	85.6
대구	81.4	82.2	82.9	83.2	78.4	79.2	79.9	80.2	84.3	85.1	85.9	86.2
인천	81.4	82.4	82.9	83.1	78.3	79.3	79.9	80.1	84.5	85.6	86.0	86.1
광주	81.4	82.0	83.0	83.1	78.3	79.3	80.2	80.3	84.4	84.8	85.9	86.0
대전	82.0	82.9	83.5	83.6	79.2	80.5	80.7	81.1	84.8	85.4	86.4	86.1
울산	80.7	82.0	82.7	82.9	78.2	79.1	80.4	80.4	83.2	84.9	85.1	85.5
세종	81.3	83.0	84.4	83.7	77.7	80.0	82.3	81.3	84.8	86.1	86.6	86.2
경기	82.2	83.1	83.9	83.9	79.2	80.4	81.2	81.2	85.2	85.7	86.7	86.6
강원	80.9	82.0	82.8	82.8	77.2	78.4	79.6	79.5	84.6	85.7	86.0	86.2
충북	81.2	81.9	82.6	82.4	77.6	78.8	79.5	79.4	84.8	84.9	85.7	85.4
충남	81.3	82.2	83.2	83.0	77.8	78.9	80.1	80.0	84.9	85.6	86.3	86.1
전북	81.4	82.3	83.3	83.1	77.8	79.0	80.1	80.0	85.0	85.5	86.5	86.2
전남	81.2	82.0	82.8	82.5	77.1	78.4	79.1	79.3	85.3	85.6	86.4	85.8
경북	81.1	82.0	82.6	82.7	77.6	78.6	79.3	79.5	84.7	85.5	85.9	85.9
경남	80.9	81.9	82.8	82.8	77.3	78.6	79.5	79.7	84.5	85.2	86.0	85.9
제주	82.1	82.7	84.0	83.7	78.3	78.7	80.2	79.7	85.9	86.7	87.7	87.7

주: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1970~2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5.30. 인출)

그림 8-2 OECD 주요 국가의 기대수명 (1970~2023)

(단위: 년)



주: 1) 2023년 OECD 평균은 2023년(또는 최근 연도) 통계가 있는 38개국의 평균임.
2) 한국, 일본, 독일은 2022년까지 공표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07. 인출)

01-1
연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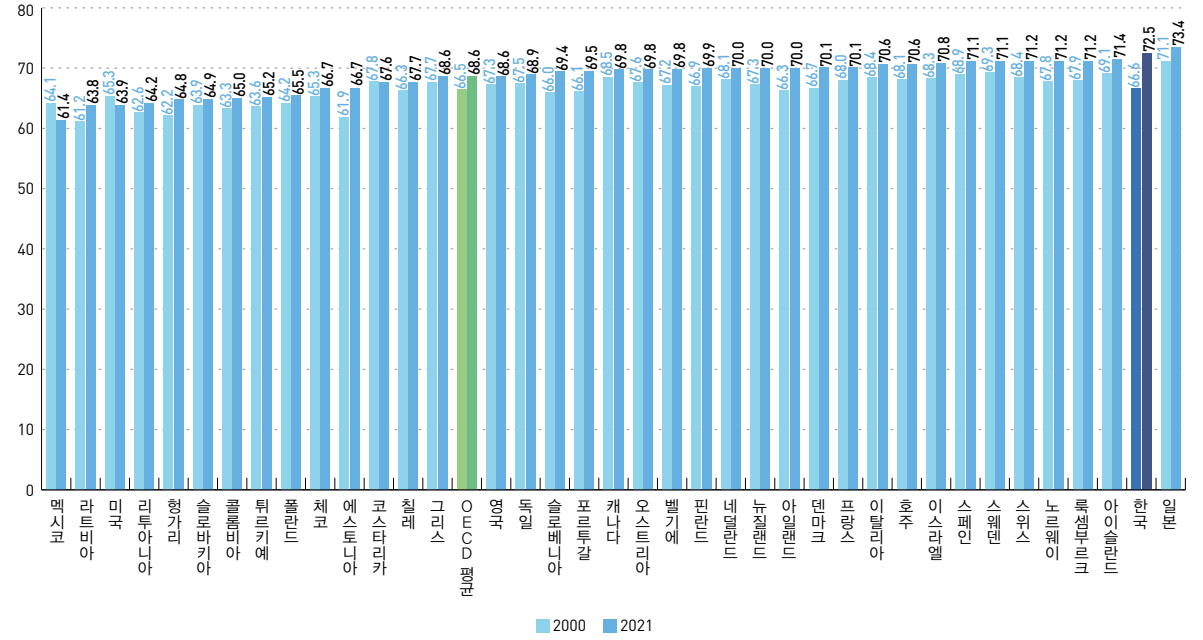
건강수명
Healthy life expectancy

지표 정의
건강수명(HALE; Healthy Life Expectancy)은 장애나 부상으로 인해 줄어든 생명 연수를 고려한 '온전히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수명이다.

측정 산식
• 출생 시점부터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생존 연수

그림 8-3 연도별 OECD 국가의 건강수명

(단위: 년)



자료: WHO, Healthy life expectancy (HALE) at birth (years), 각 연도. (https://www.who.int/data/gho에서 2025.7.0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	2021	부정기

참고문헌
•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2025.

01-2
연 관

주관적 건강인지율

Perceived health statu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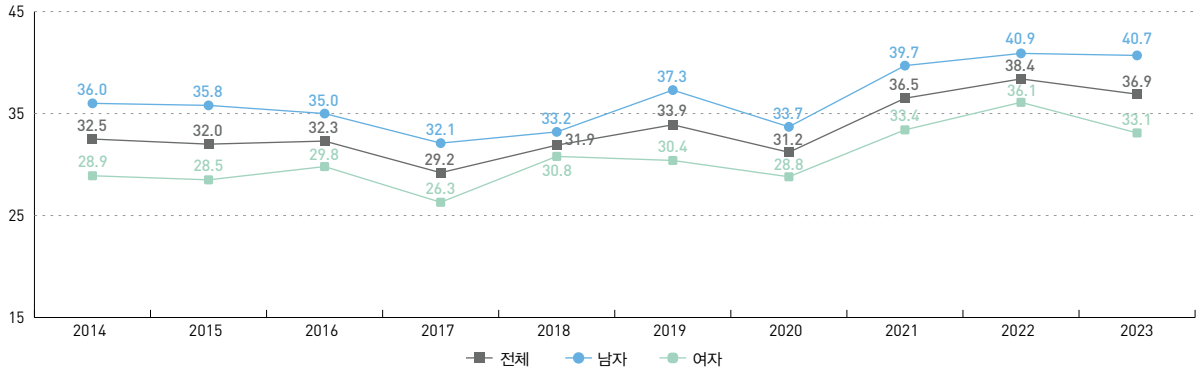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평소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4 성별 주관적 건강 인지율 (2014~2023)

(단위: %)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2. 인출)

표 8-2 일반 특성별 주관적 건강 인지율 (2014~2023)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4	32.5	42.9	33.3	32.1	27.1	23.2	21.4	33.1	28.4	26.5	29.9	31.7	35.2	39.7
2015	32.0	40.3	31.6	31.8	29.8	26.7	19.8	32.3	31.8	25.5	31.5	31.0	34.4	38.1
2016	32.3	43.6	31.1	31.3	28.1	26.2	20.6	33.3	26.4	28.0	30.4	32.1	33.4	37.7
2017	29.2	35.3	32.5	28.9	25.2	22.0	17.9	29.7	27.2	22.4	25.3	33.1	27.6	37.5
2018	31.9	40.8	33.1	29.4	29.4	26.2	20.6	32.4	29.0	26.0	28.5	32.8	34.2	38.7
2019	33.9	41.6	37.0	31.7	31.7	26.7	20.3	34.6	29.1	25.3	31.1	35.3	38.6	39.0
2020	31.2	40.9	30.1	29.9	27.1	28.2	21.0	31.3	31.8	26.2	30.3	30.6	31.7	36.5
2021	36.5	46.1	38.6	34.0	31.3	32.0	24.2	36.0	42.7	29.6	36.0	33.1	38.9	45.4
2022	38.4	49.3	41.4	35.2	32.7	30.2	27.1	39.4	31.8	32.2	35.5	37.1	41.4	45.5
2023	36.9	49.2	37.2	33.2	33.3	30.0	25.8	36.9	37.9	30.0	34.4	35.4	41.2	43.6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3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2
대 표

조사망률

Crude death rate

지표 정의

성별과 연령에 무관하게 1년간 발생한 총사망자 수를 그해 연앙인구*로 나눈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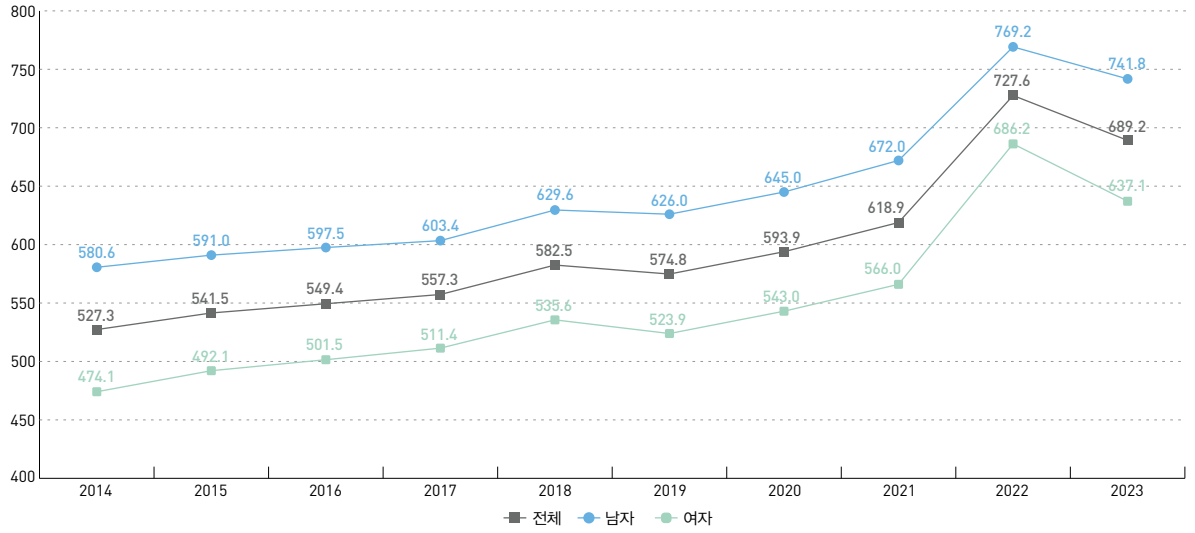
• 사망 수준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사망률은 한 나라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동시에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1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 수}}{\text{해당 연도 연앙인구}} \times 100{,}000$

그림 8-5 성별 조사망률 (2014~2023)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23	1년

참고문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그해의 중간일인 7월 1일 기준 인구수

표 8-3 시도별 · 성별 · 연도별 조사망률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3	2018	2023	2013년 대비 2023년	2013	2018	2023	2013년 대비 2023년	2013	2018	2023	2013년 대비 2023년
전국	526.6	582.5	689.2	23.6	579.8	629.6	741.8	21.8	473.4	535.6	637.1	25.7
서울	420.1	468.9	551.1	23.8	479.3	538.1	639.7	25.1	362.4	402.7	468.0	22.6
부산	575.3	660.3	799.2	28.0	642.1	734.2	896.7	28.4	509.7	588.7	706.3	27.8
대구	504.7	574.4	697.8	27.7	560.8	629.0	758.7	26.1	449.0	520.8	639.0	29.7
인천	460.2	524.0	614.8	25.1	507.2	573.6	670.7	24.4	412.8	474.2	559.0	26.2
광주	471.4	535.7	624.1	24.5	505.9	556.3	669.0	24.4	437.5	515.5	580.4	24.6
대전	437.2	498.4	603.1	27.5	472.9	536.2	636.7	25.7	401.5	460.7	569.6	29.5
울산	425.4	463.4	550.4	22.7	446.5	489.1	586.7	23.9	403.2	436.3	512.2	21.3
세종	695.5	425.3	415.1	-67.5	748.3	427.1	432.3	-73.1	640.7	423.5	397.9	-61.0
경기	422.5	466.9	553.3	23.6	463.8	504.7	595.8	22.2	380.7	428.6	510.4	25.4
강원	704.6	781.2	931.6	24.4	789.0	849.4	1,001.0	21.2	619.0	712.1	861.5	28.1
충북	665.3	714.4	846.9	21.4	710.4	764.0	877.2	19.0	619.5	663.7	815.6	24.0
충남	684.3	749.9	885.9	22.8	753.9	798.2	913.9	17.5	613.0	699.9	856.6	28.4
전북	725.1	793.6	979.0	25.9	793.7	823.0	1,010.9	21.5	657.1	764.4	947.4	30.6
전남	862.0	917.3	1,095.1	21.3	947.4	951.9	1,100.7	13.9	776.6	882.6	1,089.4	28.7
경북	755.2	835.8	988.3	23.6	817.7	875.6	1,012.4	19.2	692.0	795.6	963.8	28.2
경남	605.0	676.8	810.5	25.4	643.7	699.9	837.0	23.1	565.8	653.3	783.7	27.8
제주	567.9	595.7	694.8	18.3	607.7	613.5	753.3	19.3	528.0	577.7	636.2	17.0

주: 2013년 대비 2023년 비율은 2023년 조사망률에서 2013년 조사망률을 차감한 수치를 분자로 2013년 조사망률을 분모로 사용하여 산출함.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2. 인출)

02-1
연 관

연령표준화사망률

Age-adjusted mortality rat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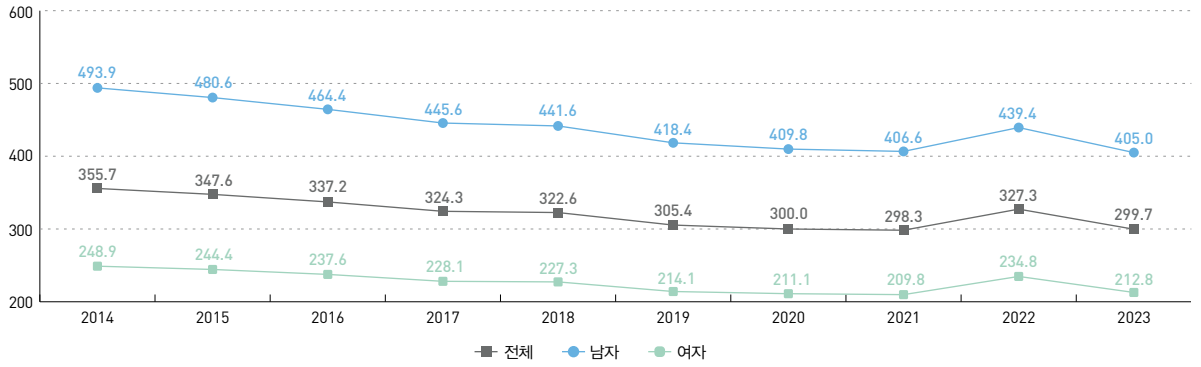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거한 사망률이다. 이를 위해 표준인구는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남녀 전체)를 사용한다.

측정 산식

$$\frac{\sum(\text{연령별 사망률} \times \text{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text{표준인구}} \times 100{,}000$$

그림 8-6 성별 연령표준화사망률 (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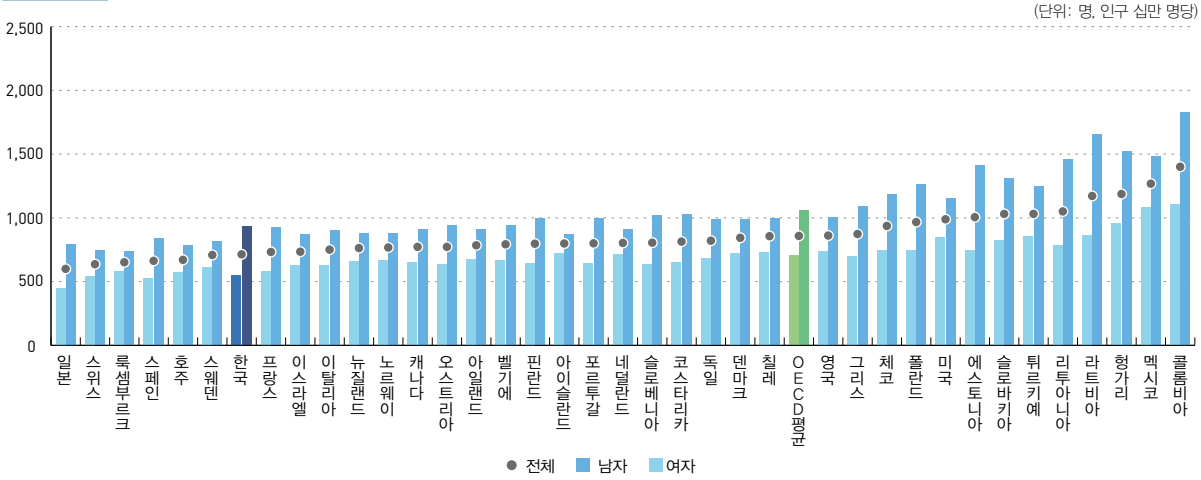
(단위: 명, 표준인구 십만 명당)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6. 인출)

그림 8-7 OECD 국가의 성별 연령표준화사망률 (2023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2023년 기준이며, 한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노르웨이, 캐나다, 아일랜드, 벨기에,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덴마크, 칠레, 그리스, 미국, 에스토니아, 멕시코는 2022년, 일본, 영국, 콜롬비아는 2021년, 뉴질랜드는 2018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2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23	1년

참고문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02-2
연 관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지표 정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아 수를 그해 출생아 수로 나눈 수치를 천명 당 사망 수로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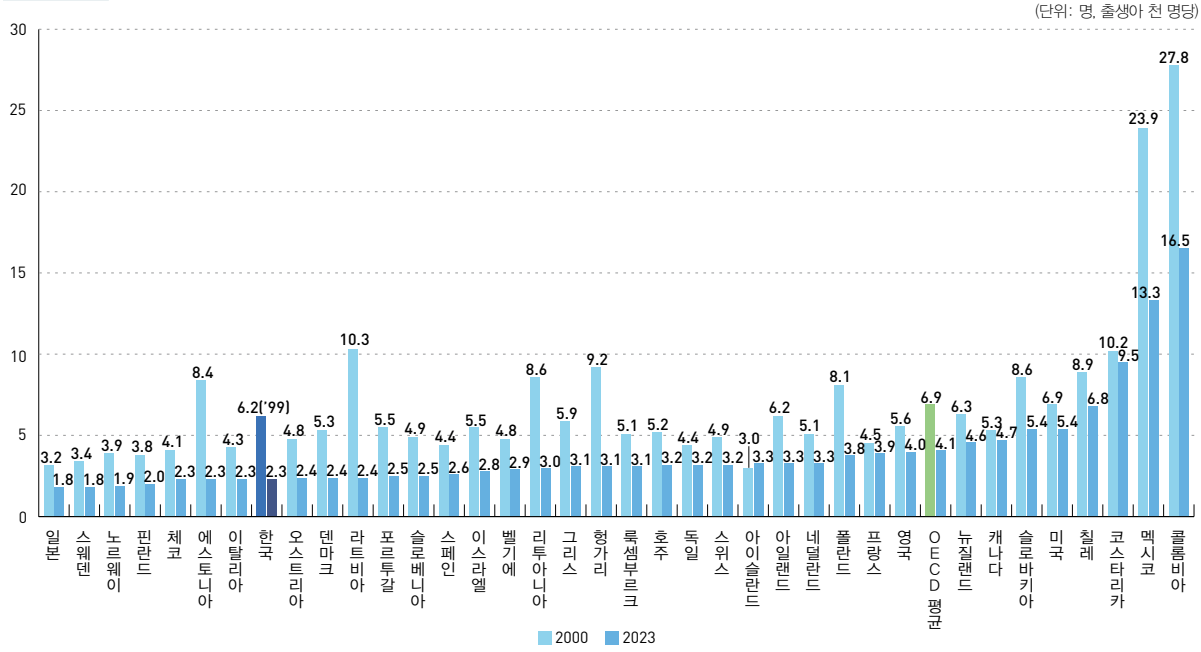
- 영아사망률은 보건의료제도의 특성과 효과뿐만 아니라, 아이와 산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와 사회적인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아 수}}{\text{해당 연도 총 출생아 수}} \times 1{,}000$

그림 8-8 OECD 국가의 연도별 영아사망률

(단위: 명, 출생아 천 명당)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2023년 기준이며,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은 2022년, 벨기에,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은 2021년, 뉴질랜드는 2019년이 비교됨.
3) 튀르키예는 2000년 자료가 부재하여 제외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0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1960	2023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02-3
연 관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Cause-specific mortality rat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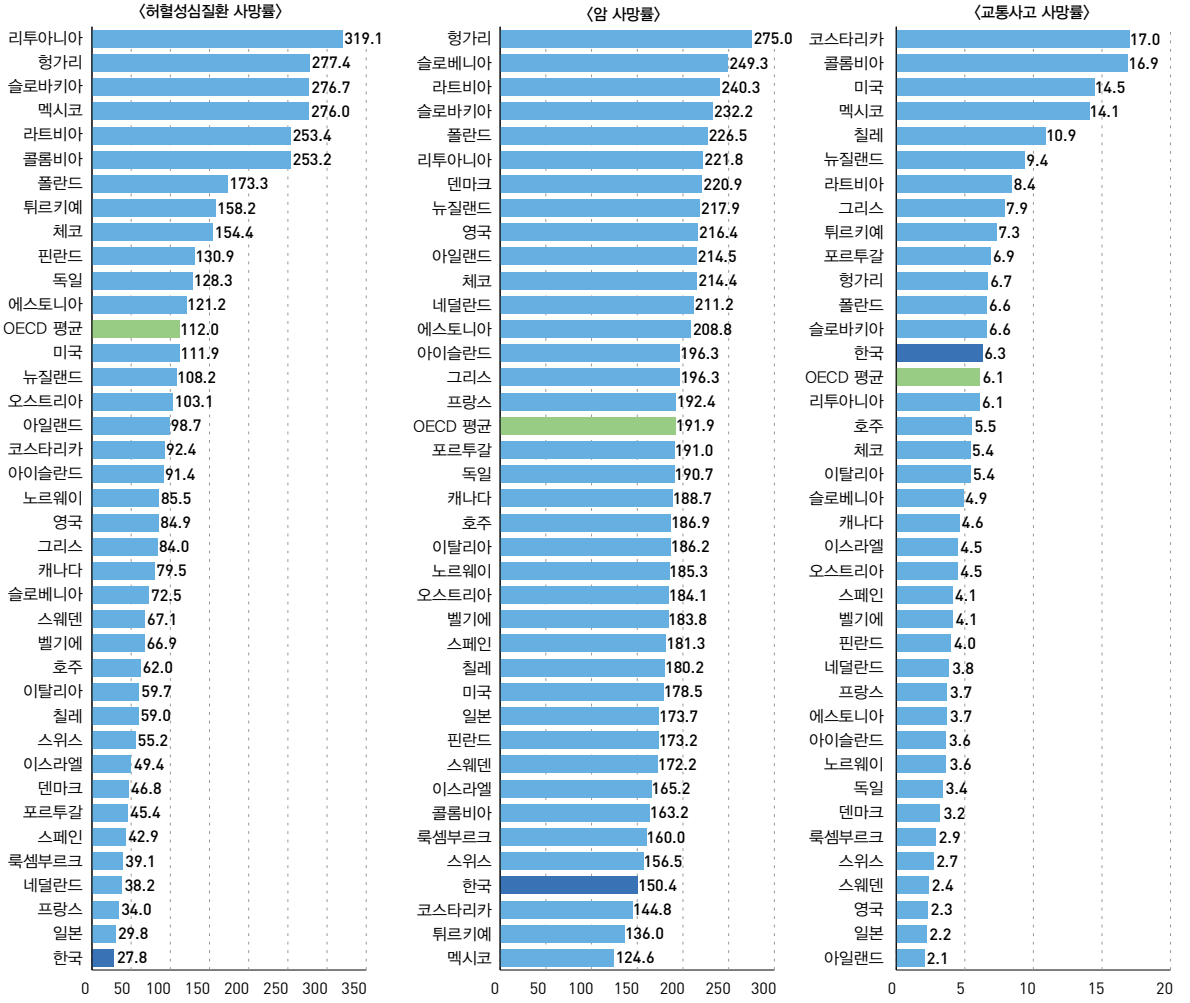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인구로 나누어 인구 십만 명당 사망 수로 표시한 것이다. 사망원인 분류는 ICD-10을 기반으로 한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에 따른다. 여기에서 허혈성심질환은 I20-I25, 암은 C00-C97이다. 교통사고(육상 운수사고)는 외인사(인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사망) 중에 하나로 V01-V99, Y85이다.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2015년 OECD 인구로 연령표준화를 해준다.

측정 산식

- $\frac{\text{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text{인구수}} \times 100{,}000$

그림 8-9 OECD 국가의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2023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허혈성심장질환과 암 사망률은 2023년 기준이며, 한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노르웨이, 캐나다, 아일랜드, 벨기에,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덴마크, 칠레, 그리스, 미국, 에스토니아, 멕시코는 2022년, 일본, 영국, 콜롬비아는 2021년, 뉴질랜드는 2018년이 비교됨.
3) 교통사고 사망률은 2023년 기준이며, 아일랜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칠레, 멕시코, 미국, 코스타리카는 2022년, 일본, 영국, 벨기에, 콜롬비아는 2021년, 독일은 2020년, 뉴질랜드는 2018년, 노르웨이는 2016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2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1960	2023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03
대 표

저체중아 발생률

Low birth weight rate

지표 정의

전체 출생아 중 출생체중 2.5kg 미만 출생아의 비율이다.

• 저체중아 발생률은 영아의 질병 및 사망과 관련 있는 중요 지표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모자보건의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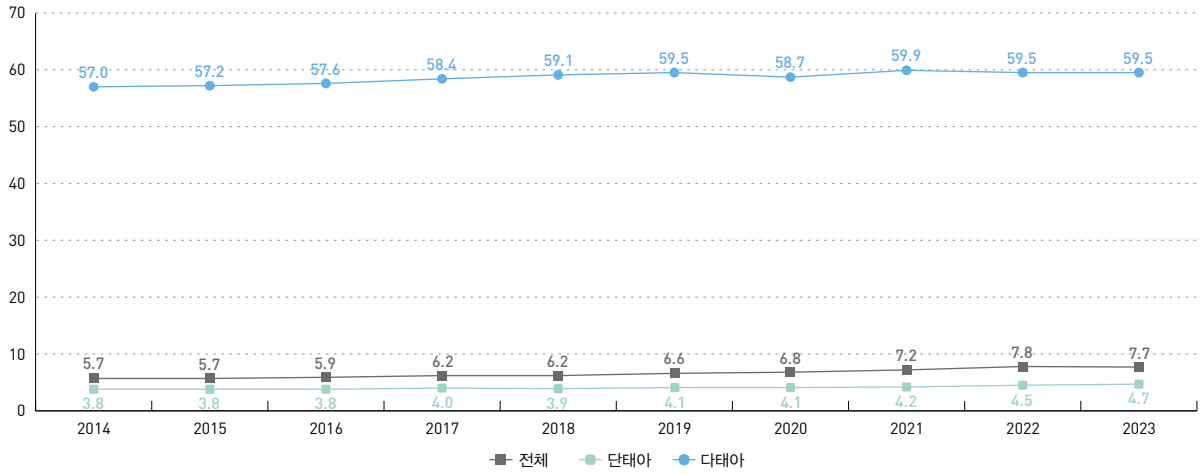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체중 2.5kg 미만의 출생아 수}}{\text{한 해 동안 출생한 출생아 수}} \times 100$$

유의사항 출생통계자료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년도 4월까지(16개월) 전국 행정기관에 출생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이다.

그림 8-10 출생아 수별 저체중 출생아 비율의 변화 (2014~2023)

(단위: %)



자료: 통계청, 「2023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4.

표 8-4 체중별 출생아의 구성비 (2023)

(단위: %)

구분	전체	단태아	다태아
저체중아(2.5kg 미만)	7.7	4.7	59.5
정상체중아(2.5~4.0kg 미만)	90.4	93.3	40.5
과체중아(4.0kg 이상)	1.9	2.0	0.0

자료: 통계청, 「2023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23	1년

참고문헌 • 통계청, 「2022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3.

03-1
연 관

조산율

Premature birth rate

지표 정의

전체 출생아 중 임신(재태)주수 37주 미만에 출생한 출생아의 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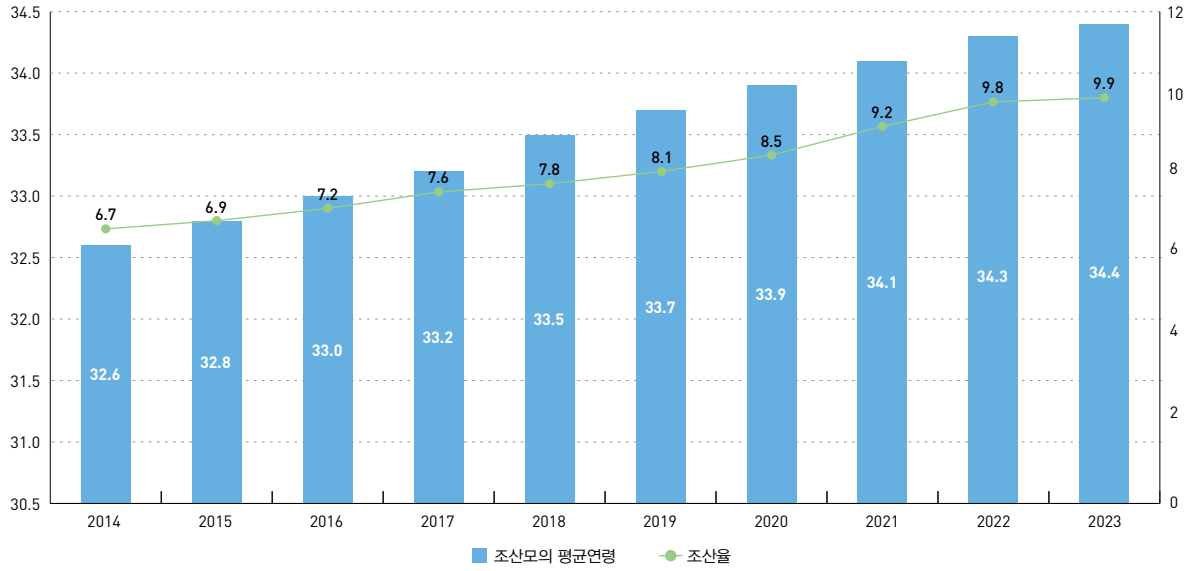
• 조산아는 저체중아와 함께 영아 이환 및 사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 출생아이므로 조산율은 저출산에 대응한 모자보건의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이다.

측정 산식

$$\frac{\text{37주 미만 출생아 수}}{\text{한 해 출생한 출생아 수}} \times 100$$

그림 8-11 조산율 및 조산모의 평균 연령의 변화 (2014~2023)

(단위: 세, %)



자료: 통계청, 「2023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4.

표 8-5 임신기간별 출생아의 구성비 (2023)

(단위: %)

구분	전체	단태아	다태아
37주 미만 출산	9.9	6.3	71.1
37주~41주 출산	90.0	93.6	28.8
42주 이상 출산	0.1	0.1	0.0

자료: 통계청, 「2023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23	1년

참고문헌

• 통계청, 「2023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4.

04
대 표

자살률

Suicide rate

지표 정의

자살률은 연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그해 연양인구*로 나눈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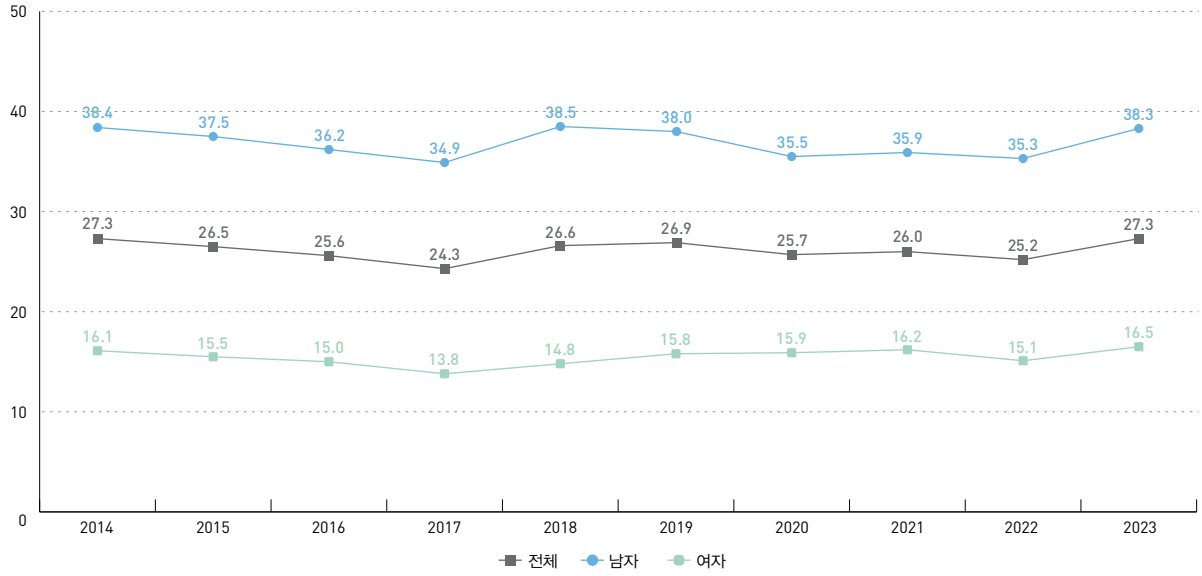
• 자살률은 국가의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을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로 정신질환이나 신체질병이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측정 산식

$$\frac{\text{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text{해당 연도 연양인구}} \times 100{,}000$$

그림 8-12 성별 자살률 (2014~2023)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주: 연령표준화 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23	1년

참고문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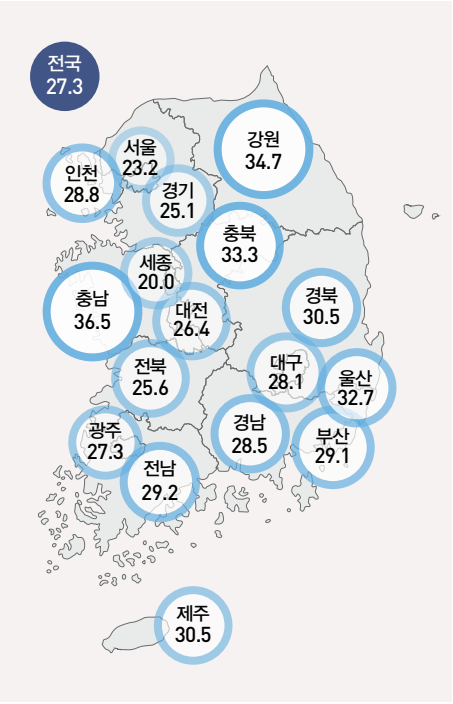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 그해의 중간일인 7.1일 기준 인구수

표 8-6 시도별 · 성별 · 연령별 자살률 (2023)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시도	전체				남자				여자			
	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전국	27.3	1.5	28.0	40.6	38.3	1.1	37.9	66.3	16.5	1.8	17.7	20.3
서울	23.2	1.7	23.0	35.4	31.2	1.5	30.1	54.4	15.6	1.9	16.1	20.3
부산	29.1	1.8	30.0	38.9	42.7	1.7	41.8	67.9	16.2	1.8	18.3	16.4
대구	28.1	1.9	29.8	36.7	39.1	1.5	40.3	59.9	17.4	2.4	19.1	19.3
인천	28.8	1.8	30.1	42.2	40.8	0.6	41.7	69.6	16.8	3.0	18.2	20.3
광주	27.3	0.6	29.3	39.1	39.5	-	40.6	70.2	15.4	1.2	17.9	15.4
대전	26.4	0.6	27.3	40.7	35.0	-	34.6	65.4	17.9	1.2	19.7	21.1
울산	32.7	-	36.6	41.3	46.8	-	50.4	70.3	17.9	-	21.4	16.4
세종	20.0	2.8	20.7	46.0	22.5	-	22.0	70.4	17.6	5.6	19.4	26.3
경기	25.1	1.5	26.0	40.6	35.1	1.7	35.3	65.4	15.1	1.3	16.2	20.5
강원	34.7	0.6	32.6	55.7	50.7	-	45.0	95.4	18.6	1.3	19.0	24.1
충북	33.3	1.1	35.6	43.2	45.3	-	48.1	63.4	20.8	2.3	21.8	27.2
충남	36.5	2.4	35.2	59.8	50.0	1.6	46.7	94.9	22.2	3.3	22.0	32.1
전북	25.6	1.1	25.4	37.0	37.4	1.0	35.9	62.0	13.8	1.1	14.1	18.1
전남	29.2	1.0	30.2	38.4	40.9	-	38.5	68.5	17.4	2.1	20.7	16.1
경북	30.5	1.5	32.2	38.5	44.2	-	45.0	64.5	16.6	3.1	17.9	18.6
경남	28.5	1.3	29.8	40.1	39.3	1.0	39.3	65.9	17.6	1.6	19.5	20.3
제주	30.5	-	33.9	39.9	45.4	-	49.2	68.5	15.5	-	17.7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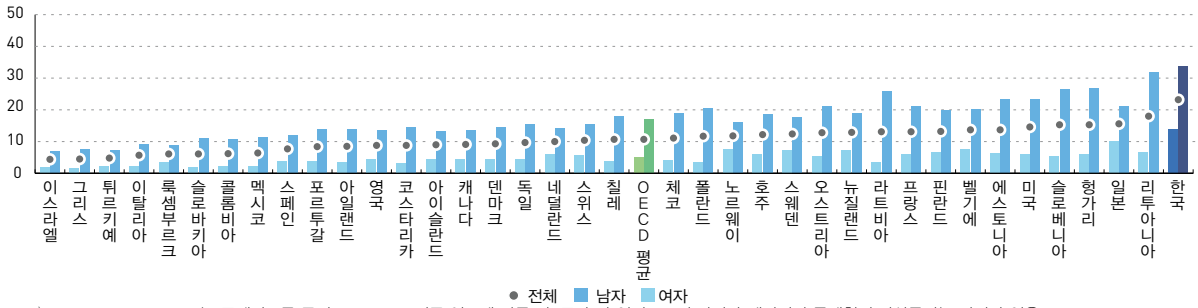


주: 연령표준화 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24. (http://kosis.kr에서 2025.6.16. 인출)

그림 8-13 OECD 국가의 성별 자살률 (2023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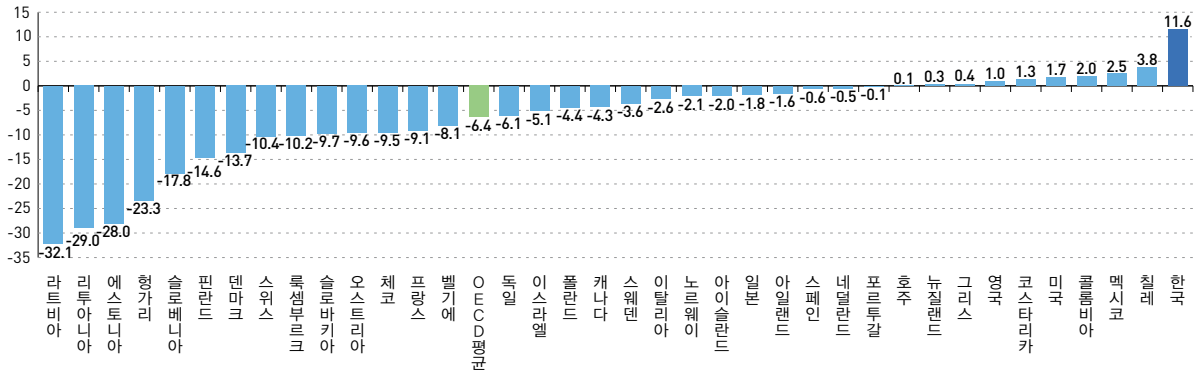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OECD 기준 인구에 따른 바, 국가 간 연령구조의 차이가 제거되어 통계청의 자살률과는 차이가 있음.

2) 2023년 기준이며, 이스라엘,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포르투갈,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캐나다, 덴마크, 칠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에스토니아, 미국, 한국은 2022년, 콜롬비아, 영국, 벨기에, 일본은 2021년, 독일은 2020년, 뉴질랜드는 2018년, 노르웨이는 2016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22. 인출)

그림 8-14 OECD 국가의 자살률 변화폭, 1993년 대비 2023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OECD 기준 인구에 따른 바, 국가 간 연령구조의 차이가 제거되어 통계청의 자살률과는 차이가 있음.

2) 2023년 기준이며, 이스라엘,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포르투갈,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캐나다, 덴마크, 칠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에스토니아, 미국, 한국은 2022년, 콜롬비아, 영국, 벨기에, 일본은 2021년, 독일은 2020년, 뉴질랜드는 2018년, 노르웨이는 2016년이 비교됨.

3) 튀르키예는 1993년 자료가 부재하여 제외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22. 인출)

04-1
연 관

정신장애 유병률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지표 정의

지난 1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한 번 이상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단, 조사의 시점에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혹은 입소 중인 환자는 제외하며, 조사 결과는 성과 연령을 보정한다.

측정 산식

$$\frac{\text{1년 동안 한 번 이상의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text{조사대상 인구수}} \times 100$$

표 8-7 연도별 · 성별 정신장애 유병률

(단위: %)

구분	2011			2016			2021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알코올사용장애	4.4	6.6	2.1	3.5	5.0	2.1	2.6	3.4	1.8
니코틴사용장애	4.0	7.0	0.9	2.5	4.5	0.6	2.7	4.9	0.5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1]	0.4	0.2	0.5	0.2	0.2	0.2			
기분장애(우울장애)[2]	3.6	2.3	4.9	1.9	1.3	2.5	1.7	1.1	2.4
불안장애	6.8	3.7	9.8	5.7	3.8	7.5	3.1	1.6	4.7
모든 정신장애[3]	16.0	16.2	15.8	11.9	12.2	11.5	8.5	8.9	8.0

주: 1)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는 조현병 및 관련 장애, 단기정신병적장애를 포함함.
2) 16년 조사항목까지 기분장애는 주요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 양극성장애가 포함되며, 21년에서는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와 양극성 장애 항목이 제외되었고, 주요우울장애와 기분부전장애를 합친 진단군을 우울장애라고 구분함.
3) 16년 모든 정신장애는 지난 일 년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대상자를 포함하며, 21년은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 대상자를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2001	2021	5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각 연도.

04-2
연 관

우울장애 유병률

Prevalence of depressive disorder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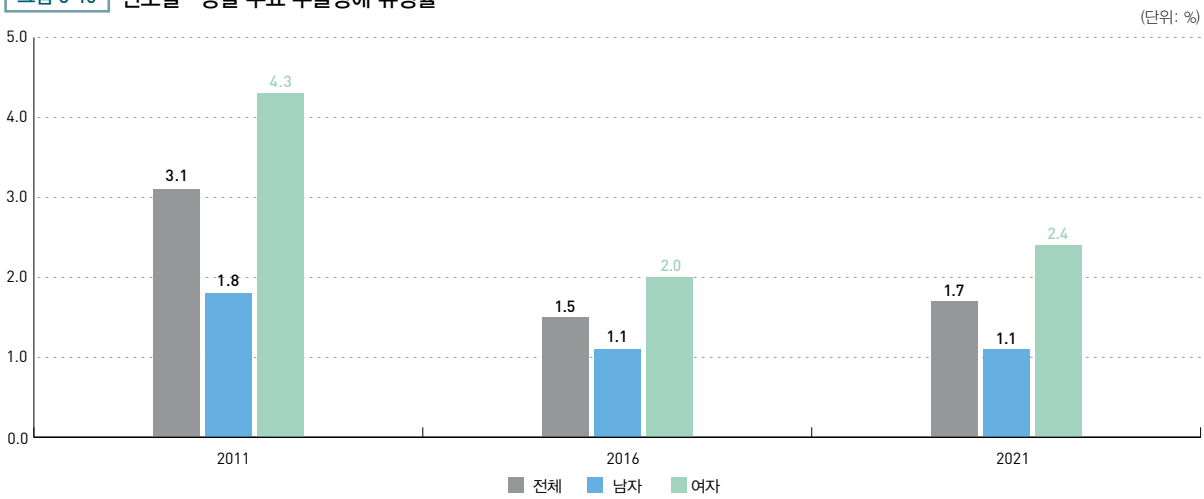
우울장애 유병률은 지난 1년 동안 '주요 우울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 우울장애는 기분장애의 하위 항목이다. 여기에서 기분장애는 기분이 지나치게 침울하거나 들떠 있어 기분의 조절이 어렵고,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어 일상생활과 대인관계가 어렵고, 직업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뜻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1년 동안 주요 우울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text{조사대상 인구수}} \times 100$

그림 8-15 연도별 · 성별 주요 우울장애 유병률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1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2001	2021	5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각 연도.

05
대 표

10대 다빈도 상병

Ten most frequent diseases

지표 정의

우리나라 국민에게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상병을 의미한다. 입원서비스와 외래서비스 각각에 있어서 진료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측정 산식

• 특정 상병으로 발생한 의료서비스

표 8-8 입원서비스 다빈도 상병 (2023)

(단위: 명, 일, 천 원, 위)

구분	2023						과거 순위	
	진료실 인원	내원일 수	진료비	급여비	성별 내 순위		2018	2013
					남자	여자		
1. 노년백내장 (H25)	321,269	503,678	550,692,038	441,176,506	1	1	2	3
2. U07의 응급 사용 (U07)	254,529	1,858,473	551,414,731	471,092,103	3	2	-	-
3.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249,164	2,838,114	854,264,624	687,886,298	2	4	3	4
4.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A09)	238,373	936,175	254,988,783	197,664,962	5	3	1	5
5. 기타 추간판장애 (M51)	210,641	1,487,172	383,105,401	282,493,016	4	5	5	2
6. 출산장소에 따른 생존출생 (Z38)	196,952	984,158	96,214,540	95,084,250	6	6	4	1
7.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 선별검사 (Z11)	193,191	1,038,988	21,104,898	17,089,059	7	7	-	-
8.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K64)	142,244	333,498	179,073,185	137,466,597	8	13	6	6
9. 기타 및 원인미상의 열 (R50)	129,414	367,213	83,803,672	67,230,774	9	14	19	66
10.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G30.–+) (F00)	124,290	20,617,833	1,783,929,675	1,342,948,444	27	9	11	25

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7차 개정으로 치핵(I84)이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K64)으로 변경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20. 인출)

표 8-9 외래서비스 다빈도 상병 (2023)

(단위: 명, 일, 천 원, 위)

구분	2023						과거 순위	
	진료실 인원	내원일 수	진료비	급여비	성별 내 순위		2018	2013
					남자	여자		
1.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5)	19,010,973	41,054,124	2,257,534,980	1,576,913,599	1	1	2	2
2. 급성 기관지염 (J20)	17,197,212	60,906,387	2,083,531,300	1,542,803,356	2	2	1	1
3. U07의 응급 사용 (U07)	7,836,448	11,542,873	626,271,149	501,681,277	5	3	-	-
4.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J30)	7,480,210	18,071,563	685,307,954	499,127,006	4	4	3	5
5.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7,189,970	47,338,717	4,339,222,832	3,101,511,648	3	5	4	8
6. 치아우식 (K02)	6,233,528	10,689,215	611,090,873	433,003,475	6	7	6	7
7.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J06)	6,226,452	11,838,954	409,645,065	299,643,770	7	6	5	4
8. 등통증 (M54)	5,692,055	23,907,401	1,487,984,832	1,059,964,931	8	8	9	13
9. 위염 및 십이지장염 (K29)	5,140,708	8,712,878	560,445,465	387,747,115	11	9	8	6
10. 급성 인두염 (J02)	5,000,942	9,670,818	332,209,798	243,803,936	10	10	10	9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2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23	1년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05-1
연 관

암 발생률

Incidence of cancer

지표 정의

암 발생률은 조사 시점(2021년도)에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 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암환자 수를 나타낸다.

측정 산식

$$\frac{\text{새롭게 발생한 암환자 수}}{\text{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000$$

표 8-10 주요 암 종별 발생률과 5년 상대생존율 (2022)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

구분[1]	조발생률[2] (2022년, 인구 십만 명당)			연령표준화 발생률[2] (2022년, 인구 십만 명당)			5년 상대생존율[3] (2018년~2022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모든 암 (C00–C96)	550.2	577.4	523.3	522.7	592.2	485.1	72.9	67.2	78.8
갑상선 (C73)	66.2	33.6	98.5	65.9	33.1	99.5	100.1	100.4	100.0
대장 (C18–C20)	64.7	76.9	52.6	61.1	78.2	46.3	74.6	75.6	73.2
폐 (C33–C34)	63.0	84.8	41.5	58.4	88.6	35.9	40.6	33.7	54.8
유방 (C50)	57.6	0.5	114.3	56.5	0.6	111.6	94.3	91.0	94.3
위 (C16)	57.5	76.6	38.6	54.0	77.7	33.9	78.4	79.0	77.0
전립선 (C61)	40.5	81.3	-	37.4	84.2	-	96.4	96.4	-
간 (C22)	29.1	43.0	15.3	27.3	43.8	12.9	39.4	40.1	37.4
췌장 (C25)	19.1	19.9	18.3	17.8	20.6	15.4	16.5	15.4	17.7
담낭 및 기타 담도 (C23–C24)	15.3	16.8	13.9	14.1	17.8	11.2	29.4	30.7	28.0
신장 (C64)	13.6	18.9	8.3	13.0	18.8	7.7	87.3	87.4	87.0

주: 1) 2022년을 기준으로 조발생률이 높은 10개 암 종의 정보만 제시함.
2)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의 비율을 가중치로 주어 산출한 가중평균발생률임. 조발생률은 해당 인구집단에서의 암발생 정도를 절대적으로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며, 지역 간 혹은 시기에 따른 암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령구조 차이를 보정한 연령표준화 발생률을 사용함.
3) 상대생존율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동일한 연도, 성별, 연령인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함. 예를 들어,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일반인과 생존율이 같음을 의미함. 갑상선암의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이 100%를 넘는 것은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가 5년 동안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나이와 성별의 일반인구와 비교하였을 때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의미임.

자료: 보건복지부 · 중앙암등록본부 · 국립암센터, 2022. 암등록통계,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 중앙암등록본부 · 국립암센터	암등록통계	1999	2022	1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 중앙암등록본부 · 국립암센터, 2022 암등록통계, 2024.

05-2
연 관

뇌졸중 의사진단 경험률

Prevalence of cerebrovascular diseases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의사로부터 뇌졸중을 진단받은 적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의사로부터 뇌졸중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사람 수}}{\text{만 30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11 일반 특성별 뇌졸중 의사진단 경험률 (2012~2021)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2	1.3	0.1	0.7	0.9	3.5	4.6	1.5	0.7	1.7	1.4	0.9	1.4	0.8
2013	2.2	0.3	0.7	3.0	4.8	7.9	2.1	2.6	3.4	1.8	1.5	1.8	2.3
2014	1.7	0.1	0.6	1.2	4.6	7.1	1.7	1.5	3.1	1.8	1.1	1.1	1.4
2015	1.7	0.0	0.3	1.5	4.4	8.4	1.8	1.2	2.3	2.1	1.0	1.8	1.3
2016	1.7	0.1	0.6	2.1	3.7	6.7	1.7	1.6	2.8	1.7	1.4	1.2	1.1
2017	1.8	0.1	0.8	2.0	3.8	6.9	1.8	2.1	2.9	1.6	1.6	1.4	1.3
2018	1.8	0.3	0.6	1.8	3.7	8.0	1.7	2.5	2.5	2.6	1.6	0.8	1.5
2019	1.9	0.6	1.2	1.3	3.2	8.2	1.9	2.4	2.0	2.3	2.8	1.4	1.1
2020	1.7	0.6	0.7	1.2	3.3	7.5	1.6	2.1	2.9	1.5	2.0	1.2	1.1
2021	1.6	0.4	0.5	1.5	2.9	7.5	1.6	1.8	2.0	1.4	1.4	1.7	1.6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2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5-3
연 관

고혈압 유병률

Prevalence of hypertension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12 일반 특성별 고혈압 유병률 (2014~2023)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4	20.1	2.2	7.3	17.7	32.0	48.5	63.5	20.3	19.4	21.3	22.1	19.3	20.1	17.9
2015	22.1	2.7	8.7	20.7	33.9	51.8	67.5	21.7	25.2	25.2	24.8	19.6	20.9	20.4
2016	23.3	3.5	10.3	21.7	36.5	50.9	69.2	23.3	23.5	26.0	21.1	22.2	24.6	22.6
2017	22.0	5.1	11.3	19.2	32.1	46.9	64.7	22.0	21.8	24.6	22.2	21.3	20.3	21.5
2018	23.1	5.4	11.7	20.6	34.7	46.0	70.2	22.7	25.2	25.1	26.7	21.7	21.9	20.0
2019	22.2	5.2	9.5	19.0	32.3	51.5	67.2	22.0	22.7	25.1	22.9	21.2	20.4	21.7
2020	22.9	4.4	11.4	20.8	35.9	48.1	65.3	22.9	23.4	24.6	25.0	21.2	22.9	20.8
2021	21.4	2.8	10.0	19.7	31.2	48.0	66.4	20.5	26.3	22.2	23.8	21.8	19.6	19.8
2022	22.1	4.3	8.7	20.1	33.5	48.9	68.7	21.7	23.6	24.3	23.5	20.1	21.0	22.0
2023	20.0	1.5	6.2	17.2	33.7	47.3	68.4	20.0	19.4	21.4	20.6	20.4	18.9	19.2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3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5-4
연 관

당뇨병 유병률

Prevalence of diabetes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거나,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당뇨병은 심혈관계 합병증과 실명, 조기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인병으로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노령화에 따라 당뇨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거나,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13 일반 특성별 당뇨병 유병률 (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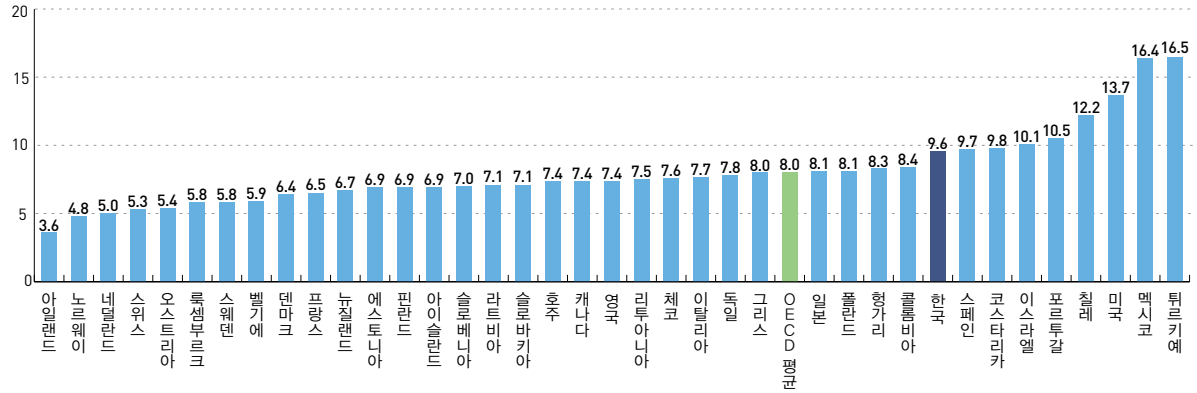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4	9.3	0.3	2.5	9.5	14.1	25.6	27.0	9.4	9.3	12.7	9.5	7.8	7.9	8.7
2015	8.0	0.6	3.1	7.1	10.3	21.5	27.1	8.0	7.9	10.6	9.6	6.4	6.0	7.8
2016	9.7	0.6	3.0	8.7	16.0	24.2	31.8	9.3	12.7	12.0	9.4	10.2	8.4	8.4
2017	9.1	1.5	2.3	7.3	16.4	21.0	30.4	9.0	10.2	12.2	9.1	9.2	8.2	7.4
2018	9.2	0.8	3.2	8.3	14.6	22.3	29.2	9.0	10.1	11.5	11.3	8.2	8.2	6.7
2019	9.5	1.8	2.7	8.1	14.4	24.2	31.0	9.0	12.7	10.6	10.4	9.2	8.7	8.9
2020	10.7	0.7	4.4	9.0	19.1	25.1	31.5	10.5	11.8	14.8	11.4	10.6	8.9	8.1
2021	10.3	0.5	3.6	10.6	15.9	24.8	31.8	10.0	12.2	12.6	11.6	9.7	9.8	8.2
2022	9.1	1.6	3.0	6.2	17.6	20.6	29.4	8.7	12.1	11.4	8.5	10.7	7.7	7.6
2023	9.4	1.7	2.5	7.7	16.9	24.2	27.1	9.0	12.1	9.8	10.5	9.5	9.5	8.1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8. 인출)

그림 8-16 OECD 국가의 당뇨병 유병률 (2024)

(단위: %)



주: UN인구로 표준화했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Diabetes Atlas 11th Edition, 2025.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3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Atlas 10th Edition, 2025.

06
대 표

현재 흡연율

Current smoking rate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평생 일반담배(궐련)를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궐련)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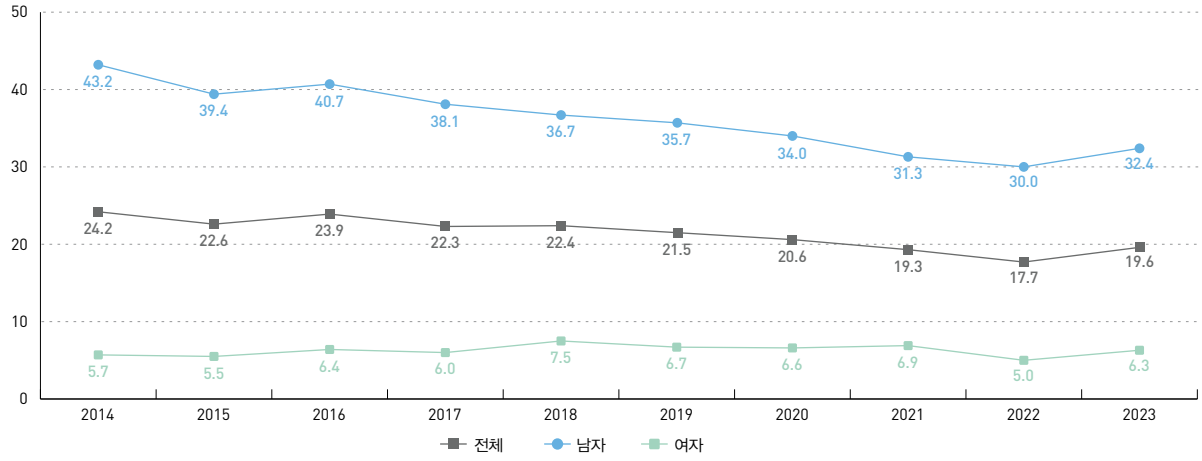
※ 2019년부터 '담배'를 '일반담배(궐련)'로 변경 표기함.

측정 산식

- $\frac{\text{평생 일반담배(궐련)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17 성별 현재 흡연율 (2014~2023)

(단위: %)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3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표 8-14 일반 특성별 현재 흡연율 (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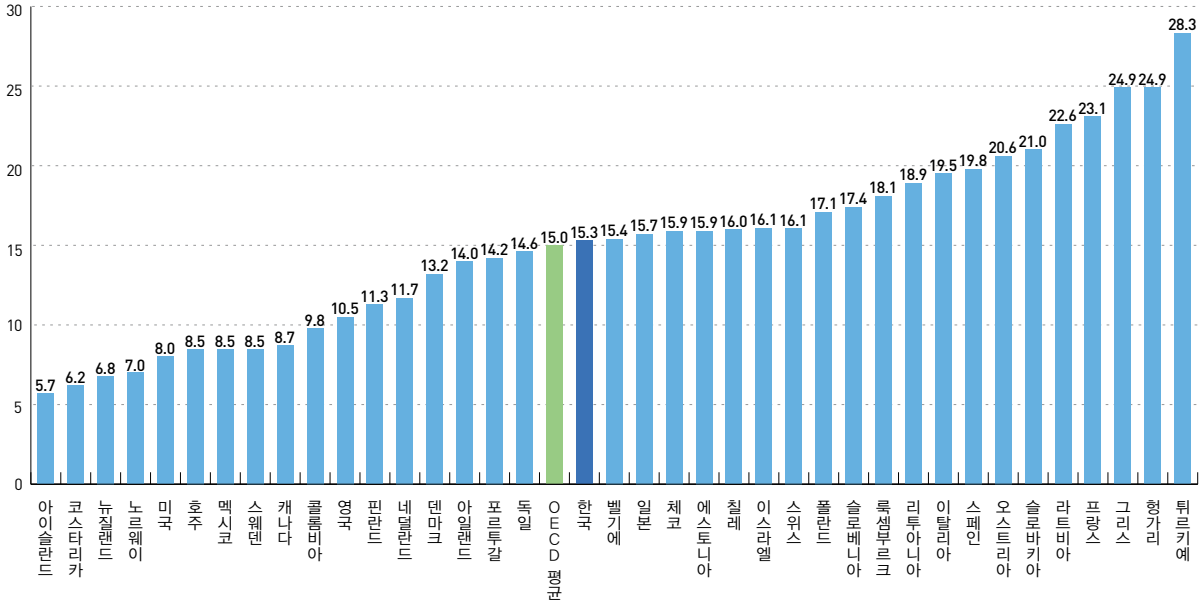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4	24.2	22.5	30.0	29.2	20.6	18.2	10.1	23.4	29.7	28.1	24.3	25.8	23.1	19.7
2015	22.6	23.7	27.7	25.4	20.8	14.1	9.0	22.4	23.6	26.0	21.6	24.2	21.7	18.9
2016	23.9	25.4	30.4	25.0	22.7	14.6	9.1	23.1	28.8	25.6	26.0	22.5	23.5	21.7
2017	22.3	24.4	25.5	26.3	20.2	14.4	8.5	21.5	27.5	26.0	24.9	22.7	21.7	15.9
2018	22.4	23.8	24.7	26.7	22.8	14.9	6.6	21.7	27.3	25.1	26.7	21.6	20.5	17.2
2019	21.5	24.8	24.0	22.4	20.3	16.8	8.4	21.3	21.5	27.9	21.8	23.7	20.5	14.0
2020	20.6	21.9	23.0	24.0	19.2	15.5	7.2	20.7	19.2	23.7	23.6	19.6	18.9	17.4
2021	19.3	22.3	18.9	22.4	19.7	15.1	7.2	19.3	18.4	21.3	26.4	17.5	18.0	13.7
2022	17.7	18.7	17.2	20.4	19.4	15.7	7.1	17.1	20.7	19.5	19.0	19.4	14.9	15.8
2023	19.6	20.8	18.3	23.6	22.7	15.7	6.7	19.2	21.3	25.1	21.0	18.0	19.4	14.5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그림 8-18 OECD 국가의 흡연율 (2023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



주: 1) OECD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매일 흡연하는 인구의 비율을 비교함.
2) 2023년 기준이며, 호주, 핀란드, 에스토니아, 칠레, 스위스, 튀르키예는 2022년, 독일은 2021년, 스페인은 2020년, 콜롬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그리스, 헝가리는 2019년, 벨기에는 2018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07. 인출)

06-1
연 관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Cigarettes smoked per day among current smokers

지표 정의

만 19세 이상의 '현재 흡연자'가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 개비 수이다.

측정 산식

$$\frac{\text{하루 평균 흡연한 개비의 합}}{\text{만 19세 이상 현재 흡연자 수}}$$

표 8-15 일반 특성별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2014~2023)

(단위: 개비)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4	14.7	12.9	14.3	15.9	16.8	15.1	13.6	14.4	-	14.1	15.1	-	-	-
2015	13.4	10.3	13.2	15.4	16.0	14.8	10.5	13.3	-	-	-	-	-	-
2016	13.1	10.8	12.7	15.1	15.1	13.0	11.8	12.9	14.4	13.6	12.8	13.1	13.2	-
2017	13.3	11.8	12.5	14.4	16.6	13.4	10.1	13.2	-	13.4	14.1	13.3	-	-
2018	13.0	11.4	12.8	13.8	14.6	14.8	10.3	12.9	-	-	-	-	-	-
2019	12.4	10.0	11.9	13.3	15.4	14.3	10.6	12.2	13.6	12.2	-	12.4	-	-
2020	12.2	9.1	11.7	14.0	14.9	13.4	10.8	11.9	-	11.9	-	13.2	-	-
2021	12.6	10.1	11.0	14.1	16.1	13.8	11.9	12.3	-	-	-	-	-	-
2022	12.7	9.7	13.2	13.0	15.0	15.1	11.7	12.2	-	-	-	-	-	-
2023	12.3	9.7	11.4	13.7	15.5	13.3	11.5	11.9	-	12.8	-	-	-	-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3) 자료의 수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로 표시함.

자료: 질병관리청, 2023 국민건강통계, 2024. (https://knhanes.kdca.go.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3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6-2
연 관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Nonsmoker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in workplace

지표 정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일반담배(궐련) 비흡연자(과거 일반담배(궐련)흡연자 포함) 중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2019년부터 '담배'를 '일반담배(궐련)'으로 변경 표기함.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7일 동안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text{만 19세 이상,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재 비흡연자 수}} \times 100$

표 8-16 일반 특성별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2014~2023)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4	40.1	43.0	42.1	42.5	44.5	29.7	22.5	41.3	37.0	46.3	32.5	41.9	40.5	40.8
2015	26.9	26.4	27.1	29.1	31.8	24.9	13.5	25.1	36.7	32.5	25.7	27.1	24.9	25.0
2016	17.4	20.3	15.9	18.8	21.0	13.1	8.3	16.6	23.2	21.3	17.1	14.1	18.5	16.7
2017	12.7	10.9	13.6	12.3	17.3	15.0	4.4	12.7	14.6	11.7	16.6	14.5	12.2	9.1
2018	11.5	10.9	12.2	12.1	14.9	9.9	4.2	11.2	15.4	17.6	12.5	12.2	10.1	5.9
2019	14.1	16.3	14.9	12.0	18.0	11.9	6.1	14.6	11.5	16.6	20.3	12.1	10.3	13.6
2020	10.3	7.9	12.3	11.5	12.3	10.1	3.8	10.4	10.0	12.0	11.2	10.0	12.1	6.8
2021	9.2	10.7	7.4	10.8	9.8	8.7	4.2	8.9	11.1	9.9	9.9	7.0	9.0	9.7
2022	6.3	4.7	8.9	8.5	4.0	5.5	1.7	6.3	7.8	8.8	5.6	5.9	6.2	5.7
2023	8.0	7.6	8.2	9.3	8.1	7.2	5.0	7.2	12.9	8.5	9.2	7.4	8.0	7.1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3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6-3
연 관

청소년 현재 흡연율

Current smoking rate of adolescent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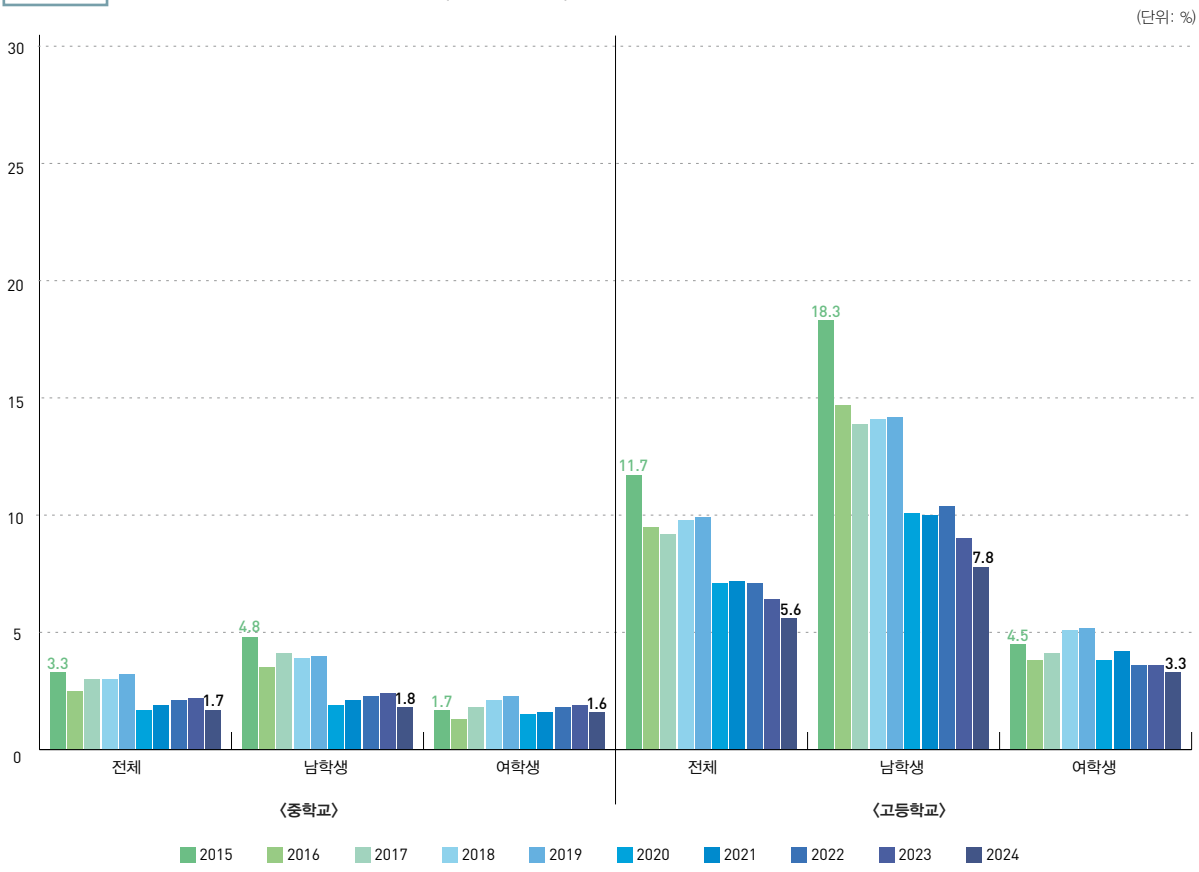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중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청소년(중1~고3)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수}}{\text{조사 대상자 전수}} \times 100$

그림 8-19 성별 · 학교급별 청소년 현재 흡연율 (2015~2024)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05	2024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07
대 표

고위험 음주율

High risk alcohol consumption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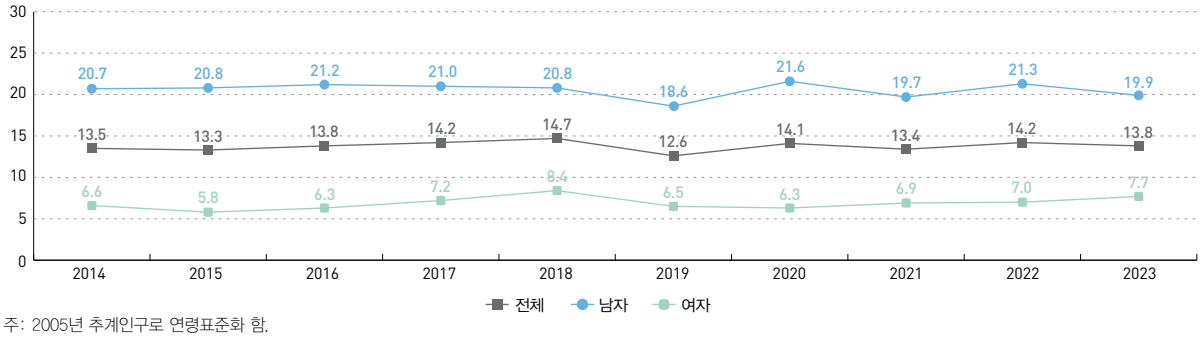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1년간 음주빈도 문항 주 2회 이상 응답자이면서 1회 음주량 문항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 응답자}}{\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20 성별 고위험 음주율 (2014~2023)

(단위: %)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표 8-17 일반 특성별 고위험 음주율 (2014~2023)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4	13.5	11.9	17.6	16.4	14.5	7.4	3.3	13.2	16.1	14.5	14.1	12.8	12.4	13.2
2015	13.3	12.7	15.8	16.2	13.8	9.1	2.5	13.1	13.9	14.4	13.7	12.0	14.1	12.4
2016	13.8	13.8	16.4	15.8	15.4	9.0	2.7	13.3	17.1	13.7	14.6	10.7	15.6	14.4
2017	14.2	14.2	16.9	16.9	14.5	9.1	3.2	14.3	13.0	14.3	15.5	14.9	13.1	13.2
2018	14.7	15.9	15.2	18.1	14.6	11.2	3.0	14.3	16.3	14.2	15.9	14.4	16.4	12.3
2019	12.6	11.2	13.8	15.3	13.9	10.4	4.7	12.1	15.4	14.2	14.9	12.2	10.8	11.1
2020	14.1	11.4	16.6	19.0	13.9	10.9	3.5	13.9	14.8	13.2	14.7	14.9	13.0	14.7
2021	13.4	12.9	15.6	16.3	13.8	9.1	3.7	13.5	11.9	12.1	16.1	13.8	13.5	11.9
2022	14.2	12.5	14.9	18.1	17.2	10.6	4.4	13.6	16.9	13.8	14.4	13.6	14.1	15.3
2023	13.8	12.9	12.6	19.6	15.9	10.5	3.4	14.0	12.0	14.8	13.6	13.4	14.3	13.3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3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7-1
연 관

연간 음주율

Current alcohol consumption rat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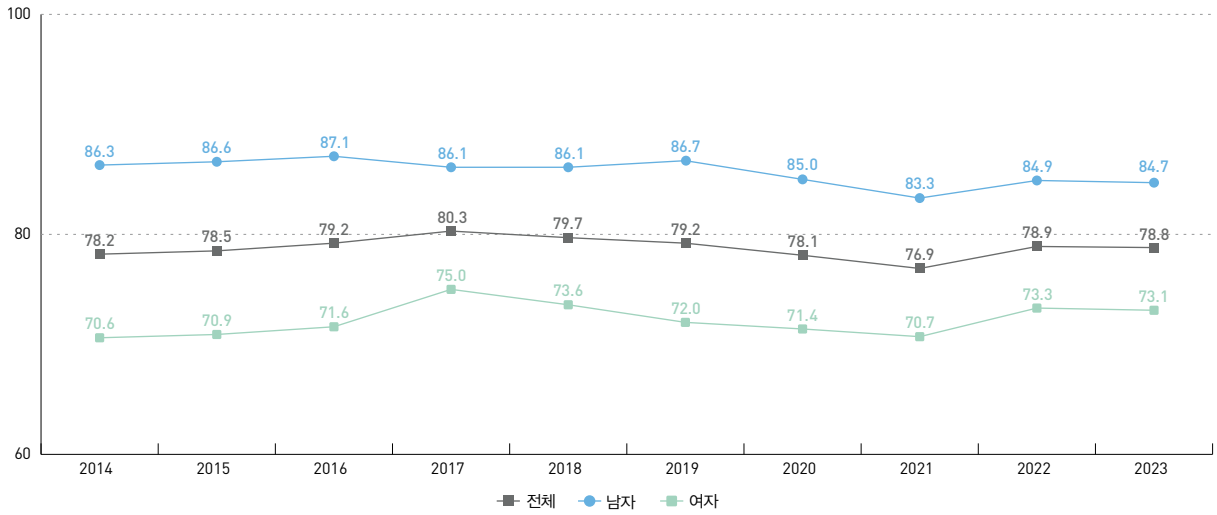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중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21 성별 연간 음주율 (2014~2023)

(단위: %)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3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7-2
연 관

청소년 현재 음주율

Current alcohol consumption rate of adolescent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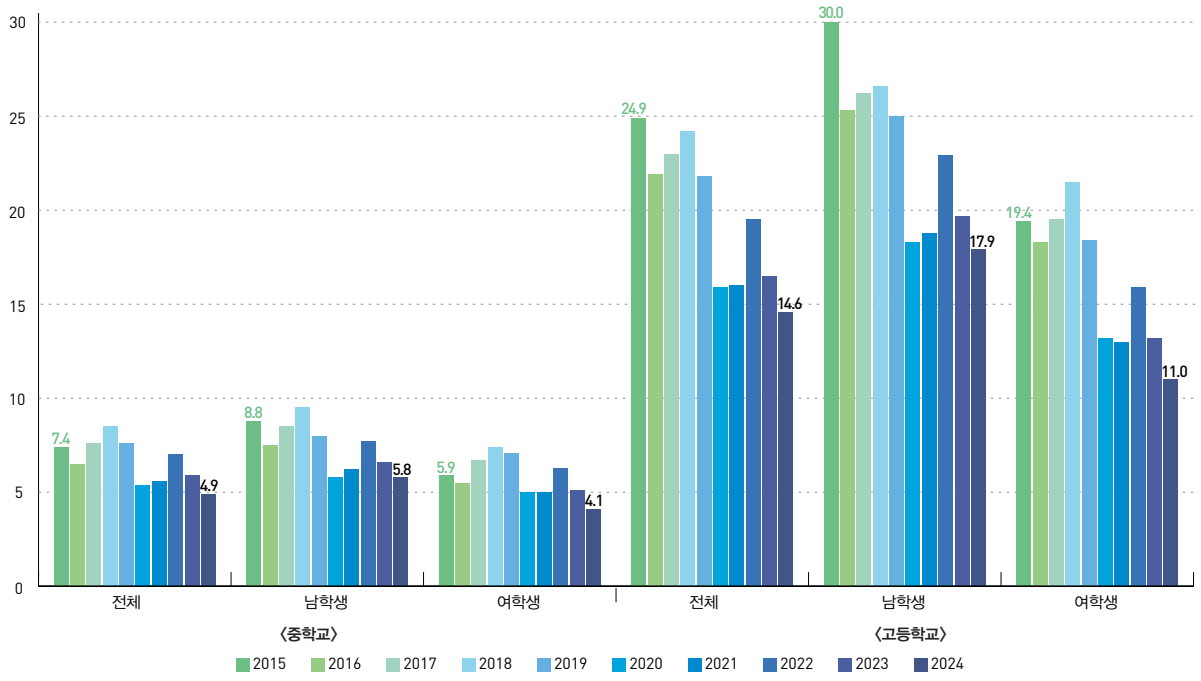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중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청소년(중1~고3)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수}}{\text{조사 대상자 전수}} \times 100$

그림 8-22 성별 · 학교급별 청소년 현재 음주율 (2015~2024)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05	2024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07-3
연 관

1인당 알코올소비량

Alcohol consumption per capita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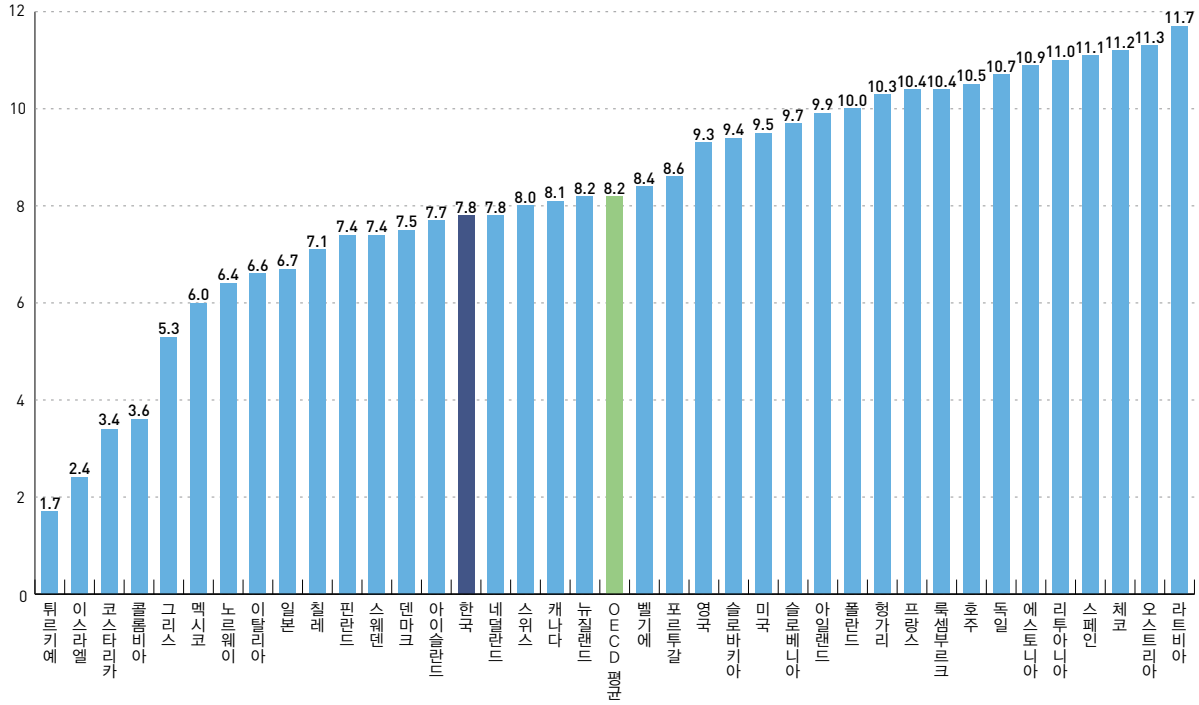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순수 알코올소비량을 1인당으로 환산한 값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주류 총 소비량}}{\text{15세 이상 인구수}}$

그림 8-23 OECD 국가의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소비량 (2023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ℓ)



주: 2023년 기준이며, 캐나다, 미국, 호주는 2022년, 이스라엘, 콜롬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독일은 2020년, 칠레는 2019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0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1960	2023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08
대 표

비만율

Obesity rate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은 대한비만학회가 제시한 것에 따른다.

- WHO는 비만을 '건강을 해칠 정도로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하게 지방조직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본다. 한편, 대한비만학회는 25 이상을 비만으로 본다. BMI는 비교적 측정이 쉬워 건강조사나 임상검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만 지표로, 미래의 질병 부담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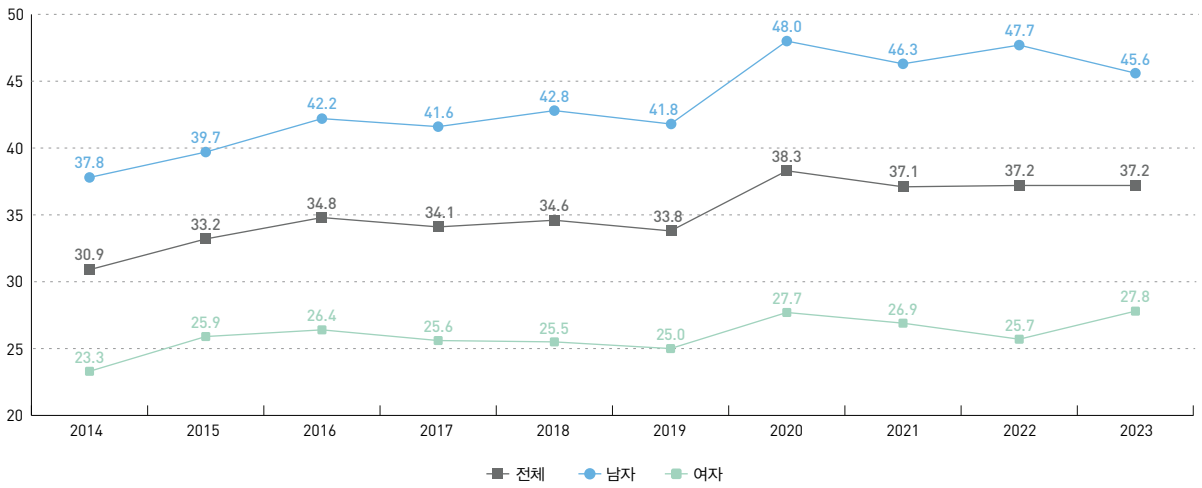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체질량지수(BMI)}^{*}\ 25\ \text{이상인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 체질량지수(BMI) $= \frac{\text{체중(kg)}}{[\text{신장(m)}]^2}$

그림 8-24 성별 비만율 (2014~2023)

(단위: %)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3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표 8-18 일반 특성별 비만율 (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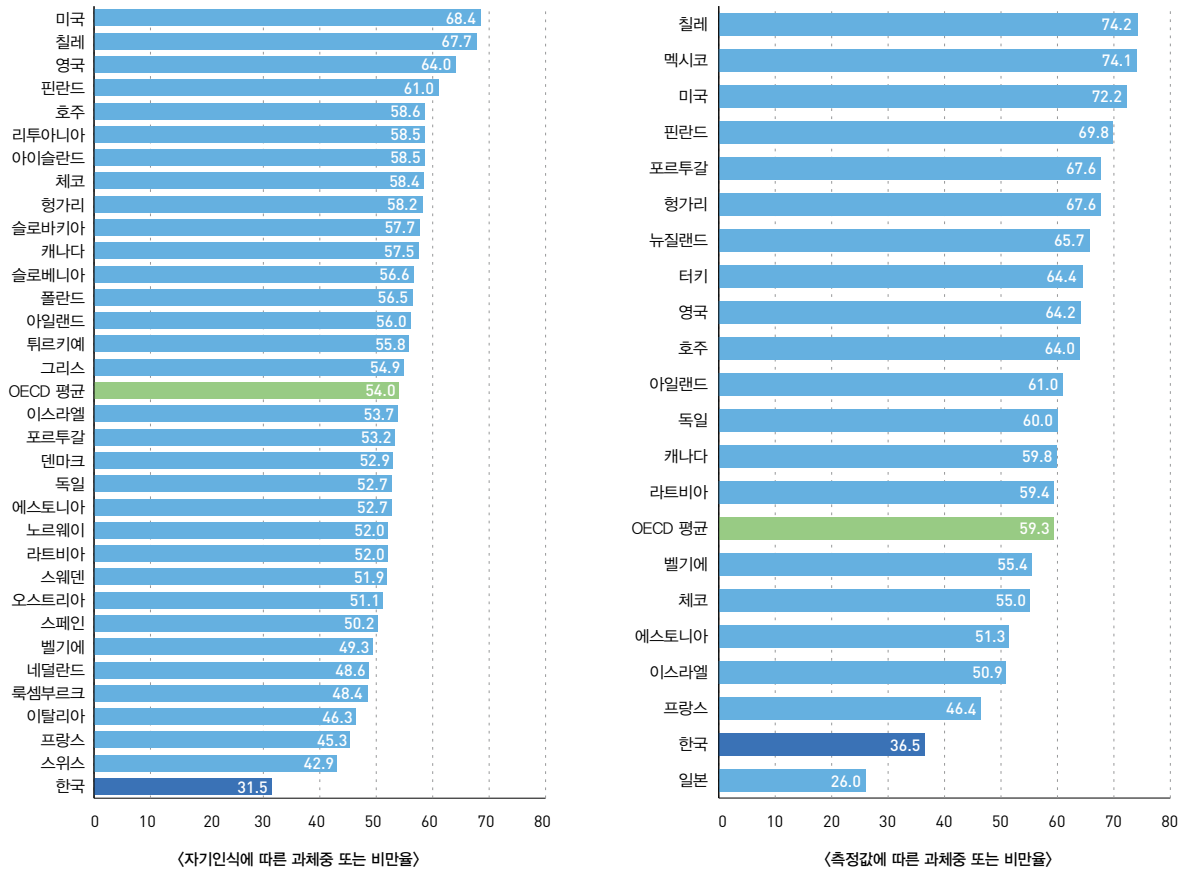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4	30.9	23.9	31.8	31.1	35.4	36.8	32.1	30.5	33.3	33.2	33.0	33.1	30.4	24.8
2015	33.2	23.5	32.9	35.6	38.3	40.1	37.4	32.4	37.4	38.4	34.1	32.2	32.0	30.1
2016	34.8	27.2	34.2	39.0	36.1	40.2	37.5	33.5	42.9	38.4	33.4	35.4	33.6	33.3
2017	34.1	29.4	33.4	35.3	38.0	38.0	34.7	33.6	38.8	38.5	35.8	32.3	33.8	30.6
2018	34.6	26.9	37.8	36.8	35.2	36.8	38.0	34.2	37.2	35.1	38.4	35.4	35.5	28.1
2019	33.8	27.6	34.9	35.6	36.5	37.3	34.3	33.0	39.2	35.6	33.6	34.1	33.1	31.8
2020	38.3	32.6	41.6	39.0	40.2	41.1	35.3	38.1	40.0	40.6	40.0	39.7	38.1	33.5
2021	37.1	28.6	39.4	42.9	36.8	40.6	33.5	36.2	43.9	39.8	37.9	36.6	35.1	35.5
2022	37.2	31.1	39.8	40.7	39.2	36.1	35.0	36.0	45.5	40.3	36.3	39.2	37.4	32.8
2023	37.2	33.6	39.8	37.7	40.5	35.4	34.6	36.4	42.1	39.2	40.8	36.7	38.9	30.4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그림 8-25 OECD 국가의 과체중 또는 비만율 (2023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



주: 1) OECD는 전체 인구집단 중에서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의 비율을 비교함.
2) 자기인식에 따른 과체중 또는 비만율은 2023년 기준이며, 스위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그리스, 튀르키예,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호주, 핀란드, 영국은 2022년, 독일, 칠레는 2021년, 스페인은 2020년, 프랑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아이슬란드는 2019년, 벨기에는 2018년, 라트비아는 2014년이 비교됨.
3) 측정값에 따른 과체중 또는 비만율은 2023년도 기준이며, 라트비아, 호주, 핀란드는 2022년, 멕시코는 2020년,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헝가리는 2019년, 벨기에는 2018년, 프랑스, 튀르키예는 2017년, 칠레는 2016년, 이스라엘, 포르투갈은 2015년, 에스토니아는 2014년, 독일은 2012년, 체코는 2010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07. 인출)

08-1
연 관

청소년 비만율

Adolescent obesity rate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2007년 소아 · 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기준 95백분위 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m^2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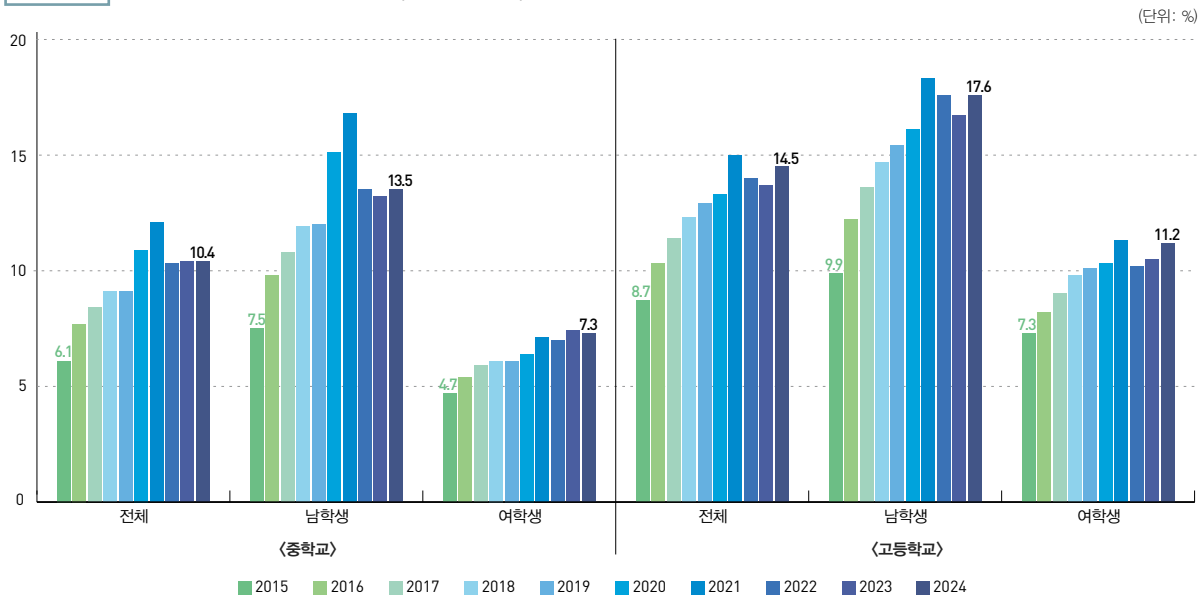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기준 95백분위 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m}^2\text{ 이상인 사람의 수}}{\text{조사 대상자 전수}} \times 100$

* 체질량지수(BMI) = $\frac{\text{체중(㎏)}}{[\text{신장(m)}]^2}$

* 신장과 체중은 자기기입 방식으로 조사됨.

그림 8-26 성별 · 학교급별 청소년 비만율 (2015~2024)



주: 기존('06~'17년)에는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2017년 소아성장도표 제정에 따라 연도 비교를 위해 '06~'17년 결과 재산출함.
자료: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05	2024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08-2
연 관

걷기 실천율

Practice rate of physical activity (walking)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19 일반 특성별 걷기 실천율 (2014~2023)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4	41.7	51.9	37.1	38.8	39.3	41.2	38.7	43.6	30.9	41.7	39.0	40.0	44.5	43.7
2015	41.2	50.8	39.0	38.4	37.7	42.7	32.6	42.9	33.4	43.7	37.0	40.2	40.9	44.1
2016	39.6	48.1	37.4	36.3	36.6	41.8	33.6	41.4	29.0	35.1	37.6	36.5	45.1	44.2
2017	39.0	47.9	34.7	37.2	39.4	38.4	31.4	40.7	28.3	36.1	39.9	38.0	39.2	41.4
2018	40.2	49.9	38.3	38.2	34.1	41.6	32.1	42.0	27.3	39.8	38.4	40.5	40.9	41.3
2019	43.5	57.0	40.6	37.3	40.7	41.5	38.9	45.0	34.8	41.5	42.4	44.8	43.4	45.3
2020	39.2	45.1	37.6	35.1	36.3	42.4	39.9	41.1	27.5	37.4	39.4	37.7	40.9	40.3
2021	39.6	43.1	35.3	39.0	36.8	45.2	42.3	40.9	32.2	36.0	40.2	41.1	37.7	43.1
2022	41.7	48.5	39.6	36.3	41.1	43.0	43.5	43.0	34.9	41.2	42.3	38.0	43.1	43.3
2023	44.5	52.6	41.3	39.6	41.5	49.6	43.6	45.8	37.4	39.1	44.6	43.8	45.3	49.2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3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9
대 표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Rates of undernutrition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 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의 분율이다. 조사는 만 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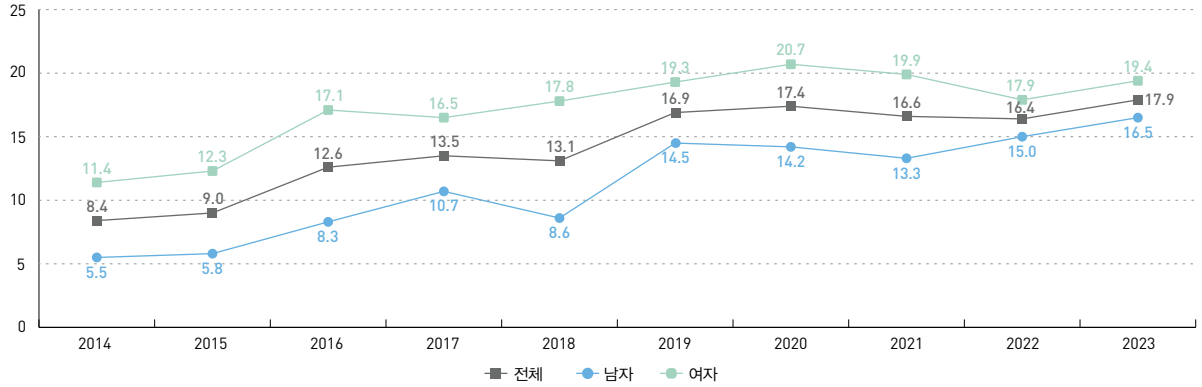
※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은 2022년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20)을 따르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을 따르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한국영양학회, 2010)을 따랐음.

측정 산식

$$\frac{\text{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 (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대상자 수}}{\text{만 1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27 성별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2014~2023)

(단위: %)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4. 인출)

표 8-20 일반 특성별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2014~2023)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4	8.4	12.7	4.8	3.5	15.4	12.4	7.9	3.3	8.3	8.3	9.3	11.9	9.0	6.0	8.7	6.3
2015	9.0	7.4	5.7	4.8	16.7	13.1	8.5	3.9	8.3	8.9	9.5	14.7	10.0	6.4	7.8	5.6
2016	12.6	4.8	7.3	4.8	19.4	15.4	12.9	9.1	14.1	12.0	16.0	16.0	12.2	13.0	10.0	11.0
2017	13.5	7.8	3.2	6.6	19.2	19.9	13.1	9.9	14.7	13.3	15.4	18.7	13.3	12.3	13.3	9.6
2018	13.1	5.3	3.8	8.4	17.6	16.2	14.4	8.8	14.4	13.1	13.5	16.7	12.5	14.0	11.3	10.7
2019	16.9	3.6	5.5	6.8	21.4	23.5	16.3	14.4	23.8	16.9	17.1	21.8	17.8	18.1	14.0	12.1
2020	17.4	2.7	3.4	12.8	26.9	19.9	17.4	12.6	24.5	17.2	18.9	20.9	15.6	15.5	19.2	15.7
2021	16.6	3.2	5.2	8.9	23.6	20.1	16.2	14.2	22.8	16.3	17.8	20.7	20.4	14.9	11.8	14.3
2022	16.4	0.0	2.3	5.9	21.0	20.3	17.3	16.9	18.2	15.7	20.9	19.9	17.7	17.4	15.5	12.0
2023	17.9	2.9	7.3	5.7	27.5	21.5	19.2	15.8	19.3	17.9	17.5	21.0	19.8	18.7	15.3	14.6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3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9-1
연 관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Practice rate of healthy dietary lifesyle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 현황을 반영하는 4개 지표 중에서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사람의 분율이다. 조사는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지방은 지방 섭취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정의하는 지방에너지 적정비율 이내이고, 나트륨은 1일 섭취량이 2,000㎎ 미만인 경우, 과일 및 채소는 과일류와 채소류 섭취량의 합계가 1일 500g 이상인 경우이다. 그리고 영양표시는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읽는지 여부에 '예'로 응답한 경우이다.

※ 지방에너지 적정비율은 2022년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20)을 따르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을 따르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한국영양학회, 2010)을 따랐음.

측정 산식

$$\frac{\text{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대상자 수}}{\text{초등학생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21 일반 특성별 건강식생활 실천율 (2014~2023)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6~11세	12~18세	19~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4	37.5	37.4	41.7	31.7	42.0	38.5	24.0	38.3	32.5	33.2	35.9	36.9	39.0	42.3
2015	38.5	44.8	38.4	34.5	42.4	38.8	25.8	39.4	34.4	36.3	37.6	37.0	41.5	40.3
2016	44.8	45.8	40.3	43.4	47.9	49.2	31.2	45.4	41.6	43.2	42.4	43.6	47.1	47.6
2017	45.8	46.5	41.8	45.5	49.4	47.9	32.0	47.0	38.5	42.4	46.4	44.1	46.4	49.0
2018	42.0	38.5	40.0	42.5	45.2	44.2	30.1	42.7	38.4	39.4	42.2	42.5	41.8	44.6
2019	45.3	37.9	39.0	44.3	49.4	49.5	38.5	45.9	42.6	43.8	42.8	44.9	46.0	49.1
2020	43.6	41.3	39.7	40.4	46.2	47.2	41.0	43.9	42.3	43.3	43.0	42.3	47.1	41.8
2021	45.3	40.0	39.8	38.0	49.4	51.9	42.5	46.1	41.3	46.7	44.6	45.1	45.0	45.3
2022	49.8	44.2	43.4	50.4	50.4	54.7	45.8	50.1	46.5	48.2	47.8	47.5	53.4	49.8
2023	49.2	44.5	44.8	47.9	50.9	53.2	44.5	49.5	46.8	47.6	47.4	49.3	49.0	51.1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1)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07.04. 인출)
2) 질병관리청, 2022 국민건강통계, 2024. (https://knhanes.kdca.go.kr에서 2025.7.04. 인출)
3) 질병관리청, 2023 국민건강통계, 2025. (https://knhanes.kdca.go.kr에서 2025.7.0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3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10
대 표

평균 재원일수

Average of inpatient day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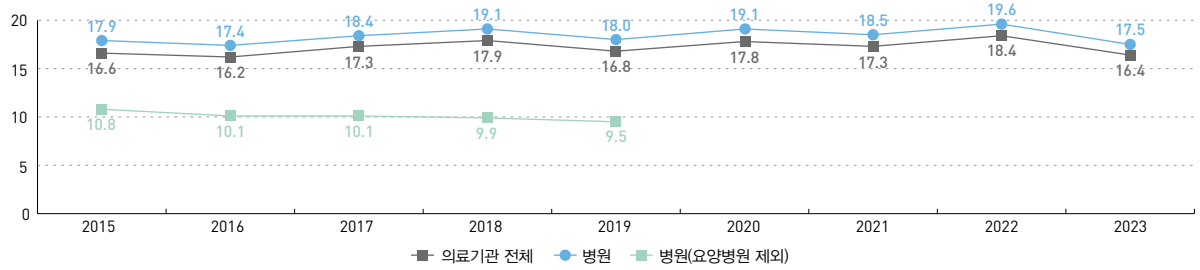
환자가 입원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머문 평균 일수를 의미한다. 퇴원환자의 재원일수 합계를 퇴원건수로 나눈 값이다. 분석은 모든 유형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OECD 국가와의 비교 분석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퇴원환자의 총 재원일수}}{\text{퇴원건수}}$

그림 8-28 평균 재원일수 (2015~2023)

(단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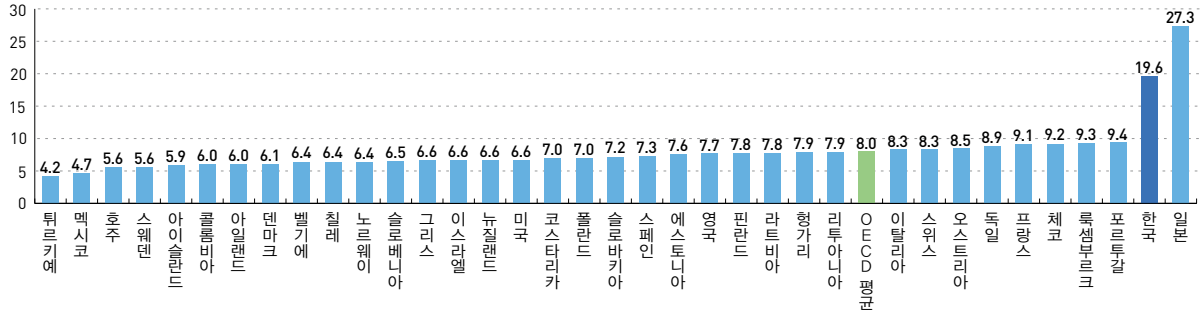


주: 1) 의료기관 전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을 포함함. 단, 2014~2019년까지는 산재보험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0년 이후 산재보험을 포함함.
2) 병원(요양병원 제외) 항목의 2020년 이후 자료는 없음. 2014~2019년까지의 병원(요양병원 제외)자료는 '2019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보고서를 인용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각 연도. (http://www.mohw.go.kr에서 2025.7.04. 인출)

그림 8-29 OECD 국가의 평균 재원일수 (2023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일)



주: 1) 2023년 기준이며, 튀르키예, 멕시코, 스웨덴, 아일랜드, 벨기에,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미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영국, 핀란드, 라트비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체코,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한국, 일본은 2022년,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는 2021년 콜롬비아, 그리스는 2017년이 비교됨.
2) 우리나라는 요양병원 평균 재원일수가 포함되었으며, 급성기 진료(Curative care)의 평균 재원일수는 7.2일(2022년)임.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2014	2023	1년

*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는 환자조사를 개선한 새로운 승인통계로 OECD에 제출되는 자료임.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11
대 표

1인당 의사 진료 건수

Number of consultations with doctor per capita

지표 정의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은 의사의 진료 건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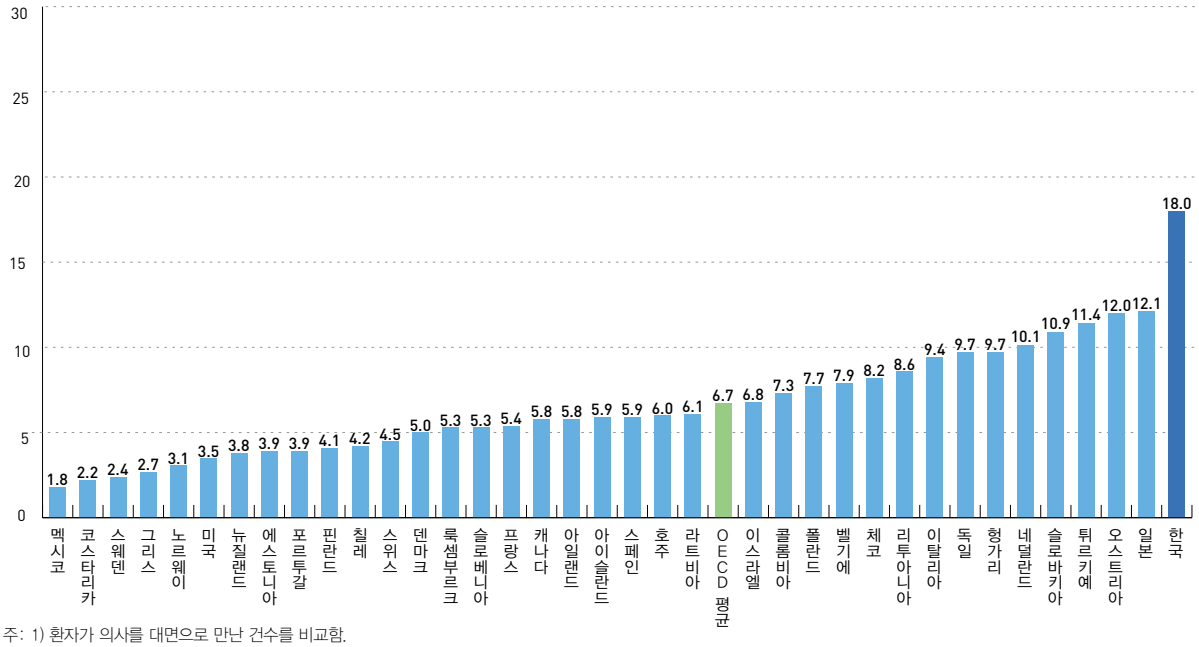
• 진료는 의사와 환자의 만남을 의미한다. 국가마다 보건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진료가 포함하는 내용과 진료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를 수 있다. 진료는 의사의 진료실, 클리닉, 병원의 외래부서, 또는 환자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측정 산식

• $\frac{\text{모든 의료기관의 연간 의사진료 건수 합계}}{\text{장래추계 인구수}}$

그림 8-30 OECD 국가의 1인당 의사 진료 건수 (2023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건)



주: 1) 환자가 의사를 대면으로 만난 건수를 비교함.
2) 2023년 기준이며, 미국, 스위스, 캐나다, 일본은 2022년, 아일랜드, 라트비아, 오스트리아는 2019년, 슬로바키아는 2018년, 뉴질랜드는 2017년, 아이슬란드는 2014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5, 2025.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1960	2023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5, 2025.

11-1
연 관

1인당 외래진료 수진율

Per capita rate of outpatient visits

지표 정의

외래진료 수진율이란 외래의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비중으로 정의하며, 1인당 외래진료 수진율은 1년 동안의 총 외래진료 횟수를 장래인구추계 수로 나눈 값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외래진료 횟수}}{\text{장래인구추계 수}}$

표 8-22 시도별 · 성별 1인당 외래진료 수진율 (2023)

(단위: 회)

시도	전체	남자	여자
전국	19.6	17.4	21.9
서울	22.8	20.4	25.1
부산	22.2	19.3	24.9
대구	22.5	19.9	25.0
인천	18.5	16.1	20.9
광주	20.1	18.2	21.9
대전	22.0	19.8	24.1
울산	19.1	17.2	21.1
세종	17.4	15.6	19.3
경기	17.7	15.6	19.8
강원	17.3	15.5	19.2
충북	18.7	16.4	21.0
충남	17.7	15.7	19.8
전북	21.4	19.0	23.8
전남	19.5	17.1	21.9
경북	16.9	14.9	18.9
경남	18.3	16.2	20.6
제주	20.1	17.4	22.9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2023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2024. (http://www.mohw.go.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2014	2023	1년

*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는 환자조사를 개선한 새로운 국가승인통계로 OECD에 제출되는 자료임.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2023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2024.

11-2
연 관

산전수진율

Rate of prenatal car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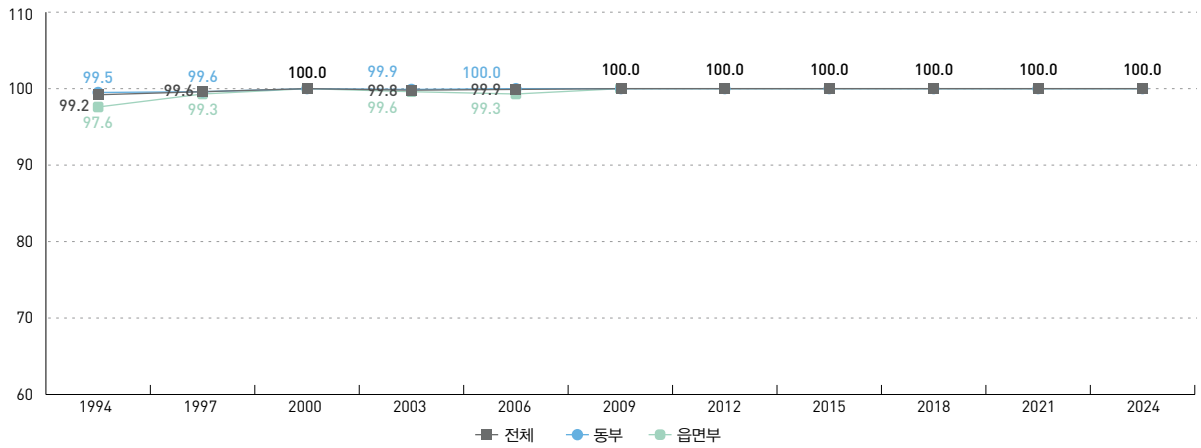
산전수진율이란 임신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관리를 받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출산한 19~49세 기혼여성 중 의료기관을 방문한 여성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이는 의료의 접근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출산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3년 이내에 출산했고, 임신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관리를 받은 19~49세 조사 대상 기혼여성 수}}{\text{최근 3년 이내에 출산한 19~49세 조사 대상 기혼여성 수}} \times 100$

그림 8-31 연도별 · 지역별 산전수진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각 연도. (https://www.kihasa.re.kr에서 2025.7.09. 인출)

표 8-23 연도별 · 지역별 및 모의 연령 구간별 산전 진찰 초진 시기 및 방문 횟수

(단위: 주, 회)

구분	2012		2015		2018		2021		2024	
	초진 시기	방문 횟수	초진 시기	방문 횟수	초진 시기	방문 횟수	초진 시기	방문 횟수	초진 시기	방문 횟수
전체	5.4	13.4	5.3	13.3	5.4	13.5	5.3	13.4	5.6	13.2
지역										
동부	5.3	13.4	5.3	13.3	5.4	13.5	5.3	13.5	5.7	13.3
읍 · 면부	5.7	13.4	5.4	13.2	5.5	13.4	5.3	13.0	5.4	12.5
출산 시 모 연령										
24세 이하	7.4	13.5	6.0	13.1	5.4	13.3	5.7	12.0	10.6	12.3
25~29세	5.0	13.4	5.2	13.7	5.3	13.9	5.3	13.2	5.8	12.9
30~34세	5.0	13.2	5.2	13.2	5.4	13.5	5.3	13.6	5.6	12.9
35세 이상	6.2	13.7	5.4	13.3	5.6	13.2	5.6	12.6	5.2	13.7

주: 2009~2018년 조사 대상은 최근 3년 간 출산한 경험이 있는 15~45세 기혼 여성이었으며, 2021년부터 조사 대상이 최근 3년간 출산한 적 있는 19~49세 기혼 여성으로 변경됨.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07.09. 인출)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2024. (https://www.kihasa.re.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1964	2024	3년

참고문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각 연도.

12
대 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rates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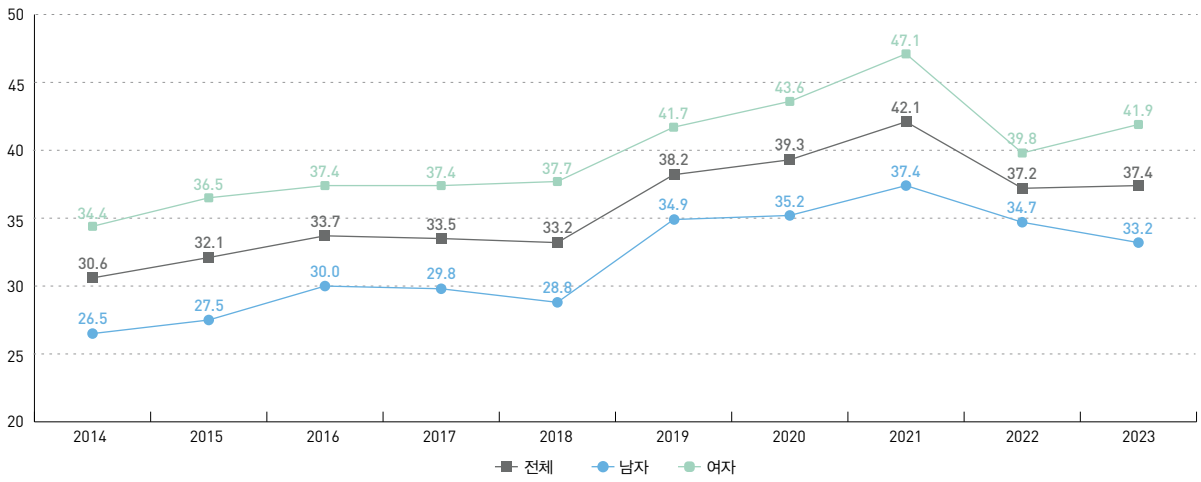
- 인플루엔자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며, 매년 예외 없이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는 전 연령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인이나 어린이와 같이 면역력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증이나 사망의 위험을 겪게 된다.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가운데, 부작용이 많은 항바이러스제보다는 예방접종이 권장되는 편이다.

측정 산식

- $\dfrac{\text{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32 성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14~2023)

(단위: %)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3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표 8-24 일반 특성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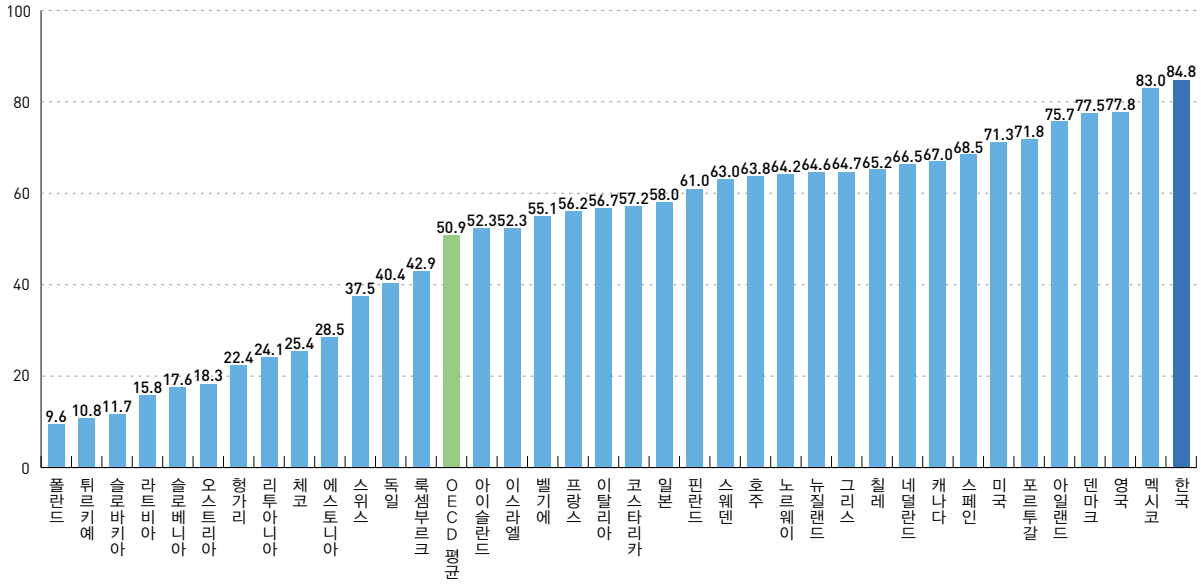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4	30.6	16.2	29.0	20.1	26.7	57.4	83.6	30.8	29.6	31.5	26.8	28.9	34.8	31.0
2015	32.1	16.4	33.8	20.7	27.7	58.4	83.4	32.2	32.1	29.8	34.4	28.1	32.7	35.7
2016	33.7	14.8	34.3	22.0	33.1	63.7	87.0	33.3	36.3	33.8	31.7	33.4	35.1	34.3
2017	33.5	15.9	33.9	24.1	30.2	59.4	88.0	32.7	39.1	30.9	32.6	34.0	34.3	35.7
2018	33.2	16.9	33.9	22.4	27.0	60.9	89.1	33.3	32.1	32.8	34.6	30.7	33.2	34.6
2019	38.2	23.0	37.5	31.1	30.4	64.9	88.9	38.3	38.0	38.5	35.6	38.9	36.9	41.4
2020	39.3	26.0	38.0	34.3	33.9	59.0	84.7	39.5	38.1	34.5	39.7	40.7	41.7	39.5
2021	42.1	28.5	37.4	41.3	37.7	62.1	83.7	41.4	47.3	34.5	41.1	42.0	48.0	45.7
2022	37.2	19.8	34.8	33.3	35.1	59.1	85.9	37.1	37.7	34.8	41.0	34.8	37.0	38.7
2023	37.4	21.4	32.2	33.8	32.8	65.0	86.7	37.6	36.3	33.1	39.1	37.0	37.9	40.0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그림 8-33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의 예방접종률 (2023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



주: 2023년도 기준이며, 튀르키예, 스위스, 일본은 2022년, 오스트리아는 2019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09. 인출)

12-1
연 관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1세 대상

DPT(diphtheria, tetanus, pertussis) vaccination coverage rates for children aged 1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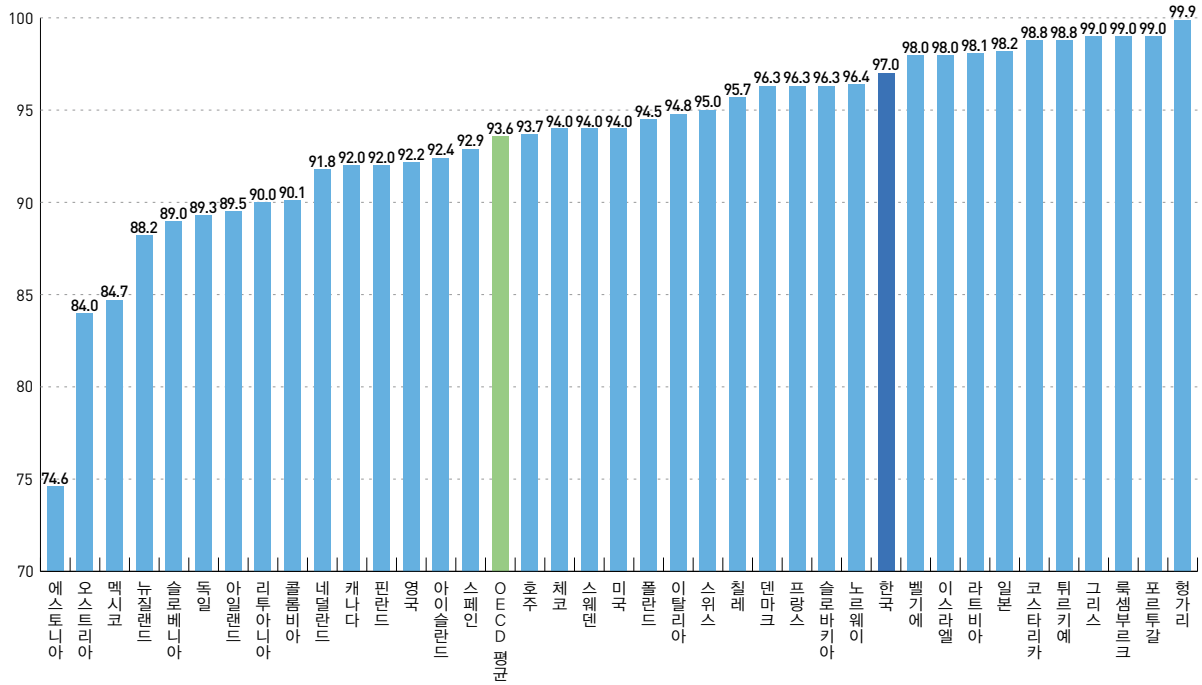
1세의 소아 중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이 이루어진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1세 이하 중 DPT 접종을 받은 사람의 수}}{\text{1세 이하 인구수}} \times 100$

그림 8-34 OECD 국가의 DPT 예방접종률 (2023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1960	2023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12-2
연 관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만 1~18세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rates for pediatric(1-18 year old)

지표 정의

만 1~18세 중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text{만 1~18세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25 일반 특성별 소아 ·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14~2023)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별				성별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남자	여자
2014	47.8	79.2	55.2	31.4	20.1	47.0	48.6
2015	49.3	76.7	56.2	42.1	19.8	47.0	51.9
2016	45.7	73.3	55.6	33.6	17.1	43.5	48.2
2017	50.7	77.3	60.4	44.9	18.9	49.3	52.3
2018	56.3	84.2	66.3	41.5	24.7	55.0	57.8
2019	64.4	91.6	80.2	52.2	24.6	63.0	65.9
2020	70.8	92.8	80.2	62.3	41.4	72.0	69.6
2021	70.9	83.7	80.5	71.0	44.0	70.4	71.4
2022	62.0	83.0	74.5	54.6	28.9	58.1	66.1
2023	63.1	80.6	75.7	61.4	33.0	61.2	65.1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3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13
대 표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Rate of recipients of general health check-ups

지표 정의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로, 1차 검진 수검에 대한 지표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 습관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반 건강검진으로 이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거나, 만 70세와 만 74세 중에서 인지기능 장애 위험이 높다고 판정된 사람은 2차 검진을 받게 된다. 지역 가입자, 사무직 직장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년에 한 번씩, 비사무직 직장 가입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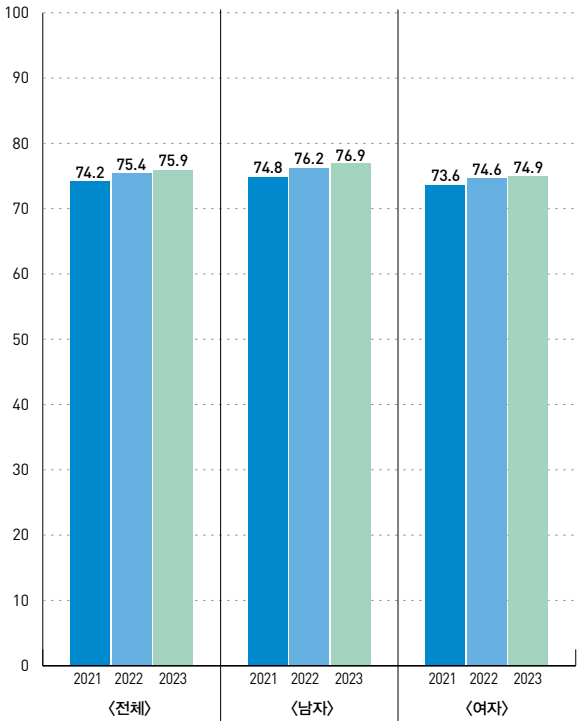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일반건강검진 수검 인원}}{\text{일반건강검진 대상자}} \times 100$

유의사항 여기에서는 건강보험대상자의 검진 실적만 검토한다.

그림 8-35 성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21~2023)

(단위: %)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2024.
(http://nhis.or.kr에서 2025.7.09. 인출)

표 8-26 시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23)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전국	23,000,850	17,462,244	75.9
서울	4,119,038	3,069,565	74.5
부산	1,464,531	1,102,536	75.3
대구	1,058,905	790,313	74.6
인천	1,333,102	1,033,687	77.5
광주	618,483	478,660	77.4
대전	640,447	498,945	77.9
울산	526,190	419,759	79.8
세종	163,293	131,447	80.5
경기	6,133,073	4,691,567	76.5
강원	679,327	515,769	75.9
충북	756,406	585,354	77.4
충남	987,995	745,045	75.4
전북	774,556	586,528	75.7
전남	807,574	611,227	75.7
경북	1,168,445	867,530	74.2
경남	1,486,563	1,128,710	75.9
제주	282,922	205,602	72.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2024.
(http://nhis.or.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2008	2023	1년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연도.

13-1
연 관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Rate of recipients of general health check-ups, by core items

지표 정의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대상자 중 이 항목의 검진을 실시한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특정 검진항목 수검자 수}}{\text{특정 검진항목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27 시도별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2023)

(단위: 명, %)

구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전국	23,313,450	13,931,731	59.8	2,308,610	1,769,726	76.7	24,205,628	6,847,085	28.3
서울	4,261,022	2,478,776	58.2	413,675	307,545	74.3	4,337,626	1,159,951	26.7
부산	1,485,106	896,776	60.4	128,904	100,233	77.8	1,531,191	431,005	28.1
대구	1,052,279	609,979	58.0	96,054	74,448	77.5	1,109,146	224,993	20.3
인천	1,338,065	832,042	62.2	136,273	104,861	76.9	1,404,691	446,299	31.8
광주	618,504	383,666	62.0	64,073	47,896	74.8	651,703	183,667	28.2
대전	620,789	377,574	60.8	66,718	52,014	78.0	673,717	254,468	37.8
울산	487,988	299,400	61.4	54,155	42,968	79.3	554,949	254,308	45.8
세종	147,846	96,905	65.5	27,344	21,755	79.6	177,932	57,649	32.4
경기	6,044,046	3,671,002	60.7	664,070	513,367	77.3	6,474,582	1,783,823	27.6
강원	754,844	436,413	57.8	62,671	48,091	76.7	711,548	176,292	24.8
충북	726,797	434,499	59.8	72,263	55,913	77.4	794,001	309,984	39.0
충남	979,298	570,159	58.2	99,829	75,676	75.8	1,041,001	309,723	29.8
전북	833,516	504,109	60.5	66,552	49,280	74.0	809,292	289,719	35.8
전남	910,638	552,361	60.7	76,469	56,383	73.7	848,158	192,017	22.6
경북	1,249,235	721,771	57.8	107,213	84,458	78.8	1,225,071	281,504	23.0
경남	1,503,297	905,354	60.2	139,521	109,041	78.2	1,560,751	404,282	25.9
제주	300,180	160,945	53.6	32,826	25,797	78.6	300,269	87,401	29.1

주: 1) 암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해당함.
2) 영유아건강검진은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을 대상으로 실시됨.
3) 구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 사례를 합산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2024. (http://nhis.or.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2008	2023	1년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2024.

14
대 표

의료보장 적용 인구

Beneficiaries of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id

지표 정의

정부나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으로부터 기본 의료서비스(예방, 증진, 치료, 재활, 완화치료)를 받는 인구를 의미한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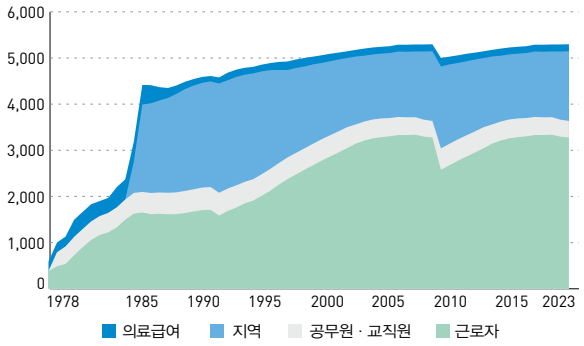
-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의료비지출에 사회적으로 공동 대처하여 재정적 보장을 제공해주는 제도로써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가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은 의료급여제도에 의해서, 이외의 나머지 국민은 건강보험제도에 의해서 보호된다. WHO는 2010년 World Health Report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방안으로 '보장인구의 확대', '급여서비스 영역의 확대', '환자 직접부담 금액의 감소'를 제안하였다.

측정 산식

- **건강보험 적용 인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림 8-36 의료보장 적용인구 (1978~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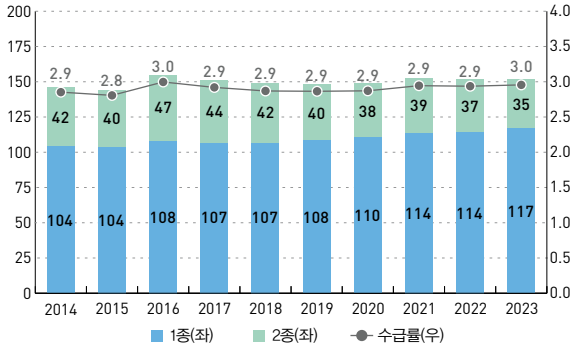
(단위: 만 명)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그림 8-37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14~2023)

(단위: 만 명, %)



주: 수급률=총인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수, 총인구는 행정안전부의 연말 기준 자료임.
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5.7.09. 인출)

표 8-28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2014~2023)

(단위: 만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의료보장	5,176	5,203	5,227	5,243	5,256	5,288	5,287	5,293	5,293	5,297
건강보험	5,032	5,049	5,076	5,094	5,107	5,139	5,134	5,141	5,141	5,145
직장	3,560	3,622	3,667	3,690	3,699	3,723	3,715	3,718	3,663	3,636
근로자	3,143	3,210	3,257	3,284	3,303	3,331	3,329	3,337	3,296	3,277
공무원 · 교직원	417	413	410	406	396	392	386	381	368	360
지역	1,471	1,427	1,409	1,404	1,408	1,416	1,420	1,423	1,478	1,509
의료급여	144	154	151	149	148	149	153	152	152	152
1종	104	108	107	107	108	110	114	114	116	117
2종	40	47	44	42	40	38	39	37	36	35

주: 1) 의료보장인구는 연도 말 기준으로, 통계청의 추계연앙인구와는 다를 수 있음.
2) 수치는 사사오입으로 인하여 항목별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23	1년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Number of priority caring programs recipients in near poor

지표 정의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사업 지원 수급자의 수. 지원 대상자는 기존 세대에서 별도 세대로 분리 후 보험료를 산정

측정 산식

•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수급 받은 자의 수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 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20%
	심 · 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 시 30일), 기본 식대의 2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40%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표 8-29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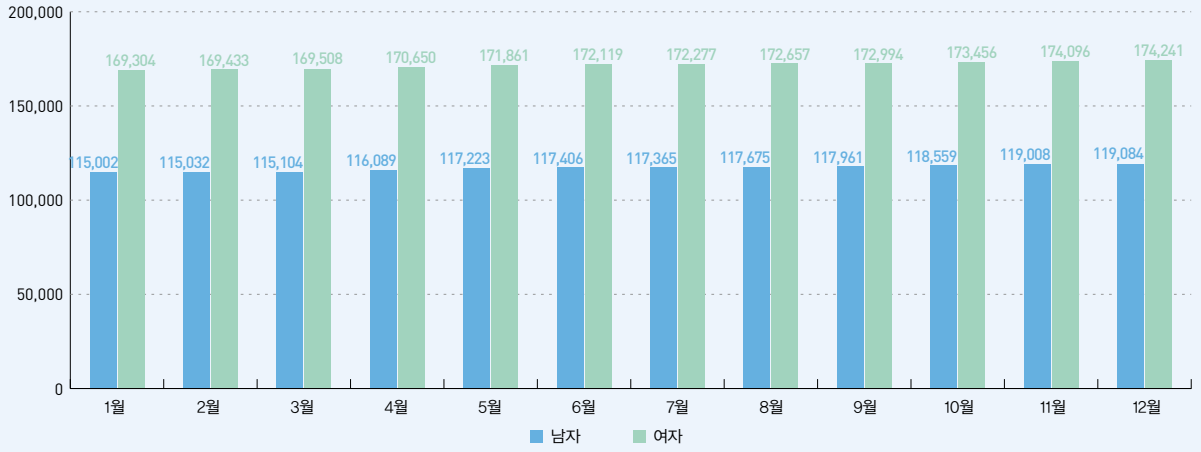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345,349	300,520	289,737	279,904	273,880	271,022	276,997	284,669	285,694	288,977	293,325

주: 각 연도 12월 기준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각 연도.

그림 8-38 월별 · 성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2024)

(단위: 명)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25.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4	1년

참고문헌

•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각 연도.

표 8-30 월별 · 시도별 · 성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2024)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남	115,002	115,032	115,104	116,089	117,223	117,406	117,365	117,675	117,961	118,559	119,008	119,084
	여	169,304	169,433	169,508	170,650	171,861	172,119	172,277	172,657	172,994	173,456	174,096	174,241
	계	284,306	284,465	284,612	286,739	289,084	289,525	289,642	290,332	290,955	292,015	293,104	293,325
서울	남	18,332	18,310	18,300	18,365	18,528	18,543	18,569	18,620	18,666	18,739	18,844	18,889
	여	25,749	25,794	25,737	25,811	25,957	26,003	26,065	26,105	26,141	26,176	26,289	26,303
부산	남	9,161	9,195	9,161	9,234	9,341	9,360	9,363	9,414	9,456	9,485	9,513	9,508
	여	14,611	14,626	14,613	14,708	14,820	14,904	14,925	14,983	15,018	15,100	15,132	15,127
대구	남	7,567	7,505	7,530	7,678	7,753	7,770	7,803	7,805	7,843	7,860	7,861	7,859
	여	11,310	11,281	11,303	11,469	11,542	11,546	11,580	11,566	11,575	11,641	11,638	11,608
인천	남	7,278	7,288	7,314	7,405	7,487	7,537	7,564	7,606	7,651	7,696	7,740	7,770
	여	9,886	9,919	9,951	10,063	10,182	10,231	10,268	10,328	10,363	10,429	10,474	10,531
광주	남	4,816	4,755	4,723	4,764	4,802	4,782	4,760	4,746	4,754	4,769	4,778	4,764
	여	6,527	6,438	6,399	6,473	6,496	6,514	6,499	6,483	6,505	6,518	6,544	6,539
대전	남	3,677	3,704	3,699	3,723	3,747	3,770	3,790	3,772	3,814	3,871	3,901	3,918
	여	5,080	5,108	5,128	5,165	5,223	5,229	5,233	5,255	5,306	5,347	5,413	5,440
울산	남	1,888	1,887	1,906	1,932	1,948	1,943	1,939	1,940	1,944	1,936	1,959	1,957
	여	2,464	2,486	2,492	2,530	2,559	2,568	2,571	2,576	2,588	2,602	2,622	2,621
세종	남	379	380	383	395	413	417	410	425	423	450	451	470
	여	506	506	514	525	532	527	525	532	527	535	544	559
경기	남	21,561	21,705	21,776	21,954	22,220	22,271	22,253	22,414	22,502	22,627	22,750	22,791
	여	28,873	29,012	29,178	29,430	29,758	29,881	29,976	30,173	30,311	30,494	30,710	30,872
강원	남	3,971	3,979	4,021	4,073	4,116	4,110	4,094	4,096	4,113	4,120	4,132	4,122
	여	6,350	6,362	6,369	6,397	6,446	6,439	6,426	6,449	6,449	6,437	6,451	6,448
충북	남	3,270	3,275	3,277	3,341	3,386	3,410	3,422	3,440	3,441	3,472	3,490	3,477
	여	4,920	4,942	4,968	5,006	5,034	5,039	5,011	5,035	5,051	5,049	5,073	5,058
충남	남	3,021	3,033	3,015	3,027	3,060	3,053	3,052	3,066	3,064	3,079	3,083	3,084
	여	4,851	4,888	4,880	4,912	4,949	4,935	4,935	4,932	4,920	4,928	4,926	4,892
전북	남	8,312	8,255	8,216	8,238	8,255	8,264	8,215	8,195	8,204	8,267	8,267	8,252
	여	13,302	13,264	13,188	13,196	13,204	13,179	13,083	13,045	13,035	13,008	13,047	13,038
전남	남	5,837	5,747	5,762	5,798	5,853	5,846	5,826	5,824	5,801	5,819	5,836	5,806
	여	10,381	10,255	10,254	10,229	10,255	10,228	10,222	10,185	10,188	10,179	10,167	10,153
경북	남	5,966	5,984	5,957	6,005	6,059	6,046	6,037	6,027	6,012	6,024	6,025	6,058
	여	10,186	10,224	10,191	10,290	10,356	10,365	10,372	10,350	10,355	10,316	10,343	10,341
경남	남	7,930	7,973	8,012	8,076	8,141	8,167	8,153	8,168	8,158	8,216	8,226	8,211
	여	11,603	11,608	11,653	11,729	11,802	11,777	11,834	11,883	11,875	11,884	11,891	11,887
제주	남	2,036	2,057	2,052	2,081	2,106	2,116	2,114	2,116	2,114	2,128	2,151	2,147
	여	2,705	2,720	2,690	2,717	2,736	2,753	2,751	2,776	2,786	2,812	2,831	2,823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25.

15
대 표

의사 수

Number of physician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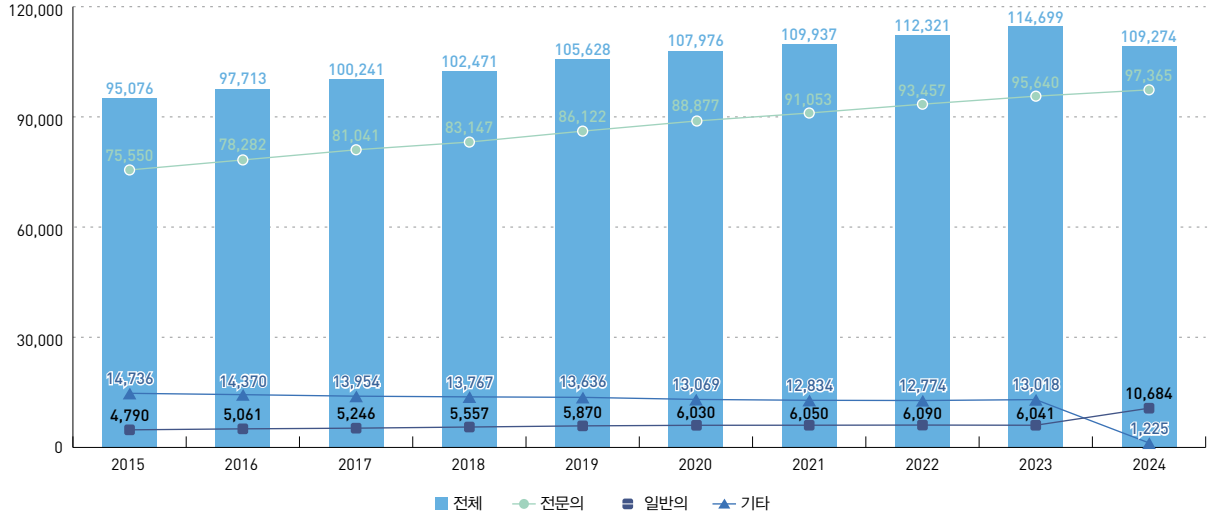
의료법 제2조에 의거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사의 수이다. 여기에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주요 업무로 하는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까지를 포함하며,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제외한다.

측정 산식

• 요양기관이 신고한 전속 의사 수

그림 8-39 의사 수 (2015~2024)

(단위: 명)



주: 1) 연도 말 기준임.
2) 인턴과 레지던트는 기타로 분류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24	1년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 행정안전부, 2024 주민등록인구통계, 2025.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표 8-31 시도별 의사 수 (202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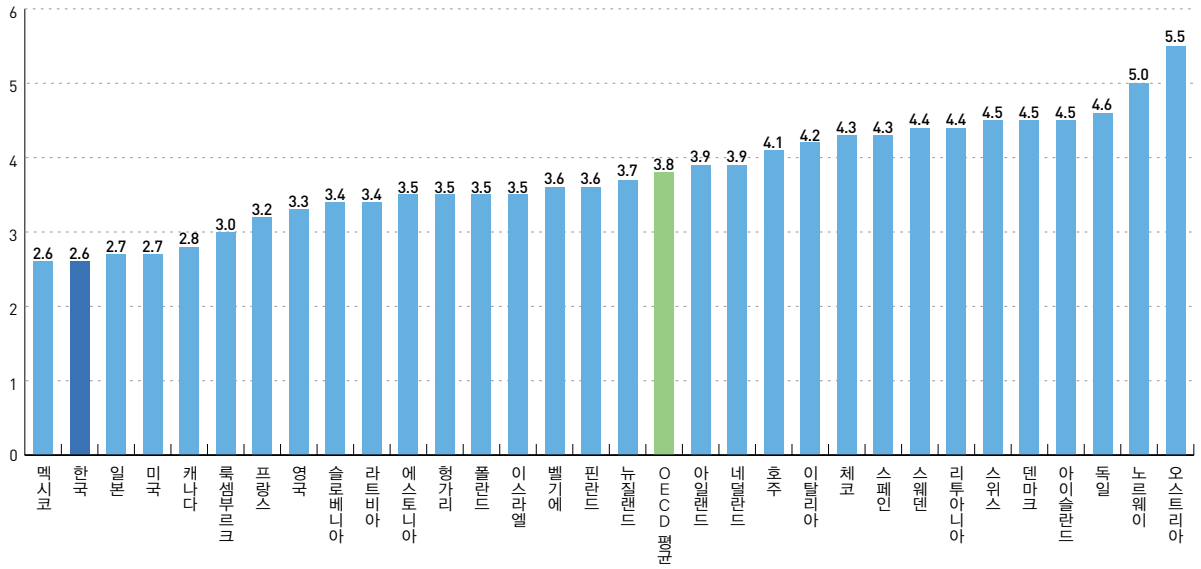
구분	의사 수[1]				인구 천 명당 의사 수[2]			
	전체	전문의	일반의	기타[3]	전체	전문의	일반의	기타[3]
전국	109,274	97,365	10,684	1,225	2.1	1.9	0.2	0.0
서울	30,689	27,304	2,858	527	3.3	2.9	0.3	0.1
부산	8,096	7,313	692	91	2.5	2.2	0.2	0.0
대구	5,844	5,374	429	41	2.5	2.3	0.2	0.0
인천	5,634	4,991	579	64	1.9	1.7	0.2	0.0
광주	3,599	3,264	311	24	2.6	2.3	0.2	0.0
대전	3,484	3,101	348	35	2.4	2.2	0.2	0.0
울산	1,819	1,622	179	18	1.7	1.5	0.2	0.0
세종	556	498	58	-	1.4	1.3	0.1	0.0
경기	24,355	21,899	2,254	202	1.8	1.6	0.2	0.0
강원	2,562	2,245	277	40	1.7	1.5	0.2	0.0
충북	2,496	2,160	316	20	1.6	1.4	0.2	0.0
충남	3,224	2,799	398	27	1.5	1.3	0.2	0.0
전북	3,473	3,070	362	41	2.0	1.8	0.2	0.0
전남	3,098	2,594	470	34	1.7	1.5	0.3	0.0
경북	3,640	3,233	397	10	1.4	1.3	0.2	0.0
경남	5,474	4,810	635	29	1.7	1.5	0.2	0.0
제주	1,231	1,088	121	22	1.8	1.6	0.2	0.0

주: 1) OECD에서 발표하는 의사 수와의 차이는 한의사의 포함 여부에 따름. OECD는 한의사를 의사 항목에 포함하여 집계함.
2)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행정안전부의 연말 기준 '총인구' 대비 '요양기관 종사 의사 수'를 의미함.
3) 인턴과 레지던트는 기타로 분류함.

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07.09. 인출)
2) 행정안전부, 2024 주민등록인구통계, 2025. (https://jumin.mois.go.kr에서 2025.7.09. 인출)

그림 8-40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 (2023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인구 천 명당)



주: 1)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의사 수는 한의사를 의사 항목에 포함하여 집계함.
2) 2023년도 기준이며, 멕시코,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이스라엘, 벨기에,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 체코, 스페인, 리투아니아, 스위스, 독일은 2022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2021년, 룩셈부르크는 2017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07. 인출)

15-1
연 관

면허의료인 수

Number of licensed health care workers

지표 정의

주요 의료 인력의 해당 분야 면허인 수이다. 주요 의료 인력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가 해당된다.

측정 산식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 수

표 8-32 연도별 · 성별 면허의료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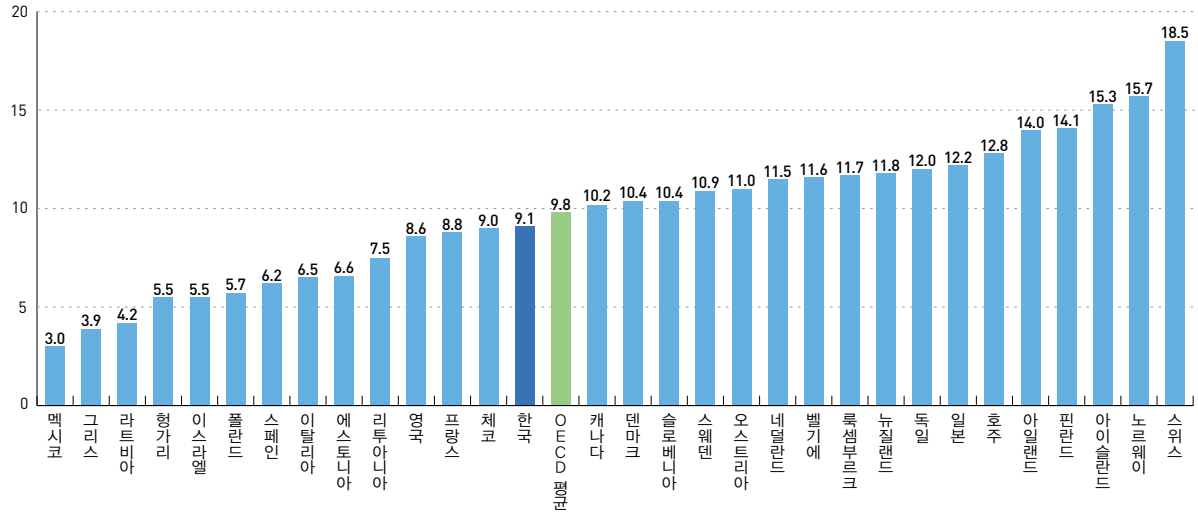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3	2018	2023	2013년 대비 2023년	2013	2018	2023	2013년 대비 2023년	2013	2018	2023	2013년 대비 2023년
의사[1)]	109,563	123,173	137,698	25.7	83,409	91,156	100,098	20.0	26,154	32,017	37,600	43.8
치과의사[1)]	27,409	30,918	34,361	25.4	20,246	22,475	24,598	21.5	7,163	8,443	9,763	36.3
한의사[1)]	21,355	24,885	28,233	32.2	17,351	19,453	21,414	23.4	4,004	5,432	6,819	70.3
약사[1)]	65,212	71,896	79,965	22.6	23,827	26,117	28,868	21.2	41,385	45,779	51,097	23.5
간호사	307,797	394,662	503,831	63.7	6,194	14,932	31,773	413.0	301,603	379,730	472,058	56.5

주: 1)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 한약사를 포함함.
2) 사망자(말소자 포함)는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4 보건복지통계연보, 2024. (https://www.mohw.go.kr에서 2025.7.09. 인출)

그림 8-41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사 수 (2023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인구 천 명당)



주: 2023년도 기준이며, 멕시코, 그리스, 라트비아, 헝가리, 이스라엘,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체코, 한국, 캐나다,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일본, 호주, 스위스는 2022년,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는 2021년, 룩셈부르크는 2017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0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	1988	2023	1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4 보건복지통계연보, 2024.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16
대 표

병상 수

Number of inpatient care beds

지표 정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의 전체 병상 수이다.

• 병상 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자원을 보여준다. 연도별 추이, 지역별 병상 현황을 관찰함으로써 병상 수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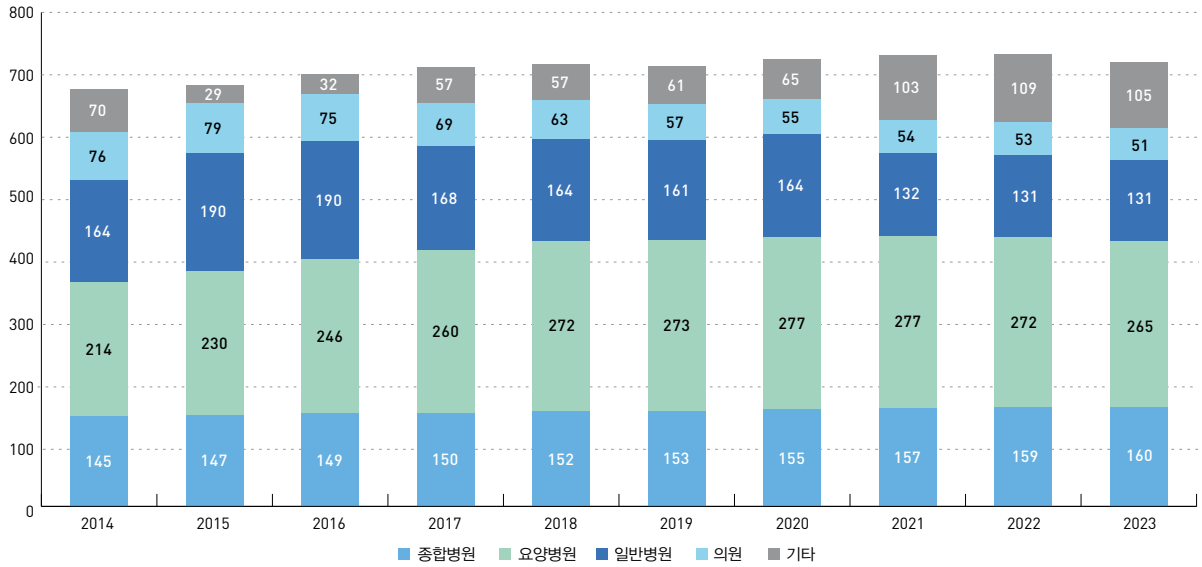
측정 산식

• **등록 병상 수**

유의사항 우리나라 병상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신고 병상 자료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등록 병상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OECD Health Statistics의 작성은 등록 병상 자료에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등록 병상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림 8-42 의료기관 종류별 병상 수 (2014~2023)

(단위: 천 개)



주: 기타에는 특수병원, 치과 병 · 의원, 한방 병 · 의원, 부속의원, 조산원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2024 보건복지통계연보, 2024. (https://www.mohw.go.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	1988	2023	1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4 보건복지통계연보, 2024.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표 8-33 시도별 · 의료기관 종류별 병상 수 (2023)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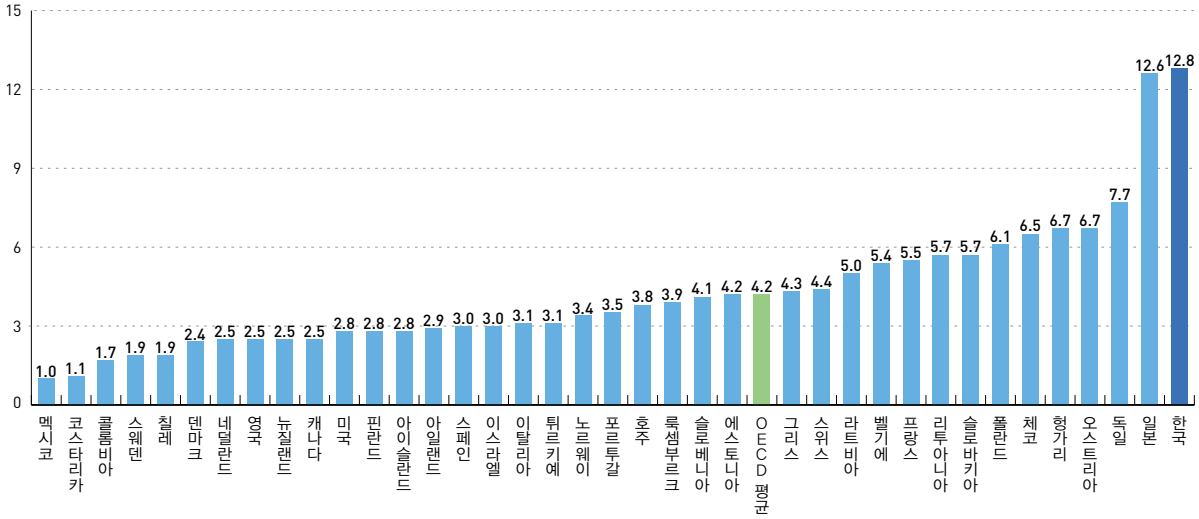
구분	병상 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1]					
	전체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기타[2]	전체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기타[2]
전국	711,487	159,708	264,974	130,708	51,085	105,012	13.9	3.1	5.2	2.5	1.0	2.0
서울	90,393	33,800	20,856	17,274	9,099	9,364	9.6	3.6	2.2	1.8	1.0	1.0
부산	69,827	13,172	32,191	13,592	3,389	7,483	21.2	4.0	9.8	4.1	1.0	2.3
대구	40,658	8,708	13,597	10,299	2,849	5,205	17.1	3.7	5.7	4.3	1.2	2.2
인천	35,965	8,326	11,889	5,523	3,331	6,896	12.0	2.8	4.0	1.8	1.1	2.3
광주	39,433	7,825	14,486	7,031	2,213	7,878	27.8	5.5	10.2	5.0	1.6	5.6
대전	22,650	5,139	8,374	4,496	2,107	2,534	15.7	3.6	5.8	3.1	1.5	1.8
울산	15,776	3,569	6,686	2,621	1,021	1,879	14.3	3.2	6.1	2.4	0.9	1.7
세종	2,145	608	538	198	371	430	5.5	1.6	1.4	0.5	1.0	1.1
경기	140,184	28,710	53,023	25,944	10,743	21,764	10.3	2.1	3.9	1.9	0.8	1.6
강원	16,498	5,409	3,853	3,592	1,579	2,065	10.8	3.5	2.5	2.4	1.0	1.4
충북	20,904	4,725	6,310	3,723	2,135	4,011	13.1	3.0	4.0	2.3	1.3	2.5
충남	27,910	5,481	11,526	3,777	2,214	4,912	13.1	2.6	5.4	1.8	1.0	2.3
전북	38,671	5,844	18,074	5,837	3,067	5,849	22.0	3.3	10.3	3.3	1.7	3.3
전남	40,728	8,076	17,045	7,772	1,978	5,857	22.6	4.5	9.4	4.3	1.1	3.2
경북	42,426	7,987	20,043	5,042	1,960	7,394	16.6	3.1	7.8	2.0	0.8	2.9
경남	62,185	10,149	25,020	13,100	2,794	11,122	19.1	3.1	7.7	4.0	0.9	3.4
제주	5,134	2,180	1,463	887	235	369	7.6	3.2	2.2	1.3	0.3	0.5

주: 1)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행정안전부의 연말기준 '총인구' 대비 '요양기관별 병상 수'를 의미함.
2) 기타에는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부속의원, 조산원이 포함됨.

자료: 1) 보건복지부, 2024 보건복지통계연보, 2024. (https://www.mohw.go.kr에서 2025.7.09. 인출)
2) 행정안전부, 2024 주민등록인구통계, 2025. (https://jumin.mois.go.kr에서 2025.7.09. 인출)

그림 8-43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병원 병상 수 (2023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개, 인구 천 명당)



주: 1) OECD 통계에는 병원급(요양병원 포함)만 포함됨. 따라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은 제외됨.
2) 2023년도 기준이며, 멕시코, 코스타리카,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튀르키예,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위스, 라트비아, 프랑스,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한국은 2022년, 핀란드는 2021년, 콜롬비아, 아이슬란드는 2020년, 호주는 2016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07. 인출)

16-1
연 관

의료기관 수

Number of healthcare providers

지표 정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등록된 수이다.

측정 산식

• 등록 기관 수

표 8-34 시도별 의료기관 현황 (2023)

(단위: 개)

시도	전체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조산원	기타[2)]
전국	73,750	377	1,395	1,402	35,594	19,262	15,170	15	535
서울	18,825	56	110	230	9,687	4,928	3,726	3	85
부산	5,487	29	162	142	2,592	1,361	1,167	1	33
대구	4,053	19	71	92	1,982	950	916	0	23
인천	3,667	21	63	57	1,767	1,002	731	1	25
광주	2,287	25	63	78	1,044	656	404	0	17
대전	2,304	10	47	46	1,107	557	516	1	20
울산	1,399	9	38	34	628	393	281	0	16
세종	440	2	4	3	225	100	98	0	8
경기	17,025	71	303	286	8,075	4,739	3,443	5	103
강원	1,721	16	31	36	797	438	387	0	16
충북	1,936	13	38	35	929	477	420	1	23
충남	2,405	13	68	46	1,101	618	527	0	32
전북	2,530	14	80	60	1,216	608	539	0	13
전남	2,066	26	80	71	960	518	386	0	25
경북	2,844	21	107	52	1,282	706	627	1	48
경남	3,790	26	119	126	1,704	967	805	1	42
제주	971	6	11	8	498	244	197	1	6

주: 1) 연도 말 기준임.
2) 기타에는 특수병원(결핵, 한센, 정신)과 산업체 부속의원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2024 보건복지통계연보, 2024. (https://www.mohw.go.kr에서 2025.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	1988	2023	1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4 보건복지통계연보, 2024.

17
대 표

GDP 대비 경상의료비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as % GDP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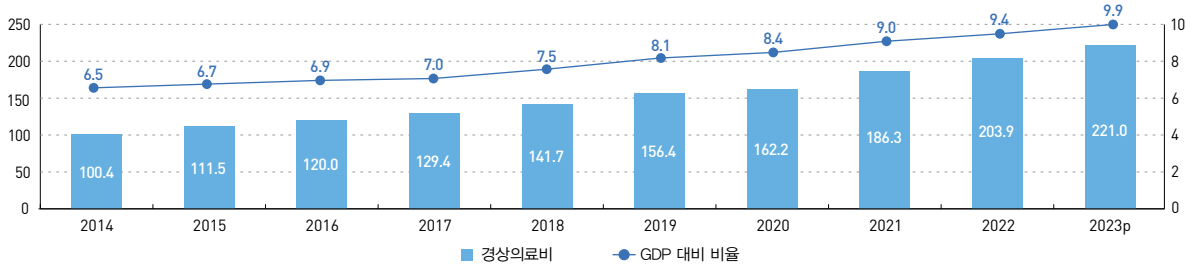
GDP에서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경상의료비는 국민 전체가 1년간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최종 소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료서비스와 집합보건의료서비스(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보건행정관리)에 대한 정부 · 의무가입제도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포함한다**.

측정 산식

$$\frac{\text{경상의료비}}{\text{GDP}} \times 100$$

그림 8-44 경상의료비 (2014~202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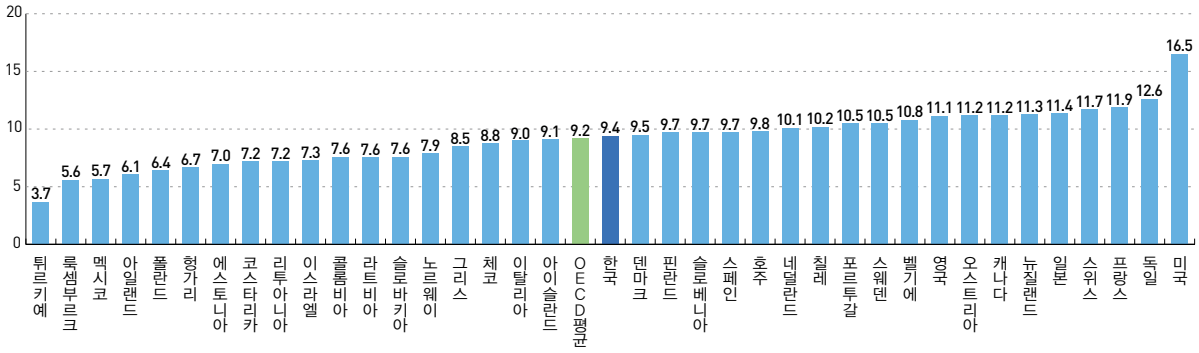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주: 2023p는 2023년 잠정치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외, 국민보건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인출)

그림 8-45 OECD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2022)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Statistics 2024 소책자,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외	국민보건계정	1970	2023p*	1년

* 잠정치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외, 국민보건계정,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 보건계정의 신 매뉴얼인 'SHA2011'에서는 의료비 총량지의 대표 지표로 국민의료비 대신 경상의료비를 사용하기로 정하고 있음. OECD는 Health Statistics 2015(2015.7. 발표)부터 이러한 방침을 국제비교 시에 적용함. 국민의료비는 경상의료비와 고정자본형성을 더한 것으로, 2000년대 초반 보건계정이 시작된 이후 2015년까지 보건의료비용의 대표 지표로 사용됐음.

** OECD Health Statistics 2016의 산출 기준이 되는 SHA2011에서는 재원 구분을 크게 정부 · 의무가입제도와 민간재원으로 구분함. 정부 · 의무가입제도는 기존 매뉴얼(SHA1.0)에서의 공공재원과 민영사회보험인 '자동차보험'을 더한 개념임.

17-1
연 관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Out-of-pocket expenditure, as % of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지표 정의

경상의료비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여기에서 가계직접부담은 의료이용 시 이용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본인부담의 합으로 구성된다.

측정 산식

$$\frac{\text{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총합}}{\text{경상의료비}} \times 100$$

표 8-35 연도별 경상의료비 재원구성

(단위: 십억 원, %)

연도	경상의료비	정부 · 의무가입제도		임의가입제도 및 가계직접부담			
		정부	의무가입 (건강)보험	임의가입 건강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가계직접부담
1983	2,327	150	496	0	18	8	1,655
	(100.0)	(6.4)	(21.3)	(-)	(0.8)	(0.3)	(71.1)
1993	10,957	828	3,587	0	73	26	6,443
	(100.0)	(7.6)	(32.7)	(-)	(0.7)	(0.2)	(58.8)
2003	38,801	3,631	16,842	701	0	61	17,565
	(100.0)	(9.4)	(43.4)	(1.8)	(-)	(0.2)	(45.3)
2013	94,717	9,417	43,908	5,403	0	127	35,862
	(100.0)	(9.9)	(46.4)	(5.7)	(-)	(0.1)	(37.9)
2023p	220,953	28,766	110,900	14,163	0	271	66,853
	(100.0)	(13.0)	(50.2)	(6.4)	(-)	(0.1)	(30.3)

주: 2023p는 2023년 잠정치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외, 국민보건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외	국민보건계정	1980	2023p*	1년

* 잠정치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외, 국민보건계정, 각 연도.

17-2
연 관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비중

Pharmaceuticals and other medical non-durables expenditure, as % of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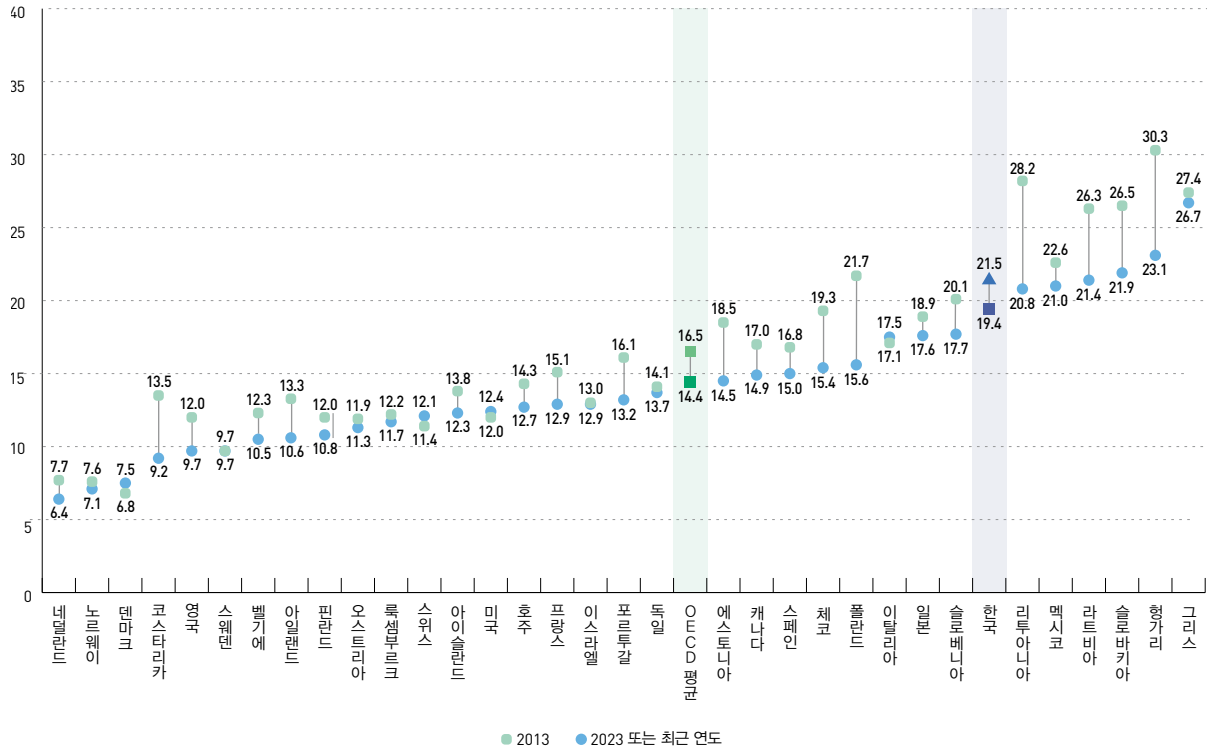
경상의료비 중에서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여기에서 의약품은 처방의약품과 비처방의약품으로, 의료용 소모품은 반창고, 요실금용품, 피임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총합}}{\text{경상의료비}} \times 100$

그림 8-46 OECD 국가의 연도별 의약품 및 의료용소모품비의 비중

(단위: %)



주: 1) 칠레, 콜롬비아, 뉴질랜드, 튀르키예는 제외됨.
2) 2023년도 기준이며,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호주, 이스라엘, 멕시코는 2022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 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1970	2023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17-3
연 관

건강보험 급여비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amount

지표 정의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든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다. 이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합이며, 현물급여는 요양급여(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분 포함), 건강진단비로, 현금급여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비,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분, 임신출산 진료비로 구성된다.

측정 산식

- 현물급여 + 현금급여

표 8-36 건강보험 급여비 (2014~2023)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42,586	45,730	50,891	54,625	61,670	68,456	69,351	74,607	81,526	89,434
현물급여 (비중)	41,899 (98.4)	44,582 (97.5)	49,705 (97.7)	53,322 (97.6)	60,141 (97.5)	66,571 (97.3)	67,103 (96.8)	71,992 (96.5)	78,709 (96.5)	86,511 (96.7)
현금급여 (비중)	687 (1.6)	1,148 (2.5)	1,185 (2.3)	1,303 (2.4)	1,528 (2.5)	1,885 (2.7)	2,248 (3.2)	2,614 (3.5)	2,817 (3.5)	2,923 (3.3)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09. 인출)

8 건강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2005	2023	1년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17-4
연 관

건강보험 보장률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지표 정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 대상자가 치료 목적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발생하는 전체 의료비(보험자 부담금,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단, 건강보험 보장률에 있어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미용성형수술, 집단검진, 개별검진, 시력 교정술, 예방접종, 기타 예방진료, 임플란트*, 미용목적의 보철 · 교정, 건강증진 목적의 한약첩약,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외한 건강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급여 항목만을 포함한 것이다.

* 2006~2013 보장률은 임플란트 전체를 미포함, 2014년 보장률은 75세 이상 임플란트를 포함, 2015년 보장률은 70세 이상 임플란트를 포함, 2016년 보장률은 65세 이상 임플란트를 포함함. 이와 같이 급여 확대에 따라 포함 항목이 시계열적으로 일관되지 않음.

측정 산식

- $$\frac{\text{보험자부담금}}{\text{전체 의료비 (보험자 부담금 + 법정 본인 부담금 + 비급여 본인 부담금)}} \times 100$$

표 8-37 건강보험 보장률 (2014~2023)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현금급여 포함	63.2	63.4	62.6	62.7	63.8	64.2	65.3	64.5	65.7	64.9

주: 현금급여를 제외한 경우는 2011년 이후 발표되지 않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07.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05	2023	1년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각 연도.

9

보육 및 교육

0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0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03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04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05 학교급별 취학률
06 학급당 학생 수
07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08 교원 1인당 학생 수
09 학생 1인당 사교육비
10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11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12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13 고등교육 이수율
14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교육의 질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학교급별 취학률	
	학급당 학생 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 부담 교육비 비율
교육 기회보장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고등교육 이수율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01
대 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Number of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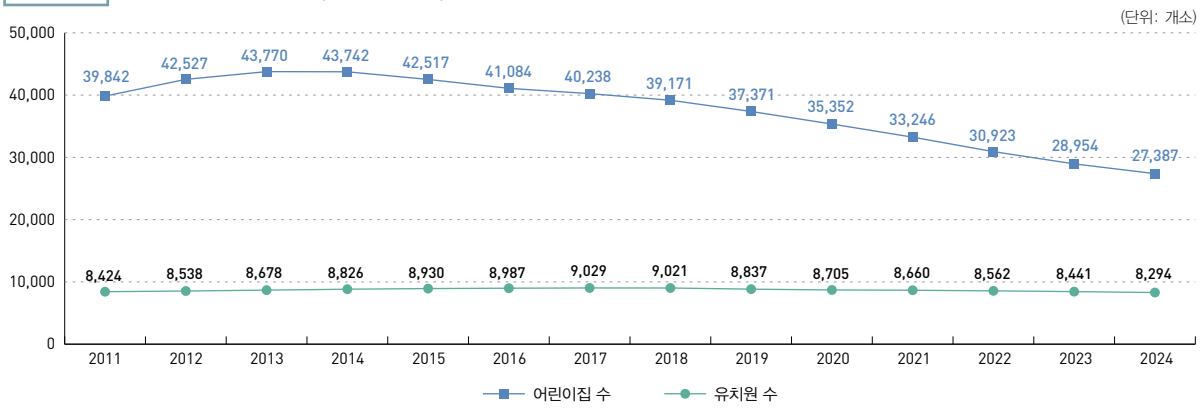
지표 정의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정의되며,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 운영되는 학교로 유아교육법에 의해 정의된다. 본 지표는 각각의 기관의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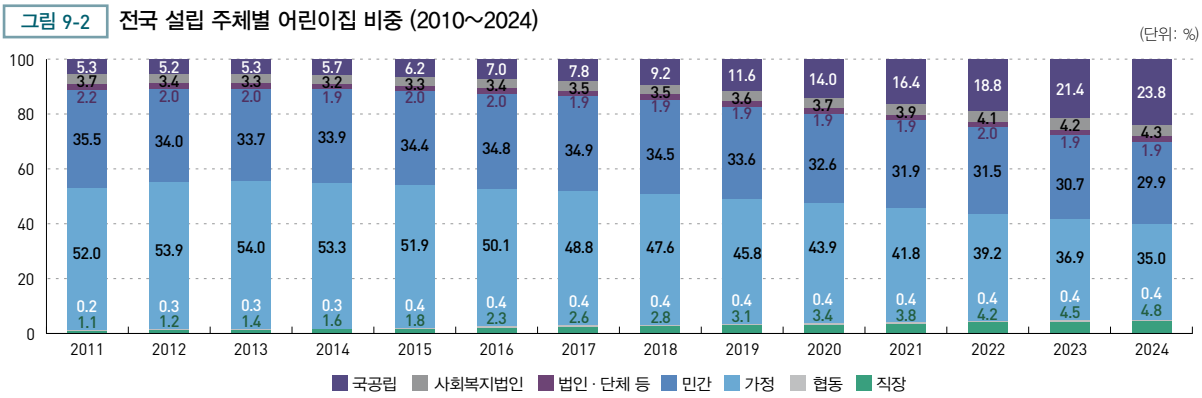
- 어린이집 수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7개 유형 어린이집 수
- 유치원 수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수

그림 9-1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 (2011~2024)



자료: 1)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23. 인출)
2)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https://kess.kedi.re.kr에서 2025.7.23. 인출)

그림 9-2 전국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비중 (201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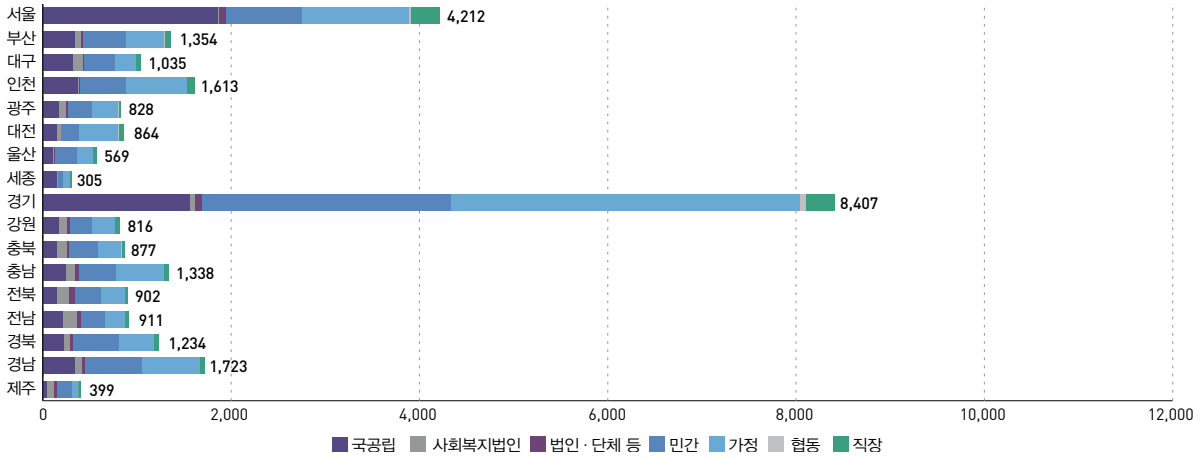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2023) · 교육부 (2024~)	보육통계	2000	2024	1년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24	1년

그림 9-3 시도별 ·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수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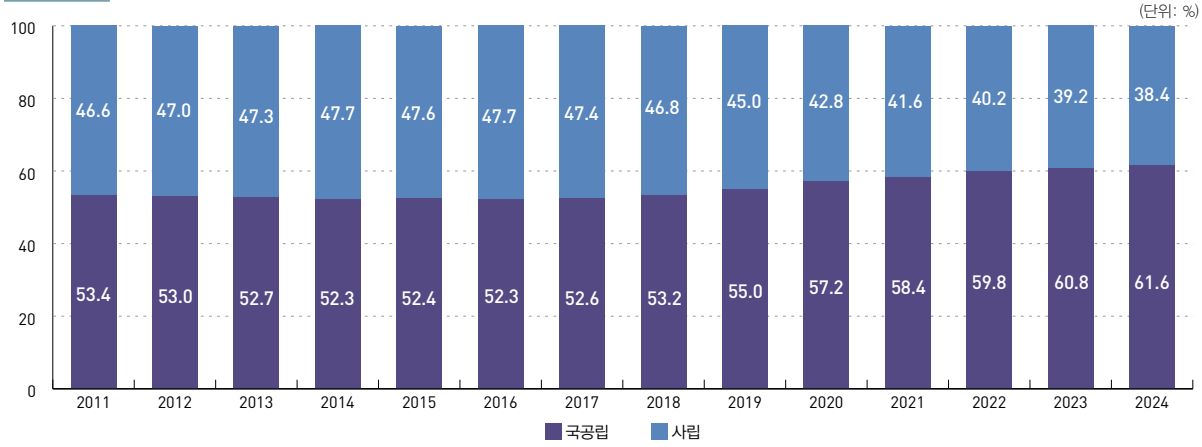
(단위: 개소)



자료: 교육부, 2024년 보육통계, 2024 (http://www.moe.go.kr에서 2025.7.23. 인출)

그림 9-4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분포 (201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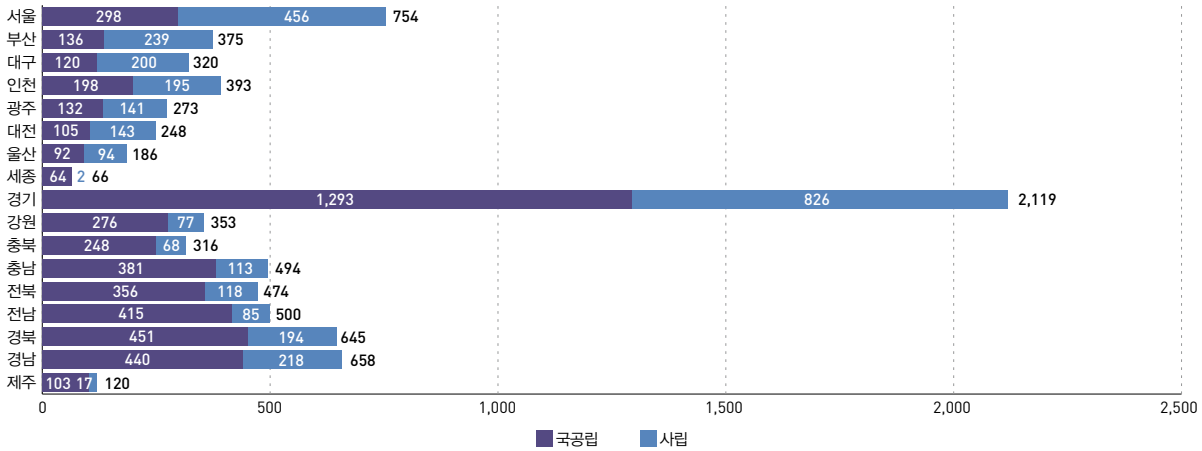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https://kess.kedi.re.kr에서 2025.7.23. 인출)

그림 9-5 시도별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수 (2024)

(단위: 개소)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24. (https://kess.kedi.re.kr에서 2025.7.23. 인출)

02
대 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to-5 year-olds

지표 정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해당 연령의 아동 수 대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유아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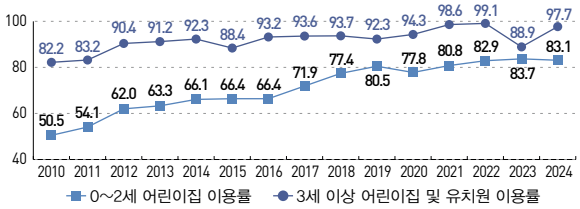
측정 산식

- 0~2세 이용률 = $\frac{\text{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수 (보육아동 수)}}{\text{전체 0~2세 아동 수}} \times 100$
- 3세 이상 이용률 = $\frac{\text{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3세 이상 아동 수}}{\text{전체 3~5세 아동 수}} \times 100$

유의사항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와 주민등록 인구 현황은 연말 기준이나 교육기본통계는 4월 1일 기준으로 시점이 다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0~2세 이용률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만 2세 보육아동 수를 기준으로 한다. 만 3세 이상 이용률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원아 수 총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즉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이상 유아의 총합을 기준으로 산출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 9-6 국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1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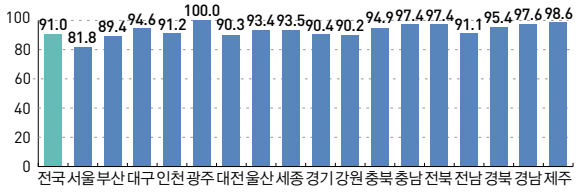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http://www.mohw.go.kr에서 2025.7.23. 인출)
2) 교육부, 보육통계, 2024. (http://www.moe.go.kr에서 2025.7.23. 인출)
3)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 연도.
(https://kess.kedi.re.kr에서 2025.7.23. 인출)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5.7.23. 인출)

그림 9-7 시도별 0~5세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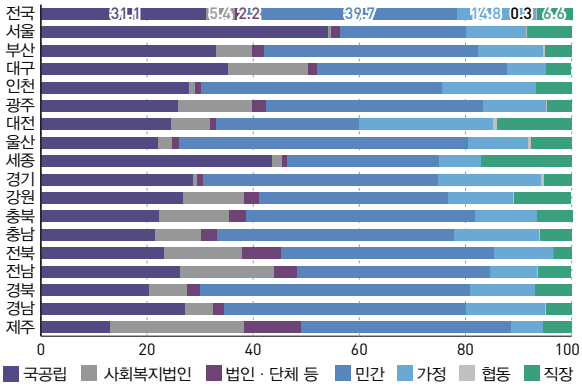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http://www.mohw.go.kr에서 2025.7.23. 인출)
2) 교육부, 보육통계, 2024. (http://www.moe.go.kr에서 2025.7.23. 인출)
3)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 연도.
(https://kess.kedi.re.kr에서 2025.7.23. 인출)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5.7.23. 인출)

그림 9-8 시도별 어린이집 설립 주체 유형에 따른 이용 비중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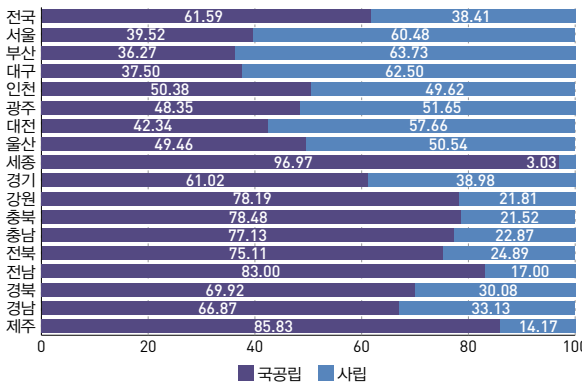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교육부, 보육통계, 2024. (http://www.moe.go.kr에서 2025.7.23. 인출)

그림 9-9 시도별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이용 비중 (2024)

(단위: %)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24.
(https://kess.kedi.re.kr에서 2025.7.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2023) · 교육부 (2024~)	보육통계	2000	2024	1년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24	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2008	2024	1개월

03
대 표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child home care allowance

지표 정의

가정 양육수당은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이 포함되며,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이다. 본 지표는 전체 가정 양육수당 수급 아동 수를 의미한다.(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2024년 기준 연령별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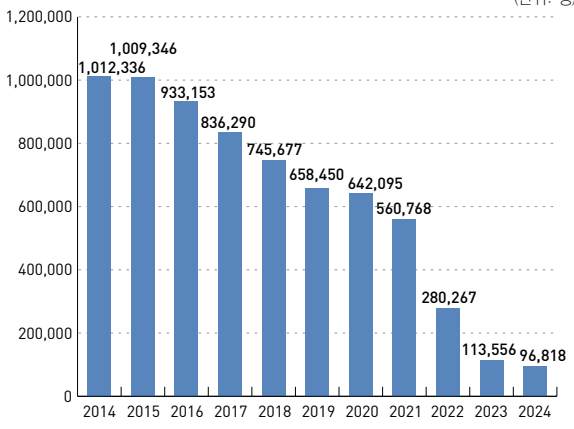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23	–	0~23	–	0~23	200천 원
24~35	100천 원	24~35	156천 원	24~35	200천 원
36개월 ~ 86개월 미만	100천 원	36~47	129천 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 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 원		
			100천 원		
			100천 원		

측정 산식

• 24~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은 수급자 수

그림 9-10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2014~202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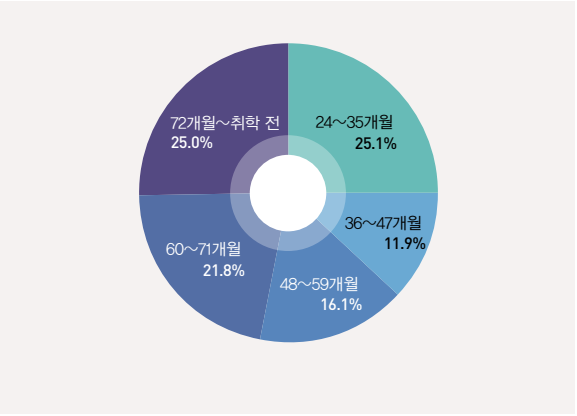


주: 2022년에 부모급여(영아수당)가 도입되어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 이상은 가정양육수당 적용. 따라서 2021년까지 자료와 2022년 이후 자료의 단순 비교는 불가

자료: 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http://www.mohw.go.kr에서 2025.7.23. 인출)
2) 교육부, 2024년 보육통계, 2024. (http://www.moe.go.kr에서 2025.7.23. 인출)

그림 9-11 연령별 가정 양육수당 수급 비중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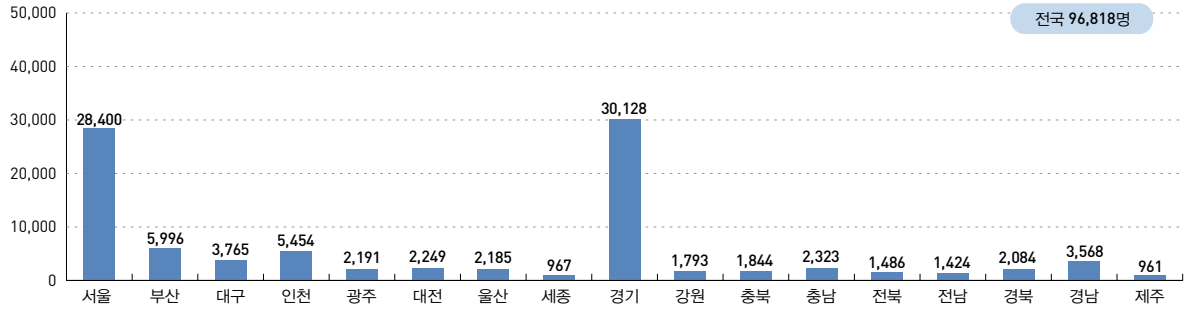
(단위: %)



주: 0~23개월은 부모급여(영아수당) 적용
자료: 교육부, 2024년 보육통계, 2024.
(http://www.moe.go.kr에서 2025.7.23. 인출)

그림 9-12 시도별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2024)

(단위: 명)



자료: 교육부, 2024년 보육통계, 2024. (http://www.moe.go.kr에서 2025.7.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2023) · 교육부 (2024~)	보육통계	2000	2024	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2008	2024	1개월

03-1
연 관

가정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child home care benefit

지표 정의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신청일 기준)에 대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현금성 급여이다. 단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등록장애인인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측정 산식

- 월령별로 다음과 같은 가정 양육수당 지원을 받은 아동 수(2024년 기준)
  - ※ 가정 양육수당 : 24~86개월 미만 월 100천 원
  - ※ 농어촌 양육수당 : 24~36개월 미만 156천 원, 36~48개월 미만 129천 원, 48~86개월 미만 100천 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36개월 미만 200천 원, 36~86개월 미만 100천 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표 9-1 성별 가정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2024)

(단위: 명)

구분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계
합계	남성	65,058	408	61	65,527
	여성	63,759	336	78	64,173
	전체	128,817	744	139	129,700

표 9-2 시도별 가정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2024)

(단위: 명)

시도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계
전국	128,817	744	139	129,700
서울	36,982	139	0	37,121
부산	7,983	60	0	8,043
대구	4,878	38	3	4,919
인천	7,513	34	0	7,547
광주	2,631	25	2	2,658
대전	2,956	34	0	2,990
울산	2,655	13	0	2,668
세종	1,367	9	1	1,377
경기	40,503	230	5	40,738
강원	2,385	22	9	2,416
충북	2,618	18	9	2,645
충남	3,229	25	14	3,268
전북	2,072	17	21	2,110
전남	1,909	17	22	1,948
경북	3,071	25	29	3,125
경남	4,823	30	16	4,869
제주	1,242	8	8	1,258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양육수당 지원 아동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4	월

표 9-3 월별 · 연령별 가정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및 지원금액 (2024)

(단위: 건수, 천 원)

구분	2세 이상~3세 미만		3세 이상		계	
	지원 수	지원금액	지원 수	지원금액	지원 수	지원금액
1월	33,585	3,375,800	98,386	9,990,857	131,971	13,366,657
2월	38,316	3,848,850	106,783	10,778,288	145,099	14,627,138
3월	15,973	1,606,000	62,520	6,282,200	78,493	7,888,200
4월	15,909	1,609,800	64,540	6,523,400	80,449	8,133,200
5월	16,786	1,703,550	64,998	6,545,950	81,784	8,249,500
6월	17,156	1,732,100	66,075	6,659,683	83,231	8,391,783
7월	18,207	1,836,600	68,790	6,973,050	86,997	8,809,650
8월	19,676	1,990,900	71,497	7,260,757	91,173	9,251,657
9월	20,321	2,048,850	72,707	7,312,482	93,028	9,361,332
10월	21,512	2,167,700	73,811	7,435,139	95,323	9,602,839
11월	22,625	2,273,900	73,421	7,372,883	96,046	9,646,783
12월	24,111	2,425,500	71,906	7,224,757	96,017	9,650,257

주: 0~23개월은 부모급여(영아수당) 적용

04
대 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Number of prim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after-school care programs

지표 정의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는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년별 학생 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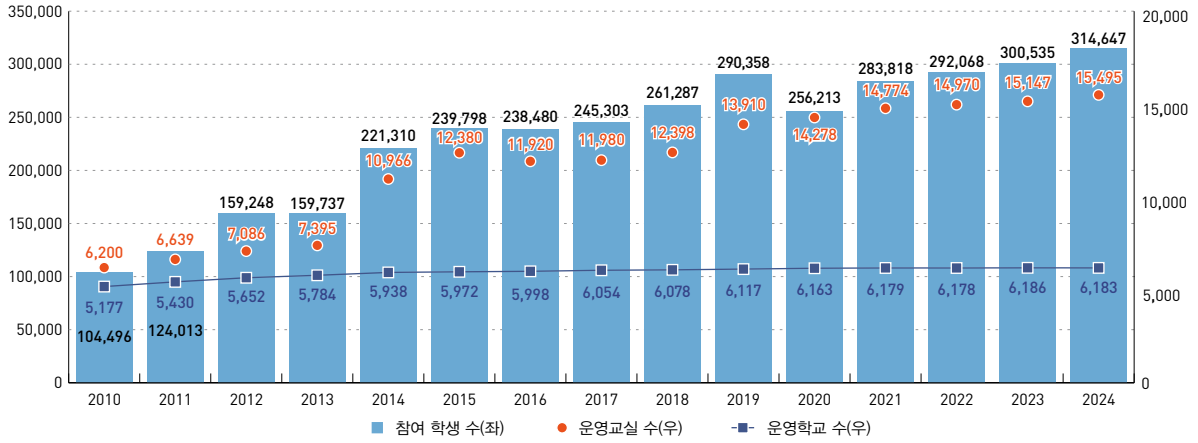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시간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여건에 따라 오전 또는 저녁시간에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측정 산식

•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 교실 수,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

그림 9-13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현황 (201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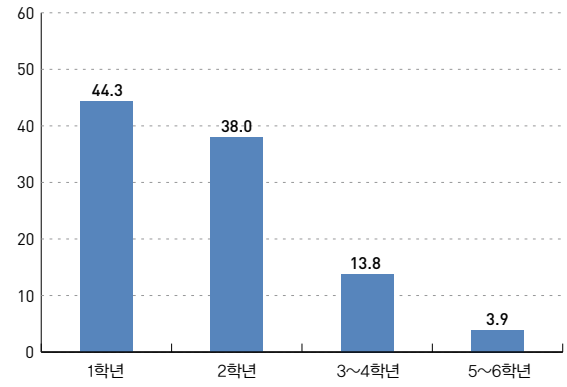
(단위: 명, 교, 개)



자료: 교육부,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9-14 학년별 초등 돌봄교실 참여 현황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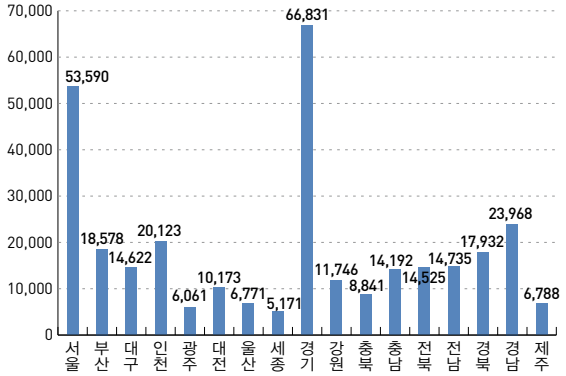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내부자료), 2024.

그림 9-15 시도별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현황 (2024)

(단위: 명)



자료: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내부자료),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내부자료)	2007	2024	1년

05
대 표

학교급별 취학률

Enrollment rates by school level

지표 정의

학교급별 취학률은 초 · 중 · 고 취학적령인구 대비 해당 교육기관에 재적하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취학적령은 초등학교(만 6~11세), 중학교(만 12~14세), 고등학교(만 15~17세)로 구분된다.

측정 산식

$$\frac{\text{취학적령의 재적 학생 수}}{\text{취학적령인구}} \times 100$$

유의사항 • OECD 교육지표는 국제 비교를 위해 연령별 취학률(연령별 학생 수/연령별 인구수)을 산출하고 있으며, 연령은 6~14세 및 15~19세로 구분된다.

표 9-4 연도별 · 학교급별 취학률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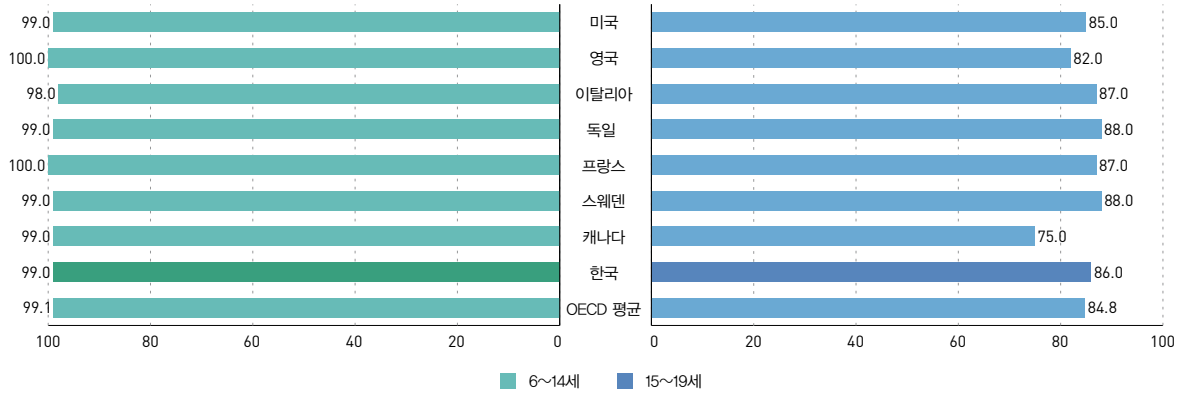
(단위: %)

학교급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초등학교	96.7	99.1	98.6	97.6	97.7	98.6	98.2	98.1	98.5	99.7	100.2
중학교	96.4	95.3	94.3	94.3	98.0	96.7	95.3	97.4	98.2	96.8	95.8
고등학교	93.2	92.5	93.1	93.8	92.4	91.4	90.8	95.7	94.5	93.0	93.9

주: 1) 취학률(%) = 취학적령의 학생 수 / 취학적령인구 X 100
2) 취학적령 : 초등학교(만 6~11세), 중학교(만 12~14세), 고등학교(만 15~17세)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연도. (https://www.moe.go.kr에서 2025.7.23. 인출),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7.23.인출)

그림 9-16 OECD 주요국의 연령별 취학률 (2021)

(단위: %)



주: 1) 캐나다는 중등 후 비고등교육은 제외됨.
2) 6~14세의 연령 자료에는 초등교육에 취학 중인 14세 초과 아동이 포함됨.
3) 기준연도는 2021년임.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23, 2023. (https://kess.kedi.re.kr에서 2025.7.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24	1년

06
대 표

학급당 학생 수

Average class siz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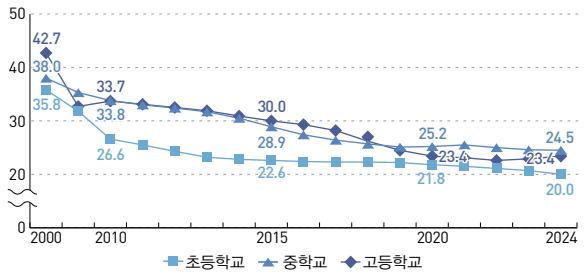
학급당 학생 수는 초 · 중 · 고 학교급별로 전체 학급 수 대비 재적하고 있는 학생 수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급별로 한 학급당 평균적으로 배정된 학생 수를 의미하며, 교육여건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에 해당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총 재적 학생 수}}{\text{총 학급 수}}$ (단위: 명)

그림 9-17 연도별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단위: 명)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https://kess.kedi.re.kr에서 2025.7.23. 인출)

표 9-5 지역규모별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24)

(단위: 명)

지역규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0.0	24.5	23.4
대도시	20.9	24.4	23.0
중소도시	21.9	26.5	24.5
읍 · 면지역	15.6	20.8	21.4
도서벽지	7.3	13.3	16.8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4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 · 초중등교육통계편, 2024.
(https://kess.kedi.re.kr에서 2025.7.23. 인출)

표 9-6 시도별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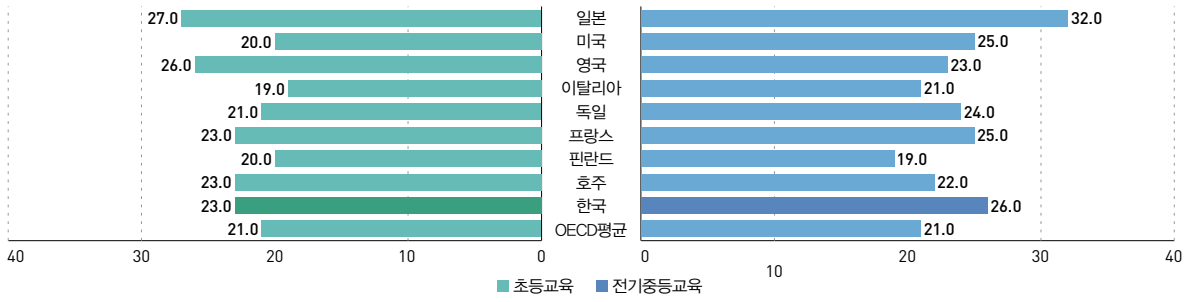
(단위: 명)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20.8	23.8	23.7
부산	20.9	24.4	21.1
대구	21.7	24.8	22.8
인천	21.2	26.2	23.5
광주	19.8	23.6	24.0
대전	19.4	24.0	21.5
울산	20.9	24.9	23.6
세종	19.8	23.9	23.5
경기	21.8	26.9	25.5
강원	15.9	22.6	21.4
충북	18.3	22.9	23.1
충남	17.8	24.2	24.0
전북	16.2	22.2	21.5
전남	15.6	21.4	19.9
경북	18.3	21.1	20.6
경남	19.1	24.0	22.9
제주	20.5	25.2	25.7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4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중등교육통계편, 2024.
(https://kess.kedi.re.kr에서 2025.7.23. 인출)

그림 9-18 OECD 주요국의 학급당 학생 수 (2019)

(단위: 명)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21, 2021 (https://kess.kedi.re.kr에서 2023.5.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24	1년

07
대 표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High school dropout rates

지표 정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고등학교 총 재적 학생 중 자퇴, 퇴학, 유예, 면제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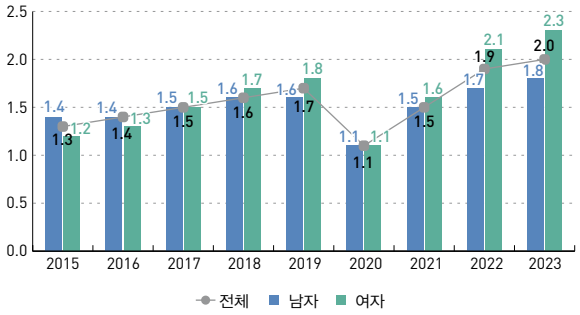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수}}{\text{전년도 고등학교 재적 학생 수}} \times 100$$

유의사항 학업중단자 수는 전년도 3월부터 조사 연도 2월까지 학년도를 기준으로 조사되므로 다른 통계와 자료 기준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9-19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2015~2023)

(단위: %)



주: 연도는 해당 학년도를 의미함.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4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 · 초중등교육통계편, 2024. (https://kess.kedi.re.kr에서 2025.7.23. 인출)

표 9-7 지역규모별 ·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 (2023)

(단위: %)

지역규모	고등학교 (전체)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전체	2.0	1.7	1.7	4.1	1.7
대도시	2.0	1.6	1.6	3.9	1.6
중소도시	2.0	1.7	1.7	4.0	2.0
읍 · 면지역	2.2	1.7	2.3	4.8	1.7
도서벽지	2.1	1.8	-	2.6	-

주: 1) 연도는 해당 학년도를 의미함.
2)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사유), 제적, 유예, 면제된 자들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4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 · 초중등교육통계편, 2024.(https://kess.kedi.re.kr에서 2025.7.23. 인출)

표 9-8 시도별 ·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 (2023)

(단위: %)

시도	고등학교 (전체)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서울	2.0	1.8	1.7	3.6	1.0
부산	1.9	1.5	1.3	3.5	0.4
대구	2.0	1.3	2.5	4.3	0.8
인천	1.9	1.6	1.4	3.8	0.7
광주	2.4	1.8	0.8	5.4	0.0
대전	2.0	1.7	0.9	5.1	1.2
울산	1.4	1.0	0.7	4.5	0.9
세종	2.3	2.3	1.1	2.8	3.4
경기	2.2	2.0	1.9	4.2	1.1
강원	2.2	1.6	1.9	5.7	1.1
충북	2.1	1.3	2.6	4.5	0.6
충남	2.0	1.6	2.2	4.6	1.1
전북	1.9	1.6	1.5	4.2	0.9
전남	2.0	1.4	2.2	3.8	1.0
경북	2.0	1.4	1.8	4.4	0.9
경남	1.6	1.4	1.7	3.5	0.0
제주	1.8	1.5	1.8	3.0	-

주: 1) 연도는 해당 학년도를 의미함.
2)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사유), 제적, 유예, 면제된 자들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4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 · 초중등교육통계편, 2024. (https://kess.kedi.re.kr에서 2025.7.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24	1년

08
대 표

교원 1인당 학생 수

Ratio of students to teacher

지표 정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원 수에 대한 재적 학생의 비율로 나타낸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한 교사가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을 대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학급당 학생 수와 함께 교육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교원에는 휴직교원과 기간제교사가 모두 포함된다.

측정 산식

$$\text{재적 학생 수} \div \text{교원 수(휴직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 퇴직교원 및 강사 제외)}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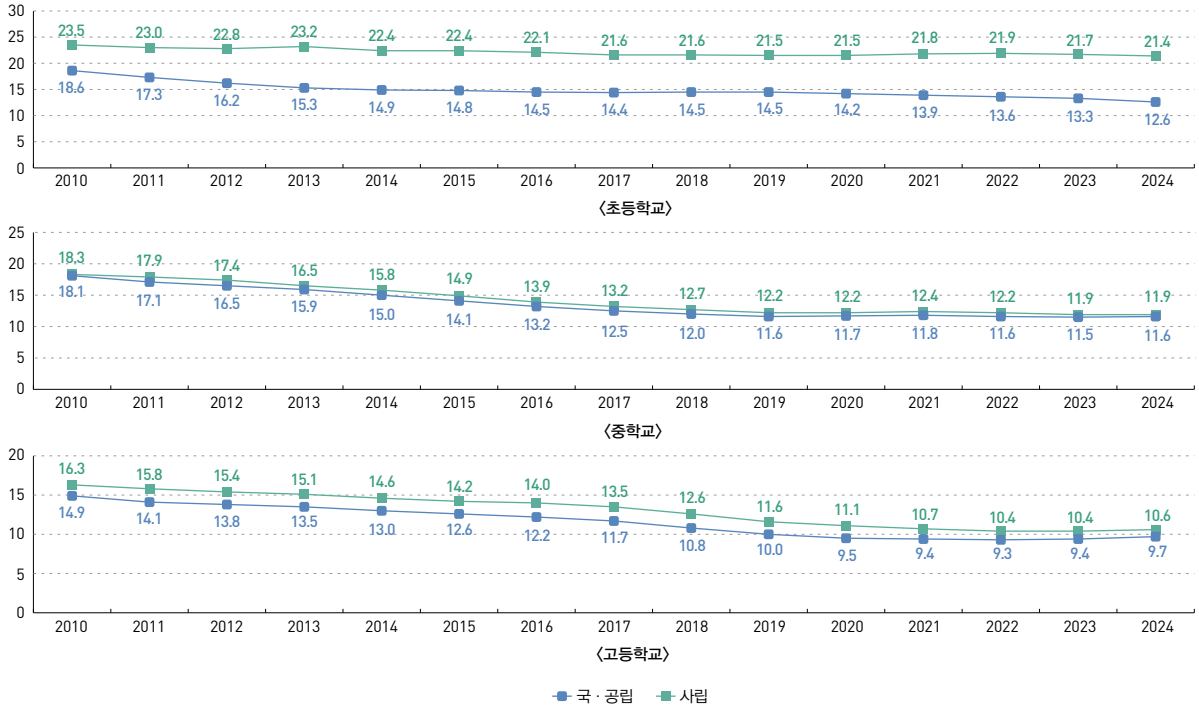
유의사항 OECD 교육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하고 있다. OECD 기준상 교사는 기간제교사 및 휴직교사를 포함한 수업교사(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로 전일제 환산치를 적용하고 있다.

$$\text{교사 1인당 학생 수(OECD 기준)} = \frac{\text{전일제 환산치 학생 수}}{\text{전일제 환산치 교사 수}}$$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22 보도자료

그림 9-20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0~2024)

(단위: 명)



주: 1)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 수/교원 수(이하 동일)
2) 교원 수에는 정규 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과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며, 강사 및 퇴직 교원은 제외됨(단, 휴직 교원은 포함됨, 이하 동일).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4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 · 초중등교육통계편, 2024. (https://kess.kedi.re.kr에서 2025.7.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24	1년

표 9-9 지역별 ·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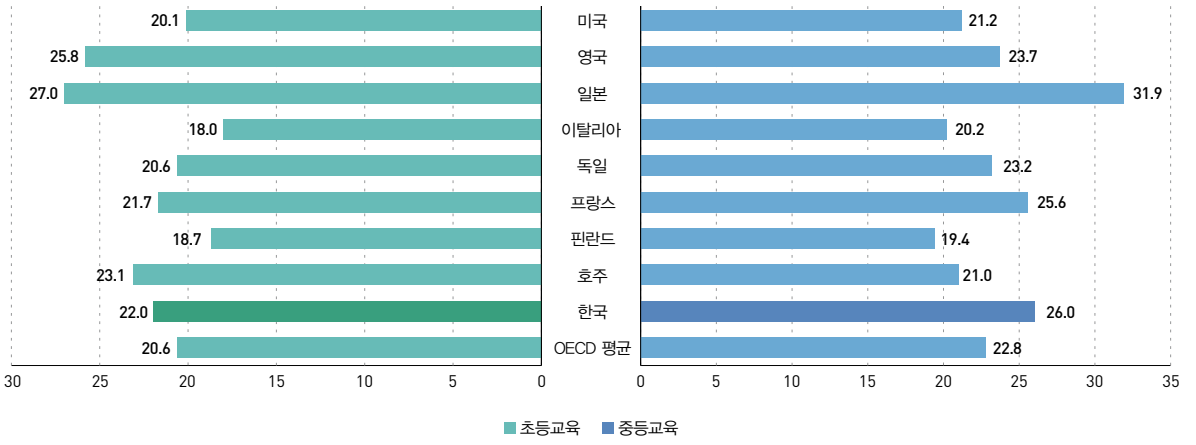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 · 공립	사립	전체	국 · 공립	사립	전체	국 · 공립	사립
전체		12.7	12.6	21.4	11.6	11.6	11.9	10.1	9.7	10.6
지역규모	대도시	13.5	13.3	21.9	12.1	12.1	12.3	10.1	9.7	10.5
	중소도시	14.1	14.1	19.7	12.7	12.6	13.3	10.7	10.5	11.1
	읍 · 면지역	9.4	9.4	19.1	8.9	8.8	9.4	8.8	8.3	9.8
	도서벽지	4.3	4.3	-	5.0	4.9	5.8	5.9	5.5	9.9
시도	서울	13.2	12.9	22.0	11.7	11.7	11.9	10.3	9.4	10.8
	부산	13.8	13.7	19.4	12.3	12.3	12.2	9.4	9.3	9.5
	대구	13.4	13.3	24.9	11.9	11.4	13.4	9.7	9.2	10.1
	인천	14.3	14.3	19.8	13.6	13.7	12.4	10.4	10.1	11.0
	광주	13.1	12.9	24.6	11.8	11.4	12.8	10.7	9.8	11.3
	대전	12.0	12.0	21.3	11.5	11.6	11.0	9.6	9.4	9.9
	울산	13.9	13.9	-	12.0	11.9	15.3	10.4	10.6	9.5
	세종	13.2	13.2	-	11.6	11.6	-	9.8	9.7	13.3
	경기	14.0	14.0	19.4	12.4	12.5	11.4	11.0	10.9	11.2
	강원	9.8	9.7	22.0	9.8	9.6	11.5	8.4	7.7	11.1
	충북	11.4	11.4	22.6	10.7	10.6	11.2	10.2	9.8	11.8
	충남	11.4	11.4	22.0	11.1	11.0	11.7	10.2	9.9	11.0
	전북	9.8	9.8	-	9.8	9.2	11.6	9.0	7.7	10.3
	전남	9.2	9.1	16.5	9.2	8.8	11.6	8.3	7.6	9.6
	경북	10.7	10.6	21.2	9.9	9.3	11.7	9.0	8.0	10.0
	경남	12.4	12.4	16.6	11.6	11.5	11.9	10.0	9.9	10.3
	제주	12.4	12.4	-	11.7	11.3	13.7	10.5	9.2	13.2

주: 1)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생수/교원수
2) 교원수에는 정규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과 기간제교원이 포함되며, 강사 및 퇴직교원은 제외됨(단, 휴직교원은 포함됨).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4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 · 초중등교육통계편, 2024. (https://kess.kedi.re.kr에서 2025.7.23. 인출)

그림 9-21 OECD 주요국의 교육과정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2022)

(단위: 명)



주: 교사는 수업 담당 교사만 해당함(우리나라는 교장 · 교감, 보건 · 사서 · 영양 · 전문상담교사 제외)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24, 2024. (https://kess.kedi.re.kr에서 2025.7.23. 인출)

09
대 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A monthly averag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per student

지표 정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초 · 중 · 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으로 정의된다.

• 사교육비에는 학원비, 과외비, 학습지비, 인터넷 및 통신 수강료(EBS 제외) 등이 포함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학교급별 사교육비 연간총액}}{\text{학교급별 재적 학생 수}} \div 12$

표 9-10 학교급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201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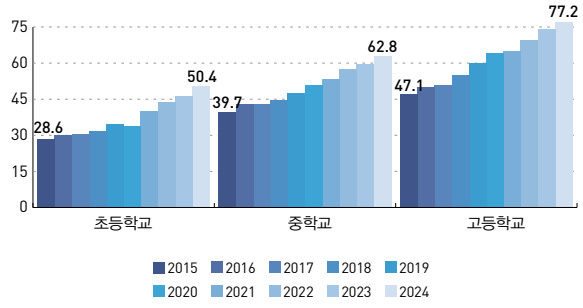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만 원, %)

연도	학교급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사교육비 (억 원)	전체	178,346	180,606	186,703	194,852	209,970	193,532	234,158	259,538	271,144	291,919
	초등학교	75,287	77,438	81,311	85,531	95,597	76,107	105,279	119,055	124,222	132,256
	중학교	52,384	48,102	48,297	49,972	52,554	53,943	63,480	70,832	71,534	78,338
	고등학교	50,675	55,065	59,075	59,348	61,819	63,482	65,399	69,651	75,389	81,324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 원)	전체	24.4	25.6	27.2	29.1	32.1	30.2	36.7	41.0	43.4	47.4
	초등학교	23.1	24.1	25.3	26.3	29.0	23.5	32.8	37.2	39.8	44.2
	중학교	27.5	27.5	29.1	31.2	33.8	34.2	39.2	43.8	44.9	49.0
	고등학교	23.6	26.2	28.5	32.1	36.5	39.6	41.9	46.0	49.1	52.0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 원)	전체	35.5	37.8	38.2	39.9	42.9	45.0	48.5	52.4	55.3	59.2
	초등학교	28.6	30.2	30.7	31.9	34.7	33.8	40.0	43.7	46.2	50.4
	중학교	39.7	43.1	43.2	44.8	47.4	50.8	53.5	57.5	59.6	62.8
	고등학교	47.1	49.9	51.0	54.9	59.9	64.3	64.9	69.7	74.0	77.2
사교육 참여율 (%)	전체	68.8	67.8	71.2	72.8	74.8	67.1	75.5	78.3	78.5	80.0
	초등학교	80.7	80.0	82.7	82.5	83.5	69.7	82.0	85.2	86.0	87.7
	중학교	69.4	63.8	67.4	69.6	71.4	67.3	73.1	76.2	75.4	78.0
	고등학교	50.2	52.4	55.9	58.5	61.0	61.6	64.6	66.0	66.4	67.3

자료: 통계청, 초 · 중 · 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7.23. 인출)

그림 9-22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01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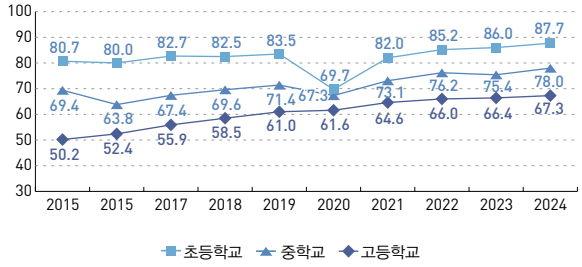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초 · 중 · 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7.23. 인출)

그림 9-23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 (2015~2024)

(단위: %)



자료: 통계청, 초 · 중 · 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5.7.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2007	2024	1년

09-1
연 관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 부담 교육비 비율

Public expenditure on tertiary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지표 정의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 부담 교육비 비율은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국제지표다. 정부 부담 교육비(초기 재원)에는 교육기관에 지불하도록 교육 외 민간부문에 제공된 정부 이전금/지불금, 교육기관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생활비를 위해 가계에 지원된 정부보조금이 포함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비용}}{\text{GDP}} \times 100$

표 9-11 OECD 주요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 부담 교육비 비율 (200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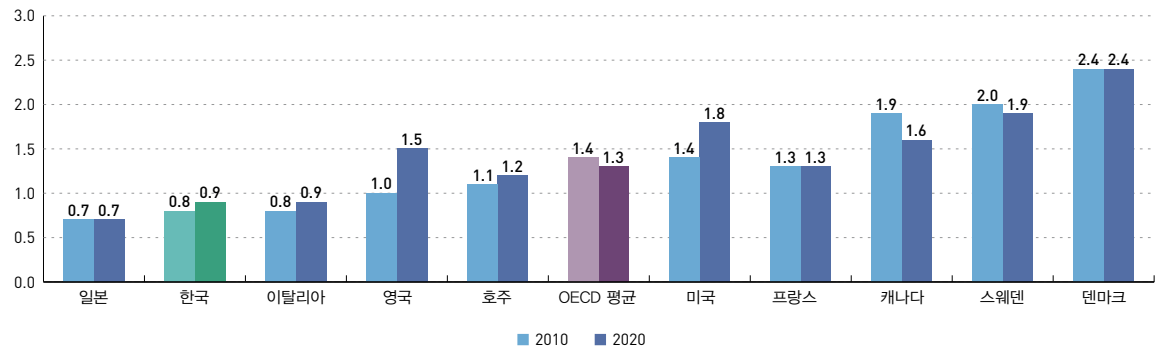
(단위: GDP%)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	0.7	0.6	0.7	0.9	0.8	0.8	0.9	1.0	1.1	0.9	0.9	0.8	0.9	0.8	0.9
일본	0.6	0.6	0.6	0.8	0.7	0.8	0.8	0.8	0.7	0.7	0.6	0.6	0.6	0.6	0.7
호주	1.1	1.0	1.0	1.1	1.1	1.1	1.1	1.3	1.4	1.5	1.4	1.3	1.1	1.1	1.2
캐나다	1.8	1.8	1.7	1.8	1.9	2.0	1.7	1.3	1.7	1.2	1.6	1.6	1.6	1.6	1.6
덴마크	2.3	2.3	2.2	2.4	2.4	2.4	2.4	2.3	2.3	-	-	2.5	2.2	2.3	2.4
프랑스	1.2	1.2	1.2	1.3	1.3	1.3	1.2	1.2	1.3	1.2	1.2	1.2	1.2	1.2	1.3
이탈리아	0.8	0.8	0.8	0.9	0.8	0.8	0.8	0.8	0.8	0.8	0.7	0.8	0.8	0.8	0.9
스웨덴	1.9	1.8	1.8	2.0	2.0	2.0	1.9	2.0	1.9	1.9	1.8	1.8	1.8	1.8	1.9
영국	1.1	0.9	0.8	0.8	1.0	1.3	1.4	1.4	1.3	1.3	1.4	1.4	1.4	1.4	1.5
미국	1.4	1.2	1.3	1.3	1.4	1.3	1.5	1.6	1.4	1.3	1.2	1.4	1.2	1.3	1.8
OECD 평균	1.3	1.2	1.3	1.4	1.4	1.4	1.3	1.3	1.3	1.2	1.2	1.2	1.2	1.2	1.3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연도.

그림 9-24 OECD 주요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 부담 교육비 비율 (2010, 2020)

(단위: GDP%)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Education at a Glance	1992	2020	1년

10
대 표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Proportion of students who have a loan

지표 정의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은 재학생 수 대비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 비중을 의미한다.

- 소득 차이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 2005년 정부보증 방식으로 시행되었던 학자금 대출제도는 2009년 대폭 정비되어 국가장학금 사업과 학자금 대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일반상환제도와 함께 취업 후 상환제도가 도입되었다. 취업 후 상환대출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 등을 대출해 주고 상환 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징수 폐지 등을 통해 학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또한 지속되고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text{재학생 수}} \times 100$

표 9-12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2016~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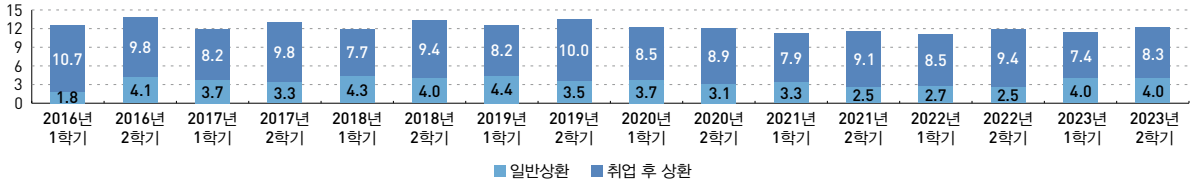
(단위: 명, %)

학기	재학생 수 (A)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인원 (B)	이용률 (B/A*100)	인원 (C)	이용률 (C/A*100)	인원(D)	이용률 (D/A*100)
2016년 1학기	2,233,832	40,106	1.8	239,431	10.7	279,537	12.5
2016년 2학기	2,330,575	96,029	4.1	227,651	9.8	323,680	13.9
2017년 1학기	2,183,155	80,358	3.7	179,741	8.2	260,099	11.9
2017년 2학기	2,020,379	66,414	3.3	197,009	9.8	263,423	13.0
2018년 1학기	2,166,767	92,433	4.3	167,725	7.7	260,158	12.0
2018년 2학기	2,026,485	80,555	4.0	189,617	9.4	270,172	13.3
2019년 1학기	2,154,579	93,978	4.4	177,608	8.2	271,586	12.6
2019년 2학기	2,019,683	70,765	3.5	202,168	10.0	272,933	13.5
2020년 1학기	2,139,570	78,210	3.7	180,913	8.5	259,123	12.1
2020년 2학기	1,991,699	62,429	3.1	177,916	8.9	240,345	12.1
2021년 1학기	2,088,584	68,853	3.3	164,429	7.9	233,282	11.2
2021년 2학기	1,927,215	49,070	2.5	176,301	9.1	225,371	11.7
2022년 1학기	2,021,910	54,810	2.7	171,166	8.5	225,976	11.2
2022년 2학기	1,888,275	46,708	2.5	177,595	9.4	224,303	11.9
2023년 1학기	2,014,907	80,217	4.0	149,457	7.4	229,674	11.4
2023년 2학기	1,877,760	74,257	4.0	154,970	8.3	229,227	12.2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5.7.23. 추출)
주: 전문대학과 대학을 포함함.

그림 9-25 학자금 대출 유형별 이용률 (2016~2023)

(단위: %)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5.7.23. 추출)
주: 전문대학과 대학을 포함함.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2008	2023	6개월

표 9-13 대학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2016~2023)

(단위: 명, %)

학기	재학생 수 (A)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인원 (B)	이용률 (B/A*100)	인원 (C)	이용률 (C/A*100)	인원(D)	이용률 (D/A*100)
2016년 1학기	1,755,259	29,062	1.7	173,010	9.9	202,072	11.5
2016년 2학기	1,883,393	82,214	4.4	163,647	8.7	245,861	13.1
2017년 1학기	1,715,784	55,823	3.3	132,765	7.7	188,588	11.0
2017년 2학기	1,585,303	48,748	3.1	141,869	8.9	190,617	12.0
2018년 1학기	1,704,144	65,440	3.8	124,302	7.3	189,742	11.1
2018년 2학기	1,592,401	59,742	3.8	137,608	8.6	197,350	12.4
2019년 1학기	1,691,711	68,765	4.1	130,259	7.7	199,024	11.8
2019년 2학기	1,582,163	53,729	3.4	145,416	9.2	199,024	12.6
2020년 1학기	1,682,711	58,508	3.5	133,828	8.0	199,024	11.8
2020년 2학기	1,569,906	47,845	3.0	129,653	8.3	177,498	11.3
2021년 1학기	1,667,220	51,687	3.1	122,291	7.3	173,978	10.4
2021년 2학기	1,527,331	38,456	2.5	128,553	8.4	167,009	10.9
2022년 1학기	1,618,383	42,440	2.6	127,445	7.9	169,885	10.5
2022년 2학기	1,509,085	37,343	2.5	131,015	8.7	168,358	11.2
2023년 1학기	1,623,349	59,946	3.7	112,989	7.0	172,935	10.7
2023년 2학기	1,509,103	58,928	3.9	115,633	7.7	174,561	11.6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5.7.23. 추출)

표 9-14 전문대학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2016~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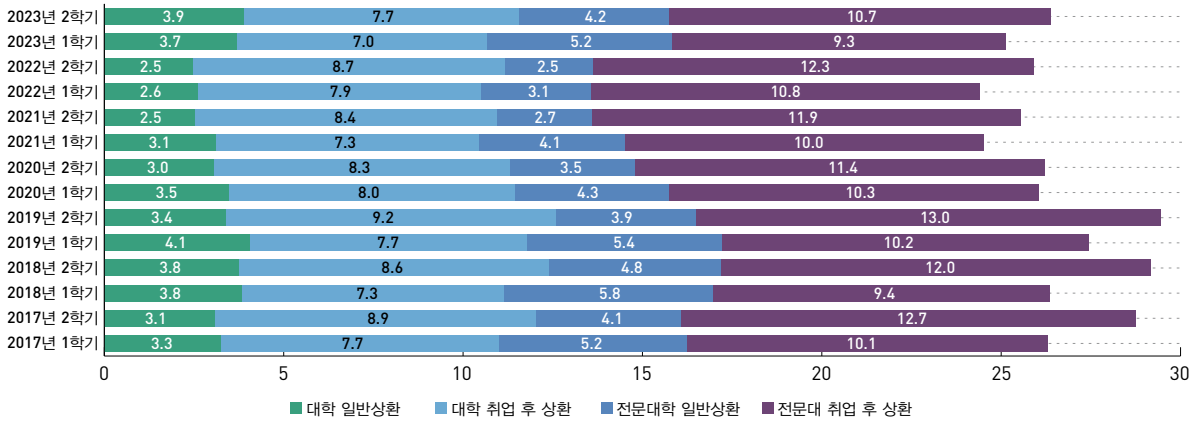
(단위: 명, %)

학기	재학생 수 (A)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인원 (B)	이용률 (B/A*100)	인원 (C)	이용률 (C/A*100)	인원(D)	이용률 (D/A*100)
2016년 1학기	478,573	11,044	2.3	66,421	13.9	77,465	16.2
2016년 2학기	447,182	13,815	3.1	64,004	14.3	77,819	17.4
2017년 1학기	467,371	24,535	5.2	46,976	10.1	71,511	15.3
2017년 2학기	435,076	17,666	4.1	55,140	12.7	72,806	16.7
2018년 1학기	462,623	26,993	5.8	43,423	9.4	70,416	15.2
2018년 2학기	434,084	20,813	4.8	52,009	12.0	72,822	16.8
2019년 1학기	462,868	25,213	5.4	47,349	10.2	72,562	15.7
2019년 2학기	437,520	17,036	3.9	56,752	13.0	73,788	16.9
2020년 1학기	456,859	19,702	4.3	47,085	10.3	66,787	14.6
2020년 2학기	421,793	14,584	3.5	48,263	11.4	62,847	14.9
2021년 1학기	421,364	17,166	4.1	42,138	10.0	59,304	14.1
2021년 2학기	399,884	10,614	2.7	47,748	11.9	58,362	14.6
2022년 1학기	403,527	12,370	3.1	43,721	10.8	56,091	13.9
2022년 2학기	379,190	9,365	2.5	46,580	12.3	55,945	14.8
2023년 1학기	391,558	20,271	5.2	36,468	9.3	56,739	14.5
2023년 2학기	368,657	15,329	4.2	39,337	10.7	54,666	14.8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5.7.23. 추출)

그림 9-26 학기별 학자금 대출 유형별 이용률 (2017~2023)

(단위: %)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5.7.23. 추출)

10-1
연 관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Amount of loan per student who has a loan

지표 정의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은 학자금 대출 총금액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은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과 더불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도를 보여준다.

측정 산식

- $\frac{\text{학자금 대출 금액 총액}}{\text{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

표 9-15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2016~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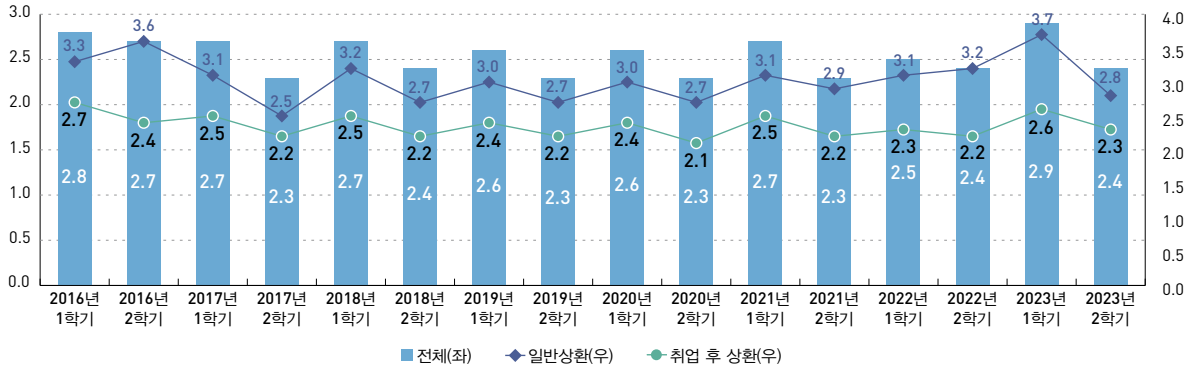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 원)

학기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2016년 1학기	40,106	130,757	239,431	650,438	279,537	781,195	3.3	2.7	2.8
2016년 2학기	96,029	344,289	227,651	535,689	323,680	879,978	3.6	2.4	2.7
2017년 1학기	80,358	250,865	179,741	455,538	260,099	706,404	3.1	2.5	2.7
2017년 2학기	66,414	166,767	197,009	441,552	263,423	608,319	2.5	2.2	2.3
2018년 1학기	92,433	291,235	167,725	411,602	260,158	702,836	3.2	2.5	2.7
2018년 2학기	80,555	216,630	189,617	419,119	270,172	635,749	2.7	2.2	2.4
2019년 1학기	93,978	281,715	177,608	425,412	271,586	707,126	3.0	2.4	2.6
2019년 2학기	70,765	193,266	202,168	443,311	272,933	636,577	2.7	2.2	2.3
2020년 1학기	78,132	236,114	180,752	433,733	258,884	669,847	3.0	2.4	2.6
2020년 2학기	62,429	171,262	177,916	378,784	240,345	550,046	2.7	2.1	2.3
2021년 1학기	68,853	216,500	164,429	402,977	233,282	619,478	3.1	2.5	2.7
2021년 2학기	49,070	142,687	176,301	383,419	225,371	526,105	2.9	2.2	2.3
2022년 1학기	54,810	167,715	171,166	400,425	225,976	568,140	3.1	2.3	2.5
2022년 2학기	46,708	147,900	177,595	384,672	224,303	532,572	3.2	2.2	2.4
2023년 1학기	80,217	292,812	149,457	382,360	229,674	675,172	3.7	2.6	2.9
2023년 2학기	74,257	210,379	154,970	348,925	229,227	559,304	2.8	2.3	2.4

주: 전문대학과 대학을 포함함.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5.7.23. 추출)

그림 9-27 학자금 대출 유형별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2016~2023)

(단위: 백만 원)



주: 전문대학과 대학을 포함함.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5.7.23. 추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2008	2023	6개월

표 9-16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 대학 (2016~2023)

(단위: 명, 백만 원)

학기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2016년 1학기	29,062	95,662	173,010	466,253	202,072	561,915	3.3	2.7	2.8
2016년 2학기	82,214	310,865	163,647	390,124	245,861	700,989	3.8	2.4	2.9
2017년 1학기	55,823	174,227	132,765	332,729	188,588	506,956	3.1	2.5	2.7
2017년 2학기	48,748	122,925	141,869	322,757	190,617	445,682	2.5	2.3	2.3
2018년 1학기	65,440	206,734	124,302	303,098	189,742	509,832	3.2	2.4	2.7
2018년 2학기	59,742	165,213	137,608	309,302	197,350	474,515	2.8	2.2	2.4
2019년 1학기	68,765	208,750	130,259	311,560	199,024	520,310	3.0	2.4	2.6
2019년 2학기	53,729	150,141	145,416	324,629	199,145	474,770	2.8	2.2	2.4
2020년 1학기	58,508	178,857	133,828	322,376	192,336	501,233	3.1	2.4	2.6
2020년 2학기	47,845	134,552	129,653	281,840	177,498	416,392	2.8	2.2	2.3
2021년 1학기	51,687	164,624	122,291	300,334	173,978	464,958	3.2	2.5	2.7
2021년 2학기	38,456	114,227	128,553	283,297	167,009	397,524	3.0	2.2	2.4
2022년 1학기	42,440	132,156	127,445	298,916	169,885	431,072	3.1	2.3	2.5
2022년 2학기	37,343	122,584	131,015	286,501	168,358	409,085	3.3	2.2	2.4
2023년 1학기	59,946	230,682	112,989	288,998	172,935	519,680	3.8	2.6	3.0
2023년 2학기	58,928	171,529	115,633	262,560	174,561	434,089	2.9	2.3	2.5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5.7.23. 추출)

표 9-17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 전문대학 (2016~2023)

(단위: 명, 백만 원)

학기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2016년 1학기	11,044	35,095	66,421	184,184	77,465	219,279	3.2	2.8	2.8
2016년 2학기	13,815	33,424	64,004	145,564	77,819	178,988	2.4	2.3	2.3
2017년 1학기	24,535	76,638	46,976	122,809	71,511	199,447	3.1	2.6	2.8
2017년 2학기	17,666	40,250	55,140	118,794	72,806	159,044	2.3	2.2	2.2
2018년 1학기	26,993	84,500	43,423	108,503	70,416	193,003	3.1	2.5	2.7
2018년 2학기	20,813	51,417	52,009	109,816	72,822	161,232	2.5	2.1	2.2
2019년 1학기	25,213	72,965	47,349	113,851	72,562	186,815	2.9	2.4	2.6
2019년 2학기	17,036	43,124	56,752	118,682	73,788	161,806	2.5	2.1	2.2
2020년 1학기	19,624	57,257	46,924	111,356	66,548	168,613	2.9	2.4	2.5
2020년 2학기	14,584	36,709	48,263	96,943	62,847	133,652	2.5	2.0	2.1
2021년 1학기	17,166	51,876	42,138	102,643	59,304	154,519	3.0	2.4	2.6
2021년 2학기	10,614	28,460	47,748	100,121	58,362	128,581	2.7	2.1	2.2
2022년 1학기	12,370	35,559	43,721	101,509	56,091	137,068	2.9	2.3	2.4
2022년 2학기	9,365	25,316	46,580	98,171	55,945	123,487	2.7	2.1	2.2
2023년 1학기	20,271	62,130	36,468	93,362	56,739	155,492	3.1	2.6	2.7
2023년 2학기	15,329	38,850	39,337	86,365	54,666	125,215	2.5	2.2	2.3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5.7.23. 추출)

11
대 표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Amount of national scholarship per student

지표 정의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은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의미한다.

- 이 지표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여준다.
  - 경제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국가장학사업을 도입하였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차등 지원하는 유형(Ⅰ유형)과 등록금 동결 · 인하, 교내장학금 추가 확충 등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유형(Ⅱ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에는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자녀유형이 신설되었다.
  - 국가장학금은 Ⅰ유형, Ⅱ유형 및 다자녀유형 모두는 기초수급자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수혜한 학생의 비율이고, 국가장학금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국가장학금 '수혜학생 1인당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학생 등 대학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소득 ·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하다.

측정 산식

- $\frac{\text{국가장학금 지원액}}{\text{실 수혜인원}}$

표 9-18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 현황 (2023년 2학기)

(단위: 명, 백만 원)

학기 / 소득 구분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			Ⅱ유형			합계(인원 건수)		
	수혜인원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지원금액
기초	30,795	87,255	2.83	7,417	22,317	3.01	733	2,273	3.10	38,938	111,845	2.87
차상위	37,158	109,803	2.96	11,087	34,555	3.12	871	2,734	3.14	49,114	147,092	2.99
1구간	70,328	167,981	2.39	23,052	64,843	2.81	22,851	15,630	0.68	95,153	248,454	2.61
2구간	56,986	138,740	2.43	16,640	46,692	2.81	20,080	13,834	0.69	75,078	199,266	2.65
3구간	63,041	153,515	2.44	17,517	48,750	2.78	22,142	14,507	0.66	82,006	216,772	2.64
4구간	57,307	109,805	1.92	16,007	41,293	2.58	28,893	20,463	0.71	75,166	171,561	2.28
5구간	28,712	55,309	1.93	7,946	20,465	2.58	14,950	9,457	0.63	37,508	85,231	2.27
6구간	85,494	165,535	1.94	23,622	60,922	2.58	44,674	25,574	0.57	110,949	252,031	2.27
7구간	51,499	85,425	1.66	14,553	36,439	2.50	28,305	14,450	0.51	66,948	136,314	2.04
8구간	111,975	187,027	1.67	31,320	79,105	2.53	59,847	26,066	0.44	144,987	292,198	2.02
9구간	-	-	-	-	-	-	42,138	26,985	0.64	42,138	26,985	0.64
10구간	-	-	-	-	-	-	410	227	0.55	410	227	0.55
소득미산정	-	-	-	-	-	-	-	-	-	-	-	-
합계	593,295	1,260,396	2.12	169,161	455,382	2.69	285,894	172,201	0.60	818,395	1,887,979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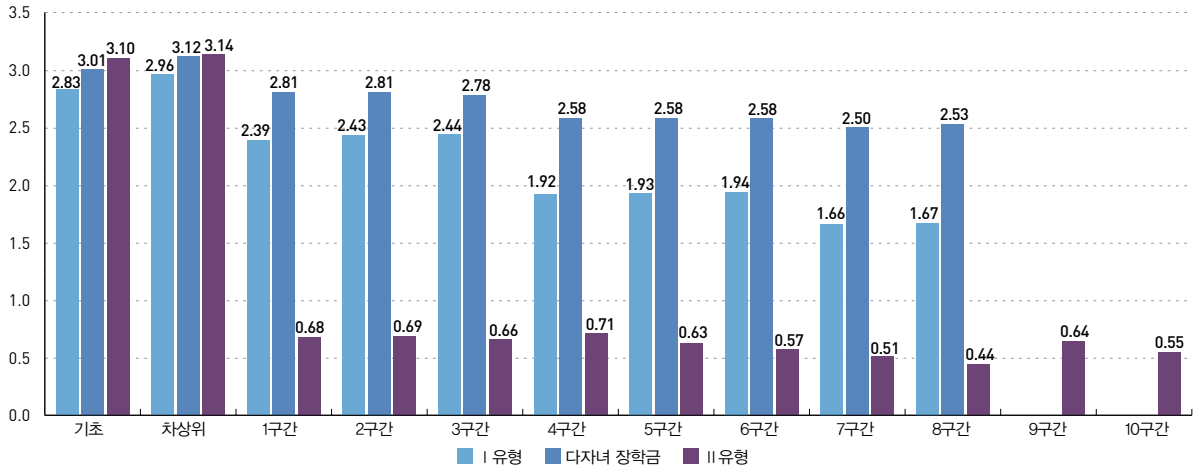
주: 중복수혜가 가능한 Ⅰ유형과 Ⅱ유형, Ⅱ유형과 다자녀장학금을 고려하여, 중복수혜인원을 제거한 합계임.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내부자료),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내부자료)	2012	2023	1년

그림 9-28 국가장학금 유형별 · 소득구간별 학생 1인당 지원 금액 (2023년 2학기)

(단위: 백만 원)



주: 중복수혜가 가능한 Ⅰ유형과 Ⅱ유형, Ⅱ유형과 다자녀장학금을 고려하여, 중복수혜인원을 제거한 합계임.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내부자료), 2024.

표 9-19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 (2022~2023)

(단위: 명, 백만 원)

학기 / 소득구분	2022년 1학기			2022년 2학기			2023년 1학기			2023년 2학기		
	수혜인원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지원금액
기초	43,496	119,842	2.76	39,733	110,676	2.79	42,158	120,937	2.87	38,938	111,845	2.87
차상위	55,467	159,008	2.87	48,837	140,943	2.89	55,186	166,402	3.02	49,114	147,092	2.99
1구간	114,340	277,307	2.43	106,160	264,569	2.49	103,895	266,403	2.56	95,153	248,454	2.61
2구간	86,283	212,446	2.46	80,732	203,385	2.52	80,927	211,514	2.61	75,078	199,267	2.65
3구간	89,391	217,603	2.43	85,399	213,725	2.50	86,654	224,952	2.60	82,006	216,772	2.64
4구간	82,797	171,656	2.07	74,189	158,598	2.14	83,479	185,800	2.23	75,166	171,561	2.28
5구간	40,519	83,610	2.06	36,938	77,819	2.11	41,314	91,487	2.21	37,508	85,232	2.27
6구간	116,242	236,427	2.03	106,389	222,111	2.09	121,595	267,693	2.20	110,949	252,031	2.27
7구간	70,728	134,968	1.91	64,868	127,133	1.96	73,577	144,199	1.96	66,948	136,314	2.04
8구간	144,334	275,759	1.91	141,553	277,474	1.96	151,063	296,213	1.96	144,987	292,199	2.02
9구간	47,144	18,523	0.39	37,085	18,369	0.50	45,557	27,867	0.61	42,138	26,985	0.64
10구간	81	118	1.46	72	97	1.35	465	198	0.43	410	227	0.55
소득미산정	5	15	3.00	4	10	2.50	1	2	2.00	0	0	0.00
합계	890,827	1,907,282	2.14	821,859	1,814,909	2.21	885,871	2,003,666	2.26	818,395	1,887,978	2.31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내부자료), 2024.

표 9-20 국가장학금 신청 대비 수혜율 (2018~2023)

(단위: %)

학기 / 유형구분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2019년 1학기	2019년 2학기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2021년 1학기	2021년 2학기	2022년 1학기	2022년 2학기	2023년 1학기	2023년 2학기
수혜율	61.45	65.45	61.00	64.61	61.95	68.39	64.60	66.69	62.75	67.29	62.75	67.29

주: 국가장학금 수혜율=국가장학금 수혜인원/국가장학금 신청인원 × 100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내부자료), 2024.

12
대 표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The percentage of students selected by the equality of opportunity among tertiary new entrants

지표 정의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은 고등교육기관 총 입학자 수 대비 기회균형 선발학생의 비중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들은 소외계층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원 내 또는 정원 외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하고 있다. 이 지표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 및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보여준다.
  기회균형 선발은 정원 외와 정원 내로 구분된다. 정원 외 선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농어촌지역학생, 기타(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서해5도 학생 등)가 포함되며, 정원 내 선발에는 고른기회대상과 대학독자 기준이 포함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기회균형 선발학생 수(정원 내외)}}{\text{총 입학자 수}} \times 100$

표 9-21 기회균형 선발 학생 현황 (2021~2025)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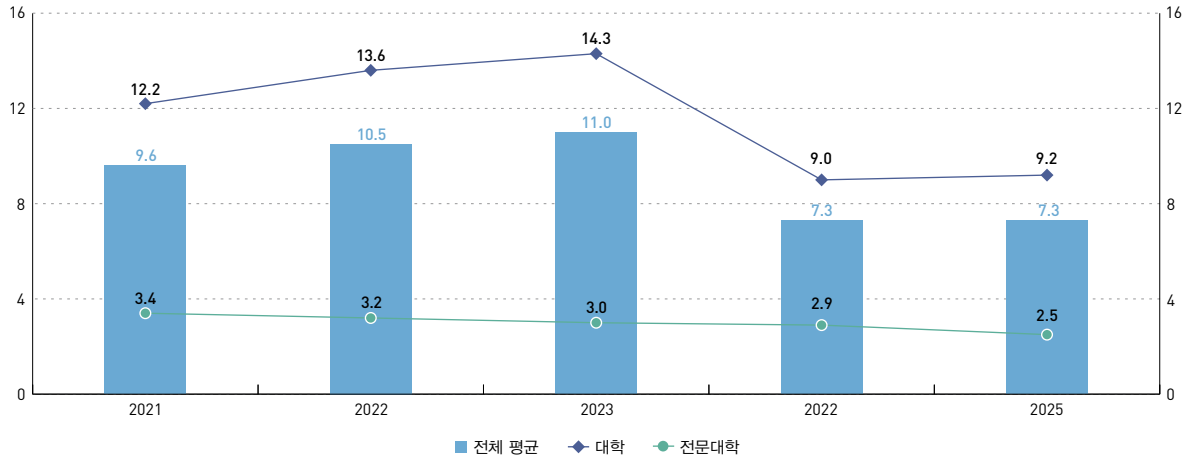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 (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 (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 (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 (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 (B)	비율 (B/A*100)
대학	365,612	44,632	12.2	362,200	49,209	13.6	361,815	51,569	14.3	368,555	33,159	9.0	376,844	34,666	9.2
전문대학	153,540	5,293	3.4	149,833	4,785	3.2	145,794	4,372	3.0	145,100	4,249	2.9	154,259	3,899	2.5
합계	519,152	49,925	9.6	512,033	53,994	10.5	507,609	55,941	11.0	513,655	37,408	7.3	531,103	38,565	7.3

주: 1) 전문대학에는 전문대학(2, 3, 4년제), 기능대학 포함.
2) 대학에는 대학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5.7.23. 추출)

그림 9-29 기회균형 선발 비율 (2021~2025)

(단위: %)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5.7.23. 추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2008	2025	1년

표 9-22 지역별 · 설립별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학생 현황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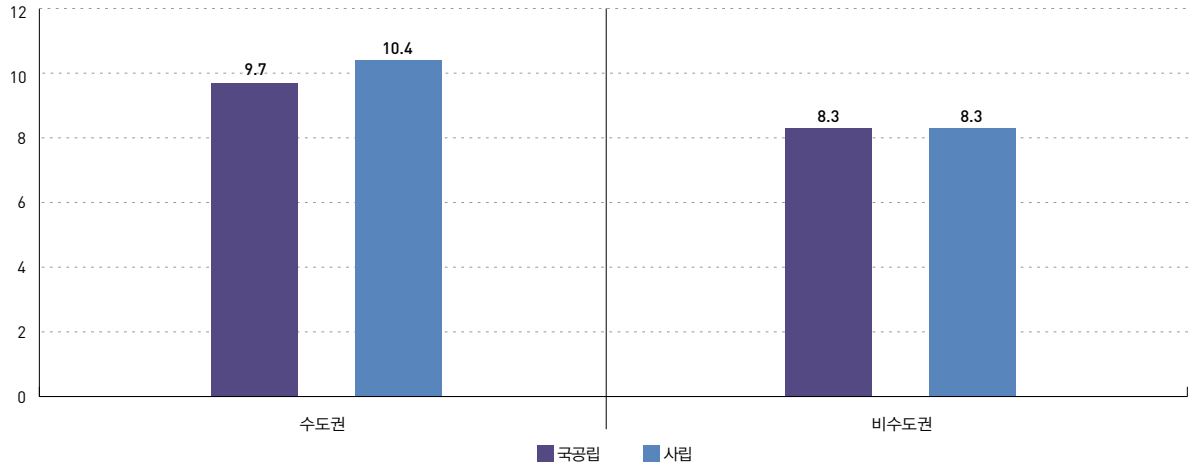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국공립			사립			계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 학생 (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 학생 (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 학생 (B)	비율 (B/A*100)
전국	92,926	8,062	8.7	283,918	26,604	9.4	376,844	34,666	9.2
수도권	23,644	2,305	9.7	140,342	14,626	10.4	163,986	16,931	10.3
비수도권	69,282	5,757	8.3	143,576	11,978	8.3	212,858	17,735	8.3

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일컬으며, 비수도권은 수도권 외 지역임. 국공립은 공립, 국립, 국립대법인, 특별법국립을 포함.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5.7.23. 추출)

그림 9-30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학생 비율 (2025)

(단위: %)



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일컬으며, 비수도권은 수도권 외 지역임. 국공립은 공립, 국립, 국립대 법인, 특별법 국립을 포함.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5.7.23. 추출)

13
대 표

고등교육 이수율

Tertiary education attainment

지표 정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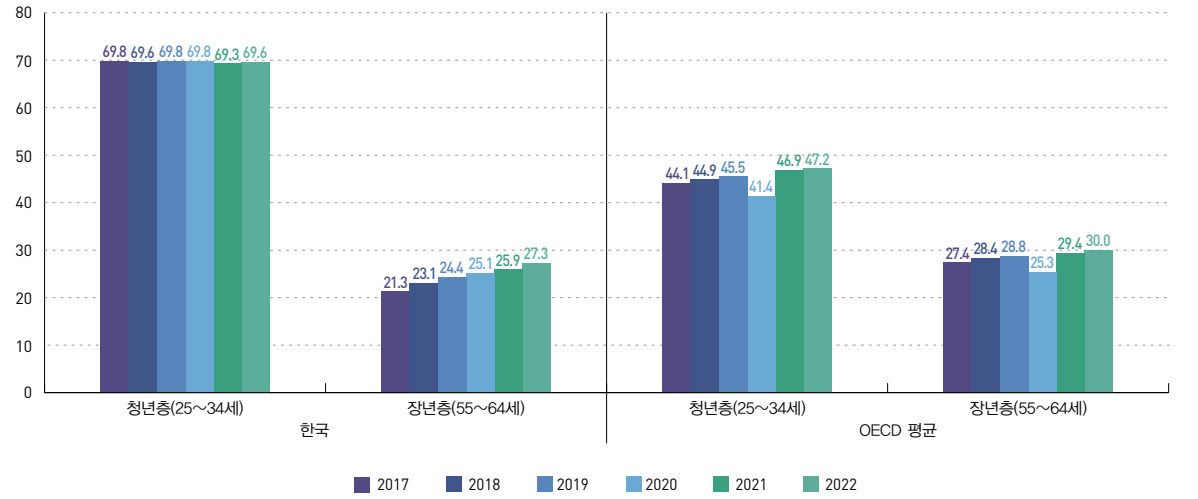
- OECD에서는 25세~64세 인구 중 25세~34세 인구를 청년층, 55세~64세 인구를 장년층으로 구분한다. 고등교육은 단기고등교육(전문대학 과정)과 대학(학사),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과정으로 구분하며, 단기고등교육은 전문대학, 각종 학교 · 기술대학 ·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전공대학, 기능대학이 해당된다. 대학(학사)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 · 기술대학 · 사내대학(대학과정), 전문대학 · 기능대학(학사학위 심화과정)이 포함되며, 대학원(석사)은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 · 특수대학원(석사과정)이, 대학원(박사)은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박사과정)이 해당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해당 연령 고등교육 이수자 수}}{\text{해당 연령 전체 인구수}} \times 100$

그림 9-31 고등교육 이수율 (2017~2022)

(단위: %)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 2022.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1963	2022	1년

표 9-23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 (2017~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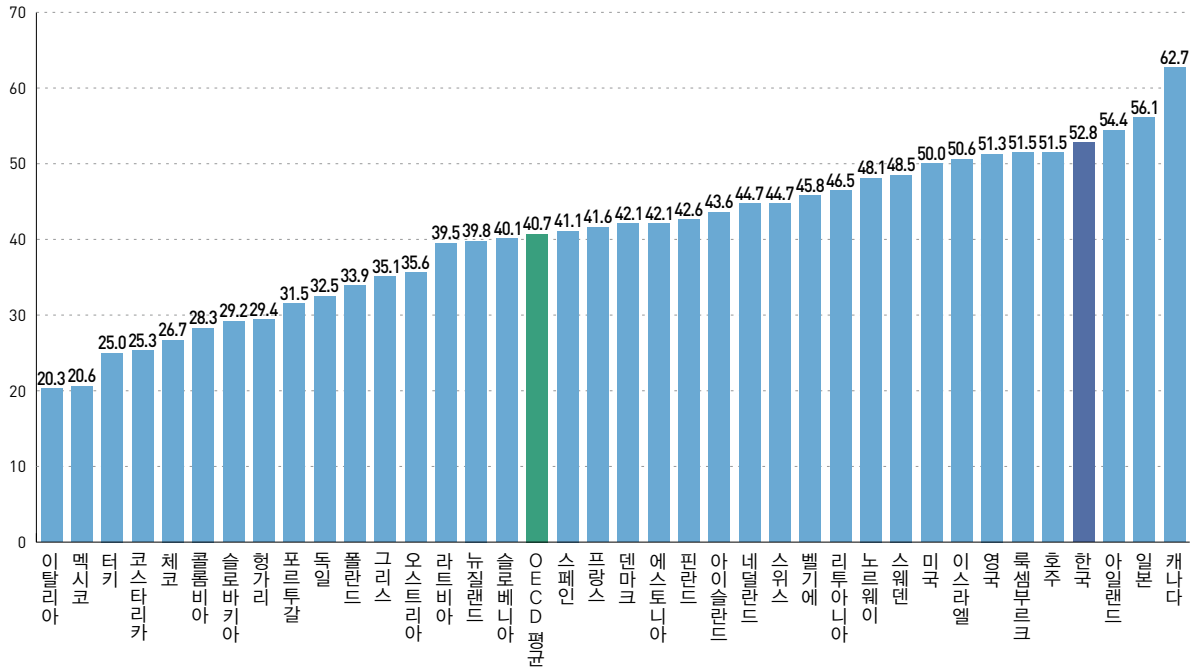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국가	단기고등교육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고등교육		
		25~64세	25~34세	55~64세	25~64세	25~34세	55~64세	25~64세	25~34세	55~64세	25~64세	25~34세	55~64세	25~64세	25~34세	55~64세
2017	한국	13.5	21.4	4.3	34.2	48.3	17.0	-	-	-	-	-	-	47.7	69.8	21.3
	OECD 평균	7.3	7.6	7.0	17.1	23.3	11.4	12.2	14.1	8.7	1.1	0.8	1.0	35.8	43.3	26.3
2018	한국	13.7	21.0	4.7	30.7	45.3	14.5	4.7	3.2	3.8	-	-	-	49.0	69.6	23.1
	OECD 평균	7.2	7.8	7.0	17.5	23.7	11.7	12.7	14.3	9.3	1.1	0.8	1.0	36.9	44.1	27.4
2019	한국	13.9	20.9	5.0	31.5	45.6	16.0	4.6	3.3	3.4	-	-	-	50.0	69.8	24.4
	OECD 평균	7.2	7.8	7.2	17.9	24.1	11.9	13.4	14.7	9.9	1.2	0.9	1.0	38.0	44.9	28.4
2020	한국	14.1	21.1	5.1	32.2	45.3	16.7	4.4	3.4	3.3	-	-	-	50.7	69.8	25.1
	OECD 평균	7.2	7.9	7.2	18.2	24.5	12.1	13.5	14.7	10.0	1.3	1.0	1.1	38.6	45.5	28.8
2021	한국	14.3	20.7	5.5	33.0	45.4	17.3	4.4	3.2	3.1	-	-	-	51.7	69.3	25.9
	OECD평균	7.1	7.7	6.9	18.9	25.3	12.5	13.9	15.2	10.1	1.3	0.9	1.1	39.7	46.9	29.4
2022	한국	14.8	20.8	6.1	33.5	45.7	17.8	4.5	3.1	3.3	-	-	-	52.8	69.6	27.3
	OECD 평균	7.2	7.9	7.6	19.3	25.9	12.7	14.1	15.1	10.3	1.3	0.7	1.2	40.4	47.2	30.0

주: 우리나라는 2017년에는 석박사과정이 학사과정에 포함되었으며, 2018년 이후에는 박사과정이 석사과정에 포함되었음.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 2022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23. 인출)

그림 9-32 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 이수율 (2022)

(단위: %)



주: 25~64세를 대상으로 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 2022.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23. 인출)

14
대 표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An overview of high school student educational benefit in single parent family : provision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업단절이나 학업중단 위기에 직면한 한부모가족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또는 청소년한부모 중 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교육비(수업료, 입학금)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2% 초과 60% 이하인 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72% 이하의 가구에게 고교생학비를 지원한 건수 및 지원 금액 (2022년 기준)

(단위: 원/월)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기준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기준중위소득 72%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표 9-24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규모 (2017~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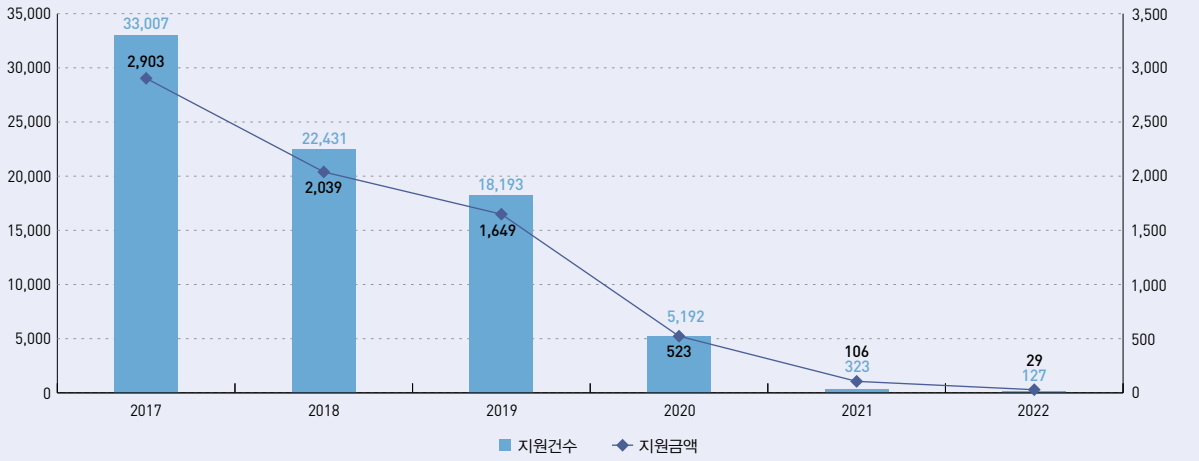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 건수	33,007	22,431	18,193	5,192	323	127
지원 금액	2,903	2,039	1,649	523	106	29

주: 각 연도 12월 기준

그림 9-33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규모 (2017~2022)

(단위: 건, 백만 원)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한부모가족고교생학비지원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2	1년

10

문화

01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02 연간 독서량
03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04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05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06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발표)활동 참여율
07 생활체육 참여율
08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09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10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11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1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13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14 GDP 대비 문화예산
15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문화 향유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연간 독서량	연간 독서율
문화 접근성 (인프라)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문화 참여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발표)활동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문화 교육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문화 복지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GDP 대비 문화예산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01
대 표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Annual visiting rate at cultural and arts events

지표 정의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만 15세 이상의 국민이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직접 문화예술행사(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를 관람한 응답자의 비율로 정의한다.

- 최소한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국민의 비율을 통하여 성별, 도시규모별, 소득수준별, 연령별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직접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15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통계청 사회조사와 유사한 지표처럼 보이나 질문 방식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다른 지표이다.

표 10-1 연도별·분야별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추이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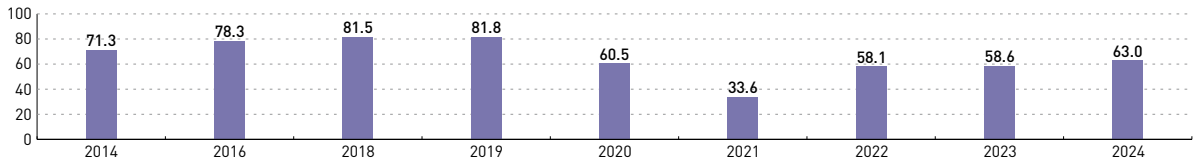
(단위: %, %p)

구분	2014	2016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3년대비 증감률
전체	71.3	78.3	81.5	81.8	60.5	33.6	58.1	58.6	63.0	4.4
문학행사	6.2	5.8	8.9	6.7	2.6	1.2	2.4	1.9	1.0	-0.9
미술전시회	10.6	12.8	15.3	13.5	8.7	5.0	6.7	7.3	5.6	-1.7
서양음악	4.9	4.5	5.5	6.1	2.2	1.2	1.8	1.9	1.4	-0.5
전통예술	5.7	7.6	9.3	10.3	3.2	0.8	2.5	2.4	2.4	0
연극	12.6	13.0	14.4	14.9	5.8	1.8	5.3	5.4	5.9	0.5
뮤지컬	11.5	10.2	13.0	13.5	6.8	2.4	4.9	5.5	6.4	0.9
무용	2.4	1.3	1.7	2.4	0.6	0.2	0.4	0.5	0.4	-0.1
영화	65.8	73.3	75.8	77.0	56.4	30.5	52.2	52.4	57.0	4.6
대중음악/연예	14.4	14.6	21.1	23.3	7.2	1.3	7.4	11.0	14.6	3.6

주: 1) 2016년 조사에만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이 추가됨['역사,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포함 관람률 79.3%].
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https://policydb.kcti.re.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1 연도별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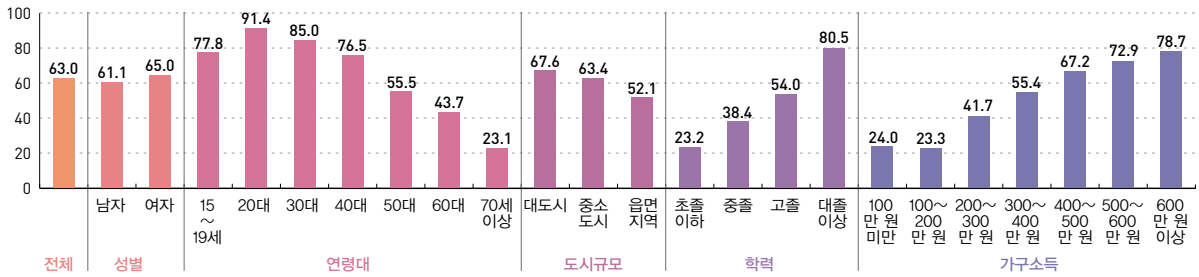
(단위: %)



주: 1) 2016년 조사에만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이 추가됨['역사,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포함 관람률 79.3%].
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https://policydb.kcti.re.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2 일반특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24)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4. (https://policydb.kcti.re.kr에서 2025.6.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8	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2024	1년

* '문화향수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명칭이 변경됨.

01-1
연 관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Annual average the visiting number of culture arts events

지표 정의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는 지난 1년 동안 직접 관람한 문화예술행사(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의 평균 횟수로 정의된다.

-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횟수를 파악하여, 실제 문화향유를 하는 정도를 지역별,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문화예술 향유 빈도 격차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지난 1년 동안 직접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것으로 응답한 사람의 전체 횟수}}{\text{15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표 10-2 연도별 분야별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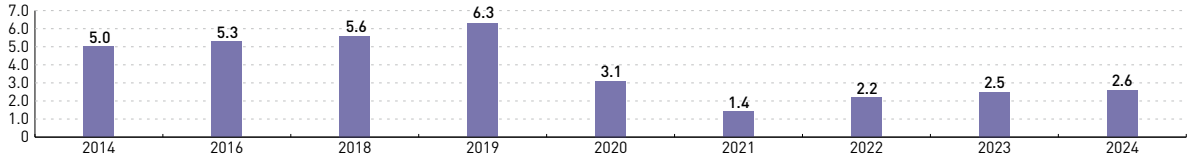
(단위: 회)

구분	2014	2016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5.0	5.3	5.6	6.3	3.1	1.4	2.2	2.5	2.6
문학행사	0.1	0.1	0.2	0.1	0.1	0.0	0.0	0.0	0.0
미술전시회	0.2	0.3	0.3	0.3	0.2	0.1	0.1	0.2	0.1
서양음악	0.1	0.1	0.1	0.1	0.0	0.0	0.0	0.0	0.0
전통예술	0.1	0.1	0.2	0.2	0.1	0.0	0.0	0.0	0.1
연극	0.2	0.2	0.3	0.3	0.1	0.0	0.1	0.1	0.1
뮤지컬	0.2	0.2	0.2	0.2	0.01	0.0	0.01	0.1	0.1
무용	0.05	0.04	0.03	0.07	0.01	0.0	0.01	0.02	0.0
영화	3.6	3.7	4.0	4.6	2.4	1.1	1.6	1.8	1.9
대중음악/연예	0.5	0.5	0.3	0.5	0.2	0.0	0.1	0.2	0.2

주: 1)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세분화하여 구성함.
2) 2016년 조사에만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이 추가됨['역사,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포함 관람횟수 5.6회].
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https://policydb.kcti.re.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3 연도별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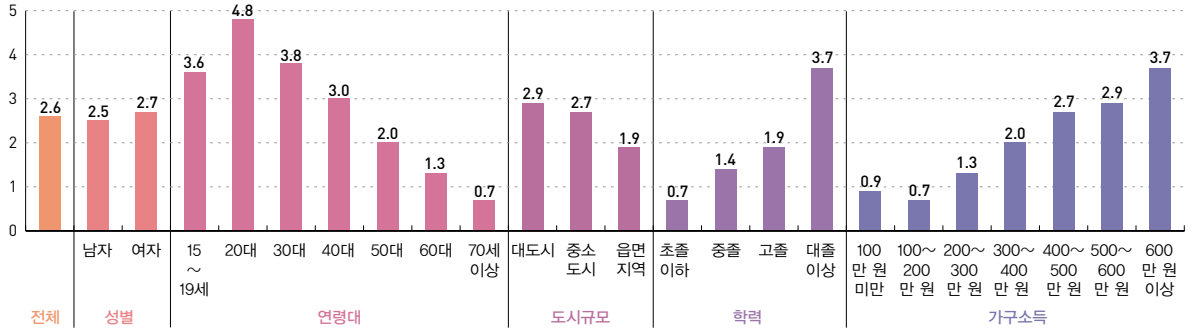
(단위: 회)



주: 1)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별도로 조사
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https://policydb.kcti.re.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4 일반특성별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2024)

(단위: 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4. (https://policydb.kcti.re.kr에서 2025.6.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8	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2024	1년

* '문화향수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명칭이 변경됨.

02 대 표

연간 독서량

Annual average number of books read

지표 정의

연간 독서량*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읽은 독서 권수(일반도서 기준)로 정의한다.

• 연간 독서량을 통해 성인과 학생(초 · 중 · 고등학생)의 독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독서 패턴의 변화추이를 알 수 있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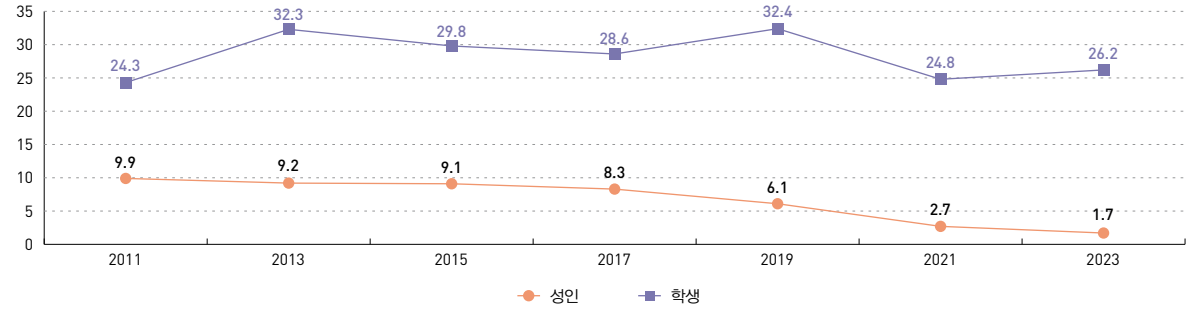
• 성인독서량 = $\frac{\text{지난 1년 동안 성인 전체가 읽은 독서 권수(일반도서의 기준)의 합}}{\text{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전체의 수}}$

• 학생독서량 = $\frac{\text{지난 1년 동안 학생 전체가 읽은 독서 권수(일반도서의 기준)의 합}}{\text{국내 초 · 중 · 고 학생 전체의 수}}$

유의사항 성인과 학생(초 · 중 ·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집계하고, 성인은 만 19세 이상,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림 10-5 연도별 연간 종이책 독서량 (201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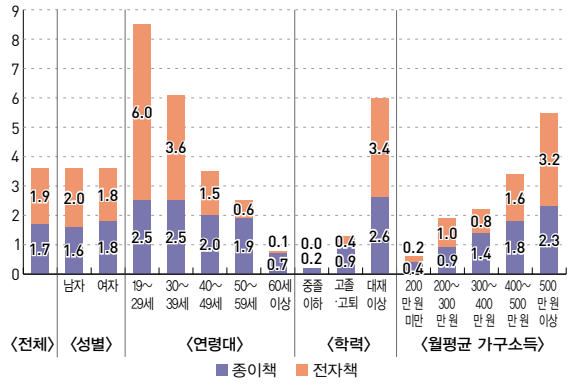
(단위: 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각 연도.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6 일반특성별 성인의 연간 독서량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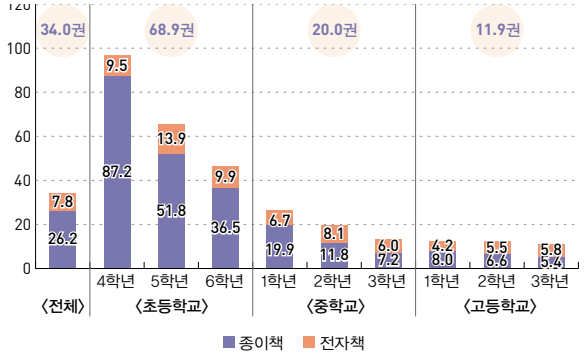
(단위: 권)



주: 소수점 2자리의 값에 의해 종이책과 전자책 독서량의 합이 전체의 값과 차이가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23.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7 학교급별 · 학년별 학생의 연간 독서량 (2023)

(단위: 권)



주: 학교급별 연간 독서량은 초등학생 68.9권, 중학생 20.0권, 고등학생 11.9권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23.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1993	2023	2년

* 2010년 조사부터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조사부터 잡지와 만화책을 제외하여 집계함. 학생의 경우 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외함.

02-1
연 관

연간 독서율

Annual reading rate

지표 정의

연간 독서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책(일반도서 기준)을 한 권 이상 읽은 성인 및 학생(초 · 중 · 고등학생)의 비율로 정의한다.

• 연간 독서율은 국민들이 독서를 접하는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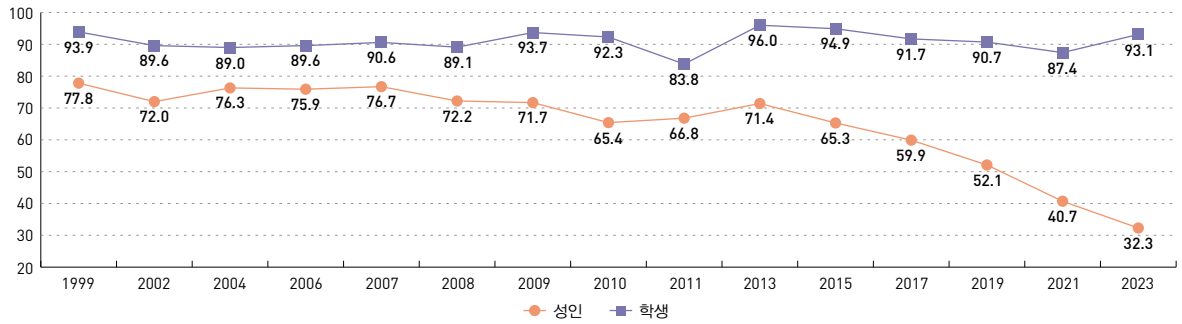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성인독서율 = $\frac{\text{지난 1년 동안 책(일반도서 기준)을 한 권 이상 읽은 성인 전체의 수}}{\text{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전체의 수}} \times 100$

• 학생독서율 = $\frac{\text{지난 1년 동안 책(일반도서 기준)을 한 권 이상 읽은 학생 전체의 수}}{\text{국내 초 · 중 · 고 학생 전체의 수}} \times 100$

그림 10-8 연도별 연간 종이책 독서율 (199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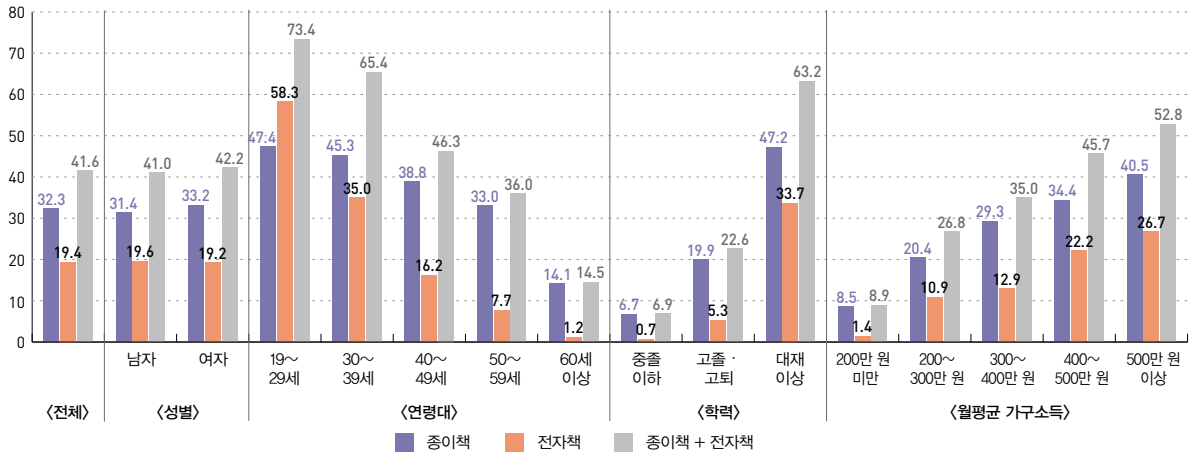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각 연도.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9 일반특성별 성인의 연간 독서율 (2023)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23.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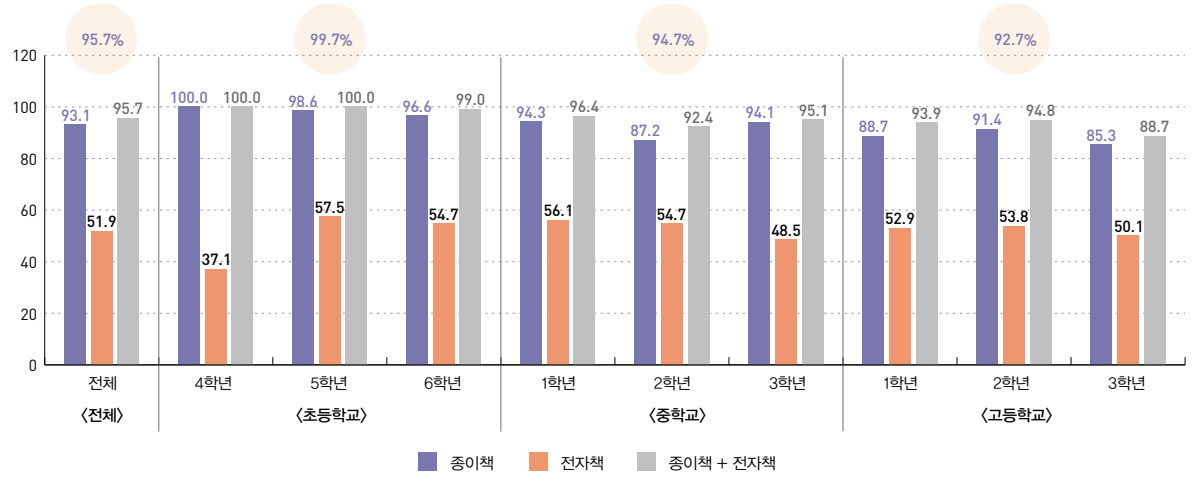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1993	2023	2년

* 2010년 조사부터 일반도서(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조사부터 잡지와 만화책을 제외하여 집계함. 학생의 경우 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외함.

그림 10-10 학교급별 · 학년별 학생의 연간 독서율 (2023)

(단위: %)



주: 학교급별 연간 독서율(종이책+전자책)은 초등학생 99.7%, 중학생 94.7%, 고등학생 92.7%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23.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03
대 표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per million people

지표 정의

주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 100만 명 대비 문화시설 수로 정의한다.

-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이 해당되며, 인구 대비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수를 살펴봄으로써 농어촌 산간지역 등 소외지역 문화 인프라 제고와 같은 사회보장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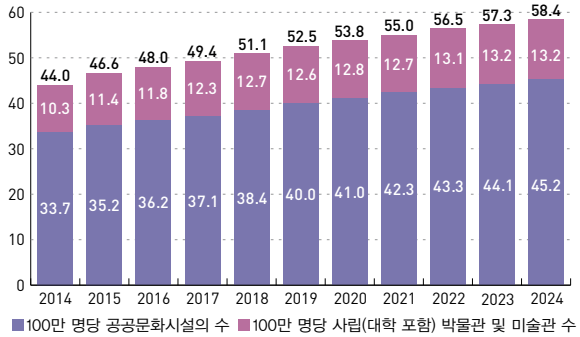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의 전체 문화시설 개수의 합계}}{\text{해당 연도의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000$$

유의사항 동일한 기준으로 지표를 산정하기 위해,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하여 재산출하여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과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는 다소 차이가 있음*.

그림 10-11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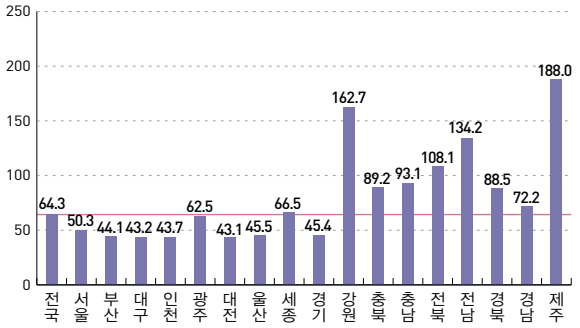
(단위: 개/백만 명당)



주: 1)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만을 대상으로 함.
2) 2013년부터 문화의 집, 2020년부터 생활문화센터, 2023년부터 문학관이 추가되었으나 시계열을 위하여 통계산출에서는 제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연도.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12 시도별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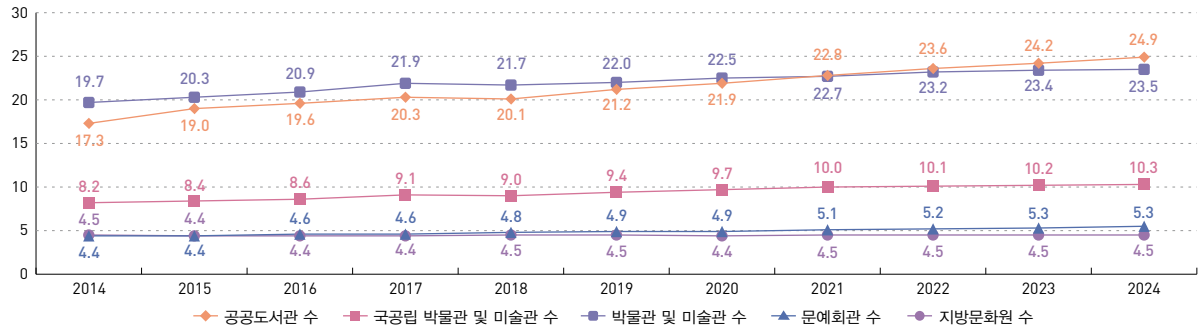
(단위: 개/백만 명당)



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2024.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024.
(https://jumin.mois.go.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13 유형별 인구 10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의 수 (2014~2024)

(단위: 개/백만 명당)



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전체와 국공립만의 통계를 별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음.
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연도.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5.6.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03	2024	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거주자)	2008	2024	1개월

*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만을 대상으로 함. 2013년부터 문화의 집이 추가되었으나 시계열을 위하여 통계산출에서는 제외함.

04
대 표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Number of public sports facilities per million people

지표 정의

주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 100만 명 대비 공공체육시설의 수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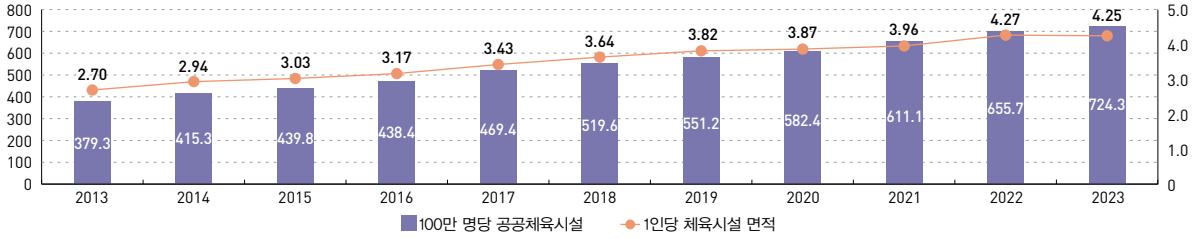
• 인구 대비 공공체육시설의 수를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체육 및 여가 시설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의 공공 체육시설 수}}{\text{해당 연도의 주민등록 인구수}} \times 1{,}000{,}000$$

그림 10-14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2013~2023)

(단위: 개/백만 명당, ㎡)



주: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함)을 포함하며, 건립 중인 시설, 학교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체육시설 등은 제외

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각 연도.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각 연도.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표 10-3 유형별 인구 100만 명당 체육시설의 수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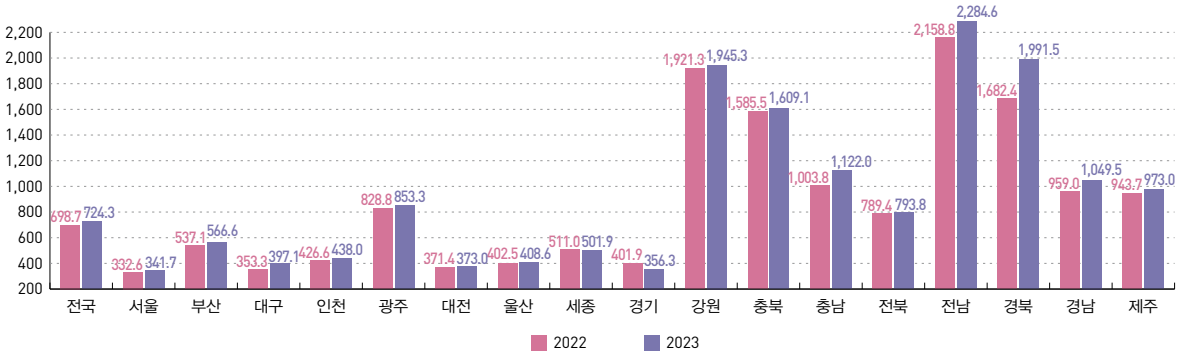
(단위: 개/백만 명당)

구분	축구장	체육관	간이운동장	테니스장	기타
인구 100만 명당 공공 체육시설 수	22.3	28.0	522.9	17.5	133.6

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024.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15 연도별 · 시도별 인구 100만 명당 체육시설의 수 (2022-2023)

(단위: 개/백만 명당)



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각 연도.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5.6.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004	2023	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008	2023	1개월

05
대 표

연간 문화예술공간 이용률

Annual utilization rate of arts and cultural space

지표 정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 문화예술공간(도서관, 박물관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 박물관, 도서관,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국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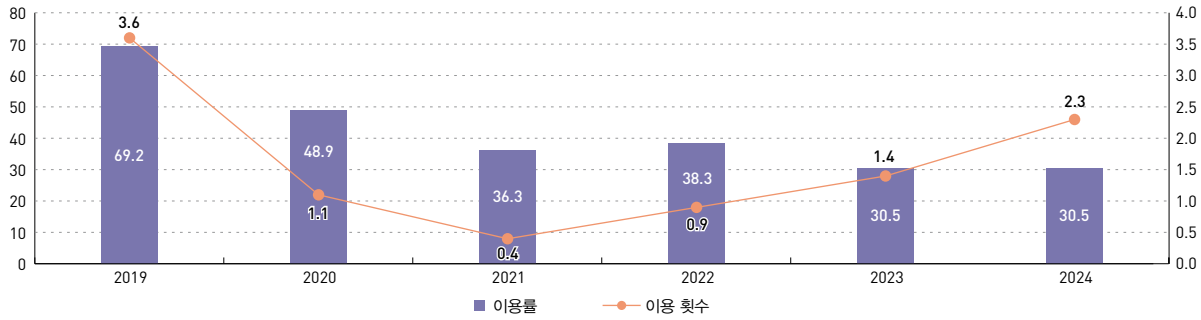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지난 1년간 학교 교육 이외에 문화예술공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15세 이상의 대상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15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박물관, 도서관,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파악이 가능한 예술공간 위주로 조사하여 산출되었다.

그림 10-16 연도별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및 이용 횟수 (2019~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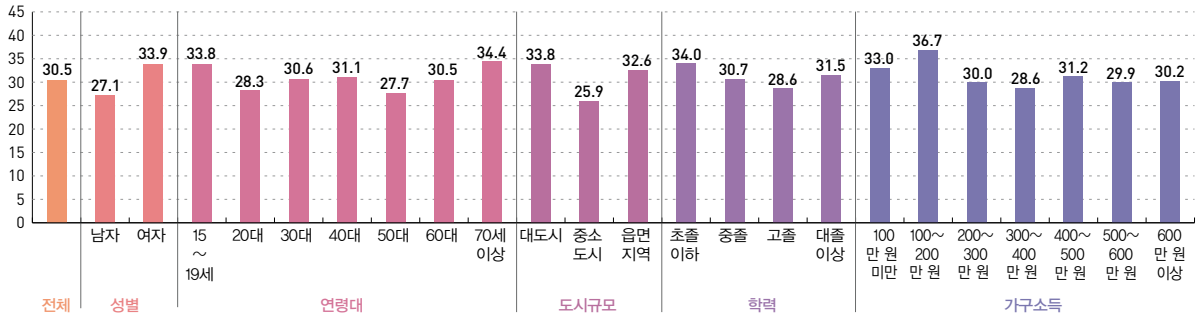
(단위: %, 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https://policydb.kcti.re.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17 일반특성별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2024)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4. (https://policydb.kcti.re.kr에서 2025.6.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8	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2024	1년

* '문화향수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명칭이 변경됨.

표 10-4 연도별 문화예술공간별 이용률 (2010~2024)

(단위: %)

문화예술 공간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52.2	39.4	52.0	64.8	66.2	69.2	48.9	36.3	38.3	30.5	30.5
문예회관	11.5	6.6	6.6	5.5	8.0	5.4	2.6	1.4	2.2	2.8	2.5
시 · 군 · 구민회관	11.5	8.0	8.8	9.8	12.8	9.7	5.8	1.5	5.0		
복지회관	11.4	4.6	4.5	7.0	9.0	5.7	4.2	2.5	3.1	3.4	3.1
청소년회관	4.2	5.1	2.2	3.5	3.6	2.7	1.6	0.5	1.2	1.5	0.9
문화원	2.1	2.7	1.2	2.4	1.8	1.8	0.7	0.3	0.7	0.7	0.6
도서관	20.5	12.8	10.4	16.1	12.8	14.9	13.4	9.7	5.8	5.6	5.4
박물관	14.8	9.3	16.6	10.8	16.5	12.3	7.3	4.5	5.2	6.2	6.3
문화의 집	1.2	1.0	0.4	0.5	0.4	0.6	0.3	0.2	0.2	0.3	0.1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1.7	1.4	1.4	1.5	2.3	1.5	0.7	0.3	0.5	0.5	0.3
사설문화센터	6.0	5.3	7.7	6.1	6.7	5.8	2.6	1.1	3.4	2.3	3.0
주민자치센터	-	9.2	17.0	31.8	30.4	32.1	27.1	21.5	19.4	10.2	12.9
민간공연장	-	8.8	16.3	19.3	25.7	27.2	9.9	4.1	16.7	9.8	5.0
문학관	-	-	-	0.5	0.6	0.9	0.4	0.2	0.4	0.3	0.3
생활문화센터	-	-	-	2.0	1.7	2.5	1.2	0.5	1.5	1.0	0.9

주: 문화의 집은 2010년 조사부터, 주민자치단체와 민간공연장은 2012년 조사부터, 문학관과 생활문화센터는 2016년 조사부터 추가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https://policydb.kcti.re.kr에서 2025.6.29. 인출)

06
대 표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발표)활동 참여율

Annual participation rate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지표 정의

연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관련 창작 · 발표활동 등에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의 비율로 정의한다.

-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능동적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성격을 가지며 문화예술에 대한 직접 창작 참여기회의 제공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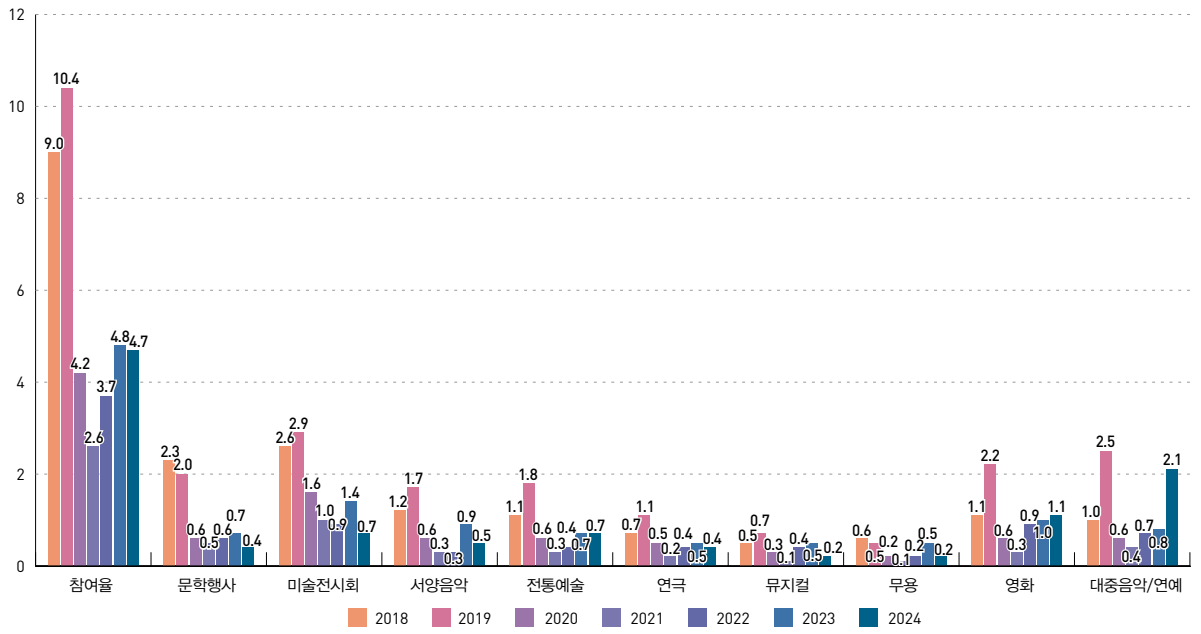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15세 이상의 대상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15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2018년 예술활동 참여를 1회 이상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를 제외한 단순 방송출연 행위는 제외하였다.

그림 10-18 연도별 · 장르별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발표)활동 참여율 (2018~2024)

(단위: %)



주: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https://policydb.kcti.re.kr에서 2025.6.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8	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2024	1년

*'문화향수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명칭이 변경됨.

표 10-5 일반특성별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발표) 활동 참여율 (2024)

(단위: %)

구분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
전체		0.4	0.7	0.5	0.7	0.4	0.2	0.2	1.1	2.1
성별	남성	0.4	0.8	0.6	0.4	0.3	0.2	0.1	1.2	2.1
	여성	0.4	0.7	0.4	1.0	0.4	0.3	0.3	1.1	2.1
연령대	15~19세	1.0	2.0	1.4	0.8	1.1	-	-	1.7	4.3
	20대	0.3	0.6	0.5	0.6	0.8	0.3	0.6	2.5	4.3
	30대	0.3	0.7	0.5	0.6	0.4	0.7	0.2	1.5	2.9
	40대	0.3	0.8	0.4	0.5	0.4	0.2	0.2	1.0	1.1
	50대	0.4	0.8	0.6	0.9	0.4	0.1	0.1	1.0	1.5
	60대	0.5	0.2	0.6	0.4	0.0	0.2	0.2	0.4	1.1
	70세 이상	0.2	0.9	0.4	1.1	0.2	0.1	0.1	0.4	1.5
학력	초졸 이하	0.3	0.6	0.3	0.7	-	-	0.2	-	1.7
	중졸	0.3	0.6	0.5	0.6	0.4	-	0.0	0.5	1.8
	고졸	0.5	0.4	0.5	0.9	0.4	0.1	0.1	0.9	1.7
	대졸 이상	0.3	1.0	0.6	0.6	0.4	0.4	0.4	1.6	2.5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0.3	0.5	0.2	-	-	-	-	-	1.4
	100~200만 원	0.6	0.2	0.1	1.3	-	-	-	0.1	0.9
	200~300만 원	0.2	0.5	0.8	0.4	0.2	0.0	0.1	0.7	1.6
	300~400만 원	0.2	0.6	0.4	0.8	0.5	0.3	0.2	0.6	1.8
	400~500만 원	0.4	1.2	0.8	1.2	0.5	0.3	0.2	0.9	1.8
	500~600만 원	0.5	0.8	0.7	0.6	0.2	0.2	0.2	0.9	2.3
	600만 원 이상	0.4	0.7	0.4	0.5	0.6	0.3	0.4	2.2	2.8
지역	서울	0.5	0.5	0.2	0.8	0.6	0.7	0.4	2.0	3.8
	부산	0.2	1.0	0.8	0.7	0.2	-	0.3	0.9	2.4
	대구	0.1	0.6	-	0.1	-	-	-	-	0.1
	인천	0.3	1.2	0.1	0.2	0.5	-	0.2	0.7	2.0
	광주	0.6	0.2	0.3	-	-	0.2	-	0.5	0.7
	대전	1.0	1.7	1.1	1.4	-	0.8	0.5	7.0	7.1
	울산	0.2	0.5	0.9	0.4	0.4	0.1	-	0.4	1.4
	세종	-	0.7	0.3	-	-	-	0.6	0.3	2.8
	경기	0.5	0.6	1.0	1.0	0.6	0.2	0.2	1.2	1.1
	강원	-	-	-	-	-	-	-	-	0.2
	충북	0.6	0.5	0.2	0.7	0.4	0.2	-	1.4	1.9
	충남	0.5	1.2	1.5	1.5	0.5	0.3	1.2	-	3.3
	전북	0.4	0.8	0.7	0.5	0.9	0.2	-	0.2	2.8
	전남	0.2	0.7	0.3	0.3	-	-	0.2	0.2	1.5
	경북	-	0.8	0.2	0.8	0.2	-	-	0.5	2.3
	경남	0.4	1.2	-	0.2	-	-	-	0.5	1.2
	제주	-	-	0.2	0.4	-	-	-	1.6	1.5
지역규모	대도시	0.4	0.8	0.4	0.6	0.4	0.4	0.3	1.6	2.9
	중소도시	0.4	0.8	0.8	0.7	0.5	0.2	0.2	1.0	1.6
	읍면지역	0.3	0.6	0.3	0.8	0.1	0.1	0.1	0.3	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4. (https://policydb.kcti.re.kr에서 2025.6.29. 인출)

07
대 표

생활체육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of sport for all

지표 정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전체 응답자 중 1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다.

-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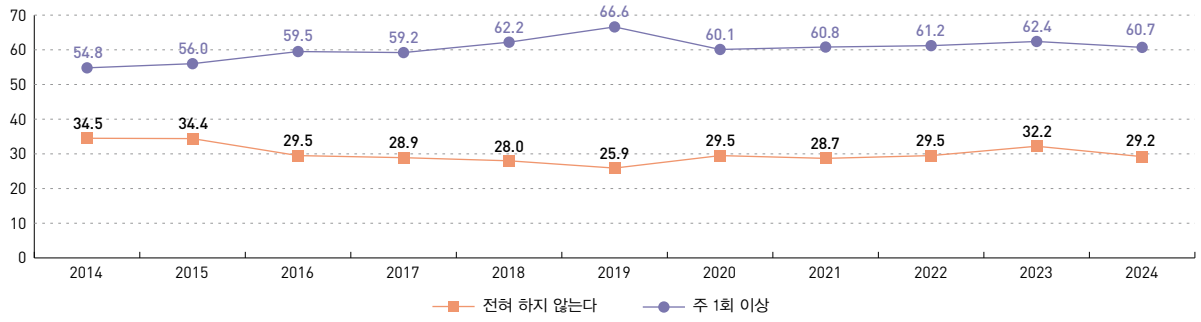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1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0세 이상의 대상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10세 이상의 국민들이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운동을 1주일에 1회 이상 한 비율을 측정한다.

그림 10-19 연도별 생활체육 참여율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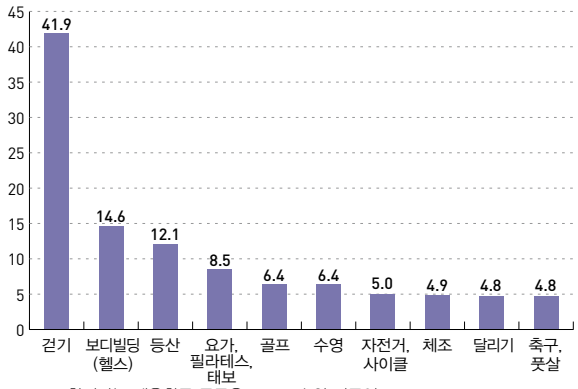
(단위: %)



주: 국민생활체육조사는 2012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4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각 연도.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20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상위 10개 종목별 참여율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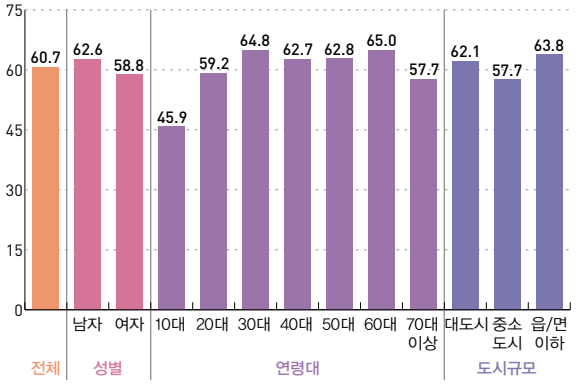
(단위: %)



주: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종목은 1+2+3순위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2024.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21 일반특성별 생활체육 참여율 (2024)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2024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1986	2018	3년, 2년, 1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2019	2024	1년

*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는 2005년까지 3년 주기, 2014년까지 2년 주기로 시행했으며, 2015년 조사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명칭이 국민생활체육조사로 변경됨.

07-1
연 관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of lifetime spor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장애인생활체육조사」에서 산출되는 통계로, 등록장애인들 중 생활체육 완전실행자에 해당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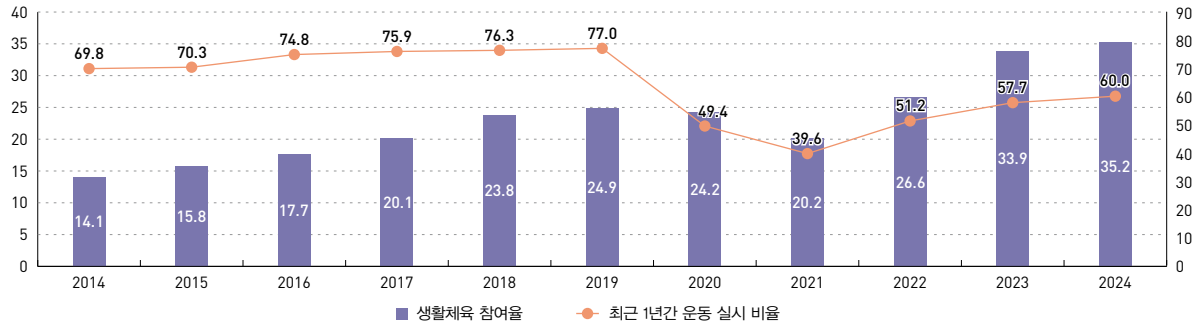
-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dfrac{\text{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 목적으로 1주일에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수}}{\text{만 10세 이상 69세 미만 등록 재가 장애인 수}} \times 100$

그림 10-22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과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비율 (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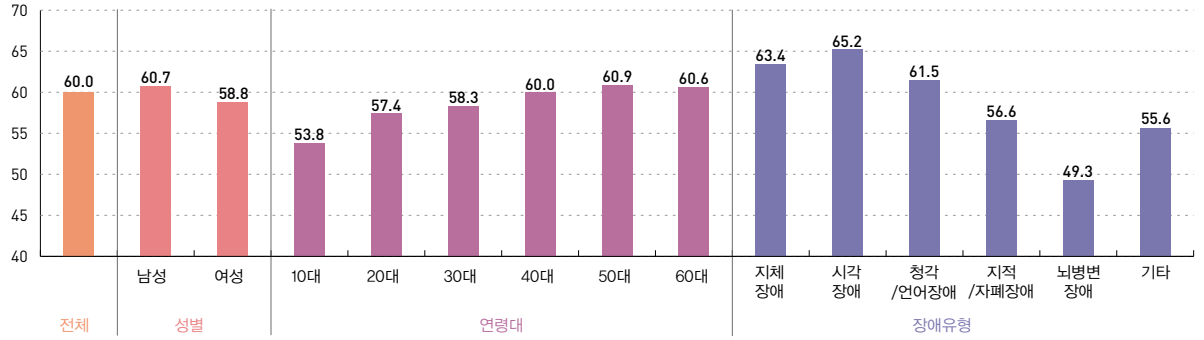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조사, 각 연도.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23 일반특성별 생활체육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비율 (2024)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조사, 2024. (https://www.mcst.go.kr에서 2025.6.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조사*	2006	2024	1년

*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명칭이 장애인생활체육조사로 변경됨.

08
대 표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Benefit rate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지표 정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초 · 중 · 고등학교와 학생의 비율로 정의한다.

• 문화예술 경험 기회 및 향유 능력 제고, 공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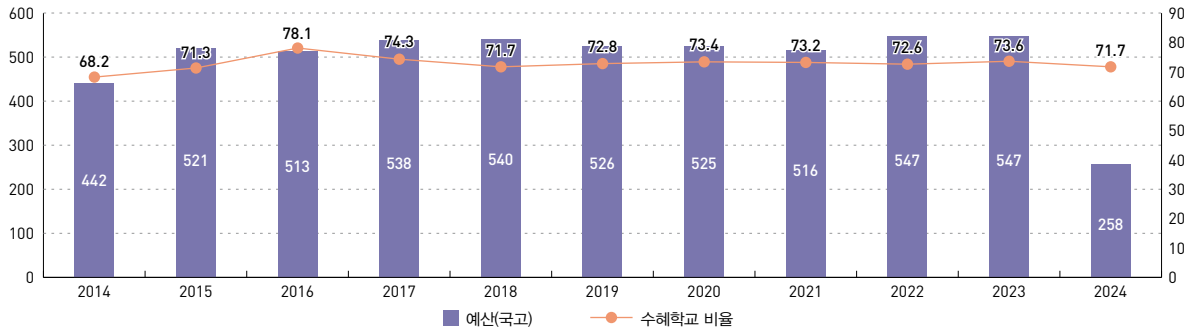
•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학교 비율 = $\frac{\text{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학교 수}}{\text{전체 초 · 중 · 고등학교 수}} \times 100$

•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비율 = $\frac{\text{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text{전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수}} \times 100$

유의사항 각 통계의 출처가 다르게 산출하였으므로 계산하는 기준에 따라 다소 다르게 산출될 수 있음.

그림 10-24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혜학교 비율 및 지원예산 (2014~2024)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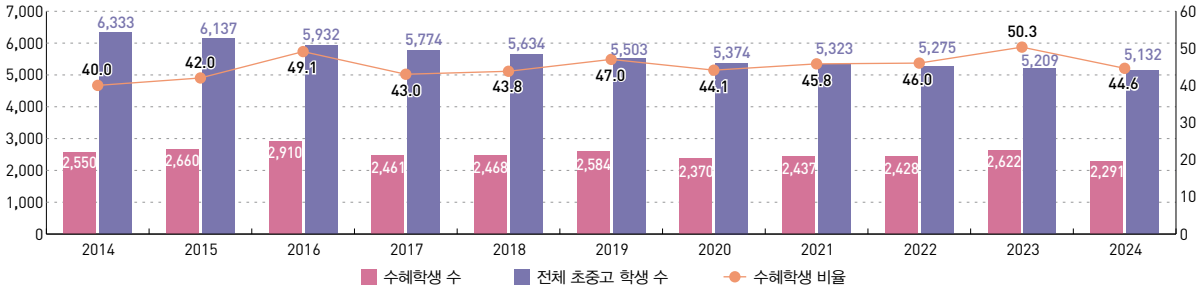
주: 예산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전체 예산(학교문화예술교육 다각화 사업, 예술꽃씨앗 · 새싹학교 포함), 수혜학교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원 학교 수.

자료: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각 연도, (https://lib.arte.or.kr에서 2025.6.29. 인출)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https://www.moe.go.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25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2014~2024)

(단위: 천 명, %)



자료: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각 연도, (https://lib.arte.or.kr에서 2025.6.29.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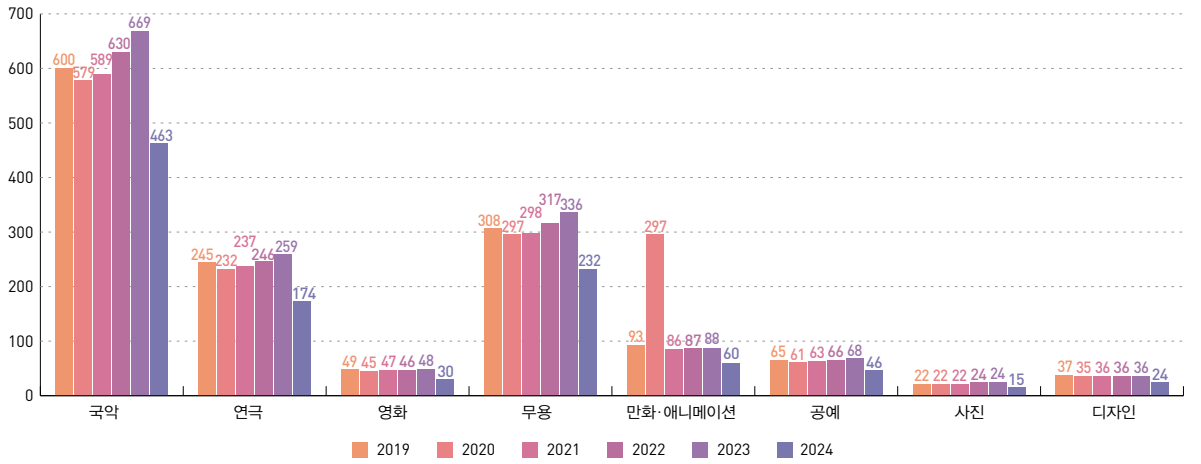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https://www.moe.go.kr에서 2025.6.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2005	2024	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단위 수혜자 통계	2019	2022	분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24	1년

그림 10-26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장르별 지원 시수 (2019~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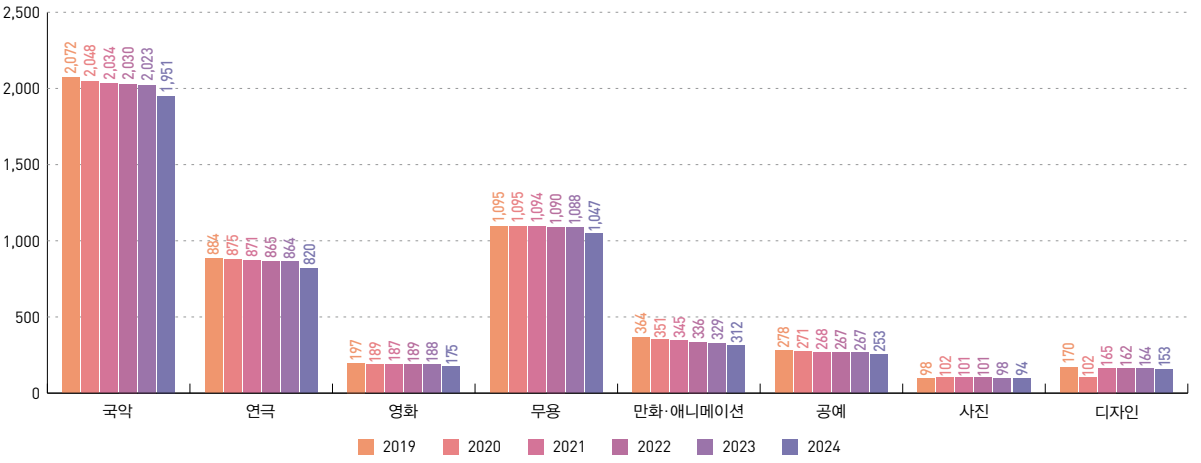
(단위: 천 시수)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각 연도. (https://lib.arte.or.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27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장르별 강사 수 (2019~2024)

(단위: 명)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각 연도. (https://lib.arte.or.kr에서 2025.6.29. 인출)

09
대 표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Experience rate of social arts and culture education

지표 정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 정규 학교 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강좌나 강습(온라인 교육, 방송교육 포함)의 형태로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 초 · 중 · 고등학교 정규 학교 교육 외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안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수준, 문화예술 향유 능력 개발의 기회 정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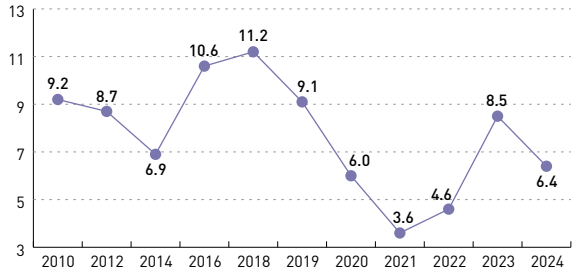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지난 1년간 학교 교육 이외에 문화예술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15세 이상의 대상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산출하였음.

그림 10-28 연도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10~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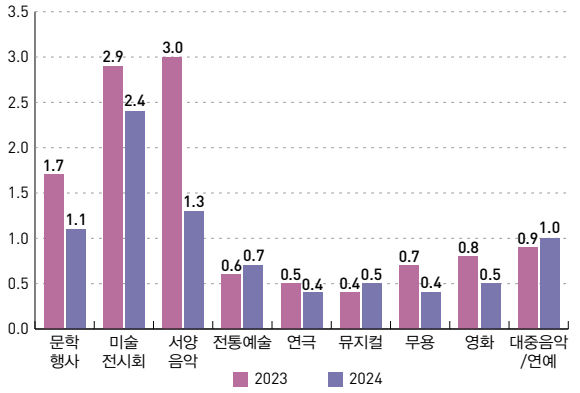


주: 1) 2010년 이전의 자료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경험률이며, 2012년 이후는 지난 1년 동안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임.
2) 2016년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역사, 철학 강의 및 역사탐방을 포함하지 않는 값이며, 포함했을 때는 11.5%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https://policydb.kcti.re.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29 연도별 · 문화장르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2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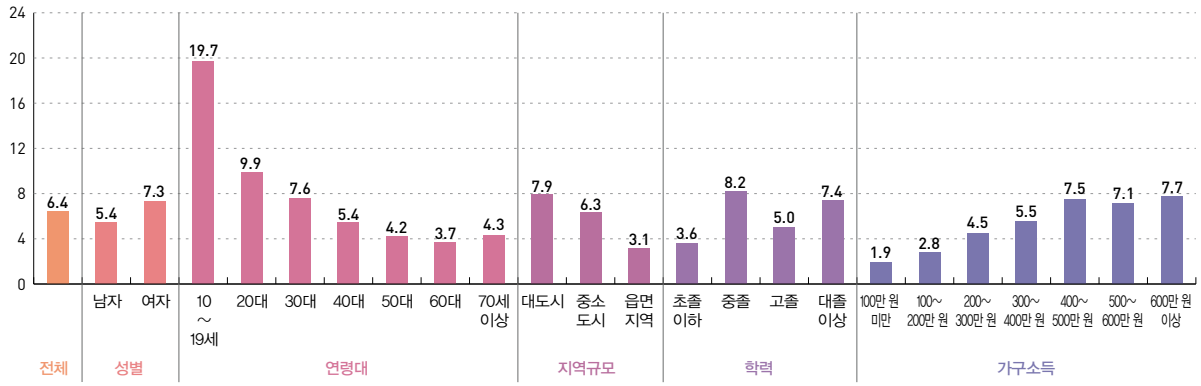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https://policydb.kcti.re.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30 일반특성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24)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4. (https://policydb.kcti.re.kr에서 2025.6.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8	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2024	1년

* '문화향수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명칭이 변경됨.

10
대 표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Benefit rate of integrated cultural voucher

지표 정의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여 문화여가를 향유한 경험이 있는 수급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로 경제적 이유로 문화를 누리기 힘든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의 제공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text{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 \times 100$$

유의사항 본 통계의 모수는 문화소외계층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해당자의 합임.

표 10-6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와 수혜자 비율 (2018~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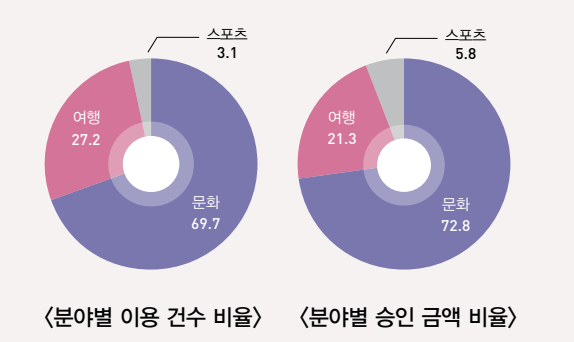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전체	1,592	62.2	1,629	74.2	1,753	73.8	1,975	75.2	2,320	88.3	2,554	90.9	2,620	88.4

주: 수혜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문화소외계층의 합 대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비율을 의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예술위원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보고 및 문화누리카드시스템(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0-3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분야별 이용 비율 (2024)

(단위: %)



〈분야별 이용 건수 비율〉 〈분야별 승인 금액 비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예술위원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보고 및 문화누리카드 시스템(내부자료), 2024.

표 10-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세부분야별 이용 건수와 승인 금액 (2024)

(단위: 천 건, 백만 원)

구분	이용 건수	승인 금액
전체	12,257	304,596
도서	3,671	112,538
음악	124	3,976
영상	2,956	50,161
공연	66	1,608
미술	1,008	32,814
문화체험	207	9,548
문화일반	515	11,181
교통수단	2,528	37,309
여행사	11	884
관광지	27	769
숙박	148	9,178
스포츠관람	8	208
체육용품	197	13,377
체육시설	170	4,15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예술위원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보고 및 문화누리카드 시스템(내부자료),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이용 현황 (내부자료)	2014	2024	1년

* 2014년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으로 통합되었음.

11 대 표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Benefit rate of sports class voucher

지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만 5~18세 유소년 및 청소년들 중 스포츠바우처 지정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수급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정과 같은 소외계층의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text{해당 연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 \over \text{기초생활수급자 만 5 ~ 18세 유 · 청소년의 수} \times 100$$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의 만 5~18세 유소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

표 10-8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와 수혜자 비율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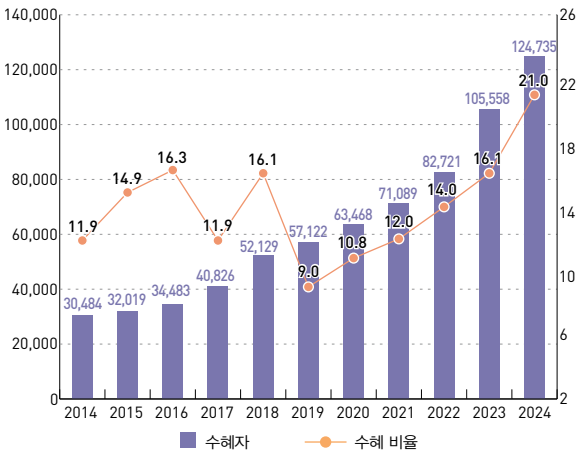
(단위: 명, %, 억,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혜자 수	30,484	32,019	34,483	40,826	52,129	57,122	63,468	71,089	82,721	105,558	124,735
수혜 비율	11.9	14.9	16.3	6.5	8.2	9.0	10.8	12.0	14.0	16.1	21.0
예산	106	118	129	174	196	215	244	291	466	731	1,008
만족도	84.5	85.8	89.1	91.6	92.6	94.4	94.5	95.0	97.6	97.6	97.0

주: (수혜율) '17년부터 기초+차상위계층 유 · 청소년 추정치(19년 말 기준 630천 명(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자료 참고), 이전 연도는 차상위 통계자료 없음) 대비 수혜율로 계산
(기 제출된 '17년 이전 수혜율은 기초수급청소년 추정치 대비 수혜율로 계산된 수혜율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보고(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0-32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및 수혜율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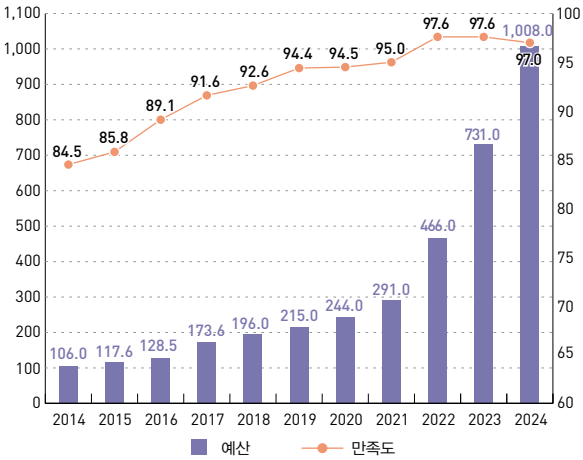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보고(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0-33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및 만족도 (2014~2024)

(단위: 억 원, 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율(내부자료),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보고 (내부자료)	2009	2024	1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977	2024	1년

12
대 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Number of elderly cultural programs beneficiary

지표 정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는 한국문화연합회가 수행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로 측정한다.

• 고령화시대 어르신 세대의 여가 기회 및 참여활동 확대로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수**

표 10-9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예산 및 수혜자 수 (2014~2024)

(단위: 억 원, 개,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지원액	40.5	38.5	46.8	42.1	37.9	32.7	27.7	25.0	20.4	25.5	7.4
참여문화시설 수	295	262	268	310	265	258	179	182	197	160	48
프로그램 수	415	435	391	332	297	311	202	187	198	163	56
수혜자 수	13,366	14,042	12,111	9,152	8,628	10,039	5,865	4,513	4,665	5,536	1,33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내부자료), 각 연도.

표 10-10 성별 · 지역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및 비율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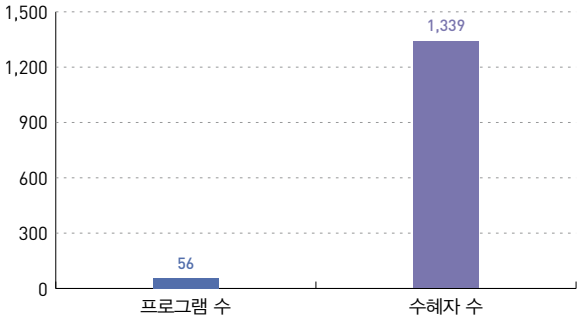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수혜자 수	비율
성	남자	234	17.5
	여자	1,105	82.5
지역	서울/경기	190	14.2
	강원/충청	269	20.1
	영남	402	30.0
	호남/제주	478	35.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내부자료), 2024.

그림 10-34 어르신 문화프로그램별 수혜자 수와 프로그램 수 (2024)

(단위: 명, 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내부자료),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보고 (내부자료)	2005	2024	1년

13
대 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Benefit rate of disabled sport leaders service

지표 정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의 수혜를 받은 비율로 정의된다.

•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확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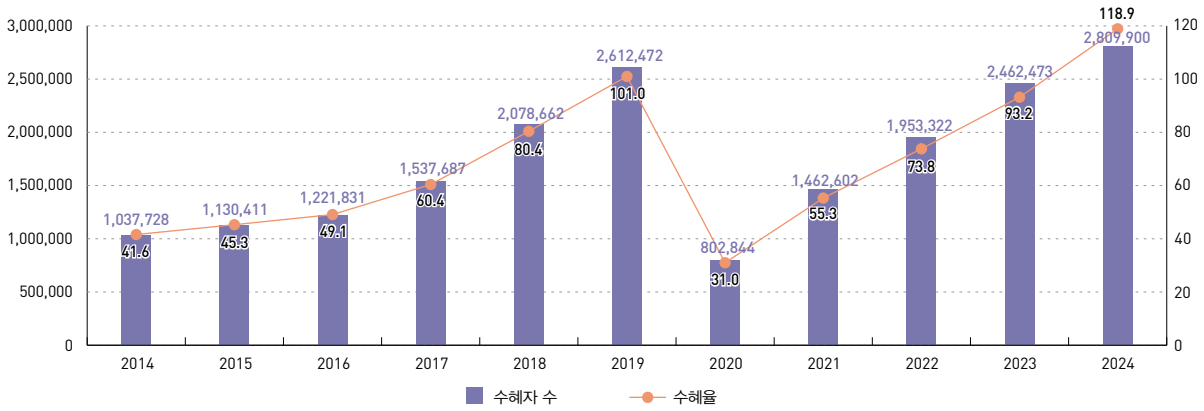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자 수}}{\text{등록 장애인 수}} \times 100$$

유의사항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이용한 대상으로 작성한 지표임.

그림 10-35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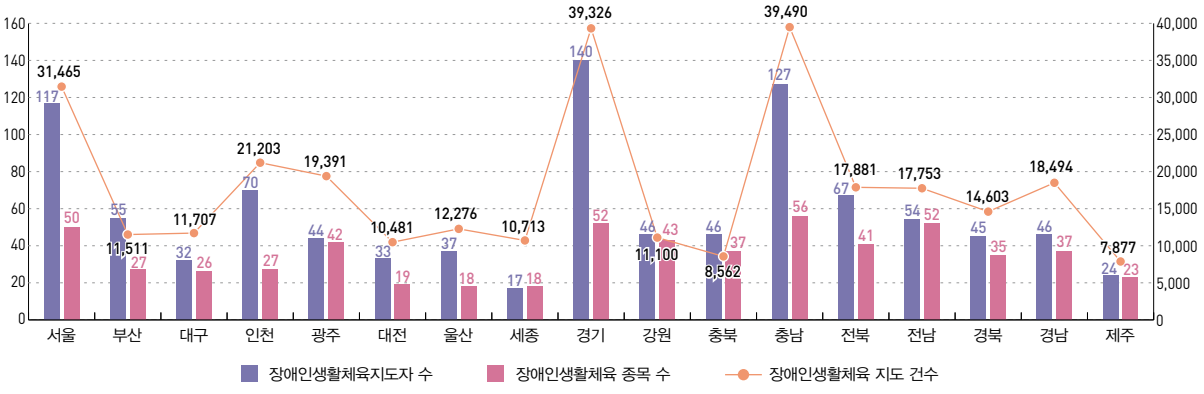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0-36 시도별 장애인생활체육체육지도자 수와 종목 수, 지도 건수 (2024)

(단위: 명, 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내부자료), 202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사업보고 (내부자료)	-	2024	1년
보건복지부	시 · 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1989	2024	1년

14
대 표

GDP 대비 문화예산

Cultural budget for GDP

지표 정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을 GDP로 나눈 값을 GDP 대비 문화예산*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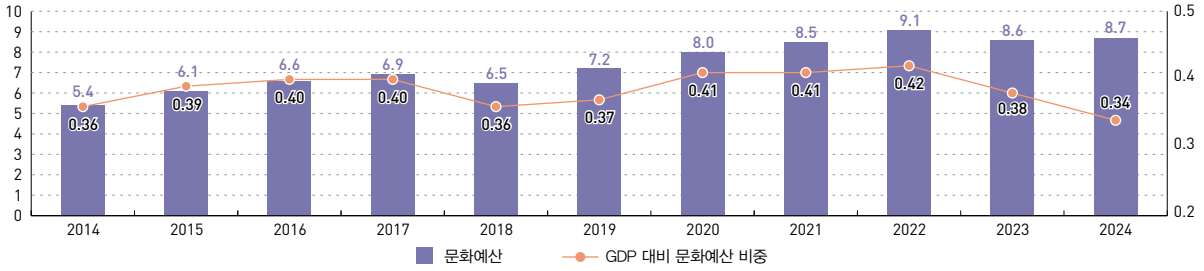
• GDP 대비 문화예산 비율을 통하여 정부예산 중 문화분야에 대한 지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text{GDP}}$

그림 10-37 GDP 대비 문화예산 비중 (2014~2024)

(단위: 조 원, %)



자료: 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https://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5.6.29. 인출)
2) 통계청, 연간지표. (https://kosis.kr에서 2025.6.29. 인출)

표 10-11 정부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비중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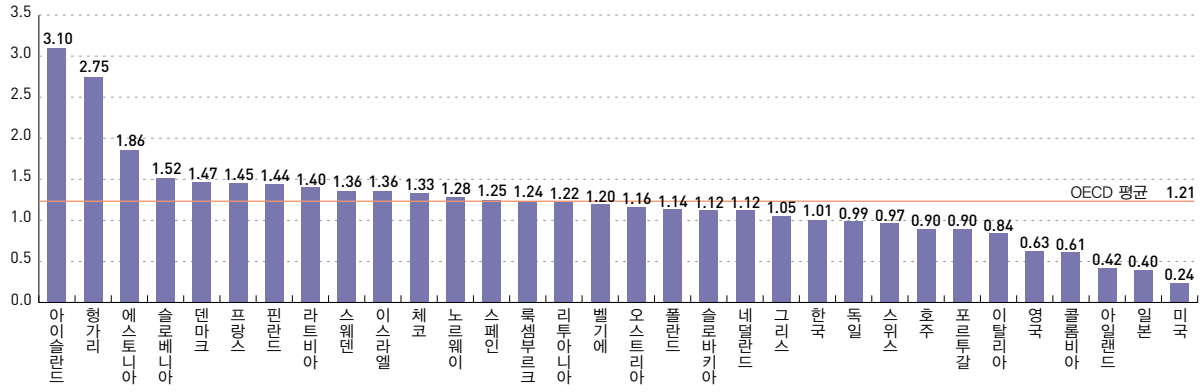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문화체육관광부(A)	4.4	5.0	5.5	5.7	5.3	5.9	6.5	6.9	7.4	6.7	7.0
정부(B)	355.8	375.4	386.3	400.5	428.8	469.6	512.3	558.0	607.7	638.7	656.6
비율(A/B)	1.24	1.33	1.42	1.42	1.24	1.26	1.27	1.24	1.22	1.05	1.06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https://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38 OECD 국가의 GDP 대비 오락문화비 정부지출 비중 (2022)

(단위: %)



주: 1) 오락문화비는 일반정부 총지출 기준
자료: OECD, General government spending by function, OECD Publishing.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general-government-spending.html에서 2025.6.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 예산	-	2024	1년

*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국가유산청),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문화 · 미디어 · 콘텐츠 관련 예산을 포함

15
대 표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Leisure culture expenditure for household consumption

지표 정의

가계의 국내 최종지출최종소비* 중에서 오락, 문화 등의 명목 오락문화비 사용 비중을 산출하여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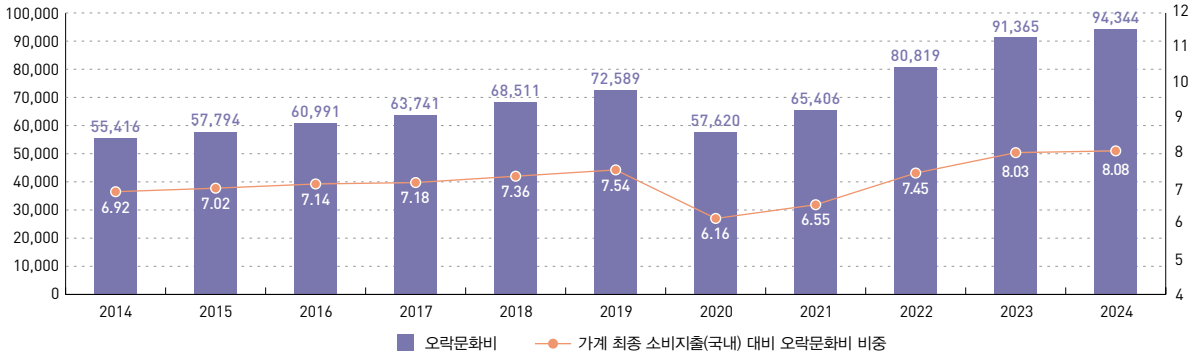
• 가계가 국내에서 소비하는 지출 중 오락문화비 지출 비중의 정도와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frac{\text{전체 가계의 국내 오락문화 최종 소비지출 금액}}{\text{전체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 금액}} \times 100$$

그림 10-39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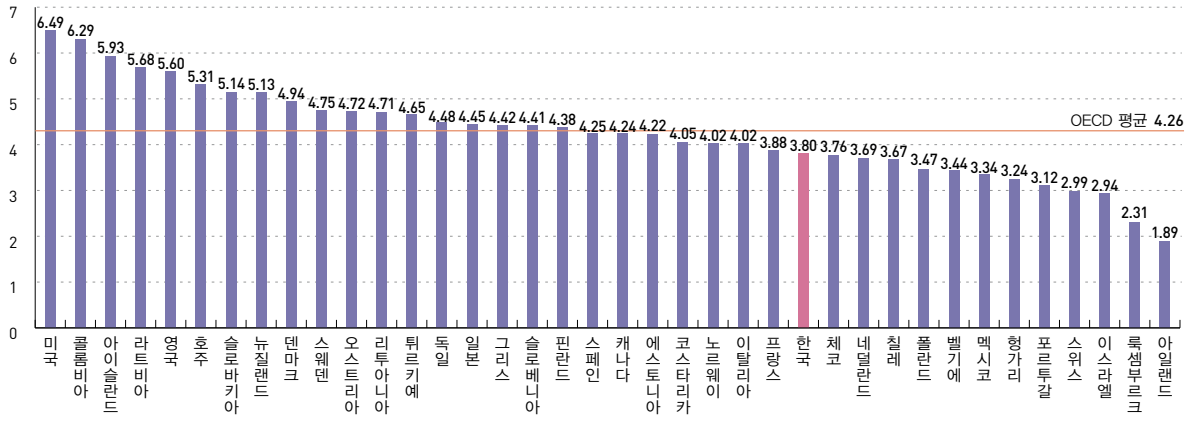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



주: 오락문화비: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명목 기준, 기준 연도 2020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0-40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2023)

(단위: %)



주: 1) 오락문화비는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명목가격 기준.
2) 국가별 2023년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가장 최근 연도 자료를 사용함.
자료: OECD. Annual GDP and components – expenditure approach [Data set]. OECD Data Explorer. 각 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29. 인출); OECD. Annual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by purpose (COICOP) [Data set]. OECD Data Explorer. 각 연도.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29. 인출); (한국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에서 2025.6.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은행	국민계정	1953	2024	1년

* 가계의 국내 최종 소비지출 대비 여가문화비 지출 비중을 시계열로 비교하기 위해 명목금액으로 산출하였음.

11

주거

0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02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03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04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05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06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07 노숙인 수
08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09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10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11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주거의 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주거의 안정성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노숙인 수	
주거비 부담 가능성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01
대 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Percentage of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지표 정의

전체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주거 수준으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 · 성능 및 환경 기준 등이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및 규모는 주거의 질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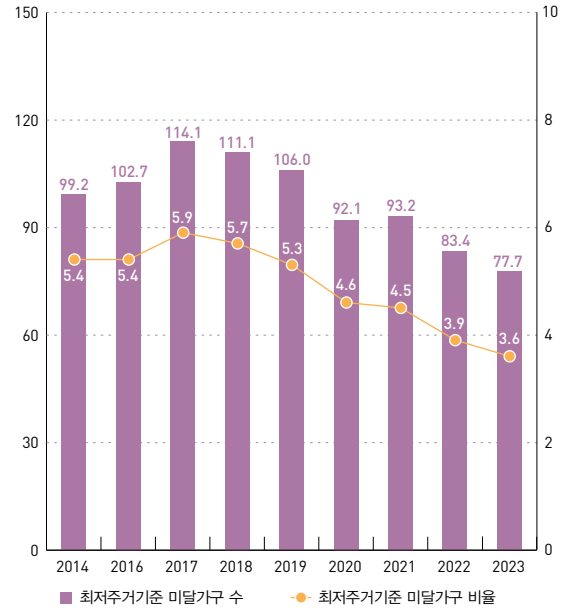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면적기준, 방수기준 및 설비기준 미달가구 수}}{\text{일반가구 수}} \times 100$$

유의사항 법으로 규정된 최저주거기준 중에서 정량적 정보 파악이 어려운 구조 · 성능 · 환경 기준은 제외하였고, 주거실태조사가 표본조사인 점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는 추정치이다.

그림 11-1 연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및 비율 (2014~2023)

(단위: 만 가구,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stat.molit.go.kr에서 2025.6.30. 인출.)

표 11-1 지역별 · 소득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23)

(단위: %)

구분		최저주거기준 미달	면적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침실기준 미달
전체		3.6	2.7	2.3	0.2
지역별	수도권	4.2	3.7	2.3	0.2
	광역시 등	2.5	1.9	1.8	0.1
	도지역	3.3	1.6	2.7	0.1
소득별	하위	6.2	4.6	4.9	0.1
	중위	2.5	1.9	1.0	0.2
	상위	1.0	0.7	0.2	0.2

주: 1)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소득계층은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 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분위~4분위), 중소득층(5분위~8분위), 고소득층(9분위~10분위)으로 구분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연구보고서, 2024.
(https://stat.molit.go.kr에서 2025.6.30. 인출.)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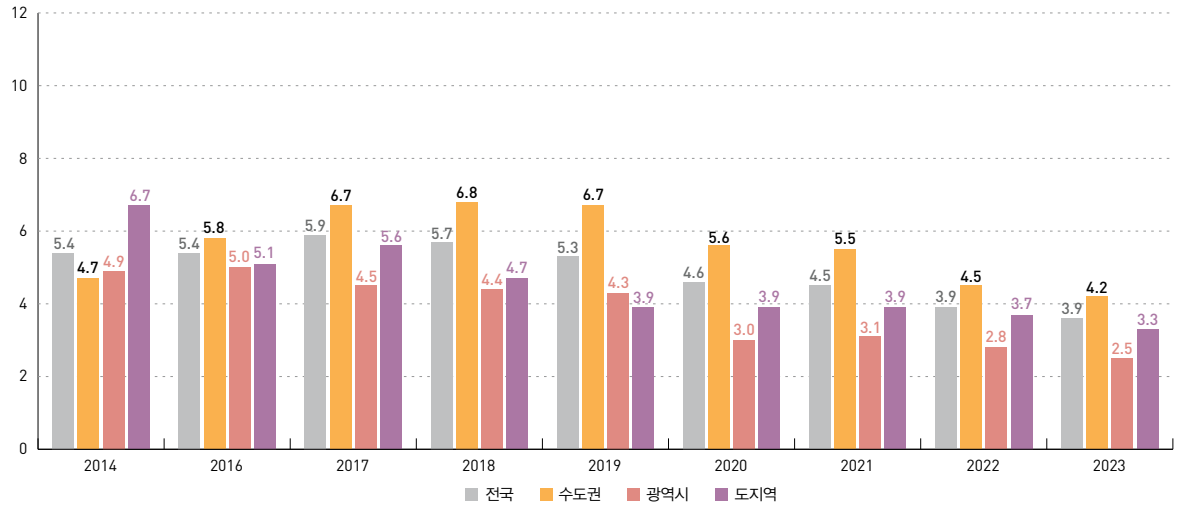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23	1년

* 2016년까지는 2년 주기, 2017년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 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에 따라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 · 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 ·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 성능 및 환경 기준을 최저주거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최저주거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그림 11-2 연도별 ·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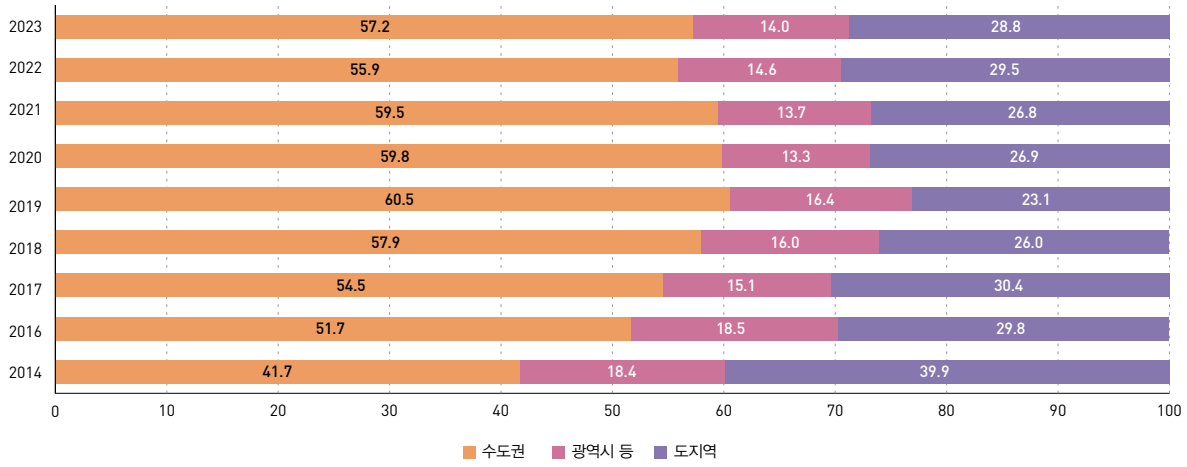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stat.molit.go.kr에서 2025.6.30. 인출.)

그림 11-3 연도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분포 (2014~2023)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stat.molit.go.kr에서 2025.6.30. 인출.)

표 11-2 연도별 · 점유형태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2014~2023)

(단위: %)

구분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0.3	0.2	0.2	0.2	0.1	0.1	0.1	0.1	0.1
자가	0.1	0.1	0.0	0.1	0.1	0.0	0.0	0.0	0.1
전세	0.3	0.1	0.1	0.2	0.1	0.2	0.1	0.1	0.1
보증금 있는 월세	0.9	0.7	0.6	0.5	0.4	0.3	0.4	0.3	0.2
보증금 없는 월세	0.7	1.3	0.2	1.3	0.1	0.3	0.5	0.0	-
무상	0.2	0.2	0.4	0.1	0.1	0.4	0.3	0.1	0.3

주: 1) 거실 및 식당 수가 방의 개수에 포함됨.
2) 2012년도의 경우 부엌, 거실, 화장실, 창고를 제외한 방 수를 조사하였으므로 방의 개수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를 단칸방으로 간주함.
3)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stat.molit.go.kr에서 2025.6.30. 인출.)

02
대 표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Number of low-income households in receipt of housing improvement support households

지표 정의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이란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열악한 주택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물리적 보완이나 개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주거급여사업 중 수선유지급여사업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2개 사업 지원가구 수의 합**
  - 2020년까지 포함된 집수리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지방정부로 이관

유의사항 관련 사업의 주무부처 이관 및 지방정부 이양 등을 감안하여 연간 지원가구 수 및 내용을 이해해야 함.

표 11-3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2014~2024)

(단위: 가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주거급여사업[1]	13,877	78,294	76,928	73,084	82,960	87,582	95,876	108,103	112,709	107,411	103,699
		(9,792)	(21,207)	(18,308)	(17,011)	(22,264)	(18,519)	(18,801)	(19,607)	(19,624)	(19,300)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2]	2,219	1,291	-	-	-	-	-	-	-	-	-
집수리사업	2,049	765	1,067	1,241	1,302	848	1,776	-	-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42,158	40,707	29,468	26,128	30,385	34,195	33,233	33,319	39,461	50,526	55,011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934	806	413	754	877	907	921	951	920	1,566	1,569
계[3]	61,237	121,863	107,876	101,207	115,524	123,532	131,806	109,054	113,629	108,977	105,268

주: 1) 2014년까지는 주거현물급여(보건복지부), 2015년은 수선유지급여, ()안은 연간수선완료 가구 실적임.
2) 환경부 사업이었으나 2016년 이후 주거급여사업(국토교통부)으로 통합, 2020년 이후 지방 이양.
3) 2021년부터는 지방정부로 이양된 집수리 사업 및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미포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내부 자료), 각 연도.
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지원 가구 수(내부 자료),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내부자료)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내부자료)	2015	2024	부정기
국토교통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내부자료)	-	2024	부정기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은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음.

03
대 표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Percentages of households residing in nonhousing accommodation

지표 정의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처가 있으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여관 등 숙박시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무허가 불량 건축물 등이 해당되나 오피스텔과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은 제외한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 오피스텔과 기타로만 구분되어 있으므로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에서 오피스텔 거주가구를 제외한 가구로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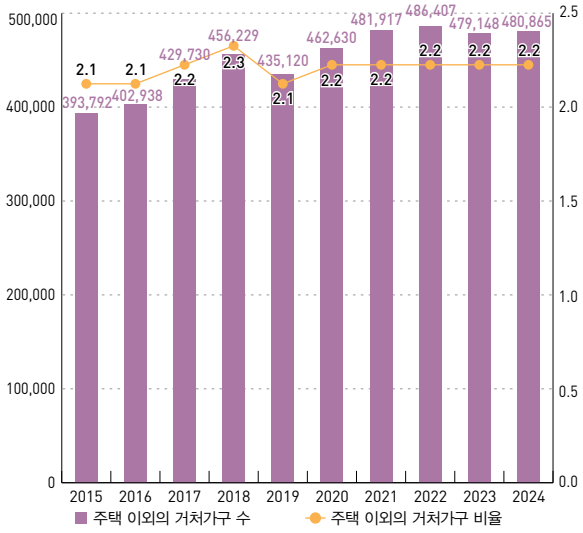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오피스텔 거주가구 수)}}{\text{일반가구 수}} \times 100$$

유의사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및 오피스텔과 기숙사 · 특수 사회시설 등으로 구분해왔다. 다만 주택 이외 거처의 상세한 유형(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 비닐하우스 등)은 끝자리 0 · 5자 연도에만 공표되며, 나머지 연도는 오피스텔만 공표된다. 이에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 측정 산식을 주택의외의 거처 거주 가구 수(전체)에서 오피스텔 거주 가구 수만 제외한 것으로 통일한다.

그림 11-4 연도별 주택 이외 거처가구 규모 및 비율 (2015~2024)

(단위: 가구, %)



주 : 1) 2015년 이후 값은 등록센서스를 활용한 전수부문의 결과임.
2) 주택 이외의 거처는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으로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5.07.30. 인출.)

표 11-4 연도별·가구주 연령대별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현황 (2015~2024)

(단위: %)

구분	주택 이외 거처가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세 미만	0.5	0.6	0.4	0.5	0.4	0.5	0.5	0.6	0.6	0.7
20~29세	14.5	18.4	20.7	15.1	14.4	14.7	15.6	14.6	14.4	14.3
30~39세	16.3	23.9	11.6	14.9	14.5	14.5	14.8	14.4	14.2	13.9
40~49세	19.1	19.4	28.7	16.9	16.2	15.6	14.9	14.4	14.1	13.5
50~64세	34.9	27.1	27.5	36.9	37.6	37.0	36.0	35.6	35.2	34.4
65세 이상	14.8	10.6	11.2	15.7	16.9	17.7	18.3	20.3	21.6	2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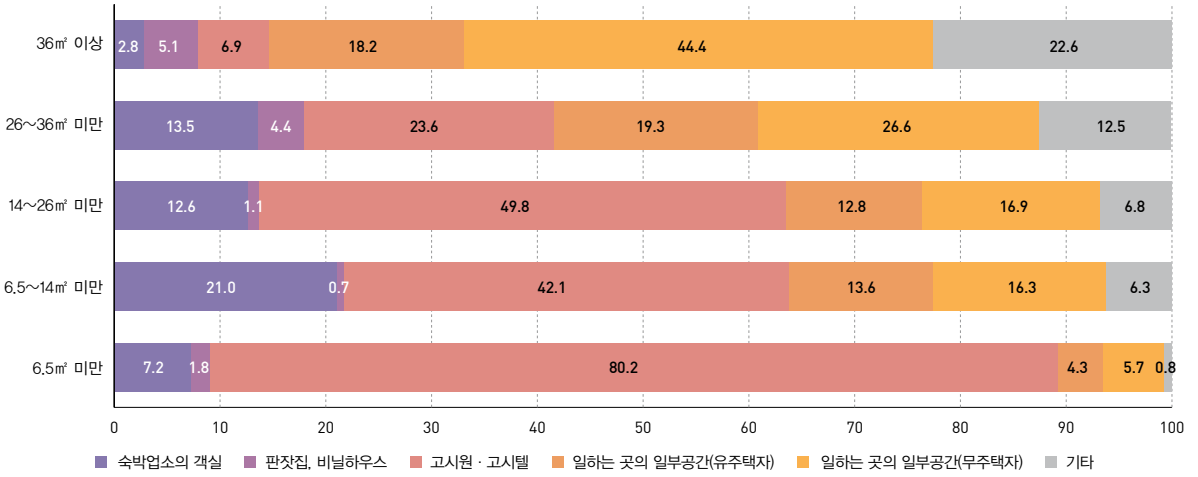
주: 2015년 이후 값은 등록센서스를 활용한 전수부문의 결과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5.07.3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 방식)	1960	2020	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24	1년

그림 11-5 주거전용면적별 · 거처 유형별 주택 이외의 거처 분포 (2022)

(단위: %)



주: 무응답, 반올림, 신뢰도가 낮아 공표되지 않는 항목의 존재 등으로 인해 전체와 하위 구성항목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2023. (http://kosis.kr에서 2025.6.30. 인출.)

표 11-5 지역별 · 거처 유형별 주택 이외의 거처 분포 (2022)

(단위: 가구, %)

구분	가구수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 비닐하우스	고시원 · 고시텔 등	일하는 곳의 일부 공간(유주택자)	일하는 곳의 일부 공간(무주택자)	기타
서울	92,890	3.3	1.6	88.2	0.8	1.4	4.7
인천 · 경기	137,570	13.2	4.0	40.3	12.0	20.1	10.5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55,863	23.3	1.1	18.0	19.0	28.4	10.2
그 외 지역	156,803	15.3	1.7	7.0	23.8	37.8	14.4

주: 1) 무응답, 반올림, 신뢰도가 낮아 공표되지 않는 항목의 존재 등으로 인해 전체와 하위 구성항목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주거급여 수급여부는 임차가구에 한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2023. (http://kosis.kr에서 2025.6.30. 인출.)

04
대 표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Number of housing units per 1,000 population

지표 정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전체 주택 수를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 주택 주택의 양적 상태를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로 많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적 지표이다. 가구 수보다는 총인구 측정이 용이하여 주택의 양적 수급여건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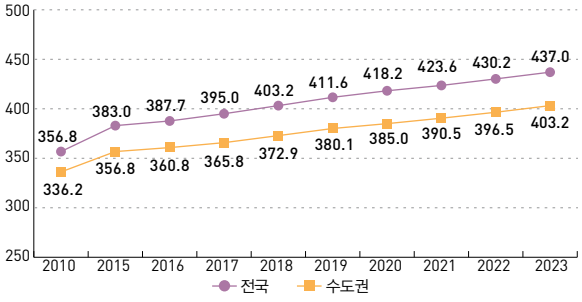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주택 수}}{\text{총인구}} \times 1{,}000$

유의사항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1채로 보는 경우와 구분 거처 수로 산정하는 경우에 따라 수치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지표이기는 하나, 상기한 바와 같이 국가별로 주택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11-6 연도별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2010~2023)

(단위: 호/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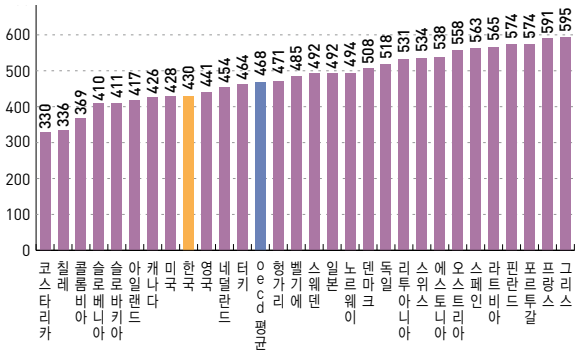


주: 1) 주택 수 산정 관련, 1995년, 2000년은 다가구주택 1호로 산정, 2005년 이후는 구분 거처 수로 산정
2) 주택 수에는 빈집이 포함
3)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각 연도. (http://www.kosis.kr에서 2025.06.29 인출.)

그림 11-7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2022년 또는 최신 연도)

(단위: 호/천 명)



주: 1)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2022년도 기준 e-나라지표 자료를 이용.
2) 그리스는 2020년, 나머지 국가는 2022년 자료.

자료: 1) OECD,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affordable-housing-database.html에서 2025.6.29. 인출.)
2)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에서 2025.6.29. 인출.)

표 11-6 연도별 ·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변화 (2022~2023)

(단위: 호)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2(A)	430.2	396.5	407.7	450.8	433.2	397.4	446.4	426.2	443.3	425.3	388.6	492.9	484.0	468.5	478.5	497.7	504.0	464.1	425.8
2023(B)	437.0	403.2	413.3	459.0	448.8	406.8	454.3	429.3	449.2	429.6	395.5	499.1	488.1	477.9	485.9	502.6	509.6	468.4	433.2
천 인당 주택 수 변화 (B-A)	6.8	6.7	5.6	8.2	15.6	9.4	7.9	3.1	5.9	4.3	6.9	6.2	4.1	9.4	7.4	4.9	5.6	4.3	7.4

주: 1) 2015년 이후는 등록센서스 기반.
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를 말함.
3) 주택 수: 빈집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각 연도. (http://www.kosis.kr에서 2025.06.3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1994	2023	1년

05
대 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Percentage of households living in long term public rental housing

지표 정의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의 재원(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건설, 매입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장기간 임대의무기간을 규정하는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본 지표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하였다.

-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장기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책정되므로, 특히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 수}}{\text{총 가구 수}} \times 100$$

유의사항 제도 변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외국의 사회주택과 유사한 유형 외에도 중간소득층 대상의 내집 마련을 위한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가 비교 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사회주택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1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인 기준으로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11-7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2014~2023)

(단위: 천 가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가구 수		18,773	19,561	19,838	20,168	20,500	20,891	21,485	22,023	22,383	22,728
임대주택	수	1,709	1,938	2,273	2,444	2,985	3,045	3,270	3,290	3,299	3,310
	%	9.10	9.91	11.46	12.12	14.56	14.57	15.20	14.90	14.70	14.6
공공임대주택	수	1,177	1,257	1,358	1,441	1,570	1,660	1,737	1,775	1,863	1,919
	%	6.27	6.43	6.84	7.15	7.66	7.95	8.09	8.06	8.32	8.44
장기공공임대주택	수	820	1,163	1,256	1,350	1,484	1,584	1,690	1,740	1,828	1,890
	%	4.37	5.95	6.33	6.70	7.24	7.58	7.86	7.90	8.17	8.31

주: 1) 전체 가구 수는 2007-2014년 국토교통부의 주택보급률 상 가구 수, 2015년부터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함. 이는 장래가구추계의 수치와 차이가 있음.
2)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 50년, 국민, 행복주택, 공공임대(10년),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합을 의미(공공임대(6년), 공공임대(5년), 사원임대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06.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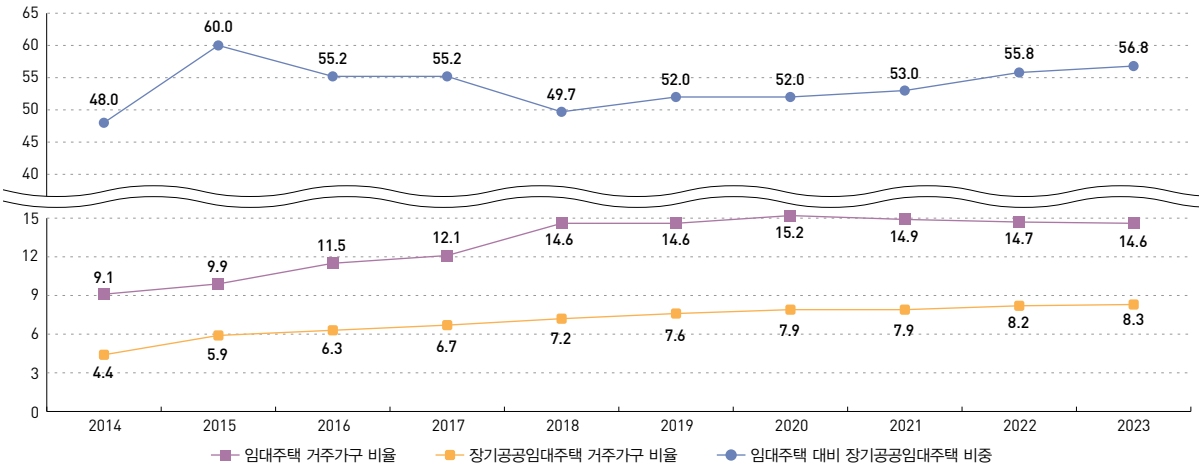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23	1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	2023	1년

* 주택업무편람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10년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 포함), 행복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이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2020년 도입되어 현재 건설 중이므로, 2020년도 재고물량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림 11-8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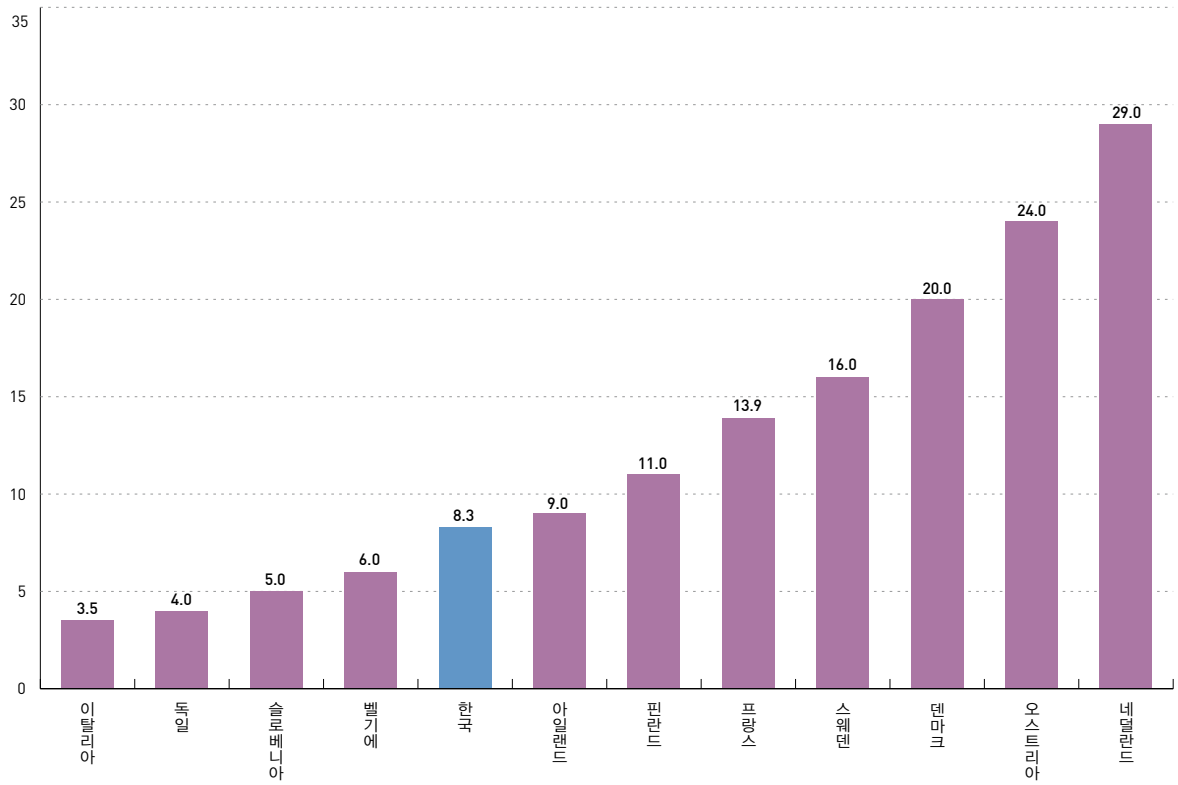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06.30. 인출.)

그림 11-9 EU 주요국가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2023)

(단위: %)



주: 1) 유럽국가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에는 사회주택, 자선단체, 시정부 공공임대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을 의미함.
2) 2020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만 포함

자료 : Housing Europe, The State oh Housing in the EU 2023, 2023. (https://www.housingeurope.eu에서 2025.6.29. 인출.)

05-1
연 관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Public rental housing units as percentage of an new housing units

지표 정의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이란 매년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 이는 공공부문의 시장개입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며,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수준도 전망할 수 있게 한다.

측정 산식

$$\frac{\text{당해 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호 수}}{\text{당해 연도 주택공급 호 수}} \times 100$$

표 11-8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인허가 수 (2015~2024)

(단위: 천 호,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주택 건설(인허가)		765.3	726.0	653.4	554.1	488.0	457.5	545.4	521.8	428.7	428.2
공공임대 주택 건설	(인허가)	76.4	75.8	76.6	81.1	93.6	81.8	66.9	39.9	77.9	129.0
	%	10.0	10.4	11.7	14.6	19.2	17.9	12.3	7.6	18.2	30.1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5.06.30. 인출.)

표 11-9 공급주체별 신규 공공임대주택 수 (201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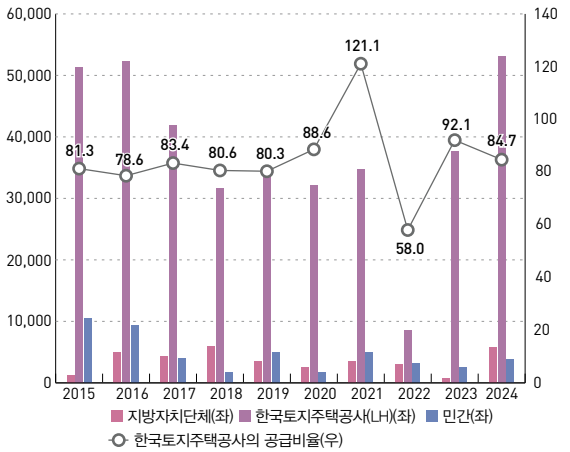
(단위: 호)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63,178	66,646	50,255	39,328	43,208	36,201	28,662	14,589	40,975	62,741
지방자치단체	1,263	4,907	4,296	5,897	3,512	2,446	3,619	3,010	659	5,835
한국토지주택공사(LH)	51,366	52,353	41,932	31,691	34,715	32,090	24,037	8,468	37,728	53,153
민간	10,549	9,386	4,027	1,740	4,981	1,665	1,006	3,111	2,588	3,753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5.06.30. 인출.)

그림 11-10 공급주체별 신규 공공임대주택 수 및 LH의 공급 비율 (201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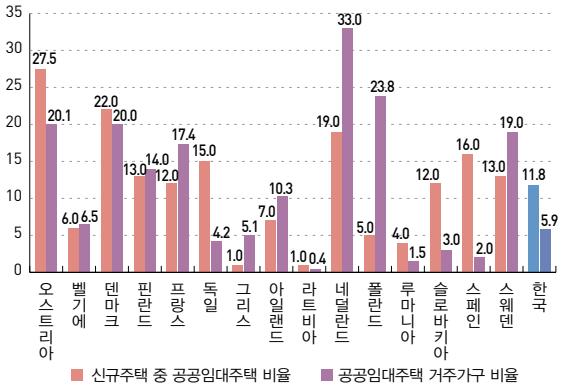
(단위: 호, %)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5.06.30. 인출.)

그림 11-11 EU 국가의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2017)

(단위: %)



주: 1) 프랑스는 착공(starting) 기준, 그 외 국가는 준공(completion) 기준
2) 신규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수치가 없는 EU 국가는 제외
3) 벨기에의 경우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CECODHAS Housing Europe, 2012 기준
4)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의 경우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및 공공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CECODHAS Housing Europe, 2012 기준

자료: Housing Europe, The State of Housing in The EU 2017, 2017. (http://www.oecd.org에서 2025.6.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	2024	1년

06
대 표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Duration of residence in current housing

지표 정의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주거의 안정성과 관련이 깊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능동적인 입장에 있는 자가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길다. 그러므로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더욱 의미가 있다.

측정 산식

- 현재 주택에 거주한 연도에서 조사 연도까지의 기간

유의사항 특성별 거주기간 비교를 통해 주택유형, 소득수준별 주거안정성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11-10 연도별 · 지역별 현재 주택에서의 평균 거주기간 (2012~2023)

(단위: 년)

구분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8.6	7.7	7.7	8.0	7.7	7.7	7.6	7.5	7.9	8.0
수도권	6.7	6.4	6.4	6.7	6.3	6.3	6.1	6.0	6.6	6.6
광역시	8.0	7.6	7.4	7.7	7.4	7.4	7.4	7.4	7.8	7.9
도지역	11.9	10.0	9.9	10.3	10.2	10.0	10.0	9.7	10.0	10.1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stat.molit.go.kr에서 2025.6.30. 인출.)

표 11-11 연도별 · 점유형태별 현재 주택에서의 평균 거주기간 (2012~2023)

(단위: 년)

구 분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가	12.5	11.2	10.6	11.1	10.7	10.7	10.6	10.5	10.9	11.1
전세	3.2	3.5	3.4	3.6	3.3	3.0	3.0	2.9	3.3	3.4
보증금 있는 월세	4.1	3.4	3.5	3.4	3.4	3.2	3.7	3.1	3.4	3.3
보증금 없는 월세	5.2	4.3	4.8	3.4	4.2	3.2	3.7	3.7	3.5	3.6
무상	10.5	7.4	7.0	7.8	6.7	7.2	6.9	7.1	7.9	7.7

주: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stat.molit.go.kr에서 2025.6.3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23	1년

* 2016년까지는 2년 주기, 2017년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표 11-12 연도별 · 소득별 현 주택의 평균 거주기간 및 거주기간별 분포 변동 (2012~2023)

(단위: 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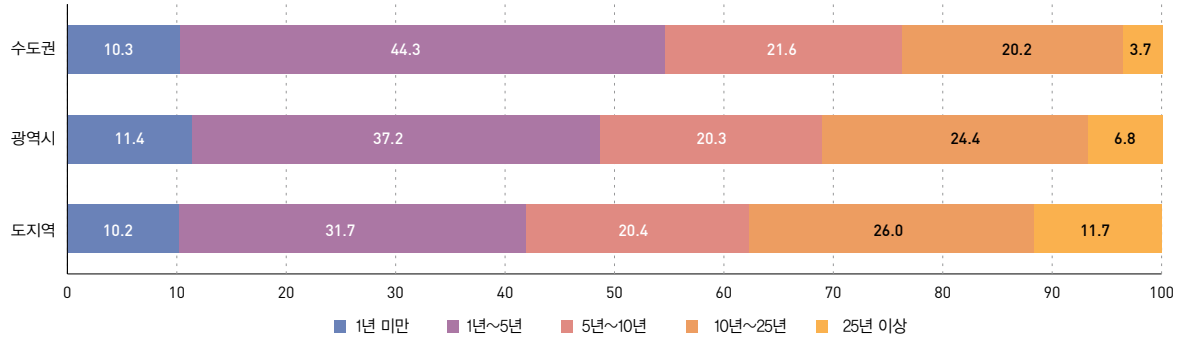
구분		1년 미만	1년~5년	5년~10년	10년~25년	25년 이상	계	평균 거주기간
하위	2012	8.6	31.5	17.1	29.0	13.8	100.0	11.5
	2014	13.6	31.9	15.7	27.2	11.6	100.0	10.1
	2016	13.6	33.2	17.4	25.9	9.9	100.0	9.3
	2017	11.9	36.0	15.3	25.8	11.1	100.0	9.7
	2018	14.1	33.8	15.6	25.3	11.2	100.0	9.6
	2019	15.8	33.6	15.3	23.7	11.6	100.0	9.5
	2020	13.0	37.7	15.4	23.2	10.7	100.0	9.0
	2021	16.8	34.9	15.4	22.6	10.3	100.0	8.8
	2022	12.5	37.2	15.9	23.1	11.3	100.0	9.3
	2023	13.6	35.6	16.7	23.1	11.1	100.0	9.3
중위	2012	8.3	46.4	20.3	21.4	3.5	100.0	6.8
	2014	13.8	42.1	18.4	22.3	3.3	100.0	6.4
	2016	12.2	42.8	19.3	22.2	3.5	100.0	6.6
	2017	9.4	44.1	19.4	23.5	3.7	100.0	6.8
	2018	12.1	44.8	18.2	21.4	3.6	100.0	6.5
	2019	13.0	43.2	19.6	20.4	3.9	100.0	6.5
	2020	9.7	44.8	20.6	21.0	4.0	100.0	6.6
	2021	11.7	43.0	21.0	20.4	3.9	100.0	6.6
	2022	8.3	44.4	21.5	21.6	4.2	100.0	6.9
	2023	9.1	41.6	23.0	21.9	4.4	100.0	7.1
상위	2012	7.3	44.7	21.6	24.0	2.4	100.0	6.6
	2014	10.5	40.8	23.6	23.4	1.8	100.0	6.4
	2016	9.6	41.4	22.4	24.0	2.6	100.0	6.7
	2017	7.7	42.4	21.1	26.2	2.7	100.0	7.0
	2018	9.4	42.5	20.7	24.9	2.5	100.0	6.7
	2019	8.9	42.2	21.8	24.7	2.4	100.0	6.8
	2020	9.1	43.1	22.6	23.0	2.3	100.0	6.4
	2021	8.2	42.4	24.6	22.5	2.3	100.0	6.6
	2022	5.6	44.0	24.2	23.5	2.8	100.0	6.9
	2023	7.0	39.9	24.8	24.5	3.8	100.0	7.3

주: 1)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소득계층은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분위~4분위), 중소득층(5분위~8분위), 고소득층(9분위~10분위)으로 구분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stat.molit.go.kr에서 2025.6.30. 인출.)

그림 11-12 지역별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비율 (2023)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24. (https://stat.molit.go.kr에서 2025.6.30. 인출.)

07
대 표

노숙인 수

Number of homeless persons

지표 정의

노숙인은 정규적인 주거지가 없어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장소에서 기거하거나 일시적인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사람을 말한다.

-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노숙인이라 할 수 있으며, 노숙인 수는 노숙인 문제의 양상과 그 심각성을 보는 데 가장 기초적인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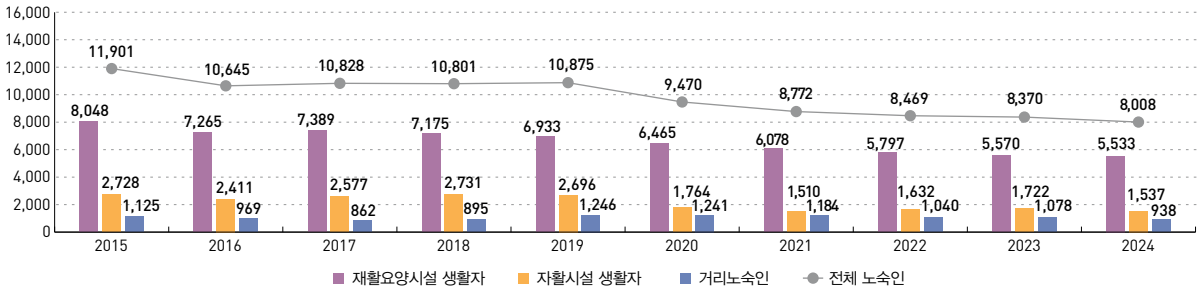
측정 산식

- **거리노숙인 수 + 노숙인시설 생활자 수(일시보호시설을 포함한 자활시설, 재활시설 및 요양시설)**

유의사항 노숙인에 준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와 연계하여 이해해야 한다.

그림 11-13 유형별 노숙인 수 (2015~2024)

(단위: 명)



주: 자활시설은 노숙인자활시설과 일시보호시설을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유형별 노숙인(내부자료), 각 연도.

표 11-13 시도별 노숙인 현황 (2017~2024)

(단위: 명, %)

연도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7	노숙인 수	10,828	3,653	880	1,001	718	154	293	43	115	924	287	712	76	235	735	345	498	159
	비중	100.0	33.7	8.1	9.2	6.6	1.4	2.7	0.4	1.1	8.5	2.7	6.6	0.7	2.2	6.8	3.2	4.6	1.5
2018	노숙인 수	10,801	3,628	784	1,014	680	158	315	41	111	947	307	729	144	233	683	329	540	158
	비중	100.0	33.6	7.3	9.4	6.3	1.5	2.9	0.4	1.0	8.8	2.8	6.7	1.3	2.2	6.3	3.0	5.0	1.5
2019	노숙인 수	10,875	3,589	775	1,024	716	344	299	145	118	931	256	697	52	247	689	321	528	144
	비중	100.0	33.0	7.1	9.4	6.6	3.2	2.7	1.3	1.1	8.6	2.4	6.4	0.5	2.3	6.3	3.0	4.9	1.3
2020	노숙인 수	9,470	3,237	678	888	605	126	266	38	100	851	225	655	66	235	643	311	405	141
	비중	100.0	34.2	7.2	9.4	6.4	1.3	2.8	0.4	1.1	9.0	2.4	6.9	0.7	2.5	6.8	3.3	4.3	1.5
2021	노숙인 수	8,772	2,877	657	804	565	108	247	29	88	761	238	619	53	228	618	304	437	139
	비중	100.0	32.8	7.5	9.2	6.4	1.2	2.8	0.3	1.0	8.7	2.7	7.1	0.6	2.6	7.0	3.5	5.0	1.6
2022	노숙인 수	8,469	2,937	618	739	537	103	255	34	78	700	210	554	47	247	598	287	393	132
	비중	100.0	34.7	7.3	8.7	6.3	1.2	3.0	0.4	0.9	8.3	2.5	6.5	0.6	2.9	7.1	3.4	4.6	1.6
2023	노숙인 수	8,370	2,773	635	643	563	140	263	38	79	716	228	533	45	272	600	278	390	174
	비중	100.0	33.1	7.6	7.7	6.7	1.7	3.1	0.5	0.9	8.6	2.7	6.4	0.5	3.2	7.2	3.3	4.7	2.1
2024	노숙인 수	8,008	2,795	650	627	538	86	229	34	68	654	205	528	43	230	554	276	360	131
	비중	100.0	34.9	8.1	7.8	6.7	1.1	2.9	0.4	0.8	8.2	2.6	6.6	0.5	2.9	6.9	3.4	4.5	1.6

자료: 보건복지부, 시도별 노숙인(내부자료),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숙인 현황 (내부자료)	2005	2024	1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2021

08
대 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Housing price to income ratio

지표 정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PIR(Price to Income Ratio)이라고도 하며, 주택가격을 연소득 대비 배수로 나타난다.

•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지표이다. 지역별, 국가별 주택구입 능력을 비교해 봄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성이나 주택가격 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연소득이나 주택가격 산정값에 따라 배율에 차이가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주택가격}}{\text{가구의 연소득}}$

유의사항 국제 비교 시 주택가격 대푯값(혹은 개별 가구의 주택가격)과 소득 기준에 대한 기준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 11-14 연도별 · 지역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PIR) (2012~2023)

(단위: 배)

구 분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 국	중위수	5.1	4.7	5.6	5.6	5.5	5.4	5.5	6.7	6.3	6.3
	평균	7.6	5.7	6.3	6.4	6.7	6.8	7.3	8.9	9.1	8.1
수도권	중위수	6.7	6.9	6.7	6.7	6.9	6.8	8.0	10.1	9.3	8.5
	평균	10.1	7.1	7.6	7.9	8.6	9.0	9.6	11.7	12.0	10.7
광역시 등	중위수	5.0	4.7	5.3	5.5	5.6	5.5	6.0	7.1	6.8	6.3
	평균	7.1	5.1	5.7	5.8	6.2	6.2	6.8	8.1	8.2	7.3
도지역	중위수	3.6	4.2	4.0	4.0	3.6	3.6	3.9	4.2	4.3	3.7
	평균	5.4	4.1	4.7	4.5	4.5	4.3	4.5	5.0	5.1	4.6

주: 2012년은 개별가구 PIR를 중위수 및 평균을 도출한 값이며, 그 외는 대상 집단의 중위수 및 평균으로 계산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stat.molit.go.kr에서 2025.6.30. 인출.)

표 11-15 연도별 · 소득계층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PIR) (2012~2023)

(단위: 배)

구 분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 체	중위수	5.1	4.7	5.6	5.6	5.5	5.4	5.5	6.7	6.3	6.3
	평균	7.6	5.7	6.3	6.4	6.7	6.8	7.3	8.9	9.1	8.1
하 위	중위수	7.5	8.3	9.8	8.3	9.0	8.9	8.3	9.4	10.0	8.7
	평균	11.3	11.2	11.6	11.1	12.0	12.3	11.7	14.1	14.9	13.2
중 위	중위수	4.3	5.0	5.6	5.2	5.2	5.2	5.7	6.3	6.3	6.3
	평균	5.5	5.8	6.2	6.2	6.4	6.5	6.7	8.4	8.6	7.7
상 위	중위수	4.4	4.7	5.0	4.8	4.8	4.8	5.4	7.1	6.4	5.7
	평균	5.4	4.5	5.0	5.3	5.7	5.8	6.6	8.1	7.9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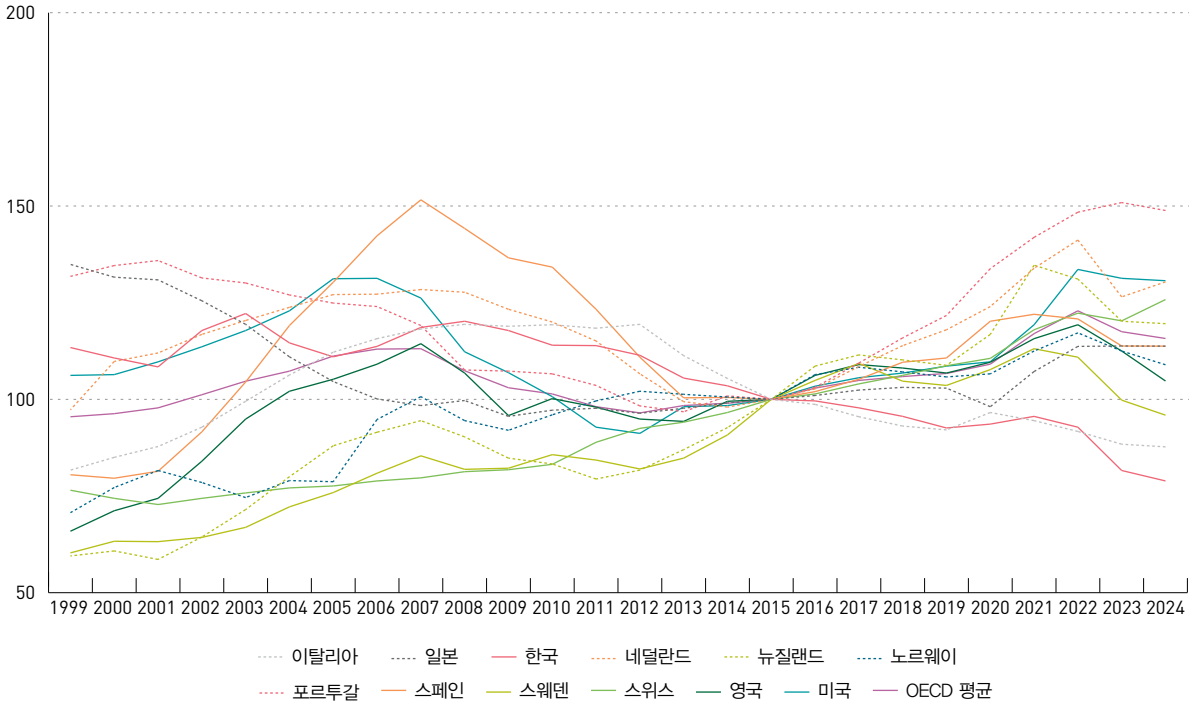
주: 1) 2012년은 개별가구 PIR를 중위수 및 평균을 도출한 값이며, 그 외는 대상 집단의 중위수 및 평균으로 계산
2) 소득계층은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 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분위~4분위), 중소득층(5분위~8분위), 고소득층(9분위~10분위)으로 구분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stat.molit.go.kr에서 2025.6.3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23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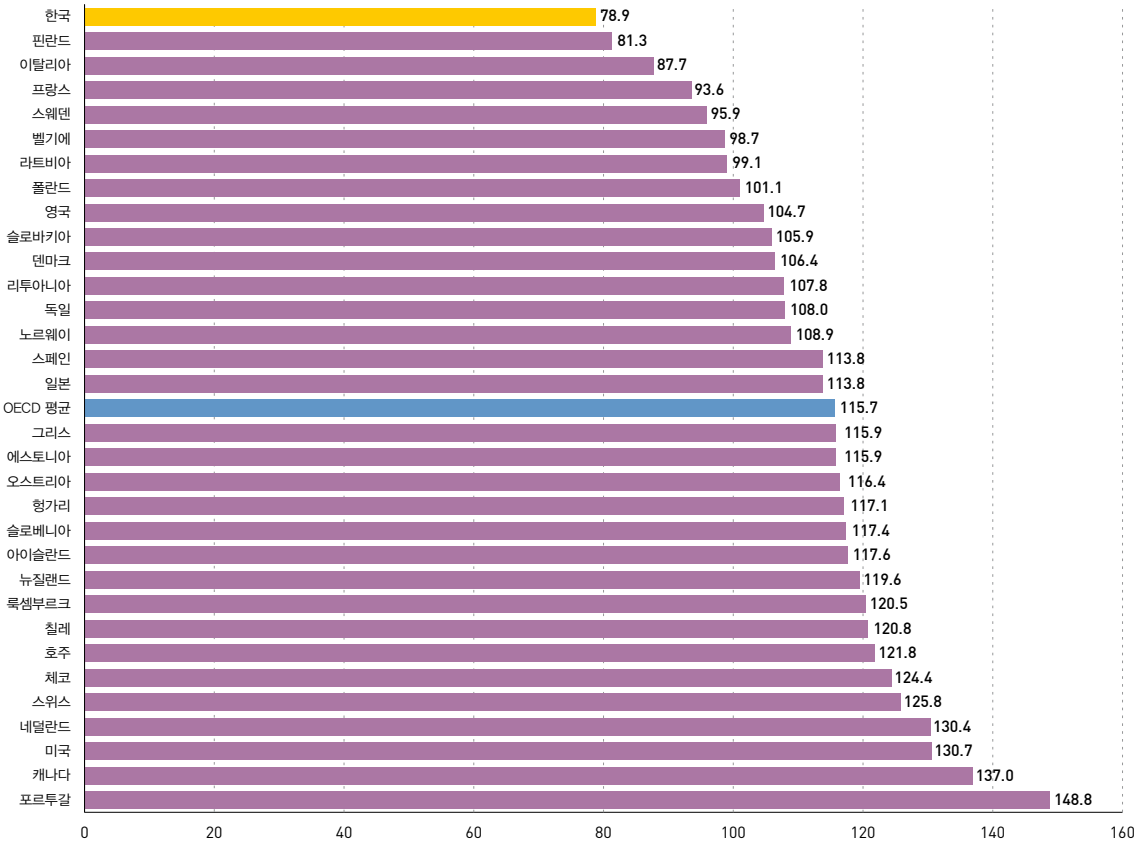
* 2016년까지는 2년 주기, 2017년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그림 11-14 OECD 국가별 PIR 변화 추이 (1999~2024)



주: 1) 기준연도 2015(2015=100).
2) 가구의 가처분 소득 평균대비 평균 주택가격으로 계산.
자료: OECD. Housing prices – Analytical house price indicators. OECD.Stat.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06.30. 인출)

그림 11-15 OECD 국가별 PIR (2015년 대비 2024년 수준)



주: 1) 기준연도 2015(2015=100).
2) 2015년과 2023년의 PIR 자료가 있는 OECD 회원국만 포함.
자료: OECD. Housing prices – Analytical house price indicators. OECD.Stat.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06.30. 인출.)

09
대 표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Monthly rent to income ratio

지표 정의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은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월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공공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이 25% 혹은 30%를 넘으면 임대료 과부담 가구로 간주되며, 이 경우 임대료 부담이 커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측정 산식

- $\frac{\text{가구의 월 임대료}}{\text{가구의 월소득}} \times 100$

※ 전세가구는 해당 시점에서 전세금의 월세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월 임대료 산정

유의사항 전세보증금의 월세전환율에 대한 이해 및 적정 월 임대료 비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아파트가 많은 국내의 경우, 임대료 외에 관리비 수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1-16 연도별 · 지역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 (2016~2023)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전국	18.1	21.4	17.0	21.8	15.5	21.1	16.1	21.3	16.6	20.9	15.7	21.5	16.0	21.8	15.8	22.7
수도권	17.9	24.6	18.4	24.7	18.6	24.0	20.0	24.6	18.6	23.7	17.8	24.7	18.3	24.8	20.3	26.3
광역시 등	15.4	16.9	15.3	17.5	16.3	17.6	16.3	17.7	15.1	17.9	14.4	18.0	15.0	18.7	15.3	18.9
도지역	14.2	15.1	15.0	15.9	15.0	15.4	12.7	14.6	12.7	14.6	12.6	14.8	13.0	15.4	13.0	15.2

주: 월세 전환율(월세이율)은 조사시점을 고려하여 2014년 9.36%, 2016년 6.70%, 2017년 6.40%, 2018년 6.20%, 2019년 6.10%, 2020년 5.70%, 2021년 5.60%, 2022년 5.80%, 2023년 6.10%를 적용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stat.molit.go.kr에서 2025.6.30. 인출.)

표 11-17 연도별 · 소득계층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 (2016~2023)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하위	23.1	26.7	22.2	26.3	20.3	25.8	20.3	26.2	18.8	23.3	18.0	23.1	18.8	24.4	19.8	24.3
중위	14.9	18.9	15.7	19.2	16.7	18.8	16.7	19.2	15.8	18.7	16.0	19.6	15.7	20.1	16.8	21.4
상위	19.0	20.6	20.3	21.9	18.3	20.8	18.3	21.1	18.7	22.0	19.6	23.5	18.6	21.9	18.7	23.4

주: 월세 전환율(월세이율)은 조사시점을 고려하여 2014년 9.36%, 2016년 6.70%, 2017년 6.40%, 2018년 6.20%, 2019년 6.10%, 2020년 5.70%, 2021년 5.60%, 2022년 5.80%, 2023년 6.10%를 적용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stat.molit.go.kr에서 2025.6.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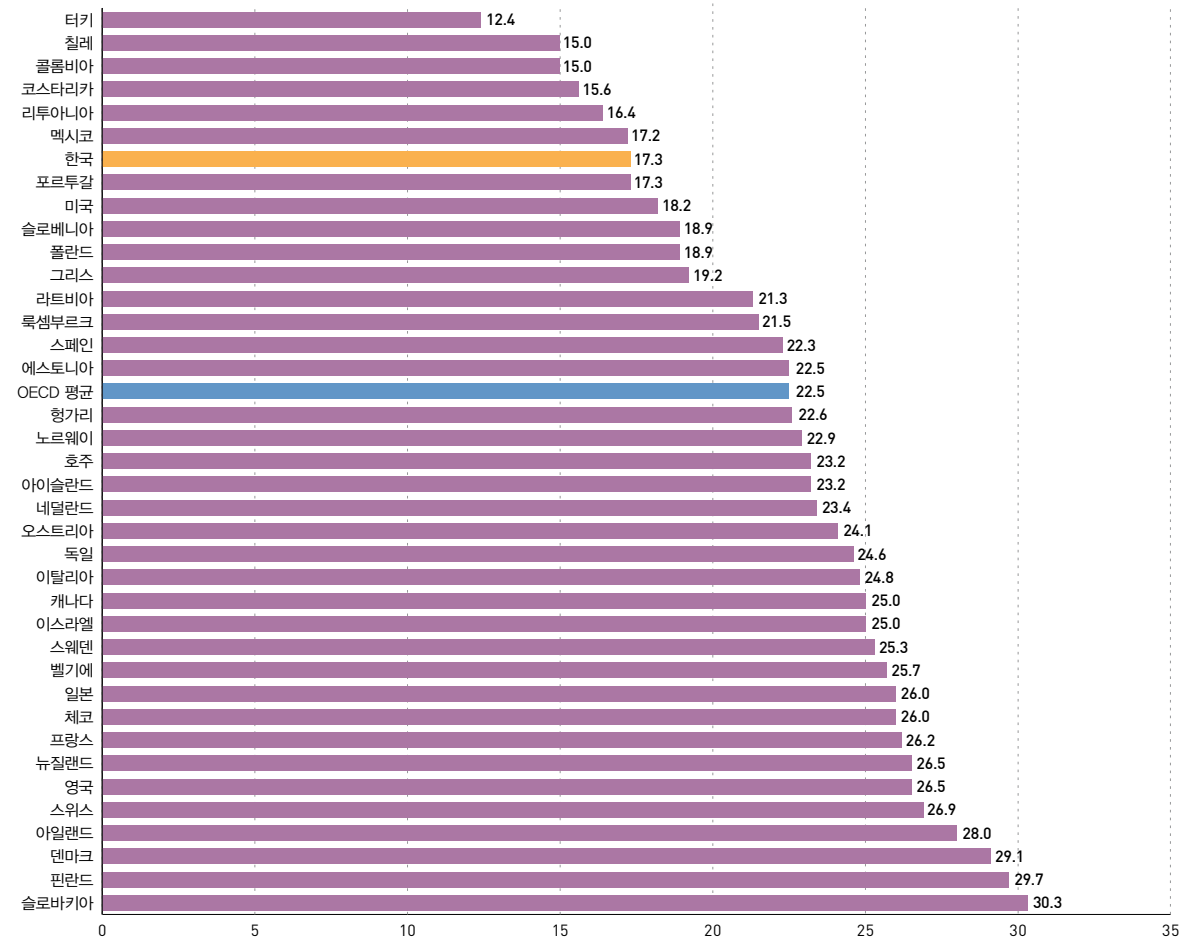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23	1년

* 2016년까지는 2년 주기, 2017년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그림 11-16 OECD 국가의 가구소비 지출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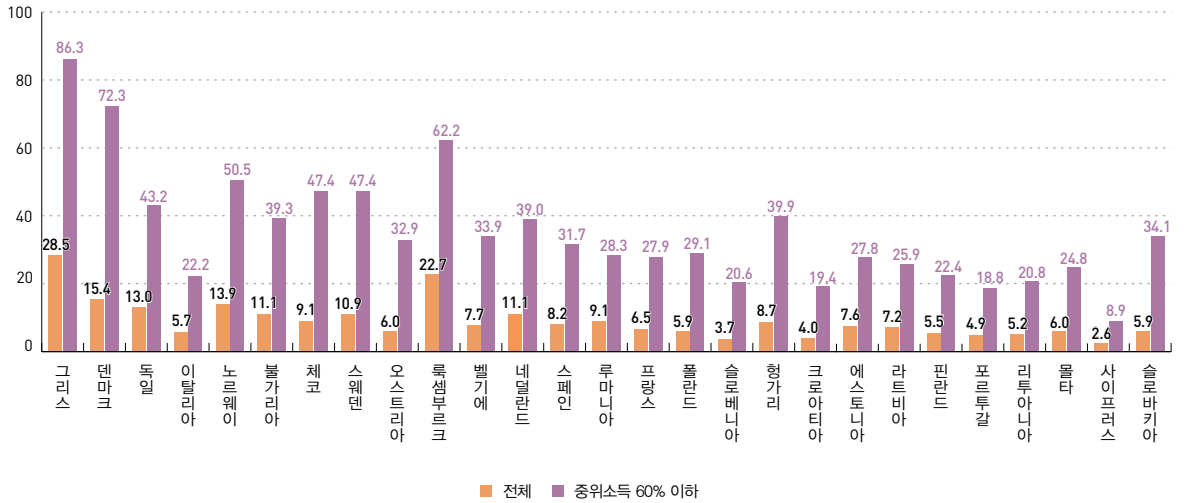
(단위: %)



주: 2022년 또는 최근 년도 자료.
자료: OECD.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affordable-housing-database.html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1-17 국가별 주거비 과부담 비율 (2023)

(단위: %)



주: 주거비 과부담이란 가구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data. (https://ec.europa.eu에서 2025.6.29. 인출.)

10
대 표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Number of households with loans from national housing fund

지표 정의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는 근로자 · 서민 등 일정한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한 가구 수를 의미한다. 또한 대출 조건이 무주택자라는 점에서 무주택 서민의 자가 취득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가 목적이다.

측정 산식

• 내집마련 디딤돌 융자가구 수 + 공유형 모기지 지원가구 수 + 기타(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유의사항 2014년부터 근로자 · 서민주택구입융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융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로 통합되어 운영한다.

표 11-18 유형별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2012~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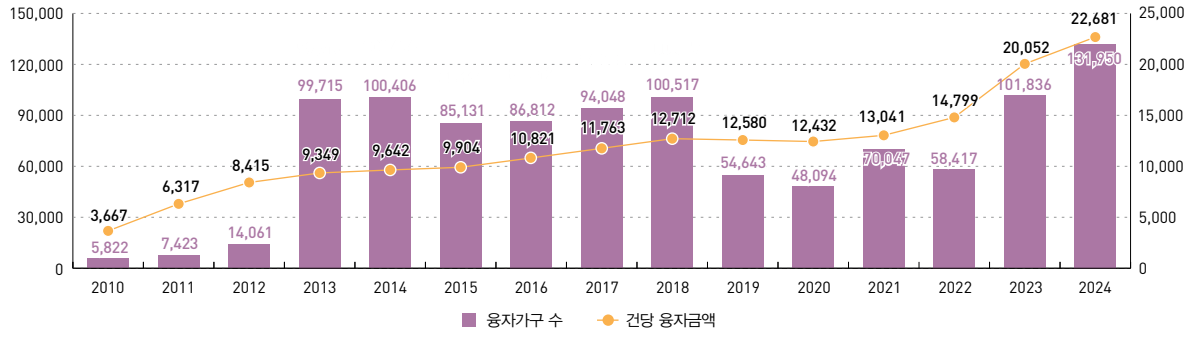
(단위: 가구, 억 원, 만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융자가구 수		14,061	99,715	100,406	85,131	86,812	94,048	100,517	54,643	48,094	70,047	58,417	101,836	131,950
자금 융자 규모 (억 원)	내집마련 디딤돌	-	-	81,127	79,241	93,264	110,566	127,725	68,719	59,781	90,570	83,698	192,112	290,175
	근로자 · 서민 구입	130	3,028	395	7	1	-	-	0	0	-	-	-	-
	생애최초 주택구입	11,703	86,411	6,649	2,005	481	1	-	0	0	-	-	-	-
	공유형 모기지	-	3,782	7,747	1,955	188	58	49	21	3	780	2,750	12,089	9,095
	기타 (주거안정, 오피스텔)	-	-	2,359	2,099	22	1	5	1	6	1	5	3	3
	융자 총액	11,833	93,221	98,277	85,307	93,936	110,626	127,779	68,741	59,790	91,351	86,453	204,204	299,273
건당 융자금액(만 원)		8,415	9,349	9,642	9,904	10,821	11,763	12,712	12,580	12,432	13,041	14,799	20,052	22,681

주: 1) 건당 융자금은 (융자총액/융자가구 수x10,000원)로 계산된 수치임.
2) 201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기금 내 유형별 기금이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건수 및 금액(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1-18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및 건당 융자금액 (2010~2024)

(단위: 가구, 억 원)



주: 1) 건당 융자금은 (융자총액/융자가구 수x10,000원)로 계산된 수치임.
2) 201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기금 내 유형별 기금이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건수 및 금액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	1981	2024	1년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건수 및 금액 (내부자료)	-	2024	1년

*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용어 변경 (2015.7.1.)

10-1
연 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Number of low-income households with jeonse loans

지표 정의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의 전월세자금을 이용한 가구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구 수

유의사항 2015년부터 근로자 · 서민과 저소득 전세를 통합해 '버팀목' 대출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통계 수치와 비교 시 감안해야 한다.
대상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되, 일반가구, 신혼부부, 청년, 중소기업취업청년, 청년부증부 월세, 노후고시원 거주자이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소득기준을 달리한다.(일반가구 5천 만 원) 또한 대상주택의 전용 면적, 대출한도, 소득구간별 대출 이율 등도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편, 일반주택 뿐 아니라,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표 11-19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자금 운용실적 (201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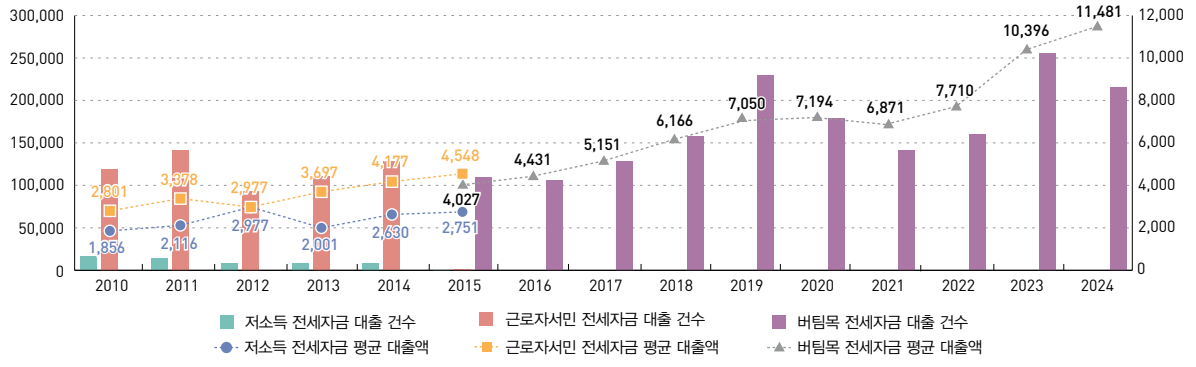
(단위: 건, 억 원, 만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저소득 전세 자금	대출 건수	8,864	8,330	229	-	-	-	-	-	-	-	-	-
	대출 총액(억 원)	1,774	2,191	63	-	-	-	-	-	-	-	-	-
	평균 대출액 (만 원)	2,001	2,630	2,751	-	-	-	-	-	-	-	-	-
근로자 서민 전세 자금	대출 건수	111,258	127,901	1,282	-	-	-	-	-	-	-	-	-
	대출 총액(억 원)	41,128	53,427	583	-	-	-	-	-	-	-	-	-
	평균 대출액 (만 원)	3,697	4,177	4,548	-	-	-	-	-	-	-	-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건수	-	-	109,360	106,016	128,419	157,809	230,002	179,182	141,994	159,935	255,651	215,937
	대출 총액(억 원)	-	-	44,043	46,980	66,151	97,301	162,146	128,911	97,562	123,309	265,772	247,914
	평균 대출액 (만 원)	-	-	4,027	4,431	5,151	6,166	7,050	7,194	6,871	7,710	10,396	11,481

주: 평균 대출액은 (대출총액/대출 건수×10,000원)로 계산된 수치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및 금액(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1-19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건수 및 평균 대출액 (2010~2024)

(단위: 건, 만 원)



주: 1) 평균 대출액은 (대출 총액/대출 건수x10,000원)로 계산된 수치임.
2) 저소득 전세자금 및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2015년 폐지되고, 버팀목 전세자금이 도입되었음.
3) 그래프에 표시된 값은 평균 대출액임.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및 금액(내부자료),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	1981	2024	1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및 금액 (내부자료)	-	2024	1년

11
대 표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Percentage of housing benefit claimants

지표 정의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급여 중 하나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급여를 제공하되, 자가수급자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서비스를 통한 현물급여를 제공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임차급여를 받는 임차가구 수 +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자가가구 수}}{\text{일반가구 수}} \times 100$

표 11-20 주거급여 지원 실적 (2014~2023)

(단위: 천 가구,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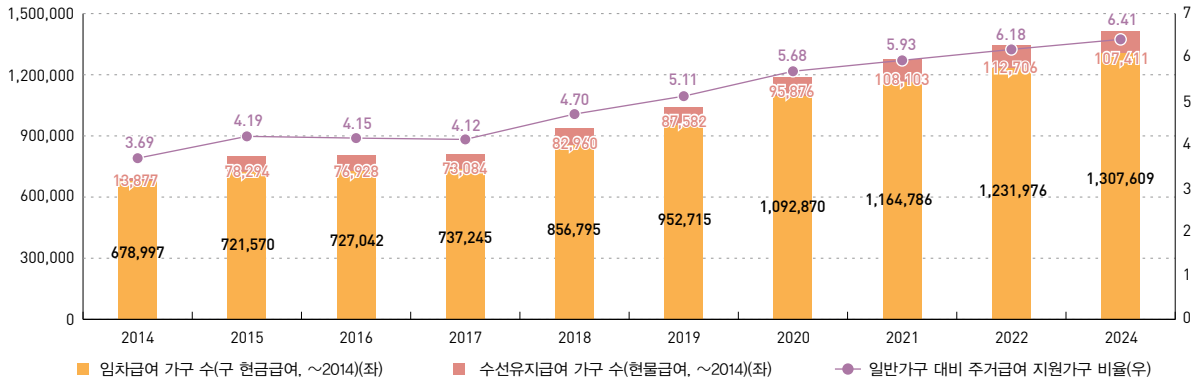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가구 수(A, 천 가구)		18,773	19,111	19,368	19,674	19,979	20,343	20,927	21,448	21,774	22,074
주거급여 지원가구 (가구)	합계(B=C+D)	692,874	799,864	803,970	810,329	939,155	1,040,297	1,188,746	1,272,889	1,344,673	1,415,020
	현금급여(C)	678,997	-	-	-	-	-	-	-	-	-
	현물급여(D)	13,877	-	-	-	-	-	-	-	-	-
	임차급여(C)	-	721,570	727,042	737,245	856,795	952,715	1,092,870	1,164,786	1,231,967	1,307,609
	수선유지급여 (D)	-	78,294 (9,792)	76,928 (21,207)	73,084 (18,308)	82,960 (17,011)	87,582 (22,264)	95,876 (18,519)	108,103 (18,801)	112,706 (19,607)	107,411 (19,500)
일반가구 대비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B/A)		3.69	4.19	4.15	4.12	4.70	5.11	5.68	5.93	6.18	6.41

주: 1) 2010~2014년 보건복지부, 2015년 이후는 국토교통부 자료, ()안은 연간수선완료 호수 실적
2) 2015년 이후 2022년 일반가구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5.7.1. 인출.)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내부자료), 2014.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1-20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및 지원가구 비율 (2014~2023)

(단위: 가구,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5.7.1. 인출.)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내부자료), 2014.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내부자료),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2010	2014	1년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2015	2024	1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24	1년

그림 11-21 점유형태별 수급가구 분포 변화 (2016~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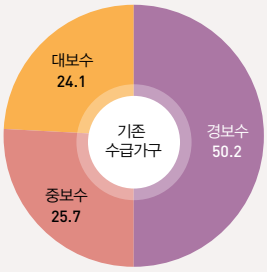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1-22 수급가구의 주거상태 (2024)

(단위: %)



주: 1) 경보수 : 설비 부분 교체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
2) 중보수 : 건축마감 불량 및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3)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12
대 표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Number of reverse mortgages guaranteed

지표 정의

주택연금대출 보증 건수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대출에 대한 보증 건수를 의미한다. 자산은 있으나 소득은 낮은(house-rich, income-poor)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이며 현재 만 55세 이상을 가입요건으로 한다.

측정 산식

- 매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한 주택연금 보증 건수

표 11-21 주택연금 보증 건수 및 보증공급액 (201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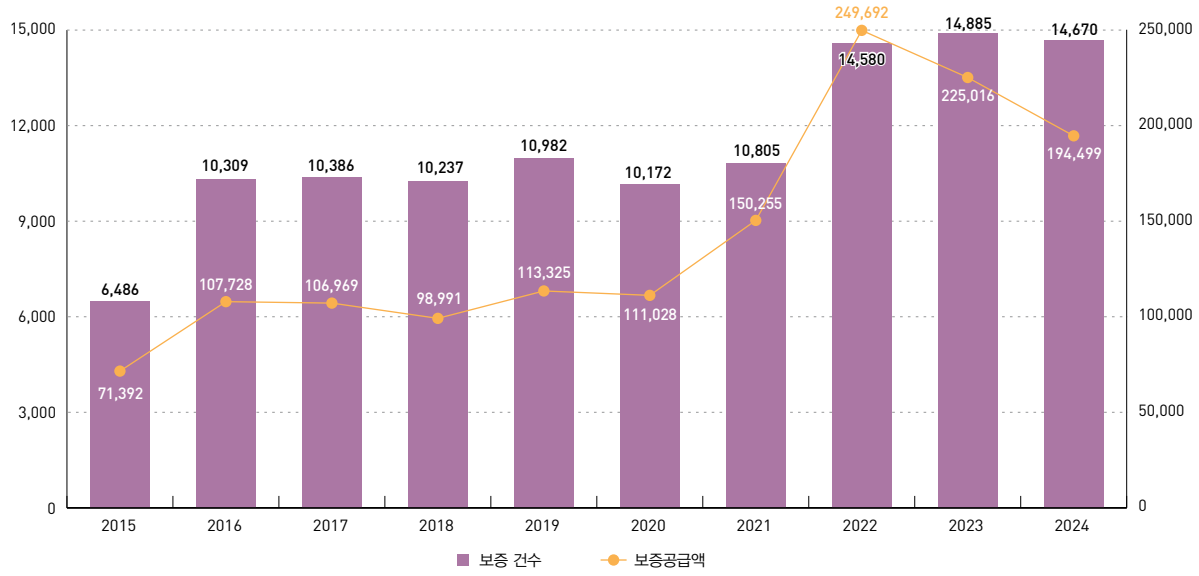
(단위: 건, 억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증 건수	6,486	10,309	10,386	10,237	10,982	10,172	10,805	14,580	14,885	14,670
보증공급액	71,392	107,728	106,969	98,991	113,325	111,028	150,255	249,692	225,016	194,499

주: 보증공급액은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예상보증공급액(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대출이자 + 보증료) 임.
자료: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통계시스템 – 지급유형별 주택연금 공급현황, 각 연도. (https://houstat.hf.go.kr에서 2025.7.1 인출.)

그림 11-23 주택연금 보증 건수 및 보증공급액 (2015~2024)

(단위: 건, 억 원)



주: 보증공급액은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예상보증공급액(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대출이자 + 보증료)임.
자료: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통계시스템 – 지급유형별 주택연금 공급현황, 각 연도. (https://houstat.hf.go.kr에서 2025.7.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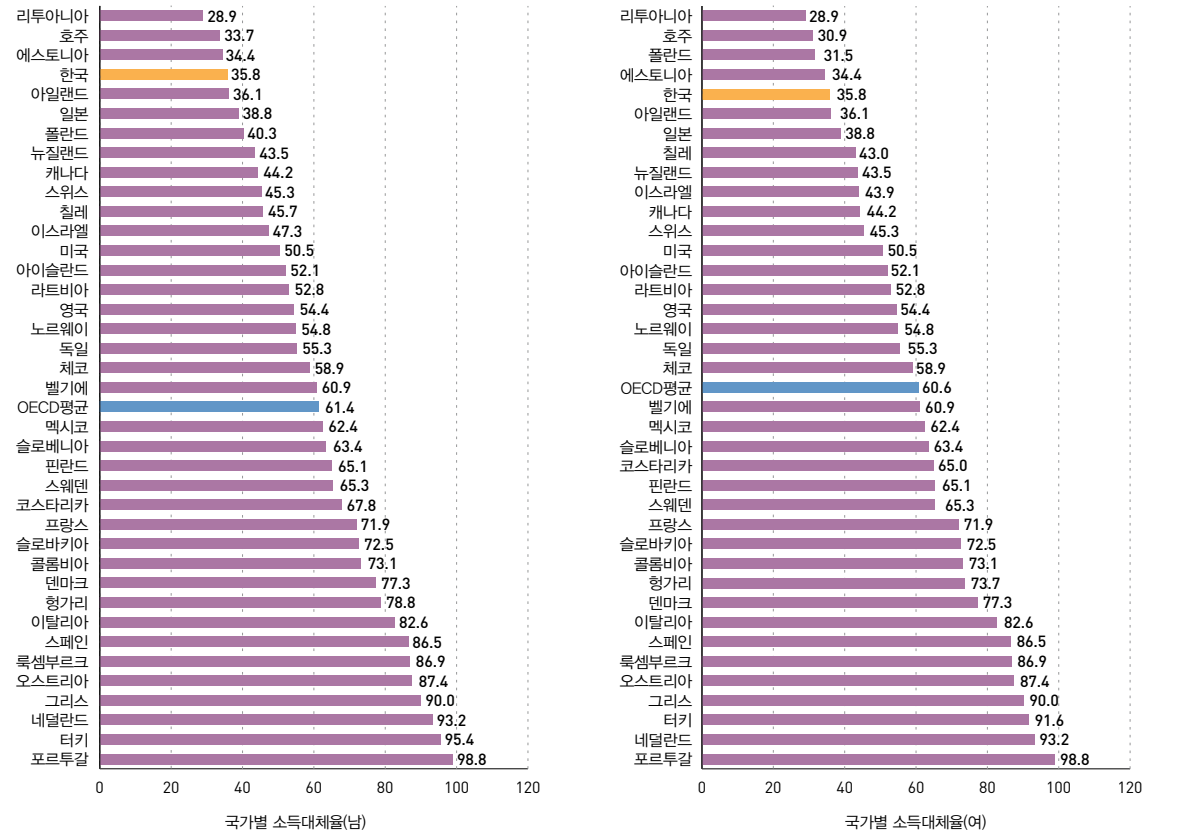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리서치 통계편	2007	2024	3개월

* 2017년까지는 1개월 주기, 2018년부터 분기(2, 5, 8, 11월 말)로 변경됨.

그림 11-24 국가별 소득대체율 (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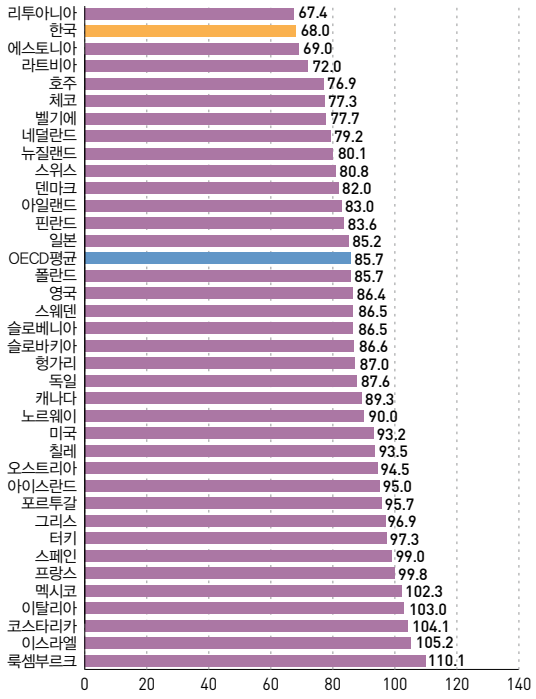


주: 공적연금의 순소득대체율(net pension replacement rates at 100% of average wage, Mandatory)

자료: OECD. Data-Explorer, Pensions at a Glance.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1-25 국가별 총 인구 소득 대비 고령인구의 소득비율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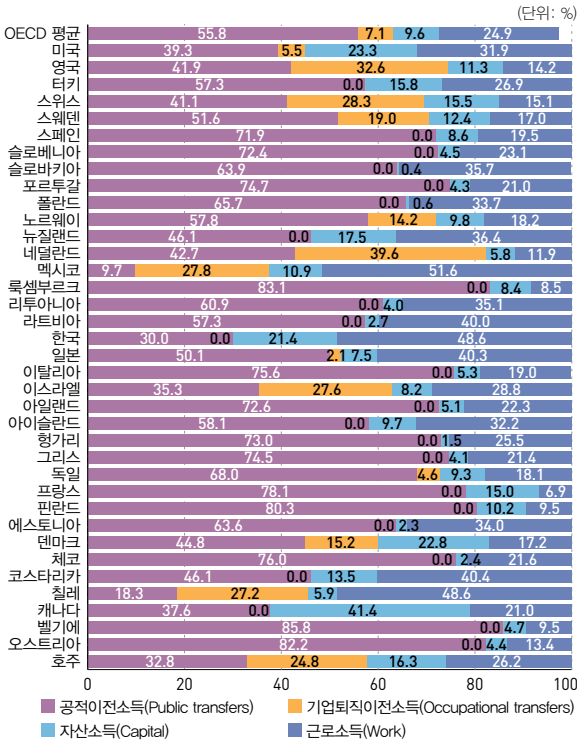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Data-Explorer, Pensions at a Glance: Income and poverty of older people. (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29. 인출.)

그림 11-26 국가별 고령인구의 소득구성비 (2020)

(단위: %)



자료: OECD. Data-Explorer, Pensions at a Glance: Income and poverty of older people. (http://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29. 인출.)

12

에너지

01 가전기기 보급률
02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03 도시가스 보급률
04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05 소득(소비지출) 대비 연료비 비율
06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07 에너지효율 개선
08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09 연료비 지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에너지 사용 유형	가전기기 보급률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도시가스 보급률	
에너지 소비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소득(소비지출) 대비 연료비 비율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에너지복지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연료비 지원	

01
대 표

가전기기 보급률

Penetration rate of home appliances

지표 정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의 가구당 평균 보유 대수를 의미한다.

• 가구의 가전기기 사용 정도와 전력 소비의 필요성을 결부시켜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보장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보급대수/가구, 가구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의 소득수준별 가구당 가전기기 보급률 조사에 기초한다.**

표 12-1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13~2022)

(단위: 대/가구)

구분	TV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컴퓨터	전기밥솥	청소기
2013	1.23	1.01	1.77	0.77	1.74	0.71	0.80	0.89	0.85
2014	1.19	1.01	1.74	0.76	1.72	0.69	0.75	0.88	0.85
2015	1.19	1.00	1.65	0.71	1.68	0.66	0.67	0.89	0.77
2016	1.17	1.01	2.08	0.81	1.72	0.69	0.57	0.85	0.73
2017	1.17	1.02	1.77	0.92	1.75	0.71	0.63	0.89	0.78
2018	1.08	0.98	1.43	0.98	1.67	0.65	0.53	0.89	0.74
2019	1.04	0.93	1.36	0.93	1.57	0.71	0.50	0.83	0.71
2020	1.02	0.94	1.31	0.94	1.51	0.58	0.54	0.82	0.71
2021	1.01	0.94	1.34	0.92	1.53	0.61	0.41	0.80	0.71
2022	1.20	1.05	1.47	1.04	1.59	0.57	0.45	0.78	0.71

주: 2015년 가전기기 보급률은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에 대한 가중치 조정으로 다소 낮게 추정됨. 냉장고 보급률은 김치냉장고를 포함한 수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가구 에너지 패널조사, 각 연도.

표 12-2 소득구간별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22)

(단위: 대/가구)

구분	TV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컴퓨터	전기밥솥	청소기
200만 원 미만	1.21	0.96	1.63	0.60	1.31	0.91	0.16	0.80	0.53
200~400만 원	1.15	1.03	1.52	0.50	1.38	1.00	0.38	0.76	0.68
400~600만 원	1.21	1.10	1.61	0.60	1.57	1.12	0.63	0.79	0.82
600만 원 이상	1.26	1.15	1.63	0.61	1.72	1.17	0.74	0.77	0.87

주: 냉장고 보급률은 김치냉장고를 포함한 수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년(2022년 기준, 13차) 가구 에너지 패널조사, 2025.

표 12-3 소득구간별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22)

(단위: 대/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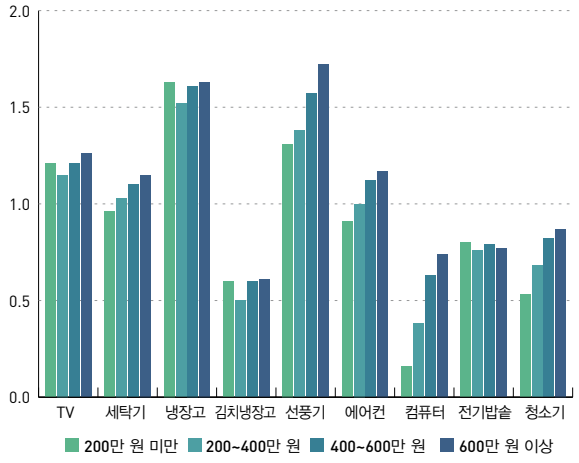
구분	TV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컴퓨터	전기밥솥	청소기
200만 원 미만	1.06	0.93	1.46	0.59	1.20	0.90	0.13	0.74	0.48
200~400만 원	0.99	1.01	1.34	0.49	1.22	1.02	0.41	0.75	0.69
400~600만 원	1.04	1.08	1.41	0.57	1.46	1.16	0.66	0.77	0.82
600만 원 이상	1.09	1.18	1.52	0.66	1.67	1.21	0.77	0.71	0.87

주: 냉장고 보급률은 김치냉장고를 포함한 수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년(2022년 기준, 12차) 가구 에너지 패널조사, 2025.

그림 12-1 소득구간별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22)

(단위: 대/가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년(2022년 기준, 13차) 가구 에너지 패널조사, 2025.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가구 에너지 패널조사	2011	2022	1년

02
대 표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Distribution of households by type of heating facility

지표 정의

난방설비는 크게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으로 구분된다.

• 가구의 에너지원별 소비실태를 파악하고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 수립에 활용가능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 **난방시설(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별 가구 수, 인구주택총조사의 난방시설 조사에 기초한다.**

표 12-4 거처의 종류 및 난방시설별 가구 (2020)

(단위: 천 가구, %)

구분	난방 시설계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							
				소계	도시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화목 보일러	기타
계	20,927 (100.0)	633 (3.0)	3,172 (15.2)	17,122 (81.8)	13,939 (66.6)	1,849 (8.8)	502 (2.4)	559 (2.7)	82 (0.4)	111 (0.5)	80 (0.4)
주택	19,842 (100.0)	515 (2.6)	3,005 (15.1)	16,321 (82.3)	13,392 (67.5)	1,753 (8.8)	475 (2.4)	466 (2.4)	76 (0.4)	104 (0.5)	55 (0.3)
단독주택	6,352 (100.0)	0 (0.0)	0 (0.0)	6,352 (100.0)	3,828 (60.3)	1,619 (25.5)	251 (4.0)	427 (6.7)	74 (1.2)	102 (1.6)	51 (0.8)
아파트	10,782 (100.0)	505 (4.7)	2,972 (27.6)	7,306 (67.8)	7,147 (66.3)	31 (0.3)	125 (1.2)	3 (0.0)	0 (0.0)	0 (0.0)	0 (0.0)
연립주택	442 (100.0)	2 (0.5)	28 (6.4)	412 (93.1)	360 (81.5)	20 (4.5)	30 (6.8)	1 (0.3)	0 (0.1)	0 (0.0)	0 (0.0)
다세대주택	1,945 (100.0)	2 (0.1)	3 (0.2)	1,940 (99.7)	1,848 (95.0)	35 (1.8)	50 (2.6)	7 (0.3)	0 (0.0)	0 (0.0)	0 (0.0)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320 (100.0)	6 (2.0)	2 (0.7)	312 (97.3)	208 (65.0)	49 (15.1)	19 (6.0)	29 (8.9)	2 (0.5)	2 (0.5)	4 (1.1)
주택 이외의 거처	1,085 (100.0)	117 (10.8)	166 (15.3)	802 (73.9)	547 (50.4)	96 (8.8)	27 (2.5)	93 (8.6)	6 (0.6)	7 (0.7)	25 (2.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거처 종류의 난방시설 구성비를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0. (http://kosis.kr에서 2023.05.0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 방식)	1960	2020	5년

참고문헌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표 12-5 연도별 · 지역별 ·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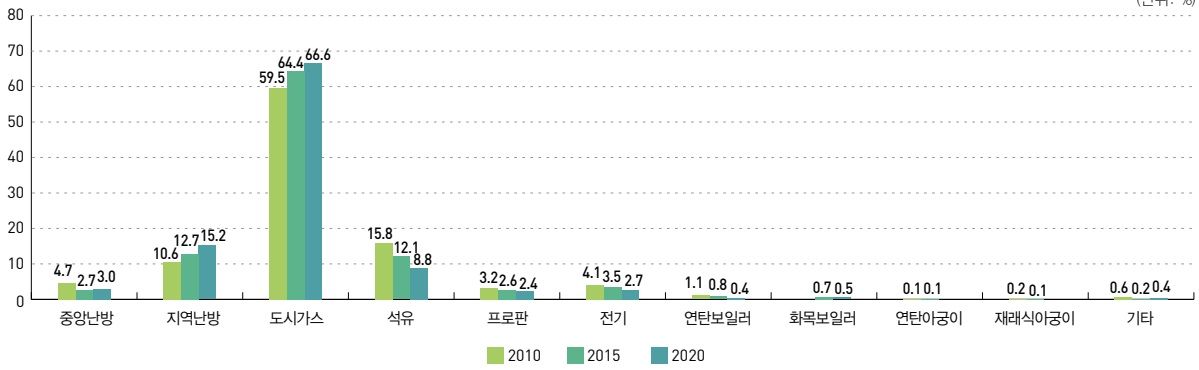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난방 시설계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									
					소계	도시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화목 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전국	2010	100.0	4.7	10.6	84.7	59.5	15.8	3.2	4.1	1.1	-	0.1	0.2	0.6
	2015	100.0	2.7	12.7	84.6	64.4	12.1	2.6	3.5	0.8	0.7	0.1	0.1	0.2
	2020	100.0	3.0	15.2	81.8	66.6	8.8	2.4	2.7	0.4	0.5	-	-	0.4
동부	2010	100.0	5.7	12.4	81.9	67.8	9.3	1.9	2.1	0.5	-	0.0	0.0	0.2
	2015	100.0	3.3	15.1	81.6	71.9	5.9	1.7	1.5	0.3	0.1	0.0	0.0	0.1
	2020	100.0	3.6	18.0	78.4	72.5	3.1	1.3	1.1	0.2	0.0	-	-	0.2
읍부	2010	100.0	0.9	4.1	95.0	41.3	30.4	11.4	7.8	2.6	-	0.2	0.3	1.1
	2015	100.0	0.7	4.4	94.9	51.6	24.6	7.8	7.0	2.0	1.2	0.1	0.2	0.4
	2020	100.0	0.7	5.7	93.6	62.1	17.7	6.5	5.0	0.8	0.8	-	-	0.6
면부	2010	100.0	0.3	2.0	97.7	10.2	54.8	6.0	16.3	4.8	-	0.4	1.7	3.5
	2015	100.0	0.1	0.3	99.6	15.2	51.2	5.8	16.3	3.8	5.4	0.4	0.8	0.8
	2020	100.0	0.5	0.7	98.8	21.1	48.1	7.9	13.8	1.8	4.3	-	-	1.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08. 인출)

그림 12-2 연도별 ·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변화 (2010~2020)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08. 인출)

표 12-6 표본가구의 난방연료별 분포 (2022)

(단위: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탄	0.5	0.1	0.0	0.6	0.3	0.5	0.0	0.0	0.0	0.0	3.2	0.9	1.0	0.7	0.0	2.7	0.2	0.8
등유	10.4	0.0	5.0	6.8	2.5	5.9	3.7	1.0	15.1	2.3	22.8	20.8	23.8	19.5	31.8	25.6	20.6	42.9
프로판	2.3	0.0	0.7	0.6	0.0	0.0	0.8	0.0	1.1	0.2	6.0	2.7	5.4	1.1	6.4	3.0	7.4	25.6
도시가스	68.6	84.9	80.9	76.2	70.9	90.0	83.4	95.9	30.1	62.2	56.4	56.6	58.8	72.6	55.8	58.7	50.1	22.6
지역난방	12.8	14.0	7.5	12.9	24.9	1.8	8.3	0.0	34.4	30.9	0.0	11.3	1.7	0.4	0.4	2.1	6.7	0.0
전기	4.9	1.0	5.9	2.9	1.1	1.4	3.7	3.1	16.1	3.5	10.8	6.8	7.8	5.4	4.5	6.6	14.3	8.3
기타	0.5	0.0	0.0	0.0	0.3	0.5	0.0	0.0	3.2	0.8	0.8	0.9	1.4	0.4	1.1	1.2	0.7	0.0

주: 기타는 실제 주로 이용하는 설비로 재래식 아궁이, 화목보일러, 태양열, 중앙난방(BC유, 정제유), 또는 없음으로 응답한 가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가구 에너지 패널조사(http://www.kesis.net에서 2025.6.26. 인출)

03
대 표

도시가스 보급률

Penetration rate of city gas

지표 정의

총가구에서 도시가스를 난방용 또는 취사용으로 공급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 해당 지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파악함으로써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측정 산식

$$\text{도시가스 보급률} = \frac{\text{도시가스 수용 가구 수}}{\text{총 가구 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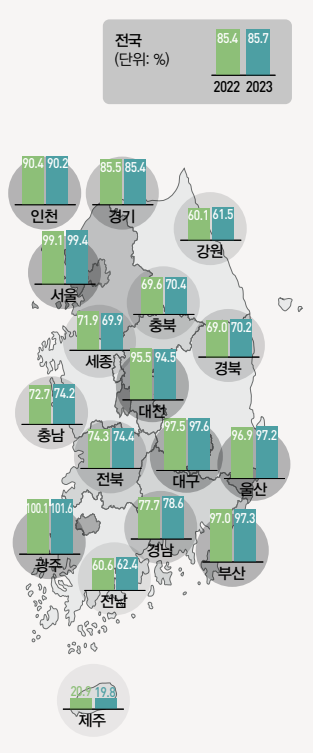
표 12-7 연도별 ·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추이 (2003~2023)

(단위: %)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3	64.1	88.9	45.7	53.6	83.3	61.3	66.4	55.8	-	72.6	31.0	39.5	20.2	51.8	39.9	37.1	42.7	-
2004	65.5	89.4	49.6	57.6	85.4	63.4	67.8	61.2	-	73.9	33.1	41.0	21.9	46.5	41.0	41.2	44.1	-
2005	65.6	88.7	53.1	59.9	85.9	66.4	68.8	66.7	-	75.1	35.0	42.2	24.9	49.6	37.3	42.7	44.8	0.7
2006	67.1	87.4	56.6	66.5	85.3	69.4	76.4	69.1	-	75.2	37.2	46.6	29.0	52.8	39.3	45.9	46.8	2.3
2007	68.3	86.9	61.2	65.9	85.8	73.4	79.8	70.3	-	75.0	39.2	50.4	32.0	56.2	40.5	50.7	48.2	2.5
2008	69.8	86.8	65.6	70.1	86.8	80.6	83.4	75.7	-	76.4	39.2	45.5	35.8	59.7	42.9	51.4	51.8	2.6
2009	71.2	87.5	68.6	73.1	88.0	84.8	85.9	79.0	-	77.5	42.6	48.8	39.1	53.9	45.8	51.7	54.5	3.0
2010	72.2	89.6	69.4	74.9	88.9	87.6	87.3	80.9	-	79.1	39.5	51.1	41.7	54.1	48.7	46.8	56.3	4.3
2011	75.0	92.3	72.6	77.8	91.5	91.2	90.7	83.8	-	81.2	48.0	53.4	45.3	58.1	50.2	48.9	58.4	5.6
2012	75.8	92.0	74.8	80.1	91.0	92.4	91.0	85.7	-	82.1	49.4	55.0	48.4	58.4	46.6	49.6	57.1	6.2
2013	78.6	95.4	79.8	84.6	89.6	96.6	92.8	87.8	52.5	85.7	49.7	59.1	52.2	62.1	45.1	53.8	61.8	9.3
2014	79.4	95.6	82.9	87.5	90.4	99.7	93.4	89.2	72.2	85.5	46.2	61.8	54.8	64.3	47.0	56.1	63.7	10.1
2015	80.8	96.6	85.4	90.7	91.2	95.8	94.1	90.7	79.1	86.3	47.1	63.5	57.7	66.1	48.4	59.1	66.4	11.6
2016	82.0	98.0	87.6	94.0	92.0	97.6	94.4	91.8	79.3	87.0	47.8	62.9	61.2	68.0	49.8	61.6	67.4	12.6
2017	83.1	98.6	89.9	95.7	92.8	99.3	94.6	93.2	81.4	87.9	49.7	65.6	64.5	69.0	51.3	63.7	71.8	9.2
2018	84.4	98.2	92.3	96.4	92.9	99.9	94.8	93.9	81.0	88.1	52.5	66.8	67.3	70.0	53.4	65.9	75.3	14.0
2019	85.0	98.2	94.8	97.1	92.5	100.2	95.1	95.0	80.1	87.7	54.0	67.5	68.8	71.0	55.6	66.9	78.3	14.3
2020	84.7	97.6	95.5	97.3	91.1	99.7	95.3	95.9	76.9	86.0	55.5	68.2	70.0	71.8	57.1	67.6	79.0	15.1
2021	84.7	98.5	96.8	97.4	90.6	100.0	95.4	96.2	72.9	84.9	53.6	69.1	70.9	73.2	58.8	68.6	79.2	16.8
2022	85.4	99.1	97.0	97.5	90.4	101.1	95.5	96.9	71.3	85.5	60.1	69.6	72.7	74.3	60.6	69.0	77.7	20.9
2023	85.7	99.4	97.3	97.6	90.2	101.6	94.5	97.2	69.9	85.4	61.5	70.4	74.2	74.4	62.4	70.2	78.6	19.8

자료: 통계청, 도시가스 보급률(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061&conn_path=I3에서 2025.6.23. 인출)

그림 12-3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변화 (2022년 대비 2023년)



자료: 통계청, 도시가스 보급률(시도)
(http://kosis/kr에서 2025.6.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편람	1987	2023	1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1982	2023	1년

04
대 표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Fuel costs by income decile

지표 정의

연료비는 일반가구에서 조명, 냉난방 및 취사 등 일상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 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 소득분위별 연료비는 각 소득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 지출액을 의미하며,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보장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가구당 월평균 연료비 지출액,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및 지출 현황에 기초한다.**

유의사항 연료비에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에너지 가격 할인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가구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표 12-8 분기별 월평균 연료비 (2022~2024)

(단위: 원)

구분	2022				2023				202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료비	150,502	89,055	78,816	98,167	186,518	99,598	92,968	109,752	186,834	106,537	100,247	114,087

주: 1인 이상 비농림어가, 전국, 명목가격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5.6.23. 인출)

표 12-9 소득분위별 월평균 연료비 (201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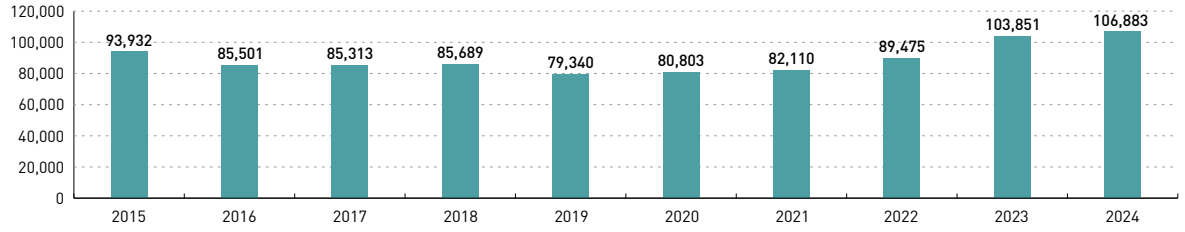
(단위: 원)

소득분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분위	50,493	49,088	58,246	54,946	52,480	52,325	55,446	63,044	71,983	70,466
2분위	67,429	59,155	60,633	62,518	60,615	62,511	64,132	71,931	79,705	80,889
3분위	76,388	73,369	72,414	69,004	67,003	67,967	68,759	72,853	86,546	87,244
4분위	84,868	78,089	77,993	76,831	70,649	68,602	71,697	73,951	90,321	92,873
5분위	95,731	84,637	78,293	83,547	74,523	77,571	78,853	84,269	101,984	103,124
6분위	99,906	92,663	87,906	86,526	84,169	84,563	83,873	92,871	104,176	107,419
7분위	108,294	95,851	92,951	96,096	87,906	87,660	87,619	97,573	114,742	117,473
8분위	111,216	101,038	100,653	101,189	91,250	95,552	94,821	105,068	118,501	128,505
9분위	117,281	104,987	103,047	107,179	97,888	99,345	105,310	111,333	129,164	134,814
10분위	127,669	116,052	120,946	119,022	106,898	111,896	110,525	121,840	141,340	145,970
전체 평균	93,932	85,501	85,313	85,689	79,340	80,803	82,110	89,475	103,851	106,883

주: 1) 2016년 이전(1인 이상, 비농림어가), 2017년 이후(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
2) 가계동향조사 개편사항을 고려하여 2016년 이전, 2017~2018년, 2019년 이후의 시계열 비교시 유의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5.6.23. 인출)

그림 12-4 월평균 연료비 지출액 (2015~2024)

(단위: 원)



주: 1) 2016년 이전(1인 이상, 비농림어가), 2017년 이후(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
2) 가계동향조사 개편사항을 고려하여 2016년 이전, 2017~2018년, 2019년 이후의 시계열 비교시 유의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5.6.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24	분기, 1년

참고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05
대 표

소득(소비지출) 대비 연료비 비율

Fuel cost as percentage of income, by income decile

지표 정의

연료비/소득(소비지출) 비율은 소득 또는 총 소비지출에서 연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득(소비지출) 비율은 각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 연료비/소득(소비지출) 비율을 의미하며, 가구의 에너지 비용부담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국민에게 적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보장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월평균 연료비}}{\text{월평균 경상소득(소비지출)}} \times 100$,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및 지출 현황에 기초한다.

유의사항 2017~2018년 가계동향조사는 지출과 소득부문이 분리되어 재설계되었으며, 지출부문은 연간통계로 개편되었다. 2019년 이후 다시 소득과 지출부문이 통합되어 분기통계로 개편되었다. 또한 연료비에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에너지 가격 할인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가구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표 12-10 분기별 연료비/소득 비율 (202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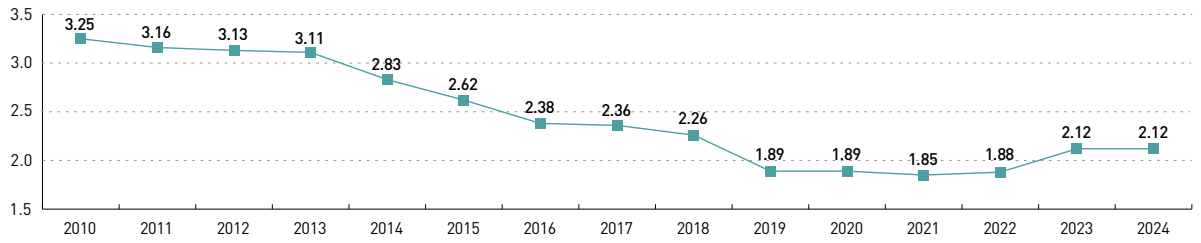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분위	15.5	7.9	5.2	8.2	14.0	7.6	6.1	10.1	17.7	8.6	6.5	9.0	14.9	8.2	6.7	8.5
10분위	1.4	0.8	0.7	0.9	1.3	0.9	0.8	0.9	1.5	1.0	0.9	1.0	1.6	1.0	0.9	1.0
전체 평균	2.9	1.6	1.3	1.7	2.7	1.6	1.4	1.8	3.2	1.8	1.5	1.9	3.2	1.8	1.6	1.9

주: 1) 2016년 이전(1인 이상, 비농림어가), 2017년 이후(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
2) 가계동향조사 개편사항을 고려하여 2016년 이전, 2017~2018년, 2019년 이후의 시계열 비교시 유의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5.6.26. 인출)

그림 12-5 연료비/소득 비율 (2010~2024)

(단위: %)



주: 1) 2016년 이전(1인 이상, 비농림어가), 2017년 이후(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
2) 가계동향조사 개편사항을 고려하여 2016년 이전, 2017~2018년, 2019년 이후의 시계열 비교시 유의
3) 2017-2024년 경상소득은 분기별 데이터를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사용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26. 인출)

12 에너지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24	분기, 1년

참고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표 12-11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비지출 비율 (2015~2024)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분위	8.3	7.3	5.3	5.2	6.0	5.8	5.4	6.0	6.5	6.2
2분위	7.2	6.6	5.1	5.0	5.2	5.2	5.0	5.2	5.6	5.5
3분위	5.9	5.8	4.4	4.3	4.2	4.4	4.3	4.3	5.1	5.0
4분위	5.0	4.9	4.0	4.0	4.0	3.9	4.0	3.8	4.5	4.5
5분위	4.8	4.4	3.5	3.6	3.5	3.8	3.7	3.7	4.4	4.2
6분위	4.4	4.1	3.4	3.4	3.3	3.6	3.5	3.6	3.9	3.7
7분위	4.1	3.7	3.2	3.4	3.1	3.3	3.1	3.2	3.5	3.5
8분위	3.7	3.5	3.1	3.1	2.9	3.1	2.9	3.1	3.2	3.3
9분위	3.5	3.2	2.7	2.8	2.7	2.7	2.8	2.9	3.1	3.1
10분위	3.0	2.7	2.5	2.5	2.2	2.4	2.3	2.4	2.5	2.6
전체 평균	4.3	3.9	3.3	3.4	3.2	3.4	3.3	3.4	3.7	3.7

주: 1) 2016년 이전(1인 이상, 비농림어가), 2017년 이후(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
2) 가계동향조사 개편사항을 고려하여 2016년 이전, 2017~2018년, 2019년 이후의 시계열 비교시 유의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6.26. 인출)

표 12-12 가구주 연령별 연료비/소득 비율 (2015~2024)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39세 이하	2.3	2.1	1.7	1.7	1.6	1.6	1.6	1.6	1.8	1.8
40~49세	2.3	2.1	1.9	1.8	1.7	1.7	1.6	1.6	1.8	1.9
50~59세	2.4	2.1	2.1	2.0	1.7	1.7	1.7	1.8	1.9	1.9
60세 이상	4.0	3.6	4.2	3.9	2.7	2.7	2.5	2.6	2.9	2.9
전체 평균	2.6	2.4	2.4	2.3	1.9	1.9	1.9	1.9	2.1	2.1

주: 1) 2016년 이전(1인 이상, 비농림어가), 2017년 이후(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
2) 가계동향조사 개편사항을 고려하여 2016년 이전, 2017~2018년, 2019년 이후의 시계열 비교시 유의
3) 2017-2024년 경상소득은 분기별 데이터를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사용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1. 인출)

표 12-13 가구원 수별 연료비/소득 비율 (2015~2024)

(단위: %)

소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인	3.5	3.2	3.1	3.0	2.1	2.0	2.0	2.0	2.3	2.3
2인	3.0	2.7	2.8	2.7	2.3	2.2	2.1	2.2	2.5	2.4
3인	2.4	2.2	2.2	2.1	1.7	1.8	1.7	1.8	1.9	1.9
4인	2.6	2.3	2.1	1.9	1.6	1.6	1.6	1.6	1.8	1.9
5인 이상	3.1	2.7	2.4	2.2	1.9	1.9	1.9	1.9	2.0	1.9
전체 평균	2.6	2.4	2.4	2.3	1.9	1.9	1.9	1.9	2.1	2.1

주: 1) 2016년 이전(1인 이상, 비농림어가), 2017년 이후(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
2) 가계동향조사 개편사항을 고려하여 2016년 이전, 2017~2018년, 2019년 이후의 시계열 비교시 유의
3) 2017-2024년 경상소득은 분기별 데이터를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사용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1. 인출)

06
대 표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Energy consumption per household

지표 정의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산업, 수송, 가정, 상업 및 공공기타) 중 가정부문에서 소비되는 가구당 전력과 취사 및 난방용(온수용 포함) 에너지 소비를 의미한다.

• 가구당 에너지 소비는 가구의 평균 에너지 소비 수준을 통해 적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가구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표 12-14 월평균소득별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2022)

(단위: Mcal)

구 분	200 만 원 미만	200-400 만 원 미만	400-600 만 원 미만	600 만 원 이상	합계
일반전기	2,322.2	2,615.6	2,923.1	3,048.6	2,698.3
심야전기	334.3	171.2	157.0	257.0	186.4
전기 소계	2,656.4	2,786.7	3,080.1	3,074.3	2,884.8
등유	1,293.8	453.6	254.9	236.6	570.8
프로판	510.9	481.4	169.0	192.0	352.3
기타 석유	-	-	1.6	-	0.5
석유 소계	1,804.7	935.0	425.5	428.6	923.6
도시가스	3,235.5	4,566.2	5,373.2	5,127.1	4,567.6
지역난방	366.2	559.1	878.8	1,485.1	741.5
연탄	118.5	104.7	13.4	26.3	69.1
기타	47.0	210.0	90.2	191.6	130.5
합계	8,228.3	9,161.7	9,861.2	10,378.0	9,317.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년(2022년 기준, 13차) 가구에너지패널조사, 2025.

표 12-15 가구원 수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2022)

(단위: Mcal)

구 분	1명	2명	3명	4명 이상	합계
일반전기	2,226.3	2,743.7	2,978.9	3,242.9	2,698.3
심야전기	244.8	203.5	138.9	96.0	186.4
전기 소계	2,471.1	2,947.3	3,117.8	3,338.9	2,884.8
등유	955.5	645.3	177.7	124.7	570.8
프로판	501.6	438.4	155.1	134.2	352.3
기타 석유	-	-	-	-	0.5
석유 소계	1,457.1	1,085.4	332.8	258.9	923.6
도시가스	3,486.0	4,526.8	5,554.6	5,675.7	4,567.6
지역난방	360.0	626.0	1,147.6	1,234.5	741,5
연탄	119.8	82.8	12.3	9.6	69.1
기타	18.2	223.4	168.4	157.3	130.5
합계	7,912.1	9,491.7	10,334.0	10,675.0	9,317.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년(2022년 기준, 13차) 가구에너지패널조사, 2025.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가구 에너지 패널조사	2011	2022	1년

표 12-16 주택면적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2022)

(단위: Mcal)

구 분	33㎡미만	33-66㎡미만	66-99㎡미만	99-132㎡미만	132㎡이상	합계
일반전기	1,957.1	2,391.6	2,924.7	3,177.6	3,679.6	2,698.3
심야전기	56.0	25.7	234.8	689.8	238.1	186.4
전기 소계	2,013.1	2,417.3	3,159.4	3,867.4	3,917.7	2,884.8
등유	463.9	329.8	809.6	612.9	442.6	570.8
프로판	130.9	315.3	436.1	315.4	167.6	352.3
기타 석유	-	1.3	-	-	-	0.5
석유 소계	594.9	646.3	1,245.7	928.3	610.3	923.6
도시가스	3,064.5	4,406.1	4,721.9	4,904.6	6,938.2	4,567.6
지역난방	585.8	602.2	751.4	1,149.7	1,625.3	741.5
연탄	10.6	83.5	67.8	40.7	117.7	69.1
기타	4.7	7.1	113.3	590.1	936.8	130.5
합계	6,273.5	8,162.5	10,060.0	11,481.0	14,146.0	9,317.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년(2022년 기준, 13차) 가구에너지패널조사, 2025.

표 12-17 주택종류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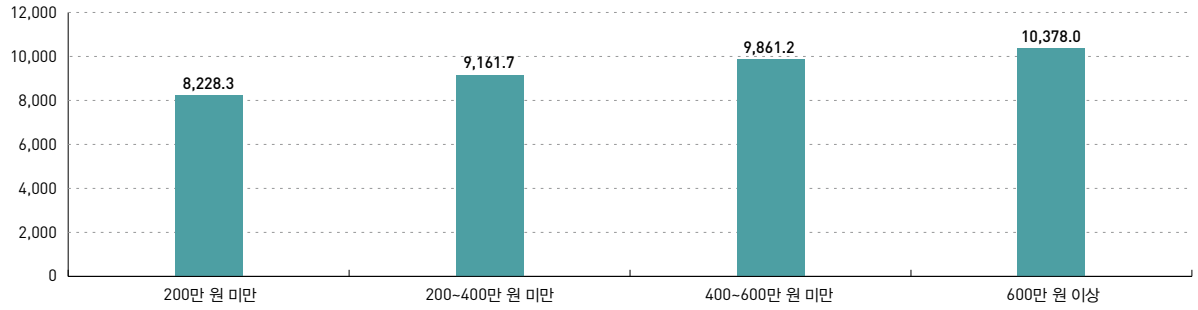
(단위: Mcal)

구 분	단독	다세대/연립	아파트	합계
일반전기	2,776.7	2,529.7	2,714.8	2,698.3
심야전기	611.0	49.0	-	186.4
전기 소계	3,387.7	2,578.7	2,714.8	2,884.8
등유	1,859.7	165.8	0.5	570.8
프로판	806.2	225.7	145.7	352.3
기타 석유	-	-	1.0	0.5
석유 소계	2,665.8	391.5	147.2	923.6
도시가스	4,084.3	5,735.8	4,420.5	4,567.6
지역난방	-	49.0	1,398.4	741.5
연탄	225.7	19.7	-	69.1
기타	289.1	245.2	1.9	130.5
합계	10,653.0	9,019.8	8,682.8	9,317.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년(2022년 기준, 13차) 가구에너지패널조사, 2025.

그림 12-6 월평균 소득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2022)

(단위: Mcal)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년(2022년 기준, 13차) 가구에너지패널조사, 2025.

07
대 표

에너지효율 개선

지표 정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총규모와 가구 수를 의미한다.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에너지 이용효율을 개선시켜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가구를 포함한다.

측정 산식

• **총지원액 및 지원 가구 수**

표 12-18 에너지 지원 사업 현황 (2017~2024)

(단위: 억 원,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담기관
효율개선	전력효율향상 (고효율 조명 보급)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총지원액	233	234	222	211	162	119	105	136	전력기금 (지자체)
			지원 가구 수	32,779	35,653	35,694	20,473	21,174	15,717	12,917	12,49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 주택 단열·창호 시공, 노후 보일러 및 에어컨 교체 보급 등 (24년 난방: 가구당 평균 243만원, 최대 330만원 한도 / 냉방: 가구당 벽걸이형 에어컨 1대)	총지원액	489	639	819	767	869	869	996	1,083	21년까지 에특회계, 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한국에너지재단)
			지원 가구 수	26,128	30,385	40,081	37,606	43,220	39,461	50,526	55,011	
			지원 시설 수	193	210	194	202	200	326	202	80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	2024	1년

08
대 표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지표 정의

에너지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할인 사업의 지원 내용과 가구 수를 의미한다.

• 에너지 가격 할인을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경감시켜 준다.

측정 산식

• **총지원액 및 지원 가구 수**

표 12-19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사업 현황 (2013~2021)

(단위: 억 원, 천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담기관
가격할인사업	전기요금 할인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상이자/유공자(16천 원/월, 여름철 2만 원),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10천 원/월, 여름철 12천 원), 차상위(8천 원/월, 여름철 10천 원), 복지시설(주택 30%) 등	총지원액	2,533	2,617	2,623	2,748	4,831	5,540	5,712	5,854	5,835	민간자금 (한국전력공사)
			지원 가구 수	2,275	2,328	2,360	2,477	2,809	3,296	3,397	3,515	3,646	
	가스요금 할인	장애인, 유공자,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 12,400원, 주거급여, 차상위 월평균 6,200원 교육급여, 차상위확인서 월평균 3,100원	총지원액	684	936	997	1,027	1,121	1,188	1,296	1,393	1,514	민간자금 (한국가스공사)
			지원 가구 수	768	865	926	1,039	1,163	1,266	1,359	1,504	1,610	
	열요금 감면	기본요금 전액 감면 (10천 원/월)	총지원액	48	56	59	62	65	67	71	78	83	민간자금 (지역난방공사)
			지원 가구 수	148	157	168	175	181	189	203	220	235	

주 : '16.12월 이후 변경, 상세내용은 아래의 표 12-21 참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복지 주요 통계, 2023.

표 12-20 지원대상별 전기요금 할인 현황 (2023)

(단위: 천 가구, 억 원)

구분	도입일	대상종별	할인내용(2016년)		호수 (천 가구)	할인액(억 원)	
			2016.11월까지	2016.12월 이후	2023	2022	2023
장애인	'04. 3	주택용	월 8천 원 한도	월 16천 원 한도 (여름철 2만 원 한도)	680	1,437	1,257
유공상이자	'04. 3	주택용	월 8천 원 한도		7	16	13
독립유공자	'05.12	주택용	월 8천 원 한도		7	15	13
기초생활 수급자	'05.12	주택용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8천 원 한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16천 원 (여름철 2만 원) 한도	1,037	1,663	1,692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4천 원 한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천 원 (여름철 12천 원) 한도	324	364	365
	'08. 1	심야	갑 31.4%, 을 20.0%	갑 31.4%, 을 20.0%	20	40	57
사회복지시설	'07. 1	주택용	21.6%	30.0%	92	805	1,001
		일반용	20.0%	30.0%			
	'08. 1	심야	갑 31.4%, 을 20.0%	갑 31.4%, 을 20.0%	18	141	187
차상위계층	'08. 7	주택용	월 2천 원 한도	월 8천 원 한도(여름철 1만 원 한도)	195	232	190
	'10. 8	심야	갑 29.7%, 을 18.0%	갑 29.7%, 을 18.0%	3	7	10
3자녀 이상 가구	'09. 8	주택용	20.0%(월 1만 2천 원 한도)	30.0% (월 16천 원 한도)	564	915	847
대가족	'07. 1	주택용	한 단계 낮은 요율(월 1만 2천 원)		289	328	297
출산가구	'16. 12	주택용	–		586	804	794
생명유지장치	'07. 8	주택용	한 단계 낮은 요율(301~600kWh)	30.0%	23	33	47
합계					3,845	6,800	6,770

자료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https://online.kepco.co.kr/PRM088D00에서 2025.07.0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내부자료)	-	2021	1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	2023	1년

09
대 표

연료비 지원

지표 정의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용 및 여름철 냉방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적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유도한다.

측정 산식

• **총지원액 및 지원 가구 수**

표 12-21 **연료비 지원사업 현황 (2018~2024)**

(단위: 억 원,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담기관
연료비 지원 사업	등유 바우처	(2024년 가구당 310천 원)	총지원액	32	28	25	25	20	17	16	10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가구 수	9,423	7,747	6,245	5,052	4,244	3,251	1,634	265	
	연탄쿠폰	(2024년 가구당 546천 원)	총지원액	221	183	252	293	283	236	239	235	에특회계 (한국광해 광업공단)
			지원 가구 수	63,712	58,791	54,670	49,743	46,051	41,337	42,398	41,562	
	에너지 바우처	(2024년 세대원 수에 따라 295천 원~701천 원)	총지원액	512	612	711	781	1,124	2,034	2,201	5,706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가구 수	545,930	565,498	641,780	660,861	776,691	1,132,911	1,224,702	1,257,93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2011	2024	1년

13

환경

01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02 주요 도시 소음도
03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04 GPD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05 상수도 보급률
06 하수도 보급률
07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08 환경성질환자 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환경상태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주요 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주요 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주요 도시 소음도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도시지역 인구당 녹지조성 면적
환경관리	GPD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환경예산 비율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하수도 설치율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환경 보건	환경성질환자 수	

01
대 표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Concentration level of particulate matter(PM-2.5) in major cities

지표 정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1㎥에 들어있는 미세먼지의 질량이다. 초미세먼지는 직경 2.5㎛ 이하의 먼지 입자를 말하며 PM-2.5이라 표기하고, 입자의 직경이 10.0㎛ 이하인 경우는 미세먼지라 부르고 PM-10이라 표기한다.

측정 산식

• 대기 1㎥에 들어있는 직경 2.5㎛ 이하의 먼지 입자(PM-2.5)의 질량

표 13-1 항목별 대기오염도 (2007~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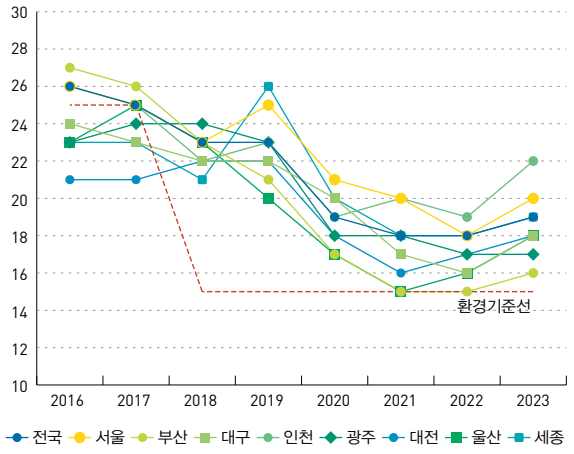
(단위: ppm, ㎍/㎥)

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SO_2 (ppm)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5 (0.020)	0.005 (0.020)	0.005 (0.020)	0.006 (0.020)	0.005 (0.020)	0.005 (0.020)	0.005 (0.020)	0.004 (0.020)	0.004 (0.020)	0.004 (0.020)	0.003 (0.020)	0.003 (0.020)	0.003 (0.020)	0.003 (0.020)
NO_2 (ppm)	0.026 (0.030)	0.026 (0.030)	0.025 (0.030)	0.025 (0.030)	0.024 (0.030)	0.023 (0.030)	0.024 (0.030)	0.024 (0.030)	0.023 (0.030)	0.023 (0.030)	0.022 (0.030)	0.020 (0.030)	0.018 (0.030)	0.016 (0.030)	0.015 (0.030)	0.014 (0.030)	0.014 (0.030)
O_3 (ppm)	0.022	0.023	0.024	0.023	0.024	0.025	0.026	0.027	0.027	0.027	0.029	0.027	0.030	0.030	0.032	0.032	0.033
CO (ppm)	0.6	0.6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4	0.4	0.4	0.4
PM-10 (㎍/㎥)	58 (50)	54 (50)	53 (50)	51 (50)	50 (50)	45 (50)	49 (50)	49 (50)	48 (50)	47 (50)	45 (50)	41 (50)	41 (50)	33 (50)	36 (50)	31 (50)	37 (50)
PM-2.5 (㎍/㎥)	-	-	-	-	-	-	-	-	26 (25)	26 (25)	25 (25)	23 (15)	23 (15)	19 (15)	18 (15)	18 (15)	19 (15)

주: 1) PM-2.5는 '15.1.1.부터 대기환경기준이 시행됨.
2) ( )는 연평균 환경기준치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https://www.airkorea.or.kr/web/detailViewDown?pMENU_NO=125에서 2025.6.30. 인출.)

그림 13-1 주요 도시 연도별 PM-2.5 농도 (2016~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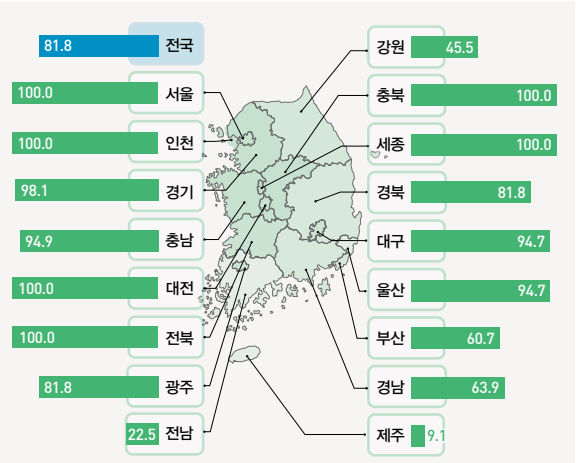
(단위: ㎍/㎥)



주 1) 전국 수치는 전체 측정망의 연평균 수치를 활용함.
2) 환경기준선은 2011년에 신설, 2015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2017년까지는 환경기준선이 25㎍/m^3였으나, 2018년도부터 15으로 변경됨.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https://www.airkorea.or.kr/web/detailViewDown?pMENU_NO=125에서 2025.6.30. 인출.)

그림 13-2 시도별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초과율 (2023)

(단위: %)



주: 각 시도별 측정소 중 초과 측정소/유효측정소 초과 비율의 값임.
자료: 환경부, 2023 대기환경연보, 2024. (https://www.airkorea.or.kr/web/detailViewDown?pMENU_NO=125에서 2025.6.3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대기오염도 현황	2015	2023	1개월

01-1
연 관

주요 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Concentration level of sulfur dioxide(SO_2) in major citie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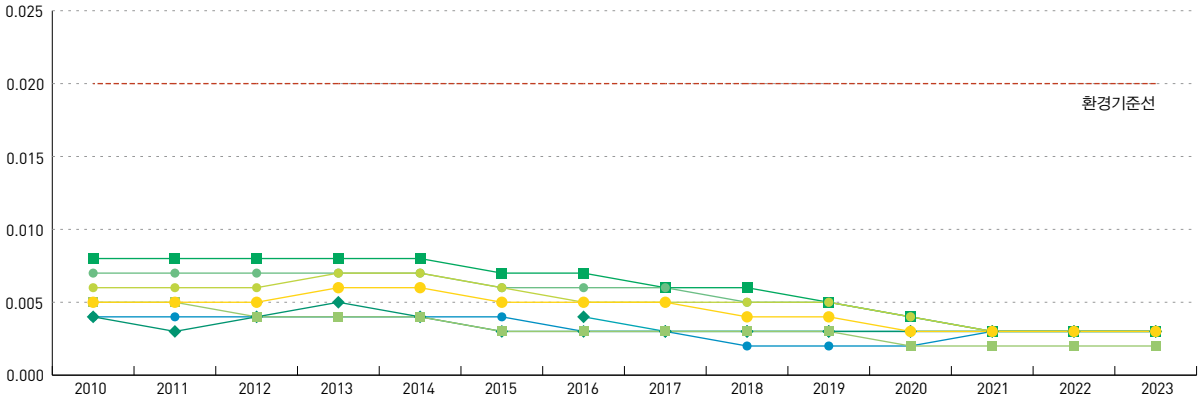
이산화황 오염도(ppm)는 대기 백만 리터(L)당 이산화황의 양이다.

측정 산식

- 대기 백만 리터에 들어있는 이산화황의 양(ppm, parts per million)

그림 13-3 연도별 주요 도시 이산화황(SO_2) 오염도 (2010~2023)

(단위: ppm)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https://www.airkorea.or.kr/web/detailViewDown?pMENU_NO=125에서 25.6.3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대기오염도 현황	1980	2023	1개월

01-2
연 관

주요 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Concentration level of nitrogen dioxide(NO_2) in major 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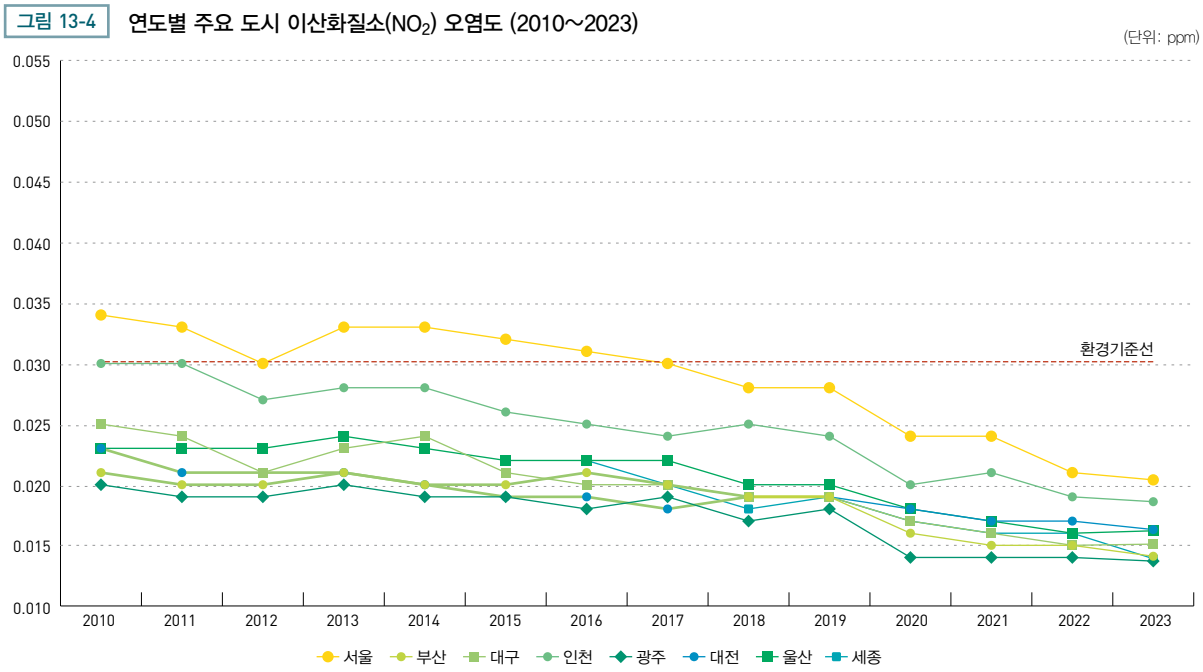
지표 정의

이산화질소 오염도(ppm)는 대기 백만 리터(L)에 들어있는 이산화질소의 양이다.

측정 산식

• 대기 백만 리터에 들어있는 이산화질소의 양(ppm, parts per million)

그림 13-4 연도별 주요 도시 이산화질소(NO_2) 오염도 (2010~2023)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https://www.airkorea.or.kr/web/detailViewDown?pMENU_NO=125에서 2025.6.3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대기오염도 현황	1980	2023	1년

02
대 표

주요 도시 소음도

Noise level in major citie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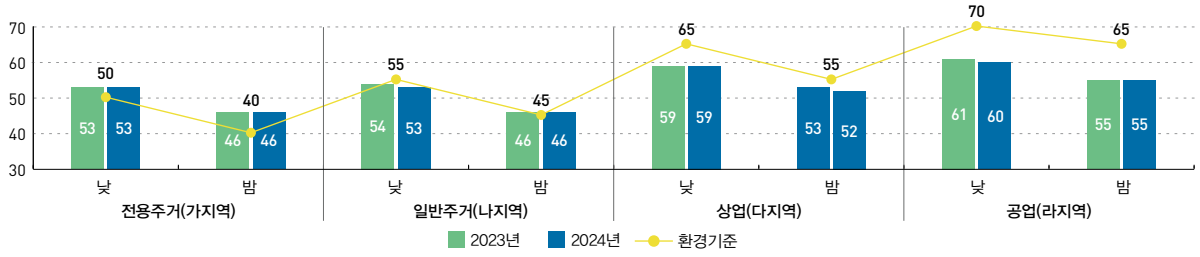
소음도는 소음의 크기를 뜻하며, 「소음 · 진동 관리법」 상 소음은 기계 · 기구 ·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측정 산식

- 소음도는 데시벨(dB)로 측정한다.
- 낮 시간대(06:00~22:00)에는 각 측정점에서 2시간 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 밤 시간대에는 낮 시간대에 측정한 지점에서 2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그림 13-5 환경기준 대비 평균 소음도-일반지역: 낮, 밤 (2023,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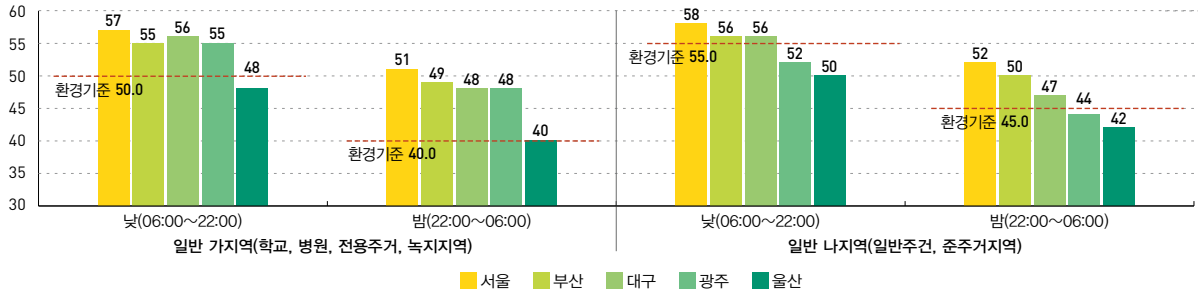
(단위: Leq dB(A))



자료: 환경부, 2024년도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결과, 2025. (https://www.noiseinfo.or.kr/notice/datadetail.do?boardNo=328에서 2025.6.30. 인출.)

그림 13-6 주요 도시 소음도 현황-일반지역: 낮, 밤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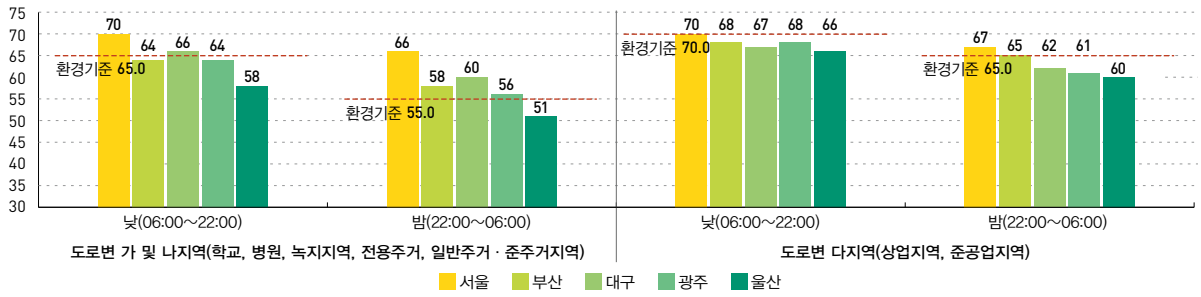
(단위: Leq dB(A))



자료: 환경부, 2024년도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결과, 2025. (https://www.noiseinfo.or.kr/notice/datadetail.do?boardNo=328에서 2025.6.30. 인출.)

그림 13-7 주요 도시 소음도 현황-도로변 지역: 낮, 밤 (2024)

(단위: Leq dB(A))



자료: 환경부, 2024년도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결과, 2025. (https://www.noiseinfo.or.kr/notice/datadetail.do?boardNo=328에서 2025.6.3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주요 도시 환경소음도 현황	2000	2024	분기

03
대 표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Per capita park space

지표 정의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도시지역 인구 대비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의미한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도시공원의 규모는 도시 환경의 쾌적한 정도를 나타내며, 시민의 휴양과 건강을 위한 생활공간으로서 의미도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도시공원 조성 면적}}{\text{도시 지역 인구}}$

표 13-2 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2006~2023)

(단위: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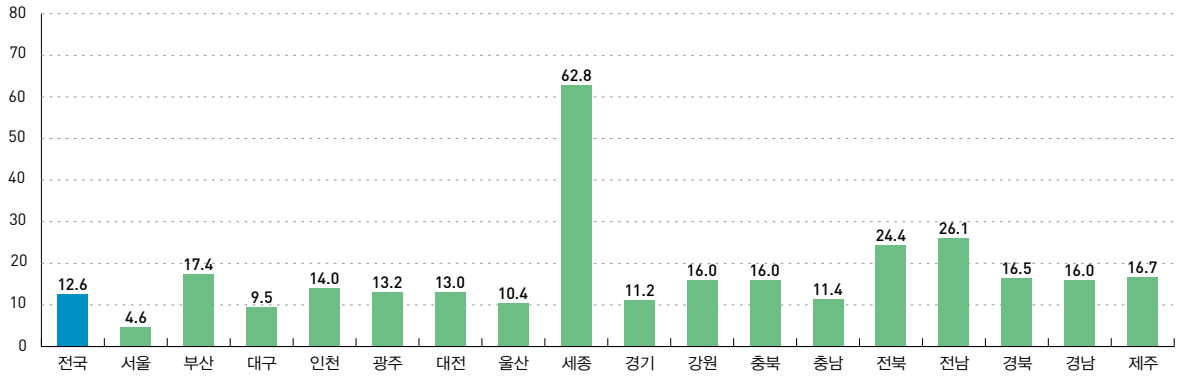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도시공원 결정 면적	1,141	1,190	1,284	1,112	1,089	1,008	1,020	1,005	989	934	942	924	927	904	699	709	691	703
1인당 도시공원 결정 면적(㎡/인)	25.8	26.7	28.6	24.6	23.7	21.8	22.0	21.5	21.0	19.8	19.8	19.4	19.5	17.4	13.4	14.9	14.6	14.8
도시공원 조성 면적	293	330	461	368	384	386	412	404	406	418	437	455	480	498	525	551	583	597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인)	6.6	7.4	10.3	8.1	8.4	8.3	8.9	8.6	8.6	8.8	9.2	9.6	10.1	10.4	11.0	11.6	12.3	12.6

주: 1) 도시공원: 도시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간
2) 1인당 도시공원면적 = 도시공원 조성 면적 ÷ 도시 지역 총인구
3) 조성 면적 = 결정 면적 – 미집행 면적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현황, 각 연도.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에서 2025.6.30. 인출.)

그림 13-8 시도별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2023)

(단위: ㎡/인)



주: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도시지역 인구로 나누어 계산함.

자료: 국토교통부, 2023 도시계획현황, 2024.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에서 2025.6.3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현황	2000	2023	1년

03-1
연 관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Number of city park per 10,000 city residents

지표 정의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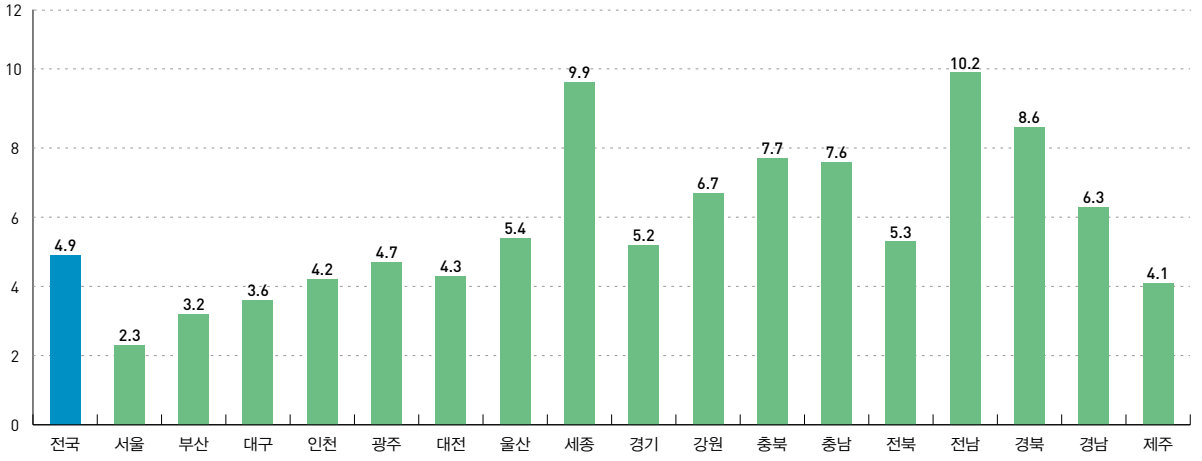
•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도시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도시공원 개소}}{\text{도시지역 인구}} \times 10{,}000$

그림 13-9 시도별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2023)

(단위: 개소/1만 명)



주: 1) 도시공원 수를 도시지역 인구로 나누어 계산함.
2) 결정 현황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조성 현황 기준과 차이가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2023 도시계획현황, 2024. (http://kosis.kr에서 2025.7.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현황	2006	2023	1년

03-2
연 관

도시지역 인구당 녹지조성 면적

Natural and artificial grasslands area per urban area population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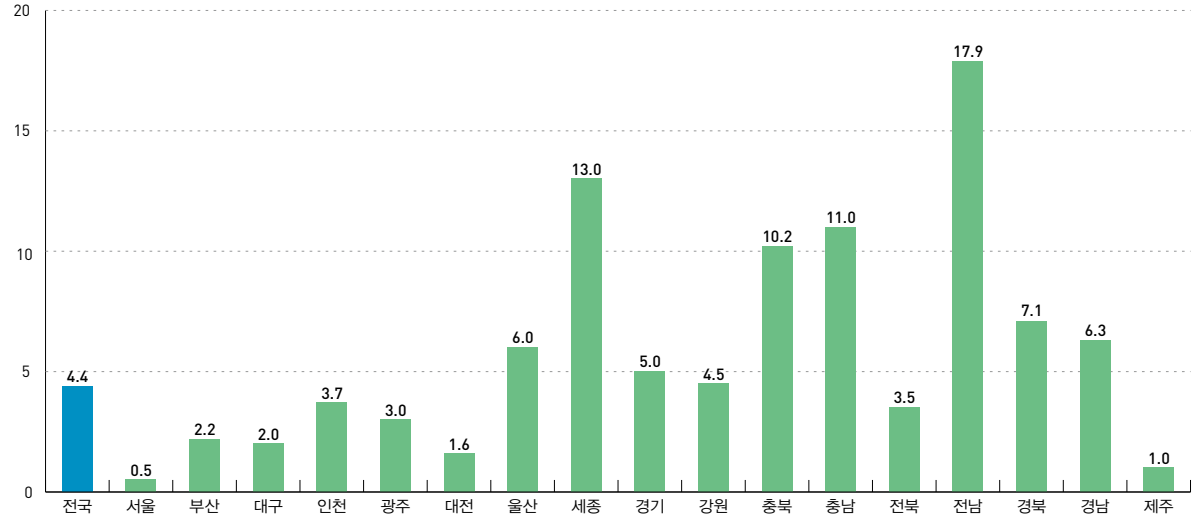
도시지역 인구 1인당 녹지조성 면적을 의미한다. 녹지란 도시공원과는 별개로 자연환경의 보전이나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녹지조성 면적}}{\text{도시지역 인구}}$

그림 13-10 시도별 도시지역 1인당 녹지조성 면적 (2023)

(단위: ㎡/인)



주: 1) 녹지 결정면적을 도시지역 인구로 나누어 계산함.
2) 결정현황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조성현황 기준과 차이가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2023 도시계획현황, 2024. (http://kosis.kr에서 2025.7.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현황	2006	2023	1년

04
대 표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s % of GDP

지표 정의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은 명목GDP에 대비한 국민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 금액의 비율이다. 환경보호지출은 환경보호를 위해 정부, 기업, 가계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말하며,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 지하수, 소음 · 진동, 생물다양성,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등의 9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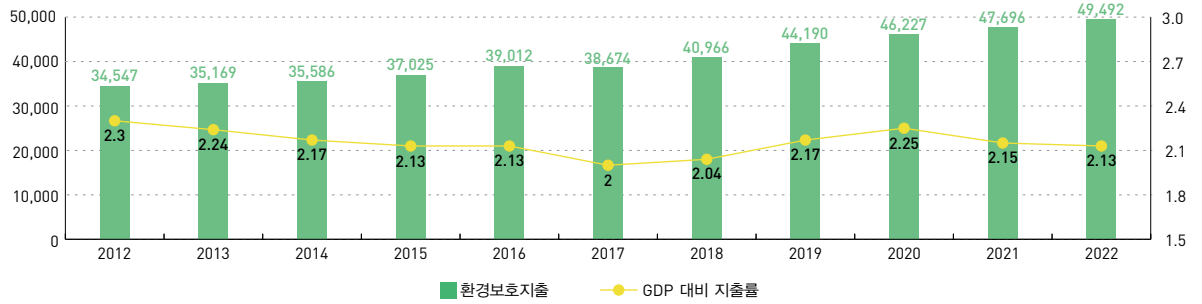
• 국민경제 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행위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환경보호 지출액}}{\text{명목 GDP}} \times 100$

그림 13-11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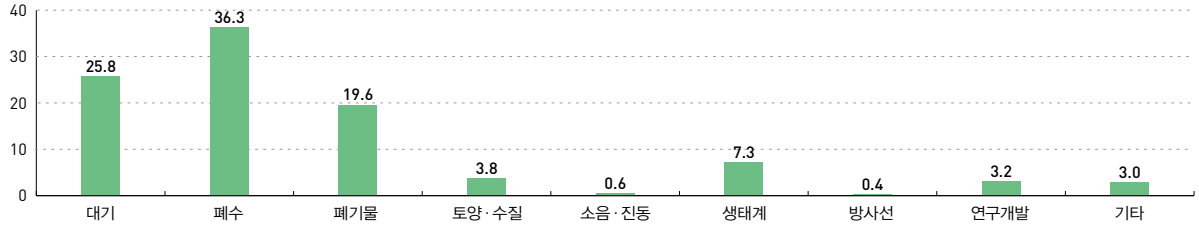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



주: 1) 국민환경보호지출(A표)
2)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 (환경보호지출액 ÷ 명목 GDP) × 100
자료: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각 연도. (https://www.index.go.kr에서 2025.7.7. 인출.)

그림 13-12 환경영역별 경제주체별 환경보호 지출 비중 (2022)

(단위: %)



주: 국민환경보호지출(A표)
자료: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202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27_0100001&conn_path=I3에서 2025.7.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2004	2022	1년

04-1
연 관

환경예산 비율

Budget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 % of government budget

지표 정의

환경예산 비율은 정부예산 중 환경분야 예산(=환경부 예산 + 다른 부처 환경 관련 예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환경분야 예산}}{\text{정부 예산}} \times 100$

표 13-3 환경예산 비율 (201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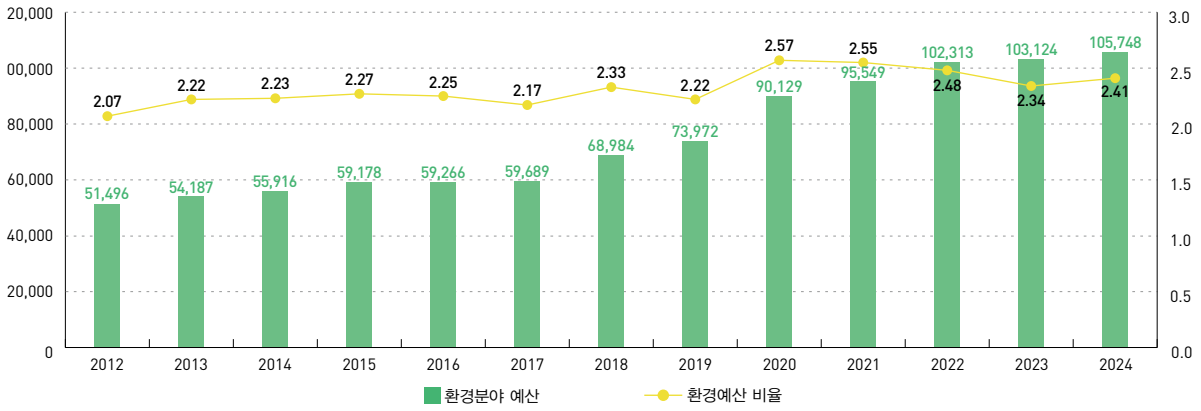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정부예산	2,436,433	2,507,885	2,601,465	2,639,243	2,746,699	2,962,367	3,289,199	3,511,186	3,750,382	4,130,228	4,410,676	4,382,607
환경분야 예산	54,187	55,916	59,178	59,266	59,689	68,984	73,972	90,129	95,549	102,313	103,124	105,748
환경부 예산	52,206	54,121	57,191	56,975	57,287	57,082	69,255	85,699	93,274	99,483	100,235	102,968
환경예산 비율	2.22	2.23	2.27	2.25	2.17	2.33	2.22	2.57	2.55	2.48	2.34	2.41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내부 자료). 각 연도.

그림 13-13 환경예산 비율 (2012~2024)

(단위: 억 원, %)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내부 자료).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3	2024	1년

05
대 표

상수도 보급률

Water supply rate

지표 정의

상수도 보급률은 수돗물의 보급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인구 중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급수 인구}}{\text{총인구}} \times 100$

표 13-4 지역별 상수도 보급률 (201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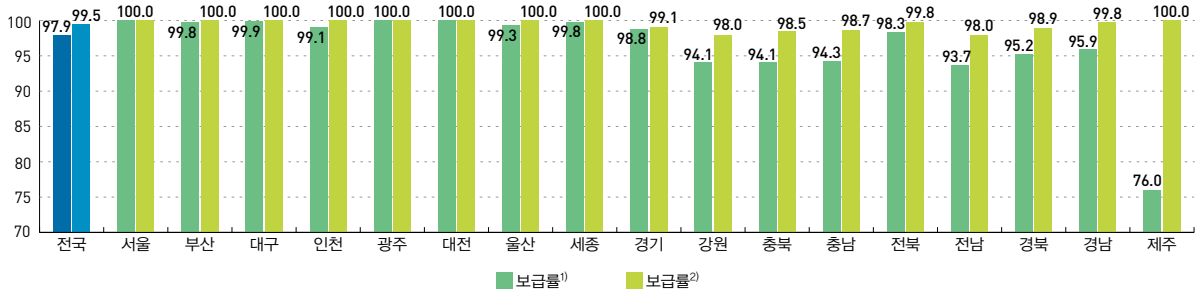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지역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보급률1 (%)[1]	전국	94.6	95.1	95.7	96.1	96.5	96.4	96.8	97.0	97.3	97.4	97.7	97.8	97.9
	특 · 광역시	99.6	99.6	99.6	99.7	99.7	99.6	99.7	99.7	99.7	99.7	99.8	99.8	99.8
	농어촌[3]	58.8	62.6	66.4	69.1	71.0	72.8	75.6	77.0	78.6	80.2	81.6	82.8	83.5
보급률2 (%)[2]	전국	97.9	98.1	98.5	98.6	98.8	98.9	99.1	99.2	99.3	99.3	99.4	99.4	99.5
	특 · 광역시	99.9	99.9	99.9	99.9	99.9	99.9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어촌	86.7	88.2	90.2	91.5	92.3	92.7	94.3	94.8	95.4	95.6	95.9	96.3	96.4

주: 1) 수도사업자에 의한 급수 인구를 이용한 보급률
2)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한 보급률
3) 농어촌 보급률은 면 지역 보급률을 의미함.
자료: 환경부, 상수도통계 각 연도. (https://www.me.go.kr에서 2025. 6. 30. 인출.)

그림 13-14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 (2023)

(단위: %)



주: 보급률[1]은 수도사업자에 의한 급수 인구를 이용한 보급률이며, 보급률[2]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한 보급률임.
자료: 환경부, 2023 상수도통계, 2024. (http://kosis.kr에서 2025.7.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상수도통계	1975	2023	1년

06
대 표

하수도 보급률

Total public sewerage(% of resident population connected to wastewater collecting system)

지표 정의

하수도 보급률은 총인구 중 하수처리구역 내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 하수도로 배출할 수 있고, 동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용 개시가 공시된 구역을 말한다. 따라서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또는 관할 행정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없지만 타 지역에 설치된 처리장으로 유입 · 처리하는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이다.

• 하수도 보급률은 해당 지역의 수질 환경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text{하수도 보급률} = \frac{\text{하수처리구역 내 인구}}{\text{총인구}} \times 100$$

표 13-5 하수도 보급률 (2008~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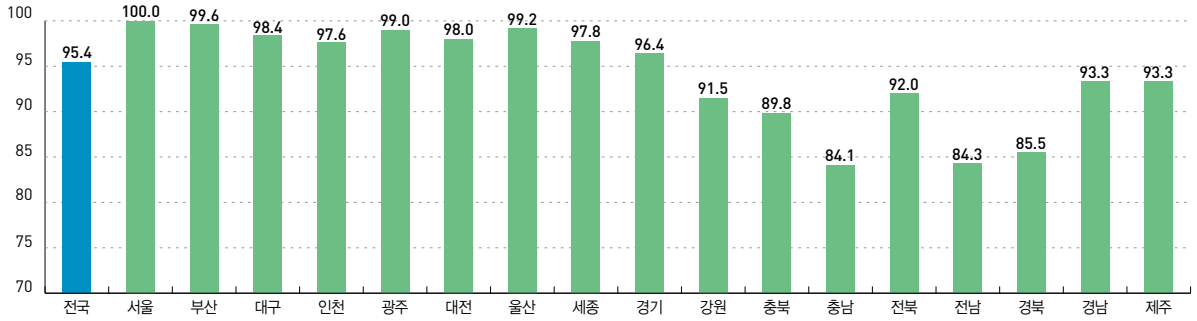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인구	50,394	50,644	51,435	51,717	51,881	52,127	52,419	52,672	52,858	52,950	53,073	53,122	52,975	52,733	52,629	52,674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	44,631	45,264	46,358	47,034	47,538	48,016	48,507	48,925	49,275	49,546	49,834	50,075	50,081	49,968	50,059	50,252
공공하수처리 인구	44,343	44,972	46,060	46,710	47,202	47,672	48,151	48,571	48,944	49,171	49,451	49,701	49,641	49,566	49,650	49,835
폐수종말처리 인구	288	292	297	324	336	344	356	355	332	183	198	187	189	192	189	189
하수도 보급률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93.2	93.6	93.9	94.3	94.5	94.8	95.1	95.4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7. 인출.)

그림 13-15 시도별 하수도 보급률 (2023)

(단위: %)



자료: 환경부, 2023 하수도통계, 2024. (http://kosis.kr에서 2025.7.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하수도통계	1975	2023	1년

표 13-6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 (201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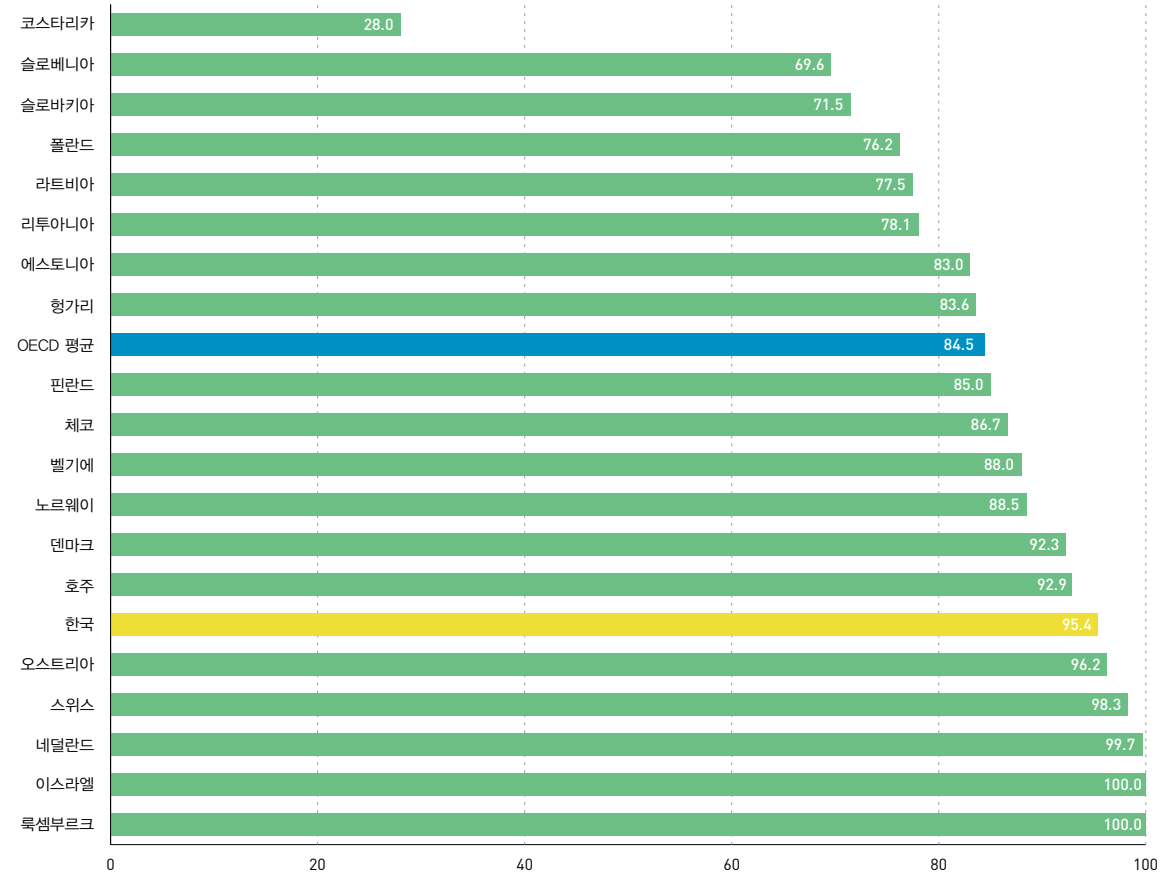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보급률	90.1	90.9	91.6	92.1	92.5	92.9	93.2	93.6	93.9	94.3	94.5	94.8	95.1
도시 보급률	93.8	94.2	94.6	94.9	95.0	95.1	95.5	95.8	96.0	96.2	96.4	96.5	96.8
농어촌 보급률	55.2	59.5	62.1	63.7	65.9	67.1	68.7	70.0	71.8	73.3	74.6	75.9	76.6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5.7.7. 인출.)

그림 13-16 OECD 주요국의 하수도 보급률 (2023)

(단위: %)



주: OECD 회원국 중 2023 하수도 보급률 수치가 있는 국가 선정

자료: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 2023. (http://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7. 인출.)

06-1
연 관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Population connected to tertiary sewerage treatment facility

지표 정의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이란 행정구역의 총인구 대비 고도처리가 이루어지는 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다. 여기서 고도처리란 질소, 인까지 하수처리하는 방법으로 3차 처리라고도 한다.

• 하수의 고도처리는 수질관리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text{• } \frac{\text{3차 처리 인구}}{\text{행정구역의 총인구}} \times 100$$

표 13-7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201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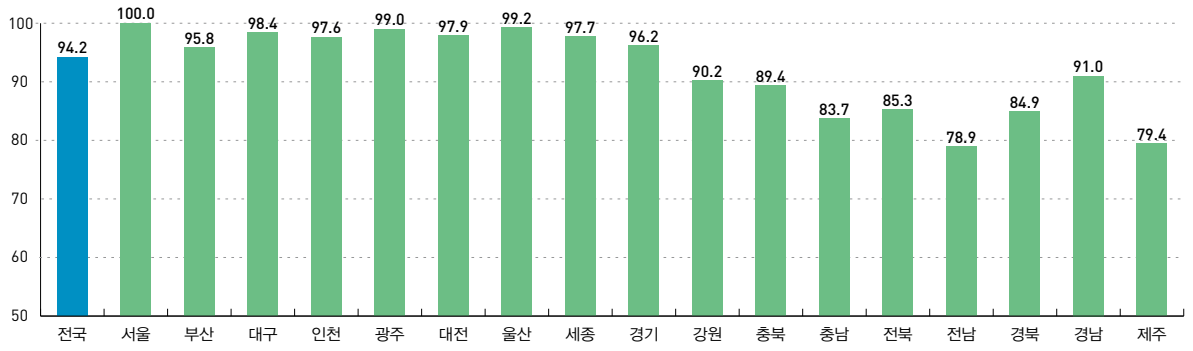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58.2	59.9	81.6	82.8	84.0	88.6	90.9	90.5	92.5	93.2	93.5	94.0	94.2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5.7.7. 인출.)

그림 13-17 시도별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2023)

(단위: %)



자료: 환경부, 2023 하수도통계, 2024. (http://kosis.or.kr에서 2025.7.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하수도통계	1975	2023	1년

06-2
연 관

하수도 설치율

Total public sewage & sewerage installation rate

지표 정의

하수도 설치율은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하수관로를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하수도 설치율은 공공하수처리 인구 보급률(하수도 보급률)과 계획연장 대비 시설연장을 의미하는 하수관로 보급률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공공하수처리 인구 보급률(\%)} \times \text{하수관로 보급률(\%)}}{100}$

표 13-8 하수도 설치율 (200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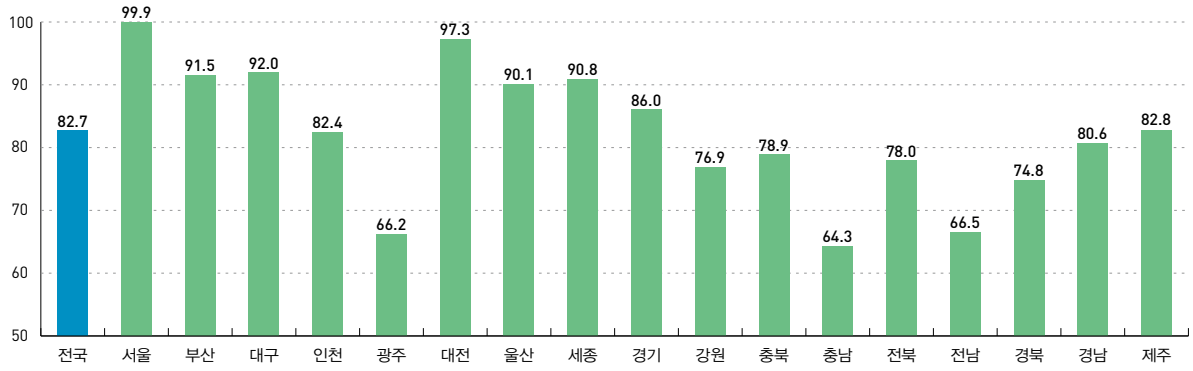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하수도 보급률	89.4	90.1	90.9	91.6	92.1	92.5	92.9	93.2	93.6	93.9	94.3	94.5	94.8	95.1	95.4
하수관로 보급률	75.4	78.0	73.4	75.8	76.5	77.8	79.9	80.0	80.7	81.8	82.3	82.8	85.9	86.1	86.7
하수도 설치율	67.4	70.3	66.7	69.5	70.5	72.0	74.2	74.8	75.4	76.8	77.6	78.2	81.4	81.9	82.7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5.7.7. 인출.)

그림 13-18 시도별 하수도 설치율 (2023)

(단위: %)



자료: 환경부, 2023 하수도통계, 2024. (http://kosis.or.kr에서 2025.7.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하수도통계	1975	2023	1년

07
대 표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Recycling rate of municipal waste

지표 정의

생활계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총 생계활폐기물 중에서 별도로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시설로 반입 처리된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 폐기물은 발생량과 더불어 처리과정도 중요하다. 환경정책 차원에서는 재활용률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재활용량}}{\text{생활계폐기물 발생량}} \times 100$

표 13-9 생활계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 (2015~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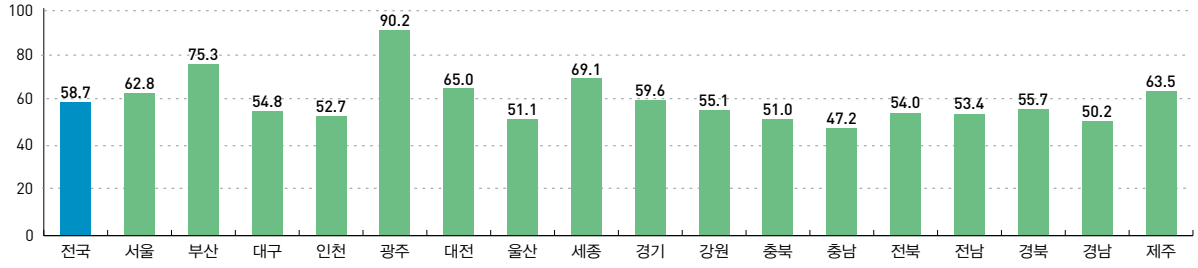
(단위: 만 톤/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발생량	1,871	1,963	1,952	2,045	2,116	2,254	2,270	2,304	2,242
매립	282 (15.1)	289 (14.7)	264 (13.5)	275 (13.4)	268 (12.7)	265 (11.8)	292 (12.9)	236 (10.2)	239 (10.7)
소각	481 (25.7)	497 (25.3)	486 (24.9)	502 (24.6)	545 (25.7)	575 (25.5)	564 (24.9)	553 (24.0)	557 (24.8)
재활용	1,108 (59.2)	1,177 (60.0)	1,202 (61.6)	1,268 (62.0)	1,263 (59.7)	1,342 (59.5)	1,287 (56.7)	1,379 (59.8)	1,316 (58.7)
기타	- -	- -	- -	- -	40 (1.9)	72 (3.2)	127 (5.6)	137 (5.9)	130 (5.8)

주: 1) 생활계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2) ( )는 각 연도별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별 비중
자료: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각 연도. (https://www.recycling-info.or.kr에서 2025.7.7. 인출.)

그림 13-19 시도별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2023)

(단위: %)



주: 생활계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자료: 환경부, 202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4. (https://www.recycling-info.or.kr에서 2025.7.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1993	2023	1년

07-1
연 관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Municipal waste generation per capita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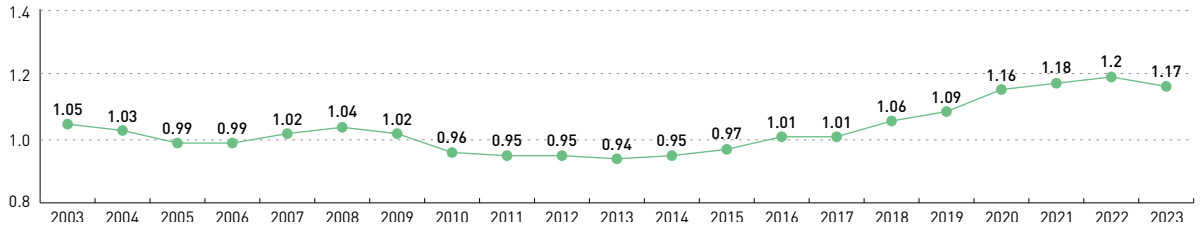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배출량은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합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인구로 나눈 값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생활계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text{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인구}}$

그림 13-20 생활계폐기물 1일 1인당 발생량 (2003~2023)

(단위: kg/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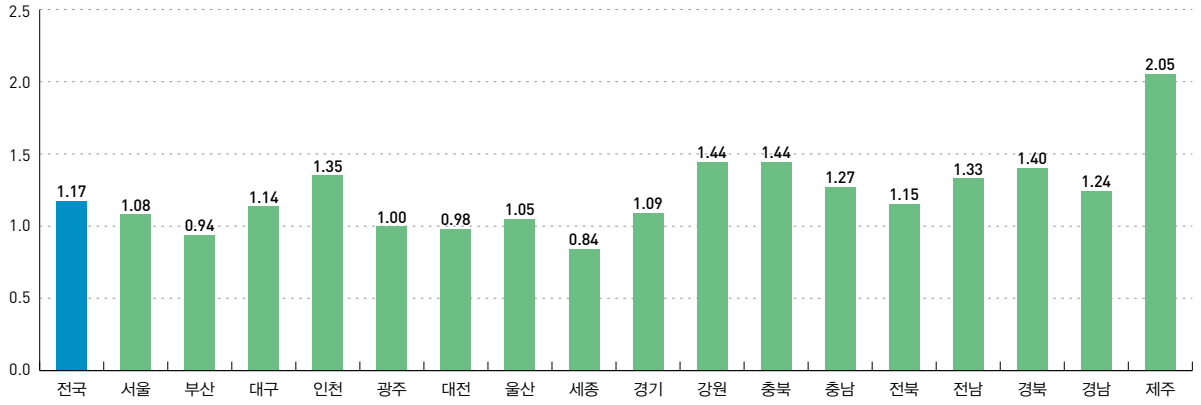


주: 생활계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자료: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각 연도. (https://www.recycling-info.or.kr에서 2025.7.7. 인출.)

그림 13-21 시도별 1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2023)

(단위: kg/일/인)



주: 생활계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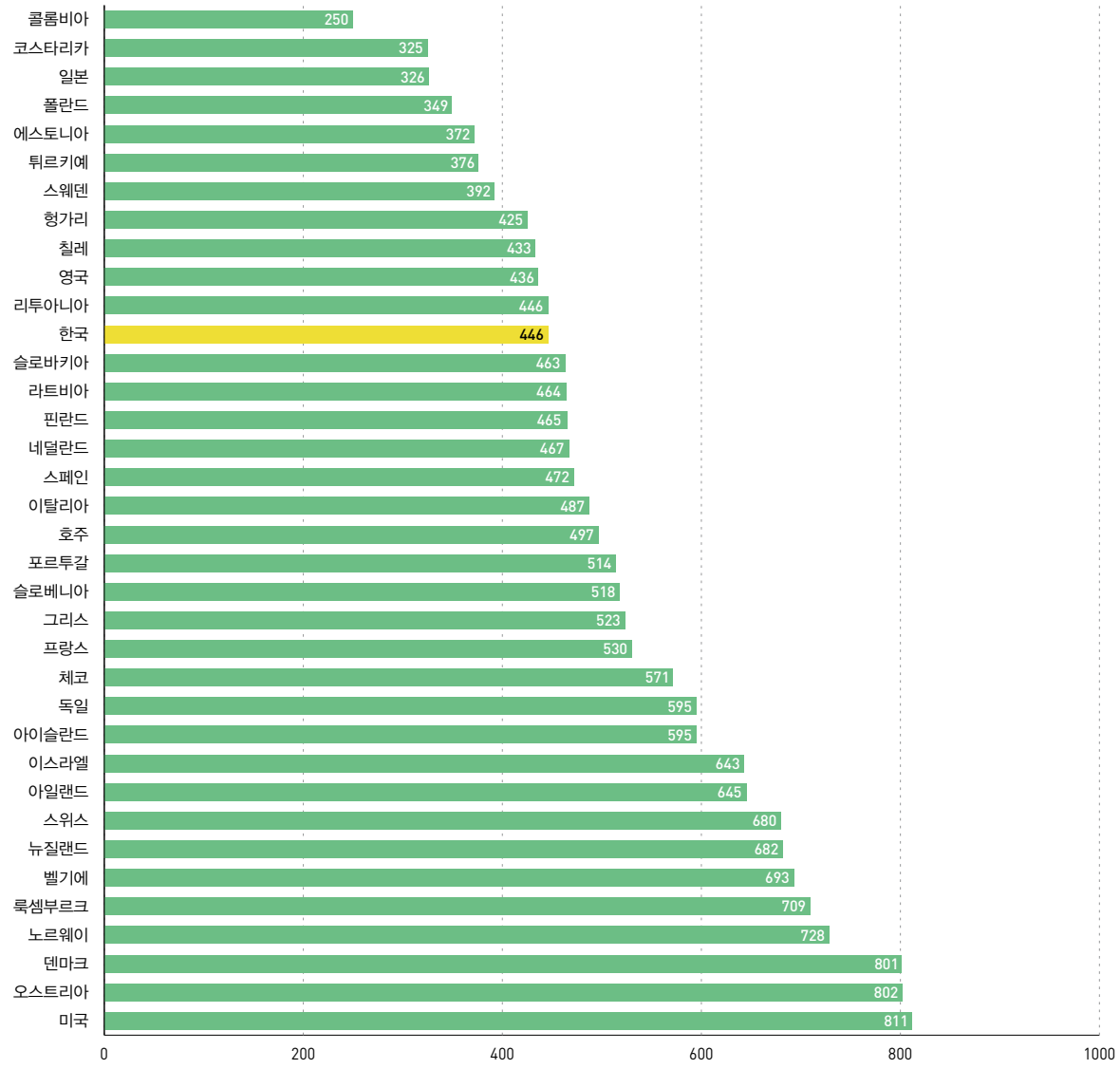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2023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24. (https://www.recycling-info.or.kr에서 2025.7.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1993	2023	1년

그림 13-22 OECD 국가의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2023)

(단위: kg/년/인)



주: 2023년 자료가 없는 경우 OECD에 제출된 최근 연도 자료를 활용 (한국은 2022년 자료)
자료: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 2023. (http://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7.7. 인출.)

08
대 표

환경성질환자 수

Number of patients with environmental disease

지표 정의

환경성질환자 수는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수이며, 환경성질환은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의 3개 질환을 포함한다.

측정 산식

- 합계 = 알레르기비염(J30) + 아토피피부염(L20) + 천식(J45~46) 질환자 수

표 13-10 항목별 환경성질환자 수 (200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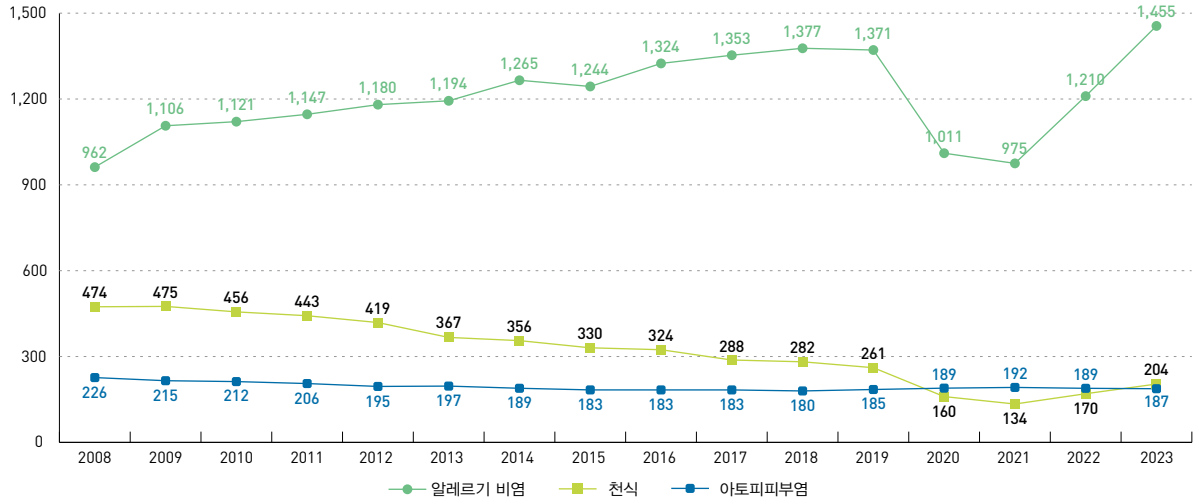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5,379	5,482	5,652	5,862	5,968	6,368	6,280	6,723	6,892	7,034	7,047	5,189	6,010	6,221	7,488
아토피피부염(L20)	1,048	1,039	1,013	971	983	951	925	930	934	918	949	973	988	971	965
천식(J45) 및 천식 지속	2,310	2,230	2,182	2,080	1,833	1,789	1,668	1,644	1,466	1,438	1,341	822	688	874	1,049
합계	8,737	8,751	8,848	8,912	8,784	9,108	8,874	9,297	9,292	9,390	9,337	6,983	6,373	8,066	9,502
순계	7,821	7,825	7,918	8,006	7,936	8,265	8,081	8,483	8,538	8,648	8,611	6,523	6,251	7,523	8,853

주: 순계 =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환경성질환자 수 종합
자료: 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 수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3-23 인구 1만 명당 주요 환경성질환자 수 (2008~2023)

(단위: 명, 인구 1만 명당)



주: 1만 명당 환자 = 환자 수/건강보험 연말 적용인구 × 10,000
자료: 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 수 (내부자료),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 수 (내부자료)	1994	2023	1년

14

사회재정

01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0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0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04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05 공적연금수지
06 고용 · 산재보험수지
07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08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재원배분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사회보장 지출 구조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공적연금수지	
	고용 · 산재보험수지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국제비교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01
대 표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Central government spending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 of CG total spending)

지표 정의

국가의 16대 예산 분야 중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 비중은 국가 총지출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규모를 파악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측정 산식

$$\frac{\text{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text{국가 총지출}} \times 100$$

유의사항 국가란 행정주체로서의 중앙정부를 의미하며, 국가재정은 중앙부처 소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예산과 결산상 지출 규모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표 14-1 국가 분야 · 부문별 지출 (2019~2025)

(단위: 조 원,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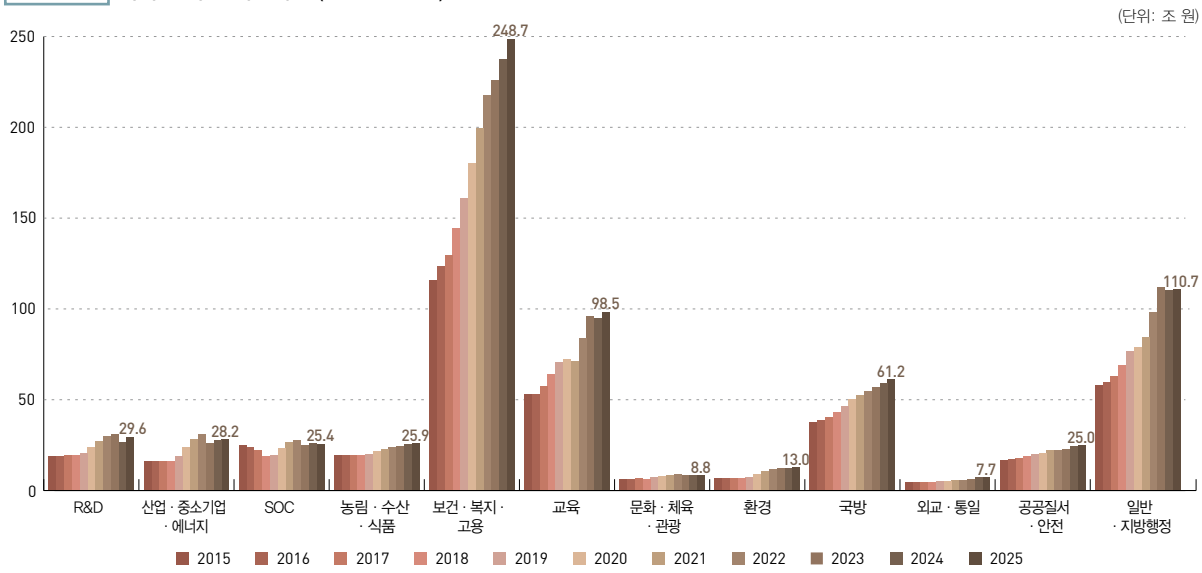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사회복지 · 보건[A]	161.0	180.5	199.7	217.7	226.0	237.6	248.7
국가총지출[B]	469.6	512.3	558	607.7	638.7	656.6	673.3
비중[A/B]	34.3	35.2	35.8	35.8	35.4	36.2	36.9
[사회복지, 억 원]	1,488,769	1,670,210	1,849,420	1,949,261	2,059,759	2,240,953	2,290,686
기초생활보장	127,046	139,659	153,243	167,638	191,355	208,225	218,616
취약계층지원	34,019	39,603	45,132	47,884	52,141	55,018	58,322
사회복지일반	12,958	14,215	13,710	9,473	10,127	10,580	10,820
아동 · 보육	81,297	85,127	85,582	91,827	98,476	108,894	52,304
여성 · 가족 · 청소년	10,475	10,950	12,001	14,289	15,302	16,861	17,383
노인	139,776	166,323	188,723	204,592	232,289	256,483	274,413
주택	257,309	297,314	335,184	358,263	334,413	374,239	355,911
공적연금	503,116	554,491	600,408	629,823	713,246	808,644	883,794
보훈	55,588	57,345	58,866	59,308	62,475	64,798	65,375
고용	194,598	222,759	258,402	259,383	236,316	222,983	235,801
노동	67,138	77,133	92,595	100,736	107,280	107,712	111,048
고용노동일반	5,449	5,291	5,574	6,045	6,339	6,516	6,899
[보건, 억 원]	121,203	135,218	148,006	227,125	200,275	188,432	196,779
보건의료	25,930	27,694	34,232	101,264	69,409	44,125	47,958
건강보험지원	90,187	101,956	107,688	119,242	124,102	137,070	141,277
식품의약안전	5,086	5,568	6,086	6,619	6,764	7,237	7,544

주: 본예산 기준, 2019년 이후 분류체계 개편 및 세분화되어 2019년 이후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2009	2025	1년

그림 14-1 국가 분야별 재원배분 (2015~2025)



주: 그래프안의 수치는 2025년도 본예산 규모임.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 연도.

02
대 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Local government sepnding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 of LG total spending)

지표 정의

지방자치단체* 13대** 예산분야 중 사회복지 · 보건 지출 비중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 보건 지출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재정 규모를 파악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측정 산식

$$\frac{\text{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text{지자체 예산 규모}} \times 100$$

유의사항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일반재정(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과 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지자체 일반재정 중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를 기준으로 지표를 작성하였다. 예산순계는 자치단체 내 회계 간(일반회계 – 특별회계) 내부거래,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 중복계상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국 및 시도별 재정 규모를 파악할 때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 이전을 비롯하여 지자체 및 회계 간 복잡한 재정 관계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빈번한 추경편성이 이루어지므로 당초 예산과 최종예산, 그리고 예산과 결산상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최종예산의 편성이나 결산정보가 상대적으로 늦게 공개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과의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지표를 산출했다.

한편, [지표 14–1]과 [지표 14–2]의 행정주체별 지출 규모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재정 이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각 지출 규모를 단순 합산하거나 그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보장지출 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표 14-2 지방자치단체 분야 · 부문별 세출 (2016~2025)

(단위: 조 원, 억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년 대비 증가율
사회복지 · 보건[A]	49.5	52.6	60.7	69.9	79.1	89.3	93.9	101.7	108.0	116.0	7.1
지자체예산규모[B]	184.6	193.2	210.7	231.0	253.0	263.0	288.0	305.4	310.0	326.0	5.1
비중[A/B]	26.8	27.2	28.8	30.3	31.3	33.9	32.6	33.3	35.0	36.0	1.8
[사회복지,억 원]	466,075	494,509	571,293	661,588	751,015	848,858	880,572	963,192	1,031,559	1,101,592	6.8
기초생활보장	111,722	114,787	126,262	146,194	160,332	172,728	190,822	211,855	231,842	257,932	11.3
취약계층지원	62,253	66,796	77,318	91,196	107,375	117,100	129,344	142,520	150,106	158,042	5.3
보육 · 가족 · 여성	121,192	127,708	148,312	167,595	178,546	184,633	195,970	211,880	227,566	227,454	Δ0.05
노인 · 청소년	142,234	149,433	180,278	208,730	241,287	267,557	290,682	320,401	354,222	378,997	7.0
노동	7,212	8,879	12,147	13,836	17,787	19,271	21,706	20,377	16,058	15,526	Δ3.3
보훈	3,407	3,683	4,599	5,278	5,990	6,239	7,080	7,922	9,325	9,523	2.1
주택	13,019	17,090	14,888	19,633	28,578	25,821	30,730	32,852	27,375	36,929	34.9
사회복지일반	5,036	6,135	7,489	9,126	11,115	11,418	14,238	15,385	15,066	17,190	14.1
[보건,억 원]	29,123	31,505	35,217	37,002	40,057	44,091	58,282	53,674	52,106	58,566	12.4
보건의료	27,965	30,063	33,678	35,453	38,327	42,282	56,257	51,523	49,948	56,212	12.5
식품의약안전	1,158	1,442	1,538	1,549	1,729	1,809	2,025	2,151	2,158	2,354	9.1

주: 당초 예산(순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1997(2008년 기능분류체계 개편)	2025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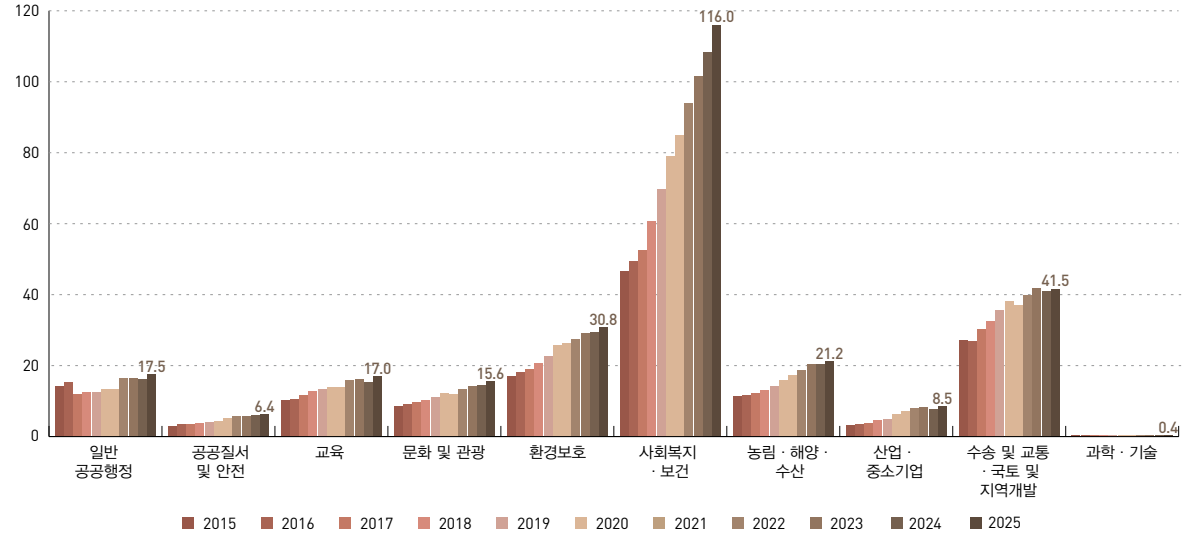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17개)와 기초자치단체(226개)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이 분리되어 있으며, 교육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된다.

** 2014년부터 기존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 [지표 14–2]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기초한 것으로 지표명이나 설명에 '지출' 대신 '세출'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나, [지표 14–1]은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과 관련한 재정 범위가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에 기준한다는 점에서 세출 대신 지출로 표기하였고, 지표 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세출' 대신 '지출'을 사용한다.

그림 14-2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재원배분 (2016~2025)

(단위: 조 원)



주: 1) 당초 예산(순계) 기준
2) 그래프 안의 수치는 2025년도 예산 규모임.
3) 수송 및 교통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합계지출 규모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각 연도.

03
대 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Subsidy spending ratio of local government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지표 정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관련 사업의 유형과 지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보조사업비 규모}}{\text{지자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세출 예산}}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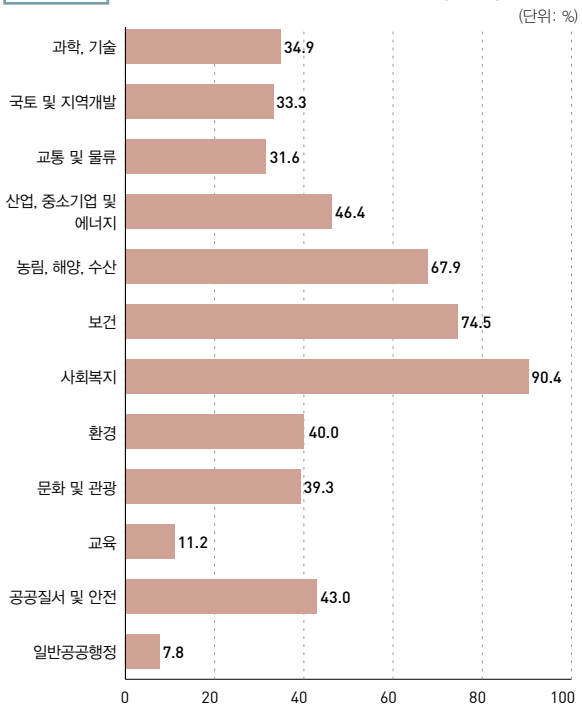
표 14-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2025)

(단위: 억 원, %)

구분	보조사업 (A)	자체사업 (B)	보조사업 비중 [A/(A+B)]	2025년도 보조사업 비중
지자체 예산	1,563,598	1,154,426	57.5	56.7
사회복지 · 보건	1,029,609	119,044	89.6	89.6
사회복지	986,115	104,144	90.4	90.5
기초생활보장	255,320	1,929	99.3	99.1
취약계층지원	136,355	20,774	86.8	87.6
보육 · 가족 · 여성	211,451	15,957	93.0	93.1
노인 · 청소년	345,096	33,747	91.1	90.9
노동	6,607	8,872	42.7	45.4
보훈	3,611	5,912	37.9	38.6
주택	17,497	10,280	63.0	59.9
사회복지일반	10,178	6,672	60.4	64.4
보건	43,494	14,900	74.5	71.9
보건의료	41,726	14,356	74.4	71.8
식품의약안전	1,768	544	76.5	73.9

주: 1) 당초 예산(순계) 기준
2) [지표 14-2] 분야 부문별 예산 규모와 차이는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 등이 제외되기 때문임.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2025.

그림 14-3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보조사업 비중 (2025)



주: 당초 예산(순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2025.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1997(2008년 기능분류체계 개편)	2025	1년

04
대 표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Government spending on major social welfare programs

지표 정의

사회복지 분야 주요 예산사업 즉,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재정 규모를 의미하며, 국가–지자체 간 분담수준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 생계 · 해산 · 장제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국비+지방비 합계와 신설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을 합산한 것임.

표 14-4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현황 (2024)

(단위: 억 원)

구분	계(A)	국비(B)	지방비	국가분담률(B/A)
합계	575,302	434,215	141,087	75.5%
기초생활보장	243,231	193,706	49,525	79.6%
생계 · 해산장제급여	91,630	75,836	15,794	82.8%
주거급여	33,290	26,890	6,400	80.8%
교육급여	1,918	1,603	315	83.6%
의료급여	116,393	89,377	27,016	76.8%
장애인연금	13,309	8,932	4,377	67.1%
장애수당	3,233	2,192	1,041	67.8%
기초연금	243,595	201,789	41,806	82.8%
영유아보육료(0~2세)	38,494	26,731	11,763	69.4%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2,106	0	32,106	100.0%
가정양육수당	1,334	865	469	64.8%

주: 1) 세출규모는 예산 기준임.
2)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육부 소관) 세출규모만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2024. 나라살림예산(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내부자료). 국토교통부(내부자료). 교육부(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주요 사회복지 예산 (내부자료)	-	2024	1년

05
대 표

공적연금수지

Fiscal balance of public pension funds

지표 정의

4대 공적연금 기금운용계획상 정부내부수입과 여유자금회수 및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수지차의 합계로 정의한다.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건전성과 국가지원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4대 공적연금 경상수입(자체수입+경상이전수입)–경상지출(사업비지출+기금운영비)

유의사항 동 지표는 실적이 아닌 기금운용계획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표 14-5 4대 공적연금기금 운용계획 (2022)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수지차[A+B–D–E]	272,467	422,482	-124,888	-28,921	3,794
[조달]	1,745,525	1,307,422	267,951	37,212	132,940
자체수입(A)	901,765	737,131	97,670	7,493	59,471
기여금(보험료) 수입	641,453	531,353	64,974	7,194	37,932
이자 및 재산수입 등[1]	260,156	205,778	32,696	143	21,539
경상이전수입(B)	525	-	-	156	369
정부내부수입(C)	181,265	103	142,065	29,220	9,877
국가부담금[2]	113,768	-	101,341	12,427	-
보전금	57,507	-	40,714	16,793	-
전입금[3]	9,990	103	10	-	9,877
공공자금예탁원리금 및 이자	-	-	-	-	-
여유자금회수	662,127	570,188	28,216	500	63,223
[운용]	1,745,525	1,307,422	267,951	37,212	132,940
사업비(D)	623,060	309,190	221,805	36,557	55,508
급여지출	589,870	306,085	201,300	36,557	45,928
경상지출[4]	3,467	2,606	159	-	702
융자지출[5]	22,554	499	13,177	-	8,878
자본지출[6]	7,169	-	7,169	-	-
기금운영비(E)	6,763	5,459	753	13	538
정부내부지출[7]	1,260	-	774	-	486
여유자금운용	1,114,442	992,773	44,618	643	76,408

주: 1)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잡수입 및 융자원금 회수 포함;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융자원금 회수 및 민간차입금 포함
2)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지자체부담금 포함
3)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대여장학금 수탁금 및 운영부담금 포함;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국가부담금 포함
4)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복지타운운영비, 기금운용본부운영비 및 기타사업 포함;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차입금원리금 상환 및 국민주택기금 예탁금 포함; 군인연금기금의 경우, 공자기금예탁 포함
5)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포함;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대부사업운영 포함;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생활자금대여 및 학자금대여 포함
6)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주택사업운영, 시설사업운영 및 통합전략시스템 포함
7)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국고학자금대여반환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경제 · 재정수첩 p.262, 수정 인용(원자료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안(내부자료)	-	2022	1년

06
대 표

고용 · 산재보험수지

Fiscal balance of the employment·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unds

지표 정의

고용 · 산재보험수지는 근로안전망으로 6개 사회보장성 기금을 구성하는 고용 · 산재보험의 재정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고용 · 산재보험기금 경상수입(보험료 + 기타) – 경상지출(사업비 + 기금관리비 등)

표 14-6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결산 현황 (2023)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차[A+B–C–D]	8,340	11,819	Δ3,479
[조달]	358,811	209,133	149,678
보험료(A)	273,464	182,410	91,054
기타(B)	11,721	0	11,721
정부내부수입(전입금)	23,300	3,000	20,300
여유자금회수	50,326	23,724	26,603
[운용]	358,811	209,133	149,678
사업비(C)	254,213	167,729	86,485
기금관리비 등(D)	22,632	2,862	19,769
여유자금운용	81,966	38,542	43,424

주: 2023년도 결산 기준임.
자료: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 p.11. 수정 인용
산재보험: 고용노동부, 2022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p.207–209. 수정 인용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결산 현황	2006	2023	1년

07
대 표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Fiscal balance of the national health and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지표 정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정의되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상수입(보험료 + 기타) – 경상지출

표 14-7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결산 현황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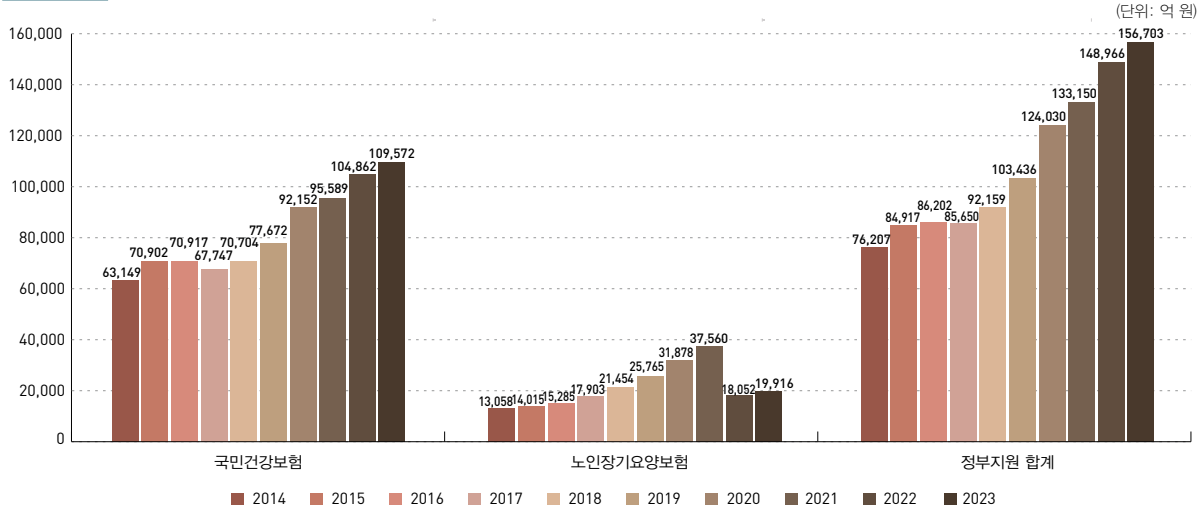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지차[A–B]	30,195	16,864	13,331
[수입]	1,118,920	964,169	154,750
보험료 및 기타(A)	962,216	854,597	107,619
정부지원	233,414	109,572	123,842
[지출] (B)	1,088,725	947,305	141,419

자료: 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보험통계연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그림 14-4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규모 (2014~2023)

(단위: 억 원)



주: 2014~2023 결산기준
자료: 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1	2023	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08	2023	1년

08
대 표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Composition of public social expenditure(SOCX)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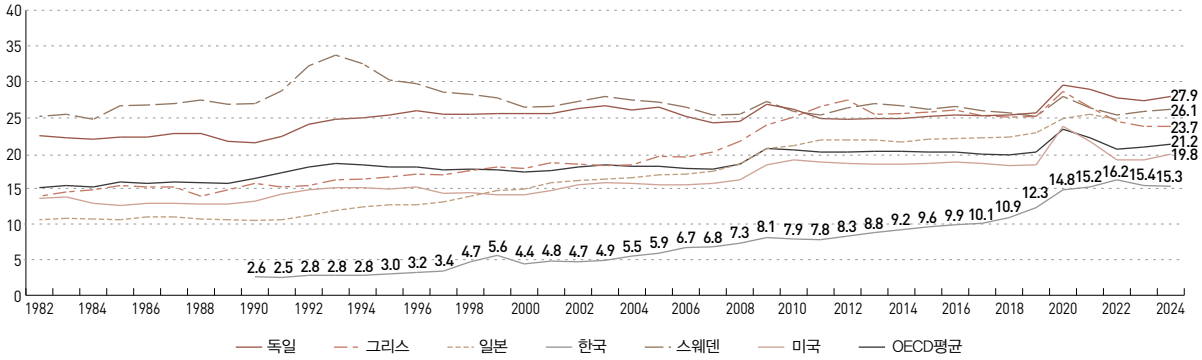
공공사회지출은 명목 GDP 규모 대비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비중으로 국가 간 공공사회지출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Public SOCX}}{\text{명목 GDP}} \times 100$

그림 14-5 주요국 공공사회지출 (1982~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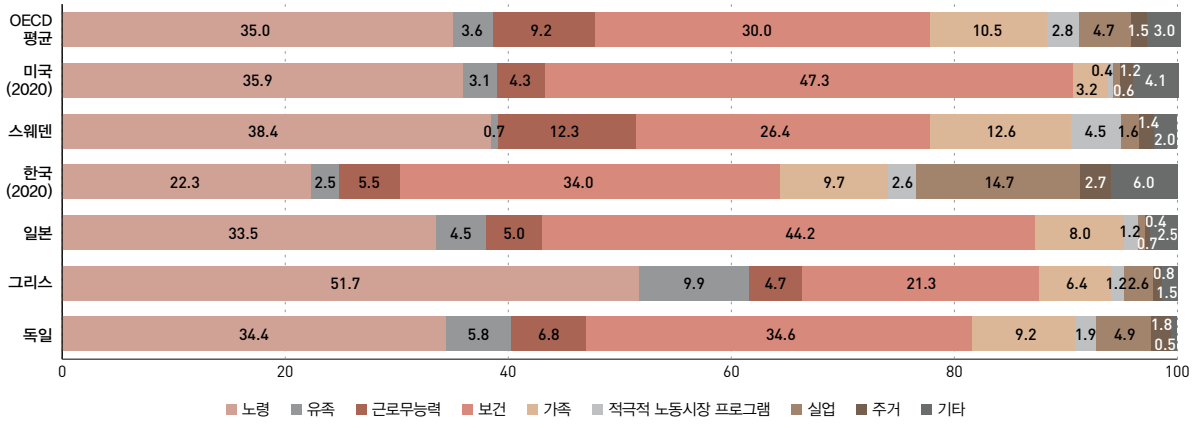
(단위: 명목 GDP 대비 %)



주: SOCX의 각국 자료 범위는 1980~2024년 (단, 일본은 2022년까지, 한국은 1990년 이후 자료).
자료: OECD, Data Explorer.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23. 인출).

그림 14-6 공공사회지출 구조 국제비교 (2021 혹은 최신 연도)

(단위: 공공사회지출 대비 %)



주: 1) 각 국 SOCX 9대 영역별 GDP 대비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를 합하여 영역별 분율을 계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반올림
2) 일본, 한국은 2022년, 미국은 2024년도 자료.
자료: OECD, Data Explorer.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6.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발표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1990	2024	2년

표 14-8 9대 영역별 공공사회지출 (1990~2022)

(단위: 백만 원)

연도	합계	공공사회지출								
		1.노령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1990	5,300,288	1,165,749	374,101	486,647	2,827,892	59,886	50,690	-	-	335,323
1991	6,173,644	1,470,571	510,848	676,336	3,047,700	88,738	43,613	-	-	335,837
1992	7,675,829	2,028,385	581,111	858,382	3,665,683	110,865	103,162	-	-	328,241
1993	8,948,860	2,660,554	610,600	879,358	4,141,643	153,824	144,042	-	-	358,840
1994	10,556,695	3,316,754	725,579	1,137,271	4,715,003	184,860	114,439	-	-	362,789
1995	13,167,906	4,372,921	811,946	1,324,006	5,774,227	261,762	168,119	-	-	454,926
1996	15,519,434	4,650,867	915,671	1,549,479	7,291,890	337,352	183,633	10,459	-	580,084
1997	18,440,043	5,458,158	1,035,923	1,862,131	8,482,750	428,714	359,558	78,737	-	734,072
1998	25,340,693	8,930,747	1,058,084	1,887,317	9,612,703	548,994	1,627,392	799,415	-	876,042
1999	33,253,240	13,004,910	1,072,284	1,756,747	11,229,380	530,003	3,265,765	936,163	-	1,457,988
2000	28,752,016	7,570,329	1,247,962	2,095,087	12,782,221	664,909	2,313,351	470,792	-	1,607,364
2001	33,852,286	6,714,835	1,361,495	2,509,899	17,510,247	941,250	1,428,835	845,109	-	2,540,617
2002	36,519,738	7,324,597	1,570,839	2,989,398	18,468,439	1,017,929	1,342,499	834,948	-	2,971,089
2003	41,404,583	8,785,190	1,860,768	3,586,355	20,749,650	1,268,122	931,917	1,030,304	-	3,192,276
2004	50,287,246	10,706,653	2,058,380	4,485,396	22,614,681	1,654,245	938,848	1,448,306	-	6,380,738
2005	56,295,845	12,183,883	2,254,962	4,942,264	25,214,716	2,131,329	1,022,514	1,751,974	-	6,794,203
2006	67,367,467	13,546,495	2,510,647	5,520,371	29,334,113	4,753,167	1,074,230	2,074,004	-	8,554,438
2007	73,899,687	15,525,965	2,790,585	6,009,967	32,852,515	4,540,474	1,255,823	2,434,033	-	8,490,325
2008	83,844,436	19,446,695	3,008,426	6,672,889	35,671,296	6,241,375	2,606,232	2,865,256	-	7,332,268
2009	97,263,139	21,348,690	3,281,683	7,104,927	41,245,422	7,823,589	4,961,445	4,116,404	-	7,380,979
2010	103,962,371	23,686,227	3,589,646	6,633,875	46,447,780	8,850,262	3,815,149	3,686,529	-	7,252,902
2011	108,526,687	25,378,967	3,923,011	7,245,329	48,874,078	9,349,951	3,308,486	3,561,353	-	6,885,510
2012	119,953,845	29,195,474	4,223,476	7,916,355	50,928,968	12,002,439	4,495,698	3,676,665	-	7,514,770
2013	132,453,110	31,478,367	3,989,739	8,097,000	54,234,013	17,155,870	5,248,351	3,883,507	-	8,366,262
2014	143,638,953	36,670,451	4,354,975	8,314,408	58,006,819	17,556,828	5,365,912	4,156,137	-	9,213,422
2015	159,767,425	42,347,984	4,822,168	9,206,109	63,265,137	18,693,283	5,538,555	4,547,336	410,760	10,936,094
2016	171,811,916	44,986,564	5,146,743	9,750,761	69,235,135	19,178,613	6,051,662	4,895,396	1,125,866	11,441,177
2017	185,526,941	49,021,923	5,941,346	11,019,111	75,553,210	20,245,518	5,454,739	5,264,784	1,177,524	11,848,786
2018	206,806,618	53,394,479	6,504,697	12,168,502	83,643,363	22,395,079	6,856,095	6,737,845	1,465,547	13,641,011
2019	235,925,478	59,362,911	7,038,219	13,629,452	93,265,432	26,437,218	7,086,752	8,545,515	1,762,549	18,797,430
2020	306,211,015	67,917,508	8,555,476	18,145,575	96,196,411	37,336,030	13,520,568	19,286,452	9,280,590	35,972,405
2021	338,228,559	74,622,578	8,935,455	19,399,975	113,017,002	35,904,942	14,147,530	30,621,974	9,741,428	31,837,676
2022	377,268,238	84,077,055	9,567,304	20,635,923	127,985,002	38,384,106	9,830,336	55,110,066	10,021,620	21,656,824

주: 각 항목은 반올림되어 있어, 합계와 맞지 않을 수 있음.
자료: OECD, Data Explorer. (data-explorer.oecd.org에서 2025.8.4. 인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Social Security Factbook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장
황안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안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고경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조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디자인 좋은PR소야 070-4616-404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Factbook 202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